

|                      |
|----------------------|
| 발 간 등 록 번 호          |
| 11-1383000-000632-12 |

#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연구

---

2022. 3.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연구

2022. 3.

연 구 기 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 황 정 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박 선 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 재 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 원 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동 제 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최 미 진 (다인노무법인 대표)

조 사 기 관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본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 연구요약

### 1. 조사개요

#### 가. 목적

-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는 법률상 명시된 조사항목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생산하여 연속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2018년 미투운동 이후 사회적, 제도·정책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산출하고자 함. 이를 위해 3년 동안의 성희롱 실태와 변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된 제도와 시스템의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하여 그간의 제도·정책 개선에 따른 조직내 성희롱 방지 시스템, 조직문화, 구성원의 인식 등의 변화를 진단함으로써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나. 조사설계

-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전국의 민간사업체 및 공공기관(근로자)을 대상으로 함. 이를 위해 2019년 기준 전국사업체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 모집단을 구성하였고 다단계층화계통추출법을 통해 표본 사업체를 추출함.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를 개괄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구분             |        | 내용                                                         |                                       |                                            |                                      |
|----------------|--------|------------------------------------------------------------|---------------------------------------|--------------------------------------------|--------------------------------------|
|                |        | 민간사업체                                                      |                                       | 공공기관                                       |                                      |
| 모집단            | 목표 모집단 |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전국의 민간사업체 및 공공기관 (근로자)             |                                       |                                            |                                      |
|                | 조사 모집단 | - 농업, 임업 및 어업(A), 광업(B), 가사 서비스업(S), 국제기구 및 기타 외국 기관(T) 제외 |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중 일부 대상 |                                      |
| 표본추출틀          |        | - 2019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통계청)                                 |                                       |                                            |                                      |
| 표본크기<br>(표본오차) | 업무 담당자 | - 1,760개소                                                  | - 1,760명<br>(95% 신뢰수준 $\pm 2.4\%p$ )  | - 770개소                                    | - 770명<br>(95% 신뢰수준 $\pm 3.6\%p$ )   |
|                | 일반 직원  |                                                            | - 10,514명<br>(95% 신뢰수준 $\pm 1.0\%p$ ) |                                            | - 4,644명<br>(95% 신뢰수준 $\pm 1.5\%p$ ) |



| 구분     |        | 내용                                                                                                                                                  |                                                                                                                    |
|--------|--------|-----------------------------------------------------------------------------------------------------------------------------------------------------|--------------------------------------------------------------------------------------------------------------------|
|        |        | 민간사업체                                                                                                                                               | 공공기관                                                                                                               |
| 모집단 층화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층화: 산업대분류 업종</li> <li>- 2차 층화: 사업체 규모</li> <li>- 내재적 층화: 지역</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층화: 공공기관 유형</li> <li>- 2차 층화: 공공기관 규모</li> <li>- 내재적 층화: 지역</li> </ul> |
| 표본배분   |        | - (공통) 제곱근비례배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형별) 우선할당 후 비례배분</li> <li>- (규모별) 제곱근비례배분</li> </ul>                     |
| 표본추출   | 업무 담당자 | - 다단계층화계통추출                                                                                                                                         |                                                                                                                    |
|        | 일반 직원  | - 종사자 규모, 성별, 연령별 약 6명(5-10명) 할당                                                                                                                    |                                                                                                                    |
| 가중치    |        | - 설계가중값, 무응답 조정, 사후층화 조정, 근로자 1차 가중치, 최종 가중치                                                                                                        |                                                                                                                    |
| 모수추정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합표본설계(complex survey)에 적합한 모수추정식 적용</li> <li>- 분산 관련 추정량은 SAS의 surveymeans, surveyfreq 프로시저 활용</li> </ul> |                                                                                                                    |

#### 다. 조사내용

-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한 조사항목을 포괄하면서 주요 문항을 중심으로 2018년 조사와의 연속성은 유지하되 성희롱 관련 현안을 고려한 문항을 추가·보완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조사표를 개선함.
- 특히 2018년 미투 이후 성희롱 피해 양상 및 실태의 변화, 2018년 미투를 계기로 개선 및 확대된 성희롱 사건처리 시스템의 운영 현황, 성희롱 방지 정책 및 제도 개선에 따른 조직내 변화와 체감도, 2차 피해 실태와 대처 등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함.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문항은 다음과 같음.

○ 업무담당자

| 구분                    | 내용                                                                                                                                                                                                                                                                                                                                                                                                                                                                                                                                                                                                                                                                                                                                                           |
|-----------------------|--------------------------------------------------------------------------------------------------------------------------------------------------------------------------------------------------------------------------------------------------------------------------------------------------------------------------------------------------------------------------------------------------------------------------------------------------------------------------------------------------------------------------------------------------------------------------------------------------------------------------------------------------------------------------------------------------------------------------------------------------------------|
| I. 성희롱 관련 업무 운영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업무 운영 현황</li> <li>- 사업주/기관장의 직장내 성희롱 방지 조치 이행 노력 여부</li> <li>- 사업주/기관장의 직장내 성희롱 방지, 공정한 사건처리 책무 및 이행 의지에 대한 직접 언급 여부</li> <li>- 지난 3년간 성희롱 관련 고충상담 건수</li> <li>- 지난 3년간 성희롱 사건 발생 여부 및 발생 건수</li> <li>- <u>지난 3년간 조사가 진행된 성희롱 사건수, 신청 후 조사 개시까지 평균 소요기간, 조사 진행자, 조사 진행 상황의 피해자 알림 여부, 조사 개시 후 조사 종료까지 평균 소요기간</u></li> <li>- <u>지난 3년간 성희롱 심의를 위한 위원회가 개최된 사건수, 성희롱 심의를 위한 위원회 및 위원회 구성, 위원회를 통한 성희롱으로 인정된 건수, 성희롱 심의판단 및 행위자 징계 결정시 피해자 의견 청취 여부</u></li> <li>- 성희롱 사건 행위자 조치 결과, 성희롱 사건 피해자 조치 결과</li> <li>- <u>지난 3년간 성희롱 사건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 여부, 재발방지대책 추진 내용, (공공기관) 지난 3년간 성희롱 사건 관련 재발방지대책의 여성가족부 제출 여부</u></li> <li>- <u>2차 피해 목격 경험, 기관의 2차 피해에 대한 대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매뉴얼, 규정 마련 여부</u></li> </ul> |
| II. 성희롱 예방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1년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및 횟수, 예방교육 미실시 이유</li> <li>- 지난 1년간 성희롱 예방교육 (금융사, 보험사 등의) 무료강좌 여부</li> <li>- 지난 1년간 주된 예방교육 진행방식, (교육시간을 따로 지정한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li> <li>- <u>직급별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 여부</u></li> <li>- 기관장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 여부(가장 최근 기준)</li> <li>- <u>지난 1년간 전체 직원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률</u></li> <li>- <u>사업주/기관장의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지 여부, 사업주/기관장의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등에 대한 직접 언급 혹은 지시 여부</u></li> </ul>                                                                                                                                                                                                                                                                                                                           |
| III. 성희롱 업무 수행 및 정책수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희롱 업무의 어려움</li> <li>-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시 어려움</li> <li>- 성희롱 사건처리과정의 어려움</li> <li>-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li> <li>- 정부가 추진한 직장 내 성희롱 방지대책 인지 여부 및 도움 정도</li> <li>- <u>지난 3년간 직장내 성희롱 관련 변화 정도</u></li> <li>- <u>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 수요</u></li> <li>- <u>분야별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 수요(조직문화 개선, 피해 신고 활성화, 공정한 사건처리, 피해자 보호)</u></li> </ul>                                                                                                                                                                                                                                                                                                                                                                                    |
| IV. 응답자 특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 생년, 종사상 지위, 근무기간, 성희롱 업무 담당기간, 성희롱 업무 전담 여부, 성희롱 업무 관련 교육훈련 이수 여부, <u>코로나19로 인한 근무환경 변화, 연령별, 성별 근로자 수</u></li> </ul>                                                                                                                                                                                                                                                                                                                                                                                                                                                                                                                                                                                           |

※ 밑줄친 부분은 2021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 일반직원

| 구분               | 내용                                                                                                                                                                                                                                                                                                                                                                                                                                                                                                          |
|------------------|-------------------------------------------------------------------------------------------------------------------------------------------------------------------------------------------------------------------------------------------------------------------------------------------------------------------------------------------------------------------------------------------------------------------------------------------------------------------------------------------------------------|
| I. 직장 내 조직문화     | - 직장 내 조직문화(일반적 조직문화, 성차별적 조직문화), 성차별적 괴롭힘 경험                                                                                                                                                                                                                                                                                                                                                                                                                                                               |
| II. 성희롱 예방교육     | - 지난 1년간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 여부, 예방교육 방식(가장 최근 기준), 예방교육 진행 방법(가장 최근 기준), 예방교육 참여 태도(가장 최근 기준)<br>- 예방교육 경험 이후 본인이 경험한 변화, 예방교육의 성희롱 방지 효과(가장 최근 기준) 및 미효과 이유                                                                                                                                                                                                                                                                                                                                                       |
| III. 성희롱 피해경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희롱 피해 경험, 성희롱 행위자와의 관계, 성희롱 행위자의 성별, 성희롱 발생 장소, 성희롱 행위의 지속 여부, 성희롱 경험 당시 그 자리에서의 대처 행동, 성희롱 발생 당시 목격자 여부, 성희롱 발생 당시 목격자의 대응 행동, 성희롱 피해 경험으로 인한 영향, 성희롱 대처 행동</li> <li>- 대처 행동 중 참고 넘어간 이유, 공식적인 상담/신고 후 기관에서의 조치 내용, 기관의 사건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한 만족도</li> <li>- 성희롱 문제 제기 이후 불이익 경험</li> <li>- 성희롱 2차 피해 경험, 성희롱 2차 피해 행위자, 성희롱 2차 피해 시 대처 행동, 성희롱 2차 피해로 인한 영향,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기관의 대처</li> </ul>                                                                          |
|                  | - 성희롱 상황 목격 경험, 성희롱 상황 목격 시 조치 방법 및 미조치 이유, 목격 경험으로 인한 영향                                                                                                                                                                                                                                                                                                                                                                                                                                                   |
|                  | - 성희롱 2차 피해 목격 경험 및 영향, 성희롱 2차 피해 발생 원인                                                                                                                                                                                                                                                                                                                                                                                                                                                                     |
| IV. 성희롱 전담부서 인지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기관장의 직장내 성희롱 방지 조치 이행 노력 여부, 사업주/기관장의 직장내 성희롱 방지, 공정한 사건처리 책무 및 이행 의지에 대한 직접 언급 여부, 성희롱 방지 업무 인프라 운영에 대한 인지도</li> <li>- 성희롱 경험 시 외부 신고창구 이용 및 이용 권유 여부</li> <li>- 성희롱 경험 시 고충전담창구 및 고충상담원 이용 및 이용 권유 여부</li> <li>- 성희롱 경험 시 사내에서의 성희롱 사건처리 기대 및 미기대 이유</li> <li>- 정부가 추진한 직장 내 성희롱 방지대책 인지 여부 및 도움 정도</li> <li>- 지난 3년간 직장내 성희롱 관련 변화 정도</li> <li>-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 수요</li> <li>- 분야별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 수요(조직문화 개선, 피해 신고 활성화, 공정한 사건처리, 피해자 보호)</li> </ul> |
| V. 응답자 특성        | - 성별, 생년, 직책, 종사상 지위, 근무기간, 현직장 근무기간, <u>코로나19로 인한 근무 환경 변화</u> , 일하는 부서 및 전체 직장의 남녀비중                                                                                                                                                                                                                                                                                                                                                                                                                      |

※ 밑줄친 부분은 2021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 2. 조사결과

### 가. 일반직원 조사결과

#### ○ 성희롱 피해 경험

- (성희롱 피해 실태) 지난 3년간(2018.8.~2021.7.) 14개 성희롱 피해 유형 중 하나라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8%였음. 전체적으로 공공기관, 여성, 20대 이하, 비정규직, 지방자치단체, 사회서비스업, 500인 이상에서 성희롱 피해 경험률이 높았음.
- (성희롱 행위자와의 관계 및 성별) '나의 상급자(기관장, 사업주 등 제외)'가 54.9%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나의 동급자' 24.0%였고, '기관장, 사업주 등'은 3.5%였음. 성희롱 행위자의 성별은 80.2%가 남성이었음.
- (성희롱 발생 장소) '사무실 내'(41.8%), '회식 장소'(31.5%) 순이었고 두 장소가 전체 성희롱 발생 장소 중 70%를 상회함. 한편 2021년에 추가된 '온라인(단톡방, SNS, 메신저 등)'은 4.7%였고, 30대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높았음.
- (성희롱 피해 당시의 행동)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다'(43.6%)가 가장 많았음. 그다음은 '화제를 돌리거나 그 자리를 피했다'(33.0%), '성희롱 행위자에게 바로 중단을 요구했다'(10.5%) 순이었음.
- (성희롱 행위 반복/지속 여부) 피해 당시 성희롱 행위가 2회 이상 반복 혹은 지속되었는지 조사한 결과, 28.8%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3명은 성희롱 피해가 2회 이상으로 반복되거나 지속되었던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남. 전체적으로 민간사업체, 여성, 20대 이하, 제조업, 30~99인 규모의 민간사업체에서 성희롱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지속됨.
- (성희롱 피해 당시의 목격자 유무 및 목격자의 행동)
  - (목격자 유무) 목격자가 '있었다'는 응답이 54.0%로, 성희롱 피해자 중 절반 정도는 피해 당시에 주위에 목격자가 있었음.
  - (목격자 행동, 복수응답) 목격자들의 행동으로 '모른 척 하였다'(50.0%)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행위자의 행동을 제지하였다'(19.1%)와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었다'(19.1%) 순이었음. 행위자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경우보다 모른 척한 경우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남.
- (성희롱 피해 경험의 영향) '특별한 영향이 없었음'이라는 응답이 44.2%였음. 이는 성희롱 피해자의 절반 정도는 성희롱 피해 경험으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함. 여성, 20대 이하와 50대 이상에서,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별로는 규모가 작을수록

성희롱 피해로 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별한 영향의 내용, 복수응답) '직장(성희롱 예방정책, 문화 등)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음'(20.5%), '직장 만족도가 낮아짐'(19.0%), '근로익욕 저하 등 업무 집중도가 떨어짐'(10.9%) 순으로 나타남. 이는 성희롱 피해 경험이 개인적 차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보다 직장에 대한 실망감, 직장 만족도 저하, 근로익욕 저하 등 직장생활과 근로 환경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줌.

○ 성희롱 피해에 대한 대응

- (대처 행동) '참고 넘어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6.7%로,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7명 정도는 성희롱 피해를 참고 넘어가고 있었음. 그다음은 '동료에게 알리고 의논함' 10.9%, '성희롱 행위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개인적으로 처리함' 7.3% 순이었음. 반면 '고충상담창구에 상담함' 1.6%, '상급자에게 알리고 조치를 상의함' 3.3%, '사내 기구를 통해 공식적으로 신고함' 1.1% 등으로 기관 내부 공식채널을 활용하는 비율은 6.0%에 그침.
- (참고 넘어간 이유, 복수응답)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59.8%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봐서'(33.3%),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거 같아서'(22.2%), '업무와 직장생활에서 어려움이나 불이익 등을 받을까 걱정되어서'(19.1%) 순이었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지만, 문제 제기로 인해 불이익을 경험하거나 조직에서 묵인하는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로 참고 넘어간 것으로 나타남.
- (공식적인 대처 이후 기관의 조치) 상급자에게 알리거나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하거나 사내 혹은 외부기구를 이용해 공식적으로 신고한 이후 기관에서 조치를 취했는지 조사한 결과,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응답이 7.4%로, 이는 상급자 보고, 고충상담창구 상담, 내/외부기구를 이용한 공식 신고 등의 대처를 하면 대부분 기관 차원에서의 조치가 이뤄졌음을 의미함.
  - 구체적인 기관의 조치내용(복수응답)으로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공간 분리, 업무변경 등)'(46.3%), '피해자 보호조치(상담, 휴가, 업무/부서 이동 등)'(40.5%), '고충 상담원과의 상담, 고충처리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22.9%),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 실시'(19.7%), '사건처리과정에서의 신상보호 제공'(15.8%) 순이었음.
- (공식적인 대처 이후 기관의 사건처리에 대한 만족도)
  - (사건처리과정 만족도) '만족한다'(약간 만족한다 + 매우 만족한다) 77.0%, '만족하지 않는다' 22.2%(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임.

- (사건처리결과 만족도) ‘만족한다’(약간 만족한다 + 매우 만족한다) 81.4%, ‘만족하지 않는다’ 17.9%(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임.

#### ○ 2차 피해 경험

- (2차 피해 실태) 성희롱 피해 경험에 대해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행동 등으로 인해 또다시 겪게 되는 어려움과 관련해서 14개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 14개 문항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은 20.7%로, 성희롱 피해자의 20% 정도가 2차 피해를 경험함. 공공기관, 여성, 20대 이하와 40대, 정규직, 대학, 30~99인과 100~299인 규모의 민간사업체에서 2차 피해 경험률이 높았음.
- (2차 피해 행위자) ‘나의 상급자’(55.7%), ‘나의 동료’(40.4%) 순이었음.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나의 상급자’(74.4%)가 월등히 많았던 반면, 여성의 경우 ‘나의 동료’(51.9%), ‘나의 상급자’(44.7%), ‘성희롱 행위자’(12.4%) 순으로 2차 피해를 더 경험함.
- (2차 피해에 대한 대처 행동) ‘참고 넘어감’이 57.9%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행위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개인적으로 처리함’(27.5%), ‘고충상담원에게 상담함’(12.4%) 순임.
- (2차 피해의 영향) ‘특별한 영향이 없었다’는 응답이 13.3%로, 2차 피해를 경험한 경우의 약 87% 정도가 2차 피해로 인한 영향이 있었음.
  - 구체적인 영향의 내용(복수응답)은 ‘근로의욕 저하 등 업무 집중도가 떨어짐’(45.6%)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정책, 문화, 동료 등)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음’(31.8%),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음’(26.8%), ‘직장내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생김’(18.1%) 순이었음. 전체적으로 2차 피해로 인해 직장내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지고, 업무 만족도 및 근로의욕 저하, 직장내 대인관계 어려움, 이직 의사 등 직장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남.
- (2차 피해에 대한 기관의 조치) ‘특별한 조치가 없었음’이라는 응답이 52.4%로, 성희롱 2차 피해를 경험한 경우의 절반 정도는 기관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함.

#### ○ 2차 피해 발생 원인

- ‘직장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감수성이나 인식 수준이 낮아서’라는 응답이 28.8%로 가장 많았음. 그다음은 ‘구성원들이 2차 피해/가해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18.5%, ‘2차 피해/가해 방지에 대한 기관의 인식과 의지가 부족해서’ 17.1%, ‘2차 피해/가해에 대한 제재 조치(규정 등)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16.3%, ‘직장 내에서 가해자의 위치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14.6% 순임. 전체적으로 구성원과 기관의 직장 내 성희롱 혹은 2차 피해에 대한 이해, 인식, 의지가 미흡하기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성희롱 목격 경험

- (성희롱 목격 실태) 지난 3년간(2018.8.~2021.7.) 직장에서 타인의 성희롱 피해 경험을 전해 듣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14개 성희롱 피해 유형 중 하나라도 전해 듣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5%였음.
- (성희롱 목격 후 조치방법)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4.1%였음.
  - 조치를 취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복수응답)은,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했다'(23.1%)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피해자가 사내기구나 외부기구에 신고하도록 제안하였음'(7.4%), '성희롱 행위자의 행동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였음'(4.6%) 등이었음.
  -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43.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거 같아서'(19.0%),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봐서'(16.0%), '성희롱인지 정확히 판단하지 못해서'(15.7%) 순이었음.
- (성희롱 목격 경험의 영향) '특별한 영향이 없었음'이라는 응답은 44.7%여서, 이는 10명 중 5~6명은 성희롱을 전해 듣거나 목격한 경험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음을 의미함. 공공기관, 여성, 연령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초/중/고에서 '특별한 영향이 없었음'의 응답이 낮아서 성희롱을 전해 듣거나 목격한 경험으로 인해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영향을 받은 구체적인 내용(복수응답)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정책, 문화 등)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음'(20.5%), '직장동료들에게 실망감을 느낌'(19.0%), '나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음'(17.4%), '직장 만족도가 낮아짐'(14.3%) 순이었음.

○ 2차 피해 목격 경험

- (2차 피해 목격 실태)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조력자, 피해 신고자 포함) 등이 성희롱 사건 처리 및 회복의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 및 손상, 불이익 등 2차 피해에 해당되는 20개 문항 중 하나라도 목격하거나 전해 들은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27.6%가 '있다'고 응답함.
- (2차 피해 목격의 영향) '특별한 영향이 없었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19.2%로, 이는 10명 중 8명은 영향을 받았음을 의미함.
  - 영향을 받은 구체적인 내용(복수응답)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정책, 문화 등)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음'(46.0%), '직장동료들에게 실망감을 느낌'(37.4%), '직장을 떠나고 싶다고 느꼈음'(13.8%), '근로이익 저하 등 업무 집중도가 떨어짐'(13.6%) 순이었음. '피해자 옹호, 성희롱 방지 등을 위한 활동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야겠다고 생각함'이

라는 응답은 18.3%였음.

○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 현황

-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복수응답) ‘개인별 온라인 교육(e-learning 교육)’이 57.8%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대면방식의 집합교육(강사 진행)’ 22.8%, ‘비대면 방식의 쌍방향 실시간 온라인 교육’ 17.5%, ‘강의가 아닌 비디오 시청 등의 시청각 교육’ 10.7% 등이었음.
-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한 본인의 변화) 가장 최근에 받았던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이후 본인이 경험한 변화에 대해 조사하고자 5개 문항을 구성함. 5개 문항 모두에서 ‘그렇다’ (매우 그렇다 + 약간 그렇다)는 85% 이상이었음. ‘직장내 성희롱이 무엇인지(개념, 유형 등) 알게 되었다’ 88.1%, ‘직장 안에서 나의 언행을 조심하게 되었다’ 87.0%, ‘타인의 성희롱 피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85.6%, ‘타인의 피해와 나의 피해의 대처 방법을 알게 되었다’ 87.1%, ‘2차 피해의 개념과 예방 노력 등에 대해 알게 되었다’ 89.1%였음.
- (성희롱 예방교육의 효과) 가장 최근에 받았던 성희롱 예방교육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매우 효과가 있었다’ 26.1%, ‘약간 효과가 있었다’ 58.2%로 ‘효과가 있었다’(매우 효과가 있었다 + 약간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이 84.3%였고,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11.9%,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1.2%였음. 연령대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낮았음.
- (성희롱 예방교육 효과 없다고 생각한 이유) ‘매번 동일한 교육내용 이어서’라는 응답이 40.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교육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아서’ 37.3%, ‘우리 직장에 맞지 않는 교육내용이어서’ 10.0% 순이었음.

○ 성희롱 방지 업무에 대한 인식

- (성희롱 방지 업무에 대한 인지도)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을 기준으로 성희롱 방지 업무 운영 현황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함. 4개 문항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고충상담원, 고충상담창구 등이 지정/운영되고 있다’에 대해 52.8%가 ‘그렇다’고 응답함. ‘온라인을 활용한 상담 및 신고를 받고 있다’는 44.2%, ‘성희롱 예방지침이 있다’는 68.7%, ‘고충상담원, 고충상담창구, 사이버 성희롱 신고센터 등에 대해 안내받은 적이 있다’는 57.6%였음.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는 건 성희롱 예방지침으로 10명 중 7명 정도가 성희롱 예방지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고충상담원, 고충상담창구, 온라인을 활용한 상담 및 신고 등에 대해서는 10명 중 5명 정도가 인지하고 있었음. 고충상담원, 고충상담창구, 온라인 상담 시스템 등은 성희롱



피해를 경험할 경우 일차적으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조직내 공식 채널인데, 이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음.

- (외부 신고창구 이용 및 이용 권유 의사) 본인이나 주변인이 성희롱을 경험할 경우 국가 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 여성가족부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등 외부에 있는 신고창구를 이용하거나 이용을 권유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77.8%가 '있다'고 응답함.
- (직장 내 고충상담창구 이용 및 고충상담원 상담 권유 의사) 본인이나 주변인이 성희롱을 경험할 경우 내부 고충상담창구를 이용하거나 고충상담원에게 상담하도록 권유할 생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75.8%가 '있다'고 응답함.
- (직장 내 사건처리에 대한 기대)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다면 사내 절차를 통해 공정한 사건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73.2%가 '그렇다'고 응답함.
  - 사내 절차를 통해 공정한 사건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복수응답)는, '성희롱 사건 전담기구/전담자의 전문성이 낮기 때문'(27.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그다음은 '사건처리를 위한 규정,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21.3%),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가 준수되거나 조사 등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20.0%), '성희롱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19.4%) 순이었음. 공정한 사건처리에 대한 낮은 신뢰는 전담기구/전담자의 전문성 미흡, 규정과 매뉴얼 부재, 신속한 사건처리 절차 운영 미흡, 성희롱을 문제 시 하지 않는 조직 분위기 등 성희롱 사건처리 역량과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반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음.

○ 정부의 성희롱 방지 대책에 대한 인지도 및 실효성

- (인지도) 정부가 추진해 온 5개의 주요 대책에 대해 인지도를 조사함. '내용을 잘 알고 있다'의 응답을 기준으로 결과를 보면,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는 신고센터 운영' 41.7%,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기관의 공정한 사건처리에 대한 현장점검 및 행정지도 강화' 33.4%,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표준지침 마련 등 제도적 기반 강화' 32.8%, '공공부문의 가해자 제재 및 처벌 강화,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주 책임 강화' 40.3%, '관리자 교육 확대 등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49.0%였음. 전체적으로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50%에 미치지 못함.
- (실효성) 정부의 성희롱 방지를 위한 주요 대책 5개 모두에 대해 '내용을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 정부의 직장내 성희롱 방지대책이 직장내 성희롱 방지에 얼마나 도움되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매우 도움 되었다'는 응답이 58.6%, '약간 도움 되었다'는

응답이 34.5%로 전체적으로 93.1%가 '도움 되었다'고 응답함. 10명 중 9명은 정부 대책이 직장내 성희롱 방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함.

○ 직장내 성희롱 방지 정책 수요 우선순위

-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1순위)은 '피해자 보호'가 32.7%로 가장 많았고 '조직문화 개선'(19.6%),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18.7%), '사업주/기관장 책임 강화'(13.9%) 순이었음.

○ 지난 3년간 직장내 성희롱 관련 변화

- 지난 3년간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13개 문항으로 조사함. '그렇다'(매우 그렇다 + 약간 그렇다)의 응답 결과를 기준으로, 10명 중 6명 정도가 직장내 성희롱 관련 기구가 확대되거나 사건처리 역량이 향상되었다고 봄. 10명 중 7명은 사업주/관리자의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노력과 관심이 증가했고, 피해자 입장에서 성희롱 사건을 바라보고 피해자 비난 등 2차 피해가 줄었으며, 성차별적인 조직문화와 구조에서 성희롱이 발생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고 봄. 10명 중 8명 이상은 개인 의사를 존중하는 회식문화 형성, 성차별적 언행이나 관행의 감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행을 조심하는 조직문화 형성 등의 변화가 있었다고 봄. 또한 조직 구성원들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도가 높아졌고, 직장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고 봄.

○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과 경험

- (일반적인 조직문화) 일·가정양립, 위계문화 등 7개 문항으로 일반적인 조직문화에 대한 생각을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응답자들이 속한 조직의 약 30% 정도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등의 사용이 어렵고, 회식 등 업무시간 외 모임에 참석해야 하고, 사생활에 관해 묻는데 거리낌이 없고, 업무시간 외에 사적인 연락을 자주 주고받는 조직문화를 갖고 있었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큰소리를 내거나 폭언을 자주 있다는 응답은 10% 정도였고, 성희롱이나 성차별 고충을 제기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는 응답은 20% 정도였음. 고충이나 불만을 스스럼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응답은 50% 정도였음.
- (조직내 주요 분야에서의 남성 혹은 여성에게 불리한 정도) 채용/업무배치/승진/보직 및 인사이동/비공식 네트워크/고위직과의 업무 기회 등 6개 항목에 대해 남성 혹은 여성에게 불리한 정도를 조사한 결과,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하다는 응답은 다음과 같음. 채용 기회 74.6%, 핵심 업무에 배치될 기회 73.8%, 승진 기회 68.5%, 유리한 보직 또는 인사이동의 기회 73.3%,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한 중요한 정보 수집 기회 78.9%, 영향력

있는 고위직/관리자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 75.5%. ‘남성에게 불리함’(남성에게 약간 불리함 + 남성에게 매우 불리함)의 응답은 6개 문항에서 남녀 모두 5% 내외로 매우 낮았던 반면, ‘여성에게 불리함’(여성에게 약간 불리함 + 여성에게 매우 불리함)은 대부분 문항에서 남녀 모두 20% 내외로 응답하였고,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불리하다고 보고 있었는데, 승진 기회에서 여성이 불리하다는 여성의 응답이 30%를 상회함.

- 성별 문항별 응답 차이가 나타났는데, 채용 기회에서는 여성(16.3%)보다 남성(20.1%)이 여성에게 불리하다고 보는 비율이 높았음. 그 외 문항들에서는 여성의 ‘여성에게 불리함’ 응답이 남성보다 높았음. 특히 보직 또는 인사이동 기회(남성 17.2%, 여성 26.2%)에서 약 10%p 정도의 차이를 보임.

- (성별에 기반한 부정적인 언행 경험) 지난 3년간 타인으로부터 6개 문항의 성별에 기반한 부정적인 언행에 대한 경험이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 경험이 ‘있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보면, ‘차 심부름, 청소, 짐 나르기 등을 특정 성별에게 주로 시킴’ 14.1%, ‘여성/남성의 역할을 당연시함’ 9.5%, ‘여성다움/남성다움을 강요하거나 비난함’ 7.9%, ‘아줌마, 아가씨, 아저씨 등의 호칭을 들음’ 7.7%, ‘여성/남성을 비하하거나 무시함’ 7.0%로 나타남.

#### ○ 조직문화 특성과 성희롱 피해, 대응

- 공공기관/민간사업체의 조직문화 특성에 따라 구성원의 성희롱 피해 경험 및 발생 시 대응, 성희롱 대응체계에 대한 신뢰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탐색적으로 살펴봄. 집단주의 문화, 위계적 문화, 사생활 침해 문화가 있다고 인식하고, 특정 성별에게 특정 업무를 시키고, 성역할 분리를 당연시하는 경험이 있을수록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임.
- (성희롱 피해(2차 피해 포함) 실태)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음. 특히 위계적 문화가 있는 조직에서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더 많았음. 또한 성희롱 피해 이후 2차 피해의 경험률이 높았고, 위계적 문화가 있는 조직에서 더 높게 나타남.
- (성희롱 피해 당시 목격자의 대처 행동) 목격자가 성희롱 행위자의 행동을 방조 또는 동조했다는 응답이 더 많고 제지했다는 응답은 더 적었음.
- (성희롱 피해 경험 이후 피해자의 대처 행동) 참고 넘어갔다는 응답이 더 많았음. 특히 집단주의 문화가 있는 조직에서 행위자에 사과 요구 등 개인적 처리, 동료에게 알리고 의논하거나 공적 대응체계를 이용하는 등 어떤 유형의 대처도 적었음.
- 참고 넘어간 이유에서는 ‘대처 방법을 잘 몰라서’라는 응답은 적고 ‘성희롱 문제제기에 대한 조직의 묵인이나 부적절한 처리를 우려해서’, ‘비난·따돌림·불이익을 우려해서’

라는 응답이 더 많았음.

- (성희롱 피해 경험의 영향) 특별한 영향이 없었다는 응답은 적고, 업무 집중도 저하, 퇴직 고려 등 직장생활에의 영향이 있었다는 응답이 더 많았음.
- (성희롱 대응체계 이용 의사) 외부 신고창구와 조직 내부의 고충처리절차 모두 이용하거나 이용을 권유할 의사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조직문화 특성은 외부 신고창구보다 조직 내부 고충처리절차 이용 의사와의 관련성이 더 높았음. 조직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공정한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 또한 낮았음. 기대가 낮은 이유에 대해 사건처리 절차나 전문성에 대한 신뢰 문제보다는 조직의 공정한 처리 의지 자체에 대한 불신, 성희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문화 때문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음.

## 나. 업무담당자 조사결과

### ○ 직장내 성희롱 방지 시스템 운영 현황

- 13개 문항으로 직장내 성희롱 방지 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조사함. 각 문항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 결과를 보면,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을 게시하거나 안내하고 있다’(90.8%),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에 관한 자체 규정(지침, 내규 등)이 있다’(85.8%), ‘성희롱 사건처리를 위한 업무매뉴얼이 있다’(81.4%)는 80% 이상이 ‘그렇다’고 응답함. 반면 ‘성희롱 예방, 상담, 사건대응 관련 업무를 위한 별도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42.9%)와 ‘성희롱 피해와 고충 관련 업무를 외부 성희롱 전문기관(전문가)에 위탁/지정하고 있다’(41.1%)는 50%를 밑돌았음.
- ‘가해자 징계,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자체 규정(지침, 내규 등)이 마련되어 있다’(73.2%),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73.5%), ‘성희롱 상담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안내/홍보하고 있다’(73.2%)는 70%대였음.
- ‘성희롱 피해와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고충상담원 혹은 고충상담창구(OO부서, OO노조)가 지정되어 있다’(63.8%), ‘독립적이고 안전한(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상담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61.1%)는 60%대, ‘성희롱 사건조사 및 처리를 위한 위원회가 있다’(59.8%), ‘온라인을 활용한 상담 및 신고를 받고 있다’(57.1%), ‘성희롱 사건조사 및 처리를 위한 위원회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52.0%)는 50%대였음.
- 고충상담창구, 고충상담원의 지정, 독립적이고 안전한 상담공간 마련, 성희롱 사건처리를 위한 위원회 운영, 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참여 등은 성희롱 대응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로서 강조되어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50~60% 수준이어서 성희롱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함. 또한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 간 성희롱 방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의 격차가 커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성희롱 고충상담 현황

- 지난 3년간(2018년 8월~2021년 7월) 성희롱 관련 고충상담 건수를 질문한 결과, 1건도 없었던 비율은 94.6%였고, 1건 이상 있었던 비율은 5.4%였음.
- '1건 이상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 지난 3년간의 고충상담 건수를 보면, 총 11,715건이 있음.
- 고충상담 이후 조치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조사 및 구제 방식을 안내한다'(94.0%), '상담내용에 대해 비밀이 유지될 것임을 안내한다'(94.1%),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방식에 대해 청취한다'(96.8%), '성희롱 발생 인지도 즉각 성희롱 업무 관련 상급자에게 보고한다'(92.0%) 등은 90%를 상회함. 그러나 '상담내용을 기록하여 정리한다'(85.7%)와 '고충상담 접수내용을 정기적으로 사업주/기관장에게 보고한다'(83.9%)는 80%대였음.

○ 성희롱 사건 현황

- 지난 3년간(2018년 8월~2021년 7월)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는지 조사함. 이때, 담당 부서에 접수되어 처리된 사건뿐 아니라 고충상담원, 담당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거나 외부 경로를 통해 인지된 사건 등을 모두 포함함. 1건도 없었던 비율은 95.3%였고, 1건 이상 있었던 비율은 4.7%였음.

○ 성희롱 사건처리 현황

- 사건 발생-조사-심의-인정의 단계에 따른 사건처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성희롱 사건이 1건 이상 발생된 경우에 한해 조사가 진행된 성희롱 사건 수, 성희롱 사건 심의를 위한 위원회가 개최된 사건 수, 위원회를 통해 성희롱으로 인정된 건수를 조사함.
- 지난 3년간 성희롱 발생 건수는 총 7,651건이었음. 담당 부서에 접수되어 처리된 사건 뿐 아니라 고충상담원, 담당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거나 외부 경로를 통해 인지된 사건 등을 모두 포함함. 소속기관 유형별로 공공기관은 4,327건(7,651건 중 56.6%), 민간사업체는 3,324건(7,651건 중 43.4%)이었음.
- 조사가 진행된 성희롱 사건 수는 총 6,028건이었음.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 3,159건(6,028건 중 52.4%), 민간사업체 2,869건(6,028건 중 47.6%)이었음.
- 성희롱 사건 심의를 위한 위원회가 개최된 사건 수는 총 4,407건이었음.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 2,476건(4,407건 중 56.2%), 민간사업체 1,931건(4,407건 중 43.8%)이었음.

- 성희롱 사건 심의 위원회를 통해 성희롱으로 인정된 건수는 총 3,708건이었고, 소속기관 유형별로 공공기관은 2,121건, 민간사업체는 1,587건이었음.

#### ○ 성희롱 사건 조사 현황

- (조사신청~조사종료까지의 소요 시간) 지난 3년(2018년 8월~2021년 7월) 동안 조사가 진행된 사건 수가 1건 이상인 경우, 조사신청(사건신고, 사건접수 등) 후 조사가 개시되기 까지 평균적으로 소요된 기간을 파악한 결과, 7.41일이 소요됨. 조사개시부터 조사종료까지의 평균 소요 기간은 19.05일이었음.
- (성희롱 사건 조사 진행자, 복수응답) ‘고충처리 담당부서’가 55.6%로 가장 많았고, ‘고충상담원’(54.9%), ‘감사실(감사업무 담당자)’(18.8%) 순이었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 하거나(15.4%)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9.7%) 경우도 있었음.
- (성희롱 사건 조사 진행 상황의 피해자 안내 여부) ‘피해자의 요청 여부에 상관없이 알린다’는 응답이 54.6%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알린다’가 44.5%로, ‘알린다’가 거의 대부분이었음.

#### ○ 성희롱 사건 심의 현황

- (성희롱 심의 및 판단을 위한 위원회 명칭) ‘고충심의위원회/성희롱심의위원회’가 64.4%로 가장 많았고, ‘인사위원회’ 14.3%, ‘징계위원회’ 14.0% 순이었음. 공공기관의 경우 88.2%가 ‘고충심의위원회/성희롱심의위원회’였고, 민간사업체의 경우 ‘고충심의위원회/성희롱심의위원회’ 44.8%, ‘인사위원회’ 25.7%, ‘징계위원회’ 23.0% 순이었음.
- (성희롱 심의 및 판단을 위한 위원회 구성원, 복수응답) ‘임원 및 관리자급’(73.2%), ‘성희롱 관련 외부 전문가’(55.8%), ‘사업주/기관장’(37.4%), ‘인사부서 담당자’(29.6%), ‘감사부서 담당자’(18.6%) 순이었음. 공공기관에서는 ‘성희롱 관련 외부 전문가’(84.2%), ‘임원 및 관리자급’(78.6%) 순이었고, 민간사업체는 ‘임원 및 관리자급’(68.7%)이 월등히 많았음.
- (성희롱 심의 및 판단, 행위자 징계 시 피해자 의견 청취 및 확인 여부) 성희롱 심의 및 행위자 징계 결정 등의 절차에서 사전청취 결과보고, 서면제출, 출석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확인했는지를 질문함. ‘그렇다’(매우 그렇다 + 약간 그렇다)의 응답 결과를 기준으로 성희롱 심의 판단할 때는 97.1%였고, 성희롱 행위자 징계 결정 할 때는 96.3%였음.

#### ○ 행위자 및 피해자에 대한 조치 현황

- (행위자에 대한 조치 내용, 복수응답) 성희롱 사건 행위자에 대한 조치 건수는 총

10,657건이었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재발방지교육’이 2,513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인사조치(배치전환)’ 1,725건(16.2%), ‘당사자 합의로 종료’ 1,545건(14.5%), ‘중징계(정직, 해고 등)’ 1,493건(14.0%), ‘주의 경고’ 1,292건(12.1%), ‘경징계(견책, 감봉 등)’ 862건(8.1%) 순임. 전체적으로 재발방지교육, 인사조치 등의 비중이 높았고 경징계보다는 중징계가 더 많았음.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내용, 복수응답)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건수는 총 6,818건이었음. 기타 응답이 22.8%로 나타나 실제 현장에서는 보다 다양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여기에서는 기재시된 응답 보기를 중심으로 살펴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많이 이뤄진 조치는 ‘근무장소 변경’(1,855건, 27.2%)이었고, 그다음은 ‘의료, 상담지원’ 1,310건(19.2%), ‘배치전환’ 1,266건(18.6%), ‘유급휴가’ 829건(12.2%) 순이었음.

#### ○ 성희롱 재발방지대책 수립 현황

- (수립 여부) 지난 3년(2018년 8월~2021년 7월) 동안 1건 이상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는지 조사한 결과,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76.3%였음.
- (대책 내용, 복수응답)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76.8%)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교육’(59.2%), ‘2차 피해방지 모니터링’(37.2%),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규정 정비’(31.1%),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가이드 마련 및 캠페인 실시’(25.1%) 등이었음.
- (공공기관만, 여성가족부 제출 여부)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에 제출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7.8%였음.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60.6%로 가장 높았고, 국가기관 42.4%, 초/중/고 36.7%, 대학 23.8%였음.

#### ○ 2차 피해 대응 현황

- 업무담당자가 2차 피해를 전해 듣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기관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질문한 결과,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27.7%였음. 기관에서 대처한 내용(복수응답)은 ‘2차 피해 행위에 대한 조사 실시’(27.4%)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2차 피해에 대한 전직원교육 실시’(25.9%), ‘2차 피해 실태 파악’(25.1%), ‘2차 피해 행위자에 대한 분리 조치’(23.8%) 순이었음.
- 성희롱 사건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매뉴얼, 규정 등이 마련되었거나 마련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54.1%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절반 수준이었음. 소속기관 유형별로 공공기관은 73.1%, 민간사업체는

50.6%였음.

○ 성희롱 예방교육 운영 현황

-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 지난 한 해(2020.1.1.~2020.12.31.) 동안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는지 질문한 결과, 92.3%가 '1회 이상 실시했다'고 응답함.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해서'라는 응답이 71.5%였음.
- (성희롱 예방교육방법, 복수응답) 교육 시간을 따로 지정해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한 경우, '개인별 온라인 교육'이 56.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대면방식의 집합교육(강사 진행)'(30.2%), '강의가 아닌, 비디오 시청 등의 시청각 교육'(15.4%), '비대면 방식의 쌍방향 실시간 온라인 교육'(13.4%) 순이었음.
- (성희롱 예방교육 시 직급 구분 여부) 지난 1년간(2020.1.1.~2020.12.31.) 성희롱 예방교육을 사업주/기관장, 관리자(임원 등), 직원 등으로 구분/분리해서 진행했는지 질문한 결과, 35.4%가 '그렇다'고 응답함.
- (기관장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 현황) 지난 1년간(2020.1.1.~2020.12.31.) 실시한 성희롱 예방교육에 사업주/기관장이 참여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88.0%가 참여하였다고 응답함.
- (기관장/사업주의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지) 사업주/기관장이 성희롱 예방교육 운영에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87.2%가 '그렇다'고 응답함. 반면 사업주/기관장이 전직원 혹은 업무담당자에게 성희롱 방지를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 운영 강화 등에 대해 직접 지시하거나 언급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63.2%가 '그렇다'고 응답함. 사업주/기관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87.2%가 '그렇다'고 응답한 결과 대비 24.0%p 낮았음.
- (직원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 현황) 지난 한 해(2020.1.1.~2020.12.31.) 동안 진행된 성희롱 예방교육의 직원 참여율은 94.2%임.

○ 성희롱 업무 수행상 어려움

- (성희롱 업무담당자로서의 어려움) 성희롱 업무담당자로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10개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보면, 가장 많이 '그렇다'고 응답한 어려움은 '다른 업무와 병행함에 따른 업무 과다'(48.1%)였음. 그다음은 '민감한 업무에 대한 부담감'(42.4%), '순환 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39.8%), '성희롱 전담기구의 낮은 영향력'(32.3%), '업무처리를 위한 규정, 매뉴얼 미흡'(32.2%) 순이었음. 고용불안정, 업무담당자의 불이익 등도 어려움이었지만, 순환배치, 비전담 등으로 인해 성희롱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구조적인 요인과 이로 인한 전문성 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됨. 그리고 민감한 업무에 따른 부담감, 낮은 영향력,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과 매뉴얼 등 실무적인 차원의 어려움이 더 컸음.

- (성희롱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어려움) 성희롱 사건처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14개 문항으로 질문한 결과,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기준으로 보면, '조사 등 사건처리 경험과 전문성 부족'(40.5%)이 가장 컸음. 그다음은 '성희롱 사건처리 관련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매뉴얼 부재'(28.4%), '2차 피해/가해 발생시 대처역량 부족'(25.9%), '형식적인 관련 규정 및 절차'(25.6%)와 '피해자 지원과정에서의 감정적 소진'(25.6%), '고충상담시 비밀 유지, 2차 가해(피해) 등에 대한 부담감'(25.1%), '피해자에 대한 보호(업무 및 공간 분리, 신변 보호 등)의 어려움'(24.6%) 순이었음. 조사 등 사건처리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 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었지만, 전반적으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와 관련된 어려움의 비중이 컸음.

#### ○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 인지도 및 실효성

- (인지도)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5개의 주요 대책에 대해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내용을 잘 알고 있다'의 응답을 기준으로 보면,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는 신고센터 운영' 55.0%,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기관의 공정한 사건처리에 대한 현장점검 및 행정지도 강화' 58.4%,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표준지침 마련 등 제도적 기반 강화' 52.7%, '공공부문의 가해자 제재 및 처벌 강화,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주 책임 강화' 60.4%, '관리자 교육 확대 등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69.4% 등이었음. 사업주의 책임 강화와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에 대한 인지도가 60%를 상회하여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전체적으로 50%를 상회하는 정도여서, 성희롱 업무담당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다소 인지도가 낮다고 볼 수 있음.
- (실효성) 주요 대책 5개 모두에 대해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정부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대책이 직장 내 성희롱 방지에 얼마나 도움 되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95.7%가 '도움 되었다'(매우 도움이 되었다 + 약간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정부 대책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업무담당자 10명 중 9명은 정부 대책이 직장 내 성희롱 방지에 기여했다고 평가함.

#### ○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 수요

-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 수요, 1순위)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1순위)은 '피해자 보호'가 33.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조직문화 개선'(21.8%),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18.2%), '사업주/기관장 책임 강화'(12.4%) 순이었음.

### 3. 정책적 시사점

- 주변인/목격자 교육 등 공동체적 대응을 위한 개인과 조직의 변화 추동
  - 성희롱 피해 당사자의 조치가 적극적이지 못한 상황이므로 성희롱 상황에서 목격자로서 주변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옹호하고 행위자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 이러한 이유로 그간 예방교육에서 주변인/목격자 모델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이 당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개입하느냐가 상황 변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임.
  - 그러나 현행 법령상에 성희롱 피해의 주변인 혹은 목격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주변인 혹은 목격자가 성희롱 피해 당시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개입하도록 해야 한다는 중요성과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것에 비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교육에 포함해 운영하기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주변인/목격자로서의 역할, 행동기술 등을 학습하는 목격자/주변인 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에 목격자/주변인으로서의 대응 행동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이렇게 조직구성원의 목격자로서의 개입 혹은 대처역량을 갖추는 것과 함께 이를 지지하고 독려하는 조직문화 혹은 조직 분위기가 함께 조성되어야 함. 본 조사에서는 조직문화의 특성이 목격자들의 대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함. 본인이 속한 조직이 집단주의, 위계적 문화 등이 강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목격자가 성희롱 행위자의 행동을 방조 또는 동조했다는 응답이 더 많고 제지했다는 응답은 더 적었음. 이는 조직문화가 성희롱 발생 시 구성원의 적극적 대처를 억제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따라서 교육을 통한 주변인으로서의 역할이나 인식을 갖는 것뿐 아니라 주변인/목격자들의 역할에 대해 적극적이고 수용적인 조직문화가 형성되는 것이 필요함.
- 피해자 보호 및 피해자 대응 역량 강화
  - 피해자 보호는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조사되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는 '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하는 것으로 파악됨. 직장 안에서 행위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간 분리, 접근금지 등의 행위자로부터 피해자를 분리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인데, 수요는 크지만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약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임. 업무담당자 조사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업무 분리, 공간 분리, 신변 보호 등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그렇기 때문에 개별 기관이나 사업체, 고충상담원의 여건과 역량에만 피해자 보호를

맡겨두기보다는, 업무 분리, 공간 분리, 신변 보호, 업무배치 전환 등을 보다 효과적 혹은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이와 더불어 피해자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상담이나 의료 등 지원도 필요한데, 이는 조직 내 고충상담원을 통해 제공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외부기관을 활용하여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 자원 연계 등을 위한 정책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본 조사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4명이 피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대처 행동을 한다는 점은 미투를 계기로, 그간의 성희롱 예방교육의 결과로 인한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음. 여성의 경우 주로 상급자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가 보다 더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피해자 대응 역량을 키워주고 피해자의 이러한 행동을 지지하는 것이 필요함.

#### ○ 2차 피해에 대한 적극적 대처 강화

- 미투와 일련의 직장내 성희롱 사건 등을 통해 2차 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감수성이 높아지고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법과 제도적 조치가 강화되었지만, 성희롱 피해자들은 조직안에서 성희롱 피해 상황에 대한 지지와 공감을 받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압박,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불이익, 평판 등 조직생활 전반에서 2차 피해를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함. 조직안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본 조사에서 2차 피해 발생 원인으로 구성원과 기관의 직장내 성희롱 혹은 2차 피해에 대한 이해, 인식, 의지가 미흡한 점이 지적되었고, 2차 피해는 상급자, 동료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었음. 따라서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2차 피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2차 피해에 어떻게 대처하고 조력해야 하는지 등을 학습하는 것이 필요함.
- 한편, 공공기관의 경우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로 성희롱 피해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조직 내부 혹은 외부기구를 통해 성희롱 피해 이후 불이익을 경험한 비율도 높았고, 사건처리에 있어서 사건축소, 은폐 등 공정한 사건처리에 대한 의지 부족 등 2차 피해와 관련된 내용이 제기됨. 공공기관은 성희롱 방지 관련 시스템과 인프라가 상당 부분 갖춰졌는데, 운영상에 있어서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 비대면 교육 증가 등 변화에 대응하는 성희롱 예방교육 운영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은 과거 대면 방식의 집합교육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확인함. 코로나19로 인한 대처의 일환으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교육을 시작했으나, 이후에도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교육

수요는 유지 혹은 확대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대면방식의 집합교육과 같은 교육 효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개인별로 e-learning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보다는 비대면 방식이 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실시한 온라인 교육을 보다 활성화해야 함.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비 등은 비대면 방식의 활용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므로 인프라의 차이가 교육 효과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비대면 교육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
-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주된 이유는 교육내용이 동일하다는 점, 교육 방법의 효과성이 낮다는 점 등이었음. 최근 들어 분야, 직급 등을 고려한 소규모 토론회, 맞춤형 교육 등이 강조되고 교육콘텐츠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는데, 예방교육의 피로도를 줄이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방법의 다양화, 교육내용 혹은 교육콘텐츠의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함.

#### ○ 성희롱 상담 및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과 이용 활성화

- 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희롱 상담 및 사건처리 시스템에 대한 이용도, 인지도, 기대감 모두 낮았음. 미투 이후 성희롱 피해 사실을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조직 내부에 혹은 조직 외부에 상담 혹은 신고체계를 구축·확대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성희롱 방지 시스템이 충분치 않고, 역량과 전문성이 미흡하고,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부족한 시스템을 더 갖추고,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더 많이 알리고, 사건처리가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먼저 성희롱 방지 시스템을 강화해야 함. 특히 민간사업체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 또한 성희롱 방지 관련 시스템과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과 인지도가 제고되어야 함. 이때 성희롱 상담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한데, 상담은 성희롱 방지 시스템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사건처리까지 진행하지 않더라도 성희롱 피해에 대한 상담 혹은 정보 제공 요청 등은 활성화되어야 함. 비밀 유지, 신변 보장 등이 가능하도록 고충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상담체계도 구축해야 함. 민간사업체, 연령이 낮은 수목, 비정규직, 종사자 규모가 작은 사업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성희롱 업무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는데, 이를 고려한 안내 전략, 안내 방법 등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 한편 조직내 성희롱 방지 시스템을 갖추도록 함과 동시에 종사자 규모가 작은 민간사업체처럼 조직내 자체적인 성희롱 방지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외부에 성희롱 방지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알리는 것과 함께 전문성도 제고해야 함. 고충상담과 사건 처리는 각각의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 등이 상이한데 둘 다를 수행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를 위한 교육훈련이 마련되어야 함.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제고뿐 아니라 순환배치, 다른 업무와의 병행 등의 업무 여건 등의 개선을 위한 방안도 검토되어야 함. 더불어 사건처리 매뉴얼 마련, 컨설팅 등 실무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함.

○ 성희롱 사건처리 절차 운영의 내실화

- 성희롱 사건처리와 관련해 신고-조사-징계 등 신속한 사건처리 절차 운영에 대한 정책 수요가 많았음.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보다도 수요가 컸는데, 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신청~조사개시까지의 시간은 7.41일, 조사시작~조사종료까지의 시간은 19.05일이었음. 전체적으로 조사신청에서 조사종료까지 소요되는 평균 소요 시간이 총 26.46일로, 일반직원의 정책 수요에서 신고-조사-징계 등 신속한 사건처리에 대한 수요가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사건처리 절차운영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필요함.
- 성희롱 사안을 논의 및 심의하는 위원회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경우 90% 가까이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별도 설치하여 운영하는데 반해 민간사업체는 40% 수준에 그침. 위원회 구성에서도 공공기관의 경우 외부전문가 참여가 80%를 상회하는데 반해 민간사업체는 임원 등의 참여 비율이 높았음. 성희롱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와 판단이 이뤄지기 위해 민간사업체의 경우 성희롱 사건을 심의하는 별도 위원회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위원회 구성에 성희롱 관련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강화

-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성희롱 발생을 인지할 경우 여성가족부에 알리고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에 대한 책무가 강화됨. 지난 3년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 비율은 76.3%였고, 공공기관의 경우 여성가족부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한 비율은 37.8%였음. 공공부문의 경우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보다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제출을 통해 해당 기관의 성희롱 재발방지 효과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이 재발방지대책을 잘 수립하고 계획대로 이행하는지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궁극적으로 성희롱 방지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성불평등한 구조와 문화를 바꿔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혹은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재발방지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환류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도입한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직진단 사업을 통해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의 내실화를 위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함.

○ 성희롱 방지를 위한 성평등한 조직문화 개선

- 2018년 미투운동과 권력형 성희롱 사건 이후 성희롱 방지에 있어서 성평등 조직문화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고, 이를 위해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직진단 사업(여성가족부 시행)이 제도화되었고, 같은 해 6월에는 양성평등조직혁신 추진단이 출범하여 지자체를 시작으로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지원 사업을 공공부문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
- 본 조사에서 조직문화 특성과 구성원의 성희롱 피해 및 대응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고, 향후 성희롱 근절 및 예방정책의 한 축으로서 조직문화 개선 과제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실증함. 조직문화 특성은 조직이 성희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진지하게 수용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낮추는 것과 관련성이 높게 나타남. 따라서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은 조직의 성희롱 대응체계에 대한 신뢰 구축의 기반을 만드는 조치일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 성별 업무 분리 및 성역할 분리 관행이 일반적 조직문화 특성에 비해 성희롱 피해 발생과 관련성이 더 높았음. 성별 고정관념에 따라 행해지는 업무분장 관행 개선 노력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중요한 전제일 수 있어서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사업(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진단 사업(한국여성인권진흥원 위탁) 등에서 조직의 성별 분리 관행을 적절히 진단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것이 강조되어야 함.
- 성희롱 피해 발생 및 대처에 구성원을 성별로 구분하고 역할을 분리하는 문화뿐 아니라, 젠더 이슈와 직접적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일반적인 조직문화 - 민주성과 자율성, 수평적 관계, 사생활 존중 문화 등 - 또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한바,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정책은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4. 후속 조사를 위한 제안

○ 조사 방법 개선

- 현행 조사설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조사 규모 확대가 필요함. ‘지난 3년간 성희롱 유형별 피해율’을 기준으로 상대

표준오차를 분석했을 때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최소 기준 25%를 초과한 유형이 5개였음. 상대표준오차 25% 이내를 만족하는 표본크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2021년 유효 표본크기인 15,073명 대비 최소 5,001명, 최대 16,251명의 표본크기를 증대해야 함. 또한 소규모 사업체로의 확장을 위해서도 표본크기는 증대되어야 함. 성희롱 실태조사에 대한 품질진단결과에서 10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 바 있는데, 소규모 사업체(10인 이상 사업체)의 구성원 선정을 고려한 표본설계를 고려한다면 사업체 규모를 현행 조사에서 최소 1.2~1.5배의 표본 증대가 필요함. 즉, 최소 150~200개 사업체를 추가 조사해야 10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하여 조사 가능함.

- 둘째, 예산 확대가 필요함. 표본크기의 증대는 조사 예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현행 조사의 통계품질 제고만을 고려한 표본크기 증대의 경우 현재 예산의 약 1.3~2.1배의 예산 증대가 필요하고, 소규모 사업체로 확대만을 고려할 경우도 최소 1.2배의 예산 증가가 필요함. 더불어 두 문제점을 모두 개선하고자 한다면 현행 예산에서 약 1.5~2.3배를 더 확보해야 함.
- 셋째, 확률표본추출에 기반을 둔 조사대상자 선정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협력을 끌어낼 필요가 있음. 조사 단위인 사업체 근로자를 추출하는 데 있어 현재의 조사환경 상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사업체 내 근로자 명부를 확보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고용노동부의 협조 또는 협업을 통해 소속기관인 지방청과 지청, 사무소 등과 함께 조사 대상 사업체의 근로자 명부 제출이 필수적임. 이를 위한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은 매우 중요함.
- 넷째, 공공기관 웹 조사를 위한 여성가족부 내부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여성가족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무담당자 및 부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면, 효율적인 조사 진행과 응답률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2024년 실태조사 전에는 여성가족부의 내부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 현행 조사설계의 한계에 대해 사전 연구를 통해 사업체 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특수 고용직 노동자와 비취업자, 사업체 규모 확대를 위한 표본설계와 방법론 개선방안, 안정적 실사를 위한 부처 간 협조체계 구축 방안 등을 검토하여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필요함.

#### ○ 조사내용 개선

- 성희롱 방지와 조직문화, 조직특성 등과의 심층 분석을 위한 보완이 필요함. 2021년에 보완된 직장 내 조직문화 관련 문항이 성평등 조직문화 수준을 파악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보다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며, 나아가 조직문화뿐 아니라 기관/사업체의

성평등 수준 및 성별 격차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 문항도 추가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다음 조사 시점까지 질적 연구,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사업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성희롱 발생 및 구성원의 대응 행동 결정과 관련성이 높은 조직적 요인들을 발굴하여 이를 토대로 조사 문항을 개선해야 함.

- 민간사업체와 공공기관을 동일하게 조사하고 있는 조사 문항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즉, 본 조사가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법정 조사로 성희롱 실태와 양상을 파악하는 기초자료이자 동시에 성희롱 방지를 위한 법·제도·정책추진을 위한 참고자료로도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민간사업체와 공공기관 각각의 특성과 맥락 속에서 성희롱 피해 발생, 대응, 정책이행 및 정책의 실효성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연구가 이뤄져야 함. 조사 문항의 구성 방향과 구조를 설정하고, 기존 문항을 일부 활용·보완하기도 하겠지만 신규 문항을 추가 개발하고 개발된 문항의 타당성, 적절성 등을 검토하는 데는 충분한 과정과 시간이 필요함.





# 목 차

|                                  |    |
|----------------------------------|----|
| I. 서론                            | 1  |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3  |
| 2. 연구내용 및 방법                     | 4  |
| 가. 연구내용                          | 4  |
| 나. 연구방법                          | 5  |
| II. 조사설계                         | 7  |
| 1. 조사개요                          | 9  |
| 가. 2018년과 2021년 비교: 주요변경 사항 중심으로 | 9  |
| 나. 조사내용                          | 11 |
| 다. 조사방법                          | 16 |
| 2. 표본설계                          | 18 |
| 가. 모집단 정의                        | 18 |
| 나. 표본크기                          | 21 |
| 다. 층화 및 표본 배분                    | 22 |
| 라. 표본추출                          | 24 |
| 3. 모수추정                          | 25 |
| 가. 가중치 작성                        | 25 |
| 나. 추정 방법                         | 27 |
| 4. 무응답 분석                        | 29 |
| 가. 응답률 산정 방법                     | 29 |
| 나. 응답률 분석                        | 32 |
| 5. 오차분석                          | 34 |
| 가. 오차분석 방법                       | 34 |
| 나. 주요 통계표에 대한 오차분석 결과            | 35 |

|                              |     |
|------------------------------|-----|
| <b>Ⅲ. 조사결과</b>               | 41  |
| 1. 조사대상자 특성                  | 43  |
| 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43  |
| 2. 일반직원 조사결과                 | 46  |
| 가. 성희롱 피해 경험                 | 46  |
| 나. 2차 피해 경험                  | 79  |
| 다. 성희롱 목격 경험                 | 93  |
| 라.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 경험            | 115 |
| 마. 직장내 성희롱 방지 업무에 대한 인식      | 128 |
| 바. 성희롱 방지 대책에 대한 인지도와 정책 수요  | 141 |
| 사.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과 경험           | 161 |
| 아. 조직문화와 성희롱 피해 및 대응         | 167 |
| 3. 업무담당자 조사결과                | 195 |
| 가. 성희롱 방지 업무 기반 현황           | 195 |
| 나. 성희롱 고충 상담 현황              | 202 |
| 다. 성희롱 사건처리 현황               | 205 |
| 라. 행위자 및 피해자에 대한 조치 현황       | 217 |
| 마.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 수립 현황         | 223 |
| 바. 2차 피해 대응 현황               | 226 |
| 사. 성희롱 예방교육 운영 현황            | 230 |
| 아. 성희롱 업무 수행상 어려움            | 246 |
| 자. 성희롱 방지 대책에 대한 인지도 및 정책 수요 | 254 |
| <b>Ⅳ. 요약 및 시사점</b>           | 269 |
| 1. 주요 결과 요약                  | 271 |
| 가. 일반직원 조사결과                 | 271 |
| 나. 업무담당자 조사결과                | 303 |
| 2. 시사점                       | 320 |
| 가. 정책적 시사점                   | 320 |
| 나. 후속 조사를 위한 제안              | 332 |

|                                   |     |
|-----------------------------------|-----|
| ■ 참고문헌 .....                      | 339 |
| ■ 부    록 .....                    | 341 |
| 〈부록 1〉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조사표 ..... | 343 |
| 〈부록 2〉 2018년, 2021년 조사항목 비교 ..... | 380 |

## 표 목 차

|                                                        |    |
|--------------------------------------------------------|----|
| 〈표 II-1〉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설계 개요 .....                    | 9  |
| 〈표 II-2〉 2018년 대비 조사설계 변경내용 .....                      | 11 |
| 〈표 II-3〉 조사문항(일반직원용) .....                             | 12 |
| 〈표 II-4〉 조사문항(업무담당자용) .....                            | 13 |
| 〈표 II-5〉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조사문항의 주요 변경내용 .....            | 14 |
| 〈표 II-6〉 사업체 규모별 사업체 및 근로자 현황 .....                    | 19 |
| 〈표 II-7〉 산업 대분류별 사업체 및 근로자 현황 .....                    | 20 |
| 〈표 II-8〉 공공기관의 유형별 기관과 상시근로자 현황 .....                  | 21 |
| 〈표 II-9〉 사업체 규모별 조사근로자 수 .....                         | 21 |
| 〈표 II-10〉 공공기관 규모별 조사근로자 수 .....                       | 22 |
| 〈표 II-11〉 층화 변수 .....                                  | 23 |
| 〈표 II-12〉 민간사업체: 층별 표본 배분 결과 .....                     | 23 |
| 〈표 II-13〉 공공기관: 층별 표본 배분 결과 .....                      | 24 |
| 〈표 II-14〉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체의 성희롱 업무담당자/일반직원 조사대상자 할당 ...    | 25 |
| 〈표 II-15〉 조사 결과에 대한 사업체와 공공기관명부 .....                  | 30 |
| 〈표 II-16〉 응답률, 접촉률, 협조율, 거부율 결과 .....                  | 33 |
| 〈표 II-17〉 민간사업체의 방문 횟수 및 규모별 응답률, 접촉률, 협조율, 거부율 결과 ... | 34 |
| 〈표 II-18〉 지난 3년간 성희롱 사건 처리 현황(합계) .....                | 36 |
| 〈표 II-19〉 지난 3년간 성희롱 유형별 피해율의 상대표준오차 .....             | 37 |
| 〈표 II-20〉 공공기관 유형별 지난 3년간 성희롱 유형별 피해율의 상대표준오차 .....    | 38 |
| 〈표 II-21〉 민간사업체 규모별 지난 3년간 성희롱 유형별 피해율의 상대표준오차 .....   | 39 |
| 〈표 II-22〉 지난 3년간 성희롱 유형별 2차 피해율 .....                  | 40 |
| 〈표 III-1〉 일반직원 응답분포 .....                              | 43 |
| 〈표 III-2〉 업무담당자 응답분포 .....                             | 45 |
| 〈표 III-3〉 성희롱 피해 경험 여부 .....                           | 47 |
| 〈표 III-4〉 성희롱 유형별 피해 경험 .....                          | 50 |
| 〈표 III-5〉 성희롱 피해 경험률 비교(2021년과 2018년) .....            | 54 |

|                                                              |     |
|--------------------------------------------------------------|-----|
| 〈표 III-6〉 성희롱 피해유형별 경험률 비교(2021년과 2018년, 2021년 14개 기준으로) ... | 55  |
| 〈표 III-7〉 성희롱 행위자와의 관계 .....                                 | 57  |
| 〈표 III-8〉 성희롱 행위자 성별 .....                                   | 58  |
| 〈표 III-9〉 성희롱 발생 장소 .....                                    | 60  |
| 〈표 III-10〉 성희롱 행위 반복/지속 여부 .....                             | 62  |
| 〈표 III-11〉 성희롱 피해 당시의 행동 .....                               | 64  |
| 〈표 III-12〉 성희롱 피해 당시의 목격자 유무 .....                           | 66  |
| 〈표 III-13〉 성희롱 피해 당시의 목격자 행동(복수응답) .....                     | 67  |
| 〈표 III-14〉 성희롱 피해 경험의 영향(복수응답) .....                         | 69  |
| 〈표 III-15〉 성희롱 피해 이후 대처 행동 .....                             | 71  |
| 〈표 III-16〉 참고 넘어간 이유(복수응답) .....                             | 73  |
| 〈표 III-17〉 공식적인 대처 이후 기관의 조치 내용(복수응답) .....                  | 76  |
| 〈표 III-18〉 기관의 사건처리과정에 대한 만족도 .....                          | 77  |
| 〈표 III-19〉 기관의 사건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                          | 77  |
| 〈표 III-20〉 공식적인 대처 이후 기관으로부터의 불이익 경험 .....                   | 78  |
| 〈표 III-21〉 2차 피해 경험 여부 .....                                 | 81  |
| 〈표 III-22〉 2차 피해 유형별 경험 .....                                | 82  |
| 〈표 III-23〉 2차 피해 행위자(복수응답) .....                             | 86  |
| 〈표 III-24〉 2차 피해에 대한 대처 행동(복수응답) .....                       | 88  |
| 〈표 III-25〉 2차 피해의 영향(복수응답) .....                             | 90  |
| 〈표 III-26〉 2차 피해에 대한 기관의 조치(복수응답) .....                      | 92  |
| 〈표 III-27〉 성희롱 목격 경험 여부 .....                                | 94  |
| 〈표 III-28〉 성희롱 유형별 목격 경험속 .....                              | 95  |
| 〈표 III-29〉 성희롱 목격 후 조치 방법(복수응답) .....                        | 98  |
| 〈표 III-30〉 조치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                            | 100 |
| 〈표 III-31〉 성희롱 목격 경험의 영향(복수응답) .....                         | 103 |
| 〈표 III-32〉 2차 피해 목격 경험 여부 .....                              | 105 |
| 〈표 III-33〉 2차 피해 유형별 목격 경험 .....                             | 106 |
| 〈표 III-34〉 2차 피해 목격 경험의 영향(복수응답) .....                       | 111 |
| 〈표 III-35〉 2차 피해의 발생 원인 .....                                | 114 |
| 〈표 III-36〉 지난 1년간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 여부 .....                       | 116 |

|                                                               |     |
|---------------------------------------------------------------|-----|
| 〈표 III-37〉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방식 .....                                | 118 |
| 〈표 III-38〉 (교육시간을 따로 지정한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복수응답) .....          | 120 |
| 〈표 III-39〉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 태도 .....                               | 122 |
| 〈표 III-40〉 성희롱 예방교육 이후 본인이 경험한 변화 .....                       | 124 |
| 〈표 III-41〉 성희롱 예방교육의 효과 .....                                 | 126 |
| 〈표 III-42〉 성희롱 예방교육의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한 이유 .....                    | 127 |
| 〈표 III-43〉 사업주/기관장의 직장내 성희롱 방지 위한 적극적 노력 여부 .....             | 129 |
| 〈표 III-44〉 사업주/기관장의 직장내 성희롱 방지 위한 책무/이행에 대한 직접 언급<br>여부 ..... | 130 |
| 〈표 III-45〉 성희롱 방지 업무 운영에 대한 인지도 .....                         | 132 |
| 〈표 III-46〉 외부 신고창구 이용 및 이용 권유 여부 .....                        | 134 |
| 〈표 III-47〉 직장 내 고충전담창구 이용 및 고충상담원 상담 권유 여부 .....              | 136 |
| 〈표 III-48〉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대한 기대 .....                   | 139 |
| 〈표 III-49〉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 .....        | 140 |
| 〈표 III-50〉 정부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대책 인지 여부 .....                      | 142 |
| 〈표 III-51〉 정부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대책의 실효성 .....                       | 144 |
| 〈표 III-52〉 지난 3년간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변화 .....                        | 147 |
| 〈표 III-53〉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1순위) .....                  | 150 |
| 〈표 III-54〉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1순위) .....                      | 152 |
| 〈표 III-55〉 성희롱 피해 신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1순위) .....                | 154 |
| 〈표 III-56〉 성희롱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정책(1순위) .....               | 156 |
| 〈표 III-57〉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1순위) .....                     | 158 |
| 〈표 III-58〉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1순위) .....                   | 160 |
| 〈표 III-59〉 직장 내 조직문화(1) .....                                 | 162 |
| 〈표 III-60〉 직장 내 조직문화(2) .....                                 | 164 |
| 〈표 III-61〉 성별에 기반한 부정적인 언행 경험 여부 .....                        | 166 |
| 〈표 III-62〉 응답자 특성별 조직문화 인식 .....                              | 170 |
| 〈표 III-63〉 조직문화 특성에 따른 성희롱 피해 경험 여부 .....                     | 172 |
| 〈표 III-64〉 조직문화 특성에 따른 2차 피해 경험 여부 .....                      | 174 |
| 〈표 III-65〉 조직문화 특성에 따른 성희롱 피해 당시 행동 .....                     | 176 |
| 〈표 III-66〉 조직문화 특성에 따른 성희롱 발생 당시 목격자 행동(복수응답) .....           | 178 |

|                                                                    |     |
|--------------------------------------------------------------------|-----|
| 〈표 III-67〉 조직문화 특성에 따른 성희롱 피해 대처 유형 .....                          | 180 |
| 〈표 III-68〉 조직문화 특성에 따른 참고 넘어간 이유(복수응답) .....                       | 182 |
| 〈표 III-69〉 조직문화 특성에 따른 성희롱 피해 경험으로 인한 영향(복수응답) .....               | 184 |
| 〈표 III-70〉 조직문화 특성에 따른 기관장/사업주의 성희롱 방지 노력 여부 .....                 | 186 |
| 〈표 III-71〉 조직문화 특성에 따른 외부 신고창구 이용 및 이용 권유 의사 여부 .....              | 188 |
| 〈표 III-72〉 조직문화 특성에 따른 직장 내 고충상담창구 이용 및 고충상담원 상담 권유<br>의사 여부 ..... | 190 |
| 〈표 III-73〉 조직문화 특성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대한 기대 ...              | 192 |
| 〈표 III-74〉 조직문화 특성에 따른 공정한 처리 기대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 .....               | 194 |
| 〈표 III-75〉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시스템 구축 현황 .....                             | 197 |
| 〈표 III-76〉 사업주/기관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위한 적극적 노력 여부 .....                 | 200 |
| 〈표 III-77〉 사업주/기관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위한 책무 언급 여부 .....                  | 201 |
| 〈표 III-78〉 지난 3년간 성희롱 고충상담 현황 .....                                | 203 |
| 〈표 III-79〉 지난 3년간 성희롱 고충상담 시 조치 .....                              | 204 |
| 〈표 III-80〉 지난 3년간 성희롱 사건 발생 현황 .....                               | 205 |
| 〈표 III-81〉 지난 3년간 성희롱 사건 처리 현황 .....                               | 207 |
| 〈표 III-82〉 조사신청 후 조사종료까지의 소요 시간 .....                              | 208 |
| 〈표 III-83〉 조사 진행자(복수응답) .....                                      | 209 |
| 〈표 III-84〉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한 피해자 안내 여부 .....                            | 211 |
| 〈표 III-85〉 성희롱 심의 및 판단을 위한 위원회의 명칭 .....                           | 212 |
| 〈표 III-86〉 성희롱 심의 및 판단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원(복수응답) .....                    | 214 |
| 〈표 III-87〉 성희롱 심의·판단 시 피해자 의견 청취 및 확인 여부 .....                     | 215 |
| 〈표 III-88〉 성희롱 행위자 징계 결정 시 피해자 의견 청취 및 확인 여부 .....                 | 216 |
| 〈표 III-89〉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결과(복수응답) .....                            | 218 |
| 〈표 III-90〉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결과(복수응답)(비율) .....                        | 219 |
| 〈표 III-91〉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조치결과(복수응답) .....                            | 221 |
| 〈표 III-92〉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조치결과(복수응답)(비율) .....                        | 222 |
| 〈표 III-93〉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 수립 추진 여부 .....                              | 223 |
| 〈표 III-94〉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 추진 내용(복수응답) .....                           | 225 |
| 〈표 III-95〉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의 여성가족부 제출 여부(공공기관만 해당) .....                | 226 |
| 〈표 III-96〉 2차 피해 목격 경험 여부 .....                                    | 227 |



|                                                       |     |
|-------------------------------------------------------|-----|
| 〈표 III-97〉 회사/기관의 2차 피해 대처 방법(복수응답) .....             | 228 |
| 〈표 III-98〉 회사/기관의 2차 피해 방지 위한 매뉴얼, 규정 등 존재 유무 .....   | 229 |
| 〈표 III-99〉 지난 1년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                | 231 |
| 〈표 III-100〉 지난 1년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횟수 .....               | 232 |
| 〈표 III-101〉 지난 1년간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이유 .....              | 233 |
| 〈표 III-102〉 (금융사, 보험사 등의)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좌 안내 여부 .....   | 234 |
| 〈표 III-103〉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 방식 .....                      | 236 |
| 〈표 III-104〉 (교육시간을 따로 지정한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복수응답) ..... | 238 |
| 〈표 III-105〉 성희롱 예방교육 시 직급 구분 여부 .....                 | 239 |
| 〈표 III-106〉 사업주/기관장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 여부 .....             | 241 |
| 〈표 III-107〉 사업주/기관장의 성희롱 예방교육 운영에 관한 관심과 의지 .....     | 242 |
| 〈표 III-108〉 사업주/기관장의 성희롱 예방교육 운영에 관한 지시(언급) 여부 .....  | 244 |
| 〈표 III-109〉 직원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 .....                    | 245 |
| 〈표 III-110〉 성희롱 업무의 어려움 .....                         | 247 |
| 〈표 III-111〉 성희롱 예방교육 시 어려움(1순위) .....                 | 249 |
| 〈표 III-112〉 성희롱 사건처리 과정의 어려움 .....                    | 252 |
| 〈표 III-113〉 정부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대책 인지도 .....               | 255 |
| 〈표 III-114〉 정부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대책 실효성 .....               | 256 |
| 〈표 III-115〉 지난 3년간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변화 .....               | 258 |
| 〈표 III-116〉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1순위) .....         | 261 |
| 〈표 III-117〉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1순위) .....             | 263 |
| 〈표 III-118〉 성희롱 피해 신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1순위) .....       | 265 |
| 〈표 III-119〉 성희롱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정책(1순위) .....      | 266 |
| 〈표 III-120〉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1순위) .....            | 267 |
| 〈표 III-121〉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1순위) .....          | 268 |

## 그 림 목 차

|            |                                                                                                     |     |
|------------|-----------------------------------------------------------------------------------------------------|-----|
| [그림 II-1]  | 조사 방법 .....                                                                                         | 16  |
| [그림 II-2]  | 공공기관 온라인 조사 .....                                                                                   | 18  |
| [그림 II-3]  | 조사 진행표본 최종결과 .....                                                                                  | 32  |
| [그림 II-4]  | 통계청의 상대표준오차(RSE) 평가 기준 .....                                                                        | 35  |
| [그림 IV-1]  | 성희롱 피해 경험률 비교(2021년과 2018년, 하나라도 경험 있는 비율) ...                                                      | 272 |
| [그림 IV-2]  | 성희롱 피해 당시 행동(전체, 성별) .....                                                                          | 275 |
| [그림 IV-3]  | 성희롱 피해 당시 목격자 행동(복수응답)(전체) .....                                                                    | 276 |
| [그림 IV-4]  | 성희롱 피해 경험의 영향(복수응답)(전체, 성별) .....                                                                   | 277 |
| [그림 IV-5]  | 성희롱 피해 이후 대처행동(전체) .....                                                                            | 278 |
| [그림 IV-6]  | 참고 넘어간 이유(전체, 기관 유형, 성별) .....                                                                      | 280 |
| [그림 IV-7]  | 2차 피해에 대한 대처 행동(복수응답)(전체) .....                                                                     | 283 |
| [그림 IV-8]  | 2차 피해의 영향(복수응답)(전체) .....                                                                           | 284 |
| [그림 IV-9]  | 2차 피해 목격 경험의 영향(복수응답)(전체, 성별) .....                                                                 | 288 |
| [그림 IV-10] |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한 본인의 변화(전체, 기관유형) .....                                                                 | 291 |
| [그림 IV-11] | 성희롱 방지 업무 운영에 대한 인식(전체, 기관유형) .....                                                                 | 293 |
| [그림 IV-12] | 외부 신고창구 이용 및 이용 권유 의사, 직장내 고충상담창구 이용 및<br>고충 상담원 상담 권유 의사, 직장내 성희롱 사건 처리에 대한 기대<br>(전체, 기관유형) ..... | 295 |
| [그림 IV-13] | 정부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정책에 대한 인지도(전체, 기관유형) .....                                                          | 296 |
| [그림 IV-14] | 지난 3년간 직장내 성희롱 관련 변화(전체, 기관유형) .....                                                                | 298 |
| [그림 IV-15] |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의 우선순위(전체) .....                                                           | 299 |
| [그림 IV-16] |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시스템 운영 현황(전체, 기관유형) .....                                                               | 304 |
| [그림 IV-17] |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방법(전체, 기관유형) .....                                                                       | 312 |
| [그림 IV-18] | 성희롱 업무의 어려움(전체, 기관유형) .....                                                                         | 315 |
| [그림 IV-19] | 성희롱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어려움(전체, 기관유형) .....                                                                  | 316 |
| [그림 IV-20] | 지난 3년간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변화(전체, 기관유형) .....                                                               | 319 |





#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3  
4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는 2015년, 2018년에 이은 세 번째 조사이다. 「양성평등기본법(제32조)」에는 3년마다 성희롱 실태조사를 통해 성희롱 실태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2018년 2월에 불거진 미투운동을 계기로 성희롱 실태, 양상, 맥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높아졌고, 이후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위계관계 혹은 권력관계에 따른 성희롱 행위에 대한 민감성, 피해자다움과 가해자다움에 대한 고정관념 등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성희롱 사건처리 및 대응, 2차 피해 방지, 성차별적 조직구조와 문화의 개선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보다 확대되었고 공고해졌다. 성희롱에 따른 근로자의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고 안전하고 성평등한 근로환경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관련 규정이 강화되고, 사업주/공공기관의 장 혹은 선출직 관리자에 의한 성희롱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다. 공공기관의 경우 성희롱 발생을 인지한 경우 여성가족부에 신고하고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고, 여성가족부의 현장점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성희롱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등 조직내 신고체계를 강화했을 뿐 아니라 조직 외부에도 다양한 신고체계를 마련하였으며, 근로감독행정체계 속에서 성희롱 사건처리를 위한 시스템도 강화되었다. 한편 성희롱 방지를 위해서는 조직내 문화와 규범을 재확립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성희롱 방지와 관련된 성차별적인 조직문화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성희롱은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근로권,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성차별적인 남성중심적 조직문화, 특히 여성을 성적대상화하는 것을 관행화하고 이를 문제시하지 않는 조직 분위기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2018년 미투와 일련의 성희롱 사건들을 통해 당사자 간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서 인식되면서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뤄졌는데, 3년이 흐른 시점에서 성희롱 실태와 양상의 변화,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도정책을 통한 변화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

이에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에서는 법률상 명시된 조사항목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생산하여 연속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2018년 미투운동 이후 사회적, 제도·정책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산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3년 동안의 성희롱 실태와 변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된 제도와 시스템의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하여 그간의 제도·

정책 개선에 따른 조직내 성희롱 방지 시스템, 조직문화, 구성원의 인식 등의 변화를 진단함으로써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조사설계와 조사 운영을 통해 조사통계의 품질을 제고함으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성희롱 방지정책 수립과 정책 통계 생산기반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 2. 연구내용 및 방법

### 가. 연구내용

첫째, 성희롱 관련 법률, 최근의 정책 동향을 살펴보았다. 관련 법률 제·개정 사항, 성희롱 방지 관련한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정리하여 조사표를 보완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참고하였다.

둘째,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의 조사항목을 보완하였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제22조)」에 명시된 조사항목을 포함하고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항목과의 시계열성을 유지하면서, 최근 성희롱 관련 현안,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조사항목에 대해 검토하였고,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사전 조사를 통해 조사참여자의 응답 부담 및 응답 거부, 불성실한 응답 등을 최소화하도록 질문방식, 보기 문항, 문항 구성 등에 반영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제Ⅱ장을 참고한다.

셋째,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체의 일반직원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일반직원의 경우 응답자 특성 및 사업체 특성에 따라, 업무담당자는 사업체 특성에 따라 분석하였다. 2021년도 조사결과를 개괄적으로 정리하면서, 일부 문항의 경우 2018년과의 비교도 실시하였는데, 2018년 대비 표본 규모가 늘어나고 일부 조사 문항의 변경이 있어서 2018년 조사결과와 2021년 조사결과를 비교할 때 유의해야 한다. 또한, 조직특성과 성희롱 피해 및 대응 실태에 대해 탐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희롱 방지를 위해서는 조직내 성차별적인 문화와 규범, 구조 등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공감대와 정책 수요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직특성(성차별적인 조직문화)과 성희롱 피해와 대응 등의 관련성을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넷째, 전체적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고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설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조사내용, 조사 방법, 조사 운영, 조사결과(원자료 포함)의 활용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나. 연구방법

첫째, 성희롱 관련 조사결과, 선행연구 결과, 정책 동향 등을 검토하여 조사표 개선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 활용하였다.

둘째,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협업체제로 진행되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의 전체적인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고,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는 실사 전반을 담당하였다.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770개 공공기관과 1,760개 민간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직원과 성희롱 업무담당자를 응답자로 하여, 2018년 실태 조사 당시보다 표본크기를 증가하여 일반직원은 15,073명을, 성희롱 업무담당자는 2,512명을 최종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방법은 공공기관에 대해선 온라인 조사로, 민간사업체에 대해선 사업체 방문 자기 기입식 조사로 진행하였다.

표본추출틀(sampling frame)은 2019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이용하였고, 표본배분은 업종과 종사자 규모별로 균등배분과 제곱근 비례배분을 이용하였으며, 사업체는 층내 계통추출, 근로자는 사업체내 할당추출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였다. 조사는 2021년 9월 13일부터 2022년 1월 13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사업체 방문을 위한 현장 실사는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실사 조직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공공기관 대상 온라인 조사는 업무담당자와 일반직원의 이메일 주소를 수집한 후에 개별 이메일 주소로 조사사이트 URL을 발송하여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민간사업체 대상 방문 조사의 경우 조사원이 담당자를 직접 컨택 후 방문, 대면하여 조사표를 전달하여 직접 기입한 후 비밀봉투에 밀봉하여 수거하였다. 감염병(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조사 관련 자료는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서도 주고 받았다.

조사 진행 관리는 성희롱 실태조사 실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관리하였다. 실사 진행 상황뿐만 아니라 응답 방법, 조사날짜 및 시간, 조사장소 등 조사 전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으며, 조사종료 후 응답률 산출 등 조사 진행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입력은 논리적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베이크래프트



## 6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연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조사설계와 관련된 내용은 제Ⅱ장에 자세히 기술하였다.

## II

## 조사설계

|           |    |
|-----------|----|
| 1. 조사개요   | 9  |
| 2. 표본설계   | 18 |
| 3. 모수추정   | 25 |
| 4. 무응답 분석 | 29 |
| 5. 오차분석   | 34 |



## 1. 조사개요

### 가. 2018년과 2021년 비교: 주요변경 사항 중심으로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전국의 민간사업체 및 공공기관(근로자)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9년 기준 전국사업체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 모집단을 구성하였고 다단계층화계통추출법을 통해 표본 사업체를 추출하였다.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1〉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설계 개요

| 구분             |        | 내용                                                                                          |                                       |                                                      |                                      |
|----------------|--------|---------------------------------------------------------------------------------------------|---------------------------------------|------------------------------------------------------|--------------------------------------|
|                |        | 민간사업체                                                                                       |                                       | 공공기관                                                 |                                      |
| 모집단            | 목표 모집단 |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전국의 민간사업체 및 공공기관 (근로자)                                              |                                       |                                                      |                                      |
|                | 조사 모집단 | - 농업, 임업 및 어업(A), 광업(B), 가사 서비스업(S), 국제기구 및 기타 외국 기관(T) 제외                                  |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중 일부 대상           |                                      |
| 표본추출틀          |        | - 2019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통계청)                                                                  |                                       |                                                      |                                      |
| 표본크기<br>(표본오차) | 업무 담당자 | - 1,760개소                                                                                   | - 1,760명<br>(95% 신뢰수준 $\pm 2.4\%p$ )  | - 770개소                                              | - 770명<br>(95% 신뢰수준 $\pm 3.6\%p$ )   |
|                | 일반 직원  |                                                                                             | - 10,514명<br>(95% 신뢰수준 $\pm 1.0\%p$ ) |                                                      | - 4,644명<br>(95% 신뢰수준 $\pm 1.5\%p$ ) |
| 모집단 층화         |        | - 1차 층화: 산업대분류 업종<br>- 2차 층화: 사업체 규모<br>- 내재적 층화: 지역                                        |                                       | - 1차 층화: 공공기관 유형<br>- 2차 층화: 공공기관 규모<br>- 내재적 층화: 지역 |                                      |
| 표본배분           |        | - (공동) 제곱근비례배분                                                                              |                                       | - (유형별) 우선할당 후 비례배분<br>- (규모별) 제곱근비례배분               |                                      |
| 표본추출           | 업무 담당자 | - 다단계층화계통추출                                                                                 |                                       |                                                      |                                      |
|                | 일반 직원  | - 종사자 규모, 성별, 연령별 약 6명(5-10명) 할당                                                            |                                       |                                                      |                                      |
| 가중치            |        | - 설계가중값, 무응답 조정, 사후층화 조정, 근로자 1차 가중치, 최종 가중치                                                |                                       |                                                      |                                      |
| 모수추정           |        | - 복합표본설계(complex survey)에 적합한 모수추정식 적용<br>- 분산 관련 추정량은 SAS의 surveymeans, surveyfreq 프로시저 활용 |                                       |                                                      |                                      |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는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와 비교하면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

첫째, 표본추출틀이 2016년 전국사업체조사에서 2019년 전국사업체조사로 최신화되었다. 2019년 전국사업체조사 모집단은 2016년과 비교하여 조사 기간<sup>1)</sup>을 제외하면 모두 동일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어 모집단의 특성 변화는 없다.

둘째, 사업체 표본크기를 증대하였다. 2018년 공공기관 400개, 민간사업체 1,200개에서 2021년에는 공공기관 770개, 민간사업체 1,760개로 확대하였다. 그 결과 업무담당자는 2018년 1,600명에서 2021년에는 2,530명으로, 일반직원은 2018년 9,304명에서 2021년 15,158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로써 표본오차를 사업장 기준 민간사업체는  $\pm 2.9\%p$ 에서  $\pm 2.4\%p$ 로, 공공기관은  $\pm 5.0\%p$ 에서  $\pm 3.6\%p$ 로 축소하게 됨으로써, 조사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다소 개선하였다.

셋째, 공공기관에 대해 우선 할당 후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여 표본을 배분하였다. 2018년에는 공공기관의 경우 균등배분법을, 민간사업체는 제곱근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였다.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의 경우 공공기관 목표표본 크기가 400개로, 유형별로 안정적인 통계생산을 위해 100개씩 표본을 확보하고자 균등배분법을 적용했으나 2021년에는 목표표본 크기가 770개로 늘어나 유형별로 100개씩 우선할당 후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여 유형별 최소표본 수 외에는 증크기를 반영하여 추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규모별 배분 시에는 2018년과 동일하게 제곱근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였다.

그 외 층화방법, 표본추출방법, 조사방법, 모수추정방법 등은 2018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민간사업체는 16개 산업 대분류별 안정적인 통계작성을 위해 6개의 업종으로 구분하였고, 사업체 내 일반직원 추출에서 성희롱 발생 가능성이 높은 40대 미만과 여성 추출률을 높이고, 종사자 규모별로 성과 연령대를 기준으로 할당추출을 적용하였다. 종사자 규모에 따라 인원수를 차등화한 것은 품질진단 결과에서 제안된 사항이었다.

---

1) 단, 2019년 전국사업체조사의 조사기준 시점은 12월 31일로 2016년과 동일하나, 조사 실시 기간이 코로나로 인해 두 차례 연기되어 6월 4일~29일로 2016년(2월 6일~3월 3일)과 차이가 있다.

〈표 II-2〉 2018년 대비 조사설계 변경내용

| 구분        | 2018년                                                                                                                            | 2021년                                                                                                                          | 비고                           |
|-----------|----------------------------------------------------------------------------------------------------------------------------------|--------------------------------------------------------------------------------------------------------------------------------|------------------------------|
| 표본<br>추출틀 | ■ 2016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br>(통계청)                                                                                                      | ■ 2019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br>(통계청)                                                                                                    | ■ 최신 표본추출틀 반영                |
| 표본<br>크기  | ■ 사업장<br>- 공공 400, 민간 1,200<br>■ 근로자<br>- (일반직원) 9,304명<br>- (업무담당자) 1,600명                                                      | ■ 사업장<br>- 공공 770, 민간 1,760<br>■ 근로자<br>- (일반직원) 15,158명<br>- (업무담당자) 2,530명                                                   | ■ 표본크기 증대로 조사<br>신뢰성과 정확성 증대 |
| 표본<br>오차  | ■ 95% 신뢰수준에서<br>① 사업장 : 민간 $\pm 2.9\%p$<br>/ 공공 $\pm 5.0\%p$<br>② 근로자 : 민간 $\pm 1.2\%p$<br>/ 공공 $\pm 2.2\%p$<br>※ 근로자는 일반직원 기준임. | ■ 95% 신뢰수준에서<br>① 사업장 : 민간 $\pm 2.4\%p$<br>/ 공공 $\pm 3.6\%p$<br>② 근로자 : 민간 $\pm 1.0p$<br>/ 공공 $\pm 1.5\%p$<br>※ 근로자는 일반직원 기준임. |                              |
| 표본<br>배분  | ■ 공공: 균등배분<br>■ 민간: 제곱근 비례배분                                                                                                     | ■ 공공: 제곱근 비례배분<br>■ 민간: 제곱근 비례배분                                                                                               | ■ 층별 통계생산 고려                 |

## 나. 조사내용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제22조)」에 의하면 동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실태 조사에 성희롱의 발생 원인, 발생유형,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 유형 및 피해구제 등 성희롱 피해에 관한 사항, 성희롱 실태조사 대상자의 성별, 나이, 학력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성희롱의 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sup>2)</sup>.

이에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한 조사항목을 포괄 하면서 주요 문항을 중심으로 2018년 조사와의 연속성은 유지하되 성희롱 관련 현안을 고려한 문항을 추가·보완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조사표를 개선하였다. 특히 2018년 미투 이후 성희롱 피해 양상 및 실태의 변화, 2018년 미투를 계기로 개선 및 확대된 성희롱 사건처리 시스템의 운영 현황, 성희롱 방지정책 및 제도 개선에 따른 조직내 변화와 체감도, 2차 피해 실태와 대처 등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문항은 다음과 같다.

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양성평등기본법\\_시행령/제32조\(2022.2.21.\)](https://www.law.go.kr/법령/양성평등기본법_시행령/제32조(2022.2.21.))

〈표 II-3〉 조사문항(일반직원용)

| 구분               | 내용                                                                                                                                                                                                                                                                                                                                                                                                                                                                     |
|------------------|------------------------------------------------------------------------------------------------------------------------------------------------------------------------------------------------------------------------------------------------------------------------------------------------------------------------------------------------------------------------------------------------------------------------------------------------------------------------|
| I. 직장 내 조직문화     | - 직장 내 조직문화(일반적 조직문화, 성차별적 조직문화), 성차별적 괴롭힘 경험                                                                                                                                                                                                                                                                                                                                                                                                                          |
| II. 성희롱 예방교육     | - 지난 1년간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 여부, 예방교육 방식(가장 최근 기준), 예방교육 진행 방법(가장 최근 기준), 예방교육 참여 태도(가장 최근 기준)<br>- 예방교육 경험 이후 본인이 경험한 변화, 예방교육의 성희롱 방지 효과(가장 최근 기준) 및 미효과 이유                                                                                                                                                                                                                                                                                                                  |
| III. 성희롱 피해경험    | - 성희롱 피해 경험, 성희롱 행위자와의 관계, 성희롱 행위자의 성별, 성희롱 발생 장소, 성희롱 행위의 지속 여부, 성희롱 경험 당시 그 자리에서의 대처 행동, 성희롱 발생 당시 목격자 여부, 성희롱 발생 당시 목격자의 대응 행동, 성희롱 피해 경험으로 인한 영향, 성희롱 대처 행동<br>- 대처 행동 중 참고 넘어간 이유, 공식적인 상담/신고 후 기관에서의 조치 내용, 기관의 사건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한 만족도<br>- 성희롱 문제 제기 이후 불이익 경험<br>- 성희롱 2차 피해 경험, 성희롱 2차 피해 행위자, 성희롱 2차 피해 시 대처 행동, 성희롱 2차 피해로 인한 영향,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기관의 대처<br>- 성희롱 상황 목격 경험, 성희롱 상황 목격 시 조치 방법 및 미조치 이유, 목격 경험으로 인한 영향<br>- 성희롱 2차 피해 목격 경험 및 영향, 성희롱 2차 피해 발생 원인 |
| IV. 성희롱 전담부서 인지도 | - 사업주/기관장의 직장내 성희롱 방지 조치 이행 노력 여부, 사업주/기관장의 직장내 성희롱 방지, 공정한 사건처리 책무 및 이행 의지에 대한 직접 언급 여부, 성희롱 방지 업무 인프라 운영에 대한 인지도<br>- 성희롱 경험 시 외부 신고창구 이용 및 이용 권유 여부<br>- 성희롱 경험 시 고충전담창구 및 고충상담원 이용 및 이용 권유 여부<br>- 성희롱 경험 시 사내에서의 성희롱 사건처리 기대 및 미기대 이유<br>- 정부가 추진한 직장 내 성희롱 방지대책 인지 여부 및 도움 정도<br>- 지난 3년간 직장내 성희롱 관련 변화 정도<br>-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 수요<br>- 분야별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 수요(조직문화 개선, 피해 신고 활성화, 공정한 사건처리, 피해자 보호)                                                        |
| V. 응답자 특성        | - 성별, 생년, 직책, 종사상 지위, 근무기간, 현직장 근무기간, 코로나19로 인한 근무 환경 변화, 일하는 부서 및 전체 직장의 남녀비중                                                                                                                                                                                                                                                                                                                                                                                         |

※ 밑줄친 부분은 2021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표 II-4〉 조사문항(업무담당자용)

| 구분                    | 내용                                                                                                                                                                                                                                                                                                                                                                                                                                                                                                                                                                                                                                                                                                                               |
|-----------------------|----------------------------------------------------------------------------------------------------------------------------------------------------------------------------------------------------------------------------------------------------------------------------------------------------------------------------------------------------------------------------------------------------------------------------------------------------------------------------------------------------------------------------------------------------------------------------------------------------------------------------------------------------------------------------------------------------------------------------------|
| I. 성희롱 관련 업무 운영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업무 운영 현황</li> <li>- 사업주/기관장의 직장내 성희롱 방지 조치 이행 노력 여부</li> <li>- 사업주/기관장의 직장내 성희롱 방지, 공정한 사건처리 책무 및 이행 의지에 대한 직접 언급 여부</li> <li>- 지난 3년간 성희롱 관련 고충상담 건수</li> <li>- 지난 3년간 성희롱 사건 발생 여부 및 발생 건수</li> <li>- 지난 3년간 조사가 진행된 성희롱 사건수, 신청 후 조사 개시까지 평균 소요기간, 조사 진행자, 조사 진행 상황의 피해자 알림 여부, 조사 개시 후 조사 종료까지 평균 소요기간</li> <li>- 지난 3년간 성희롱 심의를 위한 위원회가 개최된 사건수, 성희롱 심의를 위한 위원회 및 위원회 구성, 위원회를 통한 성희롱으로 인정된 건수, 성희롱 심의판단 및 행위자 징계 결정시 피해자 의견 청취 여부</li> <li>- 성희롱 사건 행위자 조치 결과, 성희롱 사건 피해자 조치 결과</li> <li>- 지난 3년간 성희롱 사건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 여부, 재발방지대책 추진 내용, (공공기관) 지난 3년간 성희롱 사건 관련 재발방지대책의 여성가족부 제출 여부</li> <li>- 2차 피해 목격 경험, 기관의 2차 피해에 대한 대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매뉴얼, 규정 마련 여부</li> </ul> |
| II. 성희롱 예방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1년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및 횟수, 예방교육 미실시 이유</li> <li>- 지난 1년간 성희롱 예방교육 (금융사, 보험사 등의) 무료강좌 여부</li> <li>- 지난 1년간 주된 예방교육 진행방식, (교육시간을 따로 지정한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li> <li>- 직급별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 여부</li> <li>- 기관장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 여부(가장 최근 기준)</li> <li>- 지난 1년간 전체 직원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률</li> <li>- 사업주/기관장의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지 여부, 사업주/기관장의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등에 대한 직접 언급 혹은 지시 여부</li> </ul>                                                                                                                                                                                                                                                                                                                    |
| III. 성희롱 업무 수행 및 정책수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희롱 업무의 어려움</li> <li>-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시 어려움</li> <li>- 성희롱 사건처리과정의 어려움</li> <li>-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li> <li>- 정부가 추진한 직장 내 성희롱 방지대책 인지 여부 및 도움 정도</li> <li>- 지난 3년간 직장내 성희롱 관련 변화 정도</li> <li>-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 수요</li> <li>- 분야별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 수요(조직문화 개선, 피해 신고 활성화, 공정한 사건처리, 피해자 보호)</li> </ul>                                                                                                                                                                                                                                                                                                                                                                             |
| IV. 응답자 특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 생년, 종사상 지위, 근무기간, 성희롱 업무 담당기간, 성희롱 업무 전담 여부, 성희롱 업무 관련 교육훈련 이수 여부, 코로나19로 인한 근무환경 변화, 연령별, 성별 근로자 수</li> </ul>                                                                                                                                                                                                                                                                                                                                                                                                                                                                                                                                                                      |

※ 밑줄친 부분은 2021년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임.



2018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반직원용 조사 문항에서는 1)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구분하여 3가지 차원으로 조사하도록 변경하였고, 2) 성희롱 예방교육에서는 코로나19 상황, 2차 피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였다. 3) 성희롱 피해 경험에서는 성희롱 피해의 지속성, 피해 당시의 목격자와 목격자의 행동 등을 추가하였고, 공식적인 대처 이후 기관의 성희롱 사건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보완하였다. 또한, 4) 2차 피해와 관련해서 2차 피해 유형, 2차 피해 경험 시 피해자의 대응 및 기관의 대응, 2차 피해에 따른 영향, 2차 피해 목격에 따른 영향 등을 추가·보완하였다. 5) 성희롱 대응체계에서는 외부에 있는 성희롱 피해 신고창구 이용 및 이용 권유 문항을 추가하였다.

한편 업무담당자용 조사표에서는 3년 동안 변화한 성희롱 방지 관련 제도와 시스템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이를 위해 성희롱 방지업무 운영 현황, 업무상 관련 어려움 등을 추가·보완하였고, 상담-사건인지-사건조사-사건심의-조치 등 일련의 성희롱 사건처리 단계별 운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일반직원과 업무담당자 공통문항으로, 성희롱 방지와 관련된 효과성과 체감도,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보완하였다. 이를 위해 강화된 기관장/사업주 책무성의 이행 정도, 정부의 주요 성희롱 방지대책에 대한 인지도 및 효과성(체감도), 지난 3년간 조직내 성희롱 관련 변화,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 수요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표 II-5〉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조사문항의 주요 변경내용

| 구분       |           | 변경 내용                                                                                                                                                                                                          |
|----------|-----------|----------------------------------------------------------------------------------------------------------------------------------------------------------------------------------------------------------------|
| 일반<br>직원 | 직장내 조직문화  | - 조직문화를 세 가지 차원에서 조사하도록 추가·보완함. ①과 ②는 보완하였고 ③은 추가함. ① 조직문화내 성차별성을 파악하는 문항 ② 일반적인 조직문화 특성을 파악하는 문항 ③ 조직에서의 성별에 기반한 부정적인 언행 경험(성차별적 괴롭힘)을 파악하는 문항                                                                |
|          | 성희롱 예방교육  | -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 방법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을 응답 보기에 보완함.<br>- 성희롱 예방교육 효과성 중 2차 피해 및 대처역량 학습효과를 응답 보기에 보완함.                                                                                                             |
|          | 성희롱 피해 경험 | - 성희롱 피해 경험에 2015년, 2018년 조사의 13개를 유지하면서 준강간을 추가함.<br>- 성희롱 발생 장소에 온라인을 응답 보기에 추가함.<br>- 성희롱 피해의 반복성, 지속성 문항을 추가함.<br>- 성희롱 피해 당시의 즉각적인 대처, 목격자 여부 및 목격자의 행동 문항을 추가함.<br>- 성희롱 피해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영향을 응답 보기에 추가함. |

| 구분     |                  | 변경 내용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의 사건처리에 대한 만족도를 사건처리 과정과 결과로 구분하여 사건처리 과정 문항을 추가함.</li> <li>- 불이익 경험에서 피해자와 조력자로 분리되었던 문항을 통합함.</li> <li>- 2차 피해 유형을 추가·보완함.</li> <li>- 2차 피해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영향을 응답 보기에 추가함.</li> <li>- 2차 피해에 대한 개인 차원, 조직 차원에서의 대처 문항을 추가함.</li> </ul>                                                                                                                                                                                 |
|        | 성희롱 목격 경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희롱 목격에 따른 사회적 영향(직장내 관계성)을 응답 보기에 추가함.</li> <li>- 2차 피해 목격의 영향 문항을 추가함.</li> <li>- 2차 피해 발생 원인 문항을 추가함.</li> </ul>                                                                                                                                                                                                                                                                                                      |
|        | 성희롱 대응체계 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장(사업주)의 성희롱 방지업무에 대한 노력 문항을 추가함.</li> <li>- 외부에 있는 성희롱 피해 신고창구 이용 및 이용 권유 문항을 추가함.</li> </ul>                                                                                                                                                                                                                                                                                                                          |
| 업무 담당자 | 성희롱 방지 시스템 구축·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 동안 확대된 성희롱 방지업무 및 시스템의 구축·운영 현황을 추가·보완함.</li> <li>- 기관장(사업주)의 성희롱 방지업무에 대한 노력 문항을 추가함.</li> <li>- 업무 전반, 예방교육, 사건처리 등의 어려움을 보완함.</li> </ul>                                                                                                                                                                                                                                                                           |
|        | 성희롱 사건처리 시스템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 동안 사건처리 시스템의 각 단계별 운영 현황 문항으로 전면 재구성함.</li> <li>• 고충상담: 고충상담 건수와 고충상담 조치 실태</li> <li>• 성희롱 발생: 성희롱 사건 수</li> <li>• 조사: 조사진행 건수, 사건접수이후 조사개시까지 소요 시간, 조사개시~종료까지의 소요 기간, 조사 주체, 조사진행 상황의 피해자 안내 여부</li> <li>• 심의: 성희롱 심의 위해 위원회를 개최한 성희롱 사건 건수, 위원회 명칭 및 위원회 구성, 위원회 통한 성희롱 인정 건수, 피해자 의견 청취 여부</li> <li>• 성희롱 사건 행위자 조치 내용</li> <li>• 성희롱 사건 피해자 보호조치 내용</li> <li>•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 주요 내용, (공공기관) 여성가족부 제출 여부</li> </ul> |
|        | 2차 피해 대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차 피해 목격 경험 문항을 일반직원 문항과 일치하도록 보완함.</li> <li>- 2차 피해에 대한 기관의 조치 문항을 추가함.</li> <li>- 2차 피해 방지 매뉴얼, 규정 등 마련 문항을 추가함.</li> </ul>                                                                                                                                                                                                                                                                                            |
|        | 폭력예방 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을 응답 보기에 보완함.</li> <li>- 기관장/사업주의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의지와 관심도 문항을 추가함.</li> <li>- 기관장/사업주, 관리자, 직원의 폭력예방교육 운영방식을 추가·보완함.</li> <li>- 전체 직원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응답 방식을 보완함.</li> </ul>                                                                                                                                                                                                                                      |
| 공통     | 성희롱 방지대책 인지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가 추진했던 주요 성희롱 방지대책 문항을 추가함</li> <li>-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부대책의 도움정도 문항을 추가함</li> </ul>                                                                                                                                                                                                                                                                                                                                     |
|        | 성희롱 방지대책 체감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3년 동안 성희롱 방지정책 효과성과 실효성 문항을 추가함.</li> <li>- 지난 3년 동안 직장내 성희롱 관련 변화 문항을 추가함.</li> </ul>                                                                                                                                                                                                                                                                                                                                |
|        | 성희롱 방지정책 수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문화 개선, 피해 신고 활성화, 공정한 사건처리,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수요 문항을 추가함.</li> </u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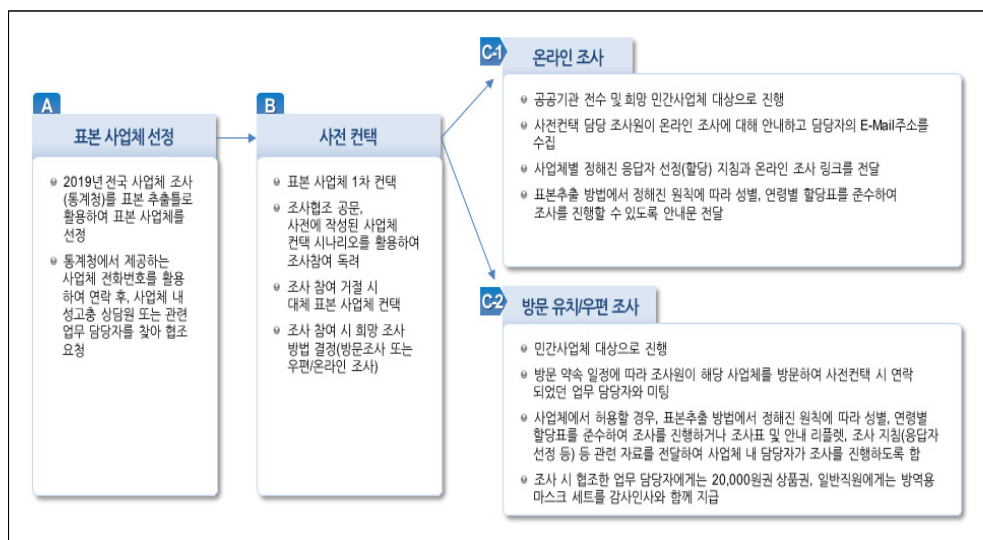
조사표를 보완하기 위해 먼저 관련 선행연구 결과, 성희롱 방지정책 동향과 현안 등을 검토하여 조사표 개선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조사표(안)를 개발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계 부처와의 업무협의, 연구진 워크숍,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였다. 조사표(안)로 6월 10일~21일 동안 예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설문조사는 일반 직원과 업무담당자 총 1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예비 설문조사와 함께 일반직원과 업무담당자 간담회, 조사원 간담회 등도 함께 진행하였다. 예비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문항에 대한 이해도, 조사 문항의 논리적 구성 등을 확인하고 응답 소요 시간, 본조사 운영 시 참고사항 등 조사환경도 탐색하였다.

예비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을 토대로 조사표(안)를 보완하였고, 연구진 워크숍과 관계 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를 위한 최종 조사표를 마련하였다. 이를 토대로 통계청의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조사표를 확정하였다.

## 다. 조사방법

본 조사는 민간사업체와 공공기관에 따라 다른 조사 방법을 적용하였다. 민간사업체는 사업체 접근과 협조, 근로자의 응답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체에 방문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접근성과 협조 수준이 높아 온라인 조사로 진행하였다. 단, 사업체 중 방문 조사를 원하지 않을 시 희망에 따라 우편/온라인 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림 II-1] 조사 방법

조사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민간사업체는 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진행하였다. 방문 조사는 전문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적격응답자에게 조사표를 전달하고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전문 조사원은 조사 전 먼저 사업체(업무담당자)에 연락을 통해 조사에 대해 안내한 후 정해진 일정에 방문하여 조사표를 전달하고 당일 혹은 회수일을 정해 조사표를 회수하였다. 이때 응답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비밀보장 서약서를 제공하고, 조사표는 비밀 보호용 봉투에 넣어 배부하고, 완료 후 밀봉하여 수집하였다. 한편 일반직원 선정의 경우 무작위성 확보를 위하여 업무담당자에게 직원 대상 응답자 선정안내문을 제작 및 배포하도록 협조를 구했고 응답자 선정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서를 제공하였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 사전에 충분한 조사원 교육을 하였고, 조사원이 방문하여 조사 취지와 비밀보장 원칙 등을 설명하여 협조를 끌어낼 수 있도록 본 조사의 목적, 특성과 내용 등에 대해 숙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응답자가 피해 사실에 대해 개인적인 도움을 요청할 때 지원기관을 안내하고 연구진에게 보고하여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기관은 온라인 조사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조사는 전문 전화 조사원이 기관에 사전 연락을 진행하여 적격응답자의 이메일을 수집한 후 해당 응답자에게 메일을 발송하여 응답자가 개설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자기기입식 조사방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 대상 기관에는 여성가족부의 협조공문과 업무담당자 외 일반직원 선정의 무작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응답자 선정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안내문을 함께 발송하였다. 또한, 이러한 협조공문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 기관의 협조도가 낮은 경우, 조사 독려 전화를 2회 이상 진행하고 응답자에게는 조사목적과 취지에 대해 다시 안내하여 조사의 협조도를 높이는 노력을 하였다.

## 18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연구

〈공공기관 온라인 조사 홈페이지〉

**Gallup**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실태를 파악하고 성희롱 예방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 제32조에 의거하여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응답해주신 내용은 정부의 올바른 성희롱 방지 정책 수립 및 개선을 위한 토대가 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는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154018호)로서 「통계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며,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본 메일은 이미 조사에 응답하신 분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무담당자분께서는 아직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분들이 있을 경우 전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                                                                                                          |
|----------------|----------------------------------------------------------------------------------------------------------|
| 조사주관           | 여성가족부                                                                                                    |
| 조사기관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 조사기간           | 2021년 9월 ~ 2021년 11월<br>(목표 표본 수 미달로 12월까지 연장 실시)                                                        |
| 조사절차           | 1단계: 여성가족부에서 공공기관 성희롱 업무담당자에게 조사 업조 공문을 발송<br>2단계: 공공기관 성희롱 업무담당자에게 우선으로 안내전화를 드리며, 조사안내자료를 해당 메일로 개별 발송 |

〈공공기관 온라인 조사 안내문〉

[그림 II-2] 공공기관 온라인 조사

본조사는 2021년 9월 13일부터 2022년 1월 13일까지 총 4개월간 진행하였으며, 예비조사 및 본 조사는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수행하였다.

## 2. 표본설계

### 가. 모집단 정의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의 개념상 규정된 목표 모집단(target population)은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중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전국의 민간사업체와 공공기관이다. 목표 모집단은 조사의 현실을 고려하여 민간사업체와 공공기관의 조사 모집단(sampled populatio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민간사업체는 모집단 규모를 고려하여 농업, 임업 및 어업(A), 광업(B), 가사 서비스업(S), 국제기구 및 기타 외국기관(T) 등을 제외한 전 산업의 종사자(상용, 임시·일용 종사자) 3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전체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공공기관의 경우 2019년 12월 말 기준의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중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중 일부3)를 대상으로 하며, 종사자(상용, 임시·일용 종사자) 3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조사 모집단으로 하였다.

조사 모집단을 살펴보면, 전체 조사 대상 민간사업체는 72,401개소이다. 사업체 규모 별로 보면, 상시근로자 30~99인 규모에 속한 사업체가 56,850개소(78.5%), 100~299인 규모에 12,364개소(17.1%)이다. 반면에 300~499인 규모에 1,673개소(2.3%), 500인 이상 규모에 1,514개소(2.1%)로 조사 대상 사업체는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부분 속해 있었다. 한편 조사 대상 민간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7,419,303명이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상시근로자 30~99인 규모에 속한 근로자가 2,823,714명(38.1%), 100~299인 규모에 1,981,917명(26.7%)이다. 300~499인 규모에 632,447명(8.5%), 500인 이상 규모에 1,981,225명(26.7%)이다.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 비중은 4.5%인데 반해, 이 규모에 속한 근로자의 비중은 35.2%에 이르고 있다.

〈표 II-6〉 사업체 규모별 사업체 및 근로자 현황

(단위: 개, 명, %)

| 기업체 규모   | 사업체 수  |       | 근로자 수     |       |
|----------|--------|-------|-----------|-------|
|          | 사업체    | 분포    | 근로자       | 분포    |
| 30~99인   | 56,850 | 78.5  | 2,823,714 | 38.1  |
| 100~299인 | 12,364 | 17.1  | 1,981,917 | 26.7  |
| 300~499인 | 1,673  | 2.3   | 632,447   | 8.5   |
| 500인 이상  | 1,514  | 2.1   | 1,981,225 | 26.7  |
| 합계       | 72,401 | 100.0 | 7,419,303 | 100.0 |

자료: 통계청, 「2019 전국사업체조사」

사업체와 근로자 수에 있어서 산업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7〉을 보면, ‘C.제조업’에 속한 사업체가 21,283개소로 사업체 비중이 매우 높고 반면에, ‘D.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과 ‘E.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 속한 사업체는 각각 458개소와 997개소로 사업체 비중과 근로자 비중이 매우 낮다.

- 
- 3) 교육서비스업 중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분류됨에 따라 민간사업체 대상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II-7〉 산업 대분류별 사업체 및 근로자 현황

(단위: 개, 명, %)

| 업종별                        | 사업체 수  |       | 근로자 수     |       |
|----------------------------|--------|-------|-----------|-------|
|                            | 사업체    | 분포    | 근로자       | 분포    |
| C. 제조업                     | 21,283 | 29.4  | 2,101,093 | 28.3  |
|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458    | 0.6   | 58,894    | 0.8   |
|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 997    | 1.4   | 56,916    | 0.8   |
| F. 건설업                     | 6,153  | 8.5   | 639,413   | 8.6   |
| G. 도매 및 소매업                | 6,082  | 8.4   | 471,727   | 6.4   |
| H. 운수업                     | 4,331  | 6.0   | 443,481   | 6.0   |
| I. 숙박 및 음식점업               | 1,991  | 2.7   | 129,530   | 1.7   |
|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3,502  | 4.8   | 394,210   | 5.3   |
| K. 금융 및 보험업                | 1,886  | 2.6   | 232,587   | 3.1   |
|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 1,097  | 1.5   | 90,459    | 1.2   |
|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 4,771  | 6.6   | 631,061   | 8.5   |
|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5,300  | 7.3   | 852,284   | 11.5  |
| P. 교육 서비스업                 | 1,670  | 2.3   | 97,875    | 1.3   |
|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 10,073 | 13.9  | 1,023,080 | 13.8  |
|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1,321  | 1.8   | 108,172   | 1.5   |
|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1,486  | 2.1   | 88,521    | 1.2   |
| 합계                         | 72,401 | 100.0 | 7,419,303 | 100.0 |

자료: 통계청, 「2019 전국사업체조사」

공공기관의 경우 조사 대상 규모는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총 13,426개소이다. 이들 중 초·중·고등학교가 8,838개소로 65.8%를 차지하고 있고, 국가기관이 3,032개소로 22.6%를 나타냈다. 공공기관 대상 조사의 조사 대상 상시근로자는 1,499,341명이며, 이중 초·중·고등학교에 속한 조사대상자가 583,657명으로 38.9%를 차지하고 있고, 국가기관에 368,328명으로 24.6%를 나타냈다.

〈표 II-8〉 공공기관의 유형별 기관과 상시근로자 현황

(단위: 개, 명, %)

| 공공기관 유형         | 해당 산업세분류                                    | 기관 현황  |       | 상시근로자 현황  |       |
|-----------------|---------------------------------------------|--------|-------|-----------|-------|
|                 |                                             | 기관수    | 분포    | 근로자       | 분포    |
| 국가기관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0)<br>(84113 제외)         | 3,032  | 22.6  | 368,328   | 24.6  |
| 지방자치단체,<br>지방의회 | 84113                                       | 930    | 6.9   | 281,843   | 18.8  |
| 초·중·고등학교        | 85120, 85211, 85212, 85221,<br>85222, 85229 | 8,838  | 65.8  | 583,657   | 38.9  |
| 대학교             | 85301, 85302, 85303                         | 626    | 4.7   | 265,513   | 17.7  |
| 합계              |                                             | 13,426 | 100.0 | 1,499,341 | 100.0 |

주: 세분류는 통계청의 표준직업분류임.

자료: 통계청, 「2019 전국사업체조사」

## 나. 표본크기

본 조사의 표본크기를 살펴보면, 민간사업체의 경우 2018년 조사 원칙과 유사하게 적용하여 각 표본 사업체에서 조사되는 표본 근로자 수는 사업체 1,760개소와 근로자 수 10,514명이며, 표본 분배는 사업체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어 다음과 같이 할당하였다.

〈표 II-9〉 사업체 규모별 조사근로자 수

(단위: 개, 명)

| 구분            | 30~99인 | 100~299인 | 300~499인 | 500인 이상 | 계      |
|---------------|--------|----------|----------|---------|--------|
| 표본 사업체 수      | 984    | 459      | 165      | 152     | 1,760  |
| 사업체당 조사 근로자 수 | 5      | 6        | 8        | 10      | -      |
| 조사 근로자 수      | 4,920  | 2,754    | 1,320    | 1,520   | 10,514 |

공공기관 대상 조사에서는 민간사업체 조사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각 표본 공공기관에서 약 4,644명을 목표로 하며, 성과 연령대 구분(40대 미만, 40대 이상)을 할당 기준으로 하는 할당추출법을 적용하였다. 각 표본 공공기관에서 추출하는 근로자 수와 선정방식은 앞서 언급한 민간사업체 조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하였다.



〈표 II-10〉 공공기관 규모별 조사근로자 수

(단위: 개, 명)

| 구분            | 30~99인 | 100~299인 | 300~499인 | 500인 이상 | 계     |
|---------------|--------|----------|----------|---------|-------|
| 표본 사업체 수      | 436    | 185      | 68       | 81      | 770   |
| 사업체당 조사 근로자 수 | 5      | 6        | 8        | 10      | -     |
| 조사 근로자 수      | 2,180  | 1,110    | 544      | 810     | 4,644 |

#### 다. 층화 및 표본 배분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는 업종 구분, 사업체 규모, 지역 구분 등을 층화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민간사업체의 경우 1차 층화는 업종이다. 산업 대분류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산업 대분류를 묶어서 6개의 업종으로 구분하였고 표본 배분과 추출 단계에서 16개 산업 대분류를 층화 변수로 고려했다.

2차 층화는 사업체 규모로, 상시근로자 수 기준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의 4개 층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전체 표본 사업체 수가 1,760개소로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 구분 변수는 내재적 층화(implicit stratification)에 이용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1차 층화는 기관 유형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2차 층화는 공공기관 규모를 상시근로자 수 기준과 지역 구분 변수의 층화 기준은 민간사업체와 동일하게 구분하였다. 지역 구분은 표본 규모를 고려하여 17개 시도로 구분하지 않고 ‘서울’, ‘인천/경기/강원’, ‘대전/세종/충북/충남’, ‘광주/전북/전남/제주’,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내재적 층화에 이용하였다.

〈표 II-11〉 층화 변수

| 구분    |        | 내용                                                                                                                                                                                                                                                                     |
|-------|--------|------------------------------------------------------------------------------------------------------------------------------------------------------------------------------------------------------------------------------------------------------------------------|
| 민간사업체 | 1차 층화  | C.제조업, D.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E.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F.건설업, G.도매 및 소매업, H.운수업, I.숙박 및 음식점업, J.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K.금융 및 보험업, L.부동산업 및 임대업,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P.교육 서비스업,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       | 2차 층화  |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
|       | 내재적 층화 | 지역                                                                                                                                                                                                                                                                     |
| 공공기관  | 1차 층화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
|       | 2차 층화  |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
|       | 내재적 층화 | 지역                                                                                                                                                                                                                                                                     |

표본 배분의 경우 민간사업체는 업종 구분에서 사업체 규모별 표본 배분은 제공근 비례배분을 적용했다. 업종 내 사업체 규모별 표본 배분은 제공근 비례배분을 적용하였으며, 규모별 표본 배분이 완료되면, 업종 및 규모 층 내에서 산업 대분류별 표본 배분은 사업체 수 기준의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였다.

〈표 II-12〉 민간사업체: 층별 표본 배분 결과

(단위: 개소)

| 업종                        | 규모 | 30~99인 | 100~299인 | 300~499인 | 500인 이상 | 계   |
|---------------------------|----|--------|----------|----------|---------|-----|
|                           |    |        |          |          |         |     |
| C. 제조업                    |    | 256    | 113      | 37       | 35      | 441 |
|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 7      | 4        | 3        | 2       | 16  |
|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    | 19     | 4        | 0        | 0       | 23  |
| F. 건설업                    |    | 97     | 48       | 19       | 19      | 183 |
| G. 도매 및 소매업               |    | 103    | 48       | 16       | 11      | 178 |
| H. 운수업                    |    | 64     | 40       | 10       | 7       | 121 |
| I. 숙박 및 음식점업              |    | 37     | 7        | 3        | 4       | 51  |
|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 54     | 27       | 13       | 11      | 105 |
| K. 금융 및 보험업               |    | 24     | 10       | 4        | 5       | 43  |
|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    | 15     | 5        | 1        | 1       | 22  |
|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    | 58     | 27       | 12       | 11      | 108 |

| 업종 \ 규모                    | 30~99인 | 100~299인 | 300~499인 | 500인 이상 | 계     |
|----------------------------|--------|----------|----------|---------|-------|
|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54     | 41       | 20       | 21      | 136   |
| P. 교육 서비스업                 | 25     | 6        | 2        | 0       | 33    |
|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131    | 66       | 21       | 24      | 242   |
|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18     | 7        | 3        | 1       | 29    |
|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22     | 6        | 1        | 0       | 29    |
| 합계                         | 984    | 459      | 165      | 152     | 1,760 |

공공기관은 유형별로 100개씩 균등 배분하였고 공공기관 내 사업체 규모별 표본 배분은 제곱근 비례배분을 적용하였다.

〈표 II-13〉 공공기관: 층별 표본 배분 결과

(단위: 개소)

| 공공기관 유형 \ 규모 | 30~99인 | 100~299인 | 300~499인 | 500인 이상 | 계   |
|--------------|--------|----------|----------|---------|-----|
| 국가기관         | 88     | 52       | 25       | 19      | 184 |
|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 54     | 20       | 19       | 33      | 126 |
| 초·중·고등학교     | 260    | 82       | 1        | 0       | 343 |
| 대학교          | 34     | 31       | 23       | 29      | 117 |
| 합계           | 436    | 185      | 68       | 81      | 770 |

## 라. 표본추출

표본추출들은 「전국사업체조사」 결과(2019년 12월 말 기준)를 활용하였고 각 산업(공공기관 유형) 및 규모 층에 할당된 표본 사업체는 해당 층에서 지역 층에 대하여 정렬한 후 계통추출법을 적용하여 추출함으로써 내재적 층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본 조사용으로 추출한 표본사업체가 만일에 현장조사에서 휴·폐업 등으로 유고되어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 층에서 특성(종사자의 규모, 소재지 등)이 유사한 예비표본 사업체를 선정하여 실사 연구본부의 지침을 통해서 교체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표본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각 층에 배분된 표본사업체 수에 해당하는 본 표본과 5배수의 예비표본 사업체를 구성, 본표본에 대해서 수차례 접촉으로도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비표본 사업체 리스트를 이용하여 접촉하도록 하였다. 예비표

본 대체 과정에서 조사원의 임의적 대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예비표본 대체 순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표본사업체 추출은 성희롱 담당자 1명과 규모별, 성 및 연령별로 대상 일반직원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일반직원의 경우 사업체 및 공공기관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되 평균 6명(5~10명)을 조사하며, 성과 연령대 구분(40대 미만, 40대 이상)을 할당 기준으로 하는 할당추출법을 적용했다. 단,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체의 성 및 연령 대별 근로자 비중을 반영하여 조정했다.

〈표 II-14〉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체의 성희롱 업무담당자/일반직원 조사대상자 할당  
(단위: 명)

| 구분       | 성희롱<br>업무담당자 | 일반직원        |             |             |             |    |
|----------|--------------|-------------|-------------|-------------|-------------|----|
|          |              | 남성          |             | 여성          |             | 계  |
|          |              | 만 40세<br>미만 | 만 40세<br>이상 | 만 40세<br>미만 | 만 40세<br>이상 |    |
| 30~99인   | 1            | 1           | 1           | 2           | 1           | 5  |
| 100~299인 | 1            | 1           | 1           | 3           | 1           | 6  |
| 300~499인 | 1            | 2           | 1           | 3           | 2           | 8  |
| 500인 이상  | 1            | 2           | 2           | 4           | 2           | 10 |

### 3. 모수추정

#### 가. 가중치 작성

사업체 대상 통계조사에서 가중치는 설계 가중치, 무응답 조정, 사후층화 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서 작성하였다. 민간사업체 대상 조사에서 표본사업체는 산업 대분류(16)와 사업체 규모(4)를 층으로 하는 층화계통추출법에 의해서 추출되어, 산업 대분류와 사업체 규모로 결정되는 각 세부 층에서 표본사업체의 추출률은 동일하다. 이 조사에서 표본사업체의 추출확률은 각 층에서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text{추출확률} = \frac{(\text{해당 층의 표본 사업장(공공기관) 수})}{(\text{해당 층의 모집단 사업장(공공기관) 수})} = \frac{n_h}{N_h}$$

설계 가중값은 산업 대분류(공공기관 유형)와 사업체 규모로 결정되는 각 세부 층에서

표본사업체 및 공공기관의 추출확률의 역수로 계산했다. 표본 사업장(공공기관)의 설계 가중값(design weight)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w_i = \frac{1}{\text{추출 확률}} = \frac{N_h}{n_h}$$

표본조사에서 무응답은 단위 무응답과 항목 무응답으로 구분된다. 단위 무응답(개체 무응답, unit nonresponse)은 표본 사업장이 응답을 거부하거나 접촉이 불가능하여 해당 사업장의 전체 자료를 얻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표본조사에서 단위 무응답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치 조정을 통해서 이를 보정하고, 항목 무응답에 대해서는 일부 조사항목의 무응답 대체를 위해서 무응답 대체(imputation)가 주로 사용된다. 단위 무응답에 대한 무응답 조정을 위해서는 무응답 조정 셀(cell)을 정의해야 한다. 이 조사에서 사용된 무응답 조정 셀은 표본설계에서의 층화 변수와 마찬가지로 산업 대분류 구분(공공기관의 경우는 기관유형 구분)과 사업체 규모를 고려하였다. 표본 사업체의 업종 구분과 규모가 동일하면 주요 조사변수가 유사한 값을 나타낼 것이고, 응답률도 유사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각 무응답 조정셀에서 무응답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text{무응답 조정계수} = \frac{n_h}{r_h}$$

여기서,  $n_h$ 는 해당 층의 표본 사업체 수,  $r_h$ 는 해당 층의 실제 응답 사업체 수이다.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 조정은 사업체 특성 변수에 대해서 모집단과 표본 자료의 분포를 일치시키는 과정이다. 사후층화 단계에서도 산업 대분류(또는 기관 유형)와 사업체 규모 구분을 층화 변수로 이용하였다. 최종 사업체 가중치는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최신 모집단 정보를 이용하여 사후층화 보정의 단계를 거쳐서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text{최종 가중치} = \text{설계가중치} \times \text{무응답 조정계수} \times \text{사후층화 조정값}$$

사후층화 단계에서는 사업체 수와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두 가지 유형의 가중치를 산출한다. 사업체 수 기준의 가중치는 사업체 수준의 응답 항목에 대한 분석에 활용하도록 하고, 상시근로자 수 기준의 가중치는 각종 근로자 수 추정의 목적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근로자 조사에 대한 가중치 작성 과정을 살펴보았다. 사업체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사업체 대상의 가중치 중 무응답

조정까지 반영된 가중치에 대해서 이후 표본 사업체 내 근로자 추출률의 역수를 이용하여 조사 근로자에 대한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text{근로자1차가중치} = \text{설계가중치} \times \frac{\text{표본사업체(공공기관)의 해당 성 및 연령대의 전체 근로자 수}}{\text{표본사업체(공공기관)의 해당 성 및 연령대의 응답 근로자 수}}$$

이와 같은 조사 근로자에 대한 1차 가중치를 앞서와 마찬가지로 사후층화 조정을 거쳐 최종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사후층은 산업 대분류와 사업체 규모 구분을 이용하여 구성하였고, 최종 가중치는 최신 모집단의 근로자 수에 대해서 사후층화 보정의 단계를 거쳐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text{최종 가중치} = \text{근로자 1차 가중치} \times \text{사후층화 조정값}$$

근로자를 추출하는 과정은 해당 표본사업체에서 전체 근로자 명부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근로자 조사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가중치를 엄밀한 절차에 따라 산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근로자 조사를 위한 가중치는 해당 표본 사업체에서 전체 근로자 중에서 랜덤추출된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한 것으로 실제 표본사업체 내 근로자 추출과정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가중치를 반영하여 분석된 결과를 해석할 때는 이와 같은 한계점을 인식해서 주의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 나. 추정 방법

본 조사에서 각종 모평균 추정을 위해서 사용된 가중치를 이용한 추정량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1) 평균 및 비율 추정

$$\bar{y} = \frac{\sum_{h=1}^L \sum_{i=1}^{n_h} w_{hi} y_{hi}}{\sum_{h=1}^L \sum_{i=1}^{n_h} w_{hi}} = \frac{\sum_{h=1}^L \sum_{i=1}^{n_h} w_{hi} y_{hi}}{w_{...}}$$

○ 비율 추정 시  $y_{hij}$ 의 값은 0 또는 1의 값을 가진다.

## ○ 기호 정의

- $w_{hi}$ :  $h$  층,  $i$  응답 사업체 및 공공기관 또는 일반직원의 가중값
- $y_{hi}$ :  $h$  층,  $i$  응답 사업체 및 공공기관 또는 일반직원의 조사값
- $h$ : 설계 층(업종(기관유형), 규모, 성, 연령

$$- w_{..} = \sum_{h=1}^L \sum_{i=1}^{n_h} w_{hi} \text{ 전체 응답자에 대한 가중치 합계}$$

## 2) 분산 추정: 테일러 선형근사 추정량

$$\widehat{var}(\bar{y}) = \sum_{h=1}^L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 - \bar{e}_{h.})^2$$

$$○ e_{hi} = \left( \sum_k w_{ki} (y_{ki} - \bar{y}) \right) / w_{..}$$

$$○ \bar{e}_{h.} = \left( \sum_{i=1}^{n_h} e_{hi} \right) / n_h$$

$$○ w_{..} = \sum_{h=1}^L \sum_{i=1}^{n_h} w_{hi}$$

## 3) 표준오차(SE) 및 상대표준오차(RSE)

## ○ 표준오차 추정량

$$\widehat{se}(\bar{y}) = \sqrt{\widehat{var}(\bar{y})}$$

## ○ 95% 신뢰수준에서의 오차의 한계

$$1.96 \times \sqrt{\widehat{var}(\hat{p})}$$

## ○ 상대표준오차 추정량

$$rse(\bar{y}) = \frac{\widehat{se}(\bar{y})}{\bar{y}} \times 100$$

#### 4. 무응답 분석

무응답은 통계의 품질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어 표본조사에서 조사의 품질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무응답 분석을 활용하고 있다. 응답률이 낮은 추정 결과는 심각한 편향이 존재할 수 있으며, 혹시 편향이 작다고 하더라도 조사된 유효 표본의 수가 계획된 수보다 작으므로 조사의 정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통계청은 품질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조사통계의 정확성 검증 지표로 무응답 오차와 처리에 대한 방법론을 작성하여 보급하고 있다<sup>4)</sup>.

「성희롱 실태조사」는 기존 실태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응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사이다. 따라서 본 절은 무응답의 다양한 형태를 분석하여 본 조사에 무응답 편향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다음 조사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무응답 분석을 하였다.

##### 가. 응답률 산정 방법<sup>5)</sup>

성희롱 실태조사는 전국의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민간사업체와 공공기관의 성희롱 업무담당자(2,530명)와 일반직원(15,158명)을 조사하는 실태조사이며, 표본은 본 표본 사업체(공공기관 포함)와 예비표본 사업체(공공기관 포함)로 나누어 설계하였다.

무응답은 응답자를 접촉하는 데 실패하거나 접촉은 하였으나 응답 획득에 실패한 경우에서 발생한다. 전자인 응답자에 대한 접촉 실패는 응답자가 일시적 부재중이거나 멀리 출타 중일 때 주로 발행하며, 후자는 응답자와 접촉하였으나 응답에 비 성공한 경우이다. 본 연구는 조사 결과 유형을 APPOR(2009)에서 정의한 기준을 활용하였으며, 여기에 성희롱 실태조사의 특성을 반영해 유형화하여 제시하였다. 조사 결과는 응답률을 산정하기 위해 크게 ‘완료’, ‘불응’, ‘비접촉’, ‘부적격’, ‘불능’으로 구분하였고, 조사 결과 내용은 ‘조사성공’, ‘조사거절’, ‘일반직원 조사거절’, ‘담당자 부재’, ‘비수신’, ‘통화중’, ‘종사자 수 30인 미만 사업체 및 공공기관’, ‘폐업’, ‘해당 사업체 및 공공기관 아님’, ‘FAX, ARS 결번’, ‘기타’로 구분하였다.

성희롱 실태조사의 응답률은 부적격 표본을 제외한 적격표본만을 대상으로 산정하고

4) 김영원·이용희(2008). 조사통계의 정확성지표 품질관리 매뉴얼. 통계청.; 통계청(2009). 국가통계 실무지침: 조사통계실무자를 위한 가이드.

5) 장미혜·이미정·김동식·주재선·동제연·고현승·노성훈·이시림(2019). 2019년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84~87쪽.



있다. 이에 따라 본조사에서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 사업체 및 공공기관’, ‘폐업’, ‘해당 사업체 및 공공기관 아님’, ‘FAX, ARS 결번’과 같이 실제 조사할 수 없거나, 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체 및 공공기관을 부적격 조사 대상으로 두고 응답률 산정에서 이를 제외하고 응답률을 산정하였다. 본 조사는 응답률을 4가지 유형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각 유형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표 II-15〉 조사 결과에 대한 사업체와 공공기관명부

| 구분      | 결과                      | 내용                                                                   |
|---------|-------------------------|----------------------------------------------------------------------|
| 완료(I)   | 조사성공                    | - 조사 완료한 경우                                                          |
| 불응(R)   | 조사거절                    | - 조사 무관심, 사업체 및 공공기관 정보 노출 기피로 거절, 바쁘거나 귀찮아서 거절, 특별한 이유 없이 강력하게 거절 등 |
|         | 일반직원 조사거절               | - 해당 사업체 및 공공기관에서 일반직원이 모두 응답하지 않는 경우                                |
| 비접촉(NC) | 담당자 부재                  | - 적격응답자가 단기(휴가, 출장) 및 장기(휴직) 부재한 경우                                  |
|         | 비수신                     | - 적격응답자가 비수신한 경우                                                     |
|         | 통화 중                    | - 적격응답자가 통화 중인 경우                                                    |
| 부적격     | 종사자 수 30인 미만 사업체 및 공공기관 | - 해당 사업체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 수 30인 미만으로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 폐업                      | - 사업체 및 공공기관이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
|         | 해당 기관 아님                | - 해당 위치에 사업체 및 공공기관이 없는 경우                                           |
|         | FAX, ARS 결번             | - 해당 사업체 및 공공기관의 연락처가 없는 경우                                          |
| 불능(O)   | 기타                      | - 기타 다른 사유로 응답이 불가능할 경우                                              |

### 1) 응답률(Response rate)

응답률은 조사에서 응답을 한 비율을 나타내는 척도이다. APPOR(2009)는 응답률을 6가지로 정의하고 있으나, 본 조사는 부적격 조사 대상을 제외한 조사 대상 중 응답한 사업체와 공공기관 비율을 활용하고 있다.

$$\text{응답률} = \frac{I}{I+R+NC+O}$$

여기서 I = 응답 사업체 및 공공기관, R = 불응 사업체 및 공공기관, NC = 비접촉, O = 기타이다.

## 2) 접촉률(Contact rate)

접촉률은 적격표본 중에서 접촉 가능한 사업체 및 공공기관의 비율을 나타내는 비율이다. 이 비율은 실제로 조사를 시행할 때 추출단위에 얼마나 쉽게 접근해 접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나타낸다.

$$\text{접촉률} = \frac{I+R+O}{I+R+NC+O}$$

여기서 I = 응답 사업체 및 공공기관, R = 불응 사업체 및 공공기관, NC = 비접촉, O = 기타이다.

## 3) 협조율(Cooperation rate)

협조율은 접촉한 표본 중 조사에 응답한 모든 표본들의 비율을 의미하며, 본 조사는 다음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text{조사대상 협조율} = \frac{I}{I+R+O}$$

여기서 I = 응답 사업체 및 공공기관, R = 불응 사업체 및 공공기관, O = 기타이다.

## 4) 거부율(Refusal rate)

거부율은 이용 가능한 표본 중 응답자가 면접에 응하기를 거부한 표본 또는 중도에 면접을 포기한 표본의 비율을 의미한다. 즉, 이 비율은 실제로 조사를 시행할 때 추출 단위(사업체, 공공기관)가 응답을 거부하는 비율을 말한다. APPOR(2009)은 3가지 거부율 계산 방법을 정의하고 있고, 이 중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거부율을 정의했다.

$$\text{거부율} = \frac{R}{I+R+N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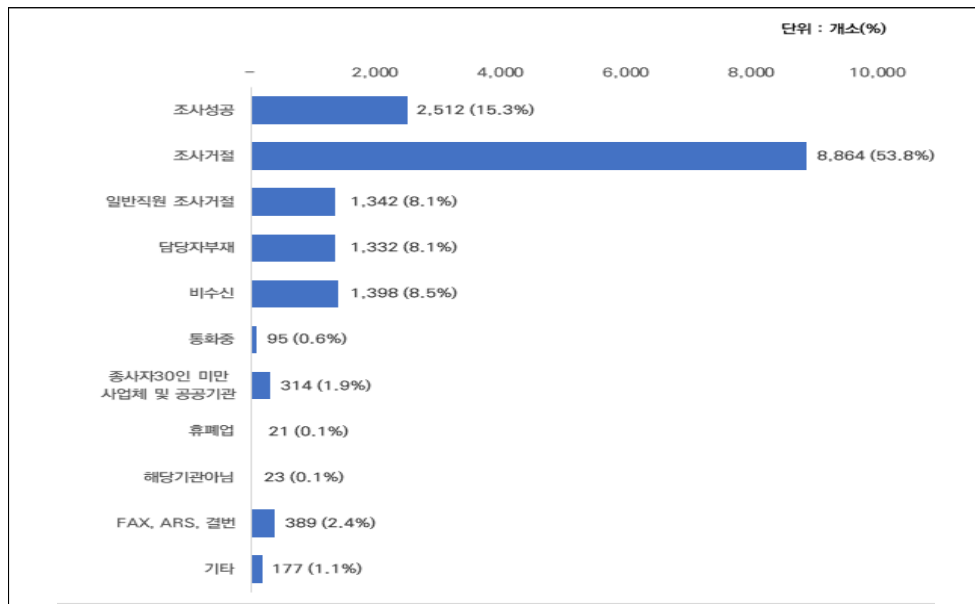
여기서 I = 응답 사업체 및 공공기관, R = 불응 사업체 및 공공기관, NC = 비접촉, O = 기타이다.

## 나. 응답률 분석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에 대한 응답률 분석은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제공한 파라데이터를 이용했으며, 파라데이터는 본 표본 여부, 방문 결과, 방문 횟수 등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성희롱 실태조사는 민간사업체와 공공기관에 대해 서로 다른 조사 방법으로 수집됨에 따라 방문 횟수 등의 분석을 할 수 없다. 이에 응답률 분석은 두 집단에 따른 기초적 분석 통계를 제시하였고 민간사업체에 대해서는 방문 횟수와 사업체 규모별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에서는 총 16,467개소의 민간사업체와 공공기관을 조사하였다. 이 중 ‘종사자 수 30인 미만 사업체 및 공공기관’, ‘폐업’, ‘해당 사업체 및 공공기관 아님’, ‘FAX, ARS, 결번’과 같은 부적격 사업체 및 공공기관이 747개소로 나타나, 총 15,720개소가 적격 사업체 및 공공기관으로 집계되었다.

총 조사 진행 사업체 및 공공기관 중 15.3%인 2,512개소가 조사에 성공했고, 53.8%(8,864개소)는 조사를 거부(조사 거절, 일반직원 조사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컨택했지만 적격 응답자와 접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담당자 부재, 비수신, 통화 중)도 17.2%(2,825개소)로 비교적 높았으며 종사자 수가 30인 미만이거나 폐업 등의 부적격 조사 대상 또한 4.5%(747개소)로 나타났다.



[그림 II-3] 조사 진행표본 최종결과

이와 같은 조사 결과로 응답률을 산정해 보면, 적격 조사 대상 중 본조사에서의 조사 성공 사업체와 공공기관은 2,512개소로, 응답률은 16.0%를 보였다. 적격 조사 대상 중 접촉 가능한 사업체 및 공공기관의 접촉률은 82.0%로 나타났고, 접근 가능한 적격단위 중에서 응답한 비율(협조율)은 19.5%, 그리고 응답을 거부한 비율(거부율)은 64.9%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비교해 보면, 민간사업체는 응답률이 15.7%로 공공기관(16.8%)에 비해 낮았다. 접촉률은 83.5%로 공공기관(78.4%)보다 높았지만, 협조율은 18.8%로 공공기관(21.4%)에 비해 낮았다. 즉, 응답률 결과로 보면 민간사업체는 접촉은 어렵지 않았으나 응답자의 협조가 낮았던 반면,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접촉하기는 어렵지만, 협조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6〉 응답률, 접촉률, 협조율, 거부율 결과

(단위: %)

| 구분  | 전체   | 민간사업체 | 공공기관 |
|-----|------|-------|------|
| 응답률 | 16.0 | 15.7  | 16.8 |
| 접촉률 | 82.0 | 83.5  | 78.4 |
| 협조율 | 19.5 | 18.8  | 21.4 |
| 거부율 | 64.9 | 67.0  | 59.9 |

민간사업체의 경우 방문 횟수와 사업체 규모별로 응답률을 살펴보면 〈표 II-17〉과 같다. 민간사업체는 최대 4회의 방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방문 횟수별 응답률을 보면 1회 방문 시 7.4%로 매우 낮았으나 2회 방문 시 25.2%, 3회 방문 시 90.3%로 크게 상승했고 4회 방문에서는 약간 하락하였으나 80.0%로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즉, 응답률은 3회 방문에서 가장 높았으나, 전반적으로 방문 횟수가 많으면 응답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특성은 접촉률과 협조율, 거부율에서도 동일한 패턴을 보인다. 향후 민간사업체 조사는 응답률 제고를 위해서 최소 3회 이상 방문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규모에 따른 응답률은 차이가 거의 없다. 500인 미만에서는 응답률이 15.7%로 동일했고 500인 이상에서는 응답률이 15.0%로 약간 낮아졌다. 300~499인 사업체는 접촉률은 다른 규모의 사업체에 비해 다소 낮고 협조율이 다소 높은 특성을 보이나, 전반적으로 규모에 따른 응답률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II-17〉 민간사업체의 방문 횟수 및 규모별 응답률, 접촉률, 협조율, 거부율 결과

(단위: %)

| 구분        |          | 응답률  | 접촉률  | 협조율  | 거부율  |
|-----------|----------|------|------|------|------|
| 방문<br>횟수  | 1회       | 7.4  | 80.1 | 9.3  | 71.5 |
|           | 2회       | 25.2 | 88.8 | 28.4 | 63.4 |
|           | 3회       | 90.3 | 98.1 | 92.1 | 7.5  |
|           | 4회       | 80.0 | 95.0 | 84.2 | 15.0 |
| 사업체<br>규모 | 30~39인   | 15.7 | 84.6 | 18.6 | 67.8 |
|           | 100~299인 | 15.7 | 83.3 | 18.8 | 67.1 |
|           | 300~499인 | 15.7 | 79.5 | 19.8 | 63.1 |
|           | 500인 이상  | 15.0 | 81.3 | 18.5 | 65.2 |

## 5. 오차분석<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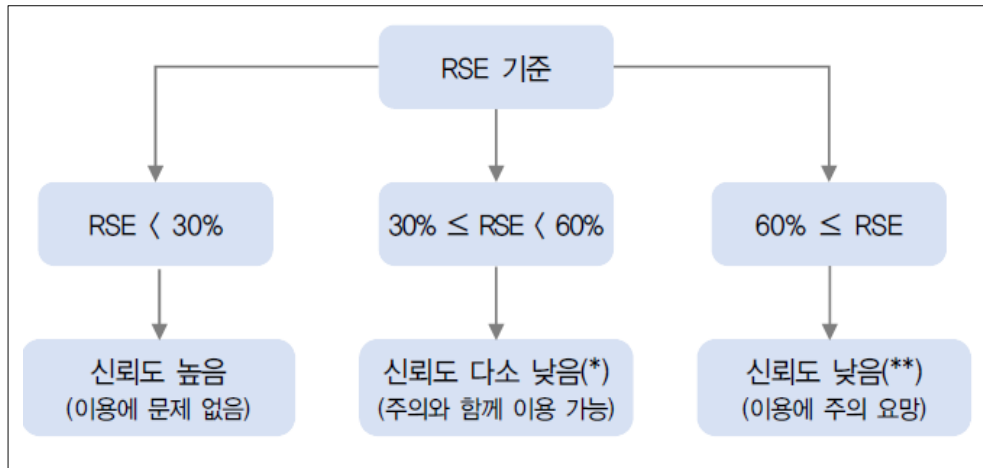
### 가. 오차분석 방법

통계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표준오차(SE), 상대표준오차(RSE), 신뢰구간 등으로 다양하다. 통계청은 2017년 3월 개정된 [표본설계 및 관리지침] 통계청 예규 제9조와 제10조에 표본오차의 작성과 표본오차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 예규 제9조는 “표본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는 표본조사의 정확성을 평가하고 이용자에게 정확한 통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표본오차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고, 제10조 ①항은 표본조사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 상대표준오차(RSE)를 보고서 및 보도자료 등에 수록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이 예규를 근거로 통계품질진단 시 승인 통계 표본크기의 적절성을 상대표준오차(relative standard error)로 평가한다. 통계청은 자체통계품질진단 매뉴얼<sup>7)</sup>을 통해 상대표준오차 제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통계청은 추정값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해 상대표준오차를 제시한 경우, 조사 규모나 목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전제로 상대표준오차(RSE)의 값이 30% 미만이면 신뢰할 수 있는 추정값으로, 30% 이상~60% 미만의 값은 주의와 함께 이용 가능한

6) 황정임·안상수·주재선·김동식·정수연·권인숙·이경환·윤수경(2016).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93~94쪽.

7) 통계청(2020). 2020년 자체통계품질진단 매뉴얼(조사통계). 60~61쪽.

값으로, 60% 이상 값은 이용에 주의가 필요한 값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림 II-4] 통계청의 상대표준오차(RSE) 평가 기준

성희롱 실태조사의 오차분석은 통계청 기준에 따라 통계의 안정성을 검토했다. 오차 분석은 가중치를 이용해 모수를 추정하고 추정치의 분산추정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추정치의 분산추정치는 직접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분산추정치는 테일러 전개 방법(Taylor's expansion method), 잭나이프 방법(Jackknife method), 부트스트랩 방법(Bootstrap method) 등을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SAS 9.4에 내장된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 테일러 전개방법을 사용하여 분산추정치를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대표준편차를 계산하고 있다.

## 나. 주요 통계표에 대한 오차분석 결과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에서는 성희롱 업무담당자(2,530명)와 일반직원(15,204명)에 대해 성희롱 피해 실태 등을 묻고 있다. 오차분석은 성희롱 업무담당자의 경우 본 조사의 핵심 결과인 성희롱 발생, 상담, 조사/심의, 징계 조치에 대해 검토했고 일반직원의 경우 성희롱 유형에 대해 실시하였다.

### 1) 성희롱 업무담당자

성희롱 업무담당자를 조사한 지난 3년간 성희롱 사건 처리 현황의 RSE 수준을 살펴

보면, 전반적으로 RSE 값이 25% 미만으로 신뢰성에 문제가 없는 양호한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사건 처리 단계별로 보면, 각각 사건조사 6.1%, 사건 발생 7.1%, 사건(성희롱) 인정 7.9% 순으로 낮았고, 사건심의가 8.1%로 가장 높았다.

〈표 II-18〉 지난 3년간 성희롱 사건 처리 현황(합계)

(단위: 건, %)

| 구분  | 발생 건수 | 조사 건수 | 심의 건수 | 성희롱 인정 건수 |
|-----|-------|-------|-------|-----------|
| 합계  | 7,651 | 6,028 | 4,407 | 3,708     |
| RSE | 7.1   | 6.1   | 8.1   | 7.9       |

주: 합계는 발생 건수 252명, 조사 건수 252명, 심의 건수 224명, 인정 건수 180명의 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 2) 일반직원

일반직원을 조사한 지난 3년간 성희롱 유형별 피해율의 RSE 수준을 살펴보면,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관련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요구하는 행위’, ‘성적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 평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성적 요구를 전제조건으로 고용, 평가 등의 이익을 암시하거나 제안하는 행위’,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성적 관계를 하거나 시도한 행위’를 제외한 모든 성희롱 유형의 피해율 RSE 값은 30% 미만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 성희롱 유형별로 보면, 피해율이 가장 높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가 10.0%로 낮았고 피해율이 낮은 ‘성적 관계를 요구하는 행위’, ‘성적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 평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성적 요구를 전제 조건으로 고용, 평가 등의 이익을 암시하거나 제안하는 행위’,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성적 관계를 하거나 시도한 행위’ 등 발현율이 낮은 유형에서 있어 30~40%로 다소 높은 RSE 값을 보였다. 하지만 이외 유형에서는 비교적 안정적 상대표준오차를 보여주었다.

〈표 II-19〉 지난 3년간 성희롱 유형별 피해율의 상대표준오차

(단위: %)

| 구분                                                                                                  | 피해율 | RSE  |
|-----------------------------------------------------------------------------------------------------|-----|------|
| (1)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 3.4 | 10.0 |
| (2)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SNS, 전화,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 포함)                                                        | 2.2 | 14.4 |
| (3)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관련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0.5 | 29.3 |
| (4) 사적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 0.4 | 18.1 |
| (5) 성적 관계를 요구하는 행위                                                                                  | 0.1 | 33.8 |
| (6)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                                                                     | 1.3 | 14.3 |
| (7)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쳐다보는 행위                                                                     | 0.6 | 12.9 |
| (8)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0.1 | 22.7 |
| (9)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노출하는 행위                                                                      | 0.1 | 24.6 |
| (10) 포옹, 손잡기, 신체 밀착, 안마, 입맞춤 등의 신체 접촉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0.5 | 16.9 |
| (11)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 0.2 | 24.4 |
| (12) 성적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 평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0.1 | 36.4 |
| (13) 성적 요구를 전제조건으로 고용, 평가 등의 이익을 암시하거나 제안하는 행위                                                      | 0.1 | 30.0 |
| (14)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성적 관계를 하거나 시도한 행위<br>(예: 회식 후 만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려고 모델로 유인한 행위 등) | 0.1 | 33.3 |

주: 백분율은 15,073명(응답 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공공기관 유형별로 보면, ‘성적 관계를 요구하는 행위’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성적 관계를 하거나 시도한 행위(예: 회식 후 만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려고 모델로 유인한 행위 등)’ 등은 RSE가 60% 이상으로 높아 이용에 주의가 요망되는 문항이었다. 이외 문항은 이용하는 데 문제는 없었거나 다소 주의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소 낮은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는 RSE가 60%를 넘는 경우는 없었고 전반적으로 약간의 주의를 가지고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기관과 대학의 경우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를 제외하면 대부분 주의하여 활용하거나 신뢰도가 낮아 이용에 높은 수준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0〉 공공기관 유형별 지난 3년간 성희롱 유형별 피해율의 상대표준오차

(단위: %)

| 구분                                                                                              | 국가   | 지방자치<br>단체 | 초·중·고 | 대학    |
|-------------------------------------------------------------------------------------------------|------|------------|-------|-------|
| (1)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 13.3 | 13.0       | 23.0  | 28.9  |
| (2)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SNS, 전화,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 포함)                                                    | 20.6 | 19.6       | 31.0  | 42.6  |
| (3)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관련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29.6 | 32.4       | 49.8  | 62.0  |
| (4) 사적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 36.7 | 29.2       | 60.1  | 63.0  |
| (5) 성적 관계를 요구하는 행위                                                                              | 82.1 | 51.4       | 100.1 | -     |
| (6)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                                                                 | 26.0 | 16.2       | 50.4  | 72.3  |
| (7)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쳐다보는 행위                                                                 | 25.3 | 24.3       | 36.7  | 45.5  |
| (8)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48.6 | 49.6       | 58.3  | 100.8 |
| (9)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노출하는 행위                                                                  | 53.4 | 36.9       | 60.8  | -     |
| (10) 포옹, 손잡기, 신체 밀착, 안마, 입맞춤 등의 신체 접촉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29.4 | 24.4       | 44.1  | 50.3  |
| (11)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 50.9 | 36.8       | 62.1  | 100.5 |
| (12) 성적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 평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59.4 | 55.7       | -     | -     |
| (13) 성적 요구를 전제조건으로 고용, 평가 등의 이익을 암시하거나 제안하는 행위                                                  | 58.0 | 55.7       | 70.8  | 77.2  |
| (14)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성적 관계를 하거나 시도한 행위(예: 회식 후 만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려고 모델로 유인한 행위 등) | 72.5 | 49.9       | 75.0  | -     |

주: 1) 피해율은 해당 항목에서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

2) 백분율은 15,073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민간사업체의 경우 규모별로 보면, 성희롱 유형별 피해율은 전반적으로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상대표준오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99인 사업체는 '성적 관계를 요구하는 행위'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성적 관계를 하거나 시도한 행위(예: 회식 후 만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려고 모델로 유인한 행위 등)'를 제외하고 이외 문항의 경우 약간의 주의로 활용가능하나,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문항 대부분에 있어 주의하여 활용하거나 높은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21〉 민간사업체 규모별 지난 3년간 성희롱 유형별 피해율의 상대표준오차

(단위: %)

| 구분                                                                                              | 30~99 | 100~299 | 300~499 | 500 이상 |
|-------------------------------------------------------------------------------------------------|-------|---------|---------|--------|
| (1)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 14.9  | 20.2    | 31.6    | 33.6   |
| (2)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SNS, 전화,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 포함)                                                    | 18.0  | 22.8    | 35.1    | 37.1   |
| (3)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관련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32.7  | 37.6    | 66.5    | 60.4   |
| (4) 사적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 34.6  | 40.3    | 81.1    | 63.6   |
| (5) 성적 관계를 요구하는 행위                                                                              | 65.0  | 71.7    | -       | 100.8  |
| (6)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                                                                 | 23.3  | 34.5    | 40.1    | 31.6   |
| (7)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쳐다보는 행위                                                                 | 25.2  | 33.3    | 38.6    | 50.2   |
| (8)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52.4  | 45.7    | 83.7    | 77.1   |
| (9)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노출하는 행위                                                                  | 49.7  | 55.1    | 75.8    | 81.1   |
| (10) 포옹, 손잡기, 신체 밀착, 안마, 입맞춤 등의 신체 접촉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30.6  | 51.5    | 58.3    | 39.1   |
| (11)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 47.5  | 55.5    | 66.6    | 73.7   |
| (12) 성적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 평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38.5  | 77.1    | 99.9    | -      |
| (13) 성적 요구를 전제조건으로 고용, 평가 등의 이익을 암시하거나 제안하는 행위                                                  | 49.6  | 61.7    | -       | -      |
| (14)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성적 관계를 하거나 시도한 행위(예: 회식 후 만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려고 모델로 유인한 행위 등) | 61.8  | 99.9    | -       | -      |

주: 1) 피해율은 해당 항목에서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

2) 백분율은 15,073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요약해 보면 공공기관의 유형별 성희롱 피해율은 전반적으로 주의하여 활용가능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비교적 높은 상대표준오차를 보이고 있고, 민간사업체의 규모별로 볼 경우 300인 이상 사업체는 비교적 높은 상대표준오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향후 조사에서는 표본 규모 증가 등을 통해 상대표준오차를 낮추는 방안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반직원의 경우 지난 3년간 성희롱 유형별 2차 피해율의 RSE 수준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다소 낮은 부분이 있으나 모든 항목이 약간의 주의와 함께 이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2〉 지난 3년간 성희롱 유형별 2차 피해율

(단위: %)

| 구분                                                     | 피해율  | RSE  |
|--------------------------------------------------------|------|------|
| (1) 주변에 성희롱 피해를 말했을 때 공감이나 지지받지 못하고 의심 또는 참으라는 얘기를 들었다 | 12.1 | 19.5 |
| (2) 악의적인 소문이 유포되었다                                     | 4.2  | 21.0 |
| (3) 나의 평판, 인적 정보, 고충(피해) 내용 등이 온/오프라인 상으로 유포되었다        | 3.7  | 28.7 |
| (4) 나에게 폭언, 폭행을 했다                                     | 2.6  | 35.1 |
| (5) 나에게 과도한 업무를 주거나 업무 분장 외,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등 업무적으로 괴롭혔다  | 4.4  | 26.4 |
| (6) 부당한 처우에 대한 암시,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발언 등으로 나에게 압력을 가했다      | 6.6  | 23.7 |
| (7) 조사과정에서 행위자 편을 들거나 불공정하게 진행하였다                      | 2.0  | 25.1 |
| (8)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사 진행 등 사건처리 과정을 지연했다                   | 2.2  | 36.1 |
| (9) 비밀보장에 소홀하거나 일부러 공개하여 나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 3.5  | 38.9 |
| (10) 나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자와의 합의를 강요하였다                        | 2.5  | 34.9 |
| (11) 행위자에게 책임을 가볍게 묻고 사건을 종료했다                         | 3.5  | 30.9 |
| (12) 행위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나에게 책임을 전가하였다                | 2.3  | 30.9 |
| (13) 다른 유사 사건이 생길 때마다 계속 나를 거론하였다                      | 2.7  | 35.2 |
| (14) 나에게 퇴사를 유도, 강요하였다                                 | 0.9  | 53.5 |

주: 백분율은 986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 조사결과

|               |     |
|---------------|-----|
| 1. 조사대상자 특성   | 43  |
| 2. 일반직원 조사결과  | 46  |
| 3. 업무담당자 조사결과 | 195 |



## 1. 조사대상자 특성

### 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조사는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를 대상으로, 업무담당자와 일반직원에게 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직원은 총 15,073명을 조사하였고, 가중치가 적용된 결과로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 16.8%, 민간사업체 83.2%였다. 성별은 남성 61.5%, 여성 38.5%였다. 연령은 20대 이하 12.0%, 30대 27.3%, 40대 30.7%, 50대 이상 30.0%였고, 고용형태는 정규직 89.3%, 비정규직 10.0%였다. 직급은 관리직 34.2%, 일반직 65.4%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근무환경 변화와 관련해서는 재택근무를 실시하여 출근 횟수가 줄었다는 응답은 18.3%, 줌, 단체카톡방 등 온라인/비대면 방법을 이용한 업무 진행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44.4%,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면서 회식, 단합대회 등이 줄었다는 응답은 90.4%였다.

〈표 Ⅲ-1〉 일반직원 응답분포<sup>8)</sup>

(단위: %)

| 구분   | 조사표본   |        | 가중표본   |       |
|------|--------|--------|--------|-------|
|      | 응답자(명) | 계      | 응답자(명) | 계     |
| 전 체  | 15,073 | 100.0  | 15,073 | 100.0 |
| 유형   | 공공기관   | 4,509  | 2,534  | 16.8  |
|      | 민간사업체  | 10,564 | 12,539 | 83.2  |
| 성별   | 남성     | 5,963  | 9,275  | 61.5  |
|      | 여성     | 9,110  | 5,798  | 38.5  |
| 연령   | 20대 이하 | 2,230  | 1,809  | 12.0  |
|      | 30대    | 4,151  | 4,113  | 27.3  |
|      | 40대    | 2,909  | 4,625  | 30.7  |
|      | 50대 이상 | 5,783  | 4,526  | 30.0  |
| 직급유형 | 관리직    | 3,501  | 5,150  | 34.2  |
|      | 일반직    | 11,489 | 9,853  | 65.4  |
|      | 모름/무응답 | 83     | 69     | 0.5   |
| 고용형태 | 정규직    | 13,112 | 13,458 | 89.3  |

8) 조사표본은 실제 조사가 이뤄진 표본 수를 의미하고, 가중표본은 모집단 분포를 반영하여 가중치 조정을 통해 보정된 분포를 의미한다. 본 조사의 결과는 가중치가 적용된 가중표본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문항별 결과표는 가중표본으로 제시하였다.

| 구분                                 |        | 조사표본   |      | 가중표본   |      |
|------------------------------------|--------|--------|------|--------|------|
|                                    |        | 응답자(명) | 계    | 응답자(명) | 계    |
| 비정규직                               |        | 1,845  | 12.2 | 1,509  | 10.0 |
| 모름/무응답                             |        | 116    | 0.8  | 106    | 0.7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국가기관                               |        | 1,489  | 33.0 | 640    | 25.3 |
| 지방자치단체                             |        | 945    | 21.0 | 476    | 18.8 |
| 초/중/고                              |        | 1,302  | 28.9 | 936    | 36.9 |
| 대학                                 |        | 773    | 17.1 | 481    | 19.0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제조업                                |        | 2,612  | 24.7 | 3,551  | 28.3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 1,280  | 12.1 | 1,276  | 10.2 |
| 개인서비스업                             |        | 1,301  | 12.3 | 1,016  | 8.1  |
| 유통서비스업                             |        | 1,382  | 13.1 | 1,416  | 11.3 |
| 사업서비스업                             |        | 1,897  | 18.0 | 3,053  | 24.3 |
| 사회서비스업                             |        | 2,092  | 19.8 | 2,227  | 17.8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30~99인                             |        | 5,020  | 47.5 | 4,772  | 38.1 |
| 100~299인                           |        | 2,873  | 27.2 | 3,353  | 26.7 |
| 300~499인                           |        | 1,299  | 12.3 | 1,076  | 8.6  |
| 500인 이상                            |        | 1,372  | 13.0 | 3,338  | 26.6 |
| 코로나19와 근무환경                        |        |        |      |        |      |
| 재택근무                               | 그렇다    | 2,623  | 17.4 | 2,578  | 18.3 |
| 실시하여                               | 아니다    | 12,336 | 81.8 | 12,189 | 80.9 |
| 출근 횟수 감소                           | 모름/무응답 | 114    | 0.8  | 125    | 0.8  |
| 온라인/<br>비대면 업무                     | 그렇다    | 6,437  | 42.7 | 6,696  | 44.4 |
| 진행 증가                              | 아니다    | 8,520  | 56.5 | 8,252  | 54.7 |
|                                    | 모름/무응답 | 116    | 0.8  | 125    | 0.8  |
| 회식, 단합<br>대회 감소                    | 그렇다    | 13,690 | 90.8 | 13,628 | 90.4 |
|                                    | 아니다    | 1,270  | 8.4  | 1,319  | 8.8  |
|                                    | 모름/무응답 | 113    | 0.7  | 126    | 0.8  |

업무담당자의 경우 총 2,512명을 조사하였다.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로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 15.6%, 민간사업체 84.4%였다. 성별은 남성 41.6%, 여성 58.4%였고,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 9.5%, 30대 27.8%, 40대 37.9%, 50대 이상 24.7%였다. 고용형태는 대다수가 정규직(95.2%)이었다. 성희롱 방지 업무 담당기간은 1~3년 미만인 33.6%로 가장 많았고, 3~5년 미만 23.8%, 5~10년 미만 19.1%, 1년 미만 15.4%, 10년 이상 8.1% 순이었다. 성희롱 방지 업무 전담 여부는 2.6%만이 전담하고 있었고 97.1%는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었다. 성희롱 방지 업무 관련 교육훈련 이수 여부는 70.3%가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 업무담당자 응답분포

(단위: %)

| 구분                                 | 조사표본   |       | 가중표본   |       |
|------------------------------------|--------|-------|--------|-------|
|                                    | 응답자(명) | 계     | 응답자(명) | 계     |
| 전 체                                | 2,512  | 100.0 | 2,512  | 100.0 |
| 유형                                 |        |       |        |       |
| 공공기관                               | 759    | 30.2  | 393    | 15.6  |
| 민간사업체                              | 1,753  | 69.8  | 2,119  | 84.4  |
| 성별                                 |        |       |        |       |
| 남성                                 | 1,024  | 40.8  | 1,044  | 41.6  |
| 여성                                 | 1,488  | 59.2  | 1,468  | 58.4  |
| 연령                                 |        |       |        |       |
| 20대 이하                             | 283    | 11.3  | 238    | 9.5   |
| 30대                                | 735    | 29.3  | 699    | 27.8  |
| 40대                                | 934    | 37.2  | 953    | 37.9  |
| 50대 이상                             | 560    | 22.3  | 621    | 24.7  |
| 고용형태                               |        |       |        |       |
| 정규직                                | 2,352  | 93.6  | 2,391  | 95.2  |
| 비정규직                               | 160    | 6.4   | 121    | 4.8   |
| 성희롱 방지 업무 담당기간                     |        |       |        |       |
| 1년 미만                              | 539    | 21.5  | 388    | 15.4  |
| 1~3년 미만                            | 858    | 34.2  | 844    | 33.6  |
| 3~5년 미만                            | 523    | 20.8  | 598    | 23.8  |
| 5~10년 미만                           | 410    | 16.3  | 480    | 19.1  |
| 10년 이상                             | 182    | 7.2   | 202    | 8.1   |
| 성희롱 방지 업무 전담 여부                    |        |       |        |       |
| 전담                                 | 81     | 3.2   | 65     | 2.6   |
| 다른 업무와 병행                          | 2,426  | 96.6  | 2,440  | 97.1  |
| 모름/무응답                             | 5      | 0.2   | 7      | 0.3   |
| 성희롱 방지 업무 교육훈련 이수 여부               |        |       |        |       |
| 이수함                                | 1,863  | 74.2  | 1,766  | 70.3  |
| 이수하지 않음                            | 648    | 25.8  | 744    | 29.6  |
| 모름/무응답                             | 1      | 0.0   | 2      | 0.1   |
| 공공기관 유형                            |        |       |        |       |
| 국가기관                               | 252    | 33.2  | 89     | 22.6  |
| 지방자치단체                             | 136    | 17.9  | 27     | 6.9   |
| 초/중/고                              | 260    | 34.3  | 259    | 65.8  |
| 대학                                 | 111    | 14.6  | 18     | 4.7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제조업                                | 437    | 24.9  | 623    | 29.4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209    | 11.9  | 223    | 10.5  |
| 개인서비스업                             | 222    | 12.7  | 236    | 11.2  |
| 유통서비스업                             | 228    | 13.0  | 229    | 10.8  |
| 사업서비스업                             | 306    | 17.5  | 382    | 18.0  |
| 사회서비스업                             | 351    | 20.0  | 426    | 20.1  |



| 구분           | 조사표본   |      | 가중표본   |      |
|--------------|--------|------|--------|------|
|              | 응답자(명) | 계    | 응답자(명) | 계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30~99인       | 979    | 55.8 | 1,664  | 78.5 |
| 100~299인     | 471    | 26.9 | 362    | 17.1 |
| 300~499인     | 164    | 9.4  | 49     | 2.3  |
| 500인 이상      | 139    | 7.9  | 44     | 2.1  |

## 2. 일반직원 조사결과

### 가. 성희롱 피해 경험

#### 1) 성희롱 피해 실태

지난 3년간(2018.8.~2021.7.) 성희롱 피해 실태는 14개 성희롱 피해 유형에 대해 조사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2) 음담 패설 및 성적농담(SNS, 전화,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 포함) (3)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관련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4) 사적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5) 성적 관계를 요구하는 행위 (6)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 (7)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쳐다보는 행위 (8)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9)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노출하는 행위 (10) 포옹, 손잡기, 신체 밀착, 안마, 입맞춤 등의 신체 접촉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11)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12) 성적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 평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13) 성적 요구를 전제조건으로 고용, 평가 등의 이익을 암시하거나 제안하는 행위 (14)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성적 관계를 하거나 시도한 행위. 2018년에는 (1)~(13)에 대해 조사하였고, 2021년에는 (14)를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14개 유형 중 하나라도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8%였다.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 7.4%, 민간사업체 4.3%였다. 성별로는 남성 2.9%, 여성 7.9%였다.

9) 기존 문항을 최대한 유지하였고, 2개 문항에서는 기존 유형과 관련된 최근 성희롱 경향을 반영하여 일부 표현을 조정하였다. (2)의 경우 2018년 '전화, 문자 및 SNS 포함'에서 2021년에는 'SNS, 전화,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 포함'으로, (8)의 경우 2018년 '성인잡지(각종 이미지)나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는 행위'에서 2021년에는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로 조정하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 5.3%, 30대 4.4%, 40대 4.6%, 50대 이상 5.2%로 20대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 4.8%, 비정규직 5.2%로 비정규직에서 높았다.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지방자치단체 12.4%, 국가기관 9.1%, 대학 6.2%, 초/중/고 4.2% 순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유형에 비해 높았다. 민간사업체 업종별로는 사회서비스업 6.1%, 제조업 5.2%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별로는 30~99인 3.4%, 100~299인 3.9%, 300~499인 3.7%, 500인 이상 6.2%였다. 전체적으로 공공기관, 여성, 20대 이하와 50대 이상, 비정규직, 지방자치단체, 사회서비스업, 500인 이상에서 성희롱 피해 경험률이 높았다.

〈표 Ⅲ-3〉 성희롱 피해 경험 여부

(단위: %)

| 구분                             | 있다   | 없다   | 모름/무응답 | 계     |
|--------------------------------|------|------|--------|-------|
| <b>전체</b>                      | 4.8  | 95.0 | 0.2    | 100.0 |
| <b>유형</b>                      |      |      |        |       |
| 공공기관                           | 7.4  | 92.6 | -      | 100.0 |
| 민간사업체                          | 4.3  | 95.5 | 0.2    | 100.0 |
| <b>성별</b>                      |      |      |        |       |
| 남성                             | 2.9  | 96.9 | 0.2    | 100.0 |
| 여성                             | 7.9  | 92.0 | 0.2    | 100.0 |
| <b>연령</b>                      |      |      |        |       |
| 20대 이하                         | 5.3  | 94.2 | 0.5    | 100.0 |
| 30대                            | 4.4  | 95.6 | 0.0    | 100.0 |
| 40대                            | 4.6  | 95.3 | 0.1    | 100.0 |
| 50대 이상                         | 5.2  | 94.6 | 0.2    | 100.0 |
| <b>직급</b>                      |      |      |        |       |
| 관리직                            | 4.1  | 95.8 | 0.1    | 100.0 |
| 일반직                            | 5.2  | 94.6 | 0.2    | 100.0 |
| 모름/무응답                         | 5.7  | 94.3 | -      | 100.0 |
| <b>고용형태</b>                    |      |      |        |       |
| 정규직                            | 4.8  | 95.1 | 0.1    | 100.0 |
| 비정규직                           | 5.2  | 93.9 | 0.9    | 100.0 |
| 모름/무응답                         | 1.0  | 99.0 | -      | 100.0 |
| <b>공공기관 유형</b>                 |      |      |        |       |
| 국가기관                           | 9.1  | 90.9 | -      | 100.0 |
| 지방자치단체                         | 12.4 | 87.6 | -      | 100.0 |
| 초/중/고                          | 4.2  | 95.8 | -      | 100.0 |
| 대학                             | 6.2  | 93.8 | -      | 100.0 |
| <b>민간사업체 업종</b>                |      |      |        |       |
| 제조업                            | 5.2  | 94.3 | 0.5    | 100.0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1.9  | 98.0 | 0.0    | 100.0 |
| 개인서비스업                         | 3.7  | 96.2 | 0.0    | 100.0 |

| 구분                  | 있다  | 없다   | 모름/무응답 | 계     |
|---------------------|-----|------|--------|-------|
| 유통서비스업              | 3.0 | 96.8 | 0.1    | 100.0 |
| 사업서비스업              | 3.8 | 96.2 | 0.0    | 100.0 |
| 사회서비스업              | 6.1 | 93.8 | 0.2    | 100.0 |
| <b>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b> |     |      |        |       |
| 30~99인              | 3.4 | 96.4 | 0.1    | 100.0 |
| 100~299인            | 3.9 | 95.5 | 0.6    | 100.0 |
| 300~499인            | 3.7 | 96.3 | -      | 100.0 |
| 500인 이상             | 6.2 | 93.8 | 0.0    | 100.0 |

주: 백분율은 15,073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14개 성희롱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의 경험률이 3.4%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은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 2.2%,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 1.3%,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쳐다보는 행위’ 0.6%, ‘포옹, 손잡기, 신체 밀착, 안마, 입맞춤 등의 신체 접촉을 하거나 신체접촉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와 ‘성적 사실 관계를 묻거나 관련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0.5% 순이었다.

소속기관 유형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성희롱 피해 유형을 보면,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가 5.9%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은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 2.7%,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 1.9%,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쳐다보는 행위’ 1.2%, ‘포옹, 손잡기, 신체 밀착, 안마, 입맞춤 등의 신체 접촉을 하거나 신체접촉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1.0% 순이었다. 민간사업체에서의 주요 피해 유형은 공공기관과 동일했는데, 피해 경험률은 모두 공공기관보다 낮았다. 전체적으로 성희롱 피해 유형의 경향성은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가 거의 유사했고, 다만 민간사업체에 비해 공공기관에서의 피해 경험률이 높았다. 특히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 모두에서 피해 경험률이 가장 높았던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의 경우 공공기관 5.9%, 민간사업체 2.9%로 3.0%p의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와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에서 각각 1.8%였고, 그 외 유형은 1.0%를 하회하였다. 여성의 경우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가 5.8%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 2.8%,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 2.4%,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쳐다보는 행위’ 1.1%, ‘포옹, 손잡기, 신체 밀착, 안마, 입맞춤 등의 신체 접촉을 하거나 신체접촉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1.0% 순이었다. 전체 응답 경향과 남녀에서 나타난 응답 경향이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여성의 피해 경험률이 남성보다

높았다.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남성 1.8%, 여성 5.8%),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남성 1.8%, 여성 2.8%),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남성 0.6%, 여성 2.4%)에서 특히 성별 격차가 있었다.

연령별로는 피해 유형에 따라 경향이 다소 달랐는데, ‘사적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 ‘포옹, 손잡기, 신체 밀착, 안마, 입맞춤 등의 신체 접촉을 하거나 신체접촉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에서는 20대 이하의 피해 경험률이 높았다.

공공기관 유형에서는 국가기관의 경우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하는 행위’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하는 행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II-4〉 성희롱 유형별 피해 경험 - 계속

(단위: %)

| 구분                             |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 (SNS, 전화,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 포함) |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관련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사적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 성적 관계를 요구하는 행위 |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쳐다보는 행위 |
|--------------------------------|------------------|-------------------------------------------|-----------------------------------|----------------|----------------|-----------------------------|-----------------------------|
| 전 체                            | 3.4              | 2.2                                       | 0.5                               | 0.4            | 0.1            | 1.3                         | 0.6                         |
| 유형                             |                  |                                           |                                   |                |                |                             |                             |
| 공공기관                           | 5.9              | 2.7                                       | 0.6                               | 0.9            | 0.2            | 1.9                         | 1.2                         |
| 민간사업체                          | 2.9              | 2.1                                       | 0.5                               | 0.4            | 0.0            | 1.2                         | 0.5                         |
| 성별                             |                  |                                           |                                   |                |                |                             |                             |
| 남성                             | 1.8              | 1.8                                       | 0.4                               | 0.2            | 0.0            | 0.6                         | 0.3                         |
| 여성                             | 5.8              | 2.8                                       | 0.7                               | 0.8            | 0.1            | 2.4                         | 1.1                         |
| 연령                             |                  |                                           |                                   |                |                |                             |                             |
| 20대 이하                         | 3.1              | 1.0                                       | 0.4                               | 0.7            | 0.0            | 1.5                         | 0.4                         |
| 30대                            | 2.8              | 2.3                                       | 0.6                               | 0.4            | 0.1            | 1.2                         | 0.6                         |
| 40대                            | 3.2              | 2.7                                       | 0.5                               | 0.3            | 0.0            | 1.4                         | 0.4                         |
| 50대 이상                         | 4.2              | 2.1                                       | 0.5                               | 0.6            | 0.1            | 1.3                         | 0.8                         |
| 직급유형                           |                  |                                           |                                   |                |                |                             |                             |
| 관리직                            | 2.9              | 2.4                                       | 0.6                               | 0.2            | 0.0            | 1.2                         | 0.3                         |
| 일반직                            | 3.6              | 2.1                                       | 0.5                               | 0.6            | 0.1            | 1.4                         | 0.8                         |
| 모름/무응답                         | 5.1              | 5.3                                       | -                                 | -              | -              | 0.4                         | 0.1                         |
| 고용형태                           |                  |                                           |                                   |                |                |                             |                             |
| 정규직                            | 3.4              | 2.2                                       | 0.6                               | 0.5            | 0.1            | 1.4                         | 0.5                         |
| 비정규직                           | 3.1              | 2.0                                       | 0.2                               | 0.1            | 0.0            | 0.6                         | 1.0                         |
| 모름/무응답                         | 0.6              | 0.4                                       | -                                 | 0.3            | -              | 0.2                         | 0.1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 국가기관                           | 7.3              | 4.6                                       | 1.3                               | 1.2            | 0.3            | 1.9                         | 1.8                         |
| 지방자치단체                         | 10.0             | 3.5                                       | 0.9                               | 1.2            | 0.5            | 5.0                         | 2.4                         |
| 초/중/고                          | 3.2              | 1.0                                       | 0.3                               | 0.7            | 0.0            | 0.3                         | 0.5                         |
| 대학                             | 5.0              | 2.8                                       | 0.1                               | 0.8            | -              | 1.8                         | 0.9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 제조업                            | 3.7              | 3.0                                       | 0.6                               | 0.5            | 0.0            | 1.4                         | 0.5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1.0              | 1.0                                       | 0.0                               | 0.3            | 0.2            | 0.5                         | 0.6                         |
| 개인서비스업                         | 3.0              | 1.5                                       | 0.3                               | 0.4            | 0.0            | 0.9                         | 0.5                         |
| 유통서비스업                         | 1.5              | 1.9                                       | 0.8                               | 0.1            | 0.0            | 0.7                         | 0.0                         |
| 사업서비스업                         | 2.3              | 1.2                                       | 0.7                               | 0.2            | -              | 1.2                         | 0.3                         |
| 사회서비스업                         | 4.3              | 3.0                                       | 0.1                               | 0.4            | 0.1            | 1.8                         | 0.7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 30~99인                         | 2.7              | 2.0                                       | 0.3                               | 0.5            | 0.1            | 0.8                         | 0.4                         |
| 100~299인                       | 2.4              | 1.4                                       | 0.1                               | 0.5            | 0.0            | 0.9                         | 0.5                         |
| 300~499인                       | 2.8              | 0.9                                       | 0.5                               | 0.2            | -              | 1.0                         | 0.6                         |
| 500인 이상                        | 3.7              | 3.4                                       | 1.1                               | 0.0            | 0.0            | 2.2                         | 0.4                         |

〈표 Ⅲ-4〉 성희롱 유형별 피해 경험

(단위: %)

| 구분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노출하는 행위 | 포옹, 손잡기, 신체 밀착, 안마, 입맞춤 등의 신체 접촉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 성적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 평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성적 요구를 전제조건으로 고용, 평가 등의 이익을 암시하거나 제안하는 행위 |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성적 관계를 하거나 시도한 행위 | 하나라도 경험 있는 비율 |
|--------------------------------|-------------------------------------------|----------------------------|-----------------------------------------------------------|----------------------------------------|----------------------------------------|-------------------------------------------|-------------------------------------------|---------------|
| 전 체                            | 0.1                                       | 0.1                        | 0.5                                                       | 0.2                                    | 0.1                                    | 0.1                                       | 0.1                                       | 4.8           |
| 유형                             |                                           |                            |                                                           |                                        |                                        |                                           |                                           |               |
| 공공기관                           | 0.3                                       | 0.3                        | 1.0                                                       | 0.3                                    | 0.1                                    | 0.2                                       | 0.2                                       | 7.4           |
| 민간사업체                          | 0.1                                       | 0.1                        | 0.5                                                       | 0.2                                    | 0.1                                    | 0.1                                       | 0.0                                       | 4.3           |
| 성별                             |                                           |                            |                                                           |                                        |                                        |                                           |                                           |               |
| 남성                             | 0.1                                       | 0.1                        | 0.2                                                       | 0.2                                    | 0.1                                    | 0.1                                       | 0.0                                       | 2.9           |
| 여성                             | 0.2                                       | 0.2                        | 1.0                                                       | 0.2                                    | 0.2                                    | 0.2                                       | 0.1                                       | 7.9           |
| 연령                             |                                           |                            |                                                           |                                        |                                        |                                           |                                           |               |
| 20대 이하                         | 0.1                                       | 0.0                        | 1.2                                                       | 0.2                                    | 0.4                                    | 0.3                                       | 0.0                                       | 5.3           |
| 30대                            | 0.2                                       | 0.1                        | 0.4                                                       | 0.2                                    | 0.2                                    | 0.1                                       | 0.1                                       | 4.4           |
| 40대                            | 0.1                                       | 0.1                        | 0.3                                                       | 0.2                                    | 0.0                                    | 0.1                                       | 0.0                                       | 4.6           |
| 50대 이상                         | 0.2                                       | 0.2                        | 0.7                                                       | 0.1                                    | 0.1                                    | 0.1                                       | 0.1                                       | 5.2           |
| 직급유형                           |                                           |                            |                                                           |                                        |                                        |                                           |                                           |               |
| 관리직                            | 0.0                                       | 0.1                        | 0.2                                                       | 0.1                                    | 0.0                                    | 0.0                                       | 0.0                                       | 4.1           |
| 일반직                            | 0.2                                       | 0.2                        | 0.7                                                       | 0.2                                    | 0.2                                    | 0.2                                       | 0.1                                       | 5.2           |
| 모름/무응답                         | -                                         | 0.2                        | 0.2                                                       | 0.0                                    | -                                      | -                                         | -                                         | 5.7           |
| 고용형태                           |                                           |                            |                                                           |                                        |                                        |                                           |                                           |               |
| 정규직                            | 0.1                                       | 0.2                        | 0.6                                                       | 0.2                                    | 0.1                                    | 0.1                                       | 0.1                                       | 4.8           |
| 비정규직                           | 0.1                                       | -                          | 0.4                                                       | 0.1                                    | -                                      | 0.1                                       | 0.0                                       | 5.2           |
| 모름/무응답                         | -                                         | 0.1                        | 0.1                                                       | -                                      | 0.3                                    | -                                         | -                                         | 1.0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
| 국가기관                           | 0.3                                       | 0.3                        | 0.9                                                       | 0.2                                    | 0.2                                    | 0.2                                       | 0.3                                       | 9.1           |
| 지방자치단체                         | 0.7                                       | 0.8                        | 2.2                                                       | 0.8                                    | 0.5                                    | 0.5                                       | 0.6                                       | 12.4          |
| 초/중/고                          | 0.2                                       | 0.1                        | 0.4                                                       | 0.1                                    | -                                      | 0.1                                       | 0.1                                       | 4.2           |
| 대학                             | 0.0                                       | -                          | 1.1                                                       | 0.0                                    | -                                      | 0.2                                       | -                                         | 6.2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
| 제조업                            | 0.1                                       | 0.1                        | 0.5                                                       | 0.3                                    | 0.2                                    | 0.1                                       | 0.0                                       | 5.2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0.1                                       | 0.2                        | 0.2                                                       | 0.2                                    | 0.1                                    | 0.0                                       | 0.2                                       | 1.9           |
| 개인서비스업                         | 0.1                                       | 0.1                        | 0.2                                                       | 0.2                                    | 0.3                                    | 0.4                                       | -                                         | 3.7           |
| 유통서비스업                         | 0.0                                       | -                          | 0.3                                                       | 0.1                                    | 0.0                                    | -                                         | -                                         | 3.0           |
| 사업서비스업                         | 0.1                                       | 0.1                        | 0.5                                                       | 0.1                                    | 0.0                                    | -                                         | -                                         | 3.8           |
| 사회서비스업                         | 0.3                                       | 0.1                        | 0.7                                                       | 0.2                                    | 0.1                                    | 0.2                                       | 0.1                                       | 6.1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
| 30~99인                         | 0.1                                       | 0.1                        | 0.3                                                       | 0.2                                    | 0.1                                    | 0.1                                       | 0.1                                       | 3.4           |
| 100~299인                       | 0.1                                       | 0.1                        | 0.4                                                       | 0.1                                    | 0.2                                    | 0.2                                       | 0.0                                       | 3.9           |
| 300~499인                       | 0.2                                       | 0.0                        | 0.5                                                       | 0.4                                    | 0.0                                    | -                                         | -                                         | 3.7           |
| 500인 이상                        | 0.0                                       | 0.1                        | 0.8                                                       | 0.1                                    | -                                      | -                                         | -                                         | 6.2           |

주: 1) 백분율은 15,073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있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결과표를 재구성함.

2018년 실태조사는 13개 유형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13개 유형 중 하나라도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1%로, 2021년에는 3.3%p 감소하였다.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 16.6%, 민간사업체 6.5%로 2021년에는 각각 9.2%p, 2.2%p 감소하였다. 성별로는 남성 4.2%, 여성 14.2%로 2021년에 각각 1.3%p, 6.3%p 감소하였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2018년 대비 2021년에 성희롱 피해 경험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미투의 영향에 따른 지난 3년 동안의 긍정적 변화로 볼 수 있다. 미투를 통해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성희롱 피해 실태가 드러났고,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에 성희롱이 무엇인지, 2차 피해가 무엇인지, 성희롱 피해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이 높아지고 성희롱을 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 직장내 성희롱 피해 경험률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2021)<sup>10)</sup>에서 실시한 성희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원치 않는 성적 관심, 성적 강요, 직장내 성폭력 등을 성희롱이라고 판단하는 정도가 높아서 성희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투 이후 정부가 추진해 왔던 성희롱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의 영향 혹은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8년 5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면서 민간사업체에서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성희롱 인지 시 조사 실시, 피해자 보호조치, 성희롱 확인 시 행위자 조치,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등) 등이 강화되었다<sup>11)</sup>. 공공기관 역시 2018년 이후 지속적인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가기관 등의 장과 공공기관의 사용자가 성희롱 방지를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예방지침 마련, 성희롱 사건 발생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제출 등 성희롱 방지조치가 의무화되고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운영 점검 및 환류,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관리체계 등도 강화되었다. 또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발생 인지 시 여성가족부장관에 통보,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화, 현장점검 등),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권고, 성희롱 방지 조치 점검 결과의 언론공표, 관리자 특별교육실시 등의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sup>12)</sup>. 이러한 법과 제도정책의 개선을 통한 성희롱 방지 노력이 직장내 성희롱 피해의

10) 문강분·박선영·변혜정·심선희·민대숙·임범식·조은정(2021).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연구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120~128쪽.

1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2022.2.28.)

발생을 줄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3년간의 성희롱 피해 경험률이 감소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여전히 공공 기관, 여성, 비정규직, 지방자치단체, 사회서비스업, 500인 이상에서 성희롱 피해 경험 이 높았던 양상은 3년 전과 다르지 않았다. 빈번하게 발생했던 성희롱 피해 유형 등의 경향성 역시 3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량적 측면에서는 감소하였지만, 성희롱 발생 양상과 구조 등은 변화하지 않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성희롱 방지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

1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2022.2.28.\)](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2022.2.28.))



〈표 III-5〉 성희롱 피해 경험률 비교(2021년과 2018년)

(단위: %, %p)

| 구분                                 | 2021 | 2018 | 차이 (2021-2018) |
|------------------------------------|------|------|----------------|
| <b>전 체</b>                         | 4.8  | 8.1  | -3.3           |
| <b>유형</b>                          |      |      |                |
| 공공기관                               | 7.4  | 16.6 | -9.2           |
| 민간사업체                              | 4.3  | 6.5  | -2.2           |
| <b>성별</b>                          |      |      |                |
| 남성                                 | 2.9  | 4.2  | -1.3           |
| 여성                                 | 7.9  | 14.2 | -6.3           |
| <b>연령</b>                          |      |      |                |
| 20대 이하                             | 5.3  | 12.3 | -7.0           |
| 30대                                | 4.4  | 10.0 | -5.6           |
| 40대                                | 4.6  | 6.0  | -1.4           |
| 50대 이상                             | 5.2  | 5.0  | 0.2            |
| <b>직급</b>                          |      |      |                |
| 관리직                                | 4.1  | 4.9  | -0.8           |
| 일반직                                | 5.2  | 9.8  | -4.6           |
| 모름/무응답                             | 5.7  |      | 5.7            |
| <b>고용형태</b>                        |      |      |                |
| 정규직                                | 4.8  | 7.9  | -3.1           |
| 비정규직                               | 5.2  | 9.9  | -4.7           |
| 모름/무응답                             | 1.0  | -    | 1.0            |
| <b>공공기관 유형</b>                     |      |      |                |
| 국가기관                               | 9.1  | 13.9 | -4.8           |
| 지방자치단체                             | 12.4 | 28.1 | -15.7          |
| 초/중/고                              | 4.2  | 10.9 | -6.7           |
| 대학                                 | 6.2  | 20.0 | -13.8          |
| <b>민간사업체 업종</b>                    |      |      |                |
| 제조업                                | 5.2  | 7.0  | -1.8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1.9  | 2.9  | -1.0           |
| 개인서비스업                             | 3.7  | 8.0  | -4.3           |
| 유통서비스업                             | 3.0  | 5.3  | -2.3           |
| 사업서비스업                             | 3.8  | 4.6  | -0.8           |
| 사회서비스업                             | 6.1  | 11.0 | -4.9           |
| <b>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b>                |      |      |                |
| 30~99인                             | 3.4  | 6.7  | -3.3           |
| 100~299인                           | 3.9  | 5.8  | -1.9           |
| 300~499인                           | 3.7  | 6.5  | -2.8           |
| 500인 이상                            | 6.2  | 6.8  | -0.6           |

주: 2021년은 14개 문항, 2018년은 13개 문항 기준 피해 경험률임.

〈표 III-6〉 성희롱 피해유형별 경험률 비교(2021년과 2018년, 2021년 14개 기준으로)

(단위: %)

| 구분    |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 음담 패설 및 성적 농담 (SNS, 전화,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 포함) | 성적 사실을 묻거나 관련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사적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 성적 관계를 요구하는 행위 | 화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쳐다 보는 행위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 주는 행위 |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노출하는 행위 | 포옹, 손잡기, 신체 밀착, 안마, 입맞춤 등의 신체 접촉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 성적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 평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성적 요구를 전제 조건으로 고용, 평가 등의 이익을 암시하거나 제안하는 행위 |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성적 관계를 하거나 시도한 행위 | 성희롱 피해 경험률 (하나라도 경험 있는 경우) |
|-------|------------------|--------------------------------------------|---------------------------------|----------------|----------------|-----------------------------|------------------------------|--------------------------------------------|----------------------------|-----------------------------------------------------------|----------------------------------------|----------------------------------------|--------------------------------------------|-------------------------------------------|----------------------------|
| 2021년 | 3.4              | 2.2                                        | 0.5                             | 0.4            | 0.1            | 1.3                         | 0.6                          | 0.1                                        | 0.1                        | 0.5                                                       | 0.2                                    | 0.1                                    | 0.1                                        | 0.1                                       | 4.8                        |
| 2018년 | 5.3              | 3.4                                        | 0.4                             | 0.6            | 0.1            | 2.7                         | 1.5                          | 0.4                                        | 0.3                        | 1.2                                                       | 0.1                                    | 0.0                                    | 0.1                                        |                                           | 8.1                        |

- 주: 1) 2021년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SNS, 전화,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 포함)’은 2018년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전화, 문자 및 SNS 포함)’에서 수정함.  
 2) 2021년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는 2018년 ‘성인 잡지 (각종 이미지)나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는 행위’에서 수정함.  
 3) 2021년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성적 관계를 하거나 시도한 행위’는 신규 추가된 보기임.

## 2) 성희롱 행위자와의 관계 및 성별

지난 3년간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나의 상급자(기관장, 사업주 등 제외)’가 54.9%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나의 동급자’ 24.0%였고, ‘기관장, 사업주 등’은 3.5%였다.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의 경우 ‘나의 상급자’ 56.9%, ‘나의 동급자’ 25.2%였고, 민간사업체의 경우 ‘나의 상급자’ 54.2%, ‘나의 동급자’ 23.7%였다.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 모두 전체 응답 경향과 유사하였다.

성별에서는 남성의 경우 ‘나의 상급자(기관장, 사업주 등 제외)’ 42.5%, ‘나의 동급자’ 35.3% 순이었다. 여성의 경우 ‘나의 상급자(기관장, 사업주 등 제외)’가 62.2%로 ‘나의 동급자’(17.4%)보다 월등히 높았다.

연령별로 20대 이하는 ‘나의 상급자’(62.8%)가 월등히 높았고, ‘나의 동급자’(14.2%) 뿐 아니라 ‘외부인(고객, 민원인, 거래처 직원 등)’(10.8%) 비율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40대는 ‘나의 하급자’(5.9%) 비율이 높았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나의 상급자’는

감소하고 ‘나의 동급자’와 ‘나의 하급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공공기관 유형에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대학은 ‘나의 상급자’ 비율이 높았는데, 초/중/고는 ‘나의 상급자’와 ‘나의 동급자’ 비율이 비슷했다.

민간사업체 업종별로는 모든 업종에서 ‘나의 상급자’와 ‘나의 동급자’ 비율이 높은 가운데,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유통서비스업에서는 ‘외부인(고객, 민원인, 거래처 직원 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성희롱 행위자의 성별은 80.2%가 남성이었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공공기관에서는 83.1%, 민간사업체에서는 79.3%가 남성이었다.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행위자가 남성이라는 응답이 83.9%였고,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 행위자가 남성이라는 응답은 74.2%였다. 민간사업체 업종 중 유통서비스업과 사업서비스업에서, 500인 이상 규모의 민간사업체에서 성희롱 행위자가 남성이라는 응답이 90%를 상회하였다.

〈표 Ⅲ-7〉 성희롱 행위자와의 관계

(단위: %)

| 구분                                 | 나의<br>하급자 | 나의<br>동급자 | 나의<br>상급자<br>(기관장,<br>사업주<br>등 제외) | 기관장,<br>사업주 등 | 외부인<br>(고객,<br>민원인,<br>거래처<br>직원 등) | 기타   | 모름/<br>무응답 | 계     |
|------------------------------------|-----------|-----------|------------------------------------|---------------|-------------------------------------|------|------------|-------|
| 전 체                                | 2.8       | 24.0      | 54.9                               | 3.5           | 7.3                                 | 2.2  | 5.2        | 100.0 |
| 유형                                 |           |           |                                    |               |                                     |      |            |       |
| 공공기관                               | 2.0       | 25.2      | 56.9                               | 4.8           | 5.4                                 | 5.8  | -          | 100.0 |
| 민간사업체                              | 3.2       | 23.7      | 54.2                               | 3.1           | 8.0                                 | 0.9  | 7.0        | 100.0 |
| 성별                                 |           |           |                                    |               |                                     |      |            |       |
| 남성                                 | 4.8       | 35.3      | 42.5                               | 4.5           | 9.4                                 | 1.3  | 2.2        | 100.0 |
| 여성                                 | 1.7       | 17.4      | 62.2                               | 3.0           | 6.1                                 | 2.7  | 7.0        | 100.0 |
| 연령                                 |           |           |                                    |               |                                     |      |            |       |
| 20대 이하                             | 0.4       | 14.2      | 62.8                               | 7.1           | 10.8                                | 2.6  | 2.1        | 100.0 |
| 30대                                | 0.9       | 24.6      | 61.6                               | 1.0           | 5.1                                 | 1.3  | 5.5        | 100.0 |
| 40대                                | 5.9       | 27.6      | 49.6                               | 3.8           | 6.9                                 | 0.1  | 6.1        | 100.0 |
| 50대 이상                             | 2.5       | 24.4      | 51.4                               | 3.8           | 7.9                                 | 4.5  | 5.5        | 100.0 |
| 직급유형                               |           |           |                                    |               |                                     |      |            |       |
| 관리직                                | 7.5       | 22.7      | 53.8                               | 3.2           | 6.5                                 | 0.2  | 6.1        | 100.0 |
| 일반직                                | 1.0       | 24.8      | 55.7                               | 3.7           | 7.6                                 | 3.0  | 4.3        | 100.0 |
| 모름/무응답                             | -         | -         | 10.1                               | -             | 8.1                                 | -    | 81.9       | 100.0 |
| 고용형태                               |           |           |                                    |               |                                     |      |            |       |
| 정규직                                | 3.1       | 24.6      | 54.6                               | 3.9           | 6.9                                 | 1.8  | 5.2        | 100.0 |
| 비정규직                               | 0.7       | 20.0      | 57.7                               | 0.3           | 10.1                                | 5.6  | 5.5        | 100.0 |
| 모름/무응답                             | -         | -         | 36.1                               | 32.3          | 31.6                                | -    | -          | 100.0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
| 국가기관                               | 1.5       | 24.7      | 63.7                               | 6.8           | 2.2                                 | 1.1  | -          | 100.0 |
| 지방자치단체                             | 2.3       | 15.5      | 66.1                               | 1.0           | 12.2                                | 2.8  | -          | 100.0 |
| 초/중/고                              | 3.7       | 35.9      | 35.9                               | 11.1          | 3.7                                 | 9.7  | -          | 100.0 |
| 대학                                 | -         | 30.9      | 53.2                               | 0.1           | 0.2                                 | 15.6 | -          | 100.0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
| 제조업                                | 5.7       | 33.3      | 48.5                               | 5.8           | 1.3                                 | 0.7  | 4.8        | 100.0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         | 15.1      | 37.1                               | 2.3           | 18.2                                | 8.2  | 19.1       | 100.0 |
| 개인서비스업                             | 1.7       | 21.8      | 56.7                               | 0.9           | 11.6                                | -    | 7.3        | 100.0 |
| 유통서비스업                             | 5.3       | 30.1      | 47.6                               | 0.4           | 16.3                                | -    | 0.3        | 100.0 |
| 사업서비스업                             | 3.2       | 10.4      | 69.6                               | 2.9           | 11.4                                | 1.3  | 1.2        | 100.0 |
| 사회서비스업                             | -         | 21.9      | 53.4                               | 1.1           | 8.5                                 | 0.2  | 14.9       | 100.0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
| 30~99인                             | 2.8       | 19.7      | 52.1                               | 3.5           | 9.5                                 | 1.2  | 11.1       | 100.0 |
| 100~299인                           | 7.8       | 16.5      | 51.9                               | 6.1           | 7.2                                 | 0.3  | 10.3       | 100.0 |
| 300~499인                           | 5.7       | 14.2      | 35.1                               | 7.8           | 24.5                                | 3.9  | 8.8        | 100.0 |
| 500인 이상                            | -         | 33.1      | 61.0                               | -             | 4.0                                 | 0.6  | 1.4        | 100.0 |

주: 백분율은 986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표 III-8〉 성희롱 행위자 성별

(단위: %)

| 구분                                 | 남성    | 여성   | 모름/무응답 | 계     |
|------------------------------------|-------|------|--------|-------|
| <b>전 체</b>                         | 80.2  | 15.3 | 4.4    | 100.0 |
| <b>유형</b>                          |       |      |        |       |
| 공공기관                               | 83.1  | 16.9 | -      | 100.0 |
| 민간사업체                              | 79.3  | 14.8 | 6.0    | 100.0 |
| <b>성별</b>                          |       |      |        |       |
| 남성                                 | 74.2  | 22.6 | 3.2    | 100.0 |
| 여성                                 | 83.9  | 11.0 | 5.1    | 100.0 |
| <b>연령</b>                          |       |      |        |       |
| 20대 이하                             | 85.9  | 12.4 | 1.7    | 100.0 |
| 30대                                | 84.6  | 9.2  | 6.2    | 100.0 |
| 40대                                | 75.6  | 19.3 | 5.1    | 100.0 |
| 50대 이상                             | 78.9  | 17.6 | 3.5    | 100.0 |
| <b>직급</b>                          |       |      |        |       |
| 관리직                                | 84.3  | 12.8 | 2.9    | 100.0 |
| 일반직                                | 79.1  | 16.4 | 4.5    | 100.0 |
| 모름/무응답                             | 18.1  | -    | 81.9   | 100.0 |
| <b>고용형태</b>                        |       |      |        |       |
| 정규직                                | 81.0  | 14.7 | 4.3    | 100.0 |
| 비정규직                               | 74.0  | 20.4 | 5.5    | 100.0 |
| 모름/무응답                             | 100.0 | -    | -      | 100.0 |
| <b>공공기관 유형</b>                     |       |      |        |       |
| 국가기관                               | 85.8  | 14.2 | -      | 100.0 |
| 지방자치단체                             | 83.8  | 16.2 | -      | 100.0 |
| 초/중/고                              | 70.2  | 29.8 | -      | 100.0 |
| 대학                                 | 93.9  | 6.1  | -      | 100.0 |
| <b>민간사업체 업종</b>                    |       |      |        |       |
| 제조업                                | 78.3  | 18.0 | 3.7    | 100.0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53.6  | 23.5 | 23.0   | 100.0 |
| 개인서비스업                             | 74.7  | 15.7 | 9.6    | 100.0 |
| 유통서비스업                             | 91.6  | 5.5  | 2.9    | 100.0 |
| 사업서비스업                             | 92.3  | 7.4  | 0.4    | 100.0 |
| 사회서비스업                             | 71.5  | 17.9 | 10.6   | 100.0 |
| <b>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b>                |       |      |        |       |
| 30~99인                             | 74.4  | 16.6 | 9.0    | 100.0 |
| 100~299인                           | 67.0  | 22.4 | 10.6   | 100.0 |
| 300~499인                           | 82.2  | 13.1 | 4.7    | 100.0 |
| 500인 이상                            | 90.2  | 8.9  | 0.9    | 100.0 |

주: 백분율은 986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 3) 성희롱 발생 장소

지난 3년간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성희롱 발생 장소가 어디였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사무실 내’(41.8%), ‘회식장소’(31.5%) 순이었고 두 장소가 전체 성희롱 발생 장소 중 70%를 상회하였다. 2018년에는 ‘회식장소’(43.7%), ‘사무실 내’(36.8%) 순으로, 두 장소가 전체 성희롱 발생 장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은 2021년과 2018년 모두 동일하나, 순서는 달라졌다.

한편 2021년에 추가된 ‘온라인(단톡방, SNS, 메신저 등)’은 4.7%였고, 30대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소속기관 유형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사무실 내, 회식장소 순이었다. 공공기관의 경우 ‘사무실 내’ 45.5%, ‘회식장소’ 33.9%, 민간사업체의 경우 ‘사무실 내’ 40.6%, ‘회식장소’ 30.7%, 남성의 경우 ‘사무실 내’ 38.7%, ‘회식장소’ 29.0%, 여성의 경우 ‘사무실 내’ 43.7%, ‘회식장소’ 33.1%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에서 ‘사무실 내’가 60.4%였고, 공공기관 유형 중 대학은 ‘사무실 내’(30.9%)보다 ‘회식장소’(54.0%)가 높았다. 민간사업체 업종 중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유통서비스 업에서, 500인 이상 규모의 민간사업체에서 역시 ‘사무실 내’보다 ‘회식장소’ 비율이 높았다.

2021년 실태조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근무환경 변화를 질문하였는데(〈표 III-1〉 참조), 80.9%는 출근 횟수가 줄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90.4%가 회식이나 단합대회 등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성희롱 피해 유형 중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2018년 2.7%에서 2021년 1.3%로 감소하여, 회식이 줄어든 것이 성희롱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사무실 등 업무공간, 회식장소에서의 성희롱 방지를 위해서는 조직문화, 직장문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불필요한 회식을 줄이는 것은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방안으로 강조될 필요가 있다.

〈표 III-9〉 성희롱 발생 장소

(단위: %)

| 구분                                 | 사무실<br>내 | 회식<br>장소 | 아유회,<br>워크숍<br>등 | 출장,<br>외부<br>미팅 등 | 회식 후<br>귀가<br>도중 | 온라인<br>(단톡방,<br>SNS,<br>메신저 등) | 기타   | 모름/<br>무응답 | 계     |
|------------------------------------|----------|----------|------------------|-------------------|------------------|--------------------------------|------|------------|-------|
| 전 체                                | 41.8     | 31.5     | 1.0              | 5.7               | 4.2              | 4.7                            | 5.8  | 5.3        | 100.0 |
| 유형                                 |          |          |                  |                   |                  |                                |      |            |       |
| 공공기관                               | 45.5     | 33.9     | 2.8              | 3.9               | 3.9              | 4.5                            | 5.4  | -          | 100.0 |
| 민간사업체                              | 40.6     | 30.7     | 0.3              | 6.3               | 4.2              | 4.8                            | 5.9  | 7.1        | 100.0 |
| 성별                                 |          |          |                  |                   |                  |                                |      |            |       |
| 남성                                 | 38.7     | 29.0     | 0.3              | 8.4               | 7.7              | 9.5                            | 3.0  | 3.4        | 100.0 |
| 여성                                 | 43.7     | 33.1     | 1.4              | 4.1               | 2.1              | 1.9                            | 7.4  | 6.4        | 100.0 |
| 연령                                 |          |          |                  |                   |                  |                                |      |            |       |
| 20대 이하                             | 60.4     | 20.5     | 0.1              | 10.6              | 1.2              | 1.6                            | 2.3  | 3.4        | 100.0 |
| 30대                                | 42.1     | 28.9     | 0.7              | 4.0               | 1.4              | 11.5                           | 3.7  | 7.6        | 100.0 |
| 40대                                | 32.9     | 35.1     | 0.1              | 7.8               | 8.0              | 1.1                            | 9.7  | 5.1        | 100.0 |
| 50대 이상                             | 42.2     | 34.8     | 2.2              | 3.1               | 4.0              | 4.1                            | 5.2  | 4.5        | 100.0 |
| 직급                                 |          |          |                  |                   |                  |                                |      |            |       |
| 관리직                                | 31.5     | 34.7     | 0.3              | 7.4               | 8.7              | 3.0                            | 10.4 | 4.0        | 100.0 |
| 일반직                                | 46.3     | 30.5     | 1.2              | 5.1               | 2.3              | 5.4                            | 4.0  | 5.2        | 100.0 |
| 모름/무응답                             | 10.1     | -        | -                | -                 | -                | 8.1                            | -    | 81.9       | 100.0 |
| 고용형태                               |          |          |                  |                   |                  |                                |      |            |       |
| 정규직                                | 41.0     | 31.4     | 1.1              | 5.5               | 4.6              | 5.1                            | 6.2  | 5.1        | 100.0 |
| 비정규직                               | 48.8     | 32.8     | 0.1              | 7.2               | 0.3              | 1.5                            | 2.2  | 7.1        | 100.0 |
| 모름/무응답                             | 36.1     | -        | -                | -                 | -                | 31.6                           | 32.3 | -          | 100.0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       |
| 국가기관                               | 47.5     | 26.5     | 4.1              | 0.8               | 6.9              | 9.3                            | 4.8  | -          | 100.0 |
| 지방자치단체                             | 44.2     | 36.2     | 1.8              | 3.8               | 5.5              | 2.5                            | 6.0  | -          | 100.0 |
| 초/중/고                              | 55.6     | 26.1     | 4.3              | 4.3               | -                | 1.4                            | 8.3  | -          | 100.0 |
| 대학                                 | 30.9     | 54.0     | 0.4              | 9.5               | -                | 3.5                            | 1.6  | -          | 100.0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       |
| 제조업                                | 43.7     | 17.3     | 0.1              | 6.9               | 8.8              | 10.6                           | 6.6  | 6.0        | 100.0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24.3     | 43.1     | 0.5              | 1.9               | 8.2              | 5.9                            | 0.2  | 16.1       | 100.0 |
| 개인서비스업                             | 39.2     | 34.3     | 0.8              | 5.4               | 0.2              | 0.7                            | 5.0  | 14.4       | 100.0 |
| 유통서비스업                             | 27.4     | 55.7     | 2.2              | 0.2               | 6.2              | 4.8                            | -    | 3.5        | 100.0 |
| 사업서비스업                             | 37.6     | 35.2     | 0.2              | 11.4              | 0.4              | 1.0                            | 12.7 | 1.5        | 100.0 |
| 사회서비스업                             | 46.5     | 33.9     | -                | 4.3               | 1.1              | 1.2                            | 2.3  | 10.8       | 100.0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       |
| 30~99인                             | 47.8     | 24.2     | 0.5              | 6.3               | 3.6              | 3.5                            | 5.2  | 9.0        | 100.0 |
| 100~299인                           | 47.7     | 21.7     | 0.6              | 8.4               | 0.8              | 3.2                            | 4.1  | 13.5       | 100.0 |
| 300~499인                           | 39.5     | 24.1     | 0.2              | 21.1              | -                | -                              | 10.2 | 4.9        | 100.0 |
| 500인 이상                            | 30.6     | 42.8     | 0.0              | 2.3               | 7.7              | 7.8                            | 6.8  | 2.1        | 100.0 |

주: 백분율은 986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 4) 성희롱 행위 반복/지속 여부

지난 3년간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피해 당시 성희롱 행위가 2회 이상 반복 혹은 지속되었는지 조사한 결과, 28.8%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3명은 성희롱 피해가 2회 이상으로 반복되거나 지속되었던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 26.7%, 민간사업체 29.4%였고, 성별로는 남성 24.8%, 여성 31.1%였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43.9%),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32.7%),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국가기관(40.4%), 민간사업체 업종 중에서는 제조업(32.1%), 30~99인 규모의 민간사업체에서 성희롱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지속되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전체적으로 민간사업체, 여성, 20대 이하, 제조업, 30~99인 규모의 민간사업체에서 성희롱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지속되었다. 반복/지속되었다고 응답한 피해자의 성희롱 피해에 따른 영향을 살펴본 결과, 10명 중 7명이 성희롱 피해에 따른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고, 반복/지속되지 않았던 경우(10명 중 4명이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함)보다 성희롱 피해에 따른 영향이 컸다<sup>13)</sup>.

---

13) 반복/지속되었다고 응답한 피해자의 성희롱 피해에 대한 영향을 살펴본 결과, ‘특별한 영향이 없었음’은 28.8%로 이는 10명 중 3명은 성희롱 피해에 의한 영향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영향 내용(복수응답)은 ‘근로이익 저하 등 업무 집중도가 떨어짐’ 19.4%,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음’ 14.7%, ‘직장 만족도가 낮아짐’ 30.7%, ‘직장(내 성희롱 예방정책, 문화 등)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음’ 26.6%, ‘직장내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생김’ 9.7%, ‘분노/우울감/두려움/자살 생각/자존감 하락 등 정신적으로 힘들’ 18.8%, ‘두통/복통/구토 등 신체적으로 힘들’ 2.6% 등이었다. 한편 반복/지속 경험이 없는 피해자는 성희롱 피해에 대한 영향에서 ‘특별한 영향이 없었음’이 54.8%여서 10명 중 4명은 영향이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I-10〉 성희롱 행위 반복/지속 여부

(단위: %)

| 구분                                 | 그렇다  | 아니다  | 기타  | 잘 모르겠다 | 계     |
|------------------------------------|------|------|-----|--------|-------|
| <b>전 체</b>                         | 28.8 | 60.3 | 0.8 | 10.2   | 100.0 |
| <b>유형</b>                          |      |      |     |        |       |
| 공공기관                               | 26.7 | 60.9 | 3.2 | 9.1    | 100.0 |
| 민간사업체                              | 29.4 | 60.0 | -   | 10.5   | 100.0 |
| <b>성별</b>                          |      |      |     |        |       |
| 남성                                 | 24.8 | 64.6 | 1.0 | 9.6    | 100.0 |
| 여성                                 | 31.1 | 57.7 | 0.7 | 10.5   | 100.0 |
| <b>연령</b>                          |      |      |     |        |       |
| 20대 이하                             | 43.9 | 47.1 | -   | 9.0    | 100.0 |
| 30대                                | 32.3 | 58.2 | -   | 9.5    | 100.0 |
| 40대                                | 24.6 | 65.6 | -   | 9.8    | 100.0 |
| 50대 이상                             | 23.7 | 62.3 | 2.5 | 11.4   | 100.0 |
| <b>직급</b>                          |      |      |     |        |       |
| 관리직                                | 26.1 | 69.1 | 0.4 | 4.3    | 100.0 |
| 일반직                                | 30.1 | 57.0 | 1.0 | 12.0   | 100.0 |
| 모름/무응답                             | 0.9  | 17.3 | -   | 81.9   | 100.0 |
| <b>고용형태</b>                        |      |      |     |        |       |
| 정규직                                | 28.3 | 60.9 | 0.9 | 9.9    | 100.0 |
| 비정규직                               | 32.7 | 54.7 | -   | 12.6   | 100.0 |
| 모름/무응답                             | 32.3 | 67.7 | -   | -      | 100.0 |
| <b>공공기관 유형</b>                     |      |      |     |        |       |
| 국가기관                               | 40.4 | 45.0 | 6.2 | 8.4    | 100.0 |
| 지방자치단체                             | 22.6 | 70.2 | 0.8 | 6.4    | 100.0 |
| 초/중/고                              | 18.0 | 71.2 | 5.0 | 5.8    | 100.0 |
| 대학                                 | 19.8 | 60.1 | -   | 20.1   | 100.0 |
| <b>민간사업체 업종</b>                    |      |      |     |        |       |
| 제조업                                | 32.1 | 58.5 | -   | 9.4    | 100.0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23.5 | 54.1 | -   | 22.4   | 100.0 |
| 개인서비스업                             | 25.7 | 48.3 | -   | 26.0   | 100.0 |
| 유통서비스업                             | 16.0 | 76.9 | -   | 7.2    | 100.0 |
| 사업서비스업                             | 31.0 | 67.4 | -   | 1.6    | 100.0 |
| 사회서비스업                             | 30.9 | 54.7 | -   | 14.4   | 100.0 |
| <b>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b>                |      |      |     |        |       |
| 30~99인                             | 38.3 | 45.9 | -   | 15.7   | 100.0 |
| 100~299인                           | 27.7 | 55.2 | -   | 17.1   | 100.0 |
| 300~499인                           | 16.3 | 74.6 | -   | 9.1    | 100.0 |
| 500인 이상                            | 26.0 | 71.4 | -   | 2.6    | 100.0 |

주: 백분율은 986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 5) 성희롱 피해 당시의 행동

지난 3년간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성희롱을 경험한 당시 성희롱 피해자가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다’(43.6%)가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화제를 돌리거나 그 자리를 피했다’(33.0%), ‘성희롱 행위자에게 바로 중단을 요구했다’(10.5%) 순이었다.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다’는 비율이 40%를 상회하였는데, 성희롱 행위자에게 바로 중단을 요구하거나 화제를 돌리거나 그 자리를 피하는 등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대처 행동을 취한 비율을 합하면 약 40%를 상회하여 비슷하였다. 10명 중 4명이 성희롱 피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대처 행동을 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10명 중 1명만 바로 중단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다수는 화제를 돌리거나 그 자리를 피하는 대처 행동을 하거나 대처를 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처 역량을 키우고 피해자의 대처가 지지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 모두 전체 응답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편 성별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었는데, 남성의 경우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했다’(58.1%), ‘화제를 돌리거나 그 자리를 피했다’(25.1%) 순이었고 ‘성희롱 행위자에게 바로 중단을 요구했다’는 3.1%에 그쳤다. 반면, 여성의 경우 ‘화제를 돌리거나 그 자리를 피했다’(37.7%),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했다’(34.9%), ‘성희롱 행위자에게 바로 중단을 요구했다’(14.9%)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방식의 대처를 하는 반면, 여성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과 함께 성희롱 상황을 피하거나 그 즉시 중단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연령대별로 대처 행동을 보면,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거나 그 자리를 피한다는 응답이 다수인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20대 이하에서, ‘성희롱 행위자에게 바로 중단을 요구했다’는 40대 이상에서,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다’는 30대에서 많았다.

공공기관 유형에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다’는 응답률이 높았으나 초/중/고는 ‘화제를 돌리거나 그 자리를 피했다’는 응답이 많았고, 대학에서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거나 그 자리를 피한다는 응답이 다수였지만 상대적으로 ‘성희롱 행위자에게 바로 중단을 요구했다’는 응답도 많았다.

〈표 III-11〉 성희롱 피해 당시의 행동

(단위: %)

| 구분                                | 성희롱<br>행위자에게<br>바로<br>중단을<br>요구했다 | 화제를<br>돌리거나<br>그 자리를<br>피했다 | 다른<br>사람에게<br>도움을<br>요청했다 | 그냥<br>아무렇지<br>않은 듯<br>행동했다 | 성희롱<br>행위자에게<br>적당히<br>호응해<br>주었다 | 기타   | 모름/<br>무응답 | 계     |
|-----------------------------------|-----------------------------------|-----------------------------|---------------------------|----------------------------|-----------------------------------|------|------------|-------|
| 전 체                               | 10.5                              | 33.0                        | 2.5                       | 43.6                       | 2.6                               | 3.7  | 4.2        | 100.0 |
| 유형                                |                                   |                             |                           |                            |                                   |      |            |       |
| 공공기관                              | 10.4                              | 32.2                        | 1.3                       | 46.5                       | 3.5                               | 6.0  | -          | 100.0 |
| 민간사업체                             | 10.5                              | 33.3                        | 2.9                       | 42.5                       | 2.2                               | 3.0  | 5.6        | 100.0 |
| 성별                                |                                   |                             |                           |                            |                                   |      |            |       |
| 남성                                | 3.1                               | 25.1                        | 3.6                       | 58.1                       | 1.9                               | 5.6  | 2.6        | 100.0 |
| 여성                                | 14.9                              | 37.7                        | 1.8                       | 34.9                       | 2.9                               | 2.6  | 5.1        | 100.0 |
| 연령                                |                                   |                             |                           |                            |                                   |      |            |       |
| 20대 이하                            | 9.0                               | 29.8                        | 10.3                      | 39.4                       | 2.2                               | 6.5  | 2.9        | 100.0 |
| 30대                               | 5.0                               | 28.3                        | 1.2                       | 52.3                       | 3.2                               | 5.4  | 4.6        | 100.0 |
| 40대                               | 16.8                              | 39.2                        | 0.0                       | 37.1                       | 1.7                               | -    | 5.1        | 100.0 |
| 50대 이상                            | 9.6                               | 32.3                        | 2.5                       | 44.4                       | 3.0                               | 4.7  | 3.5        | 100.0 |
| 직급                                |                                   |                             |                           |                            |                                   |      |            |       |
| 관리직                               | 11.0                              | 35.9                        | 0.6                       | 41.4                       | 1.9                               | 6.4  | 2.9        | 100.0 |
| 일반직                               | 10.3                              | 32.1                        | 3.3                       | 44.7                       | 2.8                               | 2.7  | 4.1        | 100.0 |
| 모름/무응답                            | 10.7                              | -                           | -                         | 7.5                        | -                                 | -    | 81.9       | 100.0 |
| 고용형태                              |                                   |                             |                           |                            |                                   |      |            |       |
| 정규직                               | 10.5                              | 33.2                        | 2.3                       | 43.1                       | 2.8                               | 4.2  | 4.0        | 100.0 |
| 비정규직                              | 10.3                              | 31.5                        | 3.9                       | 47.5                       | 0.9                               | 0.2  | 5.6        | 100.0 |
| 모름/무응답                            | 41.9                              | -                           | 32.3                      | 25.8                       | -                                 | -    | -          | 100.0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
| 국가기관                              | 5.9                               | 33.0                        | 4.2                       | 49.3                       | 6.3                               | 1.3  | -          | 100.0 |
| 지방자치단체                            | 8.4                               | 29.1                        | -                         | 53.8                       | 0.9                               | 7.8  | -          | 100.0 |
| 초/중/고                             | 12.1                              | 41.5                        | -                         | 30.9                       | 1.8                               | 13.7 | -          | 100.0 |
| 대학                                | 21.2                              | 24.6                        | -                         | 47.5                       | 5.4                               | 1.4  | -          | 100.0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
| 제조업                               | 8.6                               | 34.5                        | 6.5                       | 39.1                       | 2.1                               | 5.3  | 3.8        | 100.0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16.5                              | 9.3                         | 0.2                       | 53.8                       | 2.6                               | 1.8  | 16.1       | 100.0 |
| 개인서비스업                            | 12.9                              | 31.4                        | 1.9                       | 42.4                       | 2.5                               | 0.6  | 8.3        | 100.0 |
| 유통서비스업                            | 8.3                               | 20.9                        | -                         | 55.5                       | 0.6                               | 11.8 | 2.9        | 100.0 |
| 사업서비스업                            | 20.4                              | 28.5                        | 2.3                       | 44.8                       | 3.4                               | -    | 0.6        | 100.0 |
| 사회서비스업                            | 3.5                               | 44.5                        | 0.2                       | 39.0                       | 1.8                               | 0.4  | 10.6       | 100.0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
| 30~99인                            | 15.7                              | 34.8                        | 2.3                       | 32.2                       | 1.6                               | 6.2  | 7.2        | 100.0 |
| 100~299인                          | 7.5                               | 24.7                        | 7.4                       | 47.6                       | 2.0                               | 0.2  | 10.6       | 100.0 |
| 300~499인                          | 8.7                               | 14.8                        | -                         | 63.4                       | 8.4                               | -    | 4.7        | 100.0 |
| 500인 이상                           | 8.5                               | 41.0                        | 1.1                       | 43.6                       | 1.7                               | 2.7  | 1.4        | 100.0 |

주: 백분율은 986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 6) 성희롱 피해 당시 목격자 유무 및 목격자의 행동

지난 3년간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성희롱 피해 당시 목격자가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 목격자가 '있었다'는 응답이 54.0%였다. 성희롱 피해자 2명 중 1명은 피해 당시에 주위에 목격자가 있었던 것이다.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 65.9%, 민간사업체 50.0%,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46.0%, 여성 58.8%였다.

목격자가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 목격자들의 행동을 질문하였다(복수응답). 목격자들의 행동으로는 '모른척 하였다'(50.0%)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행위자의 행동을 제지하였다'(19.1%)와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었다'(19.1%) 순이었다. 행위자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경우보다 모른 척 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공공기관의 경우 '모른 척 하였다' 64.1%, '행위자의 행동을 제지하였다' 21.2%,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었다' 12.5% 순이었다. 한편, '행위자에 동조하였다'는 13.3%였다. 민간사업체의 경우 '모른 척 하였다' 43.6%,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었다' 22.0%, '행위자의 행동을 제지하였다' 18.2% 순이었다. '행위자에 동조하였다'는 8.2%였다. 대체로 모른 척 하거나 행위자에 동조하는 경향이 민간사업체보다는 공공기관에서 더 강했다.

성별에서는 성희롱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목격자들의 행동은 '모른 척 하였다' 47.4%,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었다' 25.1%, '행위자의 행동을 제지하였다' 18.5% 순이었고, '행위자에 동조하였다'는 8.8%였다. 성희롱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 '모른 척 하였다' 55.6%, '행위자를 제지하였다' 20.5% 순이었고, '행위자에 동조하였다'는 11.8%였다. 여성과 달리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6.0%에 그쳤다. 전체적으로 성희롱 피해자가 여성일 경우에는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거나 행위자의 행동을 제지하는 등 목격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모른 척 하였다'는 응답이 다수인 가운데, 20대 이하(50.9%)와 50대 이상(60.9%)에서 '모른 척 하였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행위자의 행동을 제지하였다'의 경우 20대(21.6%)와 30대(32.7%)에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20대 이하(24.4%), 40대(25.6%)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공공기관 유형 중 지방자치단체(22.3%)와 500인 이상 규모의 민간사업체(30.9%)에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응답이 많았다. 민간사업체 업종 중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에서는 '모른 척 하였다'는 응답(72.0%)이 월등히 많았다.

〈표 III-12〉 성희롱 피해 당시의 목격자 유무

(단위: %)

| 구분                                 | 있었다  | 없었다  | 모름/무응답 | 계     |
|------------------------------------|------|------|--------|-------|
| <b>전 체</b>                         | 54.0 | 41.7 | 4.2    | 100.0 |
| <b>유형</b>                          |      |      |        |       |
| 공공기관                               | 65.9 | 34.1 | -      | 100.0 |
| 민간사업체                              | 50.0 | 44.3 | 5.7    | 100.0 |
| <b>성별</b>                          |      |      |        |       |
| 남성                                 | 46.0 | 50.8 | 3.2    | 100.0 |
| 여성                                 | 58.8 | 36.3 | 4.8    | 100.0 |
| <b>연령</b>                          |      |      |        |       |
| 20대 이하                             | 54.7 | 43.6 | 1.7    | 100.0 |
| 30대                                | 48.9 | 45.8 | 5.3    | 100.0 |
| 40대                                | 47.7 | 46.9 | 5.4    | 100.0 |
| 50대 이상                             | 63.4 | 33.2 | 3.3    | 100.0 |
| <b>직급</b>                          |      |      |        |       |
| 관리직                                | 51.2 | 44.8 | 4.0    | 100.0 |
| 일반직                                | 55.5 | 40.7 | 3.8    | 100.0 |
| 모름/무응답                             | 14.6 | 3.5  | 81.9   | 100.0 |
| <b>고용형태</b>                        |      |      |        |       |
| 정규직                                | 53.6 | 42.3 | 4.1    | 100.0 |
| 비정규직                               | 57.2 | 37.2 | 5.6    | 100.0 |
| 모름/무응답                             | 89.8 | 10.2 | -      | 100.0 |
| <b>공공기관 유형</b>                     |      |      |        |       |
| 국가기관                               | 63.3 | 36.7 | -      | 100.0 |
| 지방자치단체                             | 62.8 | 37.2 | -      | 100.0 |
| 초/중/고                              | 72.1 | 27.9 | -      | 100.0 |
| 대학                                 | 68.7 | 31.3 | -      | 100.0 |
| <b>민간사업체 업종</b>                    |      |      |        |       |
| 제조업                                | 38.9 | 57.2 | 3.9    | 100.0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15.3 | 68.6 | 16.1   | 100.0 |
| 개인서비스업                             | 48.6 | 45.0 | 6.4    | 100.0 |
| 유통서비스업                             | 58.4 | 38.7 | 2.9    | 100.0 |
| 사업서비스업                             | 62.7 | 36.1 | 1.2    | 100.0 |
| 사회서비스업                             | 58.1 | 31.0 | 10.9   | 100.0 |
| <b>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b>                |      |      |        |       |
| 30~99인                             | 49.6 | 42.9 | 7.6    | 100.0 |
| 100~299인                           | 40.8 | 48.5 | 10.6   | 100.0 |
| 300~499인                           | 50.0 | 45.3 | 4.7    | 100.0 |
| 500인 이상                            | 56.0 | 42.7 | 1.4    | 100.0 |

주: 백분율은 986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표 Ⅲ-13〉 성희롱 피해 당시의 목격자 행동(복수응답)

(단위: %)

| 구분                                 | 모른 척<br>하였다<br>(방관했다) | 행위자에<br>동조하였다 | 행위자의<br>행동을<br>제지하였다 | 그 상황을<br>벗어날 수<br>있도록 해주었다<br>(피해자를 가해<br>상황으로부터<br>분리 등) | 기타   | 모름/무응답 |
|------------------------------------|-----------------------|---------------|----------------------|-----------------------------------------------------------|------|--------|
| 전 체                                | 50.0                  | 9.8           | 19.1                 | 19.1                                                      | 8.0  | 1.8    |
| 유형                                 |                       |               |                      |                                                           |      |        |
| 공공기관                               | 64.1                  | 13.3          | 21.2                 | 12.5                                                      | 6.3  | -      |
| 민간사업체                              | 43.6                  | 8.2           | 18.2                 | 22.0                                                      | 8.8  | 2.7    |
| 성별                                 |                       |               |                      |                                                           |      |        |
| 남성                                 | 55.6                  | 11.8          | 20.5                 | 6.0                                                       | 10.0 | 2.5    |
| 여성                                 | 47.4                  | 8.8           | 18.5                 | 25.1                                                      | 7.1  | 1.5    |
| 연령                                 |                       |               |                      |                                                           |      |        |
| 20대 이하                             | 50.9                  | 2.9           | 21.6                 | 24.4                                                      | 4.0  | 1.5    |
| 30대                                | 44.4                  | 2.6           | 32.7                 | 12.9                                                      | 11.1 | 2.2    |
| 40대                                | 38.2                  | 15.1          | 7.8                  | 25.6                                                      | 10.3 | 4.2    |
| 50대 이상                             | 60.9                  | 12.8          | 17.9                 | 16.4                                                      | 6.0  | 0.1    |
| 직급                                 |                       |               |                      |                                                           |      |        |
| 관리직                                | 39.7                  | 6.9           | 12.7                 | 29.8                                                      | 8.7  | 3.3    |
| 일반직                                | 53.9                  | 10.9          | 21.5                 | 15.0                                                      | 7.8  | 1.3    |
| 모름/무응답                             | 45.0                  | -             | 55.0                 | -                                                         | -    | -      |
| 고용형태                               |                       |               |                      |                                                           |      |        |
| 정규직                                | 49.8                  | 10.4          | 18.1                 | 19.6                                                      | 8.5  | 1.8    |
| 비정규직                               | 51.9                  | 5.1           | 27.0                 | 14.2                                                      | 4.2  | 1.8    |
| 모름/무응답                             | 28.8                  | -             | 35.2                 | 36.0                                                      | -    | -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국가기관                               | 69.9                  | 14.7          | 25.1                 | 9.7                                                       | 5.1  | -      |
| 지방자치단체                             | 54.6                  | 6.4           | 20.8                 | 22.3                                                      | 8.6  | -      |
| 초/중/고                              | 63.9                  | 13.4          | 25.0                 | 10.9                                                      | 7.9  | -      |
| 대학                                 | 71.1                  | 23.0          | 9.6                  | 2.3                                                       | 1.9  | -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제조업                                | 43.5                  | 3.8           | 22.5                 | 18.4                                                      | 13.4 | 0.6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72.0                  | 1.5           | 3.8                  | 5.5                                                       | -    | 20.2   |
| 개인서비스업                             | 51.9                  | 15.0          | 14.0                 | 11.1                                                      | -    | 13.1   |
| 유통서비스업                             | 49.4                  | 11.2          | 34.1                 | 1.9                                                       | -    | 5.2    |
| 사업서비스업                             | 49.8                  | 8.5           | 8.3                  | 30.9                                                      | 2.4  | 3.1    |
| 사회서비스업                             | 32.8                  | 9.7           | 20.0                 | 27.0                                                      | 15.8 | -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30~99인                             | 45.0                  | 6.0           | 16.4                 | 15.3                                                      | 15.5 | 6.6    |
| 100~299인                           | 56.6                  | 7.6           | 16.8                 | 17.7                                                      | 1.1  | 1.1    |
| 300~499인                           | 53.4                  | 35.1          | 12.7                 | 9.0                                                       | 7.7  | 2.5    |
| 500인 이상                            | 35.0                  | 5.4           | 21.0                 | 30.9                                                      | 7.8  | 0.6    |

주: 백분율은 566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 7) 성희롱 피해 경험의 영향

지난 3년간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성희롱 피해에 따른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특별한 영향이 없었음’이라는 응답이 44.2%였다. 이는 성희롱 피해자의 절반 정도는 성희롱 피해 경험으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 39.3%, 민간사업체 45.9%가 ‘특별한 영향이 없었다’라고 응답해, 민간사업체(54.1%)보다 공공기관(60.7%)에서 성희롱 피해 경험으로 인한 영향이 있었다.

성별로는 남성은 61.6%, 여성은 33.9%가 ‘특별한 영향이 없었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남성 중 38.4%, 여성 중 66.1%가 성희롱 피해로 인해 영향을 받았다는 것으로, 성희롱 피해의 영향을 받은 여성이 남성의 1.7배 정도로 성희롱 피해로 인한 영향에 더 취약함을 보여준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와 50대 이상에서,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에서는 규모가 작을수록 성희롱 피해로 인한 특별한 영향이 있었다고 나타났다.

특별한 영향이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 구체적인 영향(복수응답)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본 결과, ‘직장(성희롱 예방정책, 문화 등)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음’(20.5%), ‘직장만족도가 낮아짐’(19.0%), ‘근로욕 저하 등 업무 집중도가 떨어짐’(10.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희롱 피해 경험이 개인적 차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보다 직장에 대한 실망감, 직장 만족도 저하, 근로의욕 저하 등 직장생활과 근로환경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의 경우 ‘직장(성희롱 예방정책, 문화 등)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음’, ‘직장만족도가 낮아짐’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의 경우 ‘직장(성희롱 예방정책, 문화 등)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음’, ‘직장만족도가 낮아짐’, ‘근로의욕 저하 등 업무 집중도가 떨어짐’에서 남성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고용형태에서 비정규직은 ‘직장만족도가 낮아짐’이 많았고, 공공기관 유형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에서는 ‘직장(성희롱 예방정책, 문화 등)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음’이 많았다.

〈표 Ⅲ-14〉 성희롱 피해 경험의 영향(복수응답)

(단위: %)

| 구분                                 | 특별한<br>영향<br>없었음 | 근로익욕<br>저하 등<br>업무<br>집중도가<br>떨어짐 | 직장을<br>그만두고<br>싶었음 | 직장<br>만족도가<br>낮아짐 | 직장<br>(성희롱<br>예방정책,<br>문화 등)<br>에 대한<br>실망감을<br>느꼈음 | 직장 내<br>대인<br>관계에<br>어려움이<br>생김 | 분노,<br>우울감,<br>두려움,<br>자살 생각,<br>자존감<br>하락 등<br>정신적<br>으로<br>힘듦 | 두통,<br>복통,<br>구토 등<br>신체적<br>으로<br>힘듦 | 기타   | 모름/<br>무응답 |
|------------------------------------|------------------|-----------------------------------|--------------------|-------------------|-----------------------------------------------------|---------------------------------|-----------------------------------------------------------------|---------------------------------------|------|------------|
| 전 체                                | 44.2             | 10.9                              | 7.5                | 19.0              | 20.5                                                | 7.7                             | 8.1                                                             | 1.3                                   | 3.9  | 4.7        |
| 유형                                 |                  |                                   |                    |                   |                                                     |                                 |                                                                 |                                       |      |            |
| 공공기관                               | 39.3             | 12.9                              | 9.0                | 23.6              | 27.1                                                | 5.9                             | 9.6                                                             | 1.4                                   | 7.7  | -          |
| 민간사업체                              | 45.9             | 10.2                              | 6.9                | 17.5              | 18.3                                                | 8.3                             | 7.6                                                             | 1.3                                   | 2.6  | 6.3        |
| 성별                                 |                  |                                   |                    |                   |                                                     |                                 |                                                                 |                                       |      |            |
| 남성                                 | 61.6             | 4.1                               | 4.0                | 6.7               | 9.8                                                 | 8.8                             | 8.7                                                             | 0.8                                   | 1.9  | 4.1        |
| 여성                                 | 33.9             | 14.9                              | 9.5                | 26.4              | 26.9                                                | 7.0                             | 7.8                                                             | 1.7                                   | 5.2  | 5.0        |
| 연령                                 |                  |                                   |                    |                   |                                                     |                                 |                                                                 |                                       |      |            |
| 20대 이하                             | 41.9             | 13.5                              | 6.8                | 27.7              | 24.7                                                | 9.0                             | 11.8                                                            | 3.7                                   | 2.6  | 1.7        |
| 30대                                | 47.1             | 8.6                               | 12.3               | 22.2              | 13.5                                                | 2.8                             | 13.7                                                            | 1.0                                   | 5.0  | 5.3        |
| 40대                                | 49.7             | 10.5                              | 4.1                | 7.9               | 19.3                                                | 14.5                            | 1.4                                                             | 0.8                                   | 0.6  | 6.9        |
| 50대 이상                             | 38.1             | 11.9                              | 7.1                | 23.1              | 25.3                                                | 4.7                             | 8.5                                                             | 1.2                                   | 6.6  | 3.3        |
| 직급                                 |                  |                                   |                    |                   |                                                     |                                 |                                                                 |                                       |      |            |
| 관리직                                | 53.0             | 2.5                               | 2.8                | 3.9               | 18.3                                                | 9.8                             | 6.9                                                             | 0.1                                   | 3.9  | 3.0        |
| 일반직                                | 40.9             | 14.4                              | 9.4                | 25.3              | 21.5                                                | 6.9                             | 8.7                                                             | 1.8                                   | 4.0  | 4.7        |
| 모름/무응답                             | 8.1              | -                                 | 2.6                | 2.6               | 7.5                                                 | -                               | -                                                               | 2.6                                   | -    | 81.9       |
| 고용형태                               |                  |                                   |                    |                   |                                                     |                                 |                                                                 |                                       |      |            |
| 정규직                                | 44.2             | 10.3                              | 7.1                | 17.8              | 21.1                                                | 8.4                             | 8.9                                                             | 1.3                                   | 3.5  | 4.5        |
| 비정규직                               | 44.4             | 15.7                              | 10.8               | 29.6              | 15.7                                                | 1.6                             | 2.3                                                             | 1.5                                   | 7.9  | 5.9        |
| 모름/무응답                             | 31.6             | 32.3                              | 10.2               | 10.2              | 25.8                                                | 32.3                            | -                                                               | 10.2                                  | -    | -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      |            |
| 국가기관                               | 41.0             | 10.9                              | 10.9               | 14.3              | 27.4                                                | 9.3                             | 6.9                                                             | 2.1                                   | 10.5 | -          |
| 지방자치단체                             | 41.4             | 15.0                              | 6.5                | 23.5              | 27.8                                                | 6.4                             | 5.9                                                             | -                                     | 10.2 | -          |
| 초/중/고                              | 32.7             | 12.9                              | 6.7                | 23.5              | 34.8                                                | 1.8                             | 8.5                                                             | 3.3                                   | 2.9  | -          |
| 대학                                 | 40.9             | 12.8                              | 13.4               | 42.3              | 14.5                                                | 3.9                             | 23.8                                                            | -                                     | 3.6  | -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      |            |
| 제조업                                | 51.1             | 7.7                               | 6.7                | 10.4              | 11.2                                                | 11.2                            | 11.5                                                            | 0.2                                   | 2.1  | 5.6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53.4             | 4.1                               | 14.9               | 7.1               | 6.0                                                 | 7.9                             | 19.0                                                            | 2.3                                   | 0.2  | 16.1       |
| 개인서비스업                             | 43.3             | 12.3                              | 11.8               | 17.2              | 33.2                                                | 6.4                             | 3.3                                                             | 2.6                                   | 0.9  | 6.8        |
| 유통서비스업                             | 60.4             | 5.8                               | 0.8                | 20.5              | 15.4                                                | 1.3                             | 10.3                                                            | 3.0                                   | 0.9  | 2.9        |
| 사업서비스업                             | 54.6             | 6.0                               | 4.3                | 9.7               | 29.3                                                | 7.6                             | 3.7                                                             | 1.7                                   | 0.2  | 0.4        |
| 사회서비스업                             | 26.2             | 19.0                              | 8.6                | 34.7              | 17.3                                                | 7.7                             | 4.0                                                             | 1.5                                   | 6.9  | 11.3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      |            |
| 30~99인                             | 36.7             | 12.5                              | 12.5               | 19.9              | 18.6                                                | 7.5                             | 15.6                                                            | 1.0                                   | 2.0  | 9.3        |
| 100~299인                           | 43.9             | 11.2                              | 5.6                | 16.4              | 25.9                                                | 3.8                             | 7.0                                                             | 1.0                                   | 1.4  | 10.9       |
| 300~499인                           | 54.6             | 4.7                               | 13.0               | 13.4              | 19.7                                                | 2.5                             | -                                                               | -                                     | 1.1  | 5.4        |
| 500인 이상                            | 52.8             | 8.8                               | 2.2                | 17.0              | 12.9                                                | 12.8                            | 3.1                                                             | 2.0                                   | 4.3  | 1.1        |

주: 1) 백분율은 986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성희롱 직접 피해 경험으로 인한 영향은 복수응답 분석을 실시함.



## 8) 성희롱 피해에 대한 대응

### 가) 성희롱 피해 이후 대처 행동

성희롱 피해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지 조사한 결과, ‘참고 넘어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6.7%로,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7명 정도는 성희롱 피해를 참고 넘어가고 있었다. 그다음은 ‘동료에게 알리고 의논함’ 10.9%, ‘성희롱 행위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개인적으로 처리함’ 7.3% 순이었다. 반면 ‘고충상담창구에 상담함’ 1.6%, ‘상급자에게 알리고 조치를 상의함’ 3.3%, ‘사내 기구를 통해 공식적으로 신고함’ 1.1% 등으로 기관 내부 공식 채널을 활용하는 비율은 6.0%에 그쳤다. 그동안 직장내 성희롱 상담 및 사건처리를 위한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확대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공식절차 이용도는 여전히 높지 않았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공공기관(67.5%)과 민간사업체(66.4%) 모두 10명 중 7명은 참고 넘어가는 경향을 보여 유사했다. 그다음의 대처유형 역시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 모두 ‘동료에게 알리고 의논함’(공공기관 15.3%, 민간사업체 9.4%)이었다.

성별로 남성은 71.2%, 여성은 64.0%가 참고 넘어간다고 응답하였다. 그다음은 남성의 경우 ‘성희롱 행위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개인적으로 처리함’(10.9%), ‘동료에게 알리고 의논함’(5.0%) 순이었고, 여성의 경우 ‘동료에게 알리고 의논함’(14.4%), ‘성희롱 행위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개인적으로 처리함’(5.2%), ‘상급자에게 알리고 조치를 상의함’(4.7%) 순이었다.

연령별로 20대 이하는 ‘참고 넘어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0%보다 낮았고 30대 이상은 60%를 초과하였다. 30대는 ‘성희롱 행위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개인적으로 처리함’(15.6%)이 많았고, 20대 이하(13.8%)와 50대 이상(12.9%)은 동료에게 알리고 의논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20대 이하의 경우 ‘고충상담창구에 상담함’이 7.2%로 다른 연령대가 1% 내외인 것에 비해 높았다. 공공기관 유형 중 초/중/고(26.5%)와 대학(20.0%)에서는 ‘동료에게 알리고 의논’한다는 비율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보다 높았다.

2018년 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참고 넘어감’의 응답은 2021년 66.7%, 2018년 81.6%로, 2021년에 참고 넘어가지 않고 대처하는 경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8년에 ‘상급자에게 알리고 조치를 상의함’(1.1%), ‘사내 기구를 통해 공식적으로 신고함’(0.8%) 등 기관 내부 공식 채널을 활용하는 비율이 1.9%였던 것에 비해 2021년에는 6.0%로 다소 상승하였다. 전반적으로 2021년에 2018년에 비해 참고 넘어가는 비율이 줄어든 점은 긍정적으로 보이나, 여전히 공식적인 조치를 통한 대응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표 Ⅲ-15〉 성희롱 피해 이후 대처 행동

(단위: %)

| 구분                                 | 참고<br>넘어감 | 성희롱<br>행위자<br>에게<br>사과를<br>요구<br>하는 등<br>개인적<br>으로<br>처리함 | 동료<br>에게<br>알리고<br>의논함 | 고충상담<br>창구<br>(상담실,<br>사이버/<br>모바일<br>상담센터<br>등)에<br>상담함 | 상급자<br>에게<br>알리고<br>조치를<br>상의함 | 사내<br>기구를<br>통해<br>공식적<br>으로<br>신고함 | 외부<br>기관을<br>통해<br>공식적<br>으로<br>신고함 | 기타   | 모름/<br>무응답 | 계     |
|------------------------------------|-----------|-----------------------------------------------------------|------------------------|----------------------------------------------------------|--------------------------------|-------------------------------------|-------------------------------------|------|------------|-------|
| 전 체                                | 66.7      | 7.3                                                       | 10.9                   | 1.6                                                      | 3.3                            | 1.1                                 | 0.3                                 | 3.3  | 5.6        | 100.0 |
| 유형                                 |           |                                                           |                        |                                                          |                                |                                     |                                     |      |            |       |
| 공공기관                               | 67.5      | 5.2                                                       | 15.3                   | 0.7                                                      | 1.6                            | 1.6                                 | 0.7                                 | 7.6  | -          | 100.0 |
| 민간사업체                              | 66.4      | 8.0                                                       | 9.4                    | 1.9                                                      | 3.9                            | 0.9                                 | 0.2                                 | 1.8  | 7.5        | 100.0 |
| 성별                                 |           |                                                           |                        |                                                          |                                |                                     |                                     |      |            |       |
| 남성                                 | 71.2      | 10.9                                                      | 5.0                    | 1.6                                                      | 0.9                            | 0.3                                 | 0.2                                 | 5.3  | 4.6        | 100.0 |
| 여성                                 | 64.0      | 5.2                                                       | 14.4                   | 1.5                                                      | 4.7                            | 1.5                                 | 0.4                                 | 2.1  | 6.1        | 100.0 |
| 연령                                 |           |                                                           |                        |                                                          |                                |                                     |                                     |      |            |       |
| 20대 이하                             | 58.0      | 8.0                                                       | 13.8                   | 7.2                                                      | 3.9                            | 1.2                                 | -                                   | 0.6  | 7.3        | 100.0 |
| 30대                                | 66.4      | 15.6                                                      | 8.2                    | 0.4                                                      | 1.1                            | 0.5                                 | 0.3                                 | 0.9  | 6.7        | 100.0 |
| 40대                                | 71.9      | 2.0                                                       | 9.8                    | 0.1                                                      | 7.1                            | 1.4                                 | 0.3                                 | 1.4  | 6.1        | 100.0 |
| 50대 이상                             | 65.7      | 5.5                                                       | 12.9                   | 1.5                                                      | 1.3                            | 1.2                                 | 0.5                                 | 7.9  | 3.5        | 100.0 |
| 직급                                 |           |                                                           |                        |                                                          |                                |                                     |                                     |      |            |       |
| 관리직                                | 74.1      | 7.1                                                       | 2.9                    | 0.1                                                      | 7.7                            | 1.4                                 | 0.3                                 | 3.1  | 3.3        | 100.0 |
| 일반직                                | 64.1      | 7.4                                                       | 14.3                   | 2.2                                                      | 1.5                            | 1.0                                 | 0.3                                 | 3.4  | 5.9        | 100.0 |
| 모름/무응답                             | 7.5       | 10.7                                                      | -                      | -                                                        | -                              | -                                   | -                                   | -    | 81.9       | 100.0 |
| 고용형태                               |           |                                                           |                        |                                                          |                                |                                     |                                     |      |            |       |
| 정규직                                | 66.4      | 7.5                                                       | 11.2                   | 1.3                                                      | 3.7                            | 1.2                                 | 0.4                                 | 3.0  | 5.5        | 100.0 |
| 비정규직                               | 69.2      | 5.4                                                       | 9.1                    | 3.4                                                      | 0.3                            | 0.2                                 | -                                   | 6.3  | 6.2        | 100.0 |
| 모름/무응답                             | 25.8      | 41.9                                                      | -                      | 32.3                                                     | -                              | -                                   | -                                   | -    | -          | 100.0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            |       |
| 국가기관                               | 68.9      | 2.4                                                       | 9.4                    | 0.7                                                      | 3.2                            | 2.7                                 | -                                   | 12.7 | -          | 100.0 |
| 지방자치단체                             | 75.6      | 4.6                                                       | 11.1                   | 1.4                                                      | 1.1                            | 1.5                                 | 0.2                                 | 4.4  | -          | 100.0 |
| 초/중/고                              | 51.4      | 7.7                                                       | 26.5                   | -                                                        | 1.0                            | 1.0                                 | 3.0                                 | 9.5  | -          | 100.0 |
| 대학                                 | 70.0      | 8.6                                                       | 20.0                   | -                                                        | -                              | -                                   | -                                   | 1.4  | -          | 100.0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            |       |
| 제조업                                | 63.6      | 16.7                                                      | 8.6                    | 2.9                                                      | 1.2                            | 1.1                                 | -                                   | 0.7  | 5.1        | 100.0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52.5      | 13.9                                                      | 1.9                    | -                                                        | 0.4                            | -                                   | -                                   | 15.3 | 16.1       | 100.0 |
| 개인서비스업                             | 69.2      | 8.6                                                       | 9.1                    | 1.9                                                      | 3.8                            | -                                   | 0.3                                 | 0.5  | 6.7        | 100.0 |
| 유통서비스업                             | 76.5      | 3.2                                                       | 2.8                    | 1.2                                                      | -                              | -                                   | 1.5                                 | -    | 14.9       | 100.0 |
| 사업서비스업                             | 74.8      | 2.4                                                       | 2.8                    | 2.3                                                      | 13.6                           | 2.5                                 | 0.3                                 | 0.2  | 1.2        | 100.0 |
| 사회서비스업                             | 61.5      | 1.3                                                       | 19.8                   | 0.7                                                      | 1.1                            | -                                   | -                                   | 3.3  | 12.4       | 100.0 |

| 구분                  | 참고<br>넘어감 | 성희롱<br>행위자<br>에게<br>사과를<br>요구<br>하는 등<br>개인적<br>으로<br>처리함 | 동료<br>에게<br>알리고<br>의논함 | 고충상담<br>창구<br>(상담실,<br>사이버/<br>모바일<br>상담센터<br>등)에<br>상담함 | 상급자<br>에게<br>알리고<br>조치를<br>상의함 | 사내<br>기구를<br>통해<br>공식적<br>으로<br>신고함 | 외부<br>기관을<br>통해<br>공식적<br>으로<br>신고함 | 기타  | 모름/<br>무응답 | 계     |
|---------------------|-----------|-----------------------------------------------------------|------------------------|----------------------------------------------------------|--------------------------------|-------------------------------------|-------------------------------------|-----|------------|-------|
| <b>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b> |           |                                                           |                        |                                                          |                                |                                     |                                     |     |            |       |
| 30~99인              | 61.1      | 11.0                                                      | 9.0                    | 3.0                                                      | 1.7                            | 1.8                                 | 0.7                                 | 3.3 | 8.5        | 100.0 |
| 100~299인            | 62.5      | 7.1                                                       | 9.0                    | 4.0                                                      | 1.6                            | 1.5                                 | -                                   | 3.4 | 10.8       | 100.0 |
| 300~499인            | 82.1      | 4.8                                                       | 5.7                    | -                                                        | 0.2                            | -                                   | -                                   | -   | 7.2        | 100.0 |
| 500인 이상             | 69.9      | 6.8                                                       | 10.7                   | -                                                        | 7.7                            | 0.0                                 | -                                   | 0.1 | 4.6        | 100.0 |

주: 백분율은 986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 나) 참고 넘어간 이유

성희롱 피해에 대해 ‘참고 넘어감’이라고 응답한 경우, 참고 넘어간 이유(복수응답)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59.8%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 봐서’(33.3%),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거 같아서’(22.2%), ‘업무와 직장생활에서 어려움이나 불이익 등을 받을까 걱정되어서’(19.1%) 순이었다.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지만, 문제 제기로 인해 불이익을 경험하거나 조직에서 묵인하는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로 참고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기관 유형과 성별로 보면, 민간사업체와 남성의 경우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70% 정도로, 다른 이유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반면 공공기관과 여성의 경우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 봐서’라는 응답도 40%를 상회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속기관 유형에서 보면, 공공기관의 경우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거 같아서’(30.5%),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 봐서’(41.8%), ‘업무와 직장생활에서 어려움이나 불이익 등을 받을까 걱정되어서’(24.2%), ‘소문, 평판, 따돌림, 비난 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18.5%), ‘성희롱 관련 업무담당자가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거 같지 않아서’(11.0%) 등에서 민간사업체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공공기관에서는 사건처리에서의 2차 피해, 불공정성 등에 대한 우려로, 민간사업체에서는 10명 중 6명은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성희롱 피해에 대한 낮은 민감성

등으로 참고 넘어가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는 응답(70.2%)이 여성(52.9%)보다 월등히 높았던 반면, 여성의 경우는 행위자와의 불편한 관계(45.2%), 업무와 직장생활에서의 불이익(27.4%), 조직에서의 묵인(28.3%), 소문이나 평판, 따돌림 등에 대한 두려움(17.6%) 등에서도 크게 높았다.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여긴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국가기관은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 봐서’, 지방자치단체는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거 같아서’, 초/중/고는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 봐서’, 대학은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거 같아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민간사업체 업종별로 제조업, 유통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등에서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많았고,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 등에서는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거 같아서’라는 응답이 많았다. 30~99인 규모의 민간사업체에서도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거 같아서’라는 응답도 많았다.

〈표 Ⅲ-16〉 참고 넘어간 이유(복수응답)

(단위: %)

| 구분     |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거 같아서 | 성희롱 관련 업무 담당자가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거 같지 않아서 |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 소문, 평판, 따돌림, 비난 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 업무와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이나 불이익 등을 받을까 걱정 되어서 |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 봐서 | 직장을 그만두게 될까 봐서 | 대처 방법을 잘 몰라서 | 기타   | 모름/무응답 |
|--------|----------------------------|--------------------------------------------|--------------------|-------------------------------|-------------------------------------|-------------------|----------------|--------------|------|--------|
| 전 체    | 22.2                       | 5.6                                        | 59.8               | 13.1                          | 19.1                                | 33.3              | 1.5            | 3.1          | 5.0  | 0.6    |
| 유형     |                            |                                            |                    |                               |                                     |                   |                |              |      |        |
| 공공기관   | 30.5                       | 11.0                                       | 43.4               | 18.5                          | 24.2                                | 41.8              | 2.1            | 8.7          | 7.1  | -      |
| 민간사업체  | 19.3                       | 3.7                                        | 65.5               | 11.2                          | 17.3                                | 30.3              | 1.3            | 1.2          | 4.3  | 0.8    |
| 성별     |                            |                                            |                    |                               |                                     |                   |                |              |      |        |
| 남성     | 13.1                       | 5.0                                        | 70.2               | 6.3                           | 6.5                                 | 15.3              | -              | 2.3          | 5.3  | 1.0    |
| 여성     | 28.3                       | 6.0                                        | 52.9               | 17.6                          | 27.4                                | 45.2              | 2.6            | 3.7          | 4.9  | 0.4    |
| 연령     |                            |                                            |                    |                               |                                     |                   |                |              |      |        |
| 20대 이하 | 12.1                       | 5.2                                        | 67.9               | 5.5                           | 15.8                                | 35.8              | 1.0            | 2.4          | 16.1 | 2.0    |
| 30대    | 21.3                       | 5.2                                        | 67.6               | 6.0                           | 18.7                                | 25.9              | 3.5            | 2.3          | 5.5  | 1.0    |
| 40대    | 17.4                       | 2.1                                        | 65.7               | 18.9                          | 18.4                                | 36.3              | -              | 0.0          | -    | 0.5    |
| 50대 이상 | 31.4                       | 9.5                                        | 44.9               | 15.5                          | 21.3                                | 35.2              | 1.7            | 7.1          | 5.7  | -      |

| 구분                                 | 문제를<br>제기해도<br>기관/<br>조직에서<br>묵인<br>할 거<br>같아서 | 성희롱<br>관련<br>업무<br>담당자가<br>공정하고<br>전문적<br>으로<br>사건을<br>처리할<br>거 같지<br>않아서 | 넘어갈<br>수 있는<br>문제라고<br>생각해서 | 소문,<br>평판,<br>따돌림,<br>비난<br>등에<br>대한<br>두려움<br>때문에 | 업무와<br>직장<br>생활에서<br>어려움<br>이나<br>불이익<br>등을<br>받을까<br>걱정<br>되어서 | 행위자와<br>사이가<br>불편해<br>질까<br>봐서 | 직장을<br>그만두게<br>될까<br>봐서 | 대처<br>방법을<br>잘<br>몰라서 | 기타   | 모름/<br>무응답 |
|------------------------------------|------------------------------------------------|---------------------------------------------------------------------------|-----------------------------|----------------------------------------------------|-----------------------------------------------------------------|--------------------------------|-------------------------|-----------------------|------|------------|
| <b>직급</b>                          |                                                |                                                                           |                             |                                                    |                                                                 |                                |                         |                       |      |            |
| 관리직                                | 20.4                                           | 4.0                                                                       | 69.8                        | 13.7                                               | 16.0                                                            | 28.0                           | 0.1                     | 0.5                   | 1.8  | 0.4        |
| 일반직                                | 23.0                                           | 6.3                                                                       | 55.1                        | 12.8                                               | 20.6                                                            | 35.8                           | 2.2                     | 4.4                   | 6.5  | 0.7        |
| 모름/무응답                             | 100.0                                          | 88.3                                                                      | -                           | -                                                  | -                                                               | 11.7                           | -                       | -                     | -    | -          |
| <b>고용형태</b>                        |                                                |                                                                           |                             |                                                    |                                                                 |                                |                         |                       |      |            |
| 정규직                                | 21.9                                           | 5.8                                                                       | 58.2                        | 13.0                                               | 18.8                                                            | 33.9                           | 0.8                     | 3.3                   | 4.0  | 0.7        |
| 비정규직                               | 24.2                                           | 3.8                                                                       | 72.2                        | 13.7                                               | 22.0                                                            | 28.9                           | 7.5                     | 1.6                   | 13.2 | -          |
| 모름/무응답                             | 100.0                                          | 100.0                                                                     | -                           | -                                                  | -                                                               | -                              | -                       | -                     | -    | -          |
| <b>공공기관 유형</b>                     |                                                |                                                                           |                             |                                                    |                                                                 |                                |                         |                       |      |            |
| 국가기관                               | 19.1                                           | 9.4                                                                       | 42.4                        | 21.1                                               | 30.2                                                            | 41.2                           | 1.7                     | 14.2                  | 8.4  | -          |
| 지방자치단체                             | 32.1                                           | 6.9                                                                       | 35.8                        | 15.0                                               | 23.6                                                            | 34.3                           | 1.2                     | 8.4                   | 10.5 | -          |
| 초/중/고                              | 22.3                                           | 6.5                                                                       | 54.4                        | 15.3                                               | 22.5                                                            | 52.0                           | 5.9                     | 6.2                   | 3.7  | -          |
| 대학                                 | 57.0                                           | 27.1                                                                      | 50.6                        | 24.1                                               | 15.3                                                            | 48.9                           | 1.1                     | 1.4                   | 0.3  | -          |
| <b>민간사업체 업종</b>                    |                                                |                                                                           |                             |                                                    |                                                                 |                                |                         |                       |      |            |
| 제조업                                | 8.4                                            | 4.4                                                                       | 76.6                        | 6.3                                                | 10.4                                                            | 16.2                           | 1.3                     | 1.1                   | 1.5  | -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47.5                                           | 3.8                                                                       | 43.0                        | 19.4                                               | 16.2                                                            | 23.7                           | 0.3                     | -                     | -    | -          |
| 개인서비스업                             | 21.4                                           | 10.2                                                                      | 37.4                        | 6.8                                                | 18.6                                                            | 42.8                           | -                       | 5.8                   | 4.4  | 4.1        |
| 유통서비스업                             | 9.7                                            | 1.4                                                                       | 71.2                        | 3.7                                                | 11.3                                                            | 9.7                            | 0.0                     | 3.3                   | 1.4  | 3.5        |
| 사업서비스업                             | 28.6                                           | 1.7                                                                       | 65.6                        | 18.8                                               | 24.8                                                            | 46.2                           | -                       | 0.4                   | 7.9  | -          |
| 사회서비스업                             | 23.9                                           | 3.7                                                                       | 59.8                        | 13.3                                               | 21.6                                                            | 39.1                           | 3.9                     | 0.0                   | 6.3  | 0.8        |
| <b>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b>                |                                                |                                                                           |                             |                                                    |                                                                 |                                |                         |                       |      |            |
| 30~99인                             | 31.8                                           | 5.3                                                                       | 46.8                        | 13.4                                               | 22.4                                                            | 24.1                           | 4.5                     | 1.7                   | 0.9  | 2.9        |
| 100~299인                           | 11.7                                           | 6.9                                                                       | 81.3                        | 3.5                                                | 10.3                                                            | 39.7                           | 0.4                     | 1.2                   | 9.4  | -          |
| 300~499인                           | 17.7                                           | -                                                                         | 58.8                        | 2.9                                                | 5.9                                                             | 33.0                           | -                       | 0.3                   | 0.0  | -          |
| 500인 이상                            | 15.3                                           | 1.6                                                                       | 71.1                        | 15.8                                               | 20.3                                                            | 28.9                           | -                       | 1.0                   | 4.8  | -          |

주: 1) 백분율은 660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참고 넘어간 이유는 복수응답 분석을 실시함.

#### 다) 공식적인 대처 이후 기관의 조치 여부 및 조치 내용

상급자에게 알리거나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하거나 사내 혹은 외부 기구를 이용해 공식적으로 신고한 이후 기관에서 조치를 취했는지 조사한 결과,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응답이 7.4%였다. 이는 상급자 보고, 고충상담창구 상담, 내/외부기구를 이용한 공식 신고 등의 대처를 하면 대부분 기관 차원에서의 조치가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기관의 조치내용(복수응답)으로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공간 분리, 업무변경 등)’(46.3%), ‘피해자 보호조치(상담, 휴가, 업무/부서 이동 등)’(40.5%), ‘고충 상담원과의 상담, 고충처리 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22.9%),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 실시’(19.7%), ‘사건처리과정에서의 신상보호 제공’(15.8%) 순이었다. 2018년 조사 결과에서의 구체적인 조치 내용(복수응답)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 실시’,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공간 분리, 업무변경 등)’, ‘사건처리과정에서 신상보호 제공’ 순이었다. 이렇게 볼 때 2018년에는 행위자에 대한 조사와 징계 등이 우선되었다면, 2021년에는 행위자와 피해자에 대한 분리, 피해자 보호, 고충상담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 등의 조치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소속기관 유형에 따라서는 공공기관의 경우 ‘업무 및 인사고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32.5%), ‘성희롱 행위자 징계 조치’(30.7%),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공간 분리, 업무변경 등)’(25.7%), ‘사건처리과정에서 신상보호’(21.0%), ‘피해자 보호조치’(20.2%) 순이었다. 민간사업체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공간 분리, 업무변경 등)’(50.8%), ‘피해자 보호조치’(44.9%), ‘고충상담원과의 상담, 고충처리 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25.6%) 순이었다. 공공기관은 불이익 등 2차 피해 방지, 행위자 징계,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등에, 민간사업체는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피해자 보호 등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17〉 공식적인 대처 이후 기관의 조치 내용(복수응답)

(단위: %)

| 구분    | 적절한<br>조치가<br>없었다                              | 고충<br>상담원과의<br>상담, 고충<br>처리절차<br>등에 대한<br>안내 등을<br>충분히<br>받았다 | 피해자<br>보호조치<br>(상담, 휴가,<br>업무/부서<br>이동 등)를<br>취했다 | 성희롱<br>행위자에<br>대한 조치<br>(공간 분리,<br>업무변경<br>등)를<br>취했다                        | 성희롱<br>행위자에<br>대해<br>신속하게<br>조사를<br>실시했다 | 사건처리<br>과정에서<br>신상보호<br>(비밀유지/<br>익명성 보장<br>등)를<br>제공했다 |
|-------|------------------------------------------------|---------------------------------------------------------------|---------------------------------------------------|------------------------------------------------------------------------------|------------------------------------------|---------------------------------------------------------|
| 전 체   | 7.4                                            | 22.9                                                          | 40.5                                              | 46.3                                                                         | 19.7                                     | 15.8                                                    |
| 유형    |                                                |                                                               |                                                   |                                                                              |                                          |                                                         |
| 공공기관  | 9.0                                            | 10.7                                                          | 20.2                                              | 25.7                                                                         | 19.6                                     | 21.0                                                    |
| 민간사업체 | 7.0                                            | 25.6                                                          | 44.9                                              | 50.8                                                                         | 19.7                                     | 14.6                                                    |
| 구분    | 업무 및<br>인사고과<br>등의<br>불이익을<br>받지<br>않도록<br>하였다 | 성희롱<br>행위자를<br>징계조치<br>했다                                     | 외부기관의<br>조치, 권고<br>등에<br>협조했다                     | 동료/행위자<br>등에 의한<br>피해자 비난,<br>따돌림,<br>소문 유포<br>등 (2차<br>피해)에<br>대해 조치<br>하였다 | 기타                                       | 모름/무응답                                                  |
| 전 체   | 10.0                                           | 14.0                                                          | 2.9                                               | 0.2                                                                          | 3.8                                      | 0.3                                                     |
| 유형    |                                                |                                                               |                                                   |                                                                              |                                          |                                                         |
| 공공기관  | 32.5                                           | 30.7                                                          | 14.7                                              | -                                                                            | 9.5                                      | -                                                       |
| 민간사업체 | 5.1                                            | 10.4                                                          | 0.4                                               | 0.3                                                                          | 2.5                                      | 0.4                                                     |

주: 1) 백분율은 57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공식적 신고 후 조치 내용은 복수응답 분석을 실시함.

## 라) 공식적인 대처 이후 기관의 사건처리에 대한 만족도

상급자에게 알리거나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하거나 사내 혹은 외부 기구를 이용해 공식적으로 신고한 후에 기관이 취한 사건처리과정 및 사건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사건처리과정 만족도에서 ‘만족하지 않는다(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22.2%였고, ‘만족한다’(약간 만족한다 + 매우 만족한다)는 77.0%였다. ‘만족한다’를 기준으로 소속기관 유형별로 보면 공공기관 41.6%, 민간사업체 84.8%였다. 공공기관에서 사건처리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사건처리결과 만족도에서 ‘만족하지 않는다’(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17.9%였고, ‘만족한다’(약간 만족한다 + 매우 만족한다)는 81.4%였다. 2018년 조사에서는 사건처리결과 만족도만 조사했는데, 이때 ‘만족한다’는 응답이 45.7%여서 2021년(81.4%)에 35.7%p 증가하였다. ‘만족한다’를 기준으로 소속기관 유형별로 보면 공공기관은 41.7%, 민간사업체는 90.1%로 공공기관의 사건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사건처리과정과 사건처리결과 모두 공공기관에서 만족도가 낮았다.

〈표 Ⅲ-18〉 기관의 사건처리과정에 대한 만족도

(단위: %)

| 구분    | 전혀<br>만족하지<br>않는다 | 별로<br>만족하지<br>않는다 | 약간<br>만족한다 | 매우<br>만족한다 | 모름/<br>무응답 | 계     |
|-------|-------------------|-------------------|------------|------------|------------|-------|
| 전 체   | 3.3               | 18.9              | 43.9       | 33.1       | 0.8        | 100.0 |
| 유형    |                   |                   |            |            |            |       |
| 공공기관  | 17.1              | 41.3              | 33.6       | 8.0        | -          | 100.0 |
| 민간사업체 | 0.3               | 14.0              | 46.2       | 38.6       | 1.0        | 100.0 |

주: 백분율은 57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표 Ⅲ-19〉 기관의 사건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단위: %)

| 구분    | 전혀<br>만족하지<br>않는다 | 별로<br>만족하지<br>않는다 | 약간<br>만족한다 | 매우<br>만족한다 | 모름/<br>무응답 | 계     |
|-------|-------------------|-------------------|------------|------------|------------|-------|
| 전 체   | 0.5               | 17.4              | 61.9       | 19.5       | 0.8        | 100.0 |
| 유형    |                   |                   |            |            |            |       |
| 공공기관  | 1.3               | 57.0              | 29.0       | 12.7       | -          | 100.0 |
| 민간사업체 | 0.3               | 8.7               | 69.1       | 21.0       | 1.0        | 100.0 |

주: 백분율은 57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 마) 기관으로부터의 불이익 경험

상급자에게 알리거나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하거나 사내 혹은 외부기구를 이용해 공식적으로 신고한 이후 사업주/기관장에 의해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6개 불이익 처우에 대해 경험 여부를 조사하였다. 6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 (3) 직무 미부여(배제),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

6개 불이익 처우에 대한 경험률은 모든 문항에서 10%를 하회하였고, 그 중 ‘직무 미부여(배제),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8.1%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은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4.7% 순이었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공공기관에서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배제),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 방치’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표 III-20〉 공식적인 대처 이후 기관으로부터의 불이익 경험

(단위: %)

| 구분                                                       |       | 있다   | 없다    | 모름/무응답 | 계     |
|----------------------------------------------------------|-------|------|-------|--------|-------|
|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전 체   | 4.3  | 92.7  | 3.0    | 100.0 |
|                                                          | 유형    |      |       |        |       |
|                                                          | 공공기관  | 4.8  | 95.2  | -      | 100.0 |
|                                                          | 민간사업체 | 4.2  | 92.2  | 3.7    | 100.0 |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 전 체   | 4.1  | 92.9  | 3.0    | 100.0 |
|                                                          | 유형    |      |       |        |       |
|                                                          | 공공기관  | 15.7 | 84.3  | -      | 100.0 |
|                                                          | 민간사업체 | 1.6  | 94.8  | 3.7    | 100.0 |
| 직무 미부여(배제),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전 체   | 8.1  | 88.9  | 3.0    | 100.0 |
|                                                          | 유형    |      |       |        |       |
|                                                          | 공공기관  | 21.2 | 78.8  | -      | 100.0 |
|                                                          | 민간사업체 | 5.2  | 91.1  | 3.7    | 100.0 |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전 체   | 4.7  | 92.1  | 3.2    | 100.0 |
|                                                          | 유형    |      |       |        |       |
|                                                          | 공공기관  | 4.8  | 95.2  | -      | 100.0 |
|                                                          | 민간사업체 | 4.6  | 91.4  | 3.9    | 100.0 |
|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 전 체   | 3.8  | 93.2  | 3.0    | 100.0 |
|                                                          | 유형    |      |       |        |       |
|                                                          | 공공기관  | -    | 100.0 | -      | 100.0 |
|                                                          | 민간사업체 | 4.6  | 91.8  | 3.7    | 100.0 |
|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 | 전 체   | 3.0  | 94.0  | 3.0    | 100.0 |
|                                                          | 유형    |      |       |        |       |
|                                                          | 공공기관  | 15.7 | 84.3  | -      | 100.0 |
|                                                          | 민간사업체 | 0.2  | 96.1  | 3.7    | 100.0 |

주: 백분율은 57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 나. 2차 피해 경험

### 1) 2차 피해 경험 여부

성희롱 피해 경험에 대해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행동 등으로 인해 또다시 겪게 되는 어려움과 관련해서 14개 문항에 대해 조사하였다. 14개 문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변에 성희롱 피해를 말했을 때 공감이나 지지받지 못하고 의심 또는 참으라는 얘기를 들었다. (2) 악의적인 소문이 유포되었다. (3) 나의 평판, 인적 정보, 고충(피해) 내용 등이 온/오프라인상으로 유포되었다. (4) 나에게 폭언, 폭행을 했다. (5) 나에게 과도한 업무를 주거나 업무분장 외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등 업무적으로 괴롭혔다. (6) 부당한 처우에 대한 암시,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발언 등으로 나에게 압력을 가했다. (7) 조사과정에서 행위자 편을 들거나 불공정하게 진행하였다. (8)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사 진행 등 사건처리 과정을 지연했다. (9) 비밀보장에 소홀하거나 일부러 공개하여 나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10) 나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자와의 합의를 강요하였다. (11) 행위자에게 책임을 가볍게 묻고 사건을 종료했다. (12) 행위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나에게 책임을 전가하였다. (13) 다른 유사 사건이 생길 때마다 계속 나를 거론하였다. (14) 나에게 퇴사를 유도, 강요하였다.

14개 문항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은 20.7%로, 성희롱 피해자의 20% 정도가 2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에서의 2차 피해 경험률은 22.1%였고 민간사업체에서는 20.2%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20.5%, 여성 20.8%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연령 별로는 20대 이하 24.8%, 30대 16.0%, 40대 25.1%, 50대 이상 18.7%였고 고용형태에서는 정규직 21.2%, 비정규직 16.7%였다. 공공기관 유형에서는 국가기관 21.6%, 지방자치단체 15.9%, 초/중/고 21.4%, 대학 36.1%로, 대학에서의 2차 피해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민간사업체 규모 중 30~99인(25.7%)과 100~299인(26.9%) 규모의 민간사업체에서 2차 피해 경험률이 높았다. 전체적으로 공공기관, 여성, 20대 이하와 40대, 정규직, 대학, 30~99인과 100~299인 규모의 민간사업체에서 2차 피해 경험률이 높았다.

14개 문항 각각의 경험에 대해 살펴보면, ‘주변에 성희롱 피해를 말했을 때 공감이나 지지받지 못하고 의심 또는 참으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응답이 12.1%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은 ‘부당한 처우에 대한 암시,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발언 등으로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했다’ 6.6%, ‘나에게 과도한 업무를 주거나 업무 분장외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등 업무적으로 괴롭혔다’ 4.4%, ‘악의적인 소문이 유포되었다’ 4.2%, ‘나의 평판,

인적정보, 고충(피해) 내용 등이 온/오프라인 상으로 유포되었다' 3.7%, '비밀보장에 소홀하거나 일부러 공개하여 나의 신상이 공개되었다'와 '행위자에게 책임을 가볍게 묻고 사건을 종료했다' 3.5% 순이었다.

소속기관 유형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우 대부분의 문항에서 민간사업체보다 2차 피해 경험률이 높았다. 특히 '주변에 성희롱 피해를 말했을 때 공감이나 지지받지 못하고 의심 또는 참으라는 얘기를 들었다'(공공기관 15.5%, 민간사업체 11.0%), '부당한 처우에 대한 암시,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발언 등으로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했다'(공공기관 9.3%, 민간사업체 5.7%), '나에게 과도한 업무를 주거나 업무 분장외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등 업무적으로 괴롭혔다'(공공기관 6.1%, 민간사업체 3.8%), '악의적인 소문이 유포되었다'(공공기관 8.4%, 민간사업체 2.8%), '나의 평판, 인적 정보, 고충(피해) 내용 등이 온오프라인 상으로 유포되었다'(공공기관 6.7%, 민간사업체 2.6%), '비밀보장에 소홀하거나 일부러 공개하여 나의 신상이 공개되었다'(공공기관 5.1%, 민간사업체 3.0%), '행위자에게 책임을 가볍게 묻고 사건을 종료했다'(공공기관 5.2%, 민간사업체 3.0%) 등에서 공공기관의 2차 피해 경험률이 높았다. 이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행위자 편을 듣거나 불공정하게 진행하였다'(4.9%), '다른 유사사건이 생길 때마다 계속 나를 거론하였다'(5.4%)에서도 공공기관에서의 2차 피해 경험률이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험률이 높았는데 특히 '주변에 성희롱 피해를 말했을 때 공감이나 지지받지 못하고 의심 또는 참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여성 14.2%, 남성 8.6%)에서 성별 격차가 컸다.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국가기관의 경우 '악의적인 소문이 유포되었다', '주변에 성희롱 피해를 말했을 때 공감이나 지지받지 못하고 의심 또는 참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의 평판, 인적 정보, 고충(피해) 내용 등이 온/오프라인상으로 유포되었다' 순으로 많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변에 성희롱 피해를 말했을 때 공감이나 지지받지 못하고 의심 또는 참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와 '악의적인 소문이 유포되었다' 순으로 많았다. 초/중/고는 '주변에 성희롱 피해를 말했을 때 공감이나 지지받지 못하고 의심 또는 참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와 부당한 처우에 대한 암시,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발언 등으로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했다' 순으로, 대학은 '주변에 성희롱 피해를 말했을 때 공감이나 지지받지 못하고 의심 또는 참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가 월등히 많았다.

민간사업체의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사회서비스업의 경우 '부당한 처우에 대한 암시,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발언 등으로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했다',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의 경우 '나에게 폭언, 폭행을 했다', 개인서비스업과 유통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주변에 성희롱 피해를 말했을 때 공감이나 지지받지

못하고 의심 또는 참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가 많았다.

전체적으로 성희롱 피해 상황에 대한 지지와 공감을 받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압박,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불이익, 평판 등 조직생활 전반에서 2차 피해를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개입 노력이 필요하다.

〈표 Ⅲ-21〉 2차 피해 경험 여부

(단위: %)

| 구분                             | 있다   | 없다   | 모름/무응답 | 계     |
|--------------------------------|------|------|--------|-------|
| <b>전 체</b>                     | 20.7 | 74.2 | 5.1    | 100.0 |
| <b>유형</b>                      |      |      |        |       |
| 공공기관                           | 22.1 | 77.9 | -      | 100.0 |
| 민간사업체                          | 20.2 | 72.9 | 6.9    | 100.0 |
| <b>성별</b>                      |      |      |        |       |
| 남성                             | 20.5 | 74.8 | 4.7    | 100.0 |
| 여성                             | 20.8 | 73.8 | 5.4    | 100.0 |
| <b>연령</b>                      |      |      |        |       |
| 20대 이하                         | 24.8 | 73.4 | 1.9    | 100.0 |
| 30대                            | 16.0 | 76.4 | 7.5    | 100.0 |
| 40대                            | 25.1 | 69.2 | 5.6    | 100.0 |
| 50대 이상                         | 18.7 | 77.2 | 4.1    | 100.0 |
| <b>직급</b>                      |      |      |        |       |
| 관리직                            | 24.2 | 72.5 | 3.3    | 100.0 |
| 일반직                            | 19.4 | 75.3 | 5.3    | 100.0 |
| 모름/무응답                         | -    | 18.1 | 81.9   | 100.0 |
| <b>고용형태</b>                    |      |      |        |       |
| 정규직                            | 21.2 | 73.8 | 5.0    | 100.0 |
| 비정규직                           | 16.7 | 77.3 | 5.9    | 100.0 |
| 모름/무응답                         | 32.3 | 67.7 | -      | 100.0 |
| <b>공공기관 유형</b>                 |      |      |        |       |
| 국가기관                           | 21.6 | 78.4 | -      | 100.0 |
| 지방자치단체                         | 15.9 | 84.1 | -      | 100.0 |
| 초/중/고                          | 21.4 | 78.6 | -      | 100.0 |
| 대학                             | 36.1 | 63.9 | -      | 100.0 |
| <b>민간사업체 업종</b>                |      |      |        |       |
| 제조업                            | 21.2 | 72.4 | 6.4    | 100.0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24.5 | 59.5 | 16.1   | 100.0 |
| 개인서비스업                         | 16.7 | 76.4 | 6.8    | 100.0 |
| 유통서비스업                         | 13.9 | 81.7 | 4.4    | 100.0 |
| 사업서비스업                         | 32.0 | 67.0 | 1.0    | 100.0 |
| 사회서비스업                         | 11.0 | 77.3 | 11.7   | 100.0 |
| <b>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b>            |      |      |        |       |
| 30~99인                         | 25.7 | 63.4 | 10.9   | 100.0 |
| 100~299인                       | 26.9 | 62.4 | 10.6   | 100.0 |
| 300~499인                       | 20.2 | 75.3 | 4.6    | 100.0 |
| 500인 이상                        | 11.7 | 86.5 | 1.8    | 100.0 |

주: 백분율은 986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표 III-22〉 2차 피해 유형별 경험 - 계속

(단위: %)

| 구분                             | 주변에 성희롱 피해를 말했을 때 공감이나 지지받지 못하고 의심 또는 참으라는 얘기를 들었다 | 악의적인 소문이 유포되었다 | 나의 평판, 인적 정보, 고충(피해) 내용 등이 온/오프라인 상으로 유포되었다 | 나에게 폭언, 폭행을 했다 | 나에게 과도한 업무를 주거나 업무 분장 외,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등 업무적으로 괴롭혔다 |
|--------------------------------|----------------------------------------------------|----------------|---------------------------------------------|----------------|---------------------------------------------------|
| 전 체                            | 12.1                                               | 4.2            | 3.7                                         | 2.6            | 4.4                                               |
| 유형                             |                                                    |                |                                             |                |                                                   |
| 공공기관                           | 15.5                                               | 8.4            | 6.7                                         | 4.7            | 6.1                                               |
| 민간사업체                          | 11.0                                               | 2.8            | 2.6                                         | 1.9            | 3.8                                               |
| 성별                             |                                                    |                |                                             |                |                                                   |
| 남성                             | 8.6                                                | 4.4            | 5.6                                         | 4.1            | 6.9                                               |
| 여성                             | 14.2                                               | 4.1            | 2.5                                         | 1.7            | 2.9                                               |
| 연령                             |                                                    |                |                                             |                |                                                   |
| 20대 이하                         | 6.9                                                | 3.4            | 7.1                                         | 4.5            | 4.6                                               |
| 30대                            | 6.8                                                | 2.9            | 2.1                                         | 1.2            | 1.0                                               |
| 40대                            | 17.6                                               | 1.8            | 0.7                                         | 1.7            | 6.7                                               |
| 50대 이상                         | 13.4                                               | 7.6            | 6.2                                         | 3.8            | 4.8                                               |
| 직급유형                           |                                                    |                |                                             |                |                                                   |
| 관리직                            | 16.0                                               | 2.5            | 1.8                                         | 0.2            | 3.2                                               |
| 일반직                            | 10.6                                               | 4.9            | 4.5                                         | 3.6            | 5.0                                               |
| 모름/무응답                         | -                                                  | -              | -                                           | -              | -                                                 |
| 고용형태                           |                                                    |                |                                             |                |                                                   |
| 정규직                            | 12.4                                               | 4.5            | 3.8                                         | 2.9            | 4.9                                               |
| 비정규직                           | 9.7                                                | 2.0            | 2.0                                         | 0.2            | 0.5                                               |
| 모름/무응답                         | -                                                  | -              | 32.3                                        | 32.3           | -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국가기관                           | 12.2                                               | 12.4           | 12.0                                        | 1.2            | 5.2                                               |
| 지방자치단체                         | 9.7                                                | 7.1            | 5.6                                         | 3.5            | 4.9                                               |
| 초/중/고                          | 16.1                                               | 6.2            | 4.0                                         | 1.7            | -                                                 |
| 대학                             | 32.6                                               | 5.8            | 1.8                                         | 18.1           | 18.6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제조업                            | 4.3                                                | 3.8            | 3.2                                         | 3.2            | 4.3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7.0                                                | 7.1            | 7.1                                         | 9.7            | 8.8                                               |
| 개인서비스업                         | 8.0                                                | 3.1            | 5.2                                         | 1.7            | 1.6                                               |
| 유통서비스업                         | 11.1                                               | 5.7            | 6.5                                         | 0.1            | 0.3                                               |
| 사업서비스업                         | 28.4                                               | 1.9            | 1.7                                         | -              | 7.8                                               |
| 사회서비스업                         | 6.7                                                | 0.3            | -                                           | 0.9            | 0.7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30~99인                         | 9.1                                                | 4.8            | 3.2                                         | 3.4            | 6.9                                               |
| 100~299인                       | 10.7                                               | 2.6            | 5.2                                         | 3.4            | 4.2                                               |
| 300~499인                       | 18.9                                               | 8.8            | 5.6                                         | 0.4            | 9.2                                               |
| 500인 이상                        | 11.1                                               | 0.0            | 0.0                                         | 0.0            | 0.0                                               |

〈표 Ⅲ-22〉 2차 피해 유형별 경험 - 계속

(단위: %)

| 구분                                 | 부당한 처우에<br>대한 암시,<br>심리적으로<br>위축시키는<br>발언 등으로<br>피해자에게<br>압력을 가했다 | 조사과정에서<br>행위자 편을<br>들거나<br>불공정하게<br>진행하였다 | 합리적인<br>이유 없이<br>조사 진행 등<br>사건처리<br>과정을<br>지연했다 | 비밀보장에<br>소홀하거나<br>일부러<br>공개하여<br>나의 신상이<br>공개되었다 | 나의 의사에<br>반하여<br>행위자와의<br>합의를<br>강요하였다 |
|------------------------------------|-------------------------------------------------------------------|-------------------------------------------|-------------------------------------------------|--------------------------------------------------|----------------------------------------|
| 전 체                                | 6.6                                                               | 2.0                                       | 2.2                                             | 3.5                                              | 2.5                                    |
| 유형                                 |                                                                   |                                           |                                                 |                                                  |                                        |
| 공공기관                               | 9.3                                                               | 4.9                                       | 3.4                                             | 5.1                                              | 3.8                                    |
| 민간사업체                              | 5.7                                                               | 1.0                                       | 1.8                                             | 3.0                                              | 2.1                                    |
| 성별                                 |                                                                   |                                           |                                                 |                                                  |                                        |
| 남성                                 | 8.6                                                               | 2.8                                       | 4.0                                             | 5.8                                              | 2.5                                    |
| 여성                                 | 5.5                                                               | 1.5                                       | 1.1                                             | 2.2                                              | 2.5                                    |
| 연령                                 |                                                                   |                                           |                                                 |                                                  |                                        |
| 20대 이하                             | 8.6                                                               | 0.4                                       | 4.1                                             | 3.3                                              | 6.4                                    |
| 30대                                | 2.2                                                               | 2.8                                       | 0.4                                             | 5.9                                              | 1.2                                    |
| 40대                                | 7.3                                                               | 0.0                                       | 1.3                                             | 0.0                                              | 1.4                                    |
| 50대 이상                             | 8.6                                                               | 3.8                                       | 3.6                                             | 5.0                                              | 3.0                                    |
| 직급유형                               |                                                                   |                                           |                                                 |                                                  |                                        |
| 관리직                                | 3.1                                                               | 0.3                                       | 2.6                                             | 5.5                                              | 1.4                                    |
| 일반직                                | 8.1                                                               | 2.7                                       | 2.0                                             | 2.8                                              | 3.0                                    |
| 모름/무응답                             | -                                                                 | -                                         | -                                               | -                                                | -                                      |
| 고용형태                               |                                                                   |                                           |                                                 |                                                  |                                        |
| 정규직                                | 6.6                                                               | 2.1                                       | 2.4                                             | 3.7                                              | 2.6                                    |
| 비정규직                               | 6.9                                                               | 1.0                                       | 1.0                                             | 2.0                                              | 1.6                                    |
| 모름/무응답                             | -                                                                 | -                                         | -                                               | -                                                | -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국가기관                               | 10.7                                                              | 7.8                                       | 5.3                                             | 8.4                                              | 5.3                                    |
| 지방자치단체                             | 4.3                                                               | 3.8                                       | 1.6                                             | 2.2                                              | 2.5                                    |
| 초/중/고                              | 7.4                                                               | 5.7                                       | 5.7                                             | 5.7                                              | 5.7                                    |
| 대학                                 | 19.0                                                              | 0.2                                       | 0.1                                             | 3.8                                              | 1.0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제조업                                | 5.8                                                               | 0.4                                       | 2.3                                             | 6.1                                              | 3.3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8.7                                                               | 7.1                                       | 0.2                                             | -                                                | 0.6                                    |
| 개인서비스업                             | 5.4                                                               | 7.1                                       | -                                               | 2.9                                              | 5.1                                    |
| 유통서비스업                             | 5.5                                                               | 0.1                                       | 5.3                                             | 5.4                                              | 0.0                                    |
| 사업서비스업                             | 3.1                                                               | -                                         | 2.7                                             | -                                                | 2.5                                    |
| 사회서비스업                             | 7.6                                                               | 0.2                                       | -                                               | 1.1                                              | -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30~99인                             | 4.8                                                               | 2.2                                       | 0.4                                             | 6.6                                              | 2.8                                    |
| 100~299인                           | 10.4                                                              | 1.4                                       | 3.1                                             | 2.4                                              | 5.1                                    |
| 300~499인                           | 8.8                                                               | -                                         | 12.6                                            | 5.6                                              | -                                      |
| 500인 이상                            | 3.0                                                               | 0.0                                       | -                                               | -                                                | -                                      |

〈표 III-22〉 2차 피해 유형별 경험

(단위: %)

| 구분                             | 행위자에게 책임을 가볍게 묻고 사건을 종료했다 | 행위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나에게 책임을 전가하였다 | 다른 유사 사건이 생길 때마다 계속 나를 거론하였다 | 나에게 퇴사를 유도, 강요하였다 | 하나라도 응답한 비율 |
|--------------------------------|---------------------------|------------------------------------|------------------------------|-------------------|-------------|
| 전 체                            | 3.5                       | 2.3                                | 2.7                          | 0.9               | 20.7        |
| 유형                             |                           |                                    |                              |                   |             |
| 공공기관                           | 5.2                       | 4.2                                | 5.4                          | 0.6               | 22.1        |
| 민간사업체                          | 3.0                       | 1.6                                | 1.8                          | 0.9               | 20.2        |
| 성별                             |                           |                                    |                              |                   |             |
| 남성                             | 5.3                       | 2.3                                | 4.7                          | 0.2               | 20.5        |
| 여성                             | 2.5                       | 2.3                                | 1.6                          | 1.3               | 20.8        |
| 연령                             |                           |                                    |                              |                   |             |
| 20대 이하                         | 7.6                       | 0.7                                | 1.4                          | 1.8               | 24.8        |
| 30대                            | 0.9                       | 0.5                                | 1.9                          | 0.2               | 16.0        |
| 40대                            | 2.4                       | 2.3                                | 1.3                          | 1.4               | 25.1        |
| 50대 이상                         | 5.0                       | 4.3                                | 5.2                          | 0.5               | 18.7        |
| 직급유형                           |                           |                                    |                              |                   |             |
| 관리직                            | 2.5                       | 2.6                                | 2.4                          | 0.1               | 24.2        |
| 일반직                            | 4.0                       | 2.2                                | 2.9                          | 1.2               | 19.4        |
| 모름/무응답                         | -                         | -                                  | -                            | -                 | -           |
| 고용형태                           |                           |                                    |                              |                   |             |
| 정규직                            | 3.8                       | 2.4                                | 2.9                          | 0.4               | 21.2        |
| 비정규직                           | 1.7                       | 1.2                                | 1.0                          | 4.8               | 16.7        |
| 모름/무응답                         | -                         | -                                  | -                            | -                 | 32.3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국가기관                           | 9.0                       | 9.0                                | 5.6                          | 0.3               | 21.6        |
| 지방자치단체                         | 3.1                       | 0.2                                | 1.6                          | 0.6               | 15.9        |
| 초/중/고                          | 5.7                       | 5.7                                | 1.0                          | 1.7               | 21.4        |
| 대학                             | 1.0                       | 1.0                                | 18.6                         | 0.1               | 36.1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제조업                            | 3.9                       | 0.5                                | 2.1                          | 0.5               | 21.2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0.2                       | 3.5                                | 6.9                          | -                 | 24.5        |
| 개인서비스업                         | 0.4                       | -                                  | 3.3                          | 0.9               | 16.7        |
| 유통서비스업                         | 8.0                       | 5.4                                | 5.2                          | -                 | 13.9        |
| 사업서비스업                         | 2.7                       | 2.9                                | -                            | -                 | 32.0        |
| 사회서비스업                         | 1.6                       | 1.0                                | 0.5                          | 2.9               | 11.0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30~99인                         | 1.9                       | 3.7                                | 3.1                          | 0.7               | 25.7        |
| 100~299인                       | 4.7                       | 0.3                                | 1.8                          | 3.0               | 26.9        |
| 300~499인                       | 14.3                      | 5.6                                | 5.6                          | -                 | 20.2        |
| 500인 이상                        | 0.6                       | 0.0                                | 0.0                          | -                 | 11.7        |

주: 1) 백분율은 986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있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결과표를 재구성함.

## 2) 2차 피해 행위자

14개 문항 중 하나라도 경험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행동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와 같은 행동을 한 사람(복수응답)은 '나의 상급자'(55.7%), '나의 동료'(40.4%) 순이었다.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 모두 '나의 상급자'(공공기관 57.3%, 민간사업체 55.0%)와 '나의 동료'(공공기관 37.1%, 민간사업체 41.6%)라는 응답이 많았고, 공공기관에서는 이외에도 '성희롱 행위자'(16.9%)에 의한 2차 피해행위가 있었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나의 상급자'(74.4%)가 월등히 많았던 반면, 여성의 경우 '나의 동료'(51.9%), '나의 상급자'(44.7%), '성희롱 행위자'(12.4%) 순으로 동료에 의한 2차 피해가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의 경우 '나의 상급자'가 63.2%로 월등히 높았고, 40대는 '나의 동료'가 50.5%로 높았다.

공공기관 유형에서는 국가기관(67.2%)과 대학(81.9%)의 경우 '나의 상급자'가 월등히 높았고, 지방자치단체(53.0%)와 초/중/고(61.7%)는 '나의 동료'가 높았다.

민간사업체 업종에서는 유통서비스업의 경우 '나의 동료'(76.8%)가 월등히 높았고,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에서 500인 미만은 '나의 상급자'가 60%를 상회한 반면, 500인 이상은 '나의 동료'가 83.5%로 월등히 높았다.



〈표 III-23〉 2차 피해 행위자(복수응답)

(단위: %)

| 구분                                 | 성희롱<br>행위자 | 나의<br>동료 | 나의<br>상급자<br>(기관장,<br>사업주<br>제외) | 나의<br>하급자 | 기관장,<br>사업주 | 기타   | 모름/<br>무응답 |
|------------------------------------|------------|----------|----------------------------------|-----------|-------------|------|------------|
| 전 체                                | 9.9        | 40.4     | 55.7                             | 2.3       | 1.5         | 2.2  | 0.1        |
| 유형                                 |            |          |                                  |           |             |      |            |
| 공공기관                               | 16.9       | 37.1     | 57.3                             | 1.4       | 1.7         | 2.9  | -          |
| 민간사업체                              | 7.3        | 41.6     | 55.0                             | 2.6       | 1.4         | 1.9  | 0.2        |
| 성별                                 |            |          |                                  |           |             |      |            |
| 남성                                 | 5.8        | 20.8     | 74.4                             | 4.8       | -           | 4.5  | -          |
| 여성                                 | 12.4       | 51.9     | 44.7                             | 0.8       | 2.3         | 0.8  | 0.2        |
| 연령                                 |            |          |                                  |           |             |      |            |
| 20대 이하                             | 10.8       | 28.9     | 57.3                             | -         | 5.8         | 1.1  | -          |
| 30대                                | 8.1        | 31.6     | 63.2                             | 2.0       | 0.4         | 6.3  | 0.4        |
| 40대                                | 5.8        | 50.5     | 47.4                             | -         | -           | -    | 0.1        |
| 50대 이상                             | 15.7       | 40.1     | 59.9                             | 6.4       | 1.6         | 2.7  | -          |
| 직급유형                               |            |          |                                  |           |             |      |            |
| 관리직                                | 7.6        | 50.3     | 50.3                             | 5.2       | 0.1         | 0.1  | -          |
| 일반직                                | 11.1       | 35.4     | 58.4                             | 0.7       | 2.1         | 3.2  | 0.2        |
| 모름/무응답                             |            |          |                                  |           |             |      |            |
| 고용형태                               |            |          |                                  |           |             |      |            |
| 정규직                                | 10.4       | 40.7     | 57.0                             | 2.3       | 0.8         | 0.8  | 0.1        |
| 비정규직                               | 4.8        | 38.7     | 43.0                             | 1.7       | 5.4         | 16.1 | -          |
| 모름/무응답                             | -          | -        | -                                | -         | 100.0       | -    | -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 국가기관                               | 19.9       | 20.1     | 67.2                             | 3.2       | -           | 7.0  | -          |
| 지방자치단체                             | 27.1       | 53.0     | 38.8                             | 1.8       | -           | 2.3  | -          |
| 초/중/고                              | 22.6       | 61.7     | 32.1                             | -         | 7.8         | 0.5  | -          |
| 대학                                 | -          | 23.7     | 81.9                             | -         | 0.4         | 0.4  | -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 제조업                                | 6.2        | 25.2     | 67.5                             | -         | 2.7         | 0.3  | -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5.7        | 45.2     | 50.5                             | -         | -           | -    | -          |
| 개인서비스업                             | 12.6       | 19.7     | 73.8                             | 3.6       | 6.8         | -    | -          |
| 유통서비스업                             | 1.2        | 76.8     | 61.4                             | 37.5      | -           | -    | -          |
| 사업서비스업                             | 3.8        | 48.6     | 47.0                             | 0.9       | -           | 5.0  | 0.2        |
| 사회서비스업                             | 19.7       | 61.1     | 33.6                             | -         | -           | 1.1  | 0.8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 30~99인                             | 11.2       | 23.5     | 66.0                             | 0.8       | 1.0         | 4.3  | 0.4        |
| 100~299인                           | 7.0        | 30.8     | 65.8                             | 0.7       | 3.0         | -    | -          |
| 300~499인                           | -          | 58.0     | 68.1                             | 28.0      | -           | 2.0  | -          |
| 500인 이상                            | 3.4        | 83.5     | 16.1                             | -         | -           | 0.4  | -          |

주: 1) 백분율은 205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성희롱 2차 피해 행위자는 복수응답 분석을 실시함.

### 3) 2차 피해에 대한 대처 행동

14개 문항 중 하나라도 경험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행동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지(복수 응답)를 조사하였다. ‘참고 넘어감’이 57.9%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행위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개인적으로 처리함’(27.5%), ‘고충상담원에게 상담함’(12.4%) 순이었다.

소속기관 유형이나 성별에 따른 응답 결과는 전체 응답 경향과 유사하였다. 소속기관 유형과 성별에 상관없이 참고 넘어간다고 절반 이상이 응답한 가운데,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참고 넘어감’(73.9%)의 응답이 월등히 많았다. 반면 고충상담원에게 상담하거나(공공기관 4.6%, 민간사업체 15.3%), 행위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개인적으로 처리하거나(공공기관 19.2%, 민간사업체 30.6%), 사내기구를 통해 공식적으로 신고하는(공공기관 0.3%, 민간사업체 7.7%) 등에서는 공공기관 보다 민간사업체의 응답률이 높았다.

연령별로 전체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참고 넘어간다는 응답이 많고, 연령이 낮을수록 고충상담원에게 상담하거나 사내기구를 통해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응답이 많았다. 20대 이하에서는 ‘고충상담원에게 상담함’(34.5%), ‘사내 기구를 통해 공식적으로 신고함’(25.4%)의 응답률이 높아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30대(46.6%)는 ‘행위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개인적으로 처리함’의 응답률이 높았고, 40대(62.4%)와 50대 이상(75.2%)은 ‘참고 넘어감’의 응답률이 월등히 높았다.

공공기관 유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참고 넘어감’의 응답률이 91.7%로 월등히 높았는데, 이는 성희롱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경험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요인이 상당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분석과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

〈표 III-24〉 2차 피해에 대한 대처 행동(복수응답)

(단위: %)

| 구분                                 | 참고<br>넘어감 | 행위자<br>에게<br>사과를<br>요구<br>하는 등<br>개인적<br>으로<br>처리함 | 고충<br>상담원<br>에게<br>상담함 | 사내<br>기구를<br>통해<br>공식적<br>으로<br>신고함 | 외부<br>기구에<br>상담함 | 외부<br>기구에<br>공식적<br>으로<br>신고함 | 기타   | 모름/<br>무응답 |
|------------------------------------|-----------|----------------------------------------------------|------------------------|-------------------------------------|------------------|-------------------------------|------|------------|
| 전 체                                | 57.9      | 27.5                                               | 12.4                   | 5.7                                 | 0.6              | 0.9                           | 4.1  | 0.1        |
| 유형                                 |           |                                                    |                        |                                     |                  |                               |      |            |
| 공공기관                               | 73.9      | 19.2                                               | 4.6                    | 0.3                                 | -                | 2.9                           | 2.3  | -          |
| 민간사업체                              | 51.9      | 30.6                                               | 15.3                   | 7.7                                 | 0.8              | 0.1                           | 4.8  | 0.2        |
| 성별                                 |           |                                                    |                        |                                     |                  |                               |      |            |
| 남성                                 | 54.8      | 30.3                                               | 11.7                   | 11.6                                | -                | -                             | -    | -          |
| 여성                                 | 59.6      | 25.8                                               | 12.7                   | 2.2                                 | 0.9              | 1.4                           | 6.5  | 0.2        |
| 연령                                 |           |                                                    |                        |                                     |                  |                               |      |            |
| 20대 이하                             | 39.5      | 1.1                                                | 34.5                   | 25.4                                | 3.6              | -                             | -    | -          |
| 30대                                | 38.0      | 46.6                                               | 11.7                   | 6.4                                 | -                | 0.4                           | -    | 0.4        |
| 40대                                | 62.4      | 32.2                                               | 9.6                    | 1.0                                 | -                | -                             | 9.8  | 0.1        |
| 50대 이상                             | 75.2      | 23.4                                               | 4.3                    | 0.3                                 | -                | 2.7                           | 2.2  | -          |
| 직급                                 |           |                                                    |                        |                                     |                  |                               |      |            |
| 관리직                                | 45.3      | 52.3                                               | 6.8                    | -                                   | -                | -                             | -    | -          |
| 일반직                                | 64.2      | 15.0                                               | 15.1                   | 8.5                                 | 0.9              | 1.3                           | 6.2  | 0.2        |
| 모름/무응답                             | -         | -                                                  | -                      | -                                   | -                | -                             | -    | -          |
| 고용형태                               |           |                                                    |                        |                                     |                  |                               |      |            |
| 정규직                                | 57.4      | 27.4                                               | 13.1                   | 6.0                                 | 0.6              | 0.9                           | 4.4  | 0.1        |
| 비정규직                               | 64.1      | 29.3                                               | 4.8                    | -                                   | -                | -                             | 1.7  | -          |
| 모름/무응답                             | -         | -                                                  | -                      | 100.0                               | -                | -                             | -    | -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
| 국가기관                               | 76.5      | 15.1                                               | 6.6                    | 0.9                                 | -                | -                             | 1.8  | -          |
| 지방자치단체                             | 91.7      | 5.4                                                | -                      | -                                   | -                | -                             | 2.9  | -          |
| 초/중/고                              | 30.4      | 53.9                                               | 12.6                   | -                                   | -                | 13.9                          | 3.1  | -          |
| 대학                                 | 89.4      | 8.7                                                | -                      | -                                   | -                | -                             | 1.8  | -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
| 제조업                                | 31.2      | 33.7                                               | 21.7                   | 17.4                                | 2.2              | -                             | -    | -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70.3      | 53.1                                               | -                      | -                                   | -                | -                             | -    | -          |
| 개인서비스업                             | 43.4      | 2.4                                                | 43.2                   | 25.2                                | -                | 1.7                           | -    | -          |
| 유통서비스업                             | 78.9      | 37.5                                               | 20.9                   | 0.2                                 | -                | -                             | -    | -          |
| 사업서비스업                             | 54.4      | 36.5                                               | 9.0                    | -                                   | -                | -                             | -    | 0.2        |
| 사회서비스업                             | 84.9      | 8.3                                                | 6.0                    | -                                   | -                | -                             | 35.2 | 0.8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
| 30~99인                             | 52.9      | 35.4                                               | 13.6                   | 0.8                                 | -                | 0.3                           | -    | 0.4        |
| 100~299인                           | 49.1      | 7.8                                                | 24.3                   | 23.2                                | 2.4              | -                             | -    | -          |
| 300~499인                           | 91.3      | 32.3                                               | 15.6                   | -                                   | -                | -                             | -    | -          |
| 500인 이상                            | 40.8      | 54.6                                               | 4.9                    | -                                   | -                | -                             | 21.7 | -          |

주: 1) 백분율은 205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성희롱 2차 피해 대처유형은 복수응답 분석을 실시함.

#### 4) 2차 피해의 영향

14개 문항 중 하나라도 경험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를 조사하였다. ‘특별한 영향이 없었다’는 응답이 13.3%로, 2차 피해를 경험한 경우의 약 87% 정도가 2차 피해로 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기관 유형이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고, 특히 30대 이하에서는 ‘특별한 영향이 없었다’는 응답이 10% 이하여서 2차 피해로 인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 구체적으로 그 내용(복수응답)을 살펴보면, ‘근로이익 저하 등 업무 집중도가 낮아짐’(45.6%)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직장(내 성희롱예방정책, 문화 등)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음’(31.8%),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음’(26.8%), ‘직장내 대인관계에 어려움 생김’(18.1%)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2차 피해로 인해 직장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지고, 업무만족도 및 근로이익 저하, 직장내 대인관계 어려움, 이직 의사 등 직장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공공기관의 경우 ‘직장(내 성희롱예방정책, 문화 등)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음’(51.9%)이 가장 많았는데, 2차 피해를 경험한 경우의 절반 정도가 직장에 대해 실망감을 느끼고 있었고, ‘근로이익 저하 등 업무 집중도가 떨어짐’(47.1%)도 높아서 직장에 대한 신뢰도뿐 아니라 근로이익, 업무집중도 등 업무수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다. 민간사업체는 직장에 대한 실망감보다는 ‘근로이익 저하 등 업무 집중도가 떨어짐’(45.0%)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근로이익 저하(41.5%), 직장에 대한 실망감을 느낌(35.8%), 직장내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생김(22.1%) 순이었다. 여성의 경우 근로이익 저하 등 업무 집중도가 떨어지고(48.0%) 직장에 대한 실망했다(29.5%)는 등의 응답이 많은 가운데,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음’(31.8%)의 응답도 많았다. ‘분노/우울감/두려움/자살생각/자존감 하락 등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는 응답도 22.7%였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의 경우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음’(58.0%)의 응답이 월등히 높았고, 근로이익 저하 등의 응답은 낮은 반면 직장에 대한 실망감, 분노, 우울감, 두려움, 자살생각, 자존감 하락 등 정신적 어려움에서의 응답이 높았다.

고용형태에서는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이익 저하 등 업무 집중도가 떨어짐’(57.6%)과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음’(45.8%)의 응답이 많았고, 정규직은 ‘근로이익 저하 등 업무 집중도가 떨어짐’(44.6%)과 ‘직장(내 성희롱예방정책, 문화 등)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음’(33.5%)의 응답이 많았다.

공공기관 유형에서는 국가기관, 초/중/고, 대학에서 특히 ‘직장(내 성희롱예방정책,

문화 등)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음'의 응답이 많았다. 500인 이상 규모의 민간사업체는 '근로이익 저하 등 업무 집중도가 떨어짐'(79.6%)이 월등히 높았다.

〈표 Ⅲ-25〉 2차 피해의 영향(복수응답)

(단위: %)

| 구분                                 | 특별한<br>영향<br>없었음 | 근로<br>이익<br>저하 등<br>업무<br>집중도<br>떨어짐 | 직장을<br>그만<br>두고<br>싶었음 | 직장(내<br>성희롱<br>예방<br>정책,<br>문화,<br>동료<br>등)에<br>대한<br>실망감<br>느꼈음 | 분노,<br>우울감,<br>두려움,<br>자살<br>생각,<br>자존감<br>하락 등<br>정신적<br>으로<br>힘듦 | 두통,<br>복통,<br>구토 등<br>신체적<br>으로<br>힘듦 | 직장 내<br>대인<br>관계에<br>어려움<br>생김 | 기타   | 모름/<br>무응답 |
|------------------------------------|------------------|--------------------------------------|------------------------|------------------------------------------------------------------|--------------------------------------------------------------------|---------------------------------------|--------------------------------|------|------------|
| 전 체                                | 13.3             | 45.6                                 | 26.8                   | 31.8                                                             | 17.8                                                               | 5.3                                   | 18.1                           | 4.2  | 0.1        |
| 유형                                 |                  |                                      |                        |                                                                  |                                                                    |                                       |                                |      |            |
| 공공기관                               | 13.3             | 47.1                                 | 27.6                   | 51.9                                                             | 26.3                                                               | 12.3                                  | 16.2                           | 2.0  | -          |
| 민간사업체                              | 13.3             | 45.0                                 | 26.5                   | 24.3                                                             | 14.6                                                               | 2.7                                   | 18.7                           | 5.0  | 0.2        |
| 성별                                 |                  |                                      |                        |                                                                  |                                                                    |                                       |                                |      |            |
| 남성                                 | 11.5             | 41.5                                 | 18.3                   | 35.8                                                             | 9.4                                                                | 0.6                                   | 22.1                           | -    | -          |
| 여성                                 | 14.3             | 48.0                                 | 31.8                   | 29.5                                                             | 22.7                                                               | 8.0                                   | 15.7                           | 6.6  | 0.2        |
| 연령                                 |                  |                                      |                        |                                                                  |                                                                    |                                       |                                |      |            |
| 20대 이하                             | 5.7              | 9.9                                  | 58.0                   | 38.9                                                             | 20.6                                                               | 8.8                                   | 59.1                           | 0.3  | -          |
| 30대                                | 8.2              | 51.4                                 | 16.2                   | 30.4                                                             | 19.1                                                               | 2.8                                   | 12.3                           | 0.5  | 0.4        |
| 40대                                | 20.1             | 59.3                                 | 19.7                   | 10.4                                                             | 10.0                                                               | 0.1                                   | 5.5                            | 9.8  | 0.1        |
| 50대 이상                             | 12.4             | 44.3                                 | 25.6                   | 54.8                                                             | 24.9                                                               | 11.4                                  | 15.1                           | 1.9  | -          |
| 직급                                 |                  |                                      |                        |                                                                  |                                                                    |                                       |                                |      |            |
| 관리직                                | 18.0             | 56.0                                 | 9.7                    | 15.1                                                             | 10.1                                                               | -                                     | 1.3                            | -    | -          |
| 일반직                                | 10.9             | 40.3                                 | 35.4                   | 40.3                                                             | 21.7                                                               | 8.0                                   | 26.5                           | 6.3  | 0.2        |
| 모름/무응답                             | -                | -                                    | -                      | -                                                                | -                                                                  | -                                     | -                              | -    | -          |
| 고용형태                               |                  |                                      |                        |                                                                  |                                                                    |                                       |                                |      |            |
| 정규직                                | 13.0             | 44.6                                 | 24.8                   | 33.5                                                             | 19.2                                                               | 5.1                                   | 19.3                           | 4.4  | 0.1        |
| 비정규직                               | 16.7             | 57.6                                 | 45.8                   | 15.3                                                             | 3.2                                                                | 5.1                                   | 5.3                            | 1.7  | -          |
| 모름/무응답                             | -                | -                                    | 100.0                  | -                                                                | -                                                                  | 100.0                                 | -                              | -    | -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            |
| 국가기관                               | 14.6             | 44.2                                 | 36.5                   | 59.6                                                             | 38.7                                                               | 17.8                                  | 25.1                           | 2.8  | -          |
| 지방자치단체                             | 15.1             | 39.0                                 | 30.8                   | 39.7                                                             | 28.4                                                               | 3.8                                   | 11.7                           | 2.3  | -          |
| 초/중/고                              | 23.9             | 20.3                                 | 30.5                   | 52.7                                                             | 18.7                                                               | 26.5                                  | 18.7                           | 3.1  | -          |
| 대학                                 | 1.9              | 79.1                                 | 12.1                   | 52.8                                                             | 15.8                                                               | 1.8                                   | 7.9                            | -    | -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            |
| 제조업                                | 14.5             | 40.7                                 | 26.7                   | 25.8                                                             | 8.6                                                                | 3.9                                   | 36.5                           | -    | -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3.6              | 15.1                                 | 26.5                   | 33.3                                                             | 66.8                                                               | 5.7                                   | 0.9                            | -    | -          |
| 개인서비스업                             | 7.2              | 45.7                                 | 60.0                   | 40.5                                                             | 15.0                                                               | 9.3                                   | 11.3                           | -    | -          |
| 유통서비스업                             | 6.9              | 1.0                                  | 21.0                   | 89.0                                                             | 19.0                                                               | 1.0                                   | 0.2                            | 1.2  | -          |
| 사업서비스업                             | 18.7             | 53.4                                 | 15.4                   | 10.7                                                             | 12.6                                                               | 0.9                                   | 14.4                           | 0.4  | 0.2        |
| 사회서비스업                             | 5.6              | 65.0                                 | 41.7                   | 17.6                                                             | 12.2                                                               | 0.6                                   | 0.9                            | 35.2 | 0.8        |

| 구분           | 특별한<br>영향<br>없었음 | 근로<br>의욕<br>저하 등<br>업무<br>집중도<br>떨어짐 | 직장을<br>그만<br>두고<br>싶었음 | 직장(내<br>성희롱<br>예방<br>정책,<br>문화,<br>동료<br>등)에<br>대한<br>실망감<br>느꼈음 | 분노,<br>우울감,<br>두려움,<br>자살<br>생각,<br>자존감<br>하락 등<br>정신적<br>으로<br>힘듦 | 두통,<br>복통,<br>구토 등<br>신체적<br>으로<br>힘듦 | 직장 내<br>대인<br>관계에<br>어려움<br>생김 | 기타   | 모름/<br>무응답 |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            |
| 30~99인       | 13.6             | 44.9                                 | 26.6                   | 18.0                                                             | 27.2                                                               | 3.6                                   | 10.3                           | 0.4  | 0.4        |
| 100~299인     | 24.4             | 20.0                                 | 36.2                   | 31.1                                                             | 7.5                                                                | 3.8                                   | 39.1                           | 0.2  | -          |
| 300~499인     | 3.2              | 49.8                                 | 15.6                   | 53.7                                                             | -                                                                  | -                                     | 4.4                            | -    | -          |
| 500인 이상      | -                | 79.6                                 | 16.0                   | 15.7                                                             | 7.9                                                                | 0.4                                   | 8.9                            | 21.7 | -          |

주: 1) 백분율은 205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성희롱 2차 피해로 인한 영향은 복수응답 분석을 실시함.

#### 5) 2차 피해에 대한 기관의 조치

14개 문항 중 하나라도 경험이 있는 경우 본인이 경험한 2차 피해에 대해 기관에서 취한 조치를 조사하였다. ‘특별한 조치가 없었음’이라는 응답이 52.4%로, 성희롱 2차 피해를 경험한 경우의 절반 정도는 기관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의 경우 ‘특별한 조치가 없었음’이라는 응답이 75.2%로 민간사업체 43.9%보다 월등히 높았다. 공공기관 유형에서도 국가기관(56.1%)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82.7%), 초/중/고(73.7%), 대학(92.0%) 모두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는 응답이 70%를 상회하였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2차 피해 방지)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2차 피해방지지침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2021년 1월에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2차 피해 방지 표준안’이 마련되고, 국가기관 등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규정 제정 여부를 점검하는 등 제도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기관에서 조치를 취한 경우 구체적인 기관의 조치 내용(복수응답)을 보면 ‘2차 피해 행위에 대한 조사 실시’(16.1%)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2차 피해 실태 파악’(15.9%), ‘2차 피해에 대한 전직원 교육 실시’(11.1%) 순이었다.

〈표 III-26〉 2차 피해에 대한 기관의 조치(복수응답)

(단위: %)

| 구분                             | 특별한 조치가 없었음 | 2차 피해 중단에 대한 사업주/기관장의 입장 발표 (선언) | 2차 피해에 대한 전 직원 교육 실시 | 2차 피해 실태 파악 | 2차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휴가 등) 시행 | 2차 피해 행위에 대한 조사 실시 | 2차 피해의 행위자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 2차 피해의 행위자에 대한 분리 조치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매뉴얼, 지침 마련 및 안내 | 기타   | 모름/무응답 |
|--------------------------------|-------------|----------------------------------|----------------------|-------------|----------------------------|--------------------|------------------------------|----------------------|------------------------------|------|--------|
| 전 체                            | 52.4        | 3.3                              | 11.1                 | 15.9        | 2.9                        | 16.1               | 4.9                          | 4.5                  | 1.7                          | 8.3  | 2.1    |
| 유형                             |             |                                  |                      |             |                            |                    |                              |                      |                              |      |        |
| 공공기관                           | 75.2        | 4.2                              | 8.6                  | 6.0         | -                          | 8.0                | 3.9                          | 2.1                  | 6.2                          | 3.1  | -      |
| 민간사업체                          | 43.9        | 3.0                              | 12.1                 | 19.7        | 3.9                        | 19.2               | 5.2                          | 5.4                  | -                            | 10.3 | 2.9    |
| 성별                             |             |                                  |                      |             |                            |                    |                              |                      |                              |      |        |
| 남성                             | 44.9        | 3.4                              | 14.8                 | 10.1        | 2.0                        | 30.4               | 1.5                          | -                    | -                            | 19.5 | -      |
| 여성                             | 56.8        | 3.3                              | 9.0                  | 19.4        | 3.4                        | 7.7                | 6.8                          | 7.1                  | 2.7                          | 1.8  | 3.4    |
| 연령                             |             |                                  |                      |             |                            |                    |                              |                      |                              |      |        |
| 20대 이하                         | 32.9        | 8.0                              | 30.3                 | 29.1        | 1.1                        | 39.3               | 15.3                         | 7.7                  | -                            | 1.2  | -      |
| 30대                            | 32.0        | 4.8                              | 5.7                  | 0.1         | 9.7                        | 13.2               | 2.9                          | 10.9                 | -                            | 37.8 | 0.4    |
| 40대                            | 52.3        | -                                | 8.2                  | 27.3        | 1.8                        | 14.6               | 1.9                          | 1.8                  | -                            | -    | 5.8    |
| 50대 이상                         | 76.4        | 3.9                              | 8.0                  | 5.6         | 0.5                        | 7.4                | 4.1                          | 1.9                  | 5.7                          | 2.9  | -      |
| 직급                             |             |                                  |                      |             |                            |                    |                              |                      |                              |      |        |
| 관리직                            | 43.6        | -                                | 5.8                  | 26.0        | 0.4                        | 12.0               | 0.4                          | 0.1                  | -                            | 17.9 | -      |
| 일반직                            | 56.9        | 5.0                              | 13.9                 | 10.9        | 4.1                        | 18.2               | 7.1                          | 6.7                  | 2.5                          | 3.5  | 3.2    |
| 모름/무응답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형태                           |             |                                  |                      |             |                            |                    |                              |                      |                              |      |        |
| 정규직                            | 53.3        | 3.1                              | 12.1                 | 17.0        | 3.1                        | 17.7               | 4.5                          | 4.1                  | 1.9                          | 7.7  | 0.1    |
| 비정규직                           | 45.0        | 6.2                              | 1.7                  | 3.1         | -                          | -                  | 6.2                          | 9.3                  | -                            | 14.6 | 23.1   |
| 모름/무응답                         | -           | -                                | -                    | 100.0       | -                          | -                  | 100.0                        | -                    | -                            | -    | -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                              |      |        |
| 국가기관                           | 56.1        | -                                | 18.9                 | 8.0         | -                          | 16.7               | 7.4                          | 0.4                  | 10.9                         | 3.2  | -      |
| 지방자치단체                         | 82.7        | 9.6                              | -                    | 3.0         | -                          | -                  | -                            | -                    | -                            | 4.6  | -      |
| 초/중/고                          | 73.7        | -                                | 13.9                 | 13.9        | -                          | 13.9               | 7.8                          | -                    | 13.9                         | 4.6  | -      |
| 대학                             | 92.0        | 7.6                              | -                    | -           | -                          | -                  | -                            | 7.6                  | -                            | 0.4  | -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                              |      |        |
| 제조업                            | 30.8        | 5.0                              | 18.0                 | 16.3        | 6.5                        | 28.1               | 9.9                          | 10.5                 | -                            | 23.3 | -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50.9        | -                                | 14.1                 | 19.8        | -                          | 28.3               | 5.7                          | -                    | -                            | 1.0  | -      |
| 개인서비스업                         | 31.4        | 15.9                             | 23.7                 | 5.1         | 27.9                       | 15.9               | 8.8                          | 21.5                 | -                            | -    | -      |
| 유통서비스업                         | 77.7        | -                                | 0.2                  | 1.2         | -                          | 20.9               | 1.0                          | 1.0                  | -                            | 1.2  | -      |
| 사업서비스업                         | 41.9        | 0.9                              | 7.9                  | 36.6        | -                          | 16.3               | -                            | 1.1                  | -                            | 5.0  | 0.2    |
| 사회서비스업                         | 71.6        | -                                | 6.0                  | -           | -                          | -                  | 6.0                          | -                    | -                            | 1.2  | 21.1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                              |      |        |
| 30~99인                         | 46.9        | 0.8                              | 15.2                 | 3.8         | 4.1                        | 12.8               | 5.0                          | 3.3                  | -                            | 25.9 | 0.4    |
| 100~299인                       | 41.3        | 8.5                              | 19.5                 | 19.5        | 3.8                        | 29.7               | 7.9                          | 10.4                 | -                            | 0.5  | 8.7    |
| 300~499인                       | 50.1        | -                                | -                    | -           | 15.6                       | 49.9               | 11.2                         | 11.2                 | -                            | -    | -      |
| 500인 이상                        | 40.2        | -                                | -                    | 54.2        | -                          | 4.9                | -                            | -                    | -                            | 0.7  | -      |

주: 1) 백분율은 205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기관의 조치는 복수응답 분석을 실시함.

## 다. 성희롱 목격 경험

### 1) 성희롱 목격 여부

지난 3년간(2018.8.~2021.7.) 직장에서 타인의 성희롱 피해 경험을 전해 듣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앞서 살펴봤던 14개 성희롱 피해 유형 중 하나라도 전해 듣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5%였다. 2018년 11.2%에서 5.7%p 감소하였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보면 공공기관 9.5%, 민간사업체 4.6%로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피해를 전해 듣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민간사업체보다 다소 높았다. 2018년 조사에서는 공공기관 18.9%, 민간사업체 9.6%였는데, 2021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각각 9.4%p, 5.0%p 감소하였다. 공공기관 유형 중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희롱을 전해 듣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1.7%, 15.4%로 초/중/고와 대학에 비해 높았다.

14개 유형별로 전해 듣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살펴보면,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가 3.9%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 1.9%,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 1.7%, ‘포옹, 손잡기, 신체 밀착, 안마, 입맞춤 등의 신체 접촉을 하거나 신체접촉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1.0%, ‘사적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0.8% 순이었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공공기관에서는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6.8%,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 3.5%,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 3.1%, ‘포옹, 손잡기, 신체 밀착, 안마, 입맞춤 등의 신체 접촉을 하거나 신체접촉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1.7%, ‘사적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1.2% 순으로 전해 듣거나 목격한 비율이 나타났다. 민간사업체 역시 응답 경향은 공공기관과 유사했으나 응답률은 공공기관보다 낮았다.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3.3%,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 1.7%,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 1.3%, ‘포옹, 손잡기, 신체 밀착, 안마, 입맞춤 등의 신체 접촉을 하거나 신체접촉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0.9%, ‘사적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0.7%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5.3%,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 2.7%,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 2.2%, ‘포옹, 손잡기, 신체 밀착, 안마, 입맞춤 등의 신체 접촉을 하거나 신체접촉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1.4% 등으로 전해 듣거나 목격한 비율이 높았다. 남성의 경우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3.0%,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 1.7% 순이었다.

〈표 III-27〉 성희롱 목격 경험 여부

(단위: %)

| 구분                                 | 있다   | 없다   | 모름/무응답 | 계     |
|------------------------------------|------|------|--------|-------|
| <b>전 체</b>                         | 5.5  | 94.3 | 0.2    | 100.0 |
| <b>유형</b>                          |      |      |        |       |
| 공공기관                               | 9.5  | 90.5 | -      | 100.0 |
| 민간사업체                              | 4.6  | 95.1 | 0.3    | 100.0 |
| <b>성별</b>                          |      |      |        |       |
| 남성                                 | 4.4  | 95.4 | 0.2    | 100.0 |
| 여성                                 | 7.1  | 92.6 | 0.3    | 100.0 |
| <b>연령</b>                          |      |      |        |       |
| 20대 이하                             | 5.2  | 94.8 | 0.0    | 100.0 |
| 30대                                | 5.9  | 93.7 | 0.4    | 100.0 |
| 40대                                | 4.0  | 95.8 | 0.2    | 100.0 |
| 50대 이상                             | 6.6  | 93.2 | 0.1    | 100.0 |
| <b>직급</b>                          |      |      |        |       |
| 관리직                                | 4.5  | 95.4 | 0.1    | 100.0 |
| 일반직                                | 6.0  | 93.8 | 0.3    | 100.0 |
| 모름/무응답                             | 3.1  | 96.9 | -      | 100.0 |
| <b>고용형태</b>                        |      |      |        |       |
| 정규직                                | 5.4  | 94.3 | 0.2    | 100.0 |
| 비정규직                               | 5.8  | 94.2 | 0.0    | 100.0 |
| 모름/무응답                             | 2.3  | 97.7 | -      | 100.0 |
| <b>공공기관 유형</b>                     |      |      |        |       |
| 국가기관                               | 11.7 | 88.3 | -      | 100.0 |
| 지방자치단체                             | 15.4 | 84.6 | -      | 100.0 |
| 초/중/고                              | 5.0  | 95.0 | -      | 100.0 |
| 대학                                 | 9.6  | 90.4 | -      | 100.0 |
| <b>민간사업체 업종</b>                    |      |      |        |       |
| 제조업                                | 5.9  | 93.7 | 0.3    | 100.0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2.6  | 97.2 | 0.2    | 100.0 |
| 개인서비스업                             | 3.9  | 95.6 | 0.4    | 100.0 |
| 유통서비스업                             | 5.5  | 94.3 | 0.2    | 100.0 |
| 사업서비스업                             | 2.7  | 97.2 | 0.0    | 100.0 |
| 사회서비스업                             | 6.1  | 93.5 | 0.4    | 100.0 |
| <b>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b>                |      |      |        |       |
| 30~99인                             | 4.3  | 95.6 | 0.1    | 100.0 |
| 100~299인                           | 4.7  | 94.7 | 0.6    | 100.0 |
| 300~499인                           | 3.9  | 95.9 | 0.2    | 100.0 |
| 500인 이상                            | 5.3  | 94.6 | 0.1    | 100.0 |

주: 백분율은 15,073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표 Ⅲ-28〉 성희롱 유형별 목격 경험 - 계속

(단위: %)

| 구분                                 | 외모에<br>대한 성적<br>비유나<br>평가 | 음담패설<br>및 성적 농담<br>(SNS, 전화,<br>문자, 메신저,<br>이메일 등<br>포함) | 성적 사실<br>관계를<br>묻거나 관련<br>정보를 의도<br>적으로 유포<br>하는 행위 | 사적<br>만남을<br>강요하는<br>행위 | 성적<br>관계를<br>요구하는<br>행위 | 회식에서<br>술을 따르<br>거나 옆에<br>앉도록<br>강요하는<br>행위 | 가슴,<br>엉덩이 등<br>특정 신체<br>부위를<br>쳐다보는<br>행위 |
|------------------------------------|---------------------------|----------------------------------------------------------|-----------------------------------------------------|-------------------------|-------------------------|---------------------------------------------|--------------------------------------------|
| 전 체                                | 3.9                       | 1.9                                                      | 0.5                                                 | 0.8                     | 0.2                     | 1.7                                         | 0.7                                        |
| 유형                                 |                           |                                                          |                                                     |                         |                         |                                             |                                            |
| 공공기관                               | 6.8                       | 3.1                                                      | 0.6                                                 | 1.2                     | 0.4                     | 3.5                                         | 1.1                                        |
| 민간사업체                              | 3.3                       | 1.7                                                      | 0.5                                                 | 0.7                     | 0.1                     | 1.3                                         | 0.6                                        |
| 성별                                 |                           |                                                          |                                                     |                         |                         |                                             |                                            |
| 남성                                 | 3.0                       | 1.7                                                      | 0.5                                                 | 0.6                     | 0.1                     | 1.0                                         | 0.3                                        |
| 여성                                 | 5.3                       | 2.2                                                      | 0.6                                                 | 1.1                     | 0.3                     | 2.7                                         | 1.2                                        |
| 연령                                 |                           |                                                          |                                                     |                         |                         |                                             |                                            |
| 20대 이하                             | 3.8                       | 1.4                                                      | 0.5                                                 | 0.6                     | 0.0                     | 1.7                                         | 0.5                                        |
| 30대                                | 4.2                       | 2.3                                                      | 0.9                                                 | 1.2                     | 0.0                     | 1.8                                         | 1.0                                        |
| 40대                                | 2.8                       | 1.4                                                      | 0.2                                                 | 0.5                     | 0.2                     | 0.8                                         | 0.3                                        |
| 50대 이상                             | 4.8                       | 2.4                                                      | 0.6                                                 | 0.8                     | 0.3                     | 2.4                                         | 0.8                                        |
| 직급유형                               |                           |                                                          |                                                     |                         |                         |                                             |                                            |
| 관리직                                | 3.4                       | 1.9                                                      | 0.5                                                 | 0.7                     | 0.1                     | 0.6                                         | 0.4                                        |
| 일반직                                | 4.1                       | 1.9                                                      | 0.6                                                 | 0.9                     | 0.2                     | 2.2                                         | 0.8                                        |
| 모름/무응답                             | 2.5                       | 2.6                                                      | 0.4                                                 | -                       | -                       | 2.5                                         | -                                          |
| 고용형태                               |                           |                                                          |                                                     |                         |                         |                                             |                                            |
| 정규직                                | 4.0                       | 1.9                                                      | 0.6                                                 | 0.8                     | 0.2                     | 1.6                                         | 0.7                                        |
| 비정규직                               | 3.3                       | 1.6                                                      | 0.3                                                 | 0.8                     | 0.1                     | 1.9                                         | 0.9                                        |
| 모름/무응답                             | 2.0                       | 1.7                                                      | 0.2                                                 | -                       | -                       | 1.7                                         | -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 국가기관                               | 8.6                       | 5.0                                                      | 0.8                                                 | 2.0                     | 0.3                     | 3.6                                         | 1.7                                        |
| 지방자치단체                             | 12.0                      | 5.7                                                      | 1.4                                                 | 1.2                     | 1.0                     | 8.1                                         | 2.3                                        |
| 초/중/고                              | 3.1                       | 1.0                                                      | 0.1                                                 | 0.7                     | 0.3                     | 1.1                                         | 0.3                                        |
| 대학                                 | 6.7                       | 2.0                                                      | 0.5                                                 | 0.8                     | 0.4                     | 3.6                                         | 0.9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 제조업                                | 4.7                       | 2.2                                                      | 1.0                                                 | 0.9                     | 0.2                     | 1.2                                         | 0.7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1.6                       | 0.8                                                      | 0.0                                                 | 0.1                     | 0.0                     | 1.4                                         | 0.1                                        |
| 개인서비스업                             | 3.5                       | 1.6                                                      | 0.3                                                 | 0.9                     | 0.0                     | 1.2                                         | 0.5                                        |
| 유통서비스업                             | 4.2                       | 2.1                                                      | 0.7                                                 | 0.5                     | -                       | 1.4                                         | 0.3                                        |
| 사업서비스업                             | 1.3                       | 1.0                                                      | 0.1                                                 | 0.6                     | 0.0                     | 0.8                                         | 0.4                                        |
| 사회서비스업                             | 4.1                       | 2.2                                                      | 0.6                                                 | 1.0                     | 0.3                     | 2.0                                         | 1.1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 30~99인                             | 3.1                       | 1.9                                                      | 0.6                                                 | 0.8                     | 0.2                     | 1.2                                         | 0.7                                        |
| 100~299인                           | 3.1                       | 1.5                                                      | 0.4                                                 | 0.6                     | 0.0                     | 1.3                                         | 0.5                                        |
| 300~499인                           | 2.6                       | 0.8                                                      | 0.4                                                 | 1.0                     | -                       | 1.7                                         | 0.6                                        |
| 500인 이상                            | 3.9                       | 1.9                                                      | 0.6                                                 | 0.6                     | 0.2                     | 1.3                                         | 0.6                                        |

〈표 III-28〉 성희롱 유형별 목격 경험

(단위: %)

| 구분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노출하는 행위 | 포옹, 손잡기, 신체 밀착, 안마, 입맞춤 등의 신체 접촉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 성적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 평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성적 요구를 전제 조건으로 고용, 평가 등의 이익을 제안하는 행위 |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성적 관계를 하거나 시도한 행위 |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 |
|--------------------------------|-------------------------------------------|----------------------------|-----------------------------------------------------------|---------------------------------------|----------------------------------------|--------------------------------------|-------------------------------------------|-------------|
| 전 체                            | 0.2                                       | 0.2                        | 1.0                                                       | 0.2                                   | 0.2                                    | 0.2                                  | 0.1                                       | 5.5         |
| 유형                             |                                           |                            |                                                           |                                       |                                        |                                      |                                           |             |
| 공공기관                           | 0.5                                       | 0.4                        | 1.7                                                       | 0.4                                   | 0.3                                    | 0.3                                  | 0.3                                       | 9.5         |
| 민간사업체                          | 0.1                                       | 0.1                        | 0.9                                                       | 0.2                                   | 0.2                                    | 0.2                                  | 0.1                                       | 4.6         |
| 성별                             |                                           |                            |                                                           |                                       |                                        |                                      |                                           |             |
| 남자                             | 0.1                                       | 0.1                        | 0.8                                                       | 0.2                                   | 0.1                                    | 0.2                                  | 0.1                                       | 4.4         |
| 여자                             | 0.3                                       | 0.3                        | 1.4                                                       | 0.3                                   | 0.3                                    | 0.2                                  | 0.2                                       | 7.1         |
| 연령                             |                                           |                            |                                                           |                                       |                                        |                                      |                                           |             |
| 20대 이하                         | 0.1                                       | 0.2                        | 1.2                                                       | 0.3                                   | 0.4                                    | 0.2                                  | 0.0                                       | 5.2         |
| 30대                            | 0.2                                       | 0.2                        | 1.0                                                       | 0.1                                   | 0.1                                    | 0.1                                  | 0.0                                       | 5.9         |
| 40대                            | 0.1                                       | 0.2                        | 0.6                                                       | 0.3                                   | 0.3                                    | 0.2                                  | 0.1                                       | 4.0         |
| 50대 이상                         | 0.3                                       | 0.2                        | 1.3                                                       | 0.3                                   | 0.2                                    | 0.2                                  | 0.2                                       | 6.6         |
| 직급유형                           |                                           |                            |                                                           |                                       |                                        |                                      |                                           |             |
| 관리직                            | 0.1                                       | 0.1                        | 0.7                                                       | 0.3                                   | 0.2                                    | 0.2                                  | 0.1                                       | 4.5         |
| 일반직                            | 0.2                                       | 0.2                        | 1.1                                                       | 0.2                                   | 0.2                                    | 0.2                                  | 0.1                                       | 6.0         |
| 모름/무응답                         | -                                         | 0.0                        | 0.0                                                       | 0.0                                   | -                                      | -                                    | -                                         | 3.1         |
| 고용형태                           |                                           |                            |                                                           |                                       |                                        |                                      |                                           |             |
| 정규직                            | 0.2                                       | 0.2                        | 1.0                                                       | 0.3                                   | 0.2                                    | 0.2                                  | 0.1                                       | 5.4         |
| 비정규직                           | 0.0                                       | 0.1                        | 0.9                                                       | 0.1                                   | 0.0                                    | 0.1                                  | 0.2                                       | 5.8         |
| 모름/무응답                         | -                                         | 0.3                        | -                                                         | -                                     | -                                      | -                                    | -                                         | 2.3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
| 국가기관                           | 0.8                                       | 0.3                        | 1.9                                                       | 0.5                                   | 0.3                                    | 0.3                                  | 0.2                                       | 11.7        |
| 지방자치단체                         | 1.1                                       | 1.0                        | 2.5                                                       | 0.6                                   | 1.0                                    | 0.8                                  | 0.5                                       | 15.4        |
| 초/중/고                          | 0.1                                       | 0.1                        | 0.8                                                       | 0.3                                   | -                                      | 0.1                                  | 0.3                                       | 5.0         |
| 대학                             | 0.3                                       | 0.3                        | 2.1                                                       | 0.3                                   | 0.3                                    | 0.4                                  | 0.4                                       | 9.6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
| 제조업                            | 0.1                                       | 0.3                        | 0.9                                                       | 0.6                                   | 0.4                                    | 0.3                                  | 0.0                                       | 5.9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0.0                                       | 0.0                        | 0.3                                                       | 0.0                                   | 0.1                                    | 0.1                                  | 0.1                                       | 2.6         |
| 개인서비스업                         | 0.0                                       | 0.1                        | 0.4                                                       | 0.1                                   | 0.4                                    | 0.2                                  | -                                         | 3.9         |
| 유통서비스업                         | 0.0                                       | 0.2                        | 1.3                                                       | 0.0                                   | 0.0                                    | 0.0                                  | 0.0                                       | 5.5         |
| 사업서비스업                         | 0.0                                       | -                          | 0.7                                                       | -                                     | -                                      | 0.1                                  | 0.1                                       | 2.7         |
| 사회서비스업                         | 0.3                                       | 0.2                        | 1.4                                                       | 0.2                                   | 0.2                                    | 0.1                                  | 0.2                                       | 6.1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
| 30~99인                         | 0.1                                       | 0.1                        | 0.9                                                       | 0.1                                   | 0.2                                    | 0.1                                  | 0.1                                       | 4.3         |
| 100~299인                       | 0.1                                       | 0.3                        | 0.8                                                       | 0.2                                   | 0.2                                    | 0.1                                  | 0.0                                       | 4.7         |
| 300~499인                       | 0.0                                       | 0.1                        | 1.0                                                       | 0.1                                   | 0.0                                    | 0.3                                  | 0.3                                       | 3.9         |
| 500인 이상                        | 0.0                                       | 0.0                        | 0.8                                                       | 0.4                                   | 0.2                                    | 0.2                                  | 0.0                                       | 5.3         |

주: 1) 백분율은 15,073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전혀 듣거나 목격한 적이 없다'의 응답을 기준으로 재구성함.

## 2) 성희롱 목격 후 조치방법

14개 유형 중 하나라도 전해 듣거나 목격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질문하였는데,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4.1%였다. 2018년(61.5%) 대비 10명 중 6명 정도가 타인의 성희롱 피해 경험을 전해 듣거나 목격해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변함이 없었다.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높아지고 성희롱 방지 및 대처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되었지만, 실제 타인의 성희롱 피해 경험을 전해 듣거나 목격했을 때 대응 여부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성희롱 상황에서 목격자인 주변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행위자의 반복적 행동을 제지하는 것이 조직안에서 성희롱 문제에 대한 공동체적인 해결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주변인의 실천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이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공공기관은 51.5%, 민간사업체는 69.3%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률이 민간사업체에서 17.8%p 높았다. 이는 공공기관(48.5%)에서 민간사업체(30.7%)보다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성별로는 남성은 76.2%, 여성은 52.1%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여성(47.9%)이 남성(23.8%)보다 타인의 성희롱 피해 경험을 전해 듣거나 목격할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와 50대 이상에서, 고용형태에서는 비정규직, 공공기관 유형 중 초/중/고에서, 민간사업체 업종 중에서는 개인서비스업,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적어서, 성희롱 피해를 듣거나 목격했을 때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해 듣거나 목격한 경우 조치를 취한 내용(복수응답)을 보면,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했다’(23.1%)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피해자가 사내기구나 외부기구에 신고하도록 제안하였음’(7.4%), ‘성희롱 행위자의 행동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였음’(4.6%) 순이었다. 모든 항목에서 2018년 조사 결과와 2021년 조사 결과의 응답률이 비슷했는데, ‘피해자가 사내기구나 외부기구에 신고하도록 제안하였음’의 경우 2018년 2.7%에서 2021년 7.4%로 다소 상승하였다.

소속기관 유형이나 성별에서는 전체 응답과 경향이 유사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에서 ‘피해자가 사내기구나 외부기구에 신고하도록 제안하였음’(13.2%)의 응답이 높았다. 공공기관 유형 중 국가기관, 초/중/고, 대학에서 ‘피해자가 사내기구나 외부기구에 신고하도록 제안하였음’의 응답이 높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III-29〉 성희롱 목격 후 조치 방법(복수응답)

(단위: %)

| 구분                             |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하였음 | 성희롱 행위자의 행동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였음 | 성희롱 행위자를 사내기구나 외부기구에 직접 신고하였음 | 피해자가 사내기구나 외부기구에 신고하도록 제안하였음 | 피해자가 상급자에게 보고하도록 제안하였음 | 모름/무응답 |
|--------------------------------|-----------------|----------------------|---------------------------|-------------------------------|------------------------------|------------------------|--------|
| 전 체                            | 64.1            | 23.1                 | 4.6                       | 3.2                           | 7.4                          | 3.1                    | 3.7    |
| 유형                             |                 |                      |                           |                               |                              |                        |        |
| 공공기관                           | 51.5            | 35.1                 | 7.8                       | 2.1                           | 11.8                         | 7.5                    | -      |
| 민간사업체                          | 69.3            | 18.1                 | 3.3                       | 3.6                           | 5.6                          | 1.3                    | 5.2    |
| 성별                             |                 |                      |                           |                               |                              |                        |        |
| 남성                             | 76.2            | 15.1                 | 3.0                       | 3.7                           | 8.0                          | 1.0                    | 0.4    |
| 여성                             | 52.1            | 31.1                 | 6.3                       | 2.6                           | 6.8                          | 5.2                    | 6.9    |
| 연령                             |                 |                      |                           |                               |                              |                        |        |
| 20대 이하                         | 60.1            | 22.1                 | 2.8                       | 1.4                           | 13.2                         | 2.7                    | 2.6    |
| 30대                            | 69.0            | 23.4                 | 3.7                       | 6.9                           | 5.9                          | 1.3                    | 1.6    |
| 40대                            | 72.7            | 11.2                 | 3.2                       | 1.3                           | 2.8                          | 0.5                    | 9.9    |
| 50대 이상                         | 56.0            | 30.6                 | 6.9                       | 1.7                           | 9.7                          | 6.3                    | 1.9    |
| 직급                             |                 |                      |                           |                               |                              |                        |        |
| 관리직                            | 72.1            | 11.8                 | 4.7                       | 5.8                           | 9.6                          | 2.6                    | 6.3    |
| 일반직                            | 61.1            | 27.4                 | 4.6                       | 2.1                           | 6.6                          | 3.3                    | 2.7    |
| 모름/무응답                         | 12.3            | 72.7                 | 15.0                      | -                             | -                            | -                      | -      |
| 고용형태                           |                 |                      |                           |                               |                              |                        |        |
| 정규직                            | 64.9            | 22.7                 | 4.4                       | 3.3                           | 7.7                          | 2.8                    | 3.4    |
| 비정규직                           | 58.6            | 25.7                 | 6.4                       | 1.6                           | 5.2                          | 5.6                    | 6.3    |
| 모름/무응답                         | 10.8            | 62.5                 | 13.2                      | -                             | 13.5                         | -                      | -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 국가기관                           | 53.3            | 28.7                 | 9.0                       | 2.8                           | 15.2                         | 8.6                    | -      |
| 지방자치단체                         | 57.5            | 34.6                 | 4.9                       | -                             | 5.4                          | 3.8                    | -      |
| 초/중/고                          | 33.3            | 54.1                 | 7.1                       | 3.0                           | 17.9                         | 11.1                   | -      |
| 대학                             | 57.4            | 27.1                 | 11.2                      | 3.6                           | 10.3                         | 7.8                    | -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 제조업                            | 75.0            | 11.5                 | 1.6                       | 6.7                           | 10.8                         | 0.7                    | 3.3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79.4            | 20.0                 | 0.3                       | -                             | 3.5                          | 3.5                    | 0.4    |
| 개인서비스업                         | 45.4            | 19.8                 | 4.1                       | 2.4                           | 4.7                          | 0.9                    | 24.5   |
| 유통서비스업                         | 69.9            | 19.6                 | 6.3                       | 2.3                           | 0.6                          | 0.3                    | 1.2    |
| 사업서비스업                         | 76.9            | 18.6                 | 4.7                       | -                             | 1.5                          | 2.6                    | -      |
| 사회서비스업                         | 60.1            | 26.4                 | 4.0                       | 2.8                           | 3.7                          | 1.6                    | 9.3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 30~99인                         | 64.2            | 25.0                 | 4.2                       | 4.6                           | 6.0                          | 1.1                    | 6.6    |
| 100~299인                       | 64.5            | 15.0                 | 6.0                       | 3.6                           | 8.6                          | 0.8                    | 7.2    |
| 300~499인                       | 73.3            | 17.8                 | 3.0                       | -                             | 4.1                          | 8.5                    | 4.1    |
| 500인 이상                        | 78.7            | 13.0                 | 0.1                       | 3.3                           | 2.9                          | 0.2                    | 2.2    |

주: 1) 백분율은 1,125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성희롱 목격 후 조치 방법은 복수응답 분석을 실시함.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에 그 이유(복수응답)를 질문하였는데,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43.1%)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거 같아서’(19.0%),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 봐서’(16.0%), ‘성희롱인지 정확히 판단하지 못해서’(15.7%) 순이었다.

소속기관 유형에 따라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 모두 전체 응답 경향과 유사했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거 같아서’(25.0%)의 응답률이 다소 높았다.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여성의 경우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31.5%)는 전체 응답보다 낮았고, 반면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거 같아서’(24.5%), ‘소문, 평판, 따돌림, 비난 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11.6%)라는 응답은 전체 응답보다 높았다.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 봐서’(15.7%)는 전체 응답과 비슷했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많은 가운데, 20대 이하의 경우 ‘성희롱인지 정확히 판단하지 못해서’(21.7%),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거 같아서’(24.3%), ‘업무나 인사 등에서의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되어서’(12.6%), ‘소문, 평판, 따돌림, 비난 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14.7%) 등 2차 피해와 관련된 내용의 응답도 상당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과 함께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민간사업체 규모에서도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많았지만, 규모가 커질수록 그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100~299인과 300~499인에서는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거 같아서’라는 응답이 많았다(100~299인 36.8%, 300~499인 26.6%).

전체적으로 성희롱 행위란 걸 인지했지만 용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하였거나 조직의 성희롱 사건 대처(조력자에 대한 2차 피해방지 포함)에 대한 신뢰가 낮아서 성희롱 상황을 전해 듣거나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II-30〉 조치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단위: %)

| 구분                             |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 해서 | 성희롱 인지 정확히 판단하지 못해서 |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거 같아서 | 업무나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 되어서 | 소문, 평판, 따돌림, 비난 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 질까봐서 | 대처 방법을 잘 몰라서 | 기타   | 모름/무응답 |
|--------------------------------|---------------------|---------------------|---------------------------|----------------------------|-------------------------------|-------------------|--------------|------|--------|
| 전 체                            | 43.1                | 15.7                | 19.0                      | 5.4                        | 6.8                           | 16.0              | 8.1          | 12.3 | 0.8    |
| 유형                             |                     |                     |                           |                            |                               |                   |              |      |        |
| 공공기관                           | 40.3                | 18.2                | 25.0                      | 6.7                        | 7.0                           | 16.4              | 11.1         | 25.1 | -      |
| 민간사업체                          | 44.0                | 14.9                | 17.2                      | 5.1                        | 6.7                           | 15.9              | 7.1          | 8.4  | 1.0    |
| 성별                             |                     |                     |                           |                            |                               |                   |              |      |        |
| 남성                             | 51.1                | 14.3                | 15.3                      | 3.5                        | 3.5                           | 16.3              | 9.0          | 9.4  | 0.9    |
| 여성                             | 31.5                | 17.7                | 24.5                      | 8.2                        | 11.6                          | 15.7              | 6.7          | 16.5 | 0.6    |
| 연령                             |                     |                     |                           |                            |                               |                   |              |      |        |
| 20대 이하                         | 38.4                | 21.7                | 24.3                      | 12.6                       | 14.7                          | 15.0              | 6.6          | 8.6  | 1.4    |
| 30대                            | 40.8                | 17.9                | 14.0                      | 5.1                        | 3.4                           | 24.0              | 4.0          | 5.6  | 0.3    |
| 40대                            | 50.1                | 10.4                | 13.7                      | 1.9                        | 3.9                           | 5.4               | 13.6         | 10.1 | 2.1    |
| 50대 이상                         | 41.4                | 15.7                | 26.6                      | 6.2                        | 9.7                           | 16.9              | 8.2          | 22.1 | -      |
| 직급                             |                     |                     |                           |                            |                               |                   |              |      |        |
| 관리직                            | 49.4                | 6.9                 | 15.4                      | 2.5                        | 4.4                           | 10.0              | 14.0         | 15.2 | 1.7    |
| 일반직                            | 40.2                | 19.7                | 20.6                      | 6.8                        | 7.9                           | 18.8              | 5.3          | 11.0 | 0.4    |
| 모름/무응답                         | -                   | 100.0               | 100.0                     | -                          | -                             | -                 | -            | -    | -      |
| 고용형태                           |                     |                     |                           |                            |                               |                   |              |      |        |
| 정규직                            | 43.2                | 13.6                | 18.4                      | 5.8                        | 7.3                           | 16.4              | 8.2          | 12.7 | 0.8    |
| 비정규직                           | 42.2                | 34.6                | 24.3                      | 2.5                        | 2.3                           | 13.0              | 6.6          | 8.5  | 0.6    |
| 모름/무응답                         | -                   | 100.0               | 100.0                     | -                          | -                             | -                 | -            | -    | -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        |
| 국가기관                           | 33.4                | 15.4                | 20.0                      | 16.1                       | 7.2                           | 23.6              | 16.0         | 25.7 | -      |
| 지방자치단체                         | 29.1                | 14.9                | 23.5                      | 2.6                        | 12.8                          | 15.0              | 13.4         | 10.8 | -      |
| 초/중/고                          | 51.1                | 16.1                | 9.9                       | -                          | -                             | 24.0              | 8.3          | 41.3 | -      |
| 대학                             | 62.3                | 29.0                | 43.7                      | 2.7                        | 1.6                           | 3.7               | 1.4          | 37.3 | -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        |
| 제조업                            | 46.6                | 15.6                | 6.9                       | 3.0                        | 2.0                           | 17.9              | 11.9         | 7.5  | 0.3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30.6                | 13.7                | 33.3                      | 10.9                       | 4.0                           | 18.7              | 8.7          | 4.9  | 0.3    |
| 개인서비스업                         | 27.8                | 17.5                | 12.5                      | 11.3                       | 5.9                           | 22.3              | 11.0         | 4.4  | 1.6    |
| 유통서비스업                         | 52.1                | 4.5                 | 38.7                      | 10.4                       | 18.5                          | 13.7              | 1.9          | 5.9  | -      |
| 사업서비스업                         | 46.3                | 23.0                | 22.3                      | 2.1                        | 7.0                           | 4.8               | 5.9          | 8.6  | 5.1    |
| 사회서비스업                         | 39.6                | 14.0                | 14.8                      | 4.6                        | 8.8                           | 19.9              | 1.0          | 13.6 | -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        |
| 30~99인                         | 54.7                | 10.7                | 14.3                      | 6.8                        | 8.5                           | 14.0              | 3.3          | 11.0 | 0.4    |
| 100~299인                       | 43.1                | 7.9                 | 36.8                      | 6.4                        | 9.5                           | 11.6              | 6.5          | 7.9  | 0.5    |
| 300~499인                       | 40.2                | 18.7                | 26.6                      | 2.9                        | 12.1                          | 16.0              | 1.9          | 5.0  | 9.0    |
| 500인 이상                        | 35.4                | 23.2                | 3.5                       | 2.9                        | 1.7                           | 20.8              | 12.4         | 7.0  | 0.2    |

주: 1) 백분율은 636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조치하지 않은 이유는 복수응답 분석을 실시함.

### 3) 성희롱 목격 경험의 영향

14개 유형 중 하나라도 전해 듣거나 목격한 경험으로 인해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를 조사한 결과, ‘특별한 영향이 없었음’이라는 응답은 44.7%였다. 이는 10명 중 5~6명은 성희롱을 전해 듣거나 목격한 경험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에서 ‘특별한 영향이 없었음’의 응답은 35.0%, 민간사업체에서는 48.7%였고, 성별로는 남성은 56.8%, 여성은 32.7%여서, 공공기관과 여성에서 성희롱을 전해 듣거나 목격한 경험으로 인한 영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특별한 영향이 없었음’의 응답이 20대 이하 31.5%, 30대 48.2%, 40대 56.7%로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영향을 더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일반직, 비정규직, 초/중/고에서 ‘특별한 영향이 없었음’의 응답이 낮아서 성희롱을 전해 듣거나 목격한 경험으로 인해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희롱을 전해 듣거나 목격한 경험으로 인해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복수응답)을 보면, ‘직장(내 성희롱 예방정책, 문화 등)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음’(20.5%), ‘직장동료들에게 실망감을 느낌’(19.0%), ‘나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음’(17.4%), ‘직장 만족도가 낮아짐’(14.3%) 순이었다.

소속기관 유형이나 성별에 따른 응답 결과를 보면, 공공기관과 여성의 경우 ‘나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음’, ‘직장동료들에게 실망감을 느낌’, ‘직장(성희롱 예방정책, 문화 등)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음’의 응답률이 전체 응답을 상회하며 높게 나타났다. 공공기관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정책, 문화 등)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음’ 29.2%, ‘직장동료들에게 실망감을 느낌’ 29.0%, ‘나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음’ 26.2% 순이었고, 여성에서는 ‘직장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음’ 27.6%, ‘나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음’ 25.8%, ‘직장동료들에게 실망감을 느낌’ 24.4%였다. 특히 여성의 경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남성(8.9%)보다 크게 높았다. 성희롱 목격 경험만으로도 직장내 성희롱 예방정책과 동료들에 대한 실망감, 나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 직장만족도가 낮아지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됨을 확인하였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에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정책, 문화 등)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음’(28.5%), ‘나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음’(27.6%)의 응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고용형태의 경우 비정규직에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정책, 문화 등)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음’, ‘나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음’, ‘직장동료들에게 실망



감을 느낌'의 응답률이 전체 응답을 상회하였다. 공공기관 유형에서는 특히 초/중/고의 경우 '직장(내 성희롱 예방정책, 문화 등)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음', '나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음', '직장동료들에게 실망감을 느낌'의 응답률이 전체 응답보다 월등히 높았다.

100~299인과 300~499인 규모의 민간사업체에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정책, 문화 등)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음', '나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음'의 응답률이 민간사업체 평균 응답을 상회했다. 100~299인 규모의 민간사업체에서는 '직장 동료들에게 실망감을 느낌', '직장만족도 낮아짐'의 응답률도 민간사업체 평균 응답을 상회했다.

〈표 Ⅲ-31〉 성희롱 목격 경험의 영향(복수응답)

(단위: %)

| 구분                                 | 특별한<br>영향<br>없었음 | 근로<br>의욕<br>저하<br>등<br>업무<br>집중도<br>떨어짐 | 직장<br>(성희롱<br>예방<br>정책,<br>문화<br>등)에<br>대한<br>실망감<br>느꼈음 | 직장을<br>그만<br>두고<br>싶었음 | 나도<br>성희롱<br>피해<br>자가<br>될 수<br>있다는<br>불안감<br>느꼈음 | 스트<br>레스로<br>인해<br>건강이<br>나빠짐 | 직장 내<br>대인<br>관계에<br>어려움<br>생김 | 직장<br>동료들<br>에게<br>실망감<br>느낌 | 직장<br>만족도<br>낮아짐 | 기타   | 모름/<br>무응답 |
|------------------------------------|------------------|-----------------------------------------|----------------------------------------------------------|------------------------|---------------------------------------------------|-------------------------------|--------------------------------|------------------------------|------------------|------|------------|
| 전 체                                | 44.7             | 7.2                                     | 20.5                                                     | 4.4                    | 17.4                                              | 3.0                           | 4.5                            | 19.0                         | 14.3             | 4.3  | 4.3        |
| 유형                                 |                  |                                         |                                                          |                        |                                                   |                               |                                |                              |                  |      |            |
| 공공기관                               | 35.0             | 12.1                                    | 29.2                                                     | 5.3                    | 26.2                                              | 4.0                           | 3.4                            | 29.0                         | 16.1             | 3.3  | -          |
| 민간사업체                              | 48.7             | 5.1                                     | 16.9                                                     | 4.0                    | 13.7                                              | 2.5                           | 5.0                            | 14.8                         | 13.5             | 4.8  | 6.0        |
| 성별                                 |                  |                                         |                                                          |                        |                                                   |                               |                                |                              |                  |      |            |
| 남성                                 | 56.8             | 3.9                                     | 13.3                                                     | 2.7                    | 8.9                                               | 3.5                           | 5.4                            | 13.4                         | 9.3              | 7.2  | 0.7        |
| 여성                                 | 32.7             | 10.4                                    | 27.6                                                     | 6.1                    | 25.8                                              | 2.5                           | 3.7                            | 24.4                         | 19.3             | 1.4  | 7.8        |
| 연령                                 |                  |                                         |                                                          |                        |                                                   |                               |                                |                              |                  |      |            |
| 20대 이하                             | 31.5             | 5.4                                     | 28.5                                                     | 11.7                   | 27.6                                              | 4.7                           | 2.6                            | 23.8                         | 16.2             | 0.4  | 3.3        |
| 30대                                | 48.2             | 6.3                                     | 18.7                                                     | 3.3                    | 15.4                                              | 3.5                           | 8.2                            | 15.3                         | 13.3             | 5.2  | 2.7        |
| 40대                                | 56.7             | 4.0                                     | 8.0                                                      | 2.3                    | 4.2                                               | 0.9                           | 2.4                            | 11.8                         | 11.0             | 7.3  | 10.2       |
| 50대 이상                             | 38.5             | 10.4                                    | 27.2                                                     | 4.4                    | 24.0                                              | 3.2                           | 3.5                            | 24.9                         | 16.6             | 3.0  | 2.1        |
| 직급                                 |                  |                                         |                                                          |                        |                                                   |                               |                                |                              |                  |      |            |
| 관리직                                | 54.6             | 4.2                                     | 10.7                                                     | 1.3                    | 5.9                                               | 1.8                           | 3.8                            | 13.2                         | 13.6             | 9.4  | 6.7        |
| 일반직                                | 40.6             | 8.3                                     | 24.4                                                     | 5.7                    | 21.9                                              | 3.4                           | 4.8                            | 21.3                         | 14.6             | 2.4  | 3.3        |
| 모름/무응답                             | 86.1             | -                                       | 1.6                                                      | -                      | 12.3                                              | -                             | -                              | 12.3                         | -                | -    | -          |
| 고용형태                               |                  |                                         |                                                          |                        |                                                   |                               |                                |                              |                  |      |            |
| 정규직                                | 45.2             | 7.1                                     | 19.6                                                     | 4.4                    | 16.5                                              | 3.0                           | 5.0                            | 18.8                         | 14.2             | 4.5  | 3.9        |
| 비정규직                               | 39.8             | 8.1                                     | 28.0                                                     | 5.1                    | 24.7                                              | 2.7                           | 1.0                            | 19.9                         | 15.2             | 3.0  | 7.3        |
| 모름/무응답                             | 75.7             | -                                       | 13.5                                                     | -                      | 10.8                                              | -                             | -                              | 24.3                         | -                | -    | -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                  |      |            |
| 국가기관                               | 34.3             | 8.1                                     | 27.9                                                     | 4.4                    | 17.7                                              | 3.4                           | 2.0                            | 32.8                         | 12.9             | 5.7  | -          |
| 지방자치단체                             | 35.9             | 13.1                                    | 29.8                                                     | 5.1                    | 26.2                                              | 4.4                           | 1.8                            | 25.8                         | 20.3             | 2.2  | -          |
| 초/중/고                              | 24.0             | 11.4                                    | 33.5                                                     | 9.4                    | 39.9                                              | 5.6                           | 10.6                           | 37.2                         | 20.7             | 3.2  | -          |
| 대학                                 | 45.9             | 17.8                                    | 26.1                                                     | 3.1                    | 26.0                                              | 2.7                           | 0.7                            | 19.4                         | 10.2             | 1.1  | -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                  |      |            |
| 제조업                                | 58.0             | 4.4                                     | 7.4                                                      | 5.2                    | 15.1                                              | 1.8                           | 9.1                            | 11.7                         | 9.7              | 9.1  | 3.4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30.6             | 3.5                                     | 28.8                                                     | 7.9                    | 10.9                                              | 14.6                          | 3.6                            | 10.9                         | 10.1             | 11.5 | 0.4        |
| 개인서비스업                             | 31.2             | 7.1                                     | 22.6                                                     | 3.3                    | 6.0                                               | 8.3                           | -                              | 17.4                         | 11.8             | -    | 24.5       |
| 유통서비스업                             | 52.4             | 6.4                                     | 14.6                                                     | 1.4                    | 9.8                                               | 3.3                           | 4.2                            | 14.9                         | 17.4             | -    | 2.7        |
| 사업서비스업                             | 51.1             | 1.7                                     | 28.9                                                     | 1.8                    | 13.3                                              | -                             | 5.8                            | 17.6                         | 13.7             | 0.2  | 3.2        |
| 사회서비스업                             | 40.3             | 7.3                                     | 20.9                                                     | 4.4                    | 16.9                                              | 0.1                           | 0.5                            | 18.0                         | 18.6             | 3.3  | 9.7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                  |      |            |
| 30~99인                             | 49.0             | 5.2                                     | 17.0                                                     | 4.0                    | 12.4                                              | 4.8                           | 2.6                            | 15.0                         | 10.7             | 6.0  | 7.9        |
| 100~299인                           | 38.3             | 6.9                                     | 23.3                                                     | 8.2                    | 15.1                                              | 0.6                           | 2.8                            | 19.8                         | 18.7             | -    | 7.7        |
| 300~499인                           | 40.1             | 1.9                                     | 28.9                                                     | 1.0                    | 15.4                                              | 4.7                           | 7.2                            | 11.6                         | 15.1             | 7.5  | 4.2        |
| 500인 이상                            | 59.7             | 4.1                                     | 8.2                                                      | 1.1                    | 13.6                                              | 1.2                           | 9.3                            | 10.8                         | 11.9             | 7.0  | 2.8        |

주: 1) 백분율은 1,125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성희롱 사건의 영향 정도는 복수응답 분석을 실시함.

#### 4) 2차 피해 목격 경험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조력자, 피해신고자 포함) 등이 성희롱 사건처리 및 회복의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 및 손상, 불이익 등 2차 피해에 해당되는 20개 문항 중 어느 하나에라도 놓여 있는 것을 목격하거나 전해들은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는데, 27.6%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공공기관은 32.0%, 민간사업체는 25.8%로 공공기관에서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 31.8%, 남성 23.3%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에서 31.1%로 가장 높았고, 정규직(28.3%), 초/중/고(45.4%), 사업서비스업(36.7%), 100~299인(33.2%)에서 2차 피해를 목격하거나 전해들은 경험이 높았다.

20개 문항 중 가장 많이 목격하거나 전해들은 건 '주변에 성희롱 피해를 말했을 때 공감이나 지지받지 못하고 의심 또는 참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로 15.5%였다. 그다음은 '피해자에 대해 악의적인 소문이 유포되었다'(10.3%), '행위자에게 책임을 가볍게 묻고 사건을 종료했다'(7.8%), '피해자의 평판, 인적 정보, 고충(피해) 내용 등이 온/오프라인 상으로 유포되었다'(6.4%), '비밀보장에 소홀하거나 일부러 공개하여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었다'(5.0%), '부당한 처우에 대한 암시,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발언 등으로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했다'(4.6%), '조사과정에서 행위자 편을 들거나 불공하게 진행하였다'(4.5%) 순이었다.

소속기관 유형이나 성별에서 대체로 전체 응답과 동일한 경향을 보였는데, 민간사업체보다 공공기관에서, 남성보다 여성에서 2차 피해 목격 경험률이 높았다.

〈표 Ⅲ-32〉 2차 피해 목격 경험 여부

(단위: %)

| 구분                                 | 있다   | 없다    | 모름/무응답 | 계     |
|------------------------------------|------|-------|--------|-------|
| <b>전 체</b>                         | 27.6 | 69.5  | 2.9    | 100.0 |
| <b>유형</b>                          |      |       |        |       |
| 공공기관                               | 32.0 | 68.0  | -      | 100.0 |
| 민간사업체                              | 25.8 | 70.2  | 4.1    | 100.0 |
| <b>성별</b>                          |      |       |        |       |
| 남성                                 | 23.3 | 76.5  | 0.2    | 100.0 |
| 여성                                 | 31.8 | 62.7  | 5.5    | 100.0 |
| <b>연령</b>                          |      |       |        |       |
| 20대 이하                             | 31.1 | 67.4  | 1.5    | 100.0 |
| 30대                                | 29.4 | 67.6  | 3.0    | 100.0 |
| 40대                                | 20.0 | 75.4  | 4.6    | 100.0 |
| 50대 이상                             | 29.7 | 68.2  | 2.1    | 100.0 |
| <b>직급</b>                          |      |       |        |       |
| 관리직                                | 21.7 | 75.7  | 2.6    | 100.0 |
| 일반직                                | 30.0 | 67.0  | 3.0    | 100.0 |
| 모름/무응답                             | -    | 100.0 | -      | 100.0 |
| <b>고용형태</b>                        |      |       |        |       |
| 정규직                                | 28.3 | 69.4  | 2.3    | 100.0 |
| 비정규직                               | 22.1 | 70.3  | 7.6    | 100.0 |
| 모름/무응답                             | 13.5 | 86.5  | -      | 100.0 |
| <b>공공기관 유형</b>                     |      |       |        |       |
| 국가기관                               | 30.0 | 70.0  | -      | 100.0 |
| 지방자치단체                             | 34.8 | 65.2  | -      | 100.0 |
| 초/중/고                              | 45.4 | 54.6  | -      | 100.0 |
| 대학                                 | 17.2 | 82.8  | -      | 100.0 |
| <b>민간사업체 업종</b>                    |      |       |        |       |
| 제조업                                | 27.8 | 68.9  | 3.3    | 100.0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34.9 | 64.8  | 0.4    | 100.0 |
| 개인서비스업                             | 19.3 | 77.4  | 3.3    | 100.0 |
| 유통서비스업                             | 16.0 | 82.4  | 1.6    | 100.0 |
| 사업서비스업                             | 36.7 | 62.5  | 0.8    | 100.0 |
| 사회서비스업                             | 21.2 | 69.1  | 9.7    | 100.0 |
| <b>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b>                |      |       |        |       |
| 30~99인                             | 24.2 | 72.7  | 3.1    | 100.0 |
| 100~299인                           | 33.2 | 59.5  | 7.2    | 100.0 |
| 300~499인                           | 26.4 | 68.3  | 5.3    | 100.0 |
| 500인 이상                            | 20.7 | 77.2  | 2.1    | 100.0 |

주: 백분율은 1,125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표 III-33〉 2차 피해 유형별 목격 경험 - 계속

(단위: %)

| 구분                             | 피해자가 주변에 성희롱 피해를 말했을 때 공감이나 지지받지 못하고 의심 또는 참으라는 얘기를 들었다 | 피해자에 대해 악의적인 소문이 유포되었다 | 피해자의 평판, 인적 정보, 고충 (피해) 내용 등이 온/오프라인 상으로 유포되었다 | 피해자에게 폭언, 폭행을 했다 | 피해자에게 과도한 업무를 주거나 업무 분장 외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등 업무적으로 괴롭혔다 | 부당한 처우에 대한 암시,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발언 등으로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했다 | 조사 과정에서 행위자 편을 들거나 불공정하게 진행하였다 |
|--------------------------------|---------------------------------------------------------|------------------------|------------------------------------------------|------------------|----------------------------------------------------|-------------------------------------------------|--------------------------------|
| 전 체                            | 15.5                                                    | 10.3                   | 6.4                                            | 2.3              | 3.5                                                | 4.6                                             | 4.5                            |
| 유형                             |                                                         |                        |                                                |                  |                                                    |                                                 |                                |
| 공공기관                           | 21.8                                                    | 13.5                   | 10.8                                           | 3.0              | 5.2                                                | 7.9                                             | 7.1                            |
| 민간사업체                          | 12.9                                                    | 9.0                    | 4.6                                            | 2.0              | 2.8                                                | 3.2                                             | 3.4                            |
| 성별                             |                                                         |                        |                                                |                  |                                                    |                                                 |                                |
| 남성                             | 11.7                                                    | 8.8                    | 4.5                                            | 1.6              | 2.5                                                | 3.4                                             | 4.9                            |
| 여성                             | 19.3                                                    | 11.8                   | 8.3                                            | 3.0              | 4.5                                                | 5.9                                             | 4.2                            |
| 연령                             |                                                         |                        |                                                |                  |                                                    |                                                 |                                |
| 20대 이하                         | 12.1                                                    | 5.8                    | 4.9                                            | 1.6              | 3.2                                                | 3.5                                             | 7.5                            |
| 30대                            | 17.8                                                    | 11.2                   | 4.0                                            | 3.1              | 1.4                                                | 2.0                                             | 1.7                            |
| 40대                            | 8.3                                                     | 6.1                    | 3.8                                            | 1.4              | 4.4                                                | 3.4                                             | 4.6                            |
| 50대 이상                         | 19.2                                                    | 13.6                   | 10.5                                           | 2.5              | 4.8                                                | 7.9                                             | 5.8                            |
| 직급                             |                                                         |                        |                                                |                  |                                                    |                                                 |                                |
| 관리직                            | 11.2                                                    | 8.1                    | 4.4                                            | 0.3              | 2.1                                                | 3.8                                             | 3.9                            |
| 일반직                            | 17.3                                                    | 11.2                   | 7.2                                            | 3.1              | 4.1                                                | 5.0                                             | 4.8                            |
| 모름/무응답                         | -                                                       | -                      | -                                              | -                | -                                                  | -                                               | -                              |
| 고용형태                           |                                                         |                        |                                                |                  |                                                    |                                                 |                                |
| 정규직                            | 16.3                                                    | 11.2                   | 6.8                                            | 2.3              | 3.8                                                | 4.9                                             | 4.8                            |
| 비정규직                           | 9.7                                                     | 3.2                    | 3.0                                            | 2.4              | 1.6                                                | 2.4                                             | 2.2                            |
| 모름/무응답                         | -                                                       | -                      | -                                              | -                | -                                                  | -                                               | -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 국가기관                           | 20.4                                                    | 14.5                   | 14.3                                           | 4.6              | 9.3                                                | 14.1                                            | 11.0                           |
| 지방자치단체                         | 24.9                                                    | 14.1                   | 14.4                                           | 3.0              | 4.1                                                | 5.5                                             | 8.5                            |
| 초/중/고                          | 31.1                                                    | 13.5                   | 5.6                                            | 3.5              | 4.1                                                | 8.2                                             | 4.1                            |
| 대학                             | 9.6                                                     | 10.9                   | 4.9                                            | 0.1              | 1.5                                                | 1.6                                             | 1.8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 제조업                            | 12.0                                                    | 14.5                   | 3.6                                            | 2.0              | 4.3                                                | 1.4                                             | 3.7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18.7                                                    | 7.5                    | 5.8                                            | 6.4              | 0.4                                                | 0.7                                             | 1.9                            |
| 개인서비스업                         | 11.3                                                    | 1.6                    | 1.6                                            | 3.7              | -                                                  | 6.7                                             | 1.8                            |
| 유통서비스업                         | 7.8                                                     | 5.2                    | 6.2                                            | 0.0              | 3.0                                                | 4.2                                             | 2.4                            |
| 사업서비스업                         | 18.7                                                    | 7.0                    | 7.0                                            | -                | 0.3                                                | 7.4                                             | 8.0                            |
| 사회서비스업                         | 12.7                                                    | 6.2                    | 4.3                                            | 2.8              | 3.3                                                | 2.6                                             | 1.6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 30~99인                         | 12.5                                                    | 4.8                    | 2.1                                            | 2.7              | 4.3                                                | 3.9                                             | 2.5                            |
| 100~299인                       | 13.4                                                    | 8.9                    | 5.6                                            | 3.0              | 4.4                                                | 3.1                                             | 6.0                            |
| 300~499인                       | 10.5                                                    | 7.9                    | 15.9                                           | 2.5              | 0.9                                                | 7.4                                             | 8.7                            |
| 500인 이상                        | 13.5                                                    | 14.1                   | 3.8                                            | 0.1              | 0.1                                                | 1.6                                             | 1.0                            |

〈표 Ⅲ-33〉 2차 피해 유형별 목격 경험 - 계속

(단위: %)

| 구분                                 | 합리적인<br>이유 없이<br>조사 진행 등<br>사건처리<br>과정을<br>지연했다 | 비밀보장에<br>소홀하거나<br>일부러<br>공개하여<br>피해자의<br>신상이<br>공개되었다 | 피해자의<br>의사에<br>반하여<br>행위자와의<br>합의를<br>강요하였다 | 행위자에게<br>책임을<br>가볍게<br>묻고<br>사건을<br>종료했다 | 행위자를<br>옹호하고<br>피해자를<br>비난하거나<br>피해자에게<br>책임을<br>전가하였다 | 다른 유사<br>사건이<br>생길 때마다<br>계속<br>피해자를<br>거론하였다 | 피해자에게<br>퇴사를<br>유도,<br>강요하였다 |
|------------------------------------|-------------------------------------------------|-------------------------------------------------------|---------------------------------------------|------------------------------------------|--------------------------------------------------------|-----------------------------------------------|------------------------------|
| 전 체                                | 3.1                                             | 5.0                                                   | 3.7                                         | 7.8                                      | 4.0                                                    | 3.7                                           | 1.7                          |
| 유형                                 |                                                 |                                                       |                                             |                                          |                                                        |                                               |                              |
| 공공기관                               | 4.6                                             | 6.7                                                   | 5.3                                         | 11.7                                     | 7.5                                                    | 4.5                                           | 1.0                          |
| 민간사업체                              | 2.6                                             | 4.3                                                   | 3.1                                         | 6.1                                      | 2.6                                                    | 3.3                                           | 2.0                          |
| 성별                                 |                                                 |                                                       |                                             |                                          |                                                        |                                               |                              |
| 남성                                 | 3.0                                             | 2.6                                                   | 2.6                                         | 5.7                                      | 3.6                                                    | 2.8                                           | 1.2                          |
| 여성                                 | 3.3                                             | 7.4                                                   | 4.9                                         | 9.8                                      | 4.5                                                    | 4.5                                           | 2.2                          |
| 연령                                 |                                                 |                                                       |                                             |                                          |                                                        |                                               |                              |
| 20대 이하                             | 5.7                                             | 9.1                                                   | 5.0                                         | 4.0                                      | 7.0                                                    | 2.2                                           | 1.5                          |
| 30대                                | 2.3                                             | 4.5                                                   | 3.3                                         | 8.6                                      | 1.4                                                    | 3.9                                           | 1.7                          |
| 40대                                | 2.2                                             | 0.8                                                   | 2.8                                         | 1.9                                      | 1.2                                                    | 4.2                                           | 2.5                          |
| 50대 이상                             | 3.7                                             | 6.7                                                   | 4.2                                         | 11.8                                     | 7.0                                                    | 3.6                                           | 1.3                          |
| 직급                                 |                                                 |                                                       |                                             |                                          |                                                        |                                               |                              |
| 관리직                                | 1.8                                             | 0.7                                                   | 1.9                                         | 5.2                                      | 2.4                                                    | 3.2                                           | 1.2                          |
| 일반직                                | 3.7                                             | 6.7                                                   | 4.5                                         | 8.8                                      | 4.7                                                    | 3.9                                           | 1.9                          |
| 모름/무응답                             | -                                               | -                                                     | -                                           | -                                        | -                                                      | -                                             | -                            |
| 고용형태                               |                                                 |                                                       |                                             |                                          |                                                        |                                               |                              |
| 정규직                                | 3.0                                             | 5.3                                                   | 3.8                                         | 7.6                                      | 4.2                                                    | 3.9                                           | 1.7                          |
| 비정규직                               | 4.5                                             | 2.5                                                   | 2.8                                         | 9.2                                      | 2.3                                                    | 1.2                                           | 1.8                          |
| 모름/무응답                             | -                                               | -                                                     | 13.5                                        | 13.5                                     | -                                                      | 13.5                                          | 13.5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 국가기관                               | 3.7                                             | 8.6                                                   | 6.3                                         | 15.5                                     | 8.0                                                    | 6.3                                           | 0.8                          |
| 지방자치단체                             | 4.2                                             | 6.3                                                   | 6.6                                         | 8.7                                      | 6.6                                                    | 5.6                                           | 0.6                          |
| 초/중/고                              | 10.3                                            | 5.7                                                   | 1.2                                         | 15.7                                     | 10.5                                                   | 3.4                                           | 1.4                          |
| 대학                                 | 0.8                                             | 5.3                                                   | 5.5                                         | 6.4                                      | 5.1                                                    | 0.8                                           | 1.6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 제조업                                | 2.9                                             | 5.2                                                   | 2.0                                         | 5.5                                      | 3.3                                                    | 1.5                                           | 1.6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1.7                                             | 0.5                                                   | 12.7                                        | 1.8                                      | 1.9                                                    | 7.1                                           | 2.6                          |
| 개인서비스업                             | 5.7                                             | 2.9                                                   | 1.5                                         | 5.0                                      | 5.3                                                    | 6.1                                           | 5.9                          |
| 유통서비스업                             | 0.0                                             | 2.0                                                   | 2.0                                         | 3.3                                      | 0.0                                                    | 2.8                                           | 2.4                          |
| 사업서비스업                             | 0.3                                             | 3.2                                                   | 3.5                                         | 15.0                                     | 3.8                                                    | 3.4                                           | -                            |
| 사회서비스업                             | 4.2                                             | 6.1                                                   | 3.3                                         | 4.6                                      | 1.6                                                    | 4.7                                           | 2.4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 30~99인                             | 2.7                                             | 3.1                                                   | 5.3                                         | 3.8                                      | 1.6                                                    | 5.0                                           | 2.0                          |
| 100~299인                           | 4.3                                             | 7.2                                                   | 2.5                                         | 12.2                                     | 6.8                                                    | 3.1                                           | 4.0                          |
| 300~499인                           | 1.5                                             | 0.4                                                   | 1.2                                         | 4.3                                      | 0.8                                                    | 7.1                                           | 0.8                          |
| 500인 이상                            | 1.1                                             | 4.0                                                   | 1.5                                         | 3.7                                      | 0.4                                                    | 0.7                                           | 0.5                          |

〈표 III-33〉 2차 피해 유형별 목격 경험

(단위: %)

| 구분                                 | 피해자가<br>파면, 해임,<br>해고 그밖에<br>신분상실에<br>해당하는<br>불이익을<br>당했다 | 피해자가<br>징계, 정직,<br>감봉, 강등,<br>승진 제한 등<br>부당한<br>인사 조치를<br>당했다 | 피해자에게<br>직무배제,<br>미부여,<br>재배치,<br>그 밖에<br>원치 않는<br>인사 조치를<br>했다 | 피해자에게<br>성과평가<br>또는<br>동료평가<br>등에서<br>차별이나<br>그에 따른<br>임금 또는<br>상여금 등이<br>차별적으로<br>지급되었다 | 기관에서<br>피해자를<br>상대로 집단<br>따돌림, 폭행<br>또는 폭언 등<br>정서적·신체적<br>손상을 가져<br>오는 행위를<br>하거나 그<br>행위의 발생을<br>방치하였다 | 피해자에게<br>직업능력 및<br>향상을 위한<br>교육훈련<br>기회가<br>제한되었다 | 하나라도<br>응답한<br>비율 |
|------------------------------------|-----------------------------------------------------------|---------------------------------------------------------------|-----------------------------------------------------------------|------------------------------------------------------------------------------------------|----------------------------------------------------------------------------------------------------------|---------------------------------------------------|-------------------|
| 전 체                                | 1.4                                                       | 1.5                                                           | 1.8                                                             | 1.0                                                                                      | 1.7                                                                                                      | 1.9                                               | 27.6              |
| 유형                                 |                                                           |                                                               |                                                                 |                                                                                          |                                                                                                          |                                                   |                   |
| 공공기관                               | 1.3                                                       | 1.9                                                           | 2.7                                                             | 1.9                                                                                      | 2.7                                                                                                      | 1.6                                               | 32.0              |
| 민간사업체                              | 1.5                                                       | 1.4                                                           | 1.4                                                             | 0.6                                                                                      | 1.3                                                                                                      | 2.0                                               | 25.8              |
| 성별                                 |                                                           |                                                               |                                                                 |                                                                                          |                                                                                                          |                                                   |                   |
| 남성                                 | 2.0                                                       | 1.3                                                           | 0.9                                                             | 0.8                                                                                      | 1.5                                                                                                      | 2.8                                               | 23.3              |
| 여성                                 | 0.9                                                       | 1.8                                                           | 2.6                                                             | 1.1                                                                                      | 1.9                                                                                                      | 1.0                                               | 31.8              |
| 연령                                 |                                                           |                                                               |                                                                 |                                                                                          |                                                                                                          |                                                   |                   |
| 20대 이하                             | 6.7                                                       | 0.5                                                           | 3.1                                                             | 0.1                                                                                      | 0.1                                                                                                      | 5.8                                               | 31.1              |
| 30대                                | 0.5                                                       | 0.8                                                           | 0.8                                                             | 0.3                                                                                      | 0.7                                                                                                      | 0.5                                               | 29.4              |
| 40대                                | 0.6                                                       | 2.2                                                           | 1.8                                                             | 0.6                                                                                      | 2.2                                                                                                      | 2.0                                               | 20.0              |
| 50대 이상                             | 1.0                                                       | 2.1                                                           | 2.1                                                             | 2.0                                                                                      | 2.7                                                                                                      | 1.8                                               | 29.7              |
| 직급                                 |                                                           |                                                               |                                                                 |                                                                                          |                                                                                                          |                                                   |                   |
| 관리직                                | 0.1                                                       | 1.3                                                           | 0.9                                                             | 0.0                                                                                      | 1.3                                                                                                      | 0.8                                               | 21.7              |
| 일반직                                | 2.0                                                       | 1.7                                                           | 2.1                                                             | 1.3                                                                                      | 1.9                                                                                                      | 2.4                                               | 30.0              |
| 모름/무응답                             | -                                                         | -                                                             | -                                                               | -                                                                                        | -                                                                                                        | -                                                 | -                 |
| 고용형태                               |                                                           |                                                               |                                                                 |                                                                                          |                                                                                                          |                                                   |                   |
| 정규직                                | 1.5                                                       | 1.7                                                           | 1.9                                                             | 1.0                                                                                      | 1.8                                                                                                      | 2.1                                               | 28.3              |
| 비정규직                               | 0.8                                                       | 0.0                                                           | 0.4                                                             | 1.1                                                                                      | 1.1                                                                                                      | 0.5                                               | 22.1              |
| 모름/무응답                             | -                                                         | -                                                             | -                                                               | -                                                                                        | -                                                                                                        | -                                                 | 13.5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 국가기관                               | 2.9                                                       | 2.9                                                           | 4.4                                                             | 3.2                                                                                      | 3.2                                                                                                      | 2.4                                               | 30.0              |
| 지방자치단체                             | 0.2                                                       | 3.3                                                           | 3.6                                                             | 1.7                                                                                      | 4.5                                                                                                      | 2.1                                               | 34.8              |
| 초/중/고                              | 1.4                                                       | -                                                             | 0.4                                                             | 1.4                                                                                      | 1.4                                                                                                      | 1.2                                               | 45.4              |
| 대학                                 | 0.1                                                       | 0.1                                                           | 0.7                                                             | 0.6                                                                                      | 0.6                                                                                                      | -                                                 | 17.2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 제조업                                | 3.0                                                       | 0.7                                                           | 1.3                                                             | 0.0                                                                                      | 0.2                                                                                                      | 2.6                                               | 27.8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                                                         | -                                                             | 3.6                                                             | -                                                                                        | -                                                                                                        | 2.6                                               | 34.9              |
| 개인서비스업                             | 0.6                                                       | 0.4                                                           | 0.4                                                             | -                                                                                        | -                                                                                                        | -                                                 | 19.3              |
| 유통서비스업                             | -                                                         | 0.4                                                           | 1.1                                                             | -                                                                                        | 0.5                                                                                                      | 2.4                                               | 16.0              |
| 사업서비스업                             | -                                                         | 3.3                                                           | 0.3                                                             | -                                                                                        | 3.3                                                                                                      | -                                                 | 36.7              |
| 사회서비스업                             | 1.6                                                       | 2.4                                                           | 2.0                                                             | 2.4                                                                                      | 2.8                                                                                                      | 2.6                                               | 21.2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 30~99인                             | 0.7                                                       | 1.8                                                           | 2.4                                                             | 1.3                                                                                      | 1.8                                                                                                      | 1.9                                               | 24.2              |
| 100~299인                           | 4.0                                                       | 0.4                                                           | 1.6                                                             | 0.4                                                                                      | 0.4                                                                                                      | 5.1                                               | 33.2              |
| 300~499인                           | -                                                         | 8.4                                                           | 1.0                                                             | -                                                                                        | 7.0                                                                                                      | -                                                 | 26.4              |
| 500인 이상                            | 0.5                                                       | 0.2                                                           | 0.2                                                             | 0.1                                                                                      | 0.1                                                                                                      | -                                                 | 20.7              |

주: 1) 백분율은 1,125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있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재구성함.

### 5) 2차 피해 목격 경험의 영향

2차 피해에 해당되는 20개 문항 중 어느 하나에라도 놓여 있는 것을 목격하거나 전해들은 경험이 있는 경우 2차 피해 목격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특별한 영향이 없었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19.2%로, 이는 10명 중 8명은 영향을 받았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공공기관은 13.8%, 민간사업체는 22.0%로 공공기관에서 ‘특별한 영향이 없었음’의 응답이 낮았고 이는 영향을 받았다는 경우가 공공기관에서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고(남성 19.3%, 여성 19.1%),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10.3%, 30대 11.0%, 40대 48.7%, 50대 이상 16.4%로, 30대 이하에서 특별한 영향이 없었다는 응답이 적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정규직에서, 대학에서,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100~299인 규모의 민간사업체에서 특별한 영향이 없었다는 응답이 적어서, 다른 집단에 비해 2차 피해 목격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차 피해 목격으로 받은 영향의 내용(복수응답)을 보면, ‘직장(내 성희롱 예방정책, 문화 등)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음’(46.0%), ‘직장동료들에게 실망감을 느낌’(37.4%), ‘직장을 떠나고 싶다고 느꼈음’(13.8%), ‘근로욕 저하 등 업무 집중도가 떨어짐’(13.6%) 순이었다. ‘피해자 옹호, 성희롱 방지 등을 위한 활동에 관심갖고 동참해야겠다고 생각함’이라는 응답은 18.3%였다.

소속기관 유형에서 보면, ‘직장(내 성희롱 예방정책, 문화 등)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음’의 응답이 절반 이상인 가운데, 공공기관의 경우 ‘직장 동료들에게 실망감을 느낌’(34.7%), ‘피해경험/발생시 공론화(신고)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함’(23.5%)의 응답이 많았다.

성별에서는 여성의 경우 ‘직장(내 성희롱 예방정책, 문화 등)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음’의 응답이 46.2%로 대략 절반 정도인 가운데, ‘피해경험/발생시 공론화(신고)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함’(19.9%)과 ‘직장을 떠나고 싶다고 느꼈음’(19.4%), ‘직장 동료들에게 실망감을 느낌’(39.9%) 등의 응답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에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정책, 문화 등)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음’의 응답이 60%를 상회하는 가운데, 이직의사(11.7%)나 신고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10.7%)보다는 ‘직장내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생김’(26.2%), ‘직장 동료들에게 실망감을 느낌’(25.7%), ‘근로욕 저하 등 업무집중도가 떨어짐’(26.1%) 등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을 느끼는 경향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30대에서는 ‘피해자 옹호, 성희롱



방지 등을 위한 활동에 관심 갖고 동참해야겠다고 생각함'이라는 응답이 34.4%였다.

공공기관 유형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정책, 문화 등)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음'의 응답이 많은 가운데(국가기관 69.2%, 초/중/고 60.4%, 지방자치단체 50.9%), 지방자치단체(30.3%)와 대학(41.9%)에서 '피해경험/발생시 공론화(신고)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함'의 응답이 전체 응답(12.6%)을 크게 상회하였다. 이외에도 대학에서는 '직장 동료들에게 실망감을 느꼈음'(65.4%)과 '근로의욕 저하 등 업무집중도가 떨어짐'(46.0%)의 응답이 많았다.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에서는, 30~99인에서 '직장을 떠나고 싶다고 느꼈음', 300~499인에서는 '직장내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생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Ⅲ-34〉 2차 피해 목적 경험의 영향(복수응답) - 계속

(단위: %)

| 구분                                 | 특별한<br>영향<br>없었음 | 피해 경험/<br>발생 시 공론화<br>(신고 등)하면<br>안 되겠다고<br>생각함 | 직장(내 성희롱<br>예방정책,<br>문화 등)에<br>대한 실망감을<br>느꼈음 | 직장을<br>떠나고<br>싶다고<br>느꼈음<br>(이직의사) | 직장 내<br>대인관계에<br>어려움이<br>생김 |
|------------------------------------|------------------|-------------------------------------------------|-----------------------------------------------|------------------------------------|-----------------------------|
| 전 체                                | 19.2             | 12.6                                            | 46.0                                          | 13.8                               | 11.2                        |
| 유형                                 |                  |                                                 |                                               |                                    |                             |
| 공공기관                               | 13.8             | 23.5                                            | 57.6                                          | 8.4                                | 11.3                        |
| 민간사업체                              | 22.0             | 7.1                                             | 40.0                                          | 16.5                               | 11.2                        |
| 성별                                 |                  |                                                 |                                               |                                    |                             |
| 남성                                 | 19.3             | 2.7                                             | 45.7                                          | 6.0                                | 13.2                        |
| 여성                                 | 19.1             | 19.9                                            | 46.2                                          | 19.4                               | 9.8                         |
| 연령                                 |                  |                                                 |                                               |                                    |                             |
| 20대 이하                             | 10.3             | 10.7                                            | 67.7                                          | 11.7                               | 26.2                        |
| 30대                                | 11.0             | 10.3                                            | 43.1                                          | 17.1                               | 4.6                         |
| 40대                                | 48.7             | 0.2                                             | 24.4                                          | 19.7                               | 8.7                         |
| 50대 이상                             | 16.4             | 20.4                                            | 50.1                                          | 9.2                                | 12.6                        |
| 직급                                 |                  |                                                 |                                               |                                    |                             |
| 관리직                                | 25.4             | 1.0                                             | 26.7                                          | 15.5                               | 14.2                        |
| 일반직                                | 17.4             | 16.0                                            | 51.4                                          | 13.3                               | 10.4                        |
| 모름/무응답                             | -                | -                                               | -                                             | -                                  | -                           |
| 고용형태                               |                  |                                                 |                                               |                                    |                             |
| 정규직                                | 17.9             | 12.7                                            | 45.9                                          | 13.8                               | 11.4                        |
| 비정규직                               | 33.8             | 10.7                                            | 46.9                                          | 11.4                               | 9.9                         |
| 모름/무응답                             | -                | 100.0                                           | -                                             | 100.0                              | -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국가기관                               | 13.6             | 15.6                                            | 69.2                                          | 7.3                                | 7.6                         |
| 지방자치단체                             | 13.0             | 30.3                                            | 50.9                                          | 6.5                                | 6.3                         |
| 초/중/고                              | 18.3             | 16.8                                            | 60.4                                          | 10.8                               | 21.0                        |
| 대학                                 | 4.4              | 41.9                                            | 38.4                                          | 11.2                               | 11.5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제조업                                | 23.7             | 4.4                                             | 35.5                                          | 8.1                                | 16.0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6.5              | 5.5                                             | 69.1                                          | 24.0                               | 16.7                        |
| 개인서비스업                             | 14.0             | 19.3                                            | 55.1                                          | 18.4                               | -                           |
| 유통서비스업                             | 28.0             | 14.8                                            | 33.8                                          | 23.9                               | 35.4                        |
| 사업서비스업                             | 22.4             | 3.2                                             | 34.4                                          | 13.6                               | 3.4                         |
| 사회서비스업                             | 23.9             | 10.5                                            | 41.9                                          | 30.2                               | 0.1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30~99인                             | 29.6             | 11.1                                            | 36.4                                          | 31.5                               | 5.8                         |
| 100~299인                           | 13.8             | 4.7                                             | 58.1                                          | 13.4                               | 17.8                        |
| 300~499인                           | 17.3             | 1.5                                             | 40.9                                          | 3.9                                | 40.4                        |
| 500인 이상                            | 24.9             | 6.7                                             | 18.5                                          | 4.4                                | 0.1                         |

〈표 III-34〉 2차 피해 목격 경험의 영향(복수응답)

(단위: %)

| 구분                                 | 직장<br>동료들에게<br>실망감을<br>느낌 | 근로의욕<br>저하 등<br>업무<br>집중도가<br>떨어짐 | 타인의<br>성희롱<br>피해에<br>대해<br>관심 갖지<br>않게 됨 | 피해자 옹호,<br>성희롱 방지<br>등을 위한<br>활동에<br>관심을 갖고<br>동참해야겠다고<br>생각함 | 기타  | 모름/<br>무응답 |
|------------------------------------|---------------------------|-----------------------------------|------------------------------------------|---------------------------------------------------------------|-----|------------|
| 전 체                                | 37.4                      | 13.6                              | 1.4                                      | 18.3                                                          | 0.6 | 0.2        |
| 유형                                 |                           |                                   |                                          |                                                               |     |            |
| 공공기관                               | 34.7                      | 14.3                              | 1.3                                      | 12.3                                                          | 1.6 | -          |
| 민간사업체                              | 38.8                      | 13.2                              | 1.5                                      | 21.3                                                          | -   | 0.3        |
| 성별                                 |                           |                                   |                                          |                                                               |     |            |
| 남성                                 | 34.1                      | 10.0                              | 0.9                                      | 21.8                                                          | -   | 0.1        |
| 여성                                 | 39.9                      | 16.1                              | 1.8                                      | 15.7                                                          | 1.0 | 0.3        |
| 연령                                 |                           |                                   |                                          |                                                               |     |            |
| 20대 이하                             | 25.7                      | 26.1                              | 2.9                                      | 9.2                                                           | -   | -          |
| 30대                                | 50.0                      | 8.3                               | 1.9                                      | 34.4                                                          | -   | 0.2        |
| 40대                                | 23.8                      | 10.3                              | 0.1                                      | 4.6                                                           | -   | 1.0        |
| 50대 이상                             | 36.9                      | 15.0                              | 1.1                                      | 14.1                                                          | 1.4 | -          |
| 직급                                 |                           |                                   |                                          |                                                               |     |            |
| 관리직                                | 43.3                      | 13.5                              | 0.2                                      | 16.3                                                          | -   | 0.8        |
| 일반직                                | 35.7                      | 13.6                              | 1.8                                      | 18.8                                                          | 0.7 | 0.1        |
| 모름/무응답                             | -                         | -                                 | -                                        | -                                                             | -   | -          |
| 고용형태                               |                           |                                   |                                          |                                                               |     |            |
| 정규직                                | 39.3                      | 14.0                              | 1.1                                      | 19.1                                                          | 0.6 | 0.2        |
| 비정규직                               | 17.8                      | 8.7                               | 4.7                                      | 9.6                                                           | -   | -          |
| 모름/무응답                             | -                         | -                                 | -                                        | -                                                             | -   | -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국가기관                               | 32.8                      | 13.5                              | 0.2                                      | 12.8                                                          | 0.5 | -          |
| 지방자치단체                             | 23.9                      | 10.9                              | 3.5                                      | 10.1                                                          | -   | -          |
| 초/중/고                              | 38.2                      | 7.3                               | -                                        | 14.5                                                          | 2.2 | -          |
| 대학                                 | 65.4                      | 46.0                              | 0.5                                      | 12.6                                                          | 8.5 | -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제조업                                | 47.0                      | 14.1                              | 2.3                                      | 32.4                                                          | -   | -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10.2                      | 4.4                               | 0.4                                      | 10.8                                                          | -   | -          |
| 개인서비스업                             | 50.6                      | 27.3                              | -                                        | -                                                             | -   | -          |
| 유통서비스업                             | 26.3                      | 26.9                              | -                                        | 3.5                                                           | -   | 1.7        |
| 사업서비스업                             | 43.0                      | 12.2                              | 2.8                                      | 15.2                                                          | -   | 0.5        |
| 사회서비스업                             | 31.3                      | 6.1                               | -                                        | 23.0                                                          | -   | 0.6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30~99인                             | 40.5                      | 13.4                              | 1.7                                      | 10.4                                                          | -   | 0.3        |
| 100~299인                           | 25.6                      | 16.3                              | 0.3                                      | 6.3                                                           | -   | -          |
| 300~499인                           | 38.8                      | 29.9                              | -                                        | 12.0                                                          | -   | 1.5        |
| 500인 이상                            | 55.4                      | 3.2                               | 3.3                                      | 60.6                                                          | -   | 0.6        |

주: 1) 백분율은 348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2차 피해 목격 경험으로 인한 영향은 복수응답 분석을 실시함.

### 6) 2차 피해의 발생 원인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피해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행동 등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직장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감수성이나 인식수준이 낮아서’라는 응답이 28.8%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구성원들이 2차 피해/가해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18.5%, ‘2차 피해/가해 방지에 대한 기관의 인식과 의지가 부족해서’ 17.1%, ‘2차 피해/가해에 대한 제제조치(규정 등)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16.3%, ‘직장내에서 가해자의 위치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14.6%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구성원과 기관의 직장내 성희롱 혹은 2차 피해에 대한 이해, 인식, 의지가 미흡하기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의 경우 ‘직장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감수성이나 인식수준이 낮아서’(32.8%), ‘구성원들이 2차 피해/가해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23.1%)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다. 기관의 인식이나 의지 부족, 기관내 2차 피해에 대한 규정 미흡 등 보다는 직장 구성원들의 감수성이나 인식수준 부족, 낮은 이해도 등을 2차 피해 발생의 원인으로 꼽았다. 반면 민간사업체도 ‘직장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감수성이나 인식수준이 낮아서’(28.0%)와 ‘구성원들이 2차 피해/가해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17.5%) 응답이 많았고, ‘2차 피해/가해 방지에 대한 기관의 인식과 의지가 부족해서’(17.9%)와 ‘2차 피해/가해에 대한 제제조치(규정 등)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17.0%)라는 응답이 공공기관보다 높았다. 이는 민간사업체는 전반적인 감수성이나 인식 수준과 함께, 기관 차원에서의 인식과 의지, 규정 등이 미흡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응답 차이가 거의 없어서 남녀 모두 전체 응답 경향과 유사했다. 연령 역시 모든 연령대에서 전체 응답 경향과 유사했는데, 20대 이하에서 ‘직장내에서 가해자의 위치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라는 응답(18.3%)이 전체 응답(14.6%)보다 다소 높았다.

〈표 III-35〉 2차 피해의 발생 원인

(단위: %)

| 구분                                 | 구성원들이<br>2차 피해/<br>가해에<br>대해 잘<br>알지<br>못해서 | 2차 피해/<br>가해<br>방지에<br>대한<br>기관의<br>인식과<br>의지가<br>부족해서 | 2차 피해/<br>가해에<br>대한<br>제재조치<br>(규정 등)가<br>마련되어<br>있지<br>않아서 | 직장 내<br>성희롱<br>문제에<br>대한<br>감수성이나<br>인식수준이<br>낮아서 | 직장<br>내에서<br>가해자의<br>위치나<br>영향력이<br>크기<br>때문에 | 기타  | 모름/<br>무응답 | 계     |
|------------------------------------|---------------------------------------------|--------------------------------------------------------|-------------------------------------------------------------|---------------------------------------------------|-----------------------------------------------|-----|------------|-------|
| 전 체                                | 18.5                                        | 17.1                                                   | 16.3                                                        | 28.8                                              | 14.6                                          | 1.1 | 3.7        | 100.0 |
| 유형                                 |                                             |                                                        |                                                             |                                                   |                                               |     |            |       |
| 공공기관                               | 23.1                                        | 12.9                                                   | 12.8                                                        | 32.8                                              | 16.0                                          | 2.4 | -          | 100.0 |
| 민간사업체                              | 17.5                                        | 17.9                                                   | 17.0                                                        | 28.0                                              | 14.3                                          | 0.8 | 4.4        | 100.0 |
| 성별                                 |                                             |                                                        |                                                             |                                                   |                                               |     |            |       |
| 남성                                 | 19.2                                        | 17.0                                                   | 16.1                                                        | 29.1                                              | 13.9                                          | 1.3 | 3.4        | 100.0 |
| 여성                                 | 17.3                                        | 17.1                                                   | 16.7                                                        | 28.2                                              | 15.7                                          | 0.8 | 4.1        | 100.0 |
| 연령                                 |                                             |                                                        |                                                             |                                                   |                                               |     |            |       |
| 20대 이하                             | 17.5                                        | 17.5                                                   | 18.3                                                        | 25.4                                              | 18.3                                          | 0.7 | 2.3        | 100.0 |
| 30대                                | 17.4                                        | 17.4                                                   | 17.8                                                        | 27.8                                              | 14.5                                          | 0.8 | 4.4        | 100.0 |
| 40대                                | 16.7                                        | 19.4                                                   | 15.7                                                        | 29.2                                              | 13.8                                          | 0.8 | 4.3        | 100.0 |
| 50대 이상                             | 21.6                                        | 14.1                                                   | 14.9                                                        | 30.6                                              | 14.0                                          | 1.8 | 3.0        | 100.0 |
| 직급                                 |                                             |                                                        |                                                             |                                                   |                                               |     |            |       |
| 관리직                                | 18.6                                        | 16.9                                                   | 16.6                                                        | 30.0                                              | 13.8                                          | 0.8 | 3.2        | 100.0 |
| 일반직                                | 18.5                                        | 17.1                                                   | 16.2                                                        | 28.2                                              | 15.0                                          | 1.2 | 3.9        | 100.0 |
| 모름/무응답                             | 11.0                                        | 13.7                                                   | 13.8                                                        | 24.2                                              | 17.1                                          | 9.8 | 10.4       | 100.0 |
| 고용형태                               |                                             |                                                        |                                                             |                                                   |                                               |     |            |       |
| 정규직                                | 18.4                                        | 17.2                                                   | 16.3                                                        | 28.8                                              | 14.6                                          | 1.0 | 3.7        | 100.0 |
| 비정규직                               | 18.8                                        | 15.7                                                   | 16.2                                                        | 29.7                                              | 14.9                                          | 1.2 | 3.6        | 100.0 |
| 모름/무응답                             | 24.0                                        | 23.5                                                   | 15.8                                                        | 13.8                                              | 7.9                                           | 7.5 | 7.6        | 100.0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
| 국가기관                               | 26.3                                        | 12.3                                                   | 10.1                                                        | 30.4                                              | 15.9                                          | 5.1 | -          | 100.0 |
| 지방자치단체                             | 23.5                                        | 15.6                                                   | 11.6                                                        | 30.0                                              | 17.7                                          | 1.6 | -          | 100.0 |
| 초/중/고                              | 20.1                                        | 11.8                                                   | 16.6                                                        | 36.3                                              | 13.6                                          | 1.5 | -          | 100.0 |
| 대학                                 | 24.3                                        | 12.9                                                   | 10.1                                                        | 32.2                                              | 19.1                                          | 1.4 | -          | 100.0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
| 제조업                                | 16.9                                        | 19.1                                                   | 16.7                                                        | 26.1                                              | 16.2                                          | 0.8 | 4.2        | 100.0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20.7                                        | 12.9                                                   | 18.6                                                        | 31.5                                              | 11.3                                          | 0.8 | 4.1        | 100.0 |
| 개인서비스업                             | 18.9                                        | 17.1                                                   | 16.9                                                        | 25.9                                              | 15.5                                          | 0.9 | 4.8        | 100.0 |
| 유통서비스업                             | 18.1                                        | 18.8                                                   | 16.1                                                        | 30.0                                              | 11.7                                          | 0.1 | 5.2        | 100.0 |
| 사업서비스업                             | 16.7                                        | 19.4                                                   | 16.8                                                        | 28.6                                              | 14.2                                          | 1.2 | 3.2        | 100.0 |
| 사회서비스업                             | 16.7                                        | 16.5                                                   | 17.7                                                        | 27.7                                              | 14.4                                          | 0.9 | 6.2        | 100.0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
| 30~99인                             | 17.9                                        | 20.1                                                   | 16.6                                                        | 25.7                                              | 13.6                                          | 0.9 | 5.2        | 100.0 |
| 100~299인                           | 18.6                                        | 16.8                                                   | 17.0                                                        | 27.6                                              | 13.1                                          | 0.9 | 6.1        | 100.0 |
| 300~499인                           | 17.2                                        | 20.9                                                   | 19.1                                                        | 23.8                                              | 16.3                                          | 0.2 | 2.5        | 100.0 |
| 500인 이상                            | 15.9                                        | 14.9                                                   | 17.0                                                        | 33.0                                              | 15.8                                          | 0.9 | 2.4        | 100.0 |

주: 백분율은 15,073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 라.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 경험

### 1)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도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지난 1년간(2020.1.1.~2020.12.31.) 실시한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93.0%가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했다고 응답하였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공공기관은 97.3%, 민간사업체는 92.1%였다.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 모두 2018년(공공기관 96.6%, 민간사업체 90.0%)보다 소폭 상승하였다.

성별로는 남성 92.8%, 여성 93.2%였는데 2018년(남성 91.3%, 여성 90.6%)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89.0%, 30대 93.7%, 40대 93.5%, 50대 이상 93.4%로 20대 이하의 참여율이 낮았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 93.5%, 비정규직 89.0%여서, 20대 이하와 비정규직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에서는 30~99인 89.7%, 100~299인 92.1%, 300~499인 94.2%, 500인 이상 94.8%로, 규모가 작을수록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이 낮아서 종사자 규모가 작은 사업체의 성희롱 예방교육 운영 점검이 필요하다.

〈표 III-36〉 지난 1년간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 여부

(단위: %)

| 구분                                 | 예방교육을<br>받음 | 예방교육을<br>실시하였으나<br>받지 않음 | 예방교육을<br>실시하지 않음 | 모름/무응답 | 계     |
|------------------------------------|-------------|--------------------------|------------------|--------|-------|
| 전 체                                | 93.0        | 3.1                      | 3.1              | 0.8    | 100.0 |
| 유형                                 |             |                          |                  |        |       |
| 공공기관                               | 97.3        | 2.1                      | 0.6              | -      | 100.0 |
| 민간사업체                              | 92.1        | 3.3                      | 3.7              | 0.9    | 100.0 |
| 성별                                 |             |                          |                  |        |       |
| 남성                                 | 92.8        | 3.3                      | 3.2              | 0.7    | 100.0 |
| 여성                                 | 93.2        | 2.8                      | 3.1              | 0.9    | 100.0 |
| 연령                                 |             |                          |                  |        |       |
| 20대 이하                             | 89.0        | 5.8                      | 3.7              | 1.5    | 100.0 |
| 30대                                | 93.7        | 3.0                      | 2.9              | 0.5    | 100.0 |
| 40대                                | 93.5        | 2.5                      | 3.0              | 1.0    | 100.0 |
| 50대 이상                             | 93.4        | 2.7                      | 3.3              | 0.6    | 100.0 |
| 직급                                 |             |                          |                  |        |       |
| 관리직                                | 93.6        | 2.1                      | 3.6              | 0.6    | 100.0 |
| 일반직                                | 92.7        | 3.6                      | 2.9              | 0.8    | 100.0 |
| 모름/무응답                             | 88.6        | 3.8                      | 1.9              | 5.7    | 100.0 |
| 고용형태                               |             |                          |                  |        |       |
| 정규직                                | 93.5        | 2.9                      | 3.0              | 0.7    | 100.0 |
| 비정규직                               | 89.0        | 5.0                      | 4.7              | 1.3    | 100.0 |
| 모름/무응답                             | 87.1        | 4.4                      | 4.6              | 3.9    | 100.0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국가기관                               | 98.1        | 1.4                      | 0.5              | -      | 100.0 |
| 지방자치단체                             | 95.8        | 3.1                      | 1.1              | -      | 100.0 |
| 초/중/고                              | 98.7        | 0.8                      | 0.6              | -      | 100.0 |
| 대학                                 | 95.1        | 4.6                      | 0.3              | -      | 100.0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제조업                                | 92.7        | 3.2                      | 3.0              | 1.2    | 100.0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89.1        | 5.6                      | 4.7              | 0.6    | 100.0 |
| 개인서비스업                             | 90.3        | 3.6                      | 5.0              | 1.1    | 100.0 |
| 유통서비스업                             | 90.6        | 3.4                      | 5.0              | 1.0    | 100.0 |
| 사업서비스업                             | 93.6        | 2.7                      | 3.1              | 0.6    | 100.0 |
| 사회서비스업                             | 92.5        | 2.8                      | 3.6              | 1.1    | 100.0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30~99인                             | 89.7        | 3.1                      | 6.0              | 1.2    | 100.0 |
| 100~299인                           | 92.1        | 3.8                      | 3.3              | 0.8    | 100.0 |
| 300~499인                           | 94.2        | 3.0                      | 2.1              | 0.8    | 100.0 |
| 500인 이상                            | 94.8        | 3.1                      | 1.2              | 0.8    | 100.0 |

주: 백분율은 15,073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 2)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방식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 가장 최근에 받았던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 방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교육시간을 따로 지정해서 운영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2.6%였다. 2018년(84.1%)보다 다소 감소하였는데, 이는 ‘교육시간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자료를 배포하여 개인적으로 보게 함’의 응답이 14.2%로 2018년 6.2%보다 상승한 점도 함께 고려하면,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진행이 원활하기 어려웠던 점의 영향으로 보인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공공기관은 74.1%, 민간사업체는 72.3%가 ‘교육시간을 따로 지정해서 운영함’이라고 응답하였다.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에서는 30~99인 69.3%, 100~299인 68.7%, 300~499인 77.3%, 500인 이상 78.2%로, 300인 이하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교육시간을 따로 지정해 운영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적었다. 2018년 조사에서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중 30~99인에서 ‘교육시간을 따로 지정해서 운영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6.8%로 가장 낮았는데, 2021년 조사에서는 69.3%로 더 낮아졌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진행이 어렵게 된 상황의 영향이 규모가 작은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I-37〉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방식

(단위: %)

| 구분                             | 교육 시간을 따로 지정해서 예방교육을 진행함 | 교육 시간을 따로 지정해서 금융 및 보험 상품 등의 홍보와 함께 진행함 | 교육 시간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직원 조화나 회의 등에서 관련 내용을 간략히 언급함 | 교육 시간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자료를 배포하여 개인적으로 보게 함 | 기타   | 모름/무응답 | 계     |
|--------------------------------|--------------------------|-----------------------------------------|-------------------------------------------------|----------------------------------------|------|--------|-------|
| 전 체                            | 72.6                     | 3.7                                     | 5.9                                             | 14.2                                   | 2.7  | 0.9    | 100.0 |
| 유형                             |                          |                                         |                                                 |                                        |      |        |       |
| 공공기관                           | 74.1                     | 0.4                                     | 2.8                                             | 12.7                                   | 9.9  | -      | 100.0 |
| 민간사업체                          | 72.3                     | 4.5                                     | 6.5                                             | 14.5                                   | 1.2  | 1.1    | 100.0 |
| 성별                             |                          |                                         |                                                 |                                        |      |        |       |
| 남성                             | 72.8                     | 3.8                                     | 6.1                                             | 14.0                                   | 2.2  | 1.0    | 100.0 |
| 여성                             | 72.3                     | 3.7                                     | 5.5                                             | 14.4                                   | 3.6  | 0.6    | 100.0 |
| 연령                             |                          |                                         |                                                 |                                        |      |        |       |
| 20대 이하                         | 69.2                     | 6.2                                     | 5.8                                             | 16.6                                   | 2.0  | 0.2    | 100.0 |
| 30대                            | 71.3                     | 4.1                                     | 6.8                                             | 16.0                                   | 1.1  | 0.8    | 100.0 |
| 40대                            | 74.6                     | 4.2                                     | 6.6                                             | 12.2                                   | 1.2  | 1.2    | 100.0 |
| 50대 이상                         | 73.0                     | 2.1                                     | 4.3                                             | 13.6                                   | 6.1  | 0.9    | 100.0 |
| 직급                             |                          |                                         |                                                 |                                        |      |        |       |
| 관리직                            | 73.0                     | 5.1                                     | 6.3                                             | 13.0                                   | 1.5  | 1.2    | 100.0 |
| 일반직                            | 72.4                     | 3.0                                     | 5.7                                             | 14.8                                   | 3.4  | 0.7    | 100.0 |
| 모름/무응답                         | 67.2                     | 3.0                                     | 8.0                                             | 13.0                                   | 5.4  | 3.3    | 100.0 |
| 고용형태                           |                          |                                         |                                                 |                                        |      |        |       |
| 정규직                            | 73.6                     | 3.8                                     | 5.8                                             | 13.5                                   | 2.5  | 0.8    | 100.0 |
| 비정규직                           | 63.1                     | 3.4                                     | 6.2                                             | 21.0                                   | 5.2  | 1.1    | 100.0 |
| 모름/무응답                         | 75.1                     | 1.9                                     | 6.8                                             | 9.8                                    | 4.0  | 2.4    | 100.0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 국가기관                           | 73.7                     | 0.8                                     | 3.2                                             | 12.5                                   | 9.8  | -      | 100.0 |
| 지방자치단체                         | 78.0                     | 0.6                                     | 2.2                                             | 11.2                                   | 8.0  | -      | 100.0 |
| 초/중/고                          | 75.9                     | 0.1                                     | 3.9                                             | 10.3                                   | 9.8  | -      | 100.0 |
| 대학                             | 67.2                     | -                                       | 0.8                                             | 19.5                                   | 12.5 | -      | 100.0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 제조업                            | 71.5                     | 5.8                                     | 6.7                                             | 13.6                                   | 1.4  | 1.0    | 100.0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75.0                     | 5.6                                     | 6.4                                             | 11.1                                   | 0.5  | 1.4    | 100.0 |
| 개인서비스업                         | 63.2                     | 4.0                                     | 10.9                                            | 18.2                                   | 1.6  | 2.1    | 100.0 |
| 유통서비스업                         | 67.6                     | 5.5                                     | 6.2                                             | 18.0                                   | 1.0  | 1.8    | 100.0 |
| 사업서비스업                         | 74.2                     | 3.4                                     | 6.4                                             | 15.1                                   | 0.6  | 0.3    | 100.0 |
| 사회서비스업                         | 76.1                     | 2.7                                     | 4.9                                             | 12.9                                   | 2.1  | 1.2    | 100.0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 30~99인                         | 69.3                     | 5.1                                     | 8.9                                             | 14.5                                   | 1.0  | 1.2    | 100.0 |
| 100~299인                       | 68.7                     | 4.3                                     | 5.5                                             | 19.2                                   | 0.7  | 1.5    | 100.0 |
| 300~499인                       | 77.3                     | 4.5                                     | 6.5                                             | 9.2                                    | 1.7  | 0.8    | 100.0 |
| 500인 이상                        | 78.2                     | 3.7                                     | 4.4                                             | 11.5                                   | 1.8  | 0.5    | 100.0 |

주: 백분율은 13,888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 3)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교육시간을 따로 지정해 예방교육 내용으로만 진행한 경우 가장 최근에 받았던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복수응답)에 대해 조사하였다. ‘개인별 온라인 교육(e-learning 교육)’이 57.8%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대면방식의 집합교육(강사 진행)’ 22.8%, ‘비대면 방식의 쌍방향 실시간 온라인 교육’ 17.5%, ‘강의가 아닌 비디오시청 등의 시청각 교육’ 10.7% 순이었다. 2018년 조사에서 ‘집합교육’이 71.5%로 다수를 차지하고 ‘개인별 온라인 교육’이 17.3%였던 것과 달리, 2021년 조사에서는 ‘개인별 온라인 교육’이 크게 늘어났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 집합교육보다 ‘개인별 온라인 교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 모두 ‘개인별 온라인 교육’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그 응답률도 비슷했는데(공공기관 58.6%, 민간사업체 57.6%), 그 외 방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응답률이 조금 더 높았다. 특히 ‘비대면 방식의 쌍방향 실시간 온라인 교육’에서 공공기관은 28.4%, 민간사업체는 15.1%였다.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에서는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개인별 온라인 교육 비율은 낮고, 대면방식의 집합교육과 시청각 교육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30~99인의 경우 ‘개인별 온라인 교육’은 39.5%, ‘대면방식의 집합교육’ 27.1%, ‘강의가 아닌 비디오 시청 등의 시청각 교육’ 17.1%였다. 반면 500인 이상의 경우 ‘개인별 온라인 교육’은 79.0%, ‘대면방식의 집합교육’ 14.0%, ‘강의가 아닌 비디오 시청 등의 시청각 교육’ 3.1%였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프라가 갖춰진 대규모 사업체와 상대적으로 종사자 규모가 작은 사업체 간에 교육진행 방법에 차이가 있었다.

〈표 III-38〉 (교육시간을 따로 지정한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복수응답)

(단위: %)

| 구분                                 | 대면방식의<br>집합 교육<br>(강사 진행) | 대면방식의<br>세미나<br>혹은<br>워크숍 교육<br>(강사 진행) | 비대면<br>방식의<br>쌍방향<br>실시간<br>온라인 교육 | 개인별<br>온라인 교육<br>(e-learning<br>교육) | 강의가<br>아닌,<br>비디오<br>시청 등의<br>시청각 교육 | 기타  | 모름/<br>무응답 |
|------------------------------------|---------------------------|-----------------------------------------|------------------------------------|-------------------------------------|--------------------------------------|-----|------------|
| 전 체                                | 22.8                      | 3.5                                     | 17.5                               | 57.8                                | 10.7                                 | 0.6 | 1.7        |
| 유형                                 |                           |                                         |                                    |                                     |                                      |     |            |
| 공공기관                               | 29.5                      | 5.5                                     | 28.4                               | 58.6                                | 11.8                                 | 0.8 | -          |
| 민간사업체                              | 21.3                      | 3.0                                     | 15.1                               | 57.6                                | 10.5                                 | 0.5 | 2.1        |
| 성별                                 |                           |                                         |                                    |                                     |                                      |     |            |
| 남성                                 | 23.9                      | 3.2                                     | 16.7                               | 57.0                                | 11.0                                 | 0.5 | 2.0        |
| 여성                                 | 21.0                      | 3.9                                     | 18.9                               | 59.0                                | 10.2                                 | 0.6 | 1.3        |
| 연령                                 |                           |                                         |                                    |                                     |                                      |     |            |
| 20대 이하                             | 22.8                      | 4.7                                     | 9.7                                | 56.6                                | 12.3                                 | 0.7 | 1.7        |
| 30대                                | 17.6                      | 2.0                                     | 17.1                               | 62.1                                | 10.1                                 | 0.3 | 1.3        |
| 40대                                | 22.5                      | 3.4                                     | 13.7                               | 56.9                                | 9.8                                  | 0.6 | 3.0        |
| 50대 이상                             | 27.5                      | 4.4                                     | 24.7                               | 55.3                                | 11.8                                 | 0.7 | 0.8        |
| 직급                                 |                           |                                         |                                    |                                     |                                      |     |            |
| 관리직                                | 25.1                      | 3.0                                     | 16.5                               | 55.2                                | 10.1                                 | 0.5 | 2.8        |
| 일반직                                | 21.4                      | 3.8                                     | 17.9                               | 59.3                                | 11.1                                 | 0.6 | 1.2        |
| 모름/무응답                             | 32.5                      | -                                       | 37.1                               | 37.0                                | -                                    | -   | 2.1        |
| 고용형태                               |                           |                                         |                                    |                                     |                                      |     |            |
| 정규직                                | 23.1                      | 3.5                                     | 17.7                               | 57.8                                | 10.6                                 | 0.5 | 1.8        |
| 비정규직                               | 18.2                      | 2.8                                     | 14.4                               | 59.0                                | 12.9                                 | 0.9 | 0.9        |
| 모름/무응답                             | 26.9                      | 2.7                                     | 27.5                               | 48.9                                | 6.0                                  | -   | -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 국가기관                               | 29.4                      | 7.3                                     | 28.7                               | 62.1                                | 13.6                                 | 1.1 | -          |
| 지방자치단체                             | 23.0                      | 2.6                                     | 27.0                               | 66.3                                | 9.7                                  | 0.3 | -          |
| 초/중/고                              | 37.4                      | 7.6                                     | 30.3                               | 47.6                                | 11.7                                 | 1.2 | -          |
| 대학                                 | 19.4                      | 1.4                                     | 24.9                               | 69.3                                | 11.9                                 | 0.1 | -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 제조업                                | 32.4                      | 3.9                                     | 12.6                               | 40.1                                | 15.3                                 | 0.5 | 1.5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16.1                      | 3.0                                     | 10.8                               | 64.0                                | 8.5                                  | 0.4 | 3.1        |
| 개인서비스업                             | 16.8                      | 3.9                                     | 8.3                                | 62.6                                | 13.2                                 | 0.3 | 1.1        |
| 유통서비스업                             | 21.4                      | 2.6                                     | 12.5                               | 59.4                                | 11.8                                 | 1.6 | 2.5        |
| 사업서비스업                             | 14.6                      | 1.3                                     | 27.6                               | 69.3                                | 5.9                                  | 0.3 | 2.0        |
| 사회서비스업                             | 18.0                      | 3.8                                     | 8.5                                | 62.0                                | 8.8                                  | 0.3 | 2.7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 30~99인                             | 27.1                      | 4.3                                     | 14.8                               | 39.5                                | 17.1                                 | 0.7 | 2.7        |
| 100~299인                           | 22.3                      | 3.4                                     | 12.1                               | 57.4                                | 11.4                                 | 0.8 | 1.9        |
| 300~499인                           | 19.6                      | 3.9                                     | 14.9                               | 59.7                                | 6.5                                  | 0.0 | 1.4        |
| 500인 이상                            | 14.0                      | 0.9                                     | 18.3                               | 79.0                                | 3.1                                  | 0.2 | 1.9        |

주: 1) 백분율은 9,765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교육시간을 따로 지정한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 방법은 복수응답 분석을 실시함.

#### 4)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 태도

가장 최근에 받았던 성희롱예방교육에 참여한 본인의 태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매우 집중해서 들었다’ 19.4%, ‘집중해서 들었다’ 62.3%로 81.7%가 교육내용에 ‘집중했다’고 응답했다. 2018년에 88.2%가 ‘집중했다’고 응답한 것에서 다소 감소하였다.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집중했다’(매우 집중해서 들었다 + 집중해서 들었다)를 기준으로 보면, 공공기관은 92.0%, 민간사업체는 79.6%로 민간사업체에서 12.4%p 낮았다. 성별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고(남성 80.6%, 여성 83.6%),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78.5%, 30대 79.1%, 40대 80.6%, 50대 이상 86.5%로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에 대한 집중도가 낮았다. 직급이나 고용형태에서도 거의 차이가 없었고, 공공기관 유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85.7%였고 나머지는 90%를 상회하였다.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에서는 30~99인 81.2%, 100~299인 79.2%, 300~499인 78.1%, 500인 이상 78.3%로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집중했다’는 응답이 높았다.

〈표 III-39〉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 태도

(단위: %)

| 구분                                 | 매우<br>집중해서<br>들었다 | 어느 정도<br>집중해서<br>들었다 | 집중해서<br>듣지<br>않았다 | 전혀<br>집중해서<br>듣지<br>않았다 | 출석<br>체크하고<br>참석은<br>못했다 | 모름/<br>무응답 | 계     |
|------------------------------------|-------------------|----------------------|-------------------|-------------------------|--------------------------|------------|-------|
| 전 체                                | 19.4              | 62.3                 | 11.9              | 1.3                     | 0.2                      | 4.8        | 100.0 |
| 유형                                 |                   |                      |                   |                         |                          |            |       |
| 공공기관                               | 33.5              | 58.5                 | 6.6               | 1.4                     | 0.1                      | -          | 100.0 |
| 민간사업체                              | 16.4              | 63.2                 | 13.1              | 1.3                     | 0.2                      | 5.8        | 100.0 |
| 성별                                 |                   |                      |                   |                         |                          |            |       |
| 남성                                 | 18.8              | 61.8                 | 12.7              | 1.6                     | 0.1                      | 5.1        | 100.0 |
| 여성                                 | 20.4              | 63.2                 | 10.7              | 1.0                     | 0.3                      | 4.4        | 100.0 |
| 연령                                 |                   |                      |                   |                         |                          |            |       |
| 20대 이하                             | 12.6              | 65.9                 | 14.2              | 1.5                     | 0.2                      | 5.5        | 100.0 |
| 30대                                | 14.4              | 64.7                 | 13.6              | 1.3                     | 0.2                      | 5.8        | 100.0 |
| 40대                                | 17.2              | 63.4                 | 11.6              | 1.5                     | 0.2                      | 6.1        | 100.0 |
| 50대 이상                             | 28.8              | 57.7                 | 9.9               | 1.2                     | 0.0                      | 2.3        | 100.0 |
| 직급                                 |                   |                      |                   |                         |                          |            |       |
| 관리직                                | 20.9              | 59.8                 | 12.2              | 1.7                     | 0.1                      | 5.4        | 100.0 |
| 일반직                                | 18.7              | 63.7                 | 11.8              | 1.2                     | 0.2                      | 4.5        | 100.0 |
| 모름/무응답                             | 14.3              | 63.3                 | 7.6               | 1.2                     | -                        | 13.7       | 100.0 |
| 고용형태                               |                   |                      |                   |                         |                          |            |       |
| 정규직                                | 19.6              | 62.2                 | 11.7              | 1.4                     | 0.2                      | 4.9        | 100.0 |
| 비정규직                               | 17.5              | 63.3                 | 14.4              | 0.6                     | 0.1                      | 4.0        | 100.0 |
| 모름/무응답                             | 18.9              | 66.0                 | 13.2              | 0.1                     | -                        | 1.9        | 100.0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 국가기관                               | 35.8              | 54.6                 | 6.8               | 2.7                     | 0.0                      | -          | 100.0 |
| 지방자치단체                             | 25.5              | 60.2                 | 11.9              | 2.2                     | 0.2                      | -          | 100.0 |
| 초/중/고                              | 41.0              | 54.8                 | 3.5               | 0.6                     | -                        | -          | 100.0 |
| 대학                                 | 23.2              | 69.3                 | 7.1               | 0.4                     | 0.1                      | -          | 100.0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 제조업                                | 15.0              | 65.7                 | 11.2              | 1.0                     | 0.0                      | 7.2        | 100.0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16.1              | 60.2                 | 18.2              | 1.4                     | 0.1                      | 3.9        | 100.0 |
| 개인서비스업                             | 15.5              | 62.5                 | 15.6              | 1.3                     | 0.1                      | 5.0        | 100.0 |
| 유통서비스업                             | 17.5              | 58.7                 | 15.0              | 1.3                     | 0.3                      | 7.2        | 100.0 |
| 사업서비스업                             | 17.6              | 62.3                 | 13.5              | 1.9                     | 0.4                      | 4.2        | 100.0 |
| 사회서비스업                             | 16.7              | 65.0                 | 10.3              | 1.1                     | 0.3                      | 6.6        | 100.0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 30~99인                             | 16.0              | 65.2                 | 11.4              | 1.0                     | 0.2                      | 6.3        | 100.0 |
| 100~299인                           | 17.6              | 61.6                 | 13.9              | 1.5                     | 0.1                      | 5.3        | 100.0 |
| 300~499인                           | 12.4              | 65.7                 | 15.1              | 1.4                     | 0.5                      | 4.9        | 100.0 |
| 500인 이상                            | 17.1              | 61.2                 | 14.0              | 1.6                     | 0.2                      | 6.0        | 100.0 |

주: 백분율은 13,888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 5)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한 본인의 변화

가장 최근에 받았던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해 본인이 경험한 변화에 대해 5개 문항을 구성하여 질문하였다. 5개 질문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해 학습하게 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그렇다’는 응답이 높을수록 교육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직장내 성희롱이 무엇인지(개념, 유형 등) 알게 되었다 (2) 직장 안에서 나의 언행을 조심하게 되었다 (3) 타인의 성희롱 피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4) 타인의 피해와 나의 피해의 대처방법을 알게 되었다 (5) 2차 피해의 개념과 예방노력 등에 대해 알게 되었다.

5개 문항 모두에서 ‘그렇다’(매우 그렇다 + 약간 그렇다)는 85% 이상으로 나타났다. ‘직장내 성희롱이 무엇인지(개념, 유형 등) 알게 되었다’ 88.1%, ‘직장 안에서 나의 언행을 조심하게 되었다’ 87.0%, ‘타인의 성희롱 피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85.6%, ‘타인의 피해와 나의 피해의 대처 방법을 알게 되었다’ 87.1%, ‘2차 피해의 개념과 예방 노력 등에 대해 알게 되었다’ 89.1%였다. 예방교육에 대한 피로도가 제기되고는 있으나, 90% 가까이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2차 피해의 경우 최근에 강화된 교육내용인데, 10명 중 9명은 2차 피해의 개념과 예방노력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예방교육의 피로도를 줄이고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모든 문항에서 민간사업체보다 공공기관이 높았다. ‘직장내 성희롱이 무엇인지(개념, 유형 등) 알게 되었다’는 공공기관 96.2%, 민간사업체 86.3%, ‘직장 안에서 나의 언행을 조심하게 되었다’는 공공기관 96.4%, 민간사업체 85.0%, ‘타인의 성희롱 피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공공기관 95.8%, 민간사업체 83.5%, ‘타인의 피해와 나의 피해의 대처 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공공기관 94.7%, 민간사업체 85.5%, ‘2차 피해의 개념과 예방 노력 등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공공기관 95.4%, 민간사업체 87.7%였다.

성별, 직급,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는 모든 문항에서 1~2%p 내외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공공기관 유형의 경우 모든 문항에서 5%p 내외, 민간사업체 업종의 경우 10%p 이내에서 차이를 보였다.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에서는 30~99인과 500인 이상 규모에서 모든 문항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높았다.

〈표 III-40〉 성희롱 예방교육 이후 본인이 경험한 변화

(단위: %)

| 구분                                 | 직장 내<br>성희롱이<br>무엇인지<br>(개념, 유형 등)<br>알게 되었다 | 직장 안에서<br>나의 연행을<br>조심하게<br>되었다 | 타인의 성희롱<br>피해에 대해<br>관심을 갖게<br>되었다 | 타인의 피해와<br>나의 피해의<br>대처방법을<br>알게 되었다 | 2차 피해의<br>개념과<br>예방노력<br>등에 대해<br>알게 되었다 |
|------------------------------------|----------------------------------------------|---------------------------------|------------------------------------|--------------------------------------|------------------------------------------|
| 전 체                                | 88.1                                         | 87.0                            | 85.6                               | 87.1                                 | 89.1                                     |
| 유형                                 |                                              |                                 |                                    |                                      |                                          |
| 공공기관                               | 96.2                                         | 96.4                            | 95.8                               | 94.7                                 | 95.4                                     |
| 민간사업체                              | 86.3                                         | 85.0                            | 83.5                               | 85.5                                 | 87.7                                     |
| 성별                                 |                                              |                                 |                                    |                                      |                                          |
| 남성                                 | 87.8                                         | 86.8                            | 84.4                               | 86.8                                 | 88.6                                     |
| 여성                                 | 88.6                                         | 87.3                            | 87.6                               | 87.5                                 | 89.8                                     |
| 연령                                 |                                              |                                 |                                    |                                      |                                          |
| 20대 이하                             | 84.7                                         | 81.7                            | 81.8                               | 85.2                                 | 88.4                                     |
| 30대                                | 85.5                                         | 84.9                            | 82.9                               | 83.8                                 | 87.5                                     |
| 40대                                | 87.9                                         | 86.5                            | 84.7                               | 87.2                                 | 88.1                                     |
| 50대 이상                             | 91.8                                         | 91.4                            | 90.6                               | 90.6                                 | 91.7                                     |
| 직급                                 |                                              |                                 |                                    |                                      |                                          |
| 관리직                                | 88.2                                         | 87.0                            | 85.7                               | 86.6                                 | 88.1                                     |
| 일반직                                | 88.0                                         | 87.1                            | 85.6                               | 87.4                                 | 89.6                                     |
| 모름/무응답                             | 88.3                                         | 74.2                            | 81.3                               | 83.2                                 | 88.1                                     |
| 고용형태                               |                                              |                                 |                                    |                                      |                                          |
| 정규직                                | 88.4                                         | 86.9                            | 85.9                               | 87.2                                 | 89.0                                     |
| 비정규직                               | 85.2                                         | 88.0                            | 83.5                               | 85.9                                 | 89.2                                     |
| 모름/무응답                             | 86.9                                         | 82.8                            | 85.5                               | 90.6                                 | 90.9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국가기관                               | 94.2                                         | 94.7                            | 94.3                               | 93.1                                 | 93.8                                     |
| 지방자치단체                             | 94.3                                         | 94.5                            | 93.0                               | 91.5                                 | 92.6                                     |
| 초/중/고                              | 98.4                                         | 98.3                            | 97.9                               | 97.3                                 | 97.9                                     |
| 대학                                 | 96.2                                         | 97.0                            | 96.5                               | 94.7                                 | 95.3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제조업                                | 89.5                                         | 89.1                            | 85.9                               | 89.1                                 | 91.1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83.9                                         | 80.3                            | 78.9                               | 78.9                                 | 83.4                                     |
| 개인서비스업                             | 80.4                                         | 81.3                            | 81.1                               | 81.4                                 | 83.3                                     |
| 유통서비스업                             | 83.2                                         | 83.0                            | 81.0                               | 84.7                                 | 86.0                                     |
| 사업서비스업                             | 84.9                                         | 81.7                            | 82.6                               | 83.3                                 | 85.5                                     |
| 사회서비스업                             | 89.2                                         | 88.4                            | 85.9                               | 88.6                                 | 90.7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30~99인                             | 87.6                                         | 85.7                            | 85.2                               | 85.5                                 | 88.6                                     |
| 100~299인                           | 82.9                                         | 83.6                            | 82.2                               | 84.9                                 | 85.6                                     |
| 300~499인                           | 85.1                                         | 82.9                            | 81.3                               | 83.9                                 | 86.4                                     |
| 500인 이상                            | 88.4                                         | 86.1                            | 83.1                               | 86.4                                 | 89.0                                     |

주: 1) 각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약간 그렇다'는 응답을 합한 값임.

2) 백분율은 13,888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 6) 성희롱 예방교육의 효과

가장 최근에 받았던 성희롱 예방교육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매우 효과가 있었다’ 26.1%, ‘약간 효과가 있었다’ 58.2%로 ‘효과가 있었다’(매우 효과가 있었다 + 약간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이 84.3%였고,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11.9%,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1.2%였다. 2018년 실태조사에서는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이 90.4%여서, 2021년에 6.1%p 감소하였다.

‘효과가 있었다’를 기준으로 소속기관 유형별로 보면 공공기관은 91.6%, 민간사업체는 82.7%로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의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이 다소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 84.4%, 여성 84.2%로 차이가 거의 없었다.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성희롱 예방교육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적었다. 20대 이하 81.5%, 30대 83.4%, 40대 83.6%, 50대 이상 87.0%였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 중 84.6%, 비정규직 중 81.4%가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 ‘전혀 효과가 없었다’와 ‘별로 효과가 없었다’라고 응답한 경우에 대해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한 이유를 질문한 결과, ‘매번 동일한 교육내용 이어서’라는 응답이 40.0%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교육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아서’ 37.3%, ‘우리 직장에 맞지 않는 교육내용이어서’ 10.0% 순이었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공공기관은 ‘매번 동일한 교육내용 이어서’라는 응답이 57.9%로 절반 이상이였다. 민간사업체는 ‘매번 동일한 교육내용 이어서’(37.8%)와 ‘교육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아서’(39.5%)가 비슷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교육내용의 개선을, 민간사업체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모두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성별, 연령, 직급유형, 고용형태 등 대부분 전체 응답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공공기관에서는 교육내용을, 민간사업체에서는 교육방법을 효과가 없는 이유로 지적하였다. 한편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가 30~99인에서는 다른 규모에 비해 ‘매번 동일한 교육내용이어서’라는 응답률이 높았다.



〈표 III-41〉 성희롱 예방교육의 효과

(단위: %)

| 구분                                 | 전혀<br>효과가<br>없었다 | 별로<br>효과가<br>없었다 | 약간<br>효과가<br>있었다 | 매우<br>효과가<br>있었다 | 모름/<br>무응답 | 계     |
|------------------------------------|------------------|------------------|------------------|------------------|------------|-------|
| 전 체                                | 1.2              | 11.9             | 58.2             | 26.1             | 2.5        | 100.0 |
| 유형                                 |                  |                  |                  |                  |            |       |
| 공공기관                               | 1.0              | 7.4              | 50.6             | 41.0             | -          | 100.0 |
| 민간사업체                              | 1.3              | 12.9             | 59.8             | 22.9             | 3.1        | 100.0 |
| 성별                                 |                  |                  |                  |                  |            |       |
| 남성                                 | 1.3              | 11.6             | 58.4             | 26.0             | 2.6        | 100.0 |
| 여성                                 | 1.0              | 12.4             | 57.9             | 26.3             | 2.4        | 100.0 |
| 연령                                 |                  |                  |                  |                  |            |       |
| 20대 이하                             | 1.5              | 14.8             | 64.2             | 17.3             | 2.1        | 100.0 |
| 30대                                | 1.0              | 12.2             | 61.9             | 21.5             | 3.5        | 100.0 |
| 40대                                | 0.7              | 13.1             | 59.5             | 24.1             | 2.6        | 100.0 |
| 50대 이상                             | 1.8              | 9.4              | 51.2             | 35.8             | 1.8        | 100.0 |
| 직급                                 |                  |                  |                  |                  |            |       |
| 관리직                                | 1.6              | 12.2             | 54.0             | 29.5             | 2.7        | 100.0 |
| 일반직                                | 1.0              | 11.8             | 60.4             | 24.4             | 2.4        | 100.0 |
| 모름/무응답                             | 6.8              | 8.7              | 58.3             | 22.8             | 3.4        | 100.0 |
| 고용형태                               |                  |                  |                  |                  |            |       |
| 정규직                                | 1.1              | 11.5             | 58.2             | 26.4             | 2.7        | 100.0 |
| 비정규직                               | 1.5              | 15.8             | 57.6             | 23.8             | 1.2        | 100.0 |
| 모름/무응답                             | 5.0              | 7.3              | 63.4             | 18.4             | 5.8        | 100.0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국가기관                               | 1.8              | 8.2              | 52.0             | 38.0             | -          | 100.0 |
| 지방자치단체                             | 1.4              | 9.1              | 56.0             | 33.4             | -          | 100.0 |
| 초/중/고                              | 0.6              | 6.1              | 45.2             | 48.2             | -          | 100.0 |
| 대학                                 | 0.3              | 7.3              | 54.1             | 38.3             | -          | 100.0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제조업                                | 1.1              | 11.1             | 64.5             | 20.3             | 3.1        | 100.0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2.6              | 13.8             | 57.2             | 23.0             | 3.4        | 100.0 |
| 개인서비스업                             | 0.4              | 16.7             | 59.3             | 20.7             | 2.8        | 100.0 |
| 유통서비스업                             | 1.4              | 13.6             | 58.5             | 23.1             | 3.4        | 100.0 |
| 사업서비스업                             | 1.2              | 14.7             | 56.0             | 25.7             | 2.5        | 100.0 |
| 사회서비스업                             | 1.2              | 10.7             | 60.2             | 24.3             | 3.6        | 100.0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30~99인                             | 1.2              | 11.4             | 61.2             | 22.0             | 4.2        | 100.0 |
| 100~299인                           | 1.5              | 14.9             | 58.0             | 22.5             | 3.2        | 100.0 |
| 300~499인                           | 1.3              | 13.1             | 65.0             | 18.3             | 2.3        | 100.0 |
| 500인 이상                            | 1.0              | 13.0             | 58.1             | 26.2             | 1.7        | 100.0 |

주: 백분율은 13,888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표 Ⅲ-42〉 성희롱 예방교육의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한 이유

(단위: %)

| 구분                                 | 매번<br>동일한<br>교육<br>내용이어서<br>(새로운<br>내용이<br>없어서) | 강사가<br>전문적이지<br>않아서 | 교육방법이<br>효과적이지<br>않아서 | 우리<br>직장에<br>맞지 않는<br>교육내용<br>이어서 | 기타   | 모름/<br>무응답 | 계     |
|------------------------------------|-------------------------------------------------|---------------------|-----------------------|-----------------------------------|------|------------|-------|
| 전 체                                | 40.0                                            | 4.4                 | 37.3                  | 10.0                              | 3.8  | 4.6        | 100.0 |
| 유형                                 |                                                 |                     |                       |                                   |      |            |       |
| 공공기관                               | 57.9                                            | 1.5                 | 20.4                  | 9.1                               | 11.1 | -          | 100.0 |
| 민간사업체                              | 37.8                                            | 4.7                 | 39.5                  | 10.1                              | 2.8  | 5.1        | 100.0 |
| 성별                                 |                                                 |                     |                       |                                   |      |            |       |
| 남성                                 | 40.7                                            | 4.5                 | 37.2                  | 9.7                               | 3.8  | 4.1        | 100.0 |
| 여성                                 | 38.9                                            | 4.2                 | 37.4                  | 10.5                              | 3.7  | 5.2        | 100.0 |
| 연령                                 |                                                 |                     |                       |                                   |      |            |       |
| 20대 이하                             | 37.6                                            | 1.5                 | 41.1                  | 14.0                              | 3.4  | 2.4        | 100.0 |
| 30대                                | 36.0                                            | 4.6                 | 46.1                  | 6.3                               | 3.8  | 3.3        | 100.0 |
| 40대                                | 38.9                                            | 7.1                 | 35.4                  | 10.7                              | 2.1  | 5.8        | 100.0 |
| 50대 이상                             | 47.1                                            | 2.3                 | 28.2                  | 10.9                              | 6.0  | 5.6        | 100.0 |
| 직급                                 |                                                 |                     |                       |                                   |      |            |       |
| 관리직                                | 41.2                                            | 6.7                 | 32.8                  | 11.6                              | 1.1  | 6.5        | 100.0 |
| 일반직                                | 39.7                                            | 3.1                 | 39.7                  | 9.2                               | 5.2  | 3.1        | 100.0 |
| 모름/무응답                             | -                                               | -                   | 52.1                  | -                                 | 7.4  | 40.5       | 100.0 |
| 고용형태                               |                                                 |                     |                       |                                   |      |            |       |
| 정규직                                | 40.8                                            | 4.6                 | 36.6                  | 10.0                              | 3.8  | 4.2        | 100.0 |
| 비정규직                               | 36.2                                            | 2.8                 | 41.5                  | 10.8                              | 3.8  | 4.9        | 100.0 |
| 모름/무응답                             | 8.6                                             | -                   | 46.8                  | -                                 | -    | 44.6       | 100.0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 국가기관                               | 47.8                                            | 3.1                 | 24.2                  | 8.0                               | 16.9 | -          | 100.0 |
| 지방자치단체                             | 51.8                                            | 1.8                 | 22.2                  | 11.2                              | 13.0 | -          | 100.0 |
| 초/중/고                              | 70.5                                            | 0.5                 | 13.1                  | 10.0                              | 5.9  | -          | 100.0 |
| 대학                                 | 62.1                                            | -                   | 23.8                  | 6.7                               | 7.4  | -          | 100.0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 제조업                                | 49.7                                            | 2.8                 | 27.6                  | 13.4                              | 2.8  | 3.7        | 100.0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43.0                                            | 1.9                 | 35.9                  | 9.2                               | 0.6  | 9.3        | 100.0 |
| 개인서비스업                             | 37.4                                            | 5.4                 | 48.9                  | 4.6                               | 1.4  | 2.4        | 100.0 |
| 유통서비스업                             | 37.5                                            | 4.9                 | 46.7                  | 6.5                               | 1.9  | 2.6        | 100.0 |
| 사업서비스업                             | 26.6                                            | 8.0                 | 44.9                  | 11.8                              | 2.6  | 6.1        | 100.0 |
| 사회서비스업                             | 35.5                                            | 3.3                 | 39.7                  | 8.8                               | 6.5  | 6.2        | 100.0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 30~99인                             | 40.3                                            | 5.4                 | 32.8                  | 11.4                              | 2.9  | 7.2        | 100.0 |
| 100~299인                           | 35.4                                            | 6.0                 | 40.9                  | 8.7                               | 3.0  | 6.1        | 100.0 |
| 300~499인                           | 34.8                                            | 2.7                 | 43.7                  | 14.9                              | 3.5  | 0.5        | 100.0 |
| 500인 이상                            | 38.4                                            | 3.0                 | 44.5                  | 8.7                               | 2.3  | 3.1        | 100.0 |

주: 백분율은 1,942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 마. 직장내 성희롱 방지 업무에 대한 인식

### 1) 사업주/기관장의 직장내 성희롱 방지 위한 노력

사업주/기관장의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노력을 두 가지 차원에서 조사하였다. 하나는 성희롱 방지와 관련된 법적 의무(책무)를 인지하고 관련 제도적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지 노력하는가, 다른 하나는 그러한 책무와 이행과 관련해서 직접 조직 구성원 혹은 업무담당자에게 직접 언급한 적이 있는가였다.

먼저 사업주/기관장이 직장내 성희롱 방지에 대한 법적 의무(책무)를 인지하고 관련 제도적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자 노력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75.7%였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공공기관은 93.6%, 민간사업체는 72.1%로 공공기관에서 21.5%p 높았다. 성별, 연령, 직급, 고용형태 등에서는 전체 응답 경향과 유사하였다. 공공기관 유형별로 지방자치단체(89.4%)와 대학(91.0%)에서 ‘그렇다’ 응답이 95% 내외인 국가기관과 초/중/고에 비해 낮았다. 민간사업체 업종에서는 건설/하수 및 폐기물처리/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과 개인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이 다른 업종에 비해 다소 낮았고, 종사자 규모가 작은 민간사업체일수록 사업주/기관장이 직장내 성희롱 방지에 대한 법적 의무(책무)를 인지하고 관련 제도적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자 노력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았다.

한편, 사업주/기관장이 직장내 성희롱 방지, 공정한 사건처리 등에 대한 책무 혹은 이행을 위해 직접 조직 구성원 혹은 업무담당자에게 직접 언급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61.7%였다. 앞서 성희롱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10명 중 7~8명이 응답했는데, 이와 관련해 조직원 전체 혹은 업무담당자에게 언급하였다고 10명 중 6명이 응답해서 사업주/기관장의 구체적이고 실천적 노력을 체감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 71.4%, 민간사업체 59.2%로 공공기관이 12.2%p 높았다.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국가기관(79.3%)과 초/중/고(73.5%)가 70%를 상회한 반면 지방자치단체(63.7%)와 대학(63.6%)은 60% 정도였다.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있다’는 비율이 다소 적었지만, 300인 이상 사업체와 차이는 크지는 않았다. 직장내 성희롱 방지와 사건처리 등은 사업주/기관장 책임하에 이뤄지기 때문에 사업주/기관장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민간사업체 사업주가 보다 적극적으로 성희롱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표 Ⅲ-43〉 사업주/기관장의 직장내 성희롱 방지 위한 적극적 노력 여부

(단위: %)

| 구분                                 | 그렇다  | 아니다  | 모름/무응답 | 계     |
|------------------------------------|------|------|--------|-------|
| <b>전 체</b>                         | 75.7 | 23.2 | 1.1    | 100.0 |
| <b>유형</b>                          |      |      |        |       |
| 공공기관                               | 93.6 | 6.4  | -      | 100.0 |
| 민간사업체                              | 72.1 | 26.6 | 1.3    | 100.0 |
| <b>성별</b>                          |      |      |        |       |
| 남성                                 | 75.1 | 23.7 | 1.2    | 100.0 |
| 여성                                 | 76.6 | 22.4 | 1.0    | 100.0 |
| <b>연령</b>                          |      |      |        |       |
| 20대 이하                             | 72.3 | 27.0 | 0.7    | 100.0 |
| 30대                                | 71.9 | 27.2 | 0.9    | 100.0 |
| 40대                                | 73.0 | 25.6 | 1.4    | 100.0 |
| 50대 이상                             | 83.4 | 15.6 | 1.1    | 100.0 |
| <b>직급</b>                          |      |      |        |       |
| 관리직                                | 75.5 | 23.3 | 1.3    | 100.0 |
| 일반직                                | 75.9 | 23.1 | 1.0    | 100.0 |
| 모름/무응답                             | 69.9 | 26.7 | 3.4    | 100.0 |
| <b>고용형태</b>                        |      |      |        |       |
| 정규직                                | 76.1 | 22.7 | 1.1    | 100.0 |
| 비정규직                               | 72.0 | 27.1 | 0.8    | 100.0 |
| 모름/무응답                             | 72.4 | 25.4 | 2.2    | 100.0 |
| <b>공공기관 유형</b>                     |      |      |        |       |
| 국가기관                               | 93.8 | 6.2  | -      | 100.0 |
| 지방자치단체                             | 89.4 | 10.6 | -      | 100.0 |
| 초/중/고                              | 96.8 | 3.2  | -      | 100.0 |
| 대학                                 | 91.0 | 9.0  | -      | 100.0 |
| <b>민간사업체 업종</b>                    |      |      |        |       |
| 제조업                                | 77.2 | 21.3 | 1.5    | 100.0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66.1 | 31.6 | 2.3    | 100.0 |
| 개인서비스업                             | 62.5 | 36.3 | 1.2    | 100.0 |
| 유통서비스업                             | 71.1 | 27.0 | 1.9    | 100.0 |
| 사업서비스업                             | 68.3 | 31.3 | 0.4    | 100.0 |
| 사회서비스업                             | 77.6 | 21.0 | 1.4    | 100.0 |
| <b>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b>                |      |      |        |       |
| 30~99인                             | 70.0 | 28.5 | 1.5    | 100.0 |
| 100~299인                           | 70.2 | 28.4 | 1.4    | 100.0 |
| 300~499인                           | 71.3 | 27.8 | 0.9    | 100.0 |
| 500인 이상                            | 77.3 | 21.6 | 1.1    | 100.0 |

주: 백분율은 15,073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표 Ⅲ-44〉 사업주/기관장의 직장내 성희롱 방지 위한 책무/이행에 대한 직접 언급 여부

(단위: %)

| 구분                                 | 있다   | 없다   | 모름/무응답 | 계     |
|------------------------------------|------|------|--------|-------|
| <b>전 체</b>                         | 61.7 | 35.7 | 2.6    | 100.0 |
| <b>유형</b>                          |      |      |        |       |
| 공공기관                               | 71.4 | 28.6 | -      | 100.0 |
| 민간사업체                              | 59.2 | 37.5 | 3.3    | 100.0 |
| <b>성별</b>                          |      |      |        |       |
| 남성                                 | 64.9 | 32.2 | 2.9    | 100.0 |
| 여성                                 | 56.8 | 41.1 | 2.1    | 100.0 |
| <b>연령</b>                          |      |      |        |       |
| 20대 이하                             | 53.3 | 44.3 | 2.4    | 100.0 |
| 30대                                | 58.0 | 38.8 | 3.2    | 100.0 |
| 40대                                | 61.2 | 35.7 | 3.1    | 100.0 |
| 50대 이상                             | 68.1 | 30.1 | 1.8    | 100.0 |
| <b>직급</b>                          |      |      |        |       |
| 관리직                                | 67.7 | 29.3 | 3.0    | 100.0 |
| 일반직                                | 58.7 | 38.9 | 2.4    | 100.0 |
| 모름/무응답                             | 54.1 | 36.7 | 9.3    | 100.0 |
| <b>고용형태</b>                        |      |      |        |       |
| 정규직                                | 62.9 | 34.5 | 2.5    | 100.0 |
| 비정규직                               | 50.4 | 46.3 | 3.3    | 100.0 |
| 모름/무응답                             | 62.1 | 32.5 | 5.4    | 100.0 |
| <b>공공기관 유형</b>                     |      |      |        |       |
| 국가기관                               | 79.3 | 20.7 | -      | 100.0 |
| 지방자치단체                             | 63.7 | 36.3 | -      | 100.0 |
| 초/중/고                              | 73.5 | 26.5 | -      | 100.0 |
| 대학                                 | 63.6 | 36.4 | -      | 100.0 |
| <b>민간사업체 업종</b>                    |      |      |        |       |
| 제조업                                | 67.2 | 29.6 | 3.2    | 100.0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53.2 | 43.0 | 3.8    | 100.0 |
| 개인서비스업                             | 50.8 | 45.1 | 4.1    | 100.0 |
| 유통서비스업                             | 62.9 | 34.5 | 2.6    | 100.0 |
| 사업서비스업                             | 53.5 | 43.1 | 3.4    | 100.0 |
| 사회서비스업                             | 57.4 | 39.4 | 3.2    | 100.0 |
| <b>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b>                |      |      |        |       |
| 30~99인                             | 59.1 | 36.9 | 4.0    | 100.0 |
| 100~299인                           | 57.1 | 39.7 | 3.2    | 100.0 |
| 300~499인                           | 60.6 | 36.2 | 3.2    | 100.0 |
| 500인 이상                            | 60.8 | 36.6 | 2.6    | 100.0 |

주: 백분율은 11,460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 2) 성희롱 방지 업무 운영에 대한 인지도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을 기준으로 성희롱 방지 업무 운영 현황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였다. 4개 문항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충상담원, 고충상담창구 등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2) 온라인을 활용한 상담 및 신고를 받고 있다(스마트폰/태블릿/PC 등을 활용한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 (3) 성희롱 예방지침이 있다 (4) 고충상담원, 고충상담창구, 사이버 성희롱 신고센터 등에 대해 안내 받은 적이 있다.

그 결과를 보면, ‘고충상담원, 고충상담창구 등이 지정/운영되고 있다’에 대해 52.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온라인을 활용한 상담 및 신고를 받고 있다’는 44.2%, ‘성희롱 예방지침이 있다’는 68.7%, ‘고충상담원, 고충상담창구, 사이버 성희롱 신고센터 등에 대해 안내받은 적이 있다’는 57.6%였다.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는 건 성희롱 예방지침으로 10명 중 7명 정도가 성희롱 예방지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고충상담원, 고충상담창구, 온라인을 활용한 상담 및 신고 등에 대해서는 10명 중 5명 정도가 인지하고 있었다. 고충상담원, 고충상담창구, 온라인 상담 시스템 등은 성희롱 피해를 경험할 경우 일차적으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조직내 공식 채널인데, 이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이다. 그간 성희롱 방지 업무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강화를 위한 정책적으로 노력해 왔는데, 여전히 인지도가 높지 않아서 조직내 성희롱 피해 상담 및 신고를 위한 시스템과 시스템 이용을 위한 안내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이 모든 문항에서 민간사업체보다 20%p 정도 인지도가 높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모든 문항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낮았다. 특히 20대 이하의 ‘고충상담원, 고충상담창구 등이 지정/운영되고 있다’와 ‘온라인을 활용한 상담 및 신고를 받고 있다’에서 30%대로 나타났는데, 앞서 성희롱 피해 경험률이 20대 이하에서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성희롱 방지 업무 관련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고용형태에서는 비정규직이,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모든 문항에서 성희롱 방지 업무 및 운영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다.

전체적으로 민간사업체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지방자치단체와 초/중/고, 종사자 규모가 작은 민간사업체일수록 성희롱 방지 업무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서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캠페인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표 Ⅲ-45〉 성희롱 방지 업무 운영에 대한 인지도

(단위: %)

| 구분                                 | 고충상담원,<br>고충상담창구 등이<br>지정/운영되고<br>있다 | 온라인을 활용한<br>상담 및 신고를<br>받고 있다 | 성희롱 예방지침이<br>있다 | 고충상담원,<br>고충상담창구,<br>사이버 성희롱<br>신고센터 등에 대해<br>안내받은 적이 있다 |
|------------------------------------|--------------------------------------|-------------------------------|-----------------|----------------------------------------------------------|
| 전 체                                | 52.8                                 | 44.2                          | 68.7            | 57.6                                                     |
| 유형                                 |                                      |                               |                 |                                                          |
| 공공기관                               | 81.4                                 | 63.8                          | 82.8            | 77.3                                                     |
| 민간사업체                              | 47.1                                 | 40.3                          | 65.8            | 53.6                                                     |
| 성별                                 |                                      |                               |                 |                                                          |
| 남성                                 | 51.5                                 | 44.3                          | 68.3            | 56.4                                                     |
| 여성                                 | 55.0                                 | 44.0                          | 69.3            | 59.5                                                     |
| 연령                                 |                                      |                               |                 |                                                          |
| 20대 이하                             | 39.7                                 | 35.5                          | 59.6            | 47.8                                                     |
| 30대                                | 49.2                                 | 41.8                          | 68.1            | 55.8                                                     |
| 40대                                | 49.2                                 | 42.9                          | 67.3            | 56.3                                                     |
| 50대 이상                             | 65.1                                 | 51.2                          | 74.4            | 64.5                                                     |
| 직급유형                               |                                      |                               |                 |                                                          |
| 관리직                                | 54.7                                 | 45.9                          | 71.4            | 59.2                                                     |
| 일반직                                | 52.0                                 | 43.4                          | 67.4            | 56.9                                                     |
| 모름/무응답                             | 34.7                                 | 33.0                          | 52.5            | 35.8                                                     |
| 고용형태                               |                                      |                               |                 |                                                          |
| 정규직                                | 54.3                                 | 45.7                          | 69.6            | 58.6                                                     |
| 비정규직                               | 39.7                                 | 31.8                          | 60.8            | 48.8                                                     |
| 모름/무응답                             | 47.4                                 | 39.6                          | 69.1            | 56.2                                                     |
| 공공기관 유형                            |                                      |                               |                 |                                                          |
| 국가기관                               | 85.6                                 | 71.5                          | 84.8            | 83.7                                                     |
| 지방자치단체                             | 77.4                                 | 63.4                          | 76.8            | 68.3                                                     |
| 초/중/고                              | 76.1                                 | 58.5                          | 85.6            | 77.4                                                     |
| 대학                                 | 90.2                                 | 64.2                          | 80.7            | 77.7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제조업                                | 46.4                                 | 34.8                          | 65.6            | 51.8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41.9                                 | 39.8                          | 59.3            | 50.1                                                     |
| 개인서비스업                             | 34.8                                 | 38.7                          | 57.3            | 52.3                                                     |
| 유통서비스업                             | 51.7                                 | 44.6                          | 66.2            | 56.9                                                     |
| 사업서비스업                             | 47.6                                 | 46.0                          | 71.7            | 55.0                                                     |
| 사회서비스업                             | 52.9                                 | 39.5                          | 65.7            | 55.2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30~99인                             | 39.7                                 | 31.8                          | 60.9            | 48.5                                                     |
| 100~299인                           | 44.8                                 | 34.9                          | 64.1            | 50.3                                                     |
| 300~499인                           | 48.6                                 | 44.3                          | 64.7            | 51.5                                                     |
| 500인 이상                            | 59.3                                 | 56.5                          | 75.1            | 65.1                                                     |

주: 1) 백분율은 15,073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그렇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결과표를 재구성함.

### 3) 기관 내외부 기구 이용 및 이용 권유 의사

#### 가) 외부 신고창구 이용 및 이용 권유 의사

본인이나 주변인이 성희롱을 경험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 여성가족부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등 외부에 있는 신고창구를 이용하거나 이용을 권유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77.8%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 92.1%, 민간사업체 75.0%가 외부에 있는 신고창구를 이용하거나 이용을 권유할 생각이 있었다. 민간사업체에선 24.5%가 '없다'고 응답해 4명 중 1명은 외부기구를 이용 혹은 이용을 권유할 생각이 없었다.

성별로는 남성 75.9%, 여성 80.9%로 여성이 다소 높았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 고용형태에서는 정규직, 공공기관 유형에서는 초/중/고에서,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외부 신고창구를 이용하거나 이용을 권유할 생각이 있었다.



〈표 III-46〉 외부 신고창구 이용 및 이용 권유 여부

(단위: %)

| 구분                                 | 있다   | 없다   | 모름/무응답 | 계     |
|------------------------------------|------|------|--------|-------|
| <b>전 체</b>                         | 77.8 | 21.7 | 0.4    | 100.0 |
| <b>유형</b>                          |      |      |        |       |
| 공공기관                               | 92.1 | 7.9  | -      | 100.0 |
| 민간사업체                              | 75.0 | 24.5 | 0.5    | 100.0 |
| <b>성별</b>                          |      |      |        |       |
| 남성                                 | 75.9 | 23.7 | 0.4    | 100.0 |
| 여성                                 | 80.9 | 18.6 | 0.4    | 100.0 |
| <b>연령</b>                          |      |      |        |       |
| 20대 이하                             | 77.9 | 21.9 | 0.2    | 100.0 |
| 30대                                | 73.3 | 26.4 | 0.3    | 100.0 |
| 40대                                | 75.3 | 24.1 | 0.6    | 100.0 |
| 50대 이상                             | 84.5 | 15.0 | 0.5    | 100.0 |
| <b>직급</b>                          |      |      |        |       |
| 관리직                                | 77.2 | 22.6 | 0.3    | 100.0 |
| 일반직                                | 78.3 | 21.2 | 0.5    | 100.0 |
| 모름/무응답                             | 60.6 | 37.9 | 1.5    | 100.0 |
| <b>고용형태</b>                        |      |      |        |       |
| 정규직                                | 78.0 | 21.5 | 0.4    | 100.0 |
| 비정규직                               | 76.9 | 22.6 | 0.5    | 100.0 |
| 모름/무응답                             | 65.4 | 33.6 | 1.0    | 100.0 |
| <b>공공기관 유형</b>                     |      |      |        |       |
| 국가기관                               | 89.9 | 10.1 | -      | 100.0 |
| 지방자치단체                             | 89.9 | 10.1 | -      | 100.0 |
| 초/중/고                              | 94.7 | 5.3  | -      | 100.0 |
| 대학                                 | 92.0 | 8.0  | -      | 100.0 |
| <b>민간사업체 업종</b>                    |      |      |        |       |
| 제조업                                | 75.4 | 24.1 | 0.6    | 100.0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72.6 | 26.7 | 0.8    | 100.0 |
| 개인서비스업                             | 69.9 | 30.0 | 0.1    | 100.0 |
| 유통서비스업                             | 75.6 | 23.7 | 0.7    | 100.0 |
| 사업서비스업                             | 74.8 | 24.9 | 0.3    | 100.0 |
| 사회서비스업                             | 77.9 | 21.5 | 0.6    | 100.0 |
| <b>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b>                |      |      |        |       |
| 30~99인                             | 73.0 | 26.1 | 0.9    | 100.0 |
| 100~299인                           | 74.1 | 25.5 | 0.4    | 100.0 |
| 300~499인                           | 74.4 | 25.4 | 0.2    | 100.0 |
| 500인 이상                            | 78.8 | 21.0 | 0.2    | 100.0 |

주: 백분율은 15,073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 나) 직장 내 고충전담창구 이용 및 고충상담원 상담 권유 의사

본인이나 주변인이 성희롱을 경험할 경우 내부 고충상담창구를 이용하거나 고충상담원에게 상담하도록 권유할 생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75.8%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2018년 실태조사에서는 86.4%였는데 다소 하락하였다. 이는 공공기관도 2018년 93.0%, 2021년 91.3%로 다소 하락하긴 했지만, 민간사업체에서 2018년 85.1%에서 2021년 72.7%로 12.4%p 하락한 것의 영향으로 보인다.

‘있다’ 응답을 기준으로 보면 소속기관 유형별로 공공기관은 91.3%, 민간사업체는 72.7%였다. 10명 중 7명이 내부 고충상담창구를 이용하거나 고충상담원에게 상담하도록 권유할 생각이 있다는 것이 낮다고 볼 수는 없지만, 90%를 상회하는 공공기관 응답률을 고려할 때 이용의사를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이용하지 않으려는 것은 신뢰도의 이슈일 수 있어서, 민간사업체의 직장내 성희롱 방지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성별에서는 남성 76.0%, 여성 75.7%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용 및 이용 권유 의사가 낮았다. 20대 이하 72.5%, 30대 72.4%, 40대 74.8%, 50대 이상 81.4%였다.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85.8%로 90%를 상회한 다른 기관들에 비해 낮았다. 민간사업체 업종에서는 개인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종사자 규모에서는 500인 이상에서 높았고 100~299인에서 가장 낮았다.

〈표 III-47〉 직장 내 고충전담창구 이용 및 고충상담원 상담 권유 여부

(단위: %)

| 구분                                 | 있다   | 없다   | 모름/무응답 | 계     |
|------------------------------------|------|------|--------|-------|
| <b>전 체</b>                         | 75.8 | 23.7 | 0.5    | 100.0 |
| <b>유형</b>                          |      |      |        |       |
| 공공기관                               | 91.3 | 8.7  | -      | 100.0 |
| 민간사업체                              | 72.7 | 26.7 | 0.5    | 100.0 |
| <b>성별</b>                          |      |      |        |       |
| 남성                                 | 76.0 | 23.6 | 0.4    | 100.0 |
| 여성                                 | 75.7 | 23.8 | 0.5    | 100.0 |
| <b>연령</b>                          |      |      |        |       |
| 20대 이하                             | 72.5 | 27.4 | 0.1    | 100.0 |
| 30대                                | 72.4 | 27.3 | 0.3    | 100.0 |
| 40대                                | 74.8 | 24.5 | 0.7    | 100.0 |
| 50대 이상                             | 81.4 | 18.1 | 0.5    | 100.0 |
| <b>직급</b>                          |      |      |        |       |
| 관리직                                | 76.6 | 23.0 | 0.3    | 100.0 |
| 일반직                                | 75.5 | 24.0 | 0.5    | 100.0 |
| 모름/무응답                             | 65.4 | 32.3 | 2.4    | 100.0 |
| <b>고용형태</b>                        |      |      |        |       |
| 정규직                                | 76.5 | 23.1 | 0.4    | 100.0 |
| 비정규직                               | 70.7 | 28.6 | 0.7    | 100.0 |
| 모름/무응답                             | 65.9 | 32.6 | 1.5    | 100.0 |
| <b>공공기관 유형</b>                     |      |      |        |       |
| 국가기관                               | 91.7 | 8.3  | -      | 100.0 |
| 지방자치단체                             | 85.8 | 14.2 | -      | 100.0 |
| 초/중/고                              | 92.4 | 7.6  | -      | 100.0 |
| 대학                                 | 94.2 | 5.8  | -      | 100.0 |
| <b>민간사업체 업종</b>                    |      |      |        |       |
| 제조업                                | 76.8 | 22.7 | 0.5    | 100.0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69.2 | 30.2 | 0.6    | 100.0 |
| 개인서비스업                             | 65.1 | 34.9 | 0.1    | 100.0 |
| 유통서비스업                             | 73.4 | 25.6 | 0.9    | 100.0 |
| 사업서비스업                             | 69.9 | 29.7 | 0.4    | 100.0 |
| 사회서비스업                             | 75.1 | 24.2 | 0.8    | 100.0 |
| <b>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b>                |      |      |        |       |
| 30~99인                             | 71.9 | 27.2 | 0.9    | 100.0 |
| 100~299인                           | 70.5 | 28.9 | 0.6    | 100.0 |
| 300~499인                           | 72.2 | 27.8 | -      | 100.0 |
| 500인 이상                            | 76.2 | 23.6 | 0.2    | 100.0 |

주: 백분율은 15,073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 4)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에 대한 기대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다면 사내절차를 통해 공정한 사건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73.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공공기관은 86.1%, 민간사업체는 70.6%였고, 성별로는 남성은 74.8%, 여성은 70.7%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70.7%)와 30대(68.6%)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고용형태에서는 비정규직, 공공기관 유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체 업종에서는 개인서비스업,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에서는 100~299인 규모에서 낮았다. 전체적으로 민간사업체, 여성, 비정규직, 지방자치단체, 개인서비스업, 100~299인 규모의 민간사업체에서 사내절차를 통해 공정한 사건처리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사내절차를 통해 공정한 사건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해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 공정한 사건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성희롱 사건 전담기구/전담자의 전문성이 낮기 때문'(27.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사건처리를 위한 규정,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21.3%), '성희롱 사건처리 절차가 준수되거나 조사 등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20.0%), '성희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19.4%) 순이었다. 공정한 사건처리에 대한 낮은 신뢰는 전담기구/전담자의 전문성 미흡, 규정과 매뉴얼 부재, 신속한 사건처리 절차 운영 미흡, 성희롱을 문제시 하지 않는 조직분위기 등 성희롱 사건처리 역량과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반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다.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응답 경향이 상이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사건축소나 은폐, 회유, 미온적 징계 등 공정한 사건처리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52.7%)이라는 응답이 월등히 높았고, 그다음은 '신속한 사건처리 절차 운영 미흡', '성희롱을 문제시 하지 않는 조직 분위기', '성희롱 전담기구/전담자 역량 부족' 순이었다. 반면, 민간사업체의 경우는 '성희롱 전담기구/전담자 역량 부족', '성희롱 사건처리 위한 규정 및 매뉴얼 부재', '신속한 사건처리 절차 운영 미흡' 등 시스템 미비에 대한 응답이 다수를 이뤘다. 공공기관에서는 사건축소, 은폐와 회유, 미온적 징계 등의 개선이, 민간사업체에서는 성희롱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운영이 필요하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성희롱 전담기구/전담자 역량 부족, 성희롱 사건처리 위한 규정 및 매뉴얼 부재 등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지적한 반면, 여성의 경우 성희롱 전담기구/전담자 역량 부족과 함께 사건축소나 은폐, 회유, 미온적 징계 등 공정한 사건처리에 대한 의지 부재를 주된 이유로 보았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이상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30대는 68.6%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79.4%로 10.8%p 차이가 났다. 직급에서는 정규직, 고용형태에서는 관리직이 공정한 사건처리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공공기관 유형에서는 ‘사건 축소나 은폐, 회유, 협박, 미온적 징계 등 공정한 사건처리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다수 차지하는 가운데, 대학의 경우 ‘사건 축소나 은폐, 회유, 협박, 미온적 징계 등 공정한 사건처리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62.3%)의 응답이 높았다. 이외에도 국가기관과 초/중/고는 ‘성희롱 전담기구의 전문성이 낮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은 ‘이전에 발생했던 성희롱 사건의 처리도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와 ‘성희롱 사건처리절차가 준수되거나 조사 등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의 응답이 높았다.

민간사업체에서는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성희롱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응답이 높았다.

〈표 Ⅲ-48〉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대한 기대

(단위: %)

| 구분                                 | 그렇다  | 아니다  | 모름/무응답 | 계     |
|------------------------------------|------|------|--------|-------|
| <b>전 체</b>                         | 73.2 | 26.1 | 0.7    | 100.0 |
| <b>유형</b>                          |      |      |        |       |
| 공공기관                               | 86.1 | 13.9 | -      | 100.0 |
| 민간사업체                              | 70.6 | 28.5 | 0.8    | 100.0 |
| <b>성별</b>                          |      |      |        |       |
| 남성                                 | 74.8 | 24.5 | 0.7    | 100.0 |
| 여성                                 | 70.7 | 28.6 | 0.7    | 100.0 |
| <b>연령</b>                          |      |      |        |       |
| 20대 이하                             | 70.7 | 29.0 | 0.3    | 100.0 |
| 30대                                | 68.6 | 31.0 | 0.4    | 100.0 |
| 40대                                | 72.3 | 26.8 | 0.9    | 100.0 |
| 50대 이상                             | 79.4 | 19.6 | 1.0    | 100.0 |
| <b>직급</b>                          |      |      |        |       |
| 관리직                                | 74.8 | 24.3 | 0.9    | 100.0 |
| 일반직                                | 72.4 | 27.0 | 0.6    | 100.0 |
| 모름/무응답                             | 66.5 | 30.8 | 2.7    | 100.0 |
| <b>고용형태</b>                        |      |      |        |       |
| 정규직                                | 73.4 | 25.9 | 0.7    | 100.0 |
| 비정규직                               | 71.5 | 27.9 | 0.7    | 100.0 |
| 모름/무응답                             | 73.8 | 24.2 | 2.0    | 100.0 |
| <b>공공기관 유형</b>                     |      |      |        |       |
| 국가기관                               | 87.9 | 12.1 | -      | 100.0 |
| 지방자치단체                             | 75.6 | 24.4 | -      | 100.0 |
| 초/중/고                              | 89.7 | 10.3 | -      | 100.0 |
| 대학                                 | 87.3 | 12.7 | -      | 100.0 |
| <b>민간사업체 업종</b>                    |      |      |        |       |
| 제조업                                | 74.7 | 24.2 | 1.1    | 100.0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66.6 | 32.7 | 0.7    | 100.0 |
| 개인서비스업                             | 62.8 | 37.0 | 0.2    | 100.0 |
| 유통서비스업                             | 70.9 | 27.5 | 1.6    | 100.0 |
| 사업서비스업                             | 68.9 | 30.6 | 0.5    | 100.0 |
| 사회서비스업                             | 72.1 | 27.1 | 0.9    | 100.0 |
| <b>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b>                |      |      |        |       |
| 30~99인                             | 70.4 | 28.2 | 1.4    | 100.0 |
| 100~299인                           | 69.3 | 29.9 | 0.7    | 100.0 |
| 300~499인                           | 70.5 | 29.3 | 0.2    | 100.0 |
| 500인 이상                            | 72.2 | 27.4 | 0.3    | 100.0 |

주: 백분율은 15,073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표 III-49〉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

(단위: %)

| 구분                             | 성희롱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 이전에 발생했던 성희롱 사건의 처리 (절차운영, 피해자 보호, 조사, 징계 등)도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 성희롱 전담기구 (없는 경우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이 낮기 때문에 | 성희롱 사건 처리를 위한 규정,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 성희롱 사건처리 절차가 준수 되거나 조사 등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 사건 축소나 은폐, 회유, 협박, 미온적 징계 등 공정한 사건 처리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 기타   | 모름/무응답 |
|--------------------------------|---------------------------------|-----------------------------------------------------------------|--------------------------------------|-------------------------------|------------------------------------------------|------------------------------------------------------|------|--------|
| 전 체                            | 19.4                            | 10.2                                                            | 27.9                                 | 21.3                          | 20.0                                           | 18.0                                                 | 2.3  | 1.7    |
| 유형                             |                                 |                                                                 |                                      |                               |                                                |                                                      |      |        |
| 공공기관                           | 25.6                            | 22.1                                                            | 23.5                                 | 11.3                          | 28.5                                           | 52.7                                                 | 8.3  | -      |
| 민간사업체                          | 18.8                            | 9.0                                                             | 28.3                                 | 22.3                          | 19.2                                           | 14.5                                                 | 1.7  | 1.9    |
| 성별                             |                                 |                                                                 |                                      |                               |                                                |                                                      |      |        |
| 남성                             | 18.8                            | 8.5                                                             | 28.3                                 | 22.3                          | 19.1                                           | 14.2                                                 | 1.7  | 2.2    |
| 여성                             | 20.2                            | 12.5                                                            | 27.3                                 | 19.9                          | 21.3                                           | 23.1                                                 | 3.0  | 1.0    |
| 연령                             |                                 |                                                                 |                                      |                               |                                                |                                                      |      |        |
| 20대 이하                         | 18.4                            | 12.2                                                            | 28.9                                 | 21.4                          | 20.4                                           | 17.2                                                 | 1.4  | 0.8    |
| 30대                            | 17.5                            | 9.2                                                             | 26.0                                 | 20.9                          | 19.9                                           | 13.5                                                 | 3.0  | 3.3    |
| 40대                            | 18.9                            | 8.1                                                             | 30.5                                 | 24.1                          | 19.4                                           | 13.2                                                 | 0.6  | 0.8    |
| 50대 이상                         | 23.4                            | 13.4                                                            | 26.5                                 | 17.9                          | 20.6                                           | 31.4                                                 | 4.0  | 1.2    |
| 직급                             |                                 |                                                                 |                                      |                               |                                                |                                                      |      |        |
| 관리직                            | 15.8                            | 8.6                                                             | 29.8                                 | 26.8                          | 18.2                                           | 13.6                                                 | 2.0  | 1.7    |
| 일반직                            | 21.2                            | 10.9                                                            | 26.9                                 | 18.7                          | 20.9                                           | 20.1                                                 | 2.4  | 1.6    |
| 모름/무응답                         | 5.5                             | 18.4                                                            | 36.4                                 | 19.4                          | 9.1                                            | 4.6                                                  | 3.2  | 6.6    |
| 고용형태                           |                                 |                                                                 |                                      |                               |                                                |                                                      |      |        |
| 정규직                            | 19.0                            | 10.3                                                            | 27.8                                 | 21.7                          | 20.0                                           | 17.4                                                 | 2.1  | 1.8    |
| 비정규직                           | 23.2                            | 9.9                                                             | 28.1                                 | 17.8                          | 19.8                                           | 23.6                                                 | 3.4  | 0.8    |
| 모름/무응답                         | 3.4                             | 7.3                                                             | 35.4                                 | 25.1                          | 21.0                                           | 7.9                                                  | -    | 2.6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
| 국가기관                           | 23.9                            | 25.8                                                            | 32.8                                 | 9.2                           | 20.4                                           | 46.0                                                 | 14.4 | -      |
| 지방자치단체                         | 24.9                            | 30.0                                                            | 19.7                                 | 10.1                          | 33.1                                           | 51.3                                                 | 3.1  | -      |
| 초/중/고                          | 23.0                            | 11.0                                                            | 26.3                                 | 16.6                          | 25.0                                           | 53.9                                                 | 12.8 | -      |
| 대학                             | 33.3                            | 20.0                                                            | 14.1                                 | 7.7                           | 35.6                                           | 62.3                                                 | 3.5  | -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
| 제조업                            | 20.3                            | 8.4                                                             | 29.8                                 | 24.4                          | 19.5                                           | 14.8                                                 | 2.4  | 3.9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17.6                            | 8.4                                                             | 20.5                                 | 28.2                          | 17.3                                           | 18.3                                                 | 1.5  | 1.9    |
| 개인서비스업                         | 16.7                            | 11.5                                                            | 23.1                                 | 24.5                          | 20.7                                           | 11.7                                                 | 0.8  | 0.8    |
| 유통서비스업                         | 17.5                            | 13.7                                                            | 31.5                                 | 17.0                          | 21.1                                           | 12.3                                                 | 0.4  | 0.1    |
| 사업서비스업                         | 16.4                            | 7.3                                                             | 32.2                                 | 22.6                          | 18.5                                           | 10.6                                                 | 0.2  | 0.8    |
| 사회서비스업                         | 23.2                            | 8.5                                                             | 26.9                                 | 16.7                          | 18.9                                           | 21.0                                                 | 4.3  | 2.4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
| 30~99인                         | 22.1                            | 9.6                                                             | 28.6                                 | 21.8                          | 16.8                                           | 14.8                                                 | 0.9  | 2.2    |
| 100~299인                       | 19.2                            | 10.9                                                            | 32.5                                 | 22.9                          | 15.9                                           | 13.4                                                 | 1.4  | 1.3    |
| 300~499인                       | 16.0                            | 6.3                                                             | 30.8                                 | 22.0                          | 20.5                                           | 14.9                                                 | 1.2  | 0.2    |
| 500인 이상                        | 14.3                            | 7.0                                                             | 22.5                                 | 22.4                          | 25.7                                           | 15.3                                                 | 3.3  | 2.6    |

주: 1) 백분율은 4,116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직장내 성희롱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지 않는 이유는 복수응답 분석을 실시함.

## 바. 성희롱 방지 대책에 대한 인지도와 정책 수요

### 1) 정부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 대책 인지도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5개의 주요 대책에 대해 인지도를 조사하였다. 주요 대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는 신고센터 운영, (2) 성희롱·성폭력 사건발생 기관의 공정한 사건처리에 대한 현장점검 및 행정지도 강화,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표준지침 마련 등 제도적 기반 강화, (4) 공공부문의 가해자 제재 및 처벌 강화,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주 책임 강화(위반 시 과태료 상향 등), (5) 관리자 교육 확대 등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내용을 잘 알고 있다’의 응답을 기준으로 결과를 보면,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는 신고센터 운영’은 41.7%,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기관의 공정한 사건처리에 대한 현장점검 및 행정지도 강화’는 33.4%,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표준지침 마련 등 제도적 기반 강화’는 32.8%, ‘공공부문의 가해자 제재 및 처벌 강화,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주 책임 강화’는 40.3%, ‘관리자 교육 확대 등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는 49.0%였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50%에 미치지 못해, 절반 정도는 전혀 모르거나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보면 모든 문항에서 공공기관에 비해 민간사업체에서의 인지도가 낮았다.

성별에서는 ‘공공부문의 가해자 제재 및 처벌 강화,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주 책임 강화’와 ‘관리자 교육 확대 등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에서는 5% 내외, 나머지는 2% 내외의 차이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대부분의 문항에서 연령대가 낮을수록, 고용형태에서는 비정규직에서, 공공기관 유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정부의 성희롱 방지 대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다.

미투 이후 우리 사회의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노력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일반 국민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정책홍보가 아니라, 직장이라는 일종의 삶의 터전에서 성희롱 방지를 위해 우리 모두가 이행해야 하고 혹은 성희롱 피해 경험시 이용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므로, 보다 더 잘 인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



〈표 III-50〉 정부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대책 인지 여부

(단위: %)

| 구분                                 | 성희롱/성폭력<br>피해 신고를<br>할 수 있는<br>신고센터 운영 | 성희롱/성폭력<br>사건 발생<br>기관의 공정한<br>사건처리에<br>대한 현장점검<br>및 행정지도<br>강화 | 2차 피해<br>방지를 위한<br>표준지침<br>마련 등<br>제도적 기반<br>강화 | 공공부문의<br>가해자 제재 및<br>처벌 강화,<br>성희롱/성폭력<br>방지를 위한<br>사업주 책임<br>강화 | 관리자 교육<br>확대 등 성희롱<br>예방교육 강화 |
|------------------------------------|----------------------------------------|-----------------------------------------------------------------|-------------------------------------------------|------------------------------------------------------------------|-------------------------------|
| 전 체                                | 41.7                                   | 33.4                                                            | 32.8                                            | 40.3                                                             | 49.0                          |
| 유형                                 |                                        |                                                                 |                                                 |                                                                  |                               |
| 공공기관                               | 51.1                                   | 44.4                                                            | 42.8                                            | 46.1                                                             | 58.2                          |
| 민간사업체                              | 39.8                                   | 31.2                                                            | 30.8                                            | 39.1                                                             | 47.2                          |
| 성별                                 |                                        |                                                                 |                                                 |                                                                  |                               |
| 남자                                 | 42.0                                   | 33.6                                                            | 33.6                                            | 42.5                                                             | 50.6                          |
| 여자                                 | 41.1                                   | 33.0                                                            | 31.6                                            | 36.9                                                             | 46.5                          |
| 연령                                 |                                        |                                                                 |                                                 |                                                                  |                               |
| 20대 이하                             | 32.5                                   | 24.6                                                            | 28.1                                            | 34.5                                                             | 40.1                          |
| 30대                                | 41.1                                   | 30.0                                                            | 28.2                                            | 38.2                                                             | 47.7                          |
| 40대                                | 40.2                                   | 33.2                                                            | 33.5                                            | 40.8                                                             | 48.4                          |
| 50대 이상                             | 47.3                                   | 40.2                                                            | 38.3                                            | 44.1                                                             | 54.5                          |
| 직급                                 |                                        |                                                                 |                                                 |                                                                  |                               |
| 관리직                                | 44.6                                   | 37.6                                                            | 37.4                                            | 45.3                                                             | 53.4                          |
| 일반직                                | 40.1                                   | 31.2                                                            | 30.4                                            | 37.7                                                             | 46.9                          |
| 모름/무응답                             | 40.0                                   | 33.0                                                            | 40.4                                            | 38.7                                                             | 36.0                          |
| 고용형태                               |                                        |                                                                 |                                                 |                                                                  |                               |
| 정규직                                | 42.3                                   | 34.0                                                            | 33.2                                            | 40.9                                                             | 49.5                          |
| 비정규직                               | 35.5                                   | 27.2                                                            | 28.7                                            | 34.1                                                             | 44.3                          |
| 모름/무응답                             | 48.8                                   | 43.0                                                            | 47.5                                            | 57.5                                                             | 54.1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국가기관                               | 53.8                                   | 49.4                                                            | 48.1                                            | 50.6                                                             | 60.6                          |
| 지방자치단체                             | 41.3                                   | 34.2                                                            | 37.5                                            | 36.2                                                             | 55.1                          |
| 초/중/고                              | 51.2                                   | 46.6                                                            | 43.4                                            | 48.5                                                             | 57.4                          |
| 대학                                 | 57.2                                   | 43.5                                                            | 39.9                                            | 45.4                                                             | 59.8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제조업                                | 36.5                                   | 28.4                                                            | 32.5                                            | 38.6                                                             | 45.0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44.7                                   | 30.1                                                            | 28.6                                            | 40.0                                                             | 46.9                          |
| 개인서비스업                             | 36.5                                   | 29.0                                                            | 32.0                                            | 40.3                                                             | 47.2                          |
| 유통서비스업                             | 41.8                                   | 33.6                                                            | 33.9                                            | 42.6                                                             | 49.6                          |
| 사업서비스업                             | 42.4                                   | 33.8                                                            | 30.6                                            | 41.7                                                             | 50.2                          |
| 사회서비스업                             | 38.6                                   | 32.0                                                            | 27.1                                            | 33.3                                                             | 45.2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30~99인                             | 35.1                                   | 29.0                                                            | 29.6                                            | 36.6                                                             | 44.9                          |
| 100~299인                           | 37.3                                   | 29.3                                                            | 30.0                                            | 39.7                                                             | 49.3                          |
| 300~499인                           | 40.4                                   | 30.0                                                            | 32.1                                            | 44.6                                                             | 45.3                          |
| 500인 이상                            | 48.7                                   | 36.6                                                            | 33.0                                            | 40.5                                                             | 49.0                          |

주: 1) 백분율은 15,073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결과표를 재구성함.

## 2) 정부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 대책의 실효성

정부의 성희롱 방지를 위한 주요 대책 5개 모두에 대해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정부의 성희롱 방지 대책이 직장 내 성희롱 방지에 얼마나 도움되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매우 도움되었다’는 응답이 58.6%, ‘약간 도움되었다’는 응답이 34.5%로 전체적으로 93.1%가 ‘도움되었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9명은 정부 대책이 직장 내 성희롱 방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소속기관 유형이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다.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도움이 되었다(매우 도움 되었다+약간 도움 되었다)는 응답이 낮았다. 20대 이하 87.4%, 30대 88.2%, 40대 93.8%, 50대 이상 96.0%였다. 직급, 고용형태 등에서는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공공기관 유형별로 대학에서 다소 낮았지만 차이가 크지 않았다. 민간사업체 업종에서는 제조업에서 다소 낮았고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에서는 100~299인(89.6%)에서 낮았다.

〈표 III-51〉 정부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대책의 실효성

(단위: %)

| 구분                                 | 매우<br>도움이<br>되었다 | 약간<br>도움이<br>되었다 | 별로<br>도움이<br>되지 않았다 | 전혀<br>도움이<br>되지 않았다 | 잘 모르겠다 | 계     |
|------------------------------------|------------------|------------------|---------------------|---------------------|--------|-------|
| 전 체                                | 58.6             | 34.5             | 3.9                 | 0.5                 | 2.4    | 100.0 |
| 유형                                 |                  |                  |                     |                     |        |       |
| 공공기관                               | 68.8             | 26.9             | 2.1                 | 0.3                 | 1.9    | 100.0 |
| 민간사업체                              | 54.3             | 37.7             | 4.7                 | 0.6                 | 2.7    | 100.0 |
| 성별                                 |                  |                  |                     |                     |        |       |
| 남성                                 | 59.6             | 33.4             | 4.3                 | 0.7                 | 2.0    | 100.0 |
| 여성                                 | 56.7             | 36.7             | 3.1                 | 0.3                 | 3.2    | 100.0 |
| 연령                                 |                  |                  |                     |                     |        |       |
| 20대 이하                             | 46.9             | 40.5             | 5.8                 | 3.3                 | 3.5    | 100.0 |
| 30대                                | 45.1             | 43.1             | 9.4                 | 0.4                 | 2.1    | 100.0 |
| 40대                                | 57.5             | 36.3             | 2.9                 | 0.0                 | 3.3    | 100.0 |
| 50대 이상                             | 67.7             | 28.3             | 1.6                 | 0.5                 | 1.9    | 100.0 |
| 직급                                 |                  |                  |                     |                     |        |       |
| 관리직                                | 62.0             | 34.1             | 2.7                 | 0.1                 | 1.1    | 100.0 |
| 일반직                                | 56.3             | 34.9             | 4.8                 | 0.8                 | 3.3    | 100.0 |
| 모름/무응답                             | 52.6             | 30.2             | -                   | -                   | 17.2   | 100.0 |
| 고용형태                               |                  |                  |                     |                     |        |       |
| 정규직                                | 58.8             | 34.6             | 3.9                 | 0.6                 | 2.2    | 100.0 |
| 비정규직                               | 57.0             | 34.5             | 4.2                 | 0.2                 | 4.1    | 100.0 |
| 모름/무응답                             | 54.1             | 29.4             | 4.7                 | -                   | 11.8   | 100.0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국가기관                               | 71.5             | 24.9             | 1.6                 | 0.3                 | 1.7    | 100.0 |
| 지방자치단체                             | 68.9             | 26.3             | 1.8                 | 0.2                 | 2.8    | 100.0 |
| 초/중/고                              | 67.5             | 28.7             | 1.7                 | 0.2                 | 1.8    | 100.0 |
| 대학                                 | 67.1             | 26.7             | 4.0                 | 0.4                 | 1.8    | 100.0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제조업                                | 44.4             | 44.0             | 7.8                 | 0.7                 | 3.1    | 100.0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59.9             | 34.5             | 3.2                 | 0.1                 | 2.3    | 100.0 |
| 개인서비스업                             | 66.5             | 26.6             | 1.9                 | 1.7                 | 3.2    | 100.0 |
| 유통서비스업                             | 61.7             | 31.8             | 3.9                 | 1.7                 | 0.8    | 100.0 |
| 사업서비스업                             | 57.0             | 37.0             | 3.5                 | 0.2                 | 2.2    | 100.0 |
| 사회서비스업                             | 55.6             | 37.7             | 2.8                 | -                   | 3.9    | 100.0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30~99인                             | 55.6             | 36.6             | 4.4                 | 0.1                 | 3.3    | 100.0 |
| 100~299인                           | 52.6             | 37.0             | 4.8                 | 0.9                 | 4.7    | 100.0 |
| 300~499인                           | 53.3             | 43.0             | 2.9                 | 0.1                 | 0.7    | 100.0 |
| 500인 이상                            | 54.6             | 38.0             | 5.5                 | 1.2                 | 0.6    | 100.0 |

주: 백분율은 3,220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 3) 지난 3년간 직장내 성희롱 관련 변화

지난 3년간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된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13개 문항에 대해 조사하였다. 13개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직장내 성희롱 관련 기구가 확대됨. (2) 직장내 성희롱 사건처리 절차 준수, 피해자 보호 등 기관(회사)의 사건처리역량이 향상됨. (3) 사업주(기관장)/관리자들의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노력과 관심이 증가함. (4) 조직구성원의 직장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5) 피해자 비난 등 2차 피해가 감소함. (6) 성희롱 행위 발생 시, 즉시 문제를 제기하는 분위기가 조성됨. (7) 가해자 입장이 아닌, 피해자를 옹호/지지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분위기가 조성됨. (8) 직장내 성희롱은 성차별적인 조직문화와 구조에 의해 발생한다고 인식하는 분위기가 조성됨. (9) 고충처리기구(고충상담창구, 사이버 신고센터 등)를 이용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됨. (10)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도가 높아짐. (11) 개인의 사(참석 여부, 음주여부 등)를 존중하는 회식문화로 변화함. (12) 성차별적인 언행이나 관행이 줄어들음, (13) 성적불쾌감을 유발하는 성적농담, 신체접촉 등을 조심하는 분위기가 이전보다 강해짐.

13개 문항에 대해 ‘그렇다’(매우 그렇다 + 약간 그렇다)의 응답 결과를 기준으로 문항의 내용에 대한 동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10명 중 6명 정도가 직장내 성희롱 관련 기구가 확대되거나 사건처리 역량이 향상되었다고 보았다. 10명 중 7명은 사업주/관리자의 직장내 성희롱 방지 위한 노력과 관심이 증가했고, 피해자 입장에서 성희롱 사건을 바라보고 피해자 비난 등 2차 피해가 줄었으며, 성차별적인 조직문화와 구조에서 성희롱이 발생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10명 중 8명 이상은 개인 의사를 존중하는 회식문화 형성, 성차별적 언행이나 관행의 감소, 성적불쾌감을 유발하는 언행을 조심하는 조직문화 형성 등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조직구성원들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도가 높아졌고, 직장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고 보았다.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의 경우 모든 문항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80%를 상회하여 전반적으로 3년 동안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조직구성원의 직장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도가 높아짐’, ‘개인 의사를 존중하는 회식문화로 변화함’, ‘성차별적인 언행이나 관행이 줄어들음’, ‘성적불쾌감을 유발하는 성적 농담, 신체적 접촉 등을 조심하는 분위기가 강해짐’ 등에서 90%를 상회하는 응답을 보였다. 공공기관에 비해 3년 동안의 변화에 대한 민간사업체의 응답률이 낮았는데, 특히 ‘직장내 성희롱 관련 기구가 확대됨’(60.0%), ‘직장내 성희롱 사건처리 절차 준수, 피해자 보호 등 기관(회사)의 사건처리 역량이 향상됨’(64.4%), ‘고충처리기구를

이용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됨’(67.7%), ‘사업주/관리자들의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노력과 관심이 증가함’(70.3%)은 공공기관과 약 20%p의 차이를 보였다. 반면 ‘개인 의사를 존중하는 회식문화로 변화함’, ‘성차별적인 언행이나 관행이 줄어들’, ‘성적불쾌감을 유발하는 성적 농담, 신체적 접촉 등을 조심하는 분위기가 강해짐’ 등에서 80%를 상회하며 공공기관과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대부분(12개 문항)에서 남성이 다소 높았는데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다수의 문항들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낮았고, 20대 이하와 50대 이상 간의 응답률 격차가 10%p 이상이어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변화에 대한 세대 간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응답이 가장 낮았던 20대 이하의 응답 결과를 중심으로 보면 ‘개인 의사를 존중하는 회식문화로 변화함’, ‘성차별적인 언행이나 관행이 줄어들’, ‘성적불쾌감을 유발하는 성적 농담, 신체적 접촉 등을 조심하는 분위기가 강해짐’ 등에 대해서만 80%를 상회하였고, 대부분은 60%대였다. 젊은 층은 개인을 존중하고 성차별적인 언행이나 관행,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행 등은 감소되었지만, 직장내 성희롱 대처와 관련된 인식이나 인프라/시스템에서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모두가 체감하는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정책적 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모든 문항에서 국가기관과 초/중/고는 공공기관 평균을 상회한 반면,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공공기관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민간사업체 업종에서는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개인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에서,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에서는 30~99인에서 민간사업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제시된 문항은 3년간 성희롱 방지를 위해 추진된 제도정책의 결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는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 모두 개인 의사 존중, 성차별적 언행과 관행 감소 등의 조직문화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그 외 성희롱 방지 및 사건처리 시스템의 구축·운영, 성희롱 사건과 관련된 기관장 및 구성원의 인식 등에서는 공공기관의 구성원들이 체감하는 변화만큼 민간사업체 구성원들은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해 민간사업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표 Ⅲ-52〉 지난 3년간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변화 - 계속

(단위: %)

| 구분                                 | 직장 내<br>성희롱<br>관련<br>기구가<br>확대됨 | 직장 내<br>성희롱<br>사건처리<br>절차 준수,<br>피해자<br>보호 등 기관<br>(회사)의<br>사건처리<br>역량이<br>향상됨 | 사업주/<br>관리자들의<br>직장 내<br>성희롱<br>방지를<br>위한<br>노력과<br>관심이<br>증가함 | 조직<br>구성원의<br>직장 내<br>성희롱<br>문제에<br>대한<br>관심이<br>높아짐 | 피해자<br>비난 등<br>2차<br>피해가<br>감소함 | 성희롱<br>행위<br>발생 시,<br>즉시<br>문제를<br>제기하는<br>분위기가<br>조성됨 | 가해자<br>입장이<br>아닌,<br>피해자를<br>옹호/<br>지지하고<br>피해자<br>입장에서<br>사건을<br>바라보는<br>분위기가<br>조성됨 |
|------------------------------------|---------------------------------|--------------------------------------------------------------------------------|----------------------------------------------------------------|------------------------------------------------------|---------------------------------|--------------------------------------------------------|---------------------------------------------------------------------------------------|
| 전 체                                | 63.9                            | 68.0                                                                           | 73.5                                                           | 76.2                                                 | 71.0                            | 72.0                                                   | 74.1                                                                                  |
| 유형                                 |                                 |                                                                                |                                                                |                                                      |                                 |                                                        |                                                                                       |
| 공공기관                               | 83.2                            | 85.5                                                                           | 89.7                                                           | 90.3                                                 | 85.6                            | 86.5                                                   | 88.6                                                                                  |
| 민간사업체                              | 60.0                            | 64.4                                                                           | 70.3                                                           | 73.3                                                 | 68.0                            | 69.1                                                   | 71.2                                                                                  |
| 성별                                 |                                 |                                                                                |                                                                |                                                      |                                 |                                                        |                                                                                       |
| 남성                                 | 63.8                            | 68.9                                                                           | 73.5                                                           | 76.2                                                 | 71.7                            | 73.2                                                   | 75.2                                                                                  |
| 여성                                 | 64.0                            | 66.5                                                                           | 73.5                                                           | 76.0                                                 | 69.8                            | 70.2                                                   | 72.4                                                                                  |
| 연령                                 |                                 |                                                                                |                                                                |                                                      |                                 |                                                        |                                                                                       |
| 20대 이하                             | 57.0                            | 60.7                                                                           | 64.1                                                           | 69.9                                                 | 67.7                            | 67.2                                                   | 69.9                                                                                  |
| 30대                                | 59.7                            | 64.6                                                                           | 71.6                                                           | 74.0                                                 | 67.9                            | 68.5                                                   | 71.2                                                                                  |
| 40대                                | 61.4                            | 66.0                                                                           | 72.1                                                           | 73.9                                                 | 69.0                            | 70.1                                                   | 71.8                                                                                  |
| 50대 이상                             | 72.9                            | 76.0                                                                           | 80.6                                                           | 82.9                                                 | 77.1                            | 79.0                                                   | 80.8                                                                                  |
| 직급                                 |                                 |                                                                                |                                                                |                                                      |                                 |                                                        |                                                                                       |
| 관리직                                | 63.9                            | 68.5                                                                           | 73.7                                                           | 76.6                                                 | 71.0                            | 73.8                                                   | 74.9                                                                                  |
| 일반직                                | 63.9                            | 67.8                                                                           | 73.5                                                           | 76.1                                                 | 71.2                            | 71.2                                                   | 73.8                                                                                  |
| 모름/무응답                             | 54.8                            | 51.5                                                                           | 62.0                                                           | 59.9                                                 | 48.5                            | 49.4                                                   | 60.0                                                                                  |
| 고용형태                               |                                 |                                                                                |                                                                |                                                      |                                 |                                                        |                                                                                       |
| 정규직                                | 64.7                            | 68.5                                                                           | 74.1                                                           | 76.8                                                 | 71.8                            | 72.9                                                   | 75.1                                                                                  |
| 비정규직                               | 55.8                            | 62.8                                                                           | 68.6                                                           | 70.5                                                 | 63.8                            | 63.5                                                   | 64.8                                                                                  |
| 모름/무응답                             | 76.6                            | 69.6                                                                           | 76.3                                                           | 73.9                                                 | 74.5                            | 74.6                                                   | 75.1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 국가기관                               | 86.9                            | 87.9                                                                           | 92.2                                                           | 92.7                                                 | 89.0                            | 89.2                                                   | 89.3                                                                                  |
| 지방자치단체                             | 79.2                            | 81.0                                                                           | 86.7                                                           | 87.8                                                 | 81.3                            | 79.6                                                   | 85.6                                                                                  |
| 초/중/고                              | 83.3                            | 86.3                                                                           | 91.6                                                           | 92.1                                                 | 88.6                            | 90.0                                                   | 91.5                                                                                  |
| 대학                                 | 82.0                            | 85.4                                                                           | 85.8                                                           | 86.3                                                 | 79.2                            | 83.1                                                   | 85.2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 제조업                                | 62.3                            | 68.2                                                                           | 72.3                                                           | 75.3                                                 | 70.6                            | 74.1                                                   | 74.7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54.5                            | 63.9                                                                           | 68.0                                                           | 73.2                                                 | 66.8                            | 65.5                                                   | 67.4                                                                                  |
| 개인서비스업                             | 54.8                            | 59.5                                                                           | 63.5                                                           | 69.9                                                 | 62.3                            | 64.4                                                   | 68.2                                                                                  |
| 유통서비스업                             | 63.9                            | 64.0                                                                           | 71.6                                                           | 74.6                                                 | 69.3                            | 69.5                                                   | 72.4                                                                                  |
| 사업서비스업                             | 59.9                            | 61.6                                                                           | 69.2                                                           | 71.2                                                 | 66.5                            | 67.2                                                   | 69.7                                                                                  |
| 사회서비스업                             | 59.3                            | 65.0                                                                           | 72.1                                                           | 73.7                                                 | 68.6                            | 67.6                                                   | 70.2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 30~99인                             | 57.3                            | 62.4                                                                           | 69.0                                                           | 71.1                                                 | 66.9                            | 68.8                                                   | 71.0                                                                                  |
| 100~299인                           | 60.6                            | 65.0                                                                           | 70.0                                                           | 72.7                                                 | 66.5                            | 69.0                                                   | 70.8                                                                                  |
| 300~499인                           | 59.4                            | 64.0                                                                           | 70.4                                                           | 73.0                                                 | 70.5                            | 69.4                                                   | 73.2                                                                                  |
| 500인 이상                            | 63.4                            | 66.8                                                                           | 72.3                                                           | 77.0                                                 | 70.4                            | 69.4                                                   | 71.2                                                                                  |

〈표 Ⅲ-52〉 지난 3년간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변화

(단위: %)

| 구분                                 | 직장 내<br>성희롱은<br>성차별적인<br>조직문화와<br>구조에 의해<br>발생한다고<br>인식하는<br>분위기가<br>조성됨 | 고충처리기구<br>(고충상담창구,<br>사이버신고<br>센터 등)를<br>이용하려는<br>분위기가<br>조성됨 | 성희롱<br>예방교육<br>참여도가<br>높아짐 | 개인 의사<br>(참석 여부,<br>음주 여부<br>등)를<br>존중하는<br>화식문화로<br>변화함 | 성차별적인<br>언행이나<br>관행이<br>줄어듦 | 성적<br>불쾌감을<br>유발하는<br>성적농담,<br>신체접촉<br>등을<br>조심하는<br>분위기가<br>이전보다<br>강해짐 |
|------------------------------------|--------------------------------------------------------------------------|---------------------------------------------------------------|----------------------------|----------------------------------------------------------|-----------------------------|--------------------------------------------------------------------------|
| 전 체                                | 74.7                                                                     | 70.9                                                          | 78.5                       | 83.3                                                     | 86.9                        | 86.6                                                                     |
| 유형                                 |                                                                          |                                                               |                            |                                                          |                             |                                                                          |
| 공공기관                               | 86.6                                                                     | 86.6                                                          | 90.0                       | 92.6                                                     | 93.1                        | 90.3                                                                     |
| 민간사업체                              | 72.3                                                                     | 67.7                                                          | 76.2                       | 81.4                                                     | 85.6                        | 85.9                                                                     |
| 성별                                 |                                                                          |                                                               |                            |                                                          |                             |                                                                          |
| 남성                                 | 75.4                                                                     | 71.0                                                          | 79.0                       | 84.1                                                     | 87.9                        | 87.6                                                                     |
| 여성                                 | 73.7                                                                     | 70.6                                                          | 77.6                       | 82.0                                                     | 85.2                        | 85.1                                                                     |
| 연령                                 |                                                                          |                                                               |                            |                                                          |                             |                                                                          |
| 20대 이하                             | 68.8                                                                     | 66.5                                                          | 74.2                       | 80.3                                                     | 86.9                        | 88.0                                                                     |
| 30대                                | 72.5                                                                     | 66.2                                                          | 76.3                       | 80.7                                                     | 85.4                        | 86.4                                                                     |
| 40대                                | 73.9                                                                     | 69.7                                                          | 77.3                       | 83.2                                                     | 86.4                        | 86.0                                                                     |
| 50대 이상                             | 80.0                                                                     | 78.0                                                          | 83.4                       | 86.9                                                     | 88.7                        | 86.9                                                                     |
| 직급                                 |                                                                          |                                                               |                            |                                                          |                             |                                                                          |
| 관리직                                | 75.5                                                                     | 71.2                                                          | 78.7                       | 84.5                                                     | 87.0                        | 86.6                                                                     |
| 일반직                                | 74.5                                                                     | 70.8                                                          | 78.5                       | 82.8                                                     | 86.9                        | 86.8                                                                     |
| 모름/무응답                             | 56.5                                                                     | 61.8                                                          | 65.1                       | 55.2                                                     | 69.9                        | 69.1                                                                     |
| 고용형태                               |                                                                          |                                                               |                            |                                                          |                             |                                                                          |
| 정규직                                | 75.5                                                                     | 71.4                                                          | 79.6                       | 83.8                                                     | 87.4                        | 87.2                                                                     |
| 비정규직                               | 67.7                                                                     | 65.7                                                          | 68.1                       | 79.3                                                     | 82.3                        | 81.6                                                                     |
| 모름/무응답                             | 70.2                                                                     | 73.2                                                          | 86.5                       | 76.1                                                     | 85.9                        | 86.4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국가기관                               | 88.3                                                                     | 89.1                                                          | 91.2                       | 93.9                                                     | 94.5                        | 91.7                                                                     |
| 지방자치단체                             | 81.8                                                                     | 79.2                                                          | 86.1                       | 88.5                                                     | 90.0                        | 87.9                                                                     |
| 초/중/고                              | 89.5                                                                     | 88.8                                                          | 92.1                       | 94.6                                                     | 94.8                        | 92.0                                                                     |
| 대학                                 | 83.6                                                                     | 86.5                                                          | 88.1                       | 91.2                                                     | 91.0                        | 87.6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제조업                                | 73.9                                                                     | 67.5                                                          | 77.6                       | 80.4                                                     | 84.9                        | 85.4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72.9                                                                     | 64.3                                                          | 73.2                       | 80.6                                                     | 83.5                        | 84.5                                                                     |
| 개인서비스업                             | 71.7                                                                     | 66.8                                                          | 74.0                       | 80.9                                                     | 88.4                        | 85.5                                                                     |
| 유통서비스업                             | 73.6                                                                     | 67.8                                                          | 77.0                       | 84.5                                                     | 88.8                        | 87.5                                                                     |
| 사업서비스업                             | 70.6                                                                     | 67.9                                                          | 75.3                       | 81.4                                                     | 86.2                        | 87.9                                                                     |
| 사회서비스업                             | 71.3                                                                     | 69.9                                                          | 77.3                       | 81.6                                                     | 84.0                        | 83.8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30~99인                             | 71.2                                                                     | 67.3                                                          | 75.4                       | 80.9                                                     | 84.1                        | 82.7                                                                     |
| 100~299인                           | 71.9                                                                     | 66.6                                                          | 75.3                       | 80.6                                                     | 85.5                        | 86.5                                                                     |
| 300~499인                           | 73.5                                                                     | 70.9                                                          | 74.7                       | 80.3                                                     | 87.9                        | 88.1                                                                     |
| 500인 이상                            | 74.0                                                                     | 68.3                                                          | 78.5                       | 83.2                                                     | 87.2                        | 89.0                                                                     |

주: 1) 백분율은 15,073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각 문항에 대해 '약간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응답을 합하여 결과표를 재구성함.

#### 4)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

##### 가)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정책의 우선순위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1순위)은 ‘피해자 보호’가 32.7%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조직문화 개선’(19.6%),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18.7%), ‘사업주/기관장 책임 강화’(13.9%) 순이었다. 소속기관 유형, 성별, 연령, 직급, 고용형태 등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고 대체로 전체 응답 경향과 유사했다.



〈표 III-53〉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1순위)

(단위: %)

| 구분                                 | 사업주/<br>기관장<br>책임<br>강화 | 피해자<br>보호 | 조직<br>문화<br>개선 | 행위자에<br>대한<br>엄정한<br>징계 | 상당<br>활성화<br>(두려움<br>없는<br>신고) | 사건<br>처리의<br>공정성<br>강화 | 2차<br>피해<br>방지 | 기타  | 모름/<br>무응답 | 계     |
|------------------------------------|-------------------------|-----------|----------------|-------------------------|--------------------------------|------------------------|----------------|-----|------------|-------|
| 전 체                                | 13.9                    | 32.7      | 19.6           | 18.7                    | 6.3                            | 6.0                    | 2.0            | 0.2 | 0.6        | 100.0 |
| 유형                                 |                         |           |                |                         |                                |                        |                |     |            |       |
| 공공기관                               | 12.9                    | 35.8      | 21.7           | 17.5                    | 3.2                            | 5.4                    | 3.2            | 0.3 | -          | 100.0 |
| 민간사업체                              | 14.1                    | 32.1      | 19.2           | 19.0                    | 6.9                            | 6.1                    | 1.7            | 0.2 | 0.8        | 100.0 |
| 성별                                 |                         |           |                |                         |                                |                        |                |     |            |       |
| 남성                                 | 14.6                    | 32.2      | 20.6           | 18.0                    | 6.0                            | 5.8                    | 2.1            | 0.2 | 0.5        | 100.0 |
| 여성                                 | 12.8                    | 33.5      | 18.1           | 19.9                    | 6.7                            | 6.2                    | 1.8            | 0.1 | 0.8        | 100.0 |
| 연령                                 |                         |           |                |                         |                                |                        |                |     |            |       |
| 20대 이하                             | 9.2                     | 35.6      | 17.5           | 19.9                    | 10.2                           | 5.0                    | 1.9            | 0.1 | 0.5        | 100.0 |
| 30대                                | 14.3                    | 30.5      | 20.3           | 19.2                    | 6.4                            | 6.7                    | 1.4            | 0.2 | 0.9        | 100.0 |
| 40대                                | 15.3                    | 31.9      | 19.7           | 18.1                    | 6.2                            | 6.1                    | 2.0            | 0.1 | 0.5        | 100.0 |
| 50대 이상                             | 14.0                    | 34.4      | 19.8           | 18.4                    | 4.6                            | 5.5                    | 2.5            | 0.2 | 0.5        | 100.0 |
| 직급                                 |                         |           |                |                         |                                |                        |                |     |            |       |
| 관리직                                | 14.3                    | 30.3      | 21.9           | 18.4                    | 6.7                            | 6.4                    | 1.7            | 0.1 | 0.3        | 100.0 |
| 일반직                                | 13.7                    | 33.9      | 18.5           | 18.9                    | 6.0                            | 5.8                    | 2.1            | 0.2 | 0.8        | 100.0 |
| 모름/무응답                             | 10.0                    | 34.6      | 18.4           | 22.6                    | 2.6                            | 8.6                    | 0.9            | -   | 2.4        | 100.0 |
| 고용형태                               |                         |           |                |                         |                                |                        |                |     |            |       |
| 정규직                                | 13.8                    | 32.2      | 20.0           | 18.7                    | 6.4                            | 6.2                    | 1.9            | 0.2 | 0.6        | 100.0 |
| 비정규직                               | 14.9                    | 36.9      | 16.5           | 19.2                    | 5.1                            | 4.1                    | 2.3            | 0.1 | 0.8        | 100.0 |
| 모름/무응답                             | 7.6                     | 41.6      | 11.5           | 15.9                    | 8.2                            | 6.9                    | 1.3            | -   | 6.9        | 100.0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            |       |
| 국가기관                               | 14.3                    | 36.5      | 22.2           | 16.5                    | 3.2                            | 3.7                    | 3.0            | 0.6 | -          | 100.0 |
| 지방자치단체                             | 14.4                    | 34.2      | 19.8           | 16.6                    | 4.5                            | 7.2                    | 3.1            | 0.1 | -          | 100.0 |
| 초/중/고                              | 10.0                    | 35.9      | 23.3           | 19.8                    | 2.4                            | 5.7                    | 2.9            | 0.1 | -          | 100.0 |
| 대학                                 | 15.3                    | 36.2      | 19.7           | 15.3                    | 3.6                            | 5.4                    | 4.2            | 0.4 | -          | 100.0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            |       |
| 제조업                                | 14.9                    | 30.7      | 19.4           | 18.8                    | 7.1                            | 5.8                    | 2.1            | 0.2 | 1.0        | 100.0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12.7                    | 33.2      | 17.1           | 18.3                    | 6.7                            | 8.4                    | 3.3            | 0.1 | 0.2        | 100.0 |
| 개인서비스업                             | 12.9                    | 35.3      | 13.2           | 22.7                    | 8.5                            | 5.8                    | 1.3            | 0.1 | 0.2        | 100.0 |
| 유통서비스업                             | 12.5                    | 32.0      | 18.8           | 22.6                    | 6.1                            | 5.4                    | 2.1            | -   | 0.5        | 100.0 |
| 사업서비스업                             | 16.7                    | 31.1      | 20.6           | 16.7                    | 6.9                            | 5.8                    | 1.1            | 0.3 | 0.9        | 100.0 |
| 사회서비스업                             | 11.6                    | 33.5      | 21.3           | 18.8                    | 6.3                            | 6.2                    | 1.2            | 0.2 | 0.9        | 100.0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            |       |
| 30~99인                             | 16.3                    | 32.5      | 16.8           | 19.4                    | 5.9                            | 6.4                    | 1.8            | 0.2 | 0.7        | 100.0 |
| 100~299인                           | 11.5                    | 36.0      | 17.8           | 20.7                    | 6.2                            | 5.2                    | 1.7            | 0.1 | 0.9        | 100.0 |
| 300~499인                           | 13.7                    | 29.9      | 19.2           | 19.9                    | 9.7                            | 5.5                    | 1.1            | 0.3 | 0.7        | 100.0 |
| 500인 이상                            | 13.8                    | 28.4      | 24.1           | 16.3                    | 8.0                            | 6.8                    | 1.9            | 0.1 | 0.7        | 100.0 |

주: 백분율은 15,073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나)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 수요: 조직문화 개선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사업주/기관장, 관리자를 포함한 전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27.3%)였다. 그다음은 ‘고용상 성차별 근절, 성평등 촉진을 위한 인사관리 제도 개선’(17.4%), ‘성차별적 조직문화 개선 위한 캠페인 실시’(13.0%), ‘성평등 감수성 진단 위한 자가체크리스트 보급 및 점검 활성화’(12.7%) 순이었다.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차이가 있었는데, 공공기관의 경우 ‘사업주/기관장, 관리자를 포함한 전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24.7%)가 가장 많았지만,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실시’(17.8%), ‘기관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건처리 결과 공표(관련자가 드러나거나 특정되지 않도록 함)’(14.3%), ‘성별 따른 업무 구분 관행 개선’(14.0%)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민간사업체는 전체 응답 경향과 유사했다.

성별에서는 여성의 경우 ‘사업주/기관장, 관리자를 포함한 전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23.9%)와 ‘고용상 성차별 근절, 성평등 촉진을 위한 인사관리 제도 개선’(20.7%)의 응답률이 비슷하여 성희롱 예방교육과 함께 조직내 성차별적 구조에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는 인사제도에 대한 수요도 높았다. 반면, 남성의 경우 ‘사업주/기관장, 관리자를 포함한 전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29.4%), ‘고용상 성차별 근절, 성평등 촉진을 위한 인사관리 제도 개선’(15.3%)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았다.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에서 ‘기관내 성희롱, 성폭력 발생시 사건처리 결과 공표(관련자가 드러나거나 특정되지 않도록 함)’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II-54〉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1순위)

(단위: %)

| 구분                                 | 사업주/<br>기관장,<br>관리자를<br>포함한<br>전 직원<br>대상<br>성희롱<br>예방<br>교육<br>강화 | 성<br>차별적<br>조직<br>문화<br>개선<br>위한<br>캠페인<br>실시 | 성평등<br>감수성<br>진단<br>위한<br>자가<br>체크<br>리스트<br>보급,<br>점검<br>활성화 | 고용상<br>성차별<br>근절,<br>성평등<br>촉진을<br>위한<br>인사<br>관리<br>제도<br>개선 | 성별에<br>따른<br>업무<br>구분<br>관행<br>개선<br>(예: 서무·<br>비서= 여성,<br>운전= 남성) | 성인지<br>감수성<br>높이기<br>위한<br>교육<br>실시 | 기관 내<br>성희롱,<br>성폭력<br>발생 시<br>사건처리<br>결과 공표<br>(관련자가<br>드러<br>나거나<br>특정되지<br>않도록<br>할) | 기타  | 모름/<br>무응답 | 계     |
|------------------------------------|--------------------------------------------------------------------|-----------------------------------------------|---------------------------------------------------------------|---------------------------------------------------------------|--------------------------------------------------------------------|-------------------------------------|-----------------------------------------------------------------------------------------|-----|------------|-------|
| 전 체                                | 27.3                                                               | 13.0                                          | 12.7                                                          | 17.4                                                          | 10.1                                                               | 9.7                                 | 9.3                                                                                     | 0.3 | 0.4        | 100.0 |
| 유형                                 |                                                                    |                                               |                                                               |                                                               |                                                                    |                                     |                                                                                         |     |            |       |
| 공공기관                               | 24.7                                                               | 6.3                                           | 6.0                                                           | 16.2                                                          | 14.0                                                               | 17.8                                | 14.3                                                                                    | 0.6 | -          | 100.0 |
| 민간사업체                              | 27.8                                                               | 14.3                                          | 14.1                                                          | 17.6                                                          | 9.3                                                                | 8.1                                 | 8.3                                                                                     | 0.2 | 0.4        | 100.0 |
| 성별                                 |                                                                    |                                               |                                                               |                                                               |                                                                    |                                     |                                                                                         |     |            |       |
| 남성                                 | 29.4                                                               | 13.8                                          | 12.9                                                          | 15.3                                                          | 9.7                                                                | 9.1                                 | 8.9                                                                                     | 0.4 | 0.4        | 100.0 |
| 여성                                 | 23.9                                                               | 11.6                                          | 12.3                                                          | 20.7                                                          | 10.7                                                               | 10.6                                | 9.8                                                                                     | 0.1 | 0.3        | 100.0 |
| 연령                                 |                                                                    |                                               |                                                               |                                                               |                                                                    |                                     |                                                                                         |     |            |       |
| 20대 이하                             | 20.9                                                               | 10.4                                          | 15.5                                                          | 21.8                                                          | 11.2                                                               | 8.2                                 | 10.7                                                                                    | 0.3 | 0.9        | 100.0 |
| 30대                                | 25.3                                                               | 14.9                                          | 14.5                                                          | 18.1                                                          | 9.8                                                                | 7.8                                 | 8.6                                                                                     | 0.4 | 0.4        | 100.0 |
| 40대                                | 28.0                                                               | 15.5                                          | 13.4                                                          | 17.1                                                          | 9.1                                                                | 8.8                                 | 7.8                                                                                     | 0.1 | 0.3        | 100.0 |
| 50대 이상                             | 30.7                                                               | 9.6                                           | 9.2                                                           | 15.3                                                          | 10.8                                                               | 13.0                                | 10.8                                                                                    | 0.3 | 0.2        | 100.0 |
| 직급                                 |                                                                    |                                               |                                                               |                                                               |                                                                    |                                     |                                                                                         |     |            |       |
| 관리직                                | 30.3                                                               | 13.6                                          | 12.7                                                          | 16.1                                                          | 9.5                                                                | 10.1                                | 7.4                                                                                     | 0.2 | 0.2        | 100.0 |
| 일반직                                | 25.7                                                               | 12.6                                          | 12.7                                                          | 18.1                                                          | 10.4                                                               | 9.6                                 | 10.3                                                                                    | 0.3 | 0.4        | 100.0 |
| 모름/무응답                             | 23.2                                                               | 15.9                                          | 14.2                                                          | 18.4                                                          | 10.5                                                               | 4.0                                 | 2.6                                                                                     | 5.0 | 6.3        | 100.0 |
| 고용형태                               |                                                                    |                                               |                                                               |                                                               |                                                                    |                                     |                                                                                         |     |            |       |
| 정규직                                | 27.3                                                               | 13.0                                          | 12.8                                                          | 17.0                                                          | 10.3                                                               | 9.7                                 | 9.2                                                                                     | 0.2 | 0.4        | 100.0 |
| 비정규직                               | 26.8                                                               | 12.3                                          | 12.1                                                          | 20.0                                                          | 8.0                                                                | 10.4                                | 10.0                                                                                    | 0.2 | 0.2        | 100.0 |
| 모름/무응답                             | 26.3                                                               | 13.1                                          | 9.3                                                           | 26.4                                                          | 12.6                                                               | 2.6                                 | 5.5                                                                                     | 3.3 | 1.0        | 100.0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            |       |
| 국가기관                               | 22.8                                                               | 6.7                                           | 6.9                                                           | 11.4                                                          | 17.5                                                               | 15.8                                | 18.1                                                                                    | 0.9 | -          | 100.0 |
| 지방자치단체                             | 22.4                                                               | 7.3                                           | 5.8                                                           | 18.5                                                          | 15.7                                                               | 9.7                                 | 20.4                                                                                    | 0.2 | -          | 100.0 |
| 초/중/고                              | 26.3                                                               | 5.4                                           | 5.4                                                           | 17.1                                                          | 12.5                                                               | 24.5                                | 8.5                                                                                     | 0.4 | -          | 100.0 |
| 대학                                 | 26.6                                                               | 6.7                                           | 6.2                                                           | 18.9                                                          | 10.7                                                               | 15.6                                | 14.4                                                                                    | 1.0 | -          | 100.0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            |       |
| 제조업                                | 29.5                                                               | 14.6                                          | 11.4                                                          | 15.1                                                          | 8.7                                                                | 8.5                                 | 10.9                                                                                    | 0.5 | 0.8        | 100.0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25.8                                                               | 14.2                                          | 17.6                                                          | 18.7                                                          | 7.5                                                                | 7.0                                 | 8.7                                                                                     | 0.0 | 0.4        | 100.0 |
| 개인서비스업                             | 25.6                                                               | 16.5                                          | 14.6                                                          | 19.7                                                          | 9.1                                                                | 7.5                                 | 6.5                                                                                     | 0.2 | 0.2        | 100.0 |
| 유통서비스업                             | 28.4                                                               | 14.7                                          | 15.6                                                          | 15.8                                                          | 9.6                                                                | 7.9                                 | 7.7                                                                                     | 0.0 | 0.3        | 100.0 |
| 사업서비스업                             | 28.8                                                               | 15.0                                          | 15.1                                                          | 17.2                                                          | 9.9                                                                | 8.7                                 | 5.2                                                                                     | 0.0 | 0.1        | 100.0 |
| 사회서비스업                             | 25.3                                                               | 11.6                                          | 13.6                                                          | 22.1                                                          | 10.1                                                               | 7.5                                 | 9.3                                                                                     | 0.1 | 0.5        | 100.0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            |       |
| 30~99인                             | 29.8                                                               | 14.5                                          | 15.2                                                          | 16.5                                                          | 8.1                                                                | 9.0                                 | 6.1                                                                                     | 0.4 | 0.4        | 100.0 |
| 100~299인                           | 28.1                                                               | 14.0                                          | 13.5                                                          | 17.6                                                          | 9.3                                                                | 7.3                                 | 9.5                                                                                     | 0.2 | 0.5        | 100.0 |
| 300~499인                           | 29.0                                                               | 16.7                                          | 13.0                                                          | 16.6                                                          | 8.5                                                                | 8.6                                 | 7.4                                                                                     | 0.0 | 0.2        | 100.0 |
| 500인 이상                            | 24.1                                                               | 13.5                                          | 13.3                                                          | 19.6                                                          | 11.1                                                               | 7.4                                 | 10.4                                                                                    | 0.0 | 0.6        | 100.0 |

주: 백분율은 15,073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 다)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 수요: 성희롱 피해 신고 활성화

성희롱 피해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사이버 상담, 별도공간 마련 등 안전한 상담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22.7%)과 ‘피해자 정보 공개,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따돌림 등 직장내 2차 피해 방지’(22.6%)였다. 그다음은 ‘고충상담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14.1%), ‘고충상담원의 전문성 및 성인지 감수성 강화’(12.3%) 순이었다.

소속기관 유형에서는 민간사업체가 전체 응답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공공기관에선 ‘인사, 업무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14.6%), ‘피해자 보호(휴가, 배치전환 등) 강화’(14.0%)의 응답이 전체 응답을 상회하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전체 응답 결과와 유사하였고 차이가 거의 없었다. 연령에서도 대체로 전체 응답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20대 이하의 경우 ‘피해자 정보 공개,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따돌림 등 직장내 2차 피해 방지’(27.9%)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표 III-55〉 성희롱 피해 신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1순위)

(단위: %)

| 구분                             | 사이버 상담, 별도 공간 마련 등 안전한 상담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 | 고충 상담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 고충 상담 원의 전문성 및 성인지 감수성 강화 | 피해자 정보 공개, 피해 자에 대한 비난과 따돌림 등 직장 내 2차 피해 방지 | 인사, 업무 등에서 피해 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 피해자 보호 (휴가, 배치 전환 등) 강화 | 피해 자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상담, 의료 등 지원 강화 | 사내 성희롱 관련 규정과 매뉴얼 마련 및 홍보 강화 | 기타  | 모름/무응답 | 계     |
|--------------------------------|-----------------------------------------|--------------------|---------------------------|---------------------------------------------|----------------------------|-------------------------|---------------------------------|------------------------------|-----|--------|-------|
| 전 체                            | 22.7                                    | 14.1               | 12.3                      | 22.6                                        | 10.7                       | 9.9                     | 4.2                             | 3.0                          | 0.2 | 0.3    | 100.0 |
| 유형                             |                                         |                    |                           |                                             |                            |                         |                                 |                              |     |        |       |
| 공공기관                           | 20.0                                    | 8.5                | 9.6                       | 23.7                                        | 14.6                       | 14.0                    | 5.8                             | 3.4                          | 0.5 | -      | 100.0 |
| 민간사업체                          | 23.3                                    | 15.2               | 12.8                      | 22.3                                        | 9.9                        | 9.1                     | 3.9                             | 3.0                          | 0.2 | 0.4    | 100.0 |
| 성별                             |                                         |                    |                           |                                             |                            |                         |                                 |                              |     |        |       |
| 남자                             | 24.2                                    | 15.3               | 12.8                      | 21.2                                        | 9.9                        | 8.8                     | 4.0                             | 3.1                          | 0.3 | 0.4    | 100.0 |
| 여자                             | 20.4                                    | 12.0               | 11.5                      | 24.8                                        | 12.0                       | 11.7                    | 4.6                             | 2.8                          | 0.1 | 0.1    | 100.0 |
| 연령                             |                                         |                    |                           |                                             |                            |                         |                                 |                              |     |        |       |
| 20대 이하                         | 21.9                                    | 11.4               | 10.1                      | 27.9                                        | 10.2                       | 10.4                    | 4.1                             | 2.9                          | 0.1 | 1.0    | 100.0 |
| 30대                            | 22.8                                    | 15.7               | 14.7                      | 22.1                                        | 10.1                       | 8.2                     | 3.6                             | 1.9                          | 0.3 | 0.5    | 100.0 |
| 40대                            | 24.8                                    | 14.9               | 12.3                      | 20.6                                        | 9.8                        | 9.6                     | 3.7                             | 4.1                          | 0.1 | 0.2    | 100.0 |
| 50대 이상                         | 20.8                                    | 12.7               | 10.9                      | 22.9                                        | 12.4                       | 11.6                    | 5.2                             | 3.0                          | 0.3 | 0.1    | 100.0 |
| 직급                             |                                         |                    |                           |                                             |                            |                         |                                 |                              |     |        |       |
| 관리직                            | 23.6                                    | 15.7               | 12.8                      | 20.5                                        | 10.4                       | 8.7                     | 3.8                             | 4.2                          | 0.2 | 0.1    | 100.0 |
| 일반직                            | 22.1                                    | 13.2               | 12.0                      | 23.7                                        | 10.9                       | 10.6                    | 4.4                             | 2.4                          | 0.2 | 0.4    | 100.0 |
| 모름/무응답                         | 37.2                                    | 7.3                | 11.4                      | 20.9                                        | 5.2                        | 8.3                     | 1.2                             | 6.9                          | -   | 1.6    | 100.0 |
| 고용형태                           |                                         |                    |                           |                                             |                            |                         |                                 |                              |     |        |       |
| 정규직                            | 22.4                                    | 14.3               | 12.4                      | 22.5                                        | 10.7                       | 9.9                     | 4.1                             | 3.1                          | 0.2 | 0.3    | 100.0 |
| 비정규직                           | 24.6                                    | 11.3               | 11.4                      | 23.5                                        | 11.3                       | 10.3                    | 5.1                             | 2.0                          | 0.2 | 0.3    | 100.0 |
| 모름/무응답                         | 31.6                                    | 17.3               | 10.6                      | 19.6                                        | 6.7                        | 8.7                     | 1.4                             | 3.0                          | -   | 1.0    | 100.0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     |        |       |
| 국가기관                           | 18.3                                    | 10.3               | 11.1                      | 23.4                                        | 12.6                       | 13.9                    | 7.2                             | 2.2                          | 1.1 | -      | 100.0 |
| 지방자치단체                         | 19.4                                    | 10.8               | 10.0                      | 25.5                                        | 15.9                       | 12.7                    | 2.7                             | 2.9                          | 0.2 | -      | 100.0 |
| 초/중/고                          | 21.0                                    | 7.4                | 7.8                       | 25.7                                        | 12.6                       | 15.0                    | 6.4                             | 3.9                          | 0.2 | -      | 100.0 |
| 대학                             | 20.9                                    | 6.1                | 10.8                      | 18.4                                        | 19.8                       | 13.3                    | 6.0                             | 4.4                          | 0.4 | -      | 100.0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     |        |       |
| 제조업                            | 24.7                                    | 15.0               | 12.6                      | 21.6                                        | 9.7                        | 8.8                     | 3.5                             | 2.9                          | 0.4 | 0.9    | 100.0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20.6                                    | 16.1               | 13.8                      | 21.5                                        | 11.9                       | 11.0                    | 3.6                             | 1.2                          | 0.0 | 0.3    | 100.0 |
| 개인서비스업                         | 22.8                                    | 13.3               | 13.1                      | 20.9                                        | 11.4                       | 9.1                     | 5.2                             | 3.9                          | 0.1 | 0.3    | 100.0 |
| 유통서비스업                         | 21.4                                    | 14.6               | 14.0                      | 24.9                                        | 8.5                        | 8.9                     | 4.3                             | 2.8                          | 0.1 | 0.3    | 100.0 |
| 사업서비스업                         | 24.7                                    | 18.8               | 12.8                      | 21.1                                        | 9.2                        | 6.3                     | 3.9                             | 3.3                          | 0.0 | -      | 100.0 |
| 사회서비스업                         | 22.0                                    | 11.1               | 11.8                      | 24.8                                        | 10.4                       | 12.6                    | 3.6                             | 3.3                          | 0.2 | 0.2    | 100.0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     |        |       |
| 30~99인                         | 23.3                                    | 15.7               | 12.7                      | 20.7                                        | 10.5                       | 9.6                     | 4.2                             | 2.8                          | 0.0 | 0.4    | 100.0 |
| 100~299인                       | 23.5                                    | 14.6               | 11.0                      | 24.6                                        | 10.6                       | 8.8                     | 3.7                             | 2.5                          | 0.4 | 0.4    | 100.0 |
| 300~499인                       | 19.7                                    | 17.3               | 17.2                      | 20.2                                        | 9.9                        | 9.4                     | 3.4                             | 2.7                          | 0.0 | 0.2    | 100.0 |
| 500인 이상                        | 24.1                                    | 14.4               | 13.4                      | 23.1                                        | 8.4                        | 8.6                     | 3.7                             | 3.8                          | 0.1 | 0.4    | 100.0 |

주: 백분율은 15,073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라)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 수요: 성희롱 사건의 공정한 처리

성희롱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신고-조사-징계 등 신속한 사건처리 절차 운영’(33.6%)이었다. 그다음은 ‘행위자에 대한 엄중 조치(실질적 징계)’(28.1%), ‘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18.0%), ‘외부전문가/외부전문기관 활용 및 참여 강화’(15.2%) 순이었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공공기관에서는 ‘행위자에 대한 엄중 조치(실질적 징계)’(36.6%), ‘신고-조사-징계 등 신속한 사건처리 절차 운영’(31.2%) 순이었다. 그 외에는 전체 응답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표 III-56〉 성희롱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정책(1순위)

(단위: %)

| 구분                                 | 사업주에<br>대한 책임<br>(위반 시<br>과태료<br>등) 강화 | 신고-<br>조사-<br>징계 등<br>신속한<br>사건처리<br>절차<br>운영 | 외부<br>전문가/<br>외부<br>전문기관<br>활용/<br>참여<br>강화 | 행위자에<br>대한<br>엄중<br>조치<br>(실질적<br>징계) | 사내<br>성희롱<br>관련<br>규정과<br>매뉴얼<br>마련 | 기타  | 모름/<br>무응답 | 계     |
|------------------------------------|----------------------------------------|-----------------------------------------------|---------------------------------------------|---------------------------------------|-------------------------------------|-----|------------|-------|
| 전 체                                | 18.0                                   | 33.6                                          | 15.2                                        | 28.1                                  | 4.8                                 | 0.1 | 0.3        | 100.0 |
| 유형                                 |                                        |                                               |                                             |                                       |                                     |     |            |       |
| 공공기관                               | 14.4                                   | 31.2                                          | 12.8                                        | 36.6                                  | 4.8                                 | 0.2 | -          | 100.0 |
| 민간사업체                              | 18.7                                   | 34.0                                          | 15.6                                        | 26.4                                  | 4.8                                 | 0.1 | 0.3        | 100.0 |
| 성별                                 |                                        |                                               |                                             |                                       |                                     |     |            |       |
| 남성                                 | 18.5                                   | 34.7                                          | 15.4                                        | 26.0                                  | 4.9                                 | 0.2 | 0.3        | 100.0 |
| 여성                                 | 17.1                                   | 31.7                                          | 14.7                                        | 31.6                                  | 4.6                                 | 0.1 | 0.2        | 100.0 |
| 연령                                 |                                        |                                               |                                             |                                       |                                     |     |            |       |
| 20대 이하                             | 16.6                                   | 31.9                                          | 13.3                                        | 31.7                                  | 6.2                                 | 0.0 | 0.2        | 100.0 |
| 30대                                | 17.3                                   | 35.2                                          | 16.8                                        | 25.6                                  | 4.4                                 | 0.2 | 0.5        | 100.0 |
| 40대                                | 19.1                                   | 34.9                                          | 16.1                                        | 24.6                                  | 4.9                                 | 0.1 | 0.3        | 100.0 |
| 50대 이상                             | 17.9                                   | 31.4                                          | 13.4                                        | 32.6                                  | 4.4                                 | 0.2 | 0.1        | 100.0 |
| 직급                                 |                                        |                                               |                                             |                                       |                                     |     |            |       |
| 관리직                                | 18.4                                   | 33.1                                          | 15.8                                        | 27.6                                  | 4.8                                 | 0.2 | 0.2        | 100.0 |
| 일반직                                | 17.7                                   | 33.8                                          | 14.8                                        | 28.4                                  | 4.8                                 | 0.1 | 0.3        | 100.0 |
| 모름/무응답                             | 17.5                                   | 39.5                                          | 6.4                                         | 30.6                                  | 4.4                                 | -   | 1.6        | 100.0 |
| 고용형태                               |                                        |                                               |                                             |                                       |                                     |     |            |       |
| 정규직                                | 17.8                                   | 33.7                                          | 15.3                                        | 28.0                                  | 4.9                                 | 0.2 | 0.3        | 100.0 |
| 비정규직                               | 19.1                                   | 32.4                                          | 14.6                                        | 29.6                                  | 4.0                                 | 0.0 | 0.3        | 100.0 |
| 모름/무응답                             | 26.3                                   | 35.2                                          | 8.4                                         | 26.1                                  | 2.9                                 | -   | 1.0        | 100.0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
| 국가기관                               | 14.9                                   | 28.8                                          | 15.6                                        | 35.7                                  | 4.5                                 | 0.5 | -          | 100.0 |
| 지방자치단체                             | 13.3                                   | 32.6                                          | 13.2                                        | 36.5                                  | 4.3                                 | 0.1 | -          | 100.0 |
| 초/중/고                              | 14.4                                   | 32.5                                          | 10.2                                        | 37.5                                  | 5.2                                 | 0.2 | -          | 100.0 |
| 대학                                 | 14.9                                   | 30.4                                          | 13.5                                        | 35.8                                  | 5.2                                 | 0.1 | -          | 100.0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
| 제조업                                | 20.2                                   | 34.5                                          | 12.7                                        | 25.7                                  | 6.1                                 | 0.3 | 0.5        | 100.0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20.3                                   | 33.4                                          | 19.4                                        | 23.4                                  | 2.8                                 | 0.0 | 0.6        | 100.0 |
| 개인서비스업                             | 17.7                                   | 34.6                                          | 14.5                                        | 26.9                                  | 6.0                                 | -   | 0.2        | 100.0 |
| 유통서비스업                             | 18.6                                   | 33.0                                          | 15.0                                        | 29.1                                  | 3.8                                 | -   | 0.5        | 100.0 |
| 사업서비스업                             | 19.6                                   | 33.2                                          | 18.4                                        | 24.4                                  | 4.3                                 | 0.1 | -          | 100.0 |
| 사회서비스업                             | 14.5                                   | 35.2                                          | 15.3                                        | 30.2                                  | 4.4                                 | 0.2 | 0.2        | 100.0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
| 30~99인                             | 19.4                                   | 36.5                                          | 13.7                                        | 25.1                                  | 4.7                                 | 0.2 | 0.5        | 100.0 |
| 100~299인                           | 16.0                                   | 33.5                                          | 15.1                                        | 30.0                                  | 4.8                                 | 0.2 | 0.4        | 100.0 |
| 300~499인                           | 20.9                                   | 33.0                                          | 16.8                                        | 23.6                                  | 5.5                                 | -   | 0.3        | 100.0 |
| 500인 이상                            | 19.6                                   | 31.5                                          | 18.5                                        | 25.7                                  | 4.7                                 | 0.1 | 0.0        | 100.0 |

주: 백분율은 15,073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마)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 수요: 2차 피해 방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2차 피해에 대한 전직원 교육 실시'(20.8%)였다. 그다음은 '2차 피해의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19.3%), '2차 피해 실태 파악'(16.7%), '2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시행'(13.2%) 순이었다.

소속기관 유형에서 공공기관은 '2차 피해의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22.8%), 민간사업체는 '2차 피해에 대한 전직원 교육 실시'(21.4%)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성별에서는 남성은 '2차 피해에 대한 전직원 교육 실시'(22.2%), 여성은 '2차 피해의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20.7%)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의 경우 '2차 피해의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23.1%)와 '2차 피해 실태 파악'(22.5%)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 30대 이상에서는 '2차 피해에 대한 전직원 교육 실시'의 수요가 높았다.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에 따라서는 30~99인과 500인 이상에서는 '2차 피해에 대한 전직원 교육 실시', 100~299인에서는 '2차 피해의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300~499인에서는 '2차 피해 실태 파악'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표 III-57〉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1순위)

(단위: %)

| 구분                             |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사업주/기관 장의 입장 발표 (선언) | 2차 피해에 대한 전직원 교육 실시 | 2차 피해 실태 파악 | 2차 피해 자에 대한 보호 조치 (휴가 등) 시행 | 2차 피해 행위에 대한 조사 실시 | 2차 피해의 행위자 (가해 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 2차 피해의 행위 자에 대한 분리 조치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매뉴얼, 사건 처리 지침 마련 및 안내 | 기타  | 모름/무응답 | 계     |
|--------------------------------|-----------------------------------|---------------------|-------------|-----------------------------|--------------------|-------------------------------|-----------------------|------------------------------------|-----|--------|-------|
| 전 체                            | 9.6                               | 20.8                | 16.7        | 13.2                        | 7.0                | 19.3                          | 10.0                  | 3.2                                | 0.0 | 0.2    | 100.0 |
| 유형                             |                                   |                     |             |                             |                    |                               |                       |                                    |     |        |       |
| 공공기관                           | 9.5                               | 17.4                | 11.0        | 15.4                        | 4.9                | 22.8                          | 13.8                  | 5.0                                | 0.1 | -      | 100.0 |
| 민간사업체                          | 9.7                               | 21.4                | 17.9        | 12.7                        | 7.4                | 18.6                          | 9.2                   | 2.9                                | 0.0 | 0.3    | 100.0 |
| 성별                             |                                   |                     |             |                             |                    |                               |                       |                                    |     |        |       |
| 남성                             | 10.2                              | 22.2                | 17.3        | 12.3                        | 7.2                | 18.5                          | 9.0                   | 3.0                                | 0.0 | 0.3    | 100.0 |
| 여성                             | 8.8                               | 18.4                | 15.7        | 14.6                        | 6.5                | 20.7                          | 11.6                  | 3.5                                | 0.1 | 0.1    | 100.0 |
| 연령                             |                                   |                     |             |                             |                    |                               |                       |                                    |     |        |       |
| 20대 이하                         | 8.8                               | 15.3                | 22.5        | 11.4                        | 6.9                | 23.1                          | 9.3                   | 2.5                                | 0.0 | 0.1    | 100.0 |
| 30대                            | 10.3                              | 20.8                | 16.9        | 12.7                        | 7.9                | 18.3                          | 9.3                   | 3.2                                | 0.0 | 0.6    | 100.0 |
| 40대                            | 9.4                               | 23.4                | 17.6        | 12.0                        | 7.5                | 17.7                          | 9.3                   | 2.9                                | 0.0 | 0.1    | 100.0 |
| 50대 이상                         | 9.6                               | 20.1                | 13.3        | 15.6                        | 5.5                | 20.3                          | 11.6                  | 3.8                                | 0.1 | 0.1    | 100.0 |
| 직급                             |                                   |                     |             |                             |                    |                               |                       |                                    |     |        |       |
| 관리직                            | 9.2                               | 24.6                | 16.0        | 12.5                        | 7.4                | 17.7                          | 9.2                   | 3.3                                | -   | 0.1    | 100.0 |
| 일반직                            | 9.9                               | 18.8                | 17.1        | 13.5                        | 6.7                | 20.2                          | 10.4                  | 3.2                                | 0.0 | 0.3    | 100.0 |
| 모름/무응답                         | 7.2                               | 15.1                | 13.7        | 15.2                        | 9.1                | 17.2                          | 16.9                  | 3.2                                | -   | 2.4    | 100.0 |
| 고용형태                           |                                   |                     |             |                             |                    |                               |                       |                                    |     |        |       |
| 정규직                            | 9.6                               | 21.0                | 16.6        | 13.0                        | 7.1                | 19.3                          | 10.0                  | 3.2                                | 0.0 | 0.2    | 100.0 |
| 비정규직                           | 10.0                              | 18.8                | 16.8        | 14.6                        | 5.8                | 20.0                          | 10.3                  | 3.7                                | 0.1 | 0.1    | 100.0 |
| 모름/무응답                         | 4.0                               | 23.4                | 23.1        | 18.0                        | 6.6                | 11.1                          | 10.0                  | 2.3                                | -   | 1.6    | 100.0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     |        |       |
| 국가기관                           | 9.7                               | 19.2                | 11.0        | 15.1                        | 4.6                | 22.5                          | 14.4                  | 3.3                                | 0.3 | -      | 100.0 |
| 지방자치단체                         | 10.1                              | 15.1                | 12.6        | 10.6                        | 7.5                | 25.3                          | 14.1                  | 4.6                                | 0.1 | -      | 100.0 |
| 초/중/고                          | 8.4                               | 16.0                | 10.5        | 20.2                        | 3.7                | 22.4                          | 12.6                  | 6.0                                | 0.1 | -      | 100.0 |
| 대학                             | 10.6                              | 20.1                | 10.3        | 11.1                        | 5.4                | 21.4                          | 15.2                  | 5.6                                | 0.1 | -      | 100.0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     |        |       |
| 제조업                            | 12.0                              | 21.2                | 16.0        | 10.5                        | 6.2                | 21.7                          | 8.4                   | 3.4                                | 0.0 | 0.6    | 100.0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8.8                               | 23.5                | 19.9        | 10.2                        | 7.8                | 18.4                          | 8.3                   | 2.9                                | -   | 0.2    | 100.0 |
| 개인서비스업                         | 9.2                               | 18.1                | 16.9        | 14.7                        | 8.8                | 16.4                          | 10.7                  | 5.2                                | -   | -      | 100.0 |
| 유통서비스업                         | 7.8                               | 20.0                | 18.1        | 16.7                        | 10.1               | 15.7                          | 9.7                   | 1.6                                | -   | 0.3    | 100.0 |
| 사업서비스업                         | 10.2                              | 22.3                | 19.8        | 13.5                        | 7.7                | 16.0                          | 8.5                   | 2.0                                | 0.0 | 0.1    | 100.0 |
| 사회서비스업                         | 7.2                               | 21.8                | 17.2        | 13.4                        | 6.0                | 20.3                          | 11.1                  | 2.8                                | -   | 0.2    | 100.0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     |        |       |
| 30~99인                         | 10.0                              | 23.0                | 16.2        | 13.3                        | 7.4                | 18.5                          | 8.9                   | 2.3                                | 0.0 | 0.3    | 100.0 |
| 100~299인                       | 8.9                               | 19.1                | 18.7        | 13.3                        | 8.2                | 19.8                          | 8.6                   | 3.1                                | -   | 0.3    | 100.0 |
| 300~499인                       | 10.4                              | 17.7                | 19.9        | 12.6                        | 7.7                | 18.7                          | 9.8                   | 3.1                                | -   | 0.1    | 100.0 |
| 500인 이상                        | 9.6                               | 22.8                | 18.7        | 11.4                        | 6.3                | 17.4                          | 10.2                  | 3.4                                | -   | 0.2    | 100.0 |

주: 백분율은 15,073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바)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 수요: 성희롱 피해자 보호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39.9%)였다. 그다음은 ‘피해자의 배치 전환(부서, 업무 등)’(17.1%), ‘피해자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상담, 의료 등 지원’(14.5%), ‘피해자에 대한 휴가, 휴직 부여’(11.2%) 순이었다.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의 경우 ‘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46.1%)가 절반 정도로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그다음은 ‘피해자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상담, 의료 등 지원’(14.9%), ‘행위자에 대한 징계’(12.1%) 순이었다. 민간사업체는 전체 응답 경향과 유사했다. ‘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38.7%), ‘피해자의 배치 전환(부서, 업무 등)’(18.4%), ‘피해자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상담, 의료 등 지원’(14.4%) 순이었다.

공공기관 유형 중 초/중/고와 대학에서 ‘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에 대한 수요가 50%를 상회하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보다 분리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에서는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에 대한 수요가 높고 ‘피해자의 배치 전환(부서, 업무 등)’은 낮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행위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있을 가능성이 크고 전환 배치할 여건이 충분치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III-58〉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1순위)

(단위: %)

| 구분                                 | 행위자로부터<br>분리<br>(공간<br>분리,<br>접근<br>금지 등) | 피해자의<br>배치전환<br>(부서,<br>업무 등) | 피해자에<br>대한<br>휴가,<br>휴직<br>부여 | 피해자의<br>회복과<br>치유를<br>위한<br>상담,<br>의료 등<br>지원 | 행위자뿐<br>아니라<br>행위자<br>주변인에<br>대한<br>피해자<br>와의<br>분리 | 행위자에<br>대한<br>징계 | 기타  | 모름/<br>무응답 | 계     |
|------------------------------------|-------------------------------------------|-------------------------------|-------------------------------|-----------------------------------------------|-----------------------------------------------------|------------------|-----|------------|-------|
| 전 체                                | 39.9                                      | 17.1                          | 11.2                          | 14.5                                          | 7.6                                                 | 9.3              | 0.1 | 0.3        | 100.0 |
| 유형                                 |                                           |                               |                               |                                               |                                                     |                  |     |            |       |
| 공공기관                               | 46.1                                      | 10.7                          | 7.7                           | 14.9                                          | 8.3                                                 | 12.1             | 0.2 | -          | 100.0 |
| 민간사업체                              | 38.7                                      | 18.4                          | 11.9                          | 14.4                                          | 7.5                                                 | 8.7              | 0.1 | 0.3        | 100.0 |
| 성별                                 |                                           |                               |                               |                                               |                                                     |                  |     |            |       |
| 남성                                 | 39.6                                      | 18.3                          | 10.7                          | 14.7                                          | 7.2                                                 | 9.0              | 0.1 | 0.3        | 100.0 |
| 여성                                 | 40.4                                      | 15.2                          | 12.1                          | 14.0                                          | 8.3                                                 | 9.7              | 0.1 | 0.2        | 100.0 |
| 연령                                 |                                           |                               |                               |                                               |                                                     |                  |     |            |       |
| 20대 이하                             | 31.8                                      | 19.6                          | 13.1                          | 15.8                                          | 9.5                                                 | 10.0             | 0.1 | 0.1        | 100.0 |
| 30대                                | 39.5                                      | 18.3                          | 12.5                          | 14.8                                          | 6.2                                                 | 7.9              | 0.0 | 0.6        | 100.0 |
| 40대                                | 37.8                                      | 20.1                          | 11.3                          | 13.3                                          | 7.9                                                 | 9.5              | 0.0 | 0.1        | 100.0 |
| 50대 이상                             | 45.7                                      | 12.0                          | 9.2                           | 14.7                                          | 8.0                                                 | 10.0             | 0.3 | 0.1        | 100.0 |
| 직급                                 |                                           |                               |                               |                                               |                                                     |                  |     |            |       |
| 관리직                                | 40.3                                      | 17.9                          | 11.2                          | 13.7                                          | 7.1                                                 | 9.5              | 0.2 | 0.1        | 100.0 |
| 일반직                                | 39.7                                      | 16.7                          | 11.2                          | 14.9                                          | 7.9                                                 | 9.1              | 0.1 | 0.3        | 100.0 |
| 모름/무응답                             | 39.1                                      | 19.8                          | 12.0                          | 14.5                                          | 2.1                                                 | 10.0             | -   | 2.4        | 100.0 |
| 고용형태                               |                                           |                               |                               |                                               |                                                     |                  |     |            |       |
| 정규직                                | 39.7                                      | 17.1                          | 11.3                          | 14.5                                          | 7.6                                                 | 9.4              | 0.1 | 0.3        | 100.0 |
| 비정규직                               | 41.9                                      | 17.3                          | 9.7                           | 14.3                                          | 8.2                                                 | 8.5              | 0.0 | 0.1        | 100.0 |
| 모름/무응답                             | 37.4                                      | 17.2                          | 19.3                          | 15.0                                          | 2.4                                                 | 7.1              | -   | 1.6        | 100.0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       |
| 국가기관                               | 42.3                                      | 12.0                          | 7.1                           | 18.9                                          | 9.4                                                 | 10.1             | 0.1 | -          | 100.0 |
| 지방자치단체                             | 37.4                                      | 16.9                          | 9.6                           | 12.4                                          | 8.8                                                 | 14.9             | 0.1 | -          | 100.0 |
| 초/중/고                              | 50.4                                      | 7.1                           | 7.9                           | 13.9                                          | 8.4                                                 | 12.0             | 0.3 | -          | 100.0 |
| 대학                                 | 51.5                                      | 9.8                           | 6.1                           | 14.0                                          | 6.3                                                 | 12.2             | 0.2 | -          | 100.0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       |
| 제조업                                | 40.4                                      | 17.4                          | 9.3                           | 16.0                                          | 8.2                                                 | 8.1              | 0.0 | 0.6        | 100.0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34.0                                      | 22.6                          | 14.1                          | 12.9                                          | 7.0                                                 | 9.2              | -   | 0.2        | 100.0 |
| 개인서비스업                             | 36.9                                      | 18.6                          | 12.7                          | 14.3                                          | 8.0                                                 | 9.4              | 0.0 | 0.1        | 100.0 |
| 유통서비스업                             | 38.3                                      | 19.9                          | 14.0                          | 12.1                                          | 7.3                                                 | 8.0              | 0.0 | 0.3        | 100.0 |
| 사업서비스업                             | 36.9                                      | 20.2                          | 13.9                          | 13.8                                          | 6.2                                                 | 8.6              | 0.3 | 0.2        | 100.0 |
| 사회서비스업                             | 42.1                                      | 14.4                          | 10.6                          | 14.8                                          | 8.3                                                 | 9.6              | 0.1 | 0.2        | 100.0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       |
| 30~99인                             | 39.5                                      | 16.4                          | 12.7                          | 15.8                                          | 7.3                                                 | 7.9              | 0.0 | 0.3        | 100.0 |
| 100~299인                           | 39.0                                      | 19.4                          | 10.8                          | 13.1                                          | 8.2                                                 | 9.1              | 0.0 | 0.3        | 100.0 |
| 300~499인                           | 38.4                                      | 19.8                          | 13.0                          | 12.7                                          | 6.9                                                 | 8.9              | -   | 0.3        | 100.0 |
| 500인 이상                            | 37.1                                      | 20.0                          | 11.6                          | 14.1                                          | 7.2                                                 | 9.3              | 0.3 | 0.2        | 100.0 |

주: 백분율은 15,073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 사.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과 경험

응답자가 속한 직장내 조직에 대해 세 가지 질문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조직문화(일·가정양립, 위계문화 등) 차원에서 7개 문항, 둘째, 채용/업무배치/승진/보직 및 인사이동/비공식 네트워크/고위직과의 업무 기회 등 6개 항목에 대해 남성 혹은 여성에게 불리한 정도, 셋째, 성별에 기반한 부정적인 언행 경험.

### 1) 일반적인 조직문화

일반적인 조직문화와 관련된 7개 문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렇다’(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우리 직장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다’ 29.6%, ‘우리 직장은 회식 등 업무시간 외의 모임에 꼭 참석해야 하는 분위기이다’ 26.1%, ‘우리 직장은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고충이나 불만을 스스로 없이 이야기 하는 분위기이다’ 50.8%, ‘우리직장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큰소리를 내거나 폭언을 자주하는 편이다’ 13.5%, ‘우리 직장 구성원들은 연애, 결혼 등 사생활에 관해 묻는데 거리낌이 없는 편이다’ 37.3%, ‘우리 직장에서는 구성원들끼리 업무시간 외에 사적인 연락을 자주 주고받는 편이다’ 31.2%, ‘우리 직장에서는 성차별이나 성희롱 등의 고충을 제기하면 오히려 손해보거나 불이익을 당할 거 같다’ 20.7%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응답자들이 속한 조직의 약 30% 정도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등의 사용이 어렵고, 회식 등 업무시간외 모임에 참석해야 하고, 사생활에 관해 묻는데 거리낌이 없고, 업무시간 외에 사적인 연락을 주고 받는 조직문화를 갖고 있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큰소리를 내거나 폭언을 자주 있다는 응답은 10% 정도였고, 성희롱이나 성차별 고충을 제기하면 불이익을 받을 거 같다는 응답은 20% 정도였다. 고충이나 불만을 스스로 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응답은 50% 정도였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보면, 공공기관보다 민간사업체에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등의 사용이 어렵고, 회식 등 업무시간외 모임에 참석해야 하고, 사생활에 관해 묻는데 거리낌이 없고, 업무시간 외에 사적인 연락을 주고 받고, 성희롱 성차별의 고충을 제기하면 손해보거나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는 응답이 높았다.

공공기관 유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회식 등 업무시간 외 모임에 참석해야 하고,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고충이나 불만을 스스로 없이 이야기하기 어렵고, 사생활에 관해 묻는데 거리낌이 없으며, 성희롱 성차별의 고충을 제기하면 손해보거나 불이익을 당할 거 같다는 응답이 높았다.

〈표 III-59〉 직장 내 조직문화(1)

(단위: %)

| 구분                                 | 우리<br>직장은<br>출산휴가<br>및<br>육아휴직을<br>자유롭게<br>사용하기<br>어렵다 | 우리<br>직장은<br>회식 등<br>업무시간<br>외의<br>모임에 꼭<br>참석해야<br>하는<br>분위기이다 | 우리<br>직장은<br>하급자가<br>상급자에게<br>고충이나<br>불만을<br>스스럼없이<br>이야기하는<br>분위기이다 | 우리<br>직장에서는<br>상급자가<br>하급자에게<br>큰 소리를<br>내거나<br>폭언을<br>자주 하는<br>편이다 | 우리 직장<br>구성원들은<br>연애, 결혼<br>등 사생활에<br>관해 묻는데<br>거리낌이<br>없는<br>편이다 | 우리<br>직장에서는<br>구성원<br>들끼리<br>업무시간<br>외에<br>사적인<br>연락을<br>자주<br>주고받는<br>편이다 | 우리<br>직장에서는<br>성차별이나<br>성희롱 등의<br>고충을<br>제기하면<br>오히려<br>손해 보거나<br>불이익을<br>당할 것<br>같다 |
|------------------------------------|--------------------------------------------------------|-----------------------------------------------------------------|----------------------------------------------------------------------|---------------------------------------------------------------------|-------------------------------------------------------------------|----------------------------------------------------------------------------|--------------------------------------------------------------------------------------|
| 전 체                                | 29.6                                                   | 26.1                                                            | 50.8                                                                 | 13.5                                                                | 37.3                                                              | 31.2                                                                       | 20.7                                                                                 |
| 유형                                 |                                                        |                                                                 |                                                                      |                                                                     |                                                                   |                                                                            |                                                                                      |
| 공공기관                               | 15.2                                                   | 15.1                                                            | 57.4                                                                 | 8.2                                                                 | 32.4                                                              | 18.3                                                                       | 15.8                                                                                 |
| 민간사업체                              | 32.5                                                   | 28.3                                                            | 49.5                                                                 | 14.5                                                                | 38.2                                                              | 33.9                                                                       | 21.7                                                                                 |
| 성별                                 |                                                        |                                                                 |                                                                      |                                                                     |                                                                   |                                                                            |                                                                                      |
| 남자                                 | 30.3                                                   | 26.2                                                            | 51.0                                                                 | 13.0                                                                | 34.7                                                              | 30.9                                                                       | 19.5                                                                                 |
| 여자                                 | 28.5                                                   | 25.9                                                            | 50.5                                                                 | 14.1                                                                | 41.4                                                              | 31.7                                                                       | 22.8                                                                                 |
| 연령                                 |                                                        |                                                                 |                                                                      |                                                                     |                                                                   |                                                                            |                                                                                      |
| 20대 이하                             | 28.4                                                   | 27.5                                                            | 46.5                                                                 | 16.1                                                                | 37.9                                                              | 32.8                                                                       | 23.1                                                                                 |
| 30대                                | 32.9                                                   | 32.1                                                            | 49.3                                                                 | 14.3                                                                | 39.7                                                              | 34.7                                                                       | 21.4                                                                                 |
| 40대                                | 33.1                                                   | 26.9                                                            | 49.7                                                                 | 14.1                                                                | 38.2                                                              | 33.4                                                                       | 22.7                                                                                 |
| 50대 이상                             | 23.5                                                   | 19.1                                                            | 55.1                                                                 | 11.0                                                                | 33.8                                                              | 25.4                                                                       | 17.3                                                                                 |
| 직급                                 |                                                        |                                                                 |                                                                      |                                                                     |                                                                   |                                                                            |                                                                                      |
| 관리직                                | 31.8                                                   | 27.5                                                            | 53.8                                                                 | 12.4                                                                | 34.1                                                              | 32.7                                                                       | 20.1                                                                                 |
| 일반직                                | 28.4                                                   | 25.4                                                            | 49.2                                                                 | 14.0                                                                | 38.9                                                              | 30.5                                                                       | 21.1                                                                                 |
| 모름/무응답                             | 27.6                                                   | 21.3                                                            | 53.5                                                                 | 21.7                                                                | 36.4                                                              | 33.2                                                                       | 25.3                                                                                 |
| 고용형태                               |                                                        |                                                                 |                                                                      |                                                                     |                                                                   |                                                                            |                                                                                      |
| 정규직                                | 29.6                                                   | 26.9                                                            | 51.3                                                                 | 13.6                                                                | 37.6                                                              | 31.5                                                                       | 21.0                                                                                 |
| 비정규직                               | 29.4                                                   | 18.7                                                            | 45.9                                                                 | 11.9                                                                | 35.1                                                              | 28.3                                                                       | 18.6                                                                                 |
| 모름/무응답                             | 33.1                                                   | 21.2                                                            | 54.4                                                                 | 15.6                                                                | 25.2                                                              | 39.0                                                                       | 25.1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 국가기관                               | 13.3                                                   | 15.5                                                            | 56.3                                                                 | 8.2                                                                 | 31.4                                                              | 17.2                                                                       | 16.1                                                                                 |
| 지방자치단체                             | 15.9                                                   | 30.2                                                            | 46.9                                                                 | 10.4                                                                | 44.2                                                              | 24.0                                                                       | 26.5                                                                                 |
| 초/중/고                              | 11.0                                                   | 7.1                                                             | 63.1                                                                 | 5.8                                                                 | 26.5                                                              | 14.8                                                                       | 8.9                                                                                  |
| 대학                                 | 25.2                                                   | 14.9                                                            | 58.3                                                                 | 10.8                                                                | 33.7                                                              | 21.0                                                                       | 18.5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 제조업                                | 31.5                                                   | 26.6                                                            | 50.5                                                                 | 17.1                                                                | 37.1                                                              | 28.9                                                                       | 19.8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35.0                                                   | 25.7                                                            | 42.1                                                                 | 13.3                                                                | 33.5                                                              | 33.1                                                                       | 24.6                                                                                 |
| 개인서비스업                             | 35.2                                                   | 24.8                                                            | 50.8                                                                 | 14.5                                                                | 37.8                                                              | 37.1                                                                       | 21.2                                                                                 |
| 유통서비스업                             | 29.4                                                   | 24.2                                                            | 47.8                                                                 | 12.1                                                                | 31.9                                                              | 28.5                                                                       | 21.3                                                                                 |
| 사업서비스업                             | 38.6                                                   | 37.9                                                            | 50.0                                                                 | 11.3                                                                | 40.5                                                              | 40.9                                                                       | 21.0                                                                                 |
| 사회서비스업                             | 25.1                                                   | 23.5                                                            | 51.8                                                                 | 17.2                                                                | 43.8                                                              | 34.4                                                                       | 24.7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 30~99인                             | 32.9                                                   | 22.6                                                            | 47.4                                                                 | 14.7                                                                | 36.0                                                              | 31.0                                                                       | 20.0                                                                                 |
| 100~299인                           | 27.5                                                   | 23.9                                                            | 53.2                                                                 | 13.6                                                                | 36.1                                                              | 34.6                                                                       | 20.3                                                                                 |
| 300~499인                           | 33.2                                                   | 27.8                                                            | 48.7                                                                 | 12.8                                                                | 30.4                                                              | 32.5                                                                       | 20.4                                                                                 |
| 500인 이상                            | 36.7                                                   | 41.0                                                            | 48.9                                                                 | 15.8                                                                | 46.1                                                              | 37.7                                                                       | 26.1                                                                                 |

주: 1) 백분율은 15,073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각 문항별로 '약간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응답을 합한 값임.

## 2) 조직내 주요 분야에서의 남성 혹은 여성에게 불리한 정도

채용/업무배치/승진/보직 및 인사이동/비공식 네트워크/고위직과의 업무기회 등 6개 항목에 대해 남성 혹은 여성에게 불리한 정도를 조사하였다. 전체 응답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특성은 제외하고, 소속기관 유형, 성별에 대해 결과를 제시하였다.

6개 대부분의 문항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하다는 응답이 60% 이상이었다. 채용 기회는 74.6%, 핵심업무에 배치될 기회는 73.8%, 승진기회는 68.5%, 유리한 보직 또는 인사이동의 기회는 73.3%,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한 중요한 정보 수집 기회는 78.9%, 영향력 있는 고위직/관리자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는 75.5%였다. '남성에게 불리함' ('남성에게 약간 불리함' + '남성에게 매우 불리함')의 응답은 6개 문항에서 남녀 모두 5% 내외로 매우 낮았던 반면, '여성에게 불리함' ('여성에게 약간 불리함' + '여성에게 매우 불리함')은 대부분 문항에서 남녀 모두 20% 내외로 응답하였다.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불리하다고 보고 있었는데, 승진기회에서 여성이 불리하다는 여성의 응답이 30%를 상회하였다.

'여성에게 불리함'을 기준으로 6개 문항에 대해 살펴보면, 소속기관 유형에서는 핵심 업무 배치, 유리한 보직 혹은 인사이동의 기회,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한 중요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 영향력있는 고위직/관리자와 함께 일하는 기회와 관련해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 간 차이가 크지 않았고, 전체 응답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채용과 승진에서는 민간사업체에서 '여성에게 불리함'의 응답이 더 많았다. 채용 기회의 경우 공공기관 10.9%, 민간사업체 20.3%, 승진 기회의 경우 공공기관 19.3%, 민간사업체 27.7%로 약 10%p 내외의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문항별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채용 기회에서는 남성 20.1%, 여성 16.3%로 여성보다 남성이 여성에게 불리하다고 보는 비율이 높았다. 그 외 문항들에서는 여성의 '여성에게 불리함'의 응답이 남성보다 높았다. 특히 보직 또는 인사이동 기회(남성 17.2%, 여성 26.2%)에서 약 10%p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표 III-60〉 직장 내 조직문화(2)

(단위: %)

| 구분                                       |       | 남성에게<br>매우<br>불리함 | 남성에게<br>약간<br>불리함 | 성별에<br>관계없이<br>동등 | 여성에게<br>약간<br>불리함 | 여성에게<br>매우<br>불리함 | 모름/<br>무응답 | 계     |
|------------------------------------------|-------|-------------------|-------------------|-------------------|-------------------|-------------------|------------|-------|
| 채용 기회                                    | 전 체   | 0.5               | 6.1               | 74.6              | 17.2              | 1.5               | 0.2        | 100.0 |
|                                          | 유형    |                   |                   |                   |                   |                   |            |       |
|                                          | 공공기관  | 1.0               | 3.7               | 84.5              | 9.7               | 1.2               | -          | 100.0 |
|                                          | 민간사업체 | 0.4               | 6.5               | 72.6              | 18.7              | 1.6               | 0.2        | 100.0 |
|                                          | 성별    |                   |                   |                   |                   |                   |            |       |
|                                          | 남성    | 0.5               | 5.5               | 73.7              | 18.5              | 1.6               | 0.2        | 100.0 |
| 핵심 업무에<br>배치될 기회                         | 전 체   | 0.5               | 4.0               | 73.8              | 19.5              | 2.1               | 0.2        | 100.0 |
|                                          | 유형    |                   |                   |                   |                   |                   |            |       |
|                                          | 공공기관  | 0.9               | 2.0               | 75.9              | 18.3              | 2.9               | -          | 100.0 |
|                                          | 민간사업체 | 0.4               | 4.4               | 73.3              | 19.8              | 1.9               | 0.2        | 100.0 |
|                                          | 성별    |                   |                   |                   |                   |                   |            |       |
|                                          | 남성    | 0.4               | 3.9               | 75.1              | 18.7              | 1.7               | 0.2        | 100.0 |
| 승진 기회                                    | 전 체   | 0.4               | 4.6               | 68.5              | 23.5              | 2.8               | 0.2        | 100.0 |
|                                          | 유형    |                   |                   |                   |                   |                   |            |       |
|                                          | 공공기관  | 1.0               | 3.5               | 76.2              | 16.5              | 2.8               | -          | 100.0 |
|                                          | 민간사업체 | 0.3               | 4.8               | 66.9              | 24.9              | 2.8               | 0.2        | 100.0 |
|                                          | 성별    |                   |                   |                   |                   |                   |            |       |
|                                          | 남성    | 0.5               | 5.7               | 70.0              | 21.8              | 1.9               | 0.2        | 100.0 |
| 유리한 보직 또는<br>인사이동의 기회                    | 전 체   | 0.7               | 5.2               | 73.3              | 18.7              | 1.9               | 0.2        | 100.0 |
|                                          | 유형    |                   |                   |                   |                   |                   |            |       |
|                                          | 공공기관  | 1.3               | 2.9               | 77.1              | 16.4              | 2.3               | -          | 100.0 |
|                                          | 민간사업체 | 0.6               | 5.6               | 72.5              | 19.2              | 1.8               | 0.3        | 100.0 |
|                                          | 성별    |                   |                   |                   |                   |                   |            |       |
|                                          | 남성    | 0.9               | 6.2               | 75.5              | 15.8              | 1.4               | 0.2        | 100.0 |
| 비공식 네트워크를<br>통해 중요한<br>정보를 얻을 수<br>있는 기회 | 전 체   | 0.4               | 4.1               | 78.9              | 14.2              | 1.9               | 0.3        | 100.0 |
|                                          | 유형    |                   |                   |                   |                   |                   |            |       |
|                                          | 공공기관  | 0.9               | 2.2               | 80.1              | 14.0              | 2.8               | -          | 100.0 |
|                                          | 민간사업체 | 0.3               | 4.5               | 78.7              | 14.3              | 1.8               | 0.4        | 100.0 |
|                                          | 성별    |                   |                   |                   |                   |                   |            |       |
|                                          | 남성    | 0.4               | 4.4               | 81.4              | 12.1              | 1.5               | 0.2        | 100.0 |
| 영향력 있는<br>고위직·관리자와<br>함께 일할 수<br>있는 기회   | 전 체   | 0.3               | 3.0               | 75.5              | 18.7              | 2.2               | 0.2        | 100.0 |
|                                          | 유형    |                   |                   |                   |                   |                   |            |       |
|                                          | 공공기관  | 0.7               | 1.6               | 78.3              | 16.6              | 2.9               | -          | 100.0 |
|                                          | 민간사업체 | 0.3               | 3.3               | 74.9              | 19.2              | 2.1               | 0.3        | 100.0 |
|                                          | 성별    |                   |                   |                   |                   |                   |            |       |
|                                          | 남성    | 0.4               | 3.3               | 78.0              | 16.5              | 1.6               | 0.2        | 100.0 |

주: 백분율은 15,073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 3) 성별에 기반한 부정적인 언행 경험

지난 3년간 타인으로부터 6개 문항의 성별에 기반한 부정적인 언행에 대한 경험이 있었는지 조사하였다. 경험이 '있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차 심부름, 청소, 짐 나르기 등을 특정 성별에게 주로 시킴' 14.1%, '여성/남성의 역할을 당연시함' 9.5%, '여성다움/남성다움을 강요하거나 비난함' 7.9%, '아줌마, 아가씨, 아저씨 등의 호칭을 들음' 7.7%, '여성/남성을 비하하거나 무시함' 7.0%로 나타났다.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모든 문항에서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체보다 높았다. 공공기관의 경우 '차 심부름, 청소, 짐 나르기 등을 특정 성별에게 주로 시킴' 17.9%, '여성/남성의 역할을 당연시함' 16.1%, '여성다움/남성다움을 강요하거나 비난함' 11.7%, '여성/남성을 비하하거나 무시함' 11.3%였다. 민간사업체의 경우 '차 심부름, 청소, 짐 나르기 등을 특정 성별에게 주로 시킴' 13.3%, '여성/남성의 역할을 당연시함' 8.2%, '아줌마, 아가씨, 아저씨 등의 호칭을 들음' 7.6%, '여성다움/남성다움을 강요하거나 비난함' 7.2%였다.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 모두 '차 심부름, 청소, 짐 나르기 등을 특정 성별에게 주로 시킴', '여성다움/남성다움을 강요하거나 비난함', '여성/남성의 역할을 당연시함' 등이 높아서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성별 분업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성별로는 6개 문항 모두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경험률이 높았다. 그리고 남성은 6개 문항 중 '차 심부름, 청소, 짐 나르기 등을 특정 성별에게 주로 시킴'에서, 여성은 6개 문항 중 '차 심부름, 청소, 짐 나르기 등을 특정 성별에게 주로 시킴', '여성/남성의 역할을 당연시함', '아줌마, 아가씨, 아저씨 등의 호칭을 들음'에서 경험률이 높았다. 다수의 문항에서 성별 격차가 5%p를 밑돌았는데, '아줌마, 아가씨, 아저씨 등의 호칭을 들음'과 '여성/남성의 역할을 당연시함'에서는 성별 격차가 5%p를 상회하였다.

연령별로 20대 이하의 다른 유형은 전체 응답 수준을 밑돌았는데 '차 심부름, 청소, 짐 나르기 등을 특정 성별에게 주로 시킴'(16.7%)에서는 상대적으로 경험률이 높았다. 50대 이상은 '여성다움/남성다움을 강요하거나 비난함'(9.4%), '여성/남성을 비하하거나 무시함'(9.3%), '여성/남성의 역할을 당연시함'(11.7%) 등 여러 문항에서 전체 응답 수준을 상회하였다.

공공기관 유형별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문항에서 전체 응답 수준을 상회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차 심부름, 청소, 짐 나르기 등을 특정 성별에게 주로 시킴'(34.4%), '여성/남성의 역할을 당연시함'(26.7%) 등에서 월등히 높았다.

민간사업체 업종 중 제조업과 유통서비스업에서 '차 심부름, 청소, 짐 나르기 등을 특정 성별에게 주로 시킴'이, 사회서비스업에서는 '아줌마, 아가씨, 아저씨 등의 호칭을 들음'



에서 경험률이 높았다.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중 500인 이상 사업체는 모든 문항에서 전체 응답 수준을 상회하여 성별에 기반한 부정적인 언행에 대한 경험률이 높았다.

〈표 III-61〉 성별에 기반한 부정적인 언행 경험 여부

(단위: %)

| 구분                                 | 여성/남성의<br>업무능력을<br>일반화하거나<br>깎아내림 | 여성다움/<br>남성다움을<br>강요하거나<br>비난함 | 여성/남성을<br>비하하거나<br>무시함 | 아줌마,<br>아가씨,<br>아저씨 등의<br>호칭을 들음 | 차 심부름,<br>창고 짐 나르기<br>등을 특정<br>성별에게<br>주로 시킴 | 여성/<br>남성의<br>역할을<br>당연시함 |
|------------------------------------|-----------------------------------|--------------------------------|------------------------|----------------------------------|----------------------------------------------|---------------------------|
| 전 체                                | 6.6                               | 7.9                            | 7.0                    | 7.7                              | 14.1                                         | 9.5                       |
| 유형                                 |                                   |                                |                        |                                  |                                              |                           |
| 공공기관                               | 7.7                               | 11.7                           | 11.3                   | 8.0                              | 17.9                                         | 16.1                      |
| 민간사업체                              | 6.3                               | 7.2                            | 6.1                    | 7.6                              | 13.3                                         | 8.2                       |
| 성별                                 |                                   |                                |                        |                                  |                                              |                           |
| 남성                                 | 5.8                               | 6.9                            | 5.8                    | 5.0                              | 12.9                                         | 7.4                       |
| 여성                                 | 7.8                               | 9.6                            | 8.9                    | 12.0                             | 15.9                                         | 13.0                      |
| 연령                                 |                                   |                                |                        |                                  |                                              |                           |
| 20대 이하                             | 6.1                               | 6.5                            | 5.1                    | 7.2                              | 16.7                                         | 7.9                       |
| 30대                                | 6.7                               | 8.0                            | 5.9                    | 6.5                              | 13.6                                         | 8.6                       |
| 40대                                | 6.8                               | 7.0                            | 6.5                    | 8.6                              | 13.4                                         | 8.9                       |
| 50대 이상                             | 6.4                               | 9.4                            | 9.3                    | 8.1                              | 14.1                                         | 11.7                      |
| 직급                                 |                                   |                                |                        |                                  |                                              |                           |
| 관리직                                | 6.7                               | 7.4                            | 6.9                    | 6.7                              | 12.8                                         | 8.5                       |
| 일반직                                | 6.6                               | 8.2                            | 7.0                    | 8.2                              | 14.7                                         | 10.1                      |
| 모름/무응답                             | 1.7                               | 7.8                            | 6.1                    | 8.5                              | 20.8                                         | 6.8                       |
| 고용형태                               |                                   |                                |                        |                                  |                                              |                           |
| 정규직                                | 6.8                               | 8.0                            | 7.1                    | 7.5                              | 14.3                                         | 9.7                       |
| 비정규직                               | 5.2                               | 7.4                            | 6.4                    | 9.8                              | 12.5                                         | 8.7                       |
| 모름/무응답                             | 0.8                               | 3.2                            | 1.2                    | 3.7                              | 9.3                                          | 1.4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국가기관                               | 11.4                              | 12.5                           | 12.7                   | 9.4                              | 17.7                                         | 14.9                      |
| 지방자치단체                             | 11.2                              | 21.4                           | 20.4                   | 18.4                             | 34.4                                         | 26.7                      |
| 초/중/고                              | 2.8                               | 5.8                            | 5.7                    | 3.2                              | 9.1                                          | 9.9                       |
| 대학                                 | 8.9                               | 12.4                           | 11.4                   | 5.4                              | 19.2                                         | 19.1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제조업                                | 8.0                               | 9.1                            | 7.9                    | 7.2                              | 15.8                                         | 9.8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8.6                               | 5.4                            | 3.8                    | 4.8                              | 11.7                                         | 5.1                       |
| 개인서비스업                             | 6.3                               | 5.0                            | 4.9                    | 8.1                              | 13.5                                         | 8.3                       |
| 유통서비스업                             | 5.4                               | 6.6                            | 4.4                    | 7.8                              | 16.8                                         | 7.2                       |
| 사업서비스업                             | 4.3                               | 5.5                            | 5.2                    | 5.4                              | 9.0                                          | 6.8                       |
| 사회서비스업                             | 5.8                               | 8.9                            | 7.6                    | 12.8                             | 13.7                                         | 10.0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30~99인                             | 5.6                               | 6.4                            | 5.4                    | 8.2                              | 12.4                                         | 7.1                       |
| 100~299인                           | 5.0                               | 5.2                            | 4.7                    | 7.1                              | 13.4                                         | 7.0                       |
| 300~499인                           | 6.0                               | 5.3                            | 5.4                    | 5.6                              | 11.9                                         | 7.6                       |
| 500인 이상                            | 8.9                               | 10.8                           | 8.9                    | 8.0                              | 14.9                                         | 11.4                      |

주: 1) 백분율은 15,073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있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결과표를 재구성함.

## 아. 조직문화와 성희롱 피해 및 대응

이 절에서는 기관/사업체의 조직문화 특성에 따라 구성원의 성희롱 피해 경험 및 발생 시 대응, 성희롱 대응체계에 대한 신뢰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탐색적으로 살펴본다. 이러한 탐색적 분석을 통해 조직 내 성희롱 발생 및 구성원의 대처에 있어 조직문화가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고, 성희롱 방지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폭력 예방교육이나 사건처리 절차 마련뿐 아니라 조직문화 개선 노력이 함께 추진되어야 함을 보여주고자 한다.

분석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네 가지이다.

- ① 우선 조직문화 특성은 크게 일반적인 조직문화와 성별 분리 경험 -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본다. 일반적 조직문화 특성으로는 △회식 등 업무 외 모임을 강요하는 집단주의 문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고성이나 폭언을 자주 하는 위계적 문화 △연애, 결혼 등에 관한 질문을 거리낌 없이 하는 사생활 침해 문화 - 이상 세 가지 항목별로 성희롱 피해 및 대응 양상의 차이를 분석한다. 성별 분리 경험은 △차 심부름, 짐 나르기 등의 일을 특정 성별에게 주로 시키는 성별 업무 분리 △남성=가장, 여성=양육자 등으로 성역할 분리를 당연시하는 경우 - 두 가지 경험 여부에 따른 성희롱 피해 및 대응 양상의 차이를 살펴본다.

일반적 조직문화 특성 항목은 4점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④매우 그렇다) 응답에서 ‘그렇지 않다(①+②)’ 응답과 ‘그렇다(③+④)’ 응답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렇다’ 응답이 해당 조직문화 특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경우이다(집단주의 문화, 위계적 문화, 사생활 침해 문화가 있음). 성별 분리 경험 항목은 지난 3년 이내 해당 경험이 있다, 없다 응답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 역시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경험 있음’이 성별 분리 문화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이다.

- ② 성희롱 피해 경험은 지난 3년 이내 성희롱 직접 경험 유무, 전해 듣거나 목격한 경험 유무, 성희롱 직접 경험 응답자 중 2차 피해 경험 유무 - 이상 세 가지 항목의 응답이 조직문화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했다.
- ③ 성희롱 발생 시 대응 양상은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그 자리에서 피해 당사자 및 목격자의 행동, 피해 경험 이후 사건처리 대응 및 그 이유, 피해 경험으로 인한 영향 - 이상 네 가지 항목에 대해 조직문화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 ④ 성희롱 대응체계에 대한 신뢰도는 기관장·사업주의 성희롱 방지 노력 여부, 외부 신고창구 및 조직 내부 고충처리절차 이용 의사, 사건 발생 시 조직 내 공정한

처리에 대한 기대 및 그 이유 - 이상 네 가지 항목에 대한 응답이 조직문화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했다.

### 1) 응답자 특성별 조직문화 인식

먼저 조직문화 특성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직장 내에 '사생활 침해 문화'가 있다는 응답이 37.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집단주의 문화' 26.1%, '위계적 문화' 13.5% 순이었다. '성별 업무 분리' 경험에 있다는 응답은 14.1%, '성역할 분리' 경험에 있다는 응답은 9.6%였다.

조직문화 특성은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일반적인 조직문화 특성 세 가지가 있다는 응답은 민간사업체가 공공기관보다 많았고, 성별 분리 경험은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체보다 많았다. 특히 민간사업체는 '집단주의 문화', '위계적 문화'가 있다는 응답이 공공기관보다 2배 가까이 많았고, 공공기관은 '성역할 분리'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민간사업체보다 2배 많았다.

성별로는 대부분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았지만, '집단주의 문화'는 남성이 26.2%로 여성(25.9%)보다 약간 더 높았다. 다른 항목보다 '사생활 침해 문화'(남성 34.7%, 여성 41.4%), '성역할 분리' 경험(남성 7.4%, 여성 13.1%)에서 남녀 간 응답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대체로 2030 세대에서 조직문화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많고, 50대 이상에서는 적었으나, '성역할 분리' 경험은 20대가 7.9%로 가장 낮고, 50대 이상이 11.7%로 가장 높았다.

직급별로 보면 대부분 항목에서 일반 직원이 관리직에 비해 조직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성별 분리 문화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약간 더 많았으나, '집단주의 문화'가 있다는 응답은 관리직이 27.5%로 25.4%인 일반 직원보다 약간 더 많았다.

고용형태별 차이를 보면 모두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이 조직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성별 분리 문화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약간 더 많았다.

공공기관 유형별 조직문화 차이는 기관별로 차이가 큰 편이었는데,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조직문화가 부정적이며 성별 분리 문화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초·중·고등학교는 가장 낮았다. 지방자치단체와 초/중/고 간의 응답 비율은 적게는 1.7배에서 많게는 4.3배까지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생활 침해 문화', '집단주의 문화', '성별 업무 분리', '성역할 분리' 경험 정도가 타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사업체보다도 크게 높게 나타났다.

민간사업체의 업종별 조직문화 차이도 적지 않았고, 각 항목별로 응답 비율이 높은 업종에 차이가 있었다. 먼저 ‘집단주의 문화’가 있다는 응답은 사업서비스업이 38.1%로 가장 많고, ‘위계적 문화’는 사회서비스업(17.2%)과 제조업(17.1%), ‘사생활 침해 문화’는 사회서비스업(43.9%), ‘성별 업무 분리’는 유통서비스업(16.9%)과 제조업(15.8%), ‘성역할 분리’는 사회서비스업(10.1%)이 가장 많았다.

민간사업체의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모든 항목에서 500인 이상 대기업의 부정적 응답이 더 많았다. 그중 ‘집단주의 문화’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응답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30~99인 22.6%, 100~299인 24.0%, 300~499인 27.8%, 500인 이상 41.0%), ‘위계적 문화’, ‘사생활 침해’, ‘성별 업무 분리’는 300~499인이 가장 적고, ‘성역할 분리’는 30~99인과 100~299인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적었다.

〈표 III-62〉 응답자 특성별 조직문화 인식

(단위: %)

| 구분                                 | 일반적 조직문화 특성                                                         |                                                                           |                                                                            | 성별 분리 경험                                                       |                                                                                      |
|------------------------------------|---------------------------------------------------------------------|---------------------------------------------------------------------------|----------------------------------------------------------------------------|----------------------------------------------------------------|--------------------------------------------------------------------------------------|
|                                    | 집단주의 문화<br>(우리 직장은<br>회식 등 업무<br>시간 외의<br>모임에 꼭<br>참석해야 하는<br>분위기다) | 위계적 문화<br>(우리 직장에서는<br>상급자가<br>하급자에게<br>큰 소리를<br>내거나 폭언을<br>자주 하는<br>편이다) | 사생활 침해 문화<br>(우리 직장<br>구성원들은<br>연애, 결혼 등<br>사생활에 관해<br>묻는데 거리낌이<br>없는 편이다) | 성별 업무 분리<br>(차 심부름,<br>청소,<br>짐 나르기<br>등을 특정<br>성별에게<br>주로 시킴) | 성역할 분리<br>(‘남자는<br>가장이나까...’,<br>‘여자들은 애를<br>봐야 하니까...’<br>등 남성/여성의<br>역할을 당연시<br>함) |
| 전 체                                | 26.1                                                                | 13.5                                                                      | 37.3                                                                       | 14.1                                                           | 9.6                                                                                  |
| 유형                                 |                                                                     |                                                                           |                                                                            |                                                                |                                                                                      |
| 공공기관                               | 15.1                                                                | 8.2                                                                       | 32.4                                                                       | 17.9                                                           | 16.1                                                                                 |
| 민간사업체                              | 28.3                                                                | 14.6                                                                      | 38.3                                                                       | 13.3                                                           | 8.2                                                                                  |
| 성별                                 |                                                                     |                                                                           |                                                                            |                                                                |                                                                                      |
| 남자                                 | 26.2                                                                | 13.1                                                                      | 34.7                                                                       | 12.9                                                           | 7.4                                                                                  |
| 여자                                 | 25.9                                                                | 14.2                                                                      | 41.4                                                                       | 15.9                                                           | 13.1                                                                                 |
| 연령                                 |                                                                     |                                                                           |                                                                            |                                                                |                                                                                      |
| 20대 이하                             | 27.6                                                                | 16.2                                                                      | 38.0                                                                       | 16.8                                                           | 7.9                                                                                  |
| 30대                                | 32.2                                                                | 14.3                                                                      | 39.8                                                                       | 13.6                                                           | 8.7                                                                                  |
| 40대                                | 27.0                                                                | 14.2                                                                      | 38.3                                                                       | 13.4                                                           | 8.9                                                                                  |
| 50대 이상                             | 19.1                                                                | 11.0                                                                      | 33.8                                                                       | 14.1                                                           | 11.7                                                                                 |
| 직급유형                               |                                                                     |                                                                           |                                                                            |                                                                |                                                                                      |
| 관리직                                | 27.5                                                                | 12.4                                                                      | 34.1                                                                       | 12.8                                                           | 8.5                                                                                  |
| 일반직                                | 25.4                                                                | 14.0                                                                      | 39.0                                                                       | 14.7                                                           | 10.1                                                                                 |
| 모름/무응답                             | 21.6                                                                | 21.9                                                                      | 36.8                                                                       | 21.0                                                           | 6.8                                                                                  |
| 고용형태                               |                                                                     |                                                                           |                                                                            |                                                                |                                                                                      |
| 정규직                                | 27.0                                                                | 13.6                                                                      | 37.6                                                                       | 14.3                                                           | 9.7                                                                                  |
| 비정규직                               | 18.7                                                                | 11.9                                                                      | 35.1                                                                       | 12.5                                                           | 8.7                                                                                  |
| 모름/무응답                             | 21.3                                                                | 15.7                                                                      | 25.4                                                                       | 9.4                                                            | 1.4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국가기관                               | 15.5                                                                | 8.2                                                                       | 31.4                                                                       | 17.7                                                           | 14.9                                                                                 |
| 지방자치단체                             | 30.2                                                                | 10.4                                                                      | 44.2                                                                       | 34.4                                                           | 26.7                                                                                 |
| 초/중/고                              | 7.1                                                                 | 5.8                                                                       | 26.5                                                                       | 9.1                                                            | 9.9                                                                                  |
| 대학                                 | 14.9                                                                | 10.8                                                                      | 33.7                                                                       | 19.2                                                           | 19.1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제조업                                | 26.6                                                                | 17.1                                                                      | 37.1                                                                       | 15.8                                                           | 9.8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25.7                                                                | 13.3                                                                      | 33.5                                                                       | 11.7                                                           | 5.1                                                                                  |
| 개인서비스업                             | 24.9                                                                | 14.5                                                                      | 37.9                                                                       | 13.5                                                           | 8.4                                                                                  |
| 유통서비스업                             | 24.2                                                                | 12.1                                                                      | 31.9                                                                       | 16.9                                                           | 7.2                                                                                  |
| 사업서비스업                             | 38.1                                                                | 11.3                                                                      | 40.7                                                                       | 9.0                                                            | 6.8                                                                                  |
| 사회서비스업                             | 23.6                                                                | 17.2                                                                      | 43.9                                                                       | 13.7                                                           | 10.1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30~99인                             | 22.6                                                                | 14.7                                                                      | 36.1                                                                       | 12.4                                                           | 7.1                                                                                  |
| 100~299인                           | 24.0                                                                | 13.7                                                                      | 36.3                                                                       | 13.4                                                           | 7.0                                                                                  |
| 300~499인                           | 27.8                                                                | 12.8                                                                      | 30.4                                                                       | 11.9                                                           | 7.6                                                                                  |
| 500인 이상                            | 41.0                                                                | 15.8                                                                      | 46.1                                                                       | 14.9                                                           | 11.4                                                                                 |

주: 1) 백분율은 각 조직문화 조사항목의 무응답(결측치) 사례를 제외한 다음의 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집단주의 문화(15,055명), 위계적 문화(15,051명), 사생활 침해 문화(15,050명), 성별 업무 분리(15,061명), 성역할 분리(15,060명)

2) 표의 값은 일반적 조직문화 특성(집단주의, 위계적 문화, 사생활 침해)의 경우 4점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④매우 그렇다) 응답 중 ‘그렇다(③+④)’ 응답 비율을, 성별 분리 경험(성별 업무 분리, 성역할 분리)의 경우 지난 3년 이내 해당 경험이 ‘있다’ 응답 비율을 나타냄.

## 2) 조직문화 특성에 따른 성희롱 피해 실태

### 가) 조직문화 특성에 따른 성희롱 피해 경험

조직문화 특성에 따라 성희롱 피해 경험 정도(지난 3년 이내에 조사표상의 14가지 성희롱 중 하나 이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조직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성별 분리 경험이 있는 경우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 모두에서 유의하게 더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민간사업체보다 공공기관에서 더 크게 나타났고, 특히 ‘위계적 문화’가 있다는 공공기관 응답자의 성희롱 유경험률은 28.8%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5.4%)보다 5배 이상 많았다. ‘집단주의 문화’(그렇지 않다 5.2%, 그렇다 19.3%), ‘사생활 침해 문화’(그렇지 않다 4.1%, 그렇다 14.2%)에 따른 성희롱 유경험률 역시 3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민간사업체 역시 공공기관보다는 차이가 작지만 ‘집단주의 문화’(그렇지 않다 3.1%, 그렇다 7.5%), ‘위계적 문화’(그렇지 않다 3.4%, 그렇다 10.0%), ‘사생활 침해 문화’(그렇지 않다 2.4%, 그렇다 7.4%)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2.4배~3.1배까지 성희롱 유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 업무 분리’ 및 ‘성역할 분리’ 경험이 있는 경우, 역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성희롱 피해 경험률이 유의하게 높았고, 그 차이는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 모두에서 앞의 일반적 조직문화 특성에 따른 차이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성별 업무 분리’ 경험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보다 공공기관은 6.8배(경험 없음 3.6%, 경험 있음 24.5%), 민간사업체는 8.4배(경험 없음 2.2%, 경험 있음 18.4%) 성희롱 유경험률이 높았고, ‘성역할 분리’ 경험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은 8.2배(경험 없음 3.4%, 경험 있음 27.8%), 민간사업체는 9.1배(경험 없음 2.6%, 경험 있음 23.7%) 높았다. 성별 분리 경험에 따른 경험률의 차이는 공공기관보다 민간사업체에서 더 크게 나타났고, 공공·민간 모두 ‘성역할 분리’를 당연시하는 문화에서 피해 경험이 더 많았다.

〈표 III-63〉 조직문화 특성에 따른 성희롱 피해 경험 여부

(단위: %)

| 구분                    |                                                                             |        | 성희롱 피해 경험 |      |            | 계     | $\chi^2$      |
|-----------------------|-----------------------------------------------------------------------------|--------|-----------|------|------------|-------|---------------|
|                       |                                                                             |        | 있다        | 없다   | 모름/<br>무응답 |       |               |
| 일반적<br>조직<br>문화<br>특성 | 집단주의 문화<br>(우리 직장은 화식<br>등 업무시간 외의<br>모임에 꼭 참석해야<br>하는 분위기다)                | 공공기관   |           |      |            |       |               |
|                       |                                                                             | 그렇지 않다 | 5.2       | 94.8 | -          | 100.0 | 55980.690***  |
|                       |                                                                             | 그렇다    | 19.3      | 80.7 | -          | 100.0 |               |
|                       |                                                                             | 민간사업체  |           |      |            |       |               |
|                       |                                                                             | 그렇지 않다 | 3.1       | 96.6 | 0.3        | 100.0 | 69893.837***  |
|                       |                                                                             | 그렇다    | 7.5       | 92.5 | -          | 100.0 |               |
|                       | 위계적 문화<br>(우리 직장에서는<br>상급자가 하급자에게<br>큰 소리를 내거나<br>폭언을 자주 하는<br>편이다)         | 공공기관   |           |      |            |       |               |
|                       |                                                                             | 그렇지 않다 | 5.4       | 94.6 |            | 100.0 | 90545.520***  |
|                       |                                                                             | 그렇다    | 28.8      | 71.2 |            | 100.0 |               |
|                       |                                                                             | 민간사업체  |           |      |            |       |               |
|                       |                                                                             | 그렇지 않다 | 3.4       | 96.4 | 0.2        | 100.0 | 100792.180*** |
|                       |                                                                             | 그렇다    | 10.0      | 90.0 | -          | 100.0 |               |
|                       | 사생활 침해 문화<br>(우리 직장 구성원<br>들은 연애, 결혼 등<br>사생활에 관해<br>묻는데 거리낌이<br>없는 편이다)    | 공공기관   |           |      |            |       |               |
|                       |                                                                             | 그렇지 않다 | 4.1       | 95.9 | -          | 100.0 | 50130.588***  |
|                       |                                                                             | 그렇다    | 14.2      | 85.8 | -          | 100.0 |               |
|                       |                                                                             | 민간사업체  |           |      |            |       |               |
|                       |                                                                             | 그렇지 않다 | 2.4       | 97.3 | 0.3        | 100.0 | 109712.466*** |
|                       |                                                                             | 그렇다    | 7.4       | 92.5 | 0.1        | 100.0 |               |
| 성별<br>분리<br>경험        | 성별 업무 분리<br>(차 심부름, 청소,<br>짐 나르기 등을<br>특정 성별에게<br>주로 시킴)                    | 공공기관   |           |      |            |       |               |
|                       |                                                                             | 경험 없음  | 3.6       | 96.4 | -          | 100.0 | 142160.444*** |
|                       |                                                                             | 경험 있음  | 24.5      | 75.5 | -          | 100.0 |               |
|                       |                                                                             | 민간사업체  |           |      |            |       |               |
|                       |                                                                             | 경험 없음  | 2.2       | 97.6 | 0.2        | 100.0 | 547266.658*** |
|                       |                                                                             | 경험 있음  | 18.4      | 81.3 | 0.3        | 100.0 |               |
|                       | 성역할 분리<br>(‘남자는 가정이니까..’,<br>‘여자들은 애를<br>보아야니까..’ 등<br>남성/여성의<br>역할을 당연시 함) | 공공기관   |           |      |            |       |               |
|                       |                                                                             | 경험 없음  | 3.4       | 96.6 | -          | 100.0 | 175857.550*** |
|                       |                                                                             | 경험 있음  | 27.8      | 72.2 | -          | 100.0 |               |
|                       |                                                                             | 민간사업체  |           |      |            |       |               |
|                       |                                                                             | 경험 없음  | 2.6       | 97.2 | 0.2        | 100.0 | 607793.475*** |
|                       |                                                                             | 경험 있음  | 23.7      | 76.3 | -          | 100.0 |               |

주: 1) 백분율은 각 조직문화 조사항목의 무응답(결측치) 사례를 제외한 다음의 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집단주의 문화(15,055명), 위계적 문화(15,051명), 사생활 침해 문화(15,050명), 성별 업무 분리(15,061명), 성역할 분리(15,060명)

2) \*p<.05, \*\*p<.01, \*\*\*p<.001

#### 나) 조직문화 특성에 따른 2차 피해 경험

조직문화 특성에 따라 2차 피해를 경험한 정도(지난 3년 이내에 조사표상의 14가지 2차 피해 중 하나 이상 경험한 응답 비율)에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일반적 조직문화 특성(특히 ‘위계적 문화’)을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2차 피해 경험률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성별 분리 경험 유무에 따른 2차 피해 경험률의 차이는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의 양상이 상반되게 나타났다.

먼저 공공기관에서 2차 피해 경험률은 ‘집단주의 문화’(그렇지 않다 18.3%, 그렇다 27.9%), ‘위계적 문화’(그렇지 않다 14.4%, 그렇다 38.3%), ‘사생활 침해 문화’(그렇지 않다 15.6%, 그렇다 25.9%)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1.5배~2.7배 더 높았다. 민간사업체에서 2차 피해 경험률은 ‘위계적 문화’가 있는 경우 34.9%로 그렇지 않은 경우(12.8%)에 비해 2.7배 더 높았고, ‘집단주의 문화’가 있는 경우(21.4%)도 그렇지 않은 경우(19.1%)에 비해 약간 더 높았으나 큰 차이는 아니었다. 민간사업체에서 ‘사생활 침해 문화’에 따른 차이는 반대로 나타났다(그렇지 않다 30.4%, 그렇다 14.9%). 공공·민간에서 공통적으로 ‘위계적 문화’가 있는 조직에서 2차 피해 경험률이 특히 더 높았다.

‘성별 업무 분리’ 및 ‘성역할 분리’ 경험에 따른 2차 피해 경험률은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공공기관은 ‘성별 업무 분리’ 경험이 있는 경우 28.6%, 없는 경우 12.3%, ‘성역할 분리’ 경험이 있는 경우 29.7%, 없는 경우 10.3%로 성별 분리 경험이 있는 경우 2차 피해 경험률이 2배 이상 높았다. 반면 민간사업체는 ‘성별 업무 분리’ 경험이 없는 경우 22.4%, 있는 경우 18.6%, ‘성역할 분리’ 경험이 없는 경우 24.8%, 있는 경우 14.7%로 성별 분리 경험이 없는 경우 오히려 2차 피해 경험률이 1.2배~1.7배 더 높았다.



〈표 III-64〉 조직문화 특성에 따른 2차 피해 경험 여부

(단위: %)

| 구분                    |                                                                             |        | 2차 피해 경험 |      |            | 계     | $\chi^2$     |
|-----------------------|-----------------------------------------------------------------------------|--------|----------|------|------------|-------|--------------|
|                       |                                                                             |        | 있다       | 없다   | 모름/<br>무응답 |       |              |
| 일반적<br>조직<br>문화<br>특성 | 집단주의 문화<br>(우리 직장은 회식<br>등 업무시간 외의<br>모임에 꼭 참석해야<br>하는 분위기다)                | 공공기관   |          |      |            |       |              |
|                       |                                                                             | 그렇지 않다 | 18.3     | 81.7 | -          | 100.0 | 1416.832***  |
|                       |                                                                             | 그렇다    | 27.9     | 72.1 | -          | 100.0 |              |
|                       |                                                                             | 민간사업체  |          |      |            |       | 438.138***   |
|                       |                                                                             | 그렇지 않다 | 19.1     | 73.4 | 7.5        | 100.0 |              |
|                       |                                                                             | 그렇다    | 21.4     | 72.4 | 6.2        | 100.0 |              |
|                       | 위계적 문화<br>(우리 직장에서는<br>상급자가 하급자에게<br>큰 소리를 내거나<br>폭언을 자주 하는<br>편이다)         | 공공기관   |          |      |            |       | 7954.030***  |
|                       |                                                                             | 그렇지 않다 | 14.4     | 85.6 | -          | 100.0 |              |
|                       |                                                                             | 그렇다    | 38.3     | 61.7 | -          | 100.0 |              |
|                       |                                                                             | 민간사업체  |          |      |            |       | 26962.440*** |
|                       |                                                                             | 그렇지 않다 | 12.8     | 82.0 | 5.2        | 100.0 |              |
|                       |                                                                             | 그렇다    | 34.9     | 55.0 | 10.2       | 100.0 |              |
|                       | 사생활 침해 문화<br>(우리 직장 구성원<br>들은 연애, 결혼 등<br>사생활에 관해<br>묻는데 거리낌이<br>없는 편이다)    | 공공기관   |          |      |            |       | 1597.525***  |
|                       |                                                                             | 그렇지 않다 | 15.6     | 84.4 | -          | 100.0 |              |
|                       |                                                                             | 그렇다    | 25.9     | 74.1 | -          | 100.0 |              |
|                       |                                                                             | 민간사업체  |          |      |            |       | 11808.415*** |
|                       |                                                                             | 그렇지 않다 | 30.4     | 65.5 | 4.1        | 100.0 |              |
|                       |                                                                             | 그렇다    | 14.9     | 76.8 | 8.4        | 100.0 |              |
| 성별<br>분리<br>경험        | 성별 업무 분리<br>(차 심부름, 청소,<br>짐 나르기 등을<br>특정 성별에게<br>주로 시킴)                    | 공공기관   |          |      |            |       | 4097.437***  |
|                       |                                                                             | 경험 없음  | 12.3     | 87.7 | -          | 100.0 |              |
|                       |                                                                             | 경험 있음  | 28.6     | 71.4 | -          | 100.0 |              |
|                       |                                                                             | 민간사업체  |          |      |            |       | 2731.284***  |
|                       |                                                                             | 경험 없음  | 22.4     | 73.2 | 4.4        | 100.0 |              |
|                       |                                                                             | 경험 있음  | 18.6     | 72.6 | 8.8        | 100.0 |              |
|                       | 성역할 분리<br>(‘남자는 가정이니까..’,<br>‘여자들은 애를<br>보아야니까..’ 등<br>남성/여성의<br>역할을 당연시 함) | 공공기관   |          |      |            |       | 5800.702***  |
|                       |                                                                             | 경험 없음  | 10.3     | 89.7 | -          | 100.0 |              |
|                       |                                                                             | 경험 있음  | 29.7     | 70.3 | -          | 100.0 |              |
|                       |                                                                             | 민간사업체  |          |      |            |       | 4985.807***  |
|                       |                                                                             | 경험 없음  | 24.8     | 68.8 | 6.6        | 100.0 |              |
|                       |                                                                             | 경험 있음  | 14.7     | 78.1 | 7.2        | 100.0 |              |

주 1) 백분율은 각 조직문화 조사항목의 무응답(결측치) 사례를 제외한 다음의 응답인원(성희롱 피해를 하나 이상 경험한 경우)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집단주의 문화(986명), 위계적 문화(986명), 사생활 침해 문화(986명), 성별 업무 분리(986명), 성역할 분리(985명)

2) \*p<.05, \*\*p<.01, \*\*\*p<.001

### 3) 조직문화 특성에 따른 성희롱 대처

#### 가) 조직문화 특성에 따른 성희롱 피해 당시 행동

조직문화 특성에 따라 성희롱 피해 당시 행동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한 결과,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대체로 가장 많은 가운데, 각 조직문화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 간에도 차이가 있었다.

일반적인 조직문화 특성에서 공공기관의 경우 조직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행위자에게 바로 중단을 요구한 경우(적극적 제지)가 더 적고, 화제를 돌리거나 자리를 피한 경우(소극적 제지)가 더 많았다. 그 외 행동에 있어서는 조직문화 각 항목에 따른 차이가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민간사업체에서는 조직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공공기관에 비해 소극적 제지 행동, 아무렇지 않게 행동한 경우가 더 적었고, 적극적으로 제지한 경우는 다소 많았다. 그 외 행동에 있어서는 조직문화 특성에 따른 일관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성희롱 발생 당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대처 행동에서 일반적인 조직문화 특성에 따른 차이는 뚜렷하지 않은 편이었다.

다음으로 성별 분리 경험에 따른 피해 당시 행동의 차이는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에서 그 양상은 상이하지만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났다. 공공기관은 ‘성별 업무 분리’ 및 ‘성역할 분리’ 경험이 있는 경우도 적극적 제지는 더 적고 소극적 제지, 도움 요청, 무대응은 더 많았다. 반면 민간사업체는 ‘성별 업무 분리’ 및 ‘성역할 분리’ 경험이 있는 경우 적극적 제지와 소극적 제지가 모두 많고, 도움 요청, 무대응, 성희롱 행위자에게 호응은 더 적었다. 성별 분리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성별 분리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소극적 제지 응답이 가장 많았다는 점도 공공부문과의 차이점이다. 이처럼 민간사업체에서 성별 분리 경험이 있는 구성원이 성희롱 발생 시 어떤 식으로든 제지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III-65〉 조직문화 특성에 따른 성희롱 피해 당시 행동

(단위: %)

| 구분                    |                                                                              |       | 성희롱<br>행위자<br>에게<br>바로<br>중단을<br>요구함 | 화제를<br>돌리<br>거나<br>자리를<br>피함 | 다른<br>사람<br>에게<br>도움을<br>요청함 | 아무<br>렇지<br>않은<br>듯<br>행동함 | 성희롱<br>행위자<br>에게<br>적당히<br>호응함 | 모름/<br>무응답 | 계    | $\chi^2$ |              |
|-----------------------|------------------------------------------------------------------------------|-------|--------------------------------------|------------------------------|------------------------------|----------------------------|--------------------------------|------------|------|----------|--------------|
| 일반적<br>조직<br>문화<br>특성 | 집단주의 문화<br>(우리 직장은 회식<br>등 업무시간 외의<br>모임에 꼭 참석해야<br>하는 분위기다)                 | 공공기관  | 그렇지 않다                               | 12.2                         | 29.7                         | 0.6                        | 45.7                           | 4.6        | 7.2  | 100.0    | 2457.638***  |
|                       |                                                                              |       | 그렇다                                  | 7.8                          | 36.1                         | 2.4                        | 47.7                           | 1.9        | 4.2  | 100.0    |              |
|                       |                                                                              | 민간사업체 | 그렇지 않다                               | 11.1                         | 34.5                         | 1.6                        | 42.9                           | 0.9        | 9.1  | 100.0    | 5225.961***  |
|                       |                                                                              |       | 그렇다                                  | 9.9                          | 32.0                         | 4.3                        | 42.1                           | 3.7        | 8.0  | 100.0    |              |
|                       | 위계적 문화<br>(우리 직장에서는<br>상급자가 하급자에게<br>큰 소리를 내거나<br>폭언을 자주 하는<br>편이다)          | 공공기관  | 그렇지 않다                               | 12.3                         | 30.2                         | 1.6                        | 47.1                           | 4.5        | 4.4  | 100.0    | 2819.520***  |
|                       |                                                                              |       | 그렇다                                  | 6.6                          | 36.5                         | 0.7                        | 45.5                           | 1.4        | 9.4  | 100.0    |              |
|                       |                                                                              | 민간사업체 | 그렇지 않다                               | 10.3                         | 37.2                         | 1.1                        | 45.4                           | 1.4        | 4.6  | 100.0    | 24570.166*** |
|                       |                                                                              |       | 그렇다                                  | 11.0                         | 25.5                         | 6.3                        | 36.9                           | 3.8        | 16.5 | 100.0    |              |
|                       | 사생활 침해 문화<br>(우리 직장 구성원<br>들은 연애, 결혼 등<br>사생활에 관해<br>묻는데 거리낌이<br>없는 편이다)     | 공공기관  | 그렇지 않다                               | 13.6                         | 27.1                         | 0.8                        | 50.6                           | 1.6        | 6.3  | 100.0    | 2187.395***  |
|                       |                                                                              |       | 그렇다                                  | 8.6                          | 35.2                         | 1.6                        | 44.1                           | 4.6        | 5.8  | 100.0    |              |
|                       |                                                                              | 민간사업체 | 그렇지 않다                               | 7.3                          | 37.8                         | 5.2                        | 43.4                           | 2.3        | 3.9  | 100.0    | 10214.016*** |
|                       |                                                                              |       | 그렇다                                  | 12.2                         | 30.9                         | 1.7                        | 42.1                           | 2.2        | 11.0 | 100.0    |              |
| 성별<br>분리<br>경험        | 성별 업무 분리<br>(차 심부름, 청소,<br>짐 나르기 등을<br>특정 성별에게<br>주로 시킴)                     | 공공기관  | 경험 없음                                | 13.5                         | 28.5                         | 0.8                        | 42.0                           | 2.8        | 12.5 | 100.0    | 6677.105***  |
|                       |                                                                              |       | 경험 있음                                | 8.4                          | 34.7                         | 1.6                        | 49.6                           | 4.0        | 1.7  | 100.0    |              |
|                       |                                                                              | 민간사업체 | 경험 없음                                | 8.5                          | 26.7                         | 3.3                        | 50.5                           | 3.5        | 7.4  | 100.0    | 10098.048*** |
|                       |                                                                              |       | 경험 있음                                | 12.0                         | 38.3                         | 2.5                        | 36.4                           | 1.3        | 9.5  | 100.0    |              |
|                       | 성역할 분리<br>(‘남자는 기장이나...’,<br>‘여자들은 애를<br>봐야하니까...’ 등<br>남성/여성의<br>역할을 당연시 함) | 공공기관  | 경험 없음                                | 10.6                         | 30.8                         | 0.9                        | 42.7                           | 3.8        | 11.3 | 100.0    | 3770.637***  |
|                       |                                                                              |       | 경험 있음                                | 10.4                         | 33.1                         | 1.6                        | 49.0                           | 3.3        | 2.6  | 100.0    |              |
|                       |                                                                              | 민간사업체 | 경험 없음                                | 8.3                          | 28.7                         | 4.4                        | 46.6                           | 2.3        | 9.6  | 100.0    | 9510.482***  |
|                       |                                                                              |       | 경험 있음                                | 13.2                         | 38.7                         | 1.0                        | 37.6                           | 2.1        | 7.3  | 100.0    |              |

주: 1) 백분율은 각 조직문화 조사항목의 무응답(결측치) 사례를 제외한 다음의 응답인원(성희롱 피해를 하나 이상 경험한 경우)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집단주의 문화(986명), 위계적 문화(986명), 사생활 침해 문화(986명), 성별 업무 분리(986명), 성역할 분리(985명)

2) \*p<.05, \*\*p<.01, \*\*\*p<.001

#### 나) 조직문화 특성에 따른 성희롱 발생 당시 목격자 행동

앞서 성희롱 피해 당시 피해 당사자의 행동은 조직문화 특성에 따라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은 것과 달리, 피해 당시 목격자의 행동에 있어서는 비교적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적인 조직문화 특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성별 분리 경험이 있는 경우 대체로 목격자의 방관·동조 행동이 더 많고, 적극적/소극적 제지는 더 적었다.

공공기관에서는 특히 ‘사생활 침해 문화’ 유무에 따른 목격자 행동의 차이가 다른 조직문화 특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사생활 침해 문화가 있는 경우 방조 또는 동조 응답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3배 더 많았고(그렇지 않다 58.0%, 그렇다 76.6%), 적극적/소극적 제지는 ‘사생활 침해 문화’가 없는 경우가 1.7배 더 많았다(그렇지 않다 42.1%, 그렇다 24.7%). ‘집단주의 문화’가 있는 경우 방관 또는 동조 응답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1배 많고, 적극적/소극적 제지는 ‘집단주의 문화’가 없는 경우 1.4배 더 많았다. ‘위계적 문화’가 있는 경우에는 방관 또는 동조 응답이 1.2배 많고, 적극적/소극적 제지는 ‘위계적 문화’가 없는 경우 1.5배 더 많았다. 민간사업체에서는 특히 ‘집단주의 문화’가 있는 경우 방관 또는 동조 응답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 더 많았고(그렇지 않다 35.6%, 그렇다 71.6%), 적극적/소극적 제지는 ‘집단주의 문화’가 없는 경우가 1.7배 더 많았다(그렇지 않다 49.1%, 그렇다 28.6%). ‘사생활 침해 문화’가 있는 경우 방관 또는 동조 응답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4배 더 많고, 적극적/소극적 제지 응답은 반대로 ‘사생활 침해 문화’가 없는 경우 1.3배 더 많았다. 다만 민간사업체에서 ‘위계적 문화’ 유무에 따른 방관·동조 응답 비율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는 점(그렇지 않다 51.6%, 그렇다 50.3%)은 다른 조직문화 특성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성별 분리 경험에 따른 차이도 위와 유사하게, 대체로 ‘성별 업무 분리’ 및 ‘성역할 분리’ 경험이 있는 경우 목격자가 방관·동조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고, 적극적/소극적으로 제지했다는 응답 비율이 낮았다. 다만 공공기관에서 ‘성별 업무 분리’ 경험에 따른 방관·동조 행동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경험 없음 70.3%, 경험 있음 69.4%).

〈표 III-66〉 조직문화 특성에 따른 성희롱 발생 당시 목격자 행동(복수응답)

(단위: %)

| 구분                                                                       |                                                                             |        | 방관 또는 동조 | 적극적/소극적 제지 | 기타, 모름/무응답 |
|--------------------------------------------------------------------------|-----------------------------------------------------------------------------|--------|----------|------------|------------|
| 일반적<br>조직<br>문화<br>특성                                                    | 집단주의 문화<br>(우리 직장은 화식<br>등 업무시간 외의<br>모임에 꼭 참석해야<br>하는 분위기다)                | 공공기관   |          |            |            |
|                                                                          |                                                                             | 그렇지 않다 | 66.3     | 34.7       | 5.9        |
|                                                                          |                                                                             | 그렇다    | 75.7     | 25.0       | 6.9        |
|                                                                          |                                                                             | 민간사업체  |          |            |            |
|                                                                          | 그렇지 않다                                                                      | 35.6   | 49.1     | 17.1       |            |
|                                                                          | 그렇다                                                                         | 71.6   | 28.6     | 4.1        |            |
|                                                                          | 위계적 문화<br>(우리 직장에서는<br>상급자가 하급자에게<br>큰 소리를 내거나<br>폭언을 자주 하는<br>편이다)         | 공공기관   |          |            |            |
|                                                                          |                                                                             | 그렇지 않다 | 65.3     | 35.2       | 7.3        |
|                                                                          |                                                                             | 그렇다    | 78.2     | 23.6       | 4.3        |
|                                                                          |                                                                             | 민간사업체  |          |            |            |
|                                                                          | 그렇지 않다                                                                      | 51.6   | 40.7     | 9.9        |            |
|                                                                          | 그렇다                                                                         | 50.3   | 39.3     | 14.7       |            |
| 사생활 침해 문화<br>(우리 직장 구성원<br>들은 연애, 결혼 등<br>사생활에 관해<br>묻는데 거리낌이<br>없는 편이다) | 공공기관                                                                        |        |          |            |            |
|                                                                          | 그렇지 않다                                                                      | 58.0   | 42.1     | 7.0        |            |
|                                                                          | 그렇다                                                                         | 76.6   | 24.7     | 5.8        |            |
|                                                                          | 민간사업체                                                                       |        |          |            |            |
| 그렇지 않다                                                                   | 41.2                                                                        | 46.8   | 13.8     |            |            |
| 그렇다                                                                      | 56.7                                                                        | 36.6   | 10.2     |            |            |
| 성별<br>분리<br>경험                                                           | 성별 업무 분리<br>(차 심부름, 청소,<br>짐 나르기 등을<br>특정 성별에게<br>주로 시킴)                    | 공공기관   |          |            |            |
|                                                                          |                                                                             | 경험 없음  | 70.3     | 34.4       | 4.6        |
|                                                                          |                                                                             | 경험 있음  | 69.4     | 29.1       | 7.3        |
|                                                                          |                                                                             | 민간사업체  |          |            |            |
|                                                                          | 경험 없음                                                                       | 37.8   | 42.4     | 21.6       |            |
|                                                                          | 경험 있음                                                                       | 60.9   | 38.6     | 4.1        |            |
|                                                                          | 성역할 분리<br>(‘남자는 가정이나까..’,<br>‘여자들은 애를<br>보아야니까..’ 등<br>남성/여성의<br>역할을 당연시 함) | 공공기관   |          |            |            |
|                                                                          |                                                                             | 경험 없음  | 63.5     | 38.9       | 5.9        |
| 경험 있음                                                                    |                                                                             | 73.7   | 26.2     | 6.5        |            |
| 민간사업체                                                                    |                                                                             |        |          |            |            |
| 경험 없음                                                                    | 48.0                                                                        | 43.1   | 10.9     |            |            |
| 경험 있음                                                                    | 55.1                                                                        | 36.6   | 12.1     |            |            |

주: 1) 백분율은 각 조직문화 조사항목의 무응답(결측치) 사례를 제외한 다음의 응답인원(성희롱 피해를 하나 이상 경험한 경우 중 피해 당시 목격자가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집단주의 문화(566명), 위계적 문화(566명), 사생활 침해 문화(566명), 성별 업무 분리(566명), 성역할 분리(565명)  
 2) 성희롱 발생 당시 목격자 행동은 아래 조사표상의 보기별 비율을 다음과 같이 합친 것임. ①+②=방관 또는 동조, ③+④=적극적/소극적 제지, ⑤+모름/무응답=기타, 모름/무응답  
 ① 모른 척 하였다(방관했다)  
 ② 행위자에 동조하였다  
 ③ 행위자의 행동을 제지하였다  
 ④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었다(피해자를 가해상황으로부터 분리 등)  
 ⑤ 기타

#### 다) 조직문화 특성에 따른 성희롱 피해 대처 유형

조직문화 특성에 따라 성희롱 피해 이후 대처 행동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한 결과, 참고 넘어갔다는 응답이 전반적으로 많지만, 대체로 일반적인 조직문화 특성(특히 ‘집단주의 문화’)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성별 분리 경험이 있는 경우 ‘참고 넘어감’ 응답 비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았다.

일반적인 조직문화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면 대체로 조직문화가 부정적이라고 평가할수록 ‘참고 넘어감’이 많고, 동료에게 알리고 의논하거나 공적 성희롱 대응체계 이용한 경우는 적는데, 개별 조직문화 특성이나 공공/민간에 따라 대처 유형이 약간씩 차이를 보였다. 그럼에도 ‘집단주의 문화’ 유무에 따른 대처 행동의 차이는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 모두에서 일관된 양상을 보여, ‘집단주의 문화’가 있는 조직의 구성원들은 개인적 처리에서 공적 대응체계 이용까지 모든 유형의 대처 행동에 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업무 분리’ 및 ‘성역할 분리’ 경험이 있는 경우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참고 넘어감’ 비율이 더 높았고, 나머지 대처 행동에서는 공공과 민간이 다소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에서는 성별 분리 경험이 있는 경우 공적 대응체계를 이용했다는 응답이 약간 더 높았지만, 반대로 민간사업체에서는 성별 분리 경험이 있는 경우 공적 대응체계를 이용했다는 응답이 적었고, 그 차이가 큰 편이었다. 또 민간사업체에서는 성별 분리 경험이 있는 경우 개인적 처리 응답이 적고, 동료에게 알리고 의논 응답은 더 많았다. 즉 민간사업체에서는 성별 분리 경험이 없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사과 요구나 공적 대응체계 이용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I-67〉 조직문화 특성에 따른 성희롱 피해 대처 유형

(단위: %)

| 구분                    |                                                                     |                                                                            | 참고<br>넘어감               | 개인적<br>처리    | 동료<br>에게<br>알리고<br>익논 | 기관 내외<br>공적<br>대응체계<br>이용 | 기타,<br>모름/<br>무응답 | 계              | $\chi^2$       |              |
|-----------------------|---------------------------------------------------------------------|----------------------------------------------------------------------------|-------------------------|--------------|-----------------------|---------------------------|-------------------|----------------|----------------|--------------|
| 일반적<br>조직<br>문화<br>특성 | 집단주의 문화<br>(우리 직장은 화식<br>등 업무시간 외의<br>모임에 꼭 참석해야<br>하는 분위기다)        | 공공기관<br>그렇지 않다<br>그렇다                                                      | 64.1<br>72.6            | 6.3<br>3.5   | 19.4<br>9.0           | 4.6<br>4.2                | 5.6<br>10.6       | 100.0<br>100.0 | 3431.256***    |              |
|                       |                                                                     | 민간사업체<br>그렇지 않다<br>그렇다                                                     | 61.5<br>71.5            | 13.7<br>2.1  | 9.8<br>9.0            | 7.9<br>5.8                | 7.2<br>11.5       | 100.0<br>100.0 | 16904.282***   |              |
|                       |                                                                     | 공공기관<br>그렇지 않다<br>그렇다                                                      | 65.3<br>72.0            | 4.9<br>5.8   | 19.2<br>7.1           | 5.3<br>2.7                | 5.3<br>12.4       | 100.0<br>100.0 | 4494.449***    |              |
|                       |                                                                     | 민간사업체<br>그렇지 않다<br>그렇다                                                     | 70.0<br>59.3            | 7.3<br>9.5   | 9.3<br>9.6            | 6.4<br>7.9                | 7.0<br>13.8       | 100.0<br>100.0 | 5475.528***    |              |
|                       | 위계적 문화<br>(우리 직장에서는<br>상급자가 하급자에게<br>큰 소리를 내거나<br>폭언을 자주 하는<br>편이다) | 공공기관<br>그렇지 않다<br>그렇다                                                      | 56.1<br>74.2            | 4.4<br>5.7   | 21.0<br>11.9          | 5.9<br>3.6                | 12.6<br>4.6       | 100.0<br>100.0 | 5270.774***    |              |
|                       |                                                                     | 민간사업체<br>그렇지 않다<br>그렇다                                                     | 64.9<br>67.2            | 2.7<br>10.8  | 12.6<br>7.8           | 13.4<br>3.4               | 6.5<br>10.8       | 100.0<br>100.0 | 19577.102***   |              |
|                       |                                                                     | 사생활 침해 문화<br>(우리 직장 구성원<br>들은 연애, 결혼 등<br>사생활에 관해<br>묻는데 거리낌이<br>없는 편이다)   | 공공기관<br>그렇지 않다<br>그렇다   | 56.1<br>74.2 | 4.4<br>5.7            | 21.0<br>11.9              | 5.9<br>3.6        | 12.6<br>4.6    | 100.0<br>100.0 | 5270.774***  |
|                       |                                                                     |                                                                            | 민간사업체<br>그렇지 않다<br>그렇다  | 64.9<br>67.2 | 2.7<br>10.8           | 12.6<br>7.8               | 13.4<br>3.4       | 6.5<br>10.8    | 100.0<br>100.0 | 19577.102*** |
|                       | 성별 업무 분리<br>(차 심부름, 청소,<br>짐 나르기 등을<br>특정 성별에게<br>주로 시킴)            |                                                                            | 공공기관<br>경험 없음<br>경험 있음  | 62.8<br>70.6 | 5.3<br>5.2            | 21.6<br>11.0              | 3.6<br>5.0        | 6.7<br>8.1     | 100.0<br>100.0 | 2365.189***  |
|                       |                                                                     |                                                                            | 민간사업체<br>경험 없음<br>경험 있음 | 60.6<br>70.8 | 13.4<br>3.9           | 6.2<br>11.9               | 12.9<br>2.3       | 6.9<br>11.2    | 100.0<br>100.0 | 27245.777*** |
|                       |                                                                     | 성역할 분리<br>(‘남자는 가정이나까…’,<br>‘여자들은 애를<br>보아야하니까…’ 등<br>남성/여성의<br>역할을 당연히 함) | 공공기관<br>경험 없음<br>경험 있음  | 62.8<br>70.5 | 4.8<br>5.4            | 20.7<br>11.7              | 4.2<br>4.6        | 7.3<br>7.7     | 100.0<br>100.0 | 1646.640***  |
|                       |                                                                     |                                                                            | 민간사업체<br>경험 없음<br>경험 있음 | 60.6<br>73.4 | 12.1<br>3.1           | 6.3<br>13.1               | 11.9<br>0.8       | 9.0<br>9.6     | 100.0<br>100.0 | 28362.048*** |

주: 1) 백분율은 각 조직문화 조사항목의 무응답(결측치) 사례를 제외한 다음의 응답인원(성희롱 피해를 하나 이상 경험한 경우)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집단주의 문화(986명), 위계적 문화(986명), 사생활 침해 문화(986명), 성별 업무 분리(986명), 성역할 분리(985명)

2) \* $p < .05$ , \*\* $p < .01$ , \*\*\* $p < .001$

3) 성희롱 피해 대처 유형은 아래 조사표상의 보기별 비율을 다음과 같이 합친 것임. ①=참고 넘어감, ②=개인적 처리, ③=동료에게 알리고 의논, ④+⑤+⑥+⑦=기관 내외 공적 대응체계 이용, ⑧+모름/무응답=기타, 모름/무응답

- ① 참고 넘어감 ② 성희롱 행위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개인적으로 처리함  
 ③ 동료에게 알리고 의논함 ④ 고충상담창구(상담실, 사이버/모바일 상담센터 등)에 상담함  
 ⑤ 상급자에게 알리고 조치를 상의함 ⑥ 사내 기구를 통해 공식적으로 신고함  
 ⑦ 외부 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신고함 ⑧ 기타

이어서 성희롱 피해 후 참고 넘어간 이유가 조직문화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 대체로 일반적 조직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성별 분리 경험이 있는 경우 ‘대처방법을 몰라서’ 응답은 적고, ‘기관·조직의 묵인 또는 담당자의 부적절한 처리가 우려되어서’, ‘비난, 따돌림, 불이익을 우려해서’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일반적 조직문화 특성에 따른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조직문화 항목이나 공공/민간에 따라 약간씩 다른 양상이 나타나긴 했지만, 민간사업체에서 ‘집단주의 문화’ 유무에 따른 차이를 제외하면 조직문화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기관·조직의 묵인 또는 담당자의 부적절한 처리가 우려되어서’ 응답이 더 많았다. 즉 공공·민간 모두 ‘위계적 문화’, ‘사생활 침해 문화’가 있으면 조직의 묵인 또는 부적절한 처리를 우려해서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간사업체에서 ‘위계적 문화’ 유무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조직문화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비난, 따돌림, 불이익을 우려해서’ 응답도 더 많았다. 즉 공공·민간 모두 ‘집단주의 문화’, ‘사생활 침해 문화’가 있으면 비난, 따돌림,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분리 경험 유무에 따른 참고 넘어간 이유의 차이는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 모두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성별 업무 분리’ 및 ‘성역할 분리’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기관·조직의 묵인 또는 담당자의 부적절한 처리 우려’, ‘비난, 따돌림, 불이익 우려’, ‘행위자와 사이 불편해질까 봐’ 응답이 더 많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대처방법을 몰라서’ 응답은 더 적었다.



〈표 III-68〉 조직문화 특성에 따른 참고 넘어간 이유(복수응답)

(단위: %)

| 구분                    |                                                                             |                 | 기관/조직의<br>목인,<br>담당자의<br>부적절한<br>처리 우려 | 넘어갈<br>수 있는<br>문제라고<br>생각 | 비난,<br>따돌림,<br>불이익<br>우려 | 행위자와<br>사이의<br>불편해질<br>까봐 | 대처<br>방법을<br>잘<br>몰라서 | 기타,<br>모름/<br>무응답 |
|-----------------------|-----------------------------------------------------------------------------|-----------------|----------------------------------------|---------------------------|--------------------------|---------------------------|-----------------------|-------------------|
| 일반적<br>조직<br>문화<br>특성 | 집단주의 문화<br>(우리 직장은 회식<br>등 업무시간 외의<br>모임에 꼭 참석해야<br>하는 분위기다)                | 공공기관<br>그렇지 않다  | 26.3                                   | 51.0                      | 20.6                     | 48.5                      | 11.2                  | 9.6               |
|                       |                                                                             | 그렇다             | 37.0                                   | 33.1                      | 43.8                     | 32.7                      | 5.4                   | 3.6               |
|                       | 위계적 문화<br>(우리 직장에서는<br>상급자가 하급자에게<br>큰 소리를 내거나<br>폭언을 자주 하는<br>편이다)         | 민간사업체<br>그렇지 않다 | 26.2                                   | 63.7                      | 18.1                     | 27.7                      | 1.6                   | 5.6               |
|                       |                                                                             | 그렇다             | 17.0                                   | 67.1                      | 24.7                     | 32.7                      | 0.8                   | 4.7               |
|                       | 사생활 침해 문화<br>(우리 직장 구성원<br>들은 연애, 결혼 등<br>사생활에 관해<br>묻는데 거리낌이<br>없는 편이다)    | 공공기관<br>그렇지 않다  | 24.4                                   | 50.4                      | 28.6                     | 41.6                      | 9.5                   | 8.8               |
|                       |                                                                             | 그렇다             | 43.2                                   | 30.0                      | 34.1                     | 42.0                      | 7.2                   | 3.8               |
|                       | 성역할 분리<br>(‘남자는 가정이니까..’,<br>‘여자들은 애를<br>보아야니까..’ 등<br>남성/여성의<br>역할을 당연시 함) | 민간사업체<br>그렇지 않다 | 18.4                                   | 64.6                      | 22.1                     | 31.2                      | 1.4                   | 4.4               |
|                       |                                                                             | 그렇다             | 28.3                                   | 67.5                      | 20.4                     | 28.2                      | 0.7                   | 6.8               |
| 성별<br>분리<br>경험        | 성별 업무 분리<br>(차 심부름, 청소,<br>짐 나르기 등을<br>특정 성별에게<br>주로 시킴)                    | 공공기관<br>경험 없음   | 23.9                                   | 37.9                      | 18.3                     | 50.4                      | 10.7                  | 17.0              |
|                       |                                                                             | 경험 있음           | 33.9                                   | 45.8                      | 35.9                     | 37.9                      | 7.9                   | 2.6               |
|                       |                                                                             | 민간사업체<br>경험 없음  | 17.0                                   | 70.3                      | 11.1                     | 21.0                      | 1.0                   | 0.4               |
|                       |                                                                             | 경험 있음           | 23.6                                   | 63.0                      | 26.9                     | 35.1                      | 1.3                   | 7.6               |
|                       | 성역할 분리<br>(‘남자는 가정이니까..’,<br>‘여자들은 애를<br>보아야니까..’ 등<br>남성/여성의<br>역할을 당연시 함) | 공공기관<br>경험 없음   | 19.1                                   | 54.7                      | 25.4                     | 37.4                      | 10.8                  | 13.9              |
|                       |                                                                             | 경험 있음           | 37.8                                   | 36.7                      | 33.5                     | 44.5                      | 7.5                   | 3.0               |
|                       |                                                                             | 민간사업체<br>경험 없음  | 11.7                                   | 71.8                      | 19.4                     | 28.8                      | 2.1                   | 5.7               |
|                       |                                                                             | 경험 있음           | 27.7                                   | 61.4                      | 23.0                     | 31.4                      | 0.5                   | 4.8               |

주: 1) 백분율은 각 조직문화 조사항목의 무응답(결측치) 사례를 제외한 다음의 응답인원(성희롱 피해를 하나 이상 경험하고 참고 넘어간 경우)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집단주의 문화(660명), 위계적 문화(660명), 사생활 침해 문화(660명), 성별 업무 분리(660명), 성역할 분리(660명)

2) 참고 넘어간 이유는 아래 조사표상의 보기별 비율을 다음과 같이 합친 것임. ①+②=기관/조직의 목인, 담당자의 부적절한 처리 우려, ③=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 ④+⑤+⑦=비난, 따돌림, 불이익 우려, ⑥=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봐, ⑧=대처방법을 잘 몰라서, ⑨+모름/무응답=기타, 모름/무응답

①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목인할 것 같아서

② 성희롱 관련 업무담당자가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것 같지 않아서

③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④ 소문, 평판, 따돌림, 비난 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⑤ 업무와 직장생활에서 어려움이나 불이익 등을 받을까 걱정되어서

⑥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 봐서

⑦ 직장을 그만두게 될까 봐서

⑧ 대처방법을 잘 몰라서

⑨ 기타

#### 라) 조직문화 특성에 따른 성희롱 피해 경험으로 인한 영향

조직문화 특성에 따라 성희롱 피해 경험으로 인한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일반적 조직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성별 분리 경험이 있는 경우 대체로 ‘특별한 영향이 없었다’는 응답은 적고, 업무 집중도 저하, 퇴직 고려 등 직장생활에의 영향이 있었다는 응답은 모든 항목에서 더 많았다.

일반적 조직문화 특성에 따른 직장생활에의 영향 차이를 보면, 공공기관은 ‘집단주의 문화’(그렇지 않다 47.6%, 그렇다 57.5%), ‘위계적 문화’(그렇지 않다 45.9%, 그렇다 63.4%), ‘사생활 침해 문화’(그렇지 않다 45.2%, 그렇다 55.3%)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직장생활에의 영향이 있었다는 응답이 1.2배~1.4배 더 많았다. 민간사업체 역시 ‘집단주의 문화’(그렇지 않다 33.5%, 그렇다 51.6%), ‘위계적 문화’(그렇지 않다 40.3%, 그렇다 46.6%), ‘사생활 침해 문화’(그렇지 않다 40.2%, 그렇다 43.5%)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직장생활에의 영향이 있었다는 응답이 1.1배~1.5배 더 많았다.

‘성별 업무 분리’ 및 ‘성역할 분리’ 경험이 있는 경우 역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직장생활에의 영향이 있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성별 업무 분리’ 경험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보다 공공기관은 1.3배(경험 없음 44.2%, 경험 있음 56.4%), 민간사업체는 1.8배(경험 없음 29.6%, 경험 있음 52.2%) 더 직장생활에의 영향이 있었다는 응답이 많았고, ‘성역할 분리’ 경험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은 1.4배(경험 없음 40.5%, 경험 있음 58.7%), 민간사업체는 1.5배(경험 없음 34.9%, 경험 있음 51.4%) 더 직장생활에의 영향이 있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정신적·신체적으로 힘들어 했다는 응답은 공공/민간 여부나 개별 조직문화 특성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었지만, ‘위계적 문화’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개인적 심신에의 영향이 있었다는 응답이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성별 분리 경험에 따른 개인적 심신에의 영향은 공공과 민간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공공기관에서는 ‘성별 업무 분리’ 및 ‘성역할 분리’ 경험이 있는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난 반면, 민간사업체에서는 ‘성별 업무 분리’ 및 ‘성역할 분리’ 경험이 없는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위 분석 결과는 집단주의, 위계적 문화, 사생활 침해 문화 및 성별 분리 정도가 높은 조직문화가 성희롱 피해 경험 시 피해자가 직장생활에서 받을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증폭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I-69〉 조직문화 특성에 따른 성희롱 피해 경험으로 인한 영향(복수응답)

(단위: %)

| 구분                    |                                                                             |                 | 특별한<br>영향 없음 | 직장생활에의<br>영향 | 개인적<br>심신에의<br>영향 | 기타,<br>모름/무응답 |
|-----------------------|-----------------------------------------------------------------------------|-----------------|--------------|--------------|-------------------|---------------|
| 일반적<br>조직<br>문화<br>특성 | 집단주의 문화<br>(우리 직장은 회식<br>등 업무시간 외의<br>모임에 꼭 참석해야<br>하는 분위기다)                | 공공기관<br>그렇지 않다  | 42.6         | 47.6         | 11.1              | 6.9           |
|                       |                                                                             | 그렇다             | 34.4         | 57.5         | 8.4               | 8.9           |
|                       |                                                                             | 민간사업체<br>그렇지 않다 | 50.5         | 33.5         | 8.6               | 9.8           |
|                       |                                                                             | 그렇다             | 41.2         | 51.6         | 8.3               | 7.9           |
|                       | 위계적 문화<br>(우리 직장에서는<br>상급자가 하급자에게<br>큰 소리를 내거나<br>폭언을 자주 하는<br>편이다)         | 공공기관<br>그렇지 않다  | 44.4         | 45.9         | 8.6               | 6.0           |
|                       |                                                                             | 그렇다             | 28.6         | 63.4         | 13.2              | 11.2          |
|                       |                                                                             | 민간사업체<br>그렇지 않다 | 49.4         | 40.3         | 3.6               | 9.3           |
|                       |                                                                             | 그렇다             | 39.0         | 46.6         | 18.1              | 8.1           |
|                       | 사생활 침해 문화<br>(우리 직장 구성원<br>들은 연애, 결혼 등<br>사생활에 관해<br>묻는데 거리낌이<br>없는 편이다)    | 공공기관<br>그렇지 않다  | 39.1         | 45.2         | 13.6              | 12.7          |
|                       |                                                                             | 그렇다             | 39.5         | 55.3         | 8.0               | 4.7           |
|                       |                                                                             | 민간사업체<br>그렇지 않다 | 52.8         | 40.2         | 4.9               | 6.0           |
|                       |                                                                             | 그렇다             | 42.3         | 43.5         | 10.3              | 10.4          |
| 성별<br>분리<br>경험        | 성별 업무 분리<br>(차 심부름, 청소,<br>짐 나르기 등을<br>특정 성별에게<br>주로 시킴)                    | 공공기관<br>경험 없음   | 45.7         | 44.2         | 5.0               | 6.1           |
|                       |                                                                             | 경험 있음           | 35.1         | 56.4         | 13.5              | 8.8           |
|                       |                                                                             | 민간사업체<br>경험 없음  | 56.8         | 29.6         | 11.5              | 7.8           |
|                       |                                                                             | 경험 있음           | 37.6         | 52.2         | 6.1               | 9.8           |
|                       | 성역할 분리<br>(‘남자는 가정이니까..’,<br>‘여자들은 애를<br>봐야하니까..’ 등<br>남성/여성의<br>역할을 당연시 함) | 공공기관<br>경험 없음   | 51.1         | 40.5         | 4.5               | 6.0           |
|                       |                                                                             | 경험 있음           | 31.7         | 58.7         | 13.7              | 8.8           |
|                       |                                                                             | 민간사업체<br>경험 없음  | 51.1         | 34.9         | 10.8              | 10.2          |
|                       |                                                                             | 경험 있음           | 39.6         | 51.4         | 5.7               | 7.3           |

주: 1) 백분율은 각 조직문화 조사항목의 무응답(결측치) 사례를 제외한 다음의 응답인원(성희롱 피해를 하나 이상 경험한 경우)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집단주의 문화(986명), 위계적 문화(986명), 사생활 침해 문화(986명), 성별 업무 분리(986명), 성역할 분리(985명)

2) 성희롱 피해 경험으로 인한 영향은 아래 조사표상의 보기별 비율을 다음과 같이 합친 것임. ①=특별한 영향 없음, ②+③+④+⑤+⑥=직장생활에의 영향, ⑦+⑧=개인적 심신에의 영향, ⑨+모름/무응답=기타, 모름/무응답

- |                                         |                         |
|-----------------------------------------|-------------------------|
| ① 특별한 영향 없었음                            | ② 근로의욕 저하 등 업무 집중도가 떨어짐 |
| ③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음                          | ④ 직장 만족도가 낮아짐           |
| ⑤ 직장(내 성희롱 예방정책, 문화 등)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음     |                         |
| ⑥ 직장 내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생김                    |                         |
| ⑦ 분노, 우울감, 두려움, 자살생각, 자존감 하락 등 정신적으로 힘들 |                         |
| ⑧ 두통, 복통, 구토 등 신체적으로 힘들                 | ⑨ 기타                    |

#### 4) 조직문화 특성에 따른 성희롱 대응체계 신뢰도

##### 가) 조직문화 특성에 따른 기관장/사업주의 성희롱 방지 노력 여부

조직문화 특성에 따라 기관장/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방지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인지하고 관련 제도적 조치를 적극 이행하고자 노력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체로 일반적 조직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성별 분리 경험에 있는 경우 기관장/사업주가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유의하게 더 많았다.

일반적 조직문화 특성에 따른 차이는 민간사업체보다 공공기관에서 더 두드러졌다. 공공기관에서 기관장/사업주가 노력하지 않는다(아니다)는 응답은 ‘집단주의 문화’(그렇지 않다 4.5%, 그렇다 17.5%), ‘위계적 문화’(그렇지 않다 4.5%, 그렇다 27.5%), ‘사생활 침해 문화’(그렇지 않다 3.8%, 그렇다 12.0%)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3배에서 6배 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 민간사업체는 공공기관보다는 차이가 작지만 ‘집단주의 문화’(그렇지 않다 24.9%, 그렇다 30.8%), ‘위계적 문화’(그렇지 않다 24.5%, 그렇다 38.8%), ‘사생활 침해 문화’(그렇지 않다 23.9%, 그렇다 30.9%)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1.2배~1.6배 더 ‘아니다’ 응답이 많았다. 세 개 항목 중 ‘위계적 문화’에 따른 차이가 공공과 민간 모두에서 특히 더 컸다.

성별 분리 경험에 따른 차이 역시 공공기관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공공기관에서는 ‘성별 업무 분리’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기관장/사업주가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1배 더 높았고(경험 없음 3.7%, 경험 있음 18.8%), ‘성역할 분리’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6.9배 더 높았다(경험 없음 3.3%, 경험 있음 22.7%). 민간사업체에서는 ‘성별 업무 분리’ 경험이 없는 경우 기관장/사업주가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약간 더 높았고(경험 없음 26.8%, 경험 있음 25.4%), ‘성역할 분리’ 경험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약간 더 높았다(경험 없음 26.5%, 경험 있음 27.4%). 둘 다 차이가 크지 않아 민간사업체에서는 성별 분리 경험에 따른 기관장/사업주의 성희롱 방지 노력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0〉 조직문화 특성에 따른 기관장/사업주의 성희롱 방지 노력 여부

(단위: %)

| 구분                    |                                                                              |        | 성희롱 방지노력 여부 |      |            | 계     | $\chi^2$      |
|-----------------------|------------------------------------------------------------------------------|--------|-------------|------|------------|-------|---------------|
|                       |                                                                              |        | 그렇다         | 아니다  | 모름/<br>무응답 |       |               |
| 일반적<br>조직<br>문화<br>특성 | 집단주의 문화<br>(우리 직장은 회식<br>등 업무시간 외의<br>모임에 꼭 참석해야<br>하는 분위기다)                 | 공공기관   |             |      |            |       |               |
|                       |                                                                              | 그렇지 않다 | 95.5        | 4.5  | -          | 100.0 | 54215.414***  |
|                       |                                                                              | 그렇다    | 82.5        | 17.5 | -          | 100.0 |               |
|                       |                                                                              | 민간사업체  |             |      |            |       | 29653.636***  |
|                       |                                                                              | 그렇지 않다 | 73.6        | 24.9 | 1.5        | 100.0 |               |
|                       |                                                                              | 그렇다    | 68.3        | 30.8 | 0.9        | 100.0 |               |
|                       | 위계적 문화<br>(우리 직장에서는<br>상급자가 하급자에게<br>큰 소리를 내거나<br>폭언을 자주 하는<br>편이다)          | 공공기관   |             |      |            |       | 98824.668***  |
|                       |                                                                              | 그렇지 않다 | 95.5        | 4.5  | -          | 100.0 |               |
|                       |                                                                              | 그렇다    | 72.5        | 27.5 | -          | 100.0 |               |
|                       |                                                                              | 민간사업체  |             |      |            |       | 108248.057*** |
|                       |                                                                              | 그렇지 않다 | 74.3        | 24.5 | 1.1        | 100.0 |               |
|                       |                                                                              | 그렇다    | 59.0        | 38.8 | 2.2        | 100.0 |               |
|                       | 사생활 침해 문화<br>(우리 직장 구성원<br>들은 연애, 결혼 등<br>사생활에 관해<br>문는데 거리낌이<br>없는 편이다)     | 공공기관   |             |      |            |       | 36901.077***  |
|                       |                                                                              | 그렇지 않다 | 96.2        | 3.8  | -          | 100.0 |               |
|                       |                                                                              | 그렇다    | 88.0        | 12.0 | -          | 100.0 |               |
|                       |                                                                              | 민간사업체  |             |      |            |       | 49746.327***  |
|                       |                                                                              | 그렇지 않다 | 75.0        | 23.9 | 1.1        | 100.0 |               |
|                       |                                                                              | 그렇다    | 67.5        | 30.9 | 1.6        | 100.0 |               |
| 성별<br>분리<br>경험        | 성별 업무 분리<br>(차 심부름, 청소,<br>짐 나르기 등을<br>특정 성별에게<br>주로 시킴)                     | 공공기관   |             |      |            |       | 84018.264***  |
|                       |                                                                              | 경험 없음  | 96.3        | 3.7  | -          | 100.0 |               |
|                       |                                                                              | 경험 있음  | 81.2        | 18.8 | -          | 100.0 |               |
|                       |                                                                              | 민간사업체  |             |      |            |       | 8431.731***   |
|                       |                                                                              | 경험 없음  | 72.0        | 26.8 | 1.2        | 100.0 |               |
|                       |                                                                              | 경험 있음  | 72.3        | 25.4 | 2.3        | 100.0 |               |
|                       | 성역할 분리<br>(‘남자는 가정이나까..’,<br>‘여자들은 애를<br>보아야하니까..’ 등<br>남성/여성의<br>역할을 당연히 함) | 공공기관   |             |      |            |       | 126382.325*** |
|                       |                                                                              | 경험 없음  | 96.7        | 3.3  | -          | 100.0 |               |
|                       |                                                                              | 경험 있음  | 77.3        | 22.7 | -          | 100.0 |               |
|                       |                                                                              | 민간사업체  |             |      |            |       | 52958.105***  |
|                       |                                                                              | 경험 없음  | 72.4        | 26.5 | 1.0        | 100.0 |               |
|                       |                                                                              | 경험 있음  | 68.1        | 27.4 | 4.5        | 100.0 |               |

주: 1) 백분율은 각 조직문화 조사항목의 무응답(결측치) 사례를 제외한 다음의 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집단주의 문화(15,055명), 위계적 문화(15,051명), 사생활 침해 문화(15,050명), 성별 업무 분리(15,061명), 성역할 분리(15,060명)

2) \*p<.05, \*\*p<.01, \*\*\*p<.001

#### 나) 조직문화 특성에 따른 외부 신고창구 이용 및 이용권유 의사 여부

본인 또는 주변인이 성희롱 경험 시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 여성가족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등 조직 외부의 신고창구를 이용하거나 이용을 권유할 의사가 조직문화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 대체로 일반적 조직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성별 분리 경험이 있는 경우 외부 신고창구 이용 또는 이용 권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일반적 조직문화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면, 공공기관에서 외부 신고창구 이용 및 이용 권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은 ‘집단주의 문화’(그렇지 않다 6.7%, 그렇다 14.7%), ‘위계적 문화’(그렇지 않다 7.4%, 그렇다 14.2%), ‘사생활 침해 문화’(그렇지 않다 6.6%, 그렇다 10.6%)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1.6배~2.2배 더 높게 나타났고, 특히 ‘집단주의 문화’에 따른 차이가 컸다. 민간사업체에서는 ‘집단주의 문화’(그렇지 않다 23.0%, 그렇다 28.3%), ‘위계적 문화’(그렇지 않다 22.9%, 그렇다 33.7%), ‘사생활 침해 문화’(그렇지 않다 22.5%, 그렇다 27.8%)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1.2배~1.5배 더 높았고, 특히 ‘위계적 문화’에 따른 차이가 컸다.

성별 분리 경험에 따른 차이는 민간사업체에 비해 공공기관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공공기관에서는 ‘성별 업무 분리’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외부 신고창구 이용 및 이용 권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1.9배 더 높았고(경험 없음 6.9%, 경험 있음 12.8%), ‘성역할 분리’ 경험이 있는 경우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1.9배 더 높았다(경험 없음 6.9%, 경험 있음 13.1%). 민간사업체에서는 ‘성별 업무 분리’ 경험이 없는 경우 외부 신고창구 이용 및 이용 권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약간 더 높았고(경험 없음 24.7%, 경험 있음 23.5%), ‘성역할 분리’ 경험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약간 더 높았다(경험 없음 24.3%, 경험 있음 26.7%). 둘 다 차이가 크지 않아 민간사업체에서는 성별 분리 경험에 따른 외부 신고창구 이용 및 이용 권유 의사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1〉 조직문화 특성에 따른 외부 신고창구 이용 및 이용 권유 의사 여부

(단위: %)

| 구분                    |                                                                             |        | 외부 신고창구 이용 및<br>이용 권유 의사 |      |            | 계     | $\chi^2$     |
|-----------------------|-----------------------------------------------------------------------------|--------|--------------------------|------|------------|-------|--------------|
|                       |                                                                             |        | 있다                       | 없다   | 모름/<br>무응답 |       |              |
| 일반적<br>조직<br>문화<br>특성 | 집단주의 문화<br>(우리 직장은 회식<br>등 업무시간 외의<br>모임에 꼭 참석해야<br>하는 분위기다)                | 공공기관   |                          |      |            |       |              |
|                       |                                                                             | 그렇지 않다 | 93.3                     | 6.7  | -          | 100.0 | 16607.213*** |
|                       |                                                                             | 그렇다    | 85.3                     | 14.7 | -          | 100.0 |              |
|                       |                                                                             | 민간사업체  |                          |      |            |       |              |
|                       |                                                                             | 그렇지 않다 | 76.4                     | 23.0 | 0.6        | 100.0 | 24425.087*** |
|                       |                                                                             | 그렇다    | 71.4                     | 28.3 | 0.3        | 100.0 |              |
|                       | 위계적 문화<br>(우리 직장에서는<br>상급자가 하급자에게<br>큰 소리를 내거나<br>폭언을 자주 하는<br>편이다)         | 공공기관   |                          |      |            |       |              |
|                       |                                                                             | 그렇지 않다 | 92.6                     | 7.4  | -          | 100.0 | 7236.804***  |
|                       |                                                                             | 그렇다    | 85.8                     | 14.2 | -          | 100.0 |              |
|                       |                                                                             | 민간사업체  |                          |      |            |       |              |
|                       |                                                                             | 그렇지 않다 | 76.6                     | 22.9 | 0.5        | 100.0 | 57643.490*** |
|                       |                                                                             | 그렇다    | 65.9                     | 33.7 | 0.4        | 100.0 |              |
|                       | 사생활 침해 문화<br>(우리 직장 구성원<br>들은 연애, 결혼 등<br>사생활에 관해<br>물는데 거리낌이<br>없는 편이다)    | 공공기관   |                          |      |            |       |              |
|                       |                                                                             | 그렇지 않다 | 93.4                     | 6.6  | -          | 100.0 | 7050.446***  |
|                       |                                                                             | 그렇다    | 89.4                     | 10.6 | -          | 100.0 |              |
|                       |                                                                             | 민간사업체  |                          |      |            |       |              |
|                       |                                                                             | 그렇지 않다 | 77.0                     | 22.5 | 0.5        | 100.0 | 27032.312*** |
|                       |                                                                             | 그렇다    | 71.8                     | 27.8 | 0.4        | 100.0 |              |
| 성별<br>분리<br>경험        | 성별 업무 분리<br>(차 심부름, 청소,<br>짐 나르기 등을<br>특정 성별에게<br>주로 시킴)                    | 공공기관   |                          |      |            |       |              |
|                       |                                                                             | 경험 없음  | 93.1                     | 6.9  | -          | 100.0 | 10520.120*** |
|                       |                                                                             | 경험 있음  | 87.2                     | 12.8 | -          | 100.0 |              |
|                       |                                                                             | 민간사업체  |                          |      |            |       |              |
|                       |                                                                             | 경험 없음  | 74.9                     | 24.7 | 0.5        | 100.0 | 1796.220***  |
|                       |                                                                             | 경험 있음  | 75.8                     | 23.5 | 0.7        | 100.0 |              |
|                       | 성역할 분리<br>(‘남자는 가정이나까..’,<br>‘여자들은 애를<br>보아야나까..’ 등<br>남성/여성의<br>역할을 당연시 함) | 공공기관   |                          |      |            |       |              |
|                       |                                                                             | 경험 없음  | 93.1                     | 6.9  | -          | 100.0 | 10434.339*** |
|                       |                                                                             | 경험 있음  | 86.9                     | 13.1 | -          | 100.0 |              |
|                       |                                                                             | 민간사업체  |                          |      |            |       |              |
|                       |                                                                             | 경험 없음  | 75.2                     | 24.3 | 0.5        | 100.0 | 4495.695***  |
|                       |                                                                             | 경험 있음  | 72.4                     | 26.7 | 1.0        | 100.0 |              |

주: 1) 백분율은 각 조직문화 조사항목의 무응답(결측치) 사례를 제외한 다음의 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집단주의 문화(15,055명), 위계적 문화(15,051명), 사생활 침해 문화(15,050명), 성별 업무 분리(15,061명), 성역할 분리(15,060명)

2) \*p<.05, \*\*p<.01, \*\*\*p<.001

#### 다) 조직문화 특성에 따른 직장 내 고충상담창구 이용 및 고충상담원 상담 권유 의사 여부

본인 또는 주변인이 성희롱 경험 시 소속 회사(기관) 내 고충상담창구를 이용하거나 고충상담원에게 상담하도록 권유할 의사가 조직문화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앞서 외부 신고창구 이용 의사와 마찬가지로 일반적 조직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성별 분리 경험이 있는 경우 내부 고충상담창구 이용 및 상담을 권유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 모두에서 유의하게 더 많았다. 조직문화 특성에 따른 조직 내부의 상담창구 이용 의사의 차이가 앞서 본 외부 신고창구 이용 및 이용 권유 의사의 차이에 비해 약간 더 크게 나타났다는 점도 특이점이다.

일반적 조직문화 특성에 따른 차이는 민간사업체보다 공공기관에서 더 두드러졌다. 공공기관에서 조직 내 고충상담창구 이용 및 상담 권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은 ‘집단주의 문화’(그렇지 않다 6.9%, 그렇다 18.5%), ‘위계적 문화’(그렇지 않다 7.7%, 그렇다 19.5%), ‘사생활 침해 문화’(그렇지 않다 5.9%, 그렇다 14.5%)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2.5배~2.7배 더 높게 나타났고, 특히 ‘집단주의 문화’에 따른 차이가 컸다. 민간사업체 역시 ‘집단주의 문화’(그렇지 않다 24.4%, 그렇다 32.7%), ‘위계적 문화’(그렇지 않다 24.2%, 그렇다 41.8%), ‘사생활 침해 문화’(그렇지 않다 23.1%, 그렇다 32.6%)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1.3배~1.7배 더 높았는데, 민간사업체에서는 특히 ‘위계적 문화’에 따른 차이가 가장 컸다.

성별 분리 경험에 따른 차이도 민간사업체에 비해 공공기관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공공기관에서는 ‘성별 업무 분리’ 경험(경험 없음 6.4%, 경험 있음 19.1%), ‘성역할 분리’ 경험(경험 없음 6.6%, 경험 있음 19.2%)이 있는 경우 조직 내 고충상담창구 이용 및 상담 권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3배가량 더 높았다. 민간사업체에서도 ‘성별 업무 분리’ 경험(경험 없음 26.7%, 경험 있음 27.5%), ‘성역할 분리’ 경험(경험 없음 26.1%, 경험 있음 34.8%)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비해 조직 내 고충상담창구 이용 및 상담 권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약간 더 높았지만, 공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표 III-72〉 조직문화 특성에 따른 직장 내 고충상담창구 이용 및 고충상담원 상담 권유 의사 여부

(단위: %)

| 구분                    |                                                                              |        | 고충상담창구 이용 및<br>고충상담원 상담 권유 의사 |      |            | 계     | $\chi^2$      |
|-----------------------|------------------------------------------------------------------------------|--------|-------------------------------|------|------------|-------|---------------|
|                       |                                                                              |        | 있다                            | 없다   | 모름/<br>무응답 |       |               |
| 일반적<br>조직<br>문화<br>특성 | 집단주의 문화<br>(우리 직장은 회식<br>등 업무시간 외의<br>모임에 꼭 참석해야<br>하는 분위기다)                 | 공공기관   |                               |      |            |       |               |
|                       |                                                                              | 그렇지 않다 | 93.1                          | 6.9  | -          | 100.0 | 32358.341***  |
|                       |                                                                              | 그렇다    | 81.5                          | 18.5 | -          | 100.0 |               |
|                       |                                                                              | 민간사업체  |                               |      |            |       |               |
|                       |                                                                              | 그렇지 않다 | 75.0                          | 24.4 | 0.6        | 100.0 | 55048.746***  |
|                       |                                                                              | 그렇다    | 67.0                          | 32.7 | 0.3        | 100.0 |               |
|                       | 위계적 문화<br>(우리 직장에서는<br>상급자가 하급자에게<br>큰 소리를 내거나<br>폭언을 자주 하는<br>편이다)          | 공공기관   |                               |      |            |       |               |
|                       |                                                                              | 그렇지 않다 | 92.3                          | 7.7  | -          | 100.0 | 19970.171***  |
|                       |                                                                              | 그렇다    | 80.5                          | 19.5 | -          | 100.0 |               |
|                       |                                                                              | 민간사업체  |                               |      |            |       |               |
|                       |                                                                              | 그렇지 않다 | 75.2                          | 24.2 | 0.5        | 100.0 | 144498.332*** |
|                       |                                                                              | 그렇다    | 57.8                          | 41.8 | 0.4        | 100.0 |               |
|                       | 사생활 침해 문화<br>(우리 직장 구성원<br>들은 연애, 결혼 등<br>사생활에 관해<br>묻는데 거리낌이<br>없는 편이다)     | 공공기관   |                               |      |            |       |               |
|                       |                                                                              | 그렇지 않다 | 94.1                          | 5.9  | -          | 100.0 | 30999.367***  |
|                       |                                                                              | 그렇다    | 85.5                          | 14.5 | -          | 100.0 |               |
|                       |                                                                              | 민간사업체  |                               |      |            |       |               |
|                       |                                                                              | 그렇지 않다 | 76.3                          | 23.1 | 0.5        | 100.0 | 79980.310***  |
|                       |                                                                              | 그렇다    | 66.9                          | 32.6 | 0.5        | 100.0 |               |
| 성별<br>분리<br>경험        | 성별 업무 분리<br>(차 심부름, 청소,<br>짐 나르기 등을<br>특정 성별에게<br>주로 시킴)                     | 공공기관   |                               |      |            |       |               |
|                       |                                                                              | 경험 없음  | 93.6                          | 6.4  | -          | 100.0 | 45600.459***  |
|                       |                                                                              | 경험 있음  | 80.9                          | 19.1 | -          | 100.0 |               |
|                       |                                                                              | 민간사업체  |                               |      |            |       |               |
|                       |                                                                              | 경험 없음  | 72.8                          | 26.7 | 0.5        | 100.0 | 1196.508***   |
|                       |                                                                              | 경험 있음  | 71.8                          | 27.5 | 0.7        | 100.0 |               |
|                       | 성역할 분리<br>(‘남자는 가정이나...’,<br>‘여자들은 애를<br>보아야니까...’ 등<br>남성/여성의<br>역할을 당연시 함) | 공공기관   |                               |      |            |       |               |
|                       |                                                                              | 경험 없음  | 93.4                          | 6.6  | -          | 100.0 | 40657.445***  |
|                       |                                                                              | 경험 있음  | 80.8                          | 19.2 | -          | 100.0 |               |
|                       |                                                                              | 민간사업체  |                               |      |            |       |               |
|                       |                                                                              | 경험 없음  | 73.4                          | 26.1 | 0.5        | 100.0 | 24554.460***  |
|                       |                                                                              | 경험 있음  | 64.3                          | 34.8 | 1.0        | 100.0 |               |

주: 1) 백분율은 각 조직문화 조사항목의 무응답(결측치) 사례를 제외한 다음의 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집단주의 문화(15,055명), 위계적 문화(15,051명), 사생활 침해 문화(15,050명), 성별 업무 분리(15,061명), 성역할 분리(15,060명)

2) \*p<.05, \*\*p<.01, \*\*\*p<.001

라) 조직문화 특성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대한 기대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사내 절차를 통해 공정한 사건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는지 조직문화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일반적 조직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성별 분리 경험이 있는 경우 공정한 사건처리를 기대하지 않는다(아니다)는 응답이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 모두에서 유의하게 더 많았다.

일반적 조직문화 특성에 따른 차이는 민간사업체보다 공공기관에서 더 두드러졌다. 공공기관에서 조직 내 성희롱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집단주의 문화'(그렇지 않다 11.0%, 그렇다 30.1%), '위계적 문화'(그렇지 않다 11.9%, 그렇다 35.5%), '사생활 침해 문화'(그렇지 않다 9.1%, 그렇다 23.8%)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2.6배~3배 더 높게 나타났다. 민간사업체 역시 '집단주의 문화'(그렇지 않다 24.5%, 그렇다 38.9%), '위계적 문화'(그렇지 않다 26.0%, 그렇다 41.6%), '사생활 침해 문화'(그렇지 않다 23.8%, 그렇다 36.3%)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약 1.5배 더 높았다. 세 개 항목 중 '위계적 문화'에 따른 차이가 공공과 민간 모두에서 특히 더 컸다(공공기관 3배, 민간사업체 1.6배).

성별 분리 경험에 따른 차이도 민간사업체에 비해 공공기관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공공기관에서는 '성별 업무 분리' 경험(경험 없음 9.2%, 경험 있음 35.2%), '성역할 분리' 경험(경험 없음 9.4%, 경험 있음 37.4%)이 있는 경우 조직 내 성희롱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약 4배가량 더 높았다. 민간사업체에서도 '성별 업무 분리' 경험(경험 없음 27.5%, 경험 있음 35.8%), '성역할 분리' 경험(경험 없음 26.7%, 경험 있음 49.6%)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비해 성희롱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3배~1.9배 더 높았다.

〈표 III-73〉 조직문화 특성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대한 기대

(단위: %)

| 구분                    |                                                                             |        | 공정한 사건처리에 대한 기대 |      |            | 계     | $\chi^2$      |
|-----------------------|-----------------------------------------------------------------------------|--------|-----------------|------|------------|-------|---------------|
|                       |                                                                             |        | 그렇다             | 아니다  | 모름/<br>무응답 |       |               |
| 일반적<br>조직<br>문화<br>특성 | 집단주의 문화<br>(우리 직장은 회식<br>등 업무시간 외의<br>모임에 꼭 참석해야<br>하는 분위기다)                | 공공기관   |                 |      |            |       |               |
|                       |                                                                             | 그렇지 않다 | 89.0            | 11.0 | -          | 100.0 | 58325.953***  |
|                       |                                                                             | 그렇다    | 69.9            | 30.1 | -          | 100.0 |               |
|                       |                                                                             | 민간사업체  |                 |      |            |       |               |
|                       |                                                                             | 그렇지 않다 | 74.5            | 24.5 | 1.0        | 100.0 | 157166.179*** |
|                       |                                                                             | 그렇다    | 60.7            | 38.9 | 0.4        | 100.0 |               |
|                       | 위계적 문화<br>(우리 직장에서는<br>상급자가 하급자에게<br>큰 소리를 내거나<br>폭언을 자주 하는<br>편이다)         | 공공기관   |                 |      |            |       |               |
|                       |                                                                             | 그렇지 않다 | 88.1            | 11.9 | -          | 100.0 | 52494.094***  |
|                       |                                                                             | 그렇다    | 64.5            | 35.5 | -          | 100.0 |               |
|                       |                                                                             | 민간사업체  |                 |      |            |       |               |
|                       |                                                                             | 그렇지 않다 | 73.1            | 26.0 | 0.9        | 100.0 | 140014.980*** |
|                       |                                                                             | 그렇다    | 55.7            | 41.6 | 0.7        | 100.0 |               |
|                       | 사생활 침해 문화<br>(우리 직장 구성원<br>들은 연애, 결혼 등<br>사생활에 관해<br>묻는데 거리낌이<br>없는 편이다)    | 공공기관   |                 |      |            |       |               |
|                       |                                                                             | 그렇지 않다 | 90.9            | 9.1  | -          | 100.0 | 58935.892***  |
|                       |                                                                             | 그렇다    | 76.2            | 23.8 | -          | 100.0 |               |
|                       |                                                                             | 민간사업체  |                 |      |            |       |               |
|                       |                                                                             | 그렇지 않다 | 75.3            | 23.8 | 0.9        | 100.0 | 134158.999*** |
|                       |                                                                             | 그렇다    | 63.0            | 36.3 | 0.7        | 100.0 |               |
| 성별<br>분리<br>경험        | 성별 업무 분리<br>(차 심부름, 청소,<br>짐 나르기 등을<br>특정 성별에게<br>주로 시킴)                    | 공공기관   |                 |      |            |       |               |
|                       |                                                                             | 경험 없음  | 90.8            | 9.2  | -          | 100.0 | 125298.076*** |
|                       |                                                                             | 경험 있음  | 64.8            | 35.2 | -          | 100.0 |               |
|                       |                                                                             | 민간사업체  |                 |      |            |       |               |
|                       |                                                                             | 경험 없음  | 71.7            | 27.5 | 0.8        | 100.0 | 29643.144***  |
|                       |                                                                             | 경험 있음  | 63.2            | 35.8 | 1.0        | 100.0 |               |
|                       | 성역할 분리<br>(‘남자는 가정이니까..’,<br>‘여자들은 애를<br>보아야니까..’ 등<br>남성/여성의<br>역할을 당연시 함) | 공공기관   |                 |      |            |       |               |
|                       |                                                                             | 경험 없음  | 90.6            | 9.4  | -          | 100.0 | 132896.100*** |
|                       |                                                                             | 경험 있음  | 62.6            | 37.4 | -          | 100.0 |               |
|                       |                                                                             | 민간사업체  |                 |      |            |       |               |
|                       |                                                                             | 경험 없음  | 72.5            | 26.7 | 0.8        | 100.0 | 145570.407*** |
|                       |                                                                             | 경험 있음  | 49.4            | 49.6 | 1.1        | 100.0 |               |

주: 1) 백분율은 각 조직문화 조사항목의 무응답(결측치) 사례를 제외한 다음의 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집단주의 문화(15,055명), 위계적 문화(15,051명), 사생활 침해 문화(15,050명), 성별 업무 분리(15,061명), 성역할 분리(15,060명)

2) \*p<.05, \*\*p<.01, \*\*\*p<.001

이어서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지 않는 이유가 조직문화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해 본 결과, 대체로 일반적 조직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 모두 성희롱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성별 분리 경험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 모두에서 성희롱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 이전 성희롱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했거나 공정한 처리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은 이전 사건의 부적절한 처리나 공정한 처리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고, 민간사업체는 사건처리 절차 미흡, 전문성 등을 불신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은 가운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 모두 일반적 조직문화 특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성희롱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공통적으로 더 많았다. 이전 사건의 부적절한 처리나 조직이 공정한 처리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에서는 ‘집단주의 문화’, ‘사생활 침해 문화’ 유무에 따른 차이가 공공/민간에서 각기 다르게 나타났으나, ‘위계적 문화’가 있는 경우 공공과 민간 모두에서 더 많았다.

성별 분리 경험에 따른 차이는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 모두 유사한 양상을 보여, ‘성별 업무 분리’ 및 ‘성역할 분리’ 경험이 있는 경우, 성희롱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 이전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했거나 조직의 공정한 처리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고, 사건처리 절차, 전문성 등에 대한 불신은 더 적었다.

〈표 III-74〉 조직문화 특성에 따른 공정한 처리 기대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

(단위: %)

| 구분                    |                                                                               |                 | 성희롱 사건을<br>대수롭지 않게<br>여기는<br>분위기 | 사건처리<br>절차<br>미흡, 전문성<br>등을 불신 | 이전 사건의<br>부적절한 처리,<br>공정한 처리<br>의지 없음 | 기타,<br>모름/무응답 |
|-----------------------|-------------------------------------------------------------------------------|-----------------|----------------------------------|--------------------------------|---------------------------------------|---------------|
| 일반적<br>조직<br>문화<br>특성 | 집단주의 문화<br>(우리 직장은 화식<br>등 업무시간 외의<br>모임에 꼭 참석해야<br>하는 분위기다)                  | 공공기관<br>그렇지 않다  | 23.3                             | 53.1                           | 65.3                                  | 7.0           |
|                       |                                                                               | 그렇다             | 30.3                             | 39.5                           | 61.5                                  | 11.0          |
|                       | 위계적 문화<br>(우리 직장에서는<br>상급자가 하급자에게<br>큰 소리를 내거나<br>폭언을 자주 하는<br>편이다)           | 공공기관<br>그렇지 않다  | 24.7                             | 49.7                           | 62.8                                  | 7.5           |
|                       |                                                                               | 그렇다             | 29.0                             | 44.9                           | 68.6                                  | 11.5          |
|                       | 사생활 침해 문화<br>(우리 직장 구성원<br>들은 연애, 결혼 등<br>사생활에 관해 묻는데<br>거리낌이 없는 편이다)         | 공공기관<br>그렇지 않다  | 18.1                             | 49.6                           | 59.8                                  | 10.8          |
|                       |                                                                               | 그렇다             | 31.6                             | 47.9                           | 67.4                                  | 6.3           |
|                       |                                                                               | 민간사업체<br>그렇지 않다 | 17.6                             | 63.1                           | 23.9                                  | 2.5           |
|                       |                                                                               | 그렇다             | 20.0                             | 65.9                           | 21.0                                  | 4.6           |
| 성별<br>분리<br>경험        | 성별 업무 분리<br>(차 심부름, 청소,<br>집 나르기 등을<br>특정 성별에게<br>주로 시킴)                      | 공공기관<br>경험 없음   | 23.9                             | 50.0                           | 58.8                                  | 9.2           |
|                       |                                                                               | 경험 있음           | 27.6                             | 47.1                           | 70.3                                  | 7.2           |
|                       | 성역할 분리<br>(‘남자는 가정이니까...’,<br>‘여자들은 애를<br>봐야하니까...’ 등<br>남성/여성의<br>역할을 당연시 함) | 공공기관<br>경험 없음   | 22.8                             | 50.9                           | 57.2                                  | 8.6           |
|                       |                                                                               | 경험 있음           | 29.3                             | 45.7                           | 73.0                                  | 8.0           |
|                       |                                                                               | 민간사업체<br>경험 없음  | 17.3                             | 65.4                           | 20.5                                  | 2.6           |
|                       |                                                                               | 경험 있음           | 27.5                             | 59.1                           | 34.3                                  | 9.3           |

- 주: 1) 백분율은 각 조직문화 조사 항목의 무응답(결측치) 사례를 제외한 다음의 응답인원(조직 내 사건처리가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집단주의 문화(4,111명), 위계적 문화(4,113명), 사생활 침해 문화(4,110명), 성별 업무 분리(4,114명), 성역할 분리(4,113명)
- 2)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지 않는 이유는 아래 조사표 상의 보기별 비율을 다음과 같이 합친 것임. ①=성희롱 사건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 ③+④+⑤=사건처리 절차 미흡, 전문성 등을 불신, ②+⑥=이전 사건의 부적절한 처리, 공정한 처리 의지 없음, ⑦+모름/무응답=기타, 모름/무응답
- ① 성희롱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 ② 이전에 발생했던 성희롱 사건의 처리(절차운영, 피해자보호, 조사, 징계 등)도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 ③ 성희롱 전담기구(없는 경우 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이 낮기 때문에
- ④ 성희롱 사건처리를 위한 규정,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 ⑤ 성희롱 사건처리 절차가 준수되거나 조사 등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 ⑥ 사건축소나 은폐, 회유, 협박, 미온적 징계 등 공정한 사건처리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 ⑦ 기타

### 3. 업무담당자 조사결과

#### 가. 성희롱 방지 업무 기반 현황

##### 1)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시스템 운영 현황

13개 문항으로 직장내 성희롱 방지 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다. 13개 문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에 관한 자체 규정(지침, 내규 등)이 있다. (2)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을 게시하거나 안내하고 있다. (3) 성희롱 사건처리를 위한 업무 매뉴얼이 있다. (4) 가해자 징계,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자체 규정(지침, 내규 등)이 있다. (5)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6) 성희롱 피해와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고충상담원 혹은 고충상담창구(OO부서, OO노조)가 지정되어 있다. (7) 성희롱 피해와 고충 관련 업무를 외부 성희롱 전문(가)기관에 위탁/지정하고 있다. (8) 독립적이고 안전한(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상담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9) 온라인을 활용한 상담 및 신고를 받고 있다(스마트폰/태블릿/PC 등을 활용한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 (10) 성희롱 상담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안내/홍보하고 있다. (11) 성희롱 사건조사 및 처리를 위한 위원회가 있다. (12) 성희롱 사건조사 및 처리를 위한 위원회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3) 성희롱 예방, 상담, 사건대응 관련 업무를 위한 별도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 결과를 보면,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을 게시하거나 안내하고 있다’(90.8%),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에 관한 자체 규정(지침, 내규 등)이 있다’(85.8%), ‘성희롱 사건처리를 위한 업무매뉴얼이 있다’(81.4%)는 80% 이상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성희롱 예방, 상담, 사건대응 관련 업무를 위한 별도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42.9%)와 ‘성희롱 피해와 고충 관련 업무를 외부 성희롱 전문(가)기관에 위탁/지정하고 있다’(41.1%)는 50%를 밑돌았고 그 외 문항들은 50~70%대로 나타났다.

‘가해자 징계,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자체 규정(지침, 내규 등)이 마련되어 있다’(73.2%),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73.5%), ‘성희롱 상담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안내/홍보하고 있다’(73.2%)는 70%대였다. ‘성희롱 피해와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고충상담원 혹은 고충상담창구(OO부서, OO노조)가 지정되어 있다’(63.8%), ‘독립적이고 안전한(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상담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61.1%)는 60%대, ‘성희롱 사건조사 및

처리를 위한 위원회가 있다'(59.8%), '온라인을 활용한 상담 및 신고를 받고 있다'(57.1%), '성희롱 사건조사 및 처리를 위한 위원회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52.0%)는 50%대였다. 고충상담창구, 고충상담원의 지정, 독립적이고 안전한 상담공간 마련, 성희롱 사건처리를 위한 위원회 운영, 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참여 등은 성희롱 대응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로서 강조되어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50~60% 수준 이어서 성희롱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2018년 실태조사 결과와도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직장내 성희롱 방지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률이 낮은 건 민간사업체의 성희롱 방지 업무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보면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공공기관은 13개 문항 중 8개 문항에서 90% 이상이고, 3개 문항에서 80% 이상인데 반해, 민간사업체는 80%대 2개 문항, 70%대 2개 문항, 60%대 이하가 7개 문항이었다. 특히 종사자 규모가 작은 민간사업체일수록 시스템 운영이 더 미흡했다. 민간사업체는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해 보인다. 한편 공공기관이 대부분 90%를 상회할 정도로 시스템이 구축·운영되고 있었지만, 온라인 상담, 안전한 상담공간 마련, 상담 및 신고를 위한 정기적인 안내, 성희롱 방지 업무 관련 별도 예산 확보 등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표 Ⅲ-75〉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시스템 구축 현황 - 계속

(단위: %)

| 구분                                 | 성희롱<br>예방 및<br>사건<br>처리에<br>관련<br>자체 규정<br>(지침,<br>내규<br>등)이<br>있다 | 성희롱<br>예방교육<br>내용을<br>게시<br>하거나<br>안내하고<br>있다 | 성희롱<br>사건<br>처리를<br>위한<br>업무<br>매뉴얼이<br>있다 | 가해자 징계<br>피해자 보호,<br>2차 피해<br>방지에<br>대한<br>자체 규정<br>(지침, 내규<br>등)이 마련<br>되어 있다 | 성희롱·<br>성폭력<br>방지를<br>위한<br>연간<br>계획을<br>수립하고<br>있다 | 성희롱<br>피해와<br>고충을<br>상당할<br>수 있는<br>고충상담원<br>혹은 고충<br>상담창구가<br>지정되어<br>있다 | 성희롱<br>피해와<br>고충 관련<br>업무를<br>외부<br>성희롱<br>전문(가)<br>기관에<br>위탁/지정<br>하고 있다 |
|------------------------------------|--------------------------------------------------------------------|-----------------------------------------------|--------------------------------------------|--------------------------------------------------------------------------------|-----------------------------------------------------|---------------------------------------------------------------------------|---------------------------------------------------------------------------|
| 전 체                                | 85.8                                                               | 90.8                                          | 81.4                                       | 73.2                                                                           | 73.5                                                | 63.8                                                                      | 41.1                                                                      |
| 유형                                 |                                                                    |                                               |                                            |                                                                                |                                                     |                                                                           |                                                                           |
| 공공기관                               | 98.6                                                               | 96.6                                          | 98.0                                       | 94.9                                                                           | 97.4                                                | 97.9                                                                      | 65.5                                                                      |
| 민간사업체                              | 83.4                                                               | 89.8                                          | 78.3                                       | 69.2                                                                           | 69.0                                                | 57.5                                                                      | 36.6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 국가기관                               | 98.8                                                               | 99.1                                          | 97.7                                       | 96.5                                                                           | 95.6                                                | 98.8                                                                      | 58.3                                                                      |
| 지방자치단체                             | 90.1                                                               | 88.8                                          | 86.0                                       | 88.8                                                                           | 84.1                                                | 86.5                                                                      | 53.5                                                                      |
| 초/중/고                              | 99.5                                                               | 96.6                                          | 99.5                                       | 95.4                                                                           | 99.5                                                | 98.6                                                                      | 71.3                                                                      |
| 대학                                 | 97.8                                                               | 97.4                                          | 95.5                                       | 89.4                                                                           | 95.8                                                | 100.0                                                                     | 36.6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 제조업                                | 85.0                                                               | 91.4                                          | 79.3                                       | 66.0                                                                           | 66.9                                                | 56.4                                                                      | 32.0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79.9                                                               | 85.1                                          | 74.4                                       | 66.8                                                                           | 62.4                                                | 54.5                                                                      | 38.6                                                                      |
| 개인서비스업                             | 80.4                                                               | 87.9                                          | 73.0                                       | 65.2                                                                           | 67.4                                                | 58.8                                                                      | 39.5                                                                      |
| 유통서비스업                             | 79.5                                                               | 89.7                                          | 75.7                                       | 67.9                                                                           | 69.0                                                | 59.1                                                                      | 40.6                                                                      |
| 사업서비스업                             | 83.2                                                               | 88.1                                          | 79.8                                       | 70.8                                                                           | 67.8                                                | 52.9                                                                      | 40.0                                                                      |
| 사회서비스업                             | 86.9                                                               | 92.4                                          | 82.0                                       | 76.4                                                                           | 77.6                                                | 63.2                                                                      | 35.6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 30~99인                             | 81.9                                                               | 88.6                                          | 76.1                                       | 66.8                                                                           | 67.8                                                | 53.9                                                                      | 35.5                                                                      |
| 100~299인                           | 87.8                                                               | 93.5                                          | 85.2                                       | 75.5                                                                           | 71.1                                                | 68.5                                                                      | 37.5                                                                      |
| 300~499인                           | 92.9                                                               | 95.9                                          | 91.6                                       | 87.5                                                                           | 81.0                                                | 75.1                                                                      | 43.2                                                                      |
| 500인 이상                            | 95.2                                                               | 94.9                                          | 90.9                                       | 85.8                                                                           | 83.7                                                | 84.0                                                                      | 63.1                                                                      |



〈표 III-75〉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시스템 구축 현황

(단위: %)

| 구분                                 | 독립적이고<br>안전한<br>(비밀이 유지<br>될 수 있는)<br>상담 공간이<br>별도로 마련<br>되어 있다 | 온라인을<br>활용한<br>상담 및<br>신고를<br>받고 있다 | 성희롱<br>상담 및<br>신고<br>활성화를<br>위해 관련<br>정보를<br>정기적으로<br>안내/홍보<br>하고 있다 | 성희롱<br>사건<br>조사 및<br>처리를<br>위한<br>위원회가<br>있다 | 성희롱 사건<br>조사 및<br>처리를 위한<br>위원회에<br>외부전문가가<br>참여하도록<br>규정하고<br>있다 | 성희롱<br>예방, 상담,<br>사건대응<br>관련 업무를<br>위한 별도의<br>예산이<br>배정되어<br>있다 |
|------------------------------------|-----------------------------------------------------------------|-------------------------------------|----------------------------------------------------------------------|----------------------------------------------|-------------------------------------------------------------------|-----------------------------------------------------------------|
| 전 체                                | 61.1                                                            | 57.1                                | 73.2                                                                 | 59.8                                         | 52.0                                                              | 42.9                                                            |
| 유형                                 |                                                                 |                                     |                                                                      |                                              |                                                                   |                                                                 |
| 공공기관                               | 84.0                                                            | 85.4                                | 83.8                                                                 | 96.2                                         | 92.6                                                              | 63.0                                                            |
| 민간사업체                              | 56.8                                                            | 51.9                                | 71.2                                                                 | 53.0                                         | 44.5                                                              | 39.2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국가기관                               | 88.2                                                            | 85.4                                | 92.0                                                                 | 93.3                                         | 86.2                                                              | 57.3                                                            |
| 지방자치단체                             | 80.0                                                            | 77.4                                | 76.5                                                                 | 83.0                                         | 79.1                                                              | 65.7                                                            |
| 초/중/고                              | 82.7                                                            | 86.2                                | 82.2                                                                 | 98.6                                         | 97.3                                                              | 64.2                                                            |
| 대학                                 | 88.4                                                            | 85.1                                | 76.1                                                                 | 96.5                                         | 78.8                                                              | 68.8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제조업                                | 55.5                                                            | 44.0                                | 69.4                                                                 | 52.3                                         | 41.0                                                              | 31.7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50.5                                                            | 55.3                                | 69.9                                                                 | 50.2                                         | 46.7                                                              | 42.7                                                            |
| 개인서비스업                             | 50.8                                                            | 54.3                                | 68.7                                                                 | 53.4                                         | 48.3                                                              | 42.2                                                            |
| 유통서비스업                             | 57.3                                                            | 61.0                                | 73.3                                                                 | 59.9                                         | 53.0                                                              | 43.0                                                            |
| 사업서비스업                             | 56.8                                                            | 57.1                                | 71.9                                                                 | 50.9                                         | 47.1                                                              | 42.7                                                            |
| 사회서비스업                             | 65.2                                                            | 50.7                                | 74.3                                                                 | 53.7                                         | 39.5                                                              | 41.3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30~99인                             | 53.2                                                            | 48.9                                | 69.7                                                                 | 50.0                                         | 42.9                                                              | 37.0                                                            |
| 100~299인                           | 68.5                                                            | 60.3                                | 75.2                                                                 | 61.5                                         | 48.2                                                              | 43.9                                                            |
| 300~499인                           | 72.9                                                            | 65.9                                | 83.1                                                                 | 75.1                                         | 54.8                                                              | 54.7                                                            |
| 500인 이상                            | 81.1                                                            | 78.7                                | 83.5                                                                 | 74.6                                         | 63.2                                                              | 64.2                                                            |

주: 1) 백분율은 2,512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그렇다' 응답을 기준으로 재구성함.

2021년 실태조사에서는 3년 동안 확대된 직장내 성희롱 방지 시스템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2018년 대비 조사문항이 늘어났는데, 2018년과 2021년 문항 중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만 비교해 보면, 규정이나 매뉴얼 마련에서는 10%p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에 관한 자체 규정(지침, 내규 등)이 있다’는 2018년 76.4%에서 2021년 85.8%로, ‘성희롱 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 매뉴얼이 있다’는 2018년 67.2%에서 2021년 81.4%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특히 민간사업체의 개선율이 10%p를 상회한 영향이었다. 그러나 성희롱 사건조사와 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참여하는 규정 마련, 성희롱 사건조사 및 처리 위한 위원회 구성, 성희롱 관련 별도 예산 마련 등에서는 변화가 크지 않았다. ‘성희롱 사건조사 및 처리를 위한 위원회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21년 52.0%, 2018년 47.6%), ‘성희롱 예방, 상담, 사건대응 관련 업무를 위한 별도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2021년 42.9%, 2018년 41.6%), ‘성희롱 사건조사 및 처리를 위한 위원회가 있다’(2021년 59.8%, 2018년 58.5%)에서는 증가율이 1~5%를 하회하였다.

## 2) 사업주/기관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 노력

### 가) 사업주/기관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위한 적극적 노력 여부

업무담당자들에게 기관장/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 방지에 대한 법적 의무(책무)를 인지하고 관련 제도적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자 노력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85.3%였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공공기관은 98.2%, 민간사업체는 82.9%로 공공기관에서 15.3%p 높았다. 공공기관 유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95.7%로 다소 낮았고, 민간사업체 업종에서는 개인서비스업이 79.6%로 낮았다.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낮아서 30~99인에서 82.2%로 가장 낮았다.

〈표 Ⅲ-76〉 사업주/기관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위한 적극적 노력 여부

(단위: %)

| 구분                                 | 그렇다   | 아니다  | 계     |
|------------------------------------|-------|------|-------|
| <b>전 체</b>                         | 85.3  | 14.7 | 100.0 |
| <b>유형</b>                          |       |      |       |
| 공공기관                               | 98.2  | 1.8  | 100.0 |
| 민간사업체                              | 82.9  | 17.1 | 100.0 |
| <b>공공기관 유형</b>                     |       |      |       |
| 국가기관                               | 100.0 | -    | 100.0 |
| 지방자치단체                             | 95.7  | 4.3  | 100.0 |
| 초/중/고                              | 98.0  | 2.0  | 100.0 |
| 대학                                 | 97.1  | 2.9  | 100.0 |
| <b>민간사업체 업종</b>                    |       |      |       |
| 제조업                                | 81.0  | 19.0 | 100.0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82.4  | 17.6 | 100.0 |
| 개인서비스업                             | 79.6  | 20.4 | 100.0 |
| 유통서비스업                             | 84.1  | 15.9 | 100.0 |
| 사업서비스업                             | 82.9  | 17.1 | 100.0 |
| 사회서비스업                             | 87.2  | 12.8 | 100.0 |
| <b>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b>                |       |      |       |
| 30~99인                             | 82.2  | 17.8 | 100.0 |
| 100~299인                           | 84.8  | 15.2 | 100.0 |
| 300~499인                           | 87.0  | 13.0 | 100.0 |
| 500인 이상                            | 92.3  | 7.7  | 100.0 |

주: 백분율은 2,512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나) 사업주/기관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위한 책무 언급 여부

업무담당자에게 기관장/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 방지, 공정한 사건처리 등에 대한 책무 혹은 이행을 위해 직접 조직 구성원 혹은 업무담당자에게 직접 언급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이 77.2%였다. 앞서 성희롱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해선 10명 중 9명 정도가 '그렇다'고 응답했다면, 이와 관련해 조직원 전체 혹은 업무담당자에게 언급하였는가에 대해선 10명 중 7~8명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성희롱 방지에 있어서 기관장/사업주의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성희롱 방지 제도 운영 등을 통한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공공기관은 81.2%, 민간사업체는 76.3%로 공공기관에서 4.9%p 높았다. 공공기관 유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다소 낮았고,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낮아서 30~99인에서 75.3%로 가장 낮았다.

〈표 Ⅲ-77〉 사업주/기관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위한 책무 언급 여부

(단위: %)

| 구분                             | 있다   | 없다   | 모름/무응답 | 계     |
|--------------------------------|------|------|--------|-------|
| 전 체                            | 77.2 | 22.6 | 0.2    | 100.0 |
| 유형                             |      |      |        |       |
| 공공기관                           | 81.2 | 18.8 | -      | 100.0 |
| 민간사업체                          | 76.3 | 23.5 | 0.2    | 100.0 |
| 공공기관 유형                        |      |      |        |       |
| 국가기관                           | 89.1 | 10.9 | -      | 100.0 |
| 지방자치단체                         | 77.0 | 23.0 | -      | 100.0 |
| 초/중/고                          | 79.4 | 20.6 | -      | 100.0 |
| 대학                             | 74.0 | 26.0 | -      | 100.0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제조업                            | 77.6 | 22.3 | 0.1    | 100.0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63.8 | 36.2 | -      | 100.0 |
| 개인서비스업                         | 74.5 | 25.5 | -      | 100.0 |
| 유통서비스업                         | 78.2 | 21.8 | -      | 100.0 |
| 사업서비스업                         | 76.3 | 22.6 | 1.1    | 100.0 |
| 사회서비스업                         | 80.6 | 19.4 | -      | 100.0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30~99인                         | 75.3 | 24.4 | 0.3    | 100.0 |
| 100~299인                       | 80.4 | 19.6 | -      | 100.0 |
| 300~499인                       | 77.9 | 22.1 | -      | 100.0 |
| 500인 이상                        | 77.2 | 22.0 | 0.8    | 100.0 |

주: 백분율은 2,219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 나. 성희롱 고충 상담 현황

### 1) 성희롱 고충 상담 현황

지난 3년간(2018년 8월~2021년 7월) 성희롱 관련 고충상담 건수를 질문하였다. 자발적으로 상담을 요청하거나 상담원이 인지하여 상담을 실시한 경우 모두를 포함하며, 후속 상담에 대해선 동일 건으로 간주하였다. 1건도 없었던 비율은 94.6%였고, 1건 이상 있었던 비율은 5.4%였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공공기관은 13.3%가 '1건 이상 있었다'고 응답했고, 민간사업체는 3.9%가 '1건 이상 있었다'고 응답했다. 공공기관 유형에서는 대학에서 47.1%로 '1건 이상 있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민간사업체 업종에서는 사업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에서,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에서는 규모가 클수록 '1건 이상 있었다'는 응답이 많아서 500인 이상에서 22.4%로 가장 높았다.

'1건 이상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 지난 3년간의 고충상담 건수를 보면, 총 11,715건이었다. 공공기관에서는 6,251건(11,715건 중 53.4%)이었고, 민간사업체는 5,464건(11,715건 중 46.6%)이었다. 공공기관 유형에서는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458건(6,251건 중 7.3%)으로 가장 적었다. 민간사업체 업종 규모에서는 30~99인에서 2,971건(5,464건 중 54.4%)으로 가장 많았다.

성희롱 피해자가 어려움을 토로하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첫 공식적인 채널이 상담이라고 할 때, 성희롱 피해 대응을 위해 상담이 활성화되는 것은 중요하다. 상담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안전한 상담공간과 온라인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상담 활성화를 위한 안내와 홍보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표 Ⅲ-78〉 지난 3년간 성희롱 고충상담 현황

(단위: %, 건)

| 구분                             | 1건도 없다 | 1건 이상 있었다 | 계     | 1건 이상 있을 경우 |        |
|--------------------------------|--------|-----------|-------|-------------|--------|
|                                |        |           |       | 고충상담건수(합계)  |        |
| 전 체                            | 94.6   | 5.4       | 100.0 |             | 11,715 |
| 유형                             |        |           |       |             |        |
| 공공기관                           | 86.7   | 13.3      | 100.0 |             | 6,251  |
| 민간사업체                          | 96.1   | 3.9       | 100.0 |             | 5,464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국가기관                           | 85.8   | 14.2      | 100.0 |             | 1,460  |
| 지방자치단체                         | 84.2   | 15.8      | 100.0 |             | 458    |
| 초/중/고                          | 89.6   | 10.4      | 100.0 |             | 1,312  |
| 대학                             | 52.9   | 47.1      | 100.0 |             | 3,022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제조업                            | 96.6   | 3.4       | 100.0 |             | 1,003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96.4   | 3.6       | 100.0 |             | 634    |
| 개인서비스업                         | 98.2   | 1.8       | 100.0 |             | 787    |
| 유통서비스업                         | 96.1   | 3.9       | 100.0 |             | 529    |
| 사업서비스업                         | 95.0   | 5.0       | 100.0 |             | 1,153  |
| 사회서비스업                         | 94.9   | 5.1       | 100.0 |             | 1,358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30~99인                         | 96.9   | 3.1       | 100.0 |             | 2,971  |
| 100~299인                       | 95.6   | 4.4       | 100.0 |             | 1,156  |
| 300~499인                       | 87.0   | 13.0      | 100.0 |             | 396    |
| 500인 이상                        | 77.6   | 22.4      | 100.0 |             | 941    |

주: 백분율은 2,512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 2) 성희롱 고충 상담 이후 조치

성희롱 관련 고충상담이 있었던 경우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6개 문항으로 질문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에게 조사 및 구제 방식을 안내한다. (2) 상담내용에 대해 비밀이 유지될 것임을 안내한다. (3)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방식에 대해 청취한다. (4) 상담내용을 기록하여 정리한다. (5) 성희롱 발생 인지 시 즉각 성희롱 업무 관련 상급자에게 보고한다. (6) 고충상담 접수 내용을 정기적으로 사업주/기관장에게 보고한다.

성희롱 고충상담 조치내용을 각 문항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조치율)을 기준

으로 보면, ‘피해자에게 조사 및 구제 방식을 안내한다’(94.0%), ‘상담내용에 대해 비밀 유지될 것임을 안내한다’(94.1%),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방식에 대해 청취한다’(96.8%), ‘성희롱 발생 인지도 즉시 성희롱 업무 관련 상급자에게 보고한다’(92.0%) 등은 90%를 상회하였다. 그러나 ‘상담내용을 기록하여 정리한다’(85.7%)와 ‘고충상담 접수내용을 정기적으로 사업주/기관장에게 보고한다’(83.9%)는 80%대였다.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전체적으로 민간사업체가 공공기관보다 낮았다. 특히 ‘상담내용에 대한 기록·정리’(77.5%), ‘고충상담 접수 내용에 대한 사업주/기관장 보고’(79.2%)의 조치율이 낮았다. 또한, 종사자 규모가 작은 민간사업체일수록 조치율이 낮아서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 대한 적극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표 III-79〉 지난 3년간 성희롱 고충상담 시 조치

(단위: %)

| 구분                                 | 피해자에게<br>조사 및<br>구제<br>방식을<br>안내한다 | 상담내용에<br>대해<br>비밀이<br>유지될<br>것임을<br>안내한다 | 피해자가<br>원하는<br>해결방식에<br>대해<br>청취한다 | 상담내용을<br>기록하여<br>정리한다 | 성희롱 발생<br>인지 시 즉시<br>성희롱<br>업무 관련<br>상급자에게<br>보고한다 | 고충상담<br>접수 내용을<br>정기적으로<br>사업주/<br>기관장에게<br>보고한다 |
|------------------------------------|------------------------------------|------------------------------------------|------------------------------------|-----------------------|----------------------------------------------------|--------------------------------------------------|
| 전 체                                | 94.0                               | 94.1                                     | 96.8                               | 85.7                  | 92.0                                               | 83.9                                             |
| 유형                                 |                                    |                                          |                                    |                       |                                                    |                                                  |
| 공공기관                               | 100.0                              | 100.0                                    | 100.0                              | 98.8                  | 98.9                                               | 91.4                                             |
| 민간사업체                              | 90.2                               | 90.3                                     | 94.7                               | 77.5                  | 87.6                                               | 79.2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국가기관                               | 100.0                              | 100.0                                    | 100.0                              | 97.6                  | 99.2                                               | 96.7                                             |
| 지방자치단체                             | 100.0                              | 100.0                                    | 100.0                              | 92.1                  | 89.3                                               | 74.1                                             |
| 초/중/고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94.2                                             |
| 대학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83.6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제조업                                | 86.7                               | 86.7                                     | 95.7                               | 67.0                  | 95.7                                               | 92.7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77.2                               | 100.0                                    | 100.0                              | 34.5                  | 73.5                                               | 66.8                                             |
| 개인서비스업                             | 100.0                              | 100.0                                    | 100.0                              | 100.0                 | 92.3                                               | 72.3                                             |
| 유통서비스업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97.7                                             |
| 사업서비스업                             | 90.8                               | 81.7                                     | 90.8                               | 65.9                  | 71.2                                               | 56.5                                             |
| 사회서비스업                             | 92.0                               | 92.0                                     | 92.0                               | 100.0                 | 93.3                                               | 84.5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30~99인                             | 85.9                               | 86.0                                     | 93.1                               | 67.9                  | 86.8                                               | 79.7                                             |
| 100~299인                           | 94.4                               | 94.4                                     | 94.4                               | 87.2                  | 87.2                                               | 83.9                                             |
| 300~499인                           | 100.0                              | 100.0                                    | 100.0                              | 95.0                  | 86.8                                               | 70.0                                             |
| 500인 이상                            | 99.2                               | 100.0                                    | 100.0                              | 100.0                 | 92.9                                               | 74.8                                             |

주: 1) 백분율은 277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그렇다’ 응답을 기준으로 재구성함.

## 다. 성희롱 사건처리 현황

### 1) 성희롱 사건 발생 현황

지난 3년간(2018년 8월~2021년 7월)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는지 조사하였다. 담당 부서에 접수되어 처리된 사건뿐 아니라 고충상담원, 담당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거나 외부 경로를 통해 인지된 사건 등을 모두 포함하였다. 그 결과, 1건도 없었던 비율은 95.3%였고, 1건 이상 있었던 비율은 4.7%였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1건 이상 있었던 비율은 공공기관 13.3%, 민간사업체 3.1%였다.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대학에서 49.2%로 가장 높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1.2%였다. 민간사업체 업종에서는 사회서비스업(4.0%)과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3.6%)에서 높았고, 종사자 규모가 큰 민간사업체에서 1건 이상 있었던 비율이 높아져서 30~99인 규모의 민간사업체는 2.5%였으나 100~299인 3.3%, 300~499인 10.4%, 500인 이상 14.3%로 나타났다.

〈표 Ⅲ-80〉 지난 3년간 성희롱 사건 발생 현황

(단위: %)

| 구분                             | 1건도 없다 | 1건 이상 있었다 | 모름/무응답 | 계     |
|--------------------------------|--------|-----------|--------|-------|
| <b>전 체</b>                     | 95.3   | 4.7       | 0.1    | 100.0 |
| <b>유형</b>                      |        |           |        |       |
| 공공기관                           | 86.7   | 13.3      | -      | 100.0 |
| 민간사업체                          | 96.9   | 3.1       | 0.1    | 100.0 |
| <b>공공기관 유형</b>                 |        |           |        |       |
| 국가기관                           | 87.6   | 12.4      | -      | 100.0 |
| 지방자치단체                         | 78.8   | 21.2      | -      | 100.0 |
| 초/중/고                          | 89.7   | 10.3      | -      | 100.0 |
| 대학                             | 50.8   | 49.2      | -      | 100.0 |
| <b>민간사업체 업종</b>                |        |           |        |       |
| 제조업                            | 96.8   | 3.2       | -      | 100.0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96.4   | 3.6       | -      | 100.0 |
| 개인서비스업                         | 97.9   | 2.1       | -      | 100.0 |
| 유통서비스업                         | 97.6   | 1.8       | 0.6    | 100.0 |
| 사업서비스업                         | 97.2   | 2.8       | -      | 100.0 |
| 사회서비스업                         | 96.0   | 4.0       | -      | 100.0 |
| <b>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b>            |        |           |        |       |
| 30~99인                         | 97.4   | 2.5       | 0.1    | 100.0 |
| 100~299인                       | 96.7   | 3.3       | -      | 100.0 |
| 300~499인                       | 89.6   | 10.4      | -      | 100.0 |
| 500인 이상                        | 85.7   | 14.3      | -      | 100.0 |

주: 백분율은 2,512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 2) 성희롱 사건 처리 현황

사건 발생-조사-심의-인정의 단계에 따른 사건처리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성희롱 사건이 1건 이상 발생된 경우에 한 해 조사가 진행된 성희롱 사건 수, 성희롱 사건 심의를 위한 위원회가 개최된 사건 수, 위원회를 통해 성희롱으로 인정된 건수를 조사하였다.

먼저 지난 3년간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는지 조사하였다. 이때 담당 부서에 접수되어 처리된 사건뿐 아니라 고충상담원, 담당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거나 외부 경로를 통해 인지된 사건 등을 모두 포함하였다. 지난 3년 동안 성희롱 발생 건수는 총 7,651건이었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공공기관은 4,327건(7,651건 중 56.6%), 민간사업체는 3,324건(7,651건 중 43.4%)이었다. 공공기관에서는 대학(2,030건, 4,327건 중 46.9%), 민간사업체에서는 30~99인 사업체(1,876건, 3,324건 중 56.4%)에서 많았다.

조사가 진행된 성희롱 사건 수는 총 6,028건이었다.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 3,159건(6,028건 중 52.4%), 민간사업체 2,869건(6,028건 중 47.6%)이었다. 공공기관 중 대학과 초/중/고에서 조사 건수가 많았고, 30~99인 규모의 민간사업체에서 조사 건수가 많았다.

성희롱 사건심의를 위한 위원회가 개최된 사건 수는 총 4,407건이었다.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 2,476건(4,407건 중 56.2%), 민간사업체 1,931건(4,407건 중 43.8%)이었다.

성희롱 사건 심의 위원회를 통해 성희롱으로 인정된 건수는 총 3,708건이었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공공기관은 2,121건, 민간사업체는 1,587건이었다.

〈표 Ⅲ-81〉 지난 3년간 성희롱 사건 처리 현황

(단위: 건)

| 구분                                 | 발생건수  | 조사건수  | 심의건수  | 성희롱 인정건수 |
|------------------------------------|-------|-------|-------|----------|
| <b>전 체</b>                         | 7,651 | 6,028 | 4,407 | 3,708    |
| <b>유형</b>                          |       |       |       |          |
| 공공기관                               | 4,327 | 3,159 | 2,476 | 2,121    |
| 민간사업체                              | 3,324 | 2,869 | 1,931 | 1,587    |
| <b>공공기관 유형</b>                     |       |       |       |          |
| 국가기관                               | 565   | 441   | 313   | 307      |
| 지방자치단체                             | 460   | 353   | 301   | 240      |
| 초/중/고                              | 1,272 | 1,106 | 750   | 578      |
| 대학                                 | 2,030 | 1,259 | 1,112 | 996      |
| <b>민간사업체 업종</b>                    |       |       |       |          |
| 제조업                                | 851   | 840   | 710   | 645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584   | 404   | 239   | 178      |
| 개인서비스업                             | 290   | 279   | 224   | 180      |
| 유통서비스업                             | 244   | 237   | 106   | 98       |
| 사업서비스업                             | 443   | 317   | 174   | 90       |
| 사회서비스업                             | 912   | 793   | 479   | 395      |
| <b>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b>                |       |       |       |          |
| 30~99인                             | 1,876 | 1,528 | 825   | 599      |
| 100~299인                           | 676   | 598   | 522   | 427      |
| 300~499인                           | 284   | 284   | 249   | 241      |
| 500인 이상                            | 489   | 459   | 336   | 320      |

주: 백분율은 각각 252명(발생건수 응답인원), 252명(조사건수 응답인원), 224명(심의건수 응답인원), 180명(인정건수 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 3) 성희롱 사건 조사 현황

#### 가) 조사신청~조사 종료까지의 소요시간

지난 3년 동안 조사가 진행된 사건 수가 1건 이상인 경우 조사신청(사건신고, 사건 접수 등) 후 조사가 개시되기까지 평균적으로 소요된 기간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7.41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 8.45일, 민간사업체 6.65일이었다. 공공기관 중에서 국가기관은 10.79일, 지방자치단체는 12.19일, 대학은 14.17일이었다. 민간사업체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9.19일로 다른 업종에 비해 길었다.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별로는 30~99인 6.62일, 100~299인 7.85일, 300~499인

5.78일, 500인 이상 5.57일이었다.

조사개시로부터 조사 종료까지의 소요 시간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평균 19.05일이었다.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 19.89일, 민간사업체 18.45일이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대학이 33.8일로 가장 길었다. 민간사업체 업종에서는 개인서비스업에서 22.03일로 가장 길었고,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중에서는 30~99인 규모에서 20.05일로 가장 길었다.

〈표 III-82〉 조사신청 후 조사종료까지의 소요 시간

(단위: 일)

| 구분                                 | 조사 신청 후 개시까지<br>소요된 기간(평균) | 조사 개시 후 종료까지<br>소요된 기간(평균) |
|------------------------------------|----------------------------|----------------------------|
| 전 체                                | 7.41                       | 19.05                      |
| 유형                                 |                            |                            |
| 공공기관                               | 8.45                       | 19.89                      |
| 민간사업체                              | 6.65                       | 18.45                      |
| 공공기관 유형                            |                            |                            |
| 국가기관                               | 10.79                      | 20.86                      |
| 지방자치단체                             | 12.19                      | 27.18                      |
| 초/중/고                              | 4.61                       | 12.95                      |
| 대학                                 | 14.17                      | 3.80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제조업                                | 9.19                       | 21.78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7.27                       | 15.58                      |
| 개인서비스업                             | 5.20                       | 22.03                      |
| 유통서비스업                             | 2.40                       | 13.32                      |
| 사업서비스업                             | 4.46                       | 17.57                      |
| 사회서비스업                             | 5.73                       | 16.18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30~99인                             | 6.62                       | 20.05                      |
| 100~299인                           | 7.85                       | 16.78                      |
| 300~499인                           | 5.78                       | 11.75                      |
| 500인 이상                            | 5.57                       | 16.95                      |

주: 1) 백분율은 224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민간사업체 업종,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변수는 모든 범주가 사례 수 30 이하로 해석에 유의함.

#### 나) 성희롱 사건 조사 진행자

지난 3년 동안 조사가 진행된 사건 수가 1건 이상인 경우 통상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복수응답)를 조사하였다.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고충처리 담당 부서’가 55.6%로 가장 많았고, ‘고충상담원’(54.9%), ‘감사실(감사업무 담당자)’(18.8%)

순이었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거나(15.4%)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9.7%) 경우도 있었다.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의 경우 ‘고충상담원’이 76.2%로 가장 많았고, ‘고충 처리 담당부서’(49.0%), ‘외부 전문가가 조사자로 참여’(20.6%)하거나 ‘감사실(감사업무 담당자)’(16.9%) 순이었다. 민간사업체의 경우 ‘고충처리 담당부서’(60.4%)가 많았고, 그다음은 ‘고충상담원’(39.6%), ‘감사실(감사업무담당자)’(20.2%) 순이었다. 공공기관 유형 중 지방자치단체(87.0%), 초/중/고(81.6%), 대학(81.5%)에서 고충상담원이 조사 진행자라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고, 지방자치단체는 외부 전문가가 조사자로 참여하는 경우도 많았다. 민간사업체 업종에서는 제조업의 경우 ‘고충처리 담당부서’(77.7%)라는 응답이 월등히 높았고 유통서비스업은 ‘감사실’(32.8%)의 조사진행자 비율이 높았다.

〈표 Ⅲ-83〉 조사 진행자(복수응답)

(단위: %)

| 구분                                 | 고충처리<br>담당부서 | 고충<br>상담원 | 감사실<br>(감사업무<br>담당자) | 외부<br>전문가에게<br>조사업무<br>의뢰 | 외부<br>전문가가<br>조사자로<br>참여 | 기타   |
|------------------------------------|--------------|-----------|----------------------|---------------------------|--------------------------|------|
| 전 체                                | 55.6         | 54.9      | 18.8                 | 9.7                       | 15.4                     | 11.4 |
| 유형                                 |              |           |                      |                           |                          |      |
| 공공기관                               | 49.0         | 76.2      | 16.9                 | 14.3                      | 20.6                     | 9.3  |
| 민간사업체                              | 60.4         | 39.6      | 20.2                 | 6.3                       | 11.6                     | 12.9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국가기관                               | 55.1         | 54.5      | 35.9                 | 12.1                      | 9.3                      | 9.5  |
| 지방자치단체                             | 60.6         | 87.0      | 68.8                 | 24.9                      | 49.5                     | 5.2  |
| 초/중/고                              | 35.9         | 81.6      | -                    | 12.8                      | 21.6                     | 8.8  |
| 대학                                 | 71.2         | 81.5      | 13.3                 | 15.6                      | 15.9                     | 12.6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제조업                                | 77.7         | 16.2      | 22.3                 | -                         | -                        | 1.7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13.9         | 60.6      | 12.7                 | 7.8                       | 1.2                      | 25.5 |
| 개인서비스업                             | 59.7         | 48.9      | 15.8                 | 10.8                      | 41.7                     | 2.2  |
| 유통서비스업                             | 22.1         | 29.0      | 32.8                 | 5.0                       | 5.0                      | 38.1 |
| 사업서비스업                             | 36.7         | 52.8      | 25.7                 | 4.8                       | 4.8                      | 25.7 |
| 사회서비스업                             | 82.8         | 52.8      | 15.8                 | 13.7                      | 27.5                     | 10.8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30~99인                             | 54.6         | 39.1      | 18.9                 | 3.8                       | 11.8                     | 13.6 |
| 100~299인                           | 68.7         | 29.6      | 17.6                 | 11.0                      | 16.3                     | 13.2 |
| 300~499인                           | 70.8         | 52.6      | 27.8                 | 8.3                       | 8.3                      | 8.3  |
| 500인 이상                            | 73.2         | 49.9      | 26.8                 | 12.2                      | 4.7                      | 11.5 |

주: 1) 백분율은 224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조사 진행자는 복수응답 분석을 실시함.

3) 민간사업체 업종,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변수는 모든 범주가 사례 수 30 이하로 해석에 유의함.

#### 다) 성희롱 사건 조사 진행상황의 피해자 안내 여부

지난 3년 동안 조사가 진행된 사건 수가 1건 이상인 경우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알리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의 요청 여부에 상관없이 알린다’는 응답이 54.6%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알린다’가 44.5%로, ‘알린다’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공공기관은 ‘피해자 요청 여부에 상관없이 알린다’(66.5%),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알린다’(32.9%) 순이었고, 민간사업체는 반대로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알린다’(52.8%), ‘피해자 요청 여부에 상관없이 알린다’(46.1%) 순이었다.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국가기관(64.8%), 초/중/고(72.8%), 대학(62.9%)에서는 ‘피해자가 요청 여부에 상관없이 알린다’가 많았던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알린다’의 응답(53.1%)이 더 많았다.

민간사업체 업종별로 제조업(71.5%), 유통서비스업(65.8%)에서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알린다’,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92.1%)에서는 ‘피해자가 요청 여부에 상관없이 알린다’가 더 많았다.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피해자가 요청여부에 상관없이 알린다’는 응답이 적었다.

〈표 Ⅲ-84〉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한 피해자 안내 여부

(단위: %)

| 구분                             |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알린다 | 피해자의 요청 여부에 상관없이 알린다 |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는다 | 계     |
|--------------------------------|-----------------|----------------------|---------------|-------|
| 전 체                            | 44.5            | 54.6                 | 0.9           | 100.0 |
| 유형                             |                 |                      |               |       |
| 공공기관                           | 32.9            | 66.5                 | 0.6           | 100.0 |
| 민간사업체                          | 52.8            | 46.1                 | 1.2           | 100.0 |
| 공공기관 유형                        |                 |                      |               |       |
| 국가기관                           | 35.2            | 64.8                 | -             | 100.0 |
| 지방자치단체                         | 53.1            | 44.3                 | 2.6           | 100.0 |
| 초/중/고                          | 27.2            | 72.8                 | -             | 100.0 |
| 대학                             | 35.2            | 62.9                 | 2.0           | 100.0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제조업                            | 71.5            | 28.5                 | -             | 100.0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7.9             | 92.1                 | -             | 100.0 |
| 개인서비스업                         | 48.9            | 51.1                 | -             | 100.0 |
| 유통서비스업                         | 65.8            | 17.2                 | 17.0          | 100.0 |
| 사업서비스업                         | 42.3            | 57.7                 | -             | 100.0 |
| 사회서비스업                         | 52.4            | 47.6                 | -             | 100.0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30~99인                         | 60.6            | 39.4                 | -             | 100.0 |
| 100~299인                       | 40.6            | 53.0                 | 6.5           | 100.0 |
| 300~499인                       | 39.3            | 60.7                 | -             | 100.0 |
| 500인 이상                        | 36.6            | 63.4                 | -             | 100.0 |

주: 1) 백분율은 224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민간사업체 업종,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변수는 모든 범주가 사례 수 30 이하로 해석에 유의함.

#### 4) 성희롱 사건 심의 현황

##### 가) 성희롱 심의 및 판단을 위한 위원회 명칭

지난 3년간 성희롱 사건 심의를 위한 위원회가 개최된 사건이 있는 경우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심의 및 판단 등을 논의하는 위원회의 명칭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고충심의위원회/성희롱심의위원회’가 64.4%로 가장 많았고, ‘인사위원회’ 14.3%, ‘징계위원회’ 14.0% 순이었다.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의 경우 88.2%가 ‘고충심의위원회/성희롱심의위원회’

였고, 민간사업체의 경우 ‘고충심의위원회/성희롱심의위원회’ 44.8%, ‘인사위원회’ 25.7%, ‘징계위원회’ 23.0% 순이었다. 민간사업체 업종 중에서 제조업의 경우 고충심의위원회/성희롱심의위원회는 전무했고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지고 있었다. 개인서비스업에서는 고충심의위원회/성희롱심의위원회를 이용하는 비율이 60%를 상회했지만 인사위원회를 이용하는 비율도 30% 정도였고, 유통서비스업 역시 징계위원회를 이용하는 비율이 45.5%여서 고충심의위원회/성희롱심의위원회를 이용하는 비율(44.2%)보다 많았다.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에서는 특히 500인 이상 규모의 경우 고충심의위원회/성희롱 심의위원회 비율이 적고,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 비율이 높았다. 민간사업체에서 성희롱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고충심의위원회가 아닌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판단하는 비율이 50% 정도에 이르고 있어서, 성희롱 사건 심의를 위한 별도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표 III-85〉 성희롱 심의 및 판단을 위한 위원회의 명칭

(단위: %)

| 구분                                 | 고충심의위원회/<br>성희롱심의위원회 | 인사위원회 | 징계위원회 | 기타   | 계     |
|------------------------------------|----------------------|-------|-------|------|-------|
| 전 체                                | 64.4                 | 14.3  | 14.0  | 7.4  | 100.0 |
| 유형                                 |                      |       |       |      |       |
| 공공기관                               | 88.2                 | 0.4   | 3.0   | 8.4  | 100.0 |
| 민간사업체                              | 44.8                 | 25.7  | 23.0  | 6.5  | 100.0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국가기관                               | 86.1                 | -     | 12.2  | 1.7  | 100.0 |
| 지방자치단체                             | 96.8                 | -     | -     | 3.2  | 100.0 |
| 초/중/고                              | 97.9                 | -     | -     | 2.1  | 100.0 |
| 대학                                 | 64.6                 | 1.9   | 3.2   | 30.3 | 100.0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제조업                                | -                    | 48.9  | 39.4  | 11.7 | 100.0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86.5                 | 11.6  | -     | 1.9  | 100.0 |
| 개인서비스업                             | 69.8                 | 30.2  | -     | -    | 100.0 |
| 유통서비스업                             | 44.2                 | 10.3  | 45.5  | -    | 100.0 |
| 사업서비스업                             | 80.2                 | -     | 10.7  | 9.1  | 100.0 |
| 사회서비스업                             | 73.8                 | 8.4   | 15.3  | 2.5  | 100.0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30~99인                             | 42.2                 | 25.4  | 23.9  | 8.5  | 100.0 |
| 100~299인                           | 60.0                 | 22.6  | 17.4  | -    | 100.0 |
| 300~499인                           | 49.7                 | 34.1  | 6.9   | 9.3  | 100.0 |
| 500인 이상                            | 21.4                 | 24.7  | 46.3  | 7.5  | 100.0 |

주: 1) 백분율은 180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민간사업체 업종,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변수는 모든 범주가 사례 수 30 이하로 해석에 유의함.

#### 나) 성희롱 심의 및 판단을 위한 위원회 구성원

지난 3년간 성희롱 사건 심의를 위한 위원회가 개최된 사건이 있는 경우 성희롱 여부의 심의 및 판단을 위한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복수응답) 질문하였다. 그 결과, ‘임원 및 관리자급’(73.2%), ‘성희롱 관련 외부 전문가’(55.8%), ‘사업주/기관장’(37.4%), ‘인사부서 담당자’(29.6%), ‘감사부서 담당자’(18.6%) 순이었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공공기관에서는 ‘성희롱 관련 외부 전문가’(84.2%), ‘임원 및 관리자급’(78.6%), ‘사업주/기관장’(37.6%), ‘인사부서 담당자’(25.6%), ‘감사부서 담당자’(19.8%) 순이었다. 민간사업체는 ‘임원 및 관리자급’(68.7%)이 월등히 많았고, 그다음은 ‘사업주/기관장’(37.2%), ‘인사부서 담당자’(32.8%), ‘성희롱 관련 외부 전문가’(32.4%) 순이었다.

공공기관 유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초/중/고에서 성희롱 관련 외부 전문가 참여율이 90%를 상회하였고, 대학은 67.3%로 낮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동조합 간부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민간사업체 업종에서는 제조업, 개인서비스업은 사업주/기관장, 임원 및 관리자급 비율이 높았고, 유통서비스업은 성희롱 관련 외부 전문가와 인사부서 담당자, 사업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은 외부 전문가와 임원 및 관리자급으로 구성된 비율이 높았다.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에서는 임원 및 관리자급 비율이 월등히 높았고, 다른 업종들과 달리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다.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가 30~499인에서는 종사자 규모가 커질수록 임원 및 관리자급 참여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I-86〉 성희롱 심의 및 판단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원(복수응답)

(단위: %)

| 구분                                 | 사업주/<br>기관장 | 임원 및<br>관리자급 | 노동조합<br>간부 | 성희롱<br>관련<br>외부<br>전문가 | 감사부서<br>담당자 | 인사부서<br>담당자 | 노사<br>협의회<br>근로자<br>위원 | 기타   |
|------------------------------------|-------------|--------------|------------|------------------------|-------------|-------------|------------------------|------|
| 전 체                                | 37.4        | 73.2         | 9.5        | 55.8                   | 18.6        | 29.6        | 12.1                   | 22.3 |
| 유형                                 |             |              |            |                        |             |             |                        |      |
| 공공기관                               | 37.6        | 78.6         | 10.3       | 84.2                   | 19.8        | 25.6        | 2.6                    | 40.6 |
| 민간사업체                              | 37.2        | 68.7         | 8.9        | 32.4                   | 17.6        | 32.8        | 20.0                   | 7.2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
| 국가기관                               | 13.9        | 64.7         | 16.1       | 79.2                   | 48.2        | 50.3        | 3.8                    | 19.3 |
| 지방자치단체                             | 11.6        | 60.2         | 59.0       | 91.0                   | 41.0        | 67.1        | 5.8                    | 23.8 |
| 초/중/고                              | 59.2        | 90.3         | -          | 92.4                   | 7.6         | 4.2         | -                      | 44.1 |
| 대학                                 | 24.2        | 74.2         | 3.2        | 67.3                   | 11.6        | 29.9        | 5.7                    | 59.9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
| 제조업                                | 55.1        | 62.7         | 7.6        | 4.1                    | 11.7        | 41.4        | 17.3                   | -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15.4        | 98.1         | 3.7        | 47.9                   | -           | 11.4        | 44.2                   | 1.9  |
| 개인서비스업                             | 65.6        | 46.4         | -          | -                      | 14.1        | 34.4        | 7.5                    | -    |
| 유통서비스업                             | 10.3        | 30.6         | 10.0       | 55.6                   | 20.3        | 55.8        | -                      | 79.4 |
| 사업서비스업                             | 30.4        | 68.4         | 18.2       | 59.0                   | 39.5        | 41.0        | 9.1                    | -    |
| 사회서비스업                             | 17.8        | 80.5         | 11.3       | 64.0                   | 24.8        | 19.8        | 26.7                   | 12.0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
| 30~99인                             | 47.1        | 61.3         | -          | 34.6                   | 15.5        | 16.9        | 22.9                   | -    |
| 100~299인                           | 16.2        | 70.3         | 9.6        | 21.0                   | 16.8        | 48.1        | 16.7                   | 28.5 |
| 300~499인                           | 42.1        | 86.0         | 27.3       | 47.4                   | 32.5        | 43.1        | 22.5                   | -    |
| 500인 이상                            | 26.0        | 84.9         | 32.9       | 29.9                   | 14.1        | 70.3        | 9.3                    | 6.4  |

- 주: 1) 백분율은 180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성희롱 심의 및 판단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원은 복수응답 분석을 실시함.  
 3) 민간사업체 업종,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변수는 모든 범주가 사례 수 30 이하로 해석에 유의함.

다) 성희롱 심의 및 판단, 행위자 징계 시 피해자 의견 청취 및 확인 여부

지난 3년간 성희롱 사건 심의를 위한 위원회가 개최된 사건이 있는 경우 성희롱 심의 및 행위자 징계 결정 등의 절차에서 사전청취 결과보고, 서면제출, 출석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확인했는지를 질문하였다. ‘그렇다’(매우 그렇다+약간 그렇다)의 응답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먼저 성희롱 심의 판단할 때 ‘그렇다’는 응답이 97.1%였다.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 98.6%, 민간사업체 95.9%였다.

성희롱 행위자 징계를 결정할 때는 ‘그렇다’는 응답이 96.3%였다.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 97.3%, 민간사업체 95.6%였다.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대학(94.7%), 지방자치단체(86.0%)에서 성희롱 행위자 징계 결정에서의 피해자 의견 청취 이행률이 다소 낮았다. 민간사업체 업종에서는 사회서비스업에서,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에서는 100~299인에서 낮았다.

〈표 Ⅲ-87〉 성희롱 심의·판단 시 피해자 의견 청취 및 확인 여부

(단위: %)

| 구분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계     |
|--------------------------------|-------|--------|-------|
| 전 체                            | 97.1  | 2.9    | 100.0 |
| 유형                             |       |        |       |
| 공공기관                           | 98.6  | 1.4    | 100.0 |
| 민간사업체                          | 95.9  | 4.1    | 100.0 |
| 공공기관 유형                        |       |        |       |
| 국가기관                           | 100.0 | -      | 100.0 |
| 지방자치단체                         | 91.0  | 9.0    | 100.0 |
| 초/중/고                          | 100.0 | -      | 100.0 |
| 대학                             | 98.1  | 1.9    | 100.0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제조업                            | 100.0 | -      | 100.0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100.0 | -      | 100.0 |
| 개인서비스업                         | 100.0 | -      | 100.0 |
| 유통서비스업                         | 100.0 | -      | 100.0 |
| 사업서비스업                         | 100.0 | -      | 100.0 |
| 사회서비스업                         | 83.6  | 16.4   | 100.0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30~99인                         | 100.0 | -      | 100.0 |
| 100~299인                       | 84.7  | 15.3   | 100.0 |
| 300~499인                       | 100.0 | -      | 100.0 |
| 500인 이상                        | 94.3  | 5.7    | 100.0 |

- 주: 1) 백분율은 180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그렇다’는 ①매우 그렇다+②약간 그렇다, ‘그렇지 않다’는 ③그렇지 않다+④전혀 그렇지 않대로 구성됨.  
 3) 민간사업체 업종,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변수는 모든 범주가 사례 수 30 이하로 해석에 유의함.

〈표 III-88〉 성희롱 행위자 징계 결정 시 피해자 의견 청취 및 확인 여부

(단위: %)

| 구분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계     |
|------------------------------------|-------|--------|-------|
| <b>전 체</b>                         | 96.3  | 3.7    | 100.0 |
| <b>유형</b>                          |       |        |       |
| 공공기관                               | 97.3  | 2.7    | 100.0 |
| 민간사업체                              | 95.6  | 4.4    | 100.0 |
| <b>공공기관 유형</b>                     |       |        |       |
| 국가기관                               | 100.0 | -      | 100.0 |
| 지방자치단체                             | 86.0  | 14.0   | 100.0 |
| 초/중/고                              | 100.0 | -      | 100.0 |
| 대학                                 | 94.7  | 5.3    | 100.0 |
| <b>민간사업체 업종</b>                    |       |        |       |
| 제조업                                | 100.0 | -      | 100.0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100.0 | -      | 100.0 |
| 개인서비스업                             | 100.0 | -      | 100.0 |
| 유통서비스업                             | 100.0 | -      | 100.0 |
| 사업서비스업                             | 100.0 | -      | 100.0 |
| 사회서비스업                             | 83.6  | 16.4   | 100.0 |
| <b>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b>                |       |        |       |
| 30~99인                             | 100.0 | -      | 100.0 |
| 100~299인                           | 82.9  | 17.1   | 100.0 |
| 300~499인                           | 100.0 | -      | 100.0 |
| 500인 이상                            | 94.1  | 5.9    | 100.0 |

- 주: 1) 백분율은 180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그렇다'는 ①매우 그렇다+②약간 그렇다, '그렇지 않다'는 ③그렇지 않다+④전혀 그렇지 않대로 구성됨.  
 3) 민간사업체 업종,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변수는 모든 범주가 사례 수 30 이하로 해석에 유의함.

## 라. 행위자 및 피해자에 대한 조치 현황

### 1)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 결과

지난 3년(2018년 8월~2021년 7월) 동안 1건 이상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성희롱 사건 행위자에 대한 조치 내용(복수응답)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성희롱 사건 행위자에 대한 조치건수는 총 10,657건이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재발방지교육’이 2,513건(23.6%)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인사조치(배치전환)’ 1,725건(16.2%), ‘당사자 합의로 종료’ 1,545건(14.5%), ‘증징계(정직, 해고 등)’ 1,493건(14.0%), ‘주의 경고’ 1,292건(12.1%), ‘경징계(견책, 감봉 등)’ 862건(8.1%)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재발 방지교육, 인사조치 등의 비중이 높았고 경징계보다는 증징계가 더 많았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공공기관의 경우 총 6,015건으로, ‘재발방지교육’ 1,731건(28.8%), ‘당사자 합의로 종료’ 831건(13.8%), ‘인사조치(배치전환)’ 800건(13.3%), ‘증징계(정직, 해고 등)’ 753건(12.5%) 순이었다. 민간사업체의 경우 총 4,643건으로, ‘인사조치(배치전환)’ 925건(19.9%), ‘재발방지교육’ 782건(16.8%), ‘주의 경고’ 745건(16.0%), ‘증징계(정직, 해고 등)’ 740건(15.9%) 순이었다.

공공기관 유형별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인사조치(배치전환)’, ‘재발방지교육’ 순으로, 초/중/고는 ‘재발방지교육’, ‘당사자 합의로 종료’ 순으로, 대학은 ‘재발방지교육’과 ‘증징계(정직, 해고 등)’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민간사업체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는 ‘증징계’,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과 유통업에서는 ‘당사자 합의로 종료’의 비중이 높았다. 개인서비스업에서 ‘재발방지교육’, 사업서비스업은 ‘인사조치(배치전환 등)’, 사회서비스업은 ‘인사조치(배치전환 등)’와 ‘주의 경고’의 비중이 높았다.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에서는 30~99인의 경우 ‘당사자 합의로 종료’, ‘주의 경고’ 순으로, 100~299인은 ‘경징계’와 ‘인사조치’ 순으로, 300인 이상은 ‘증징계’와 ‘인사조치’의 비율이 높았다.

〈표 III-89〉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결과(복수응답)

(단위: 건)

| 구분                                 | 당사자<br>합의로<br>종료 | 인사<br>조치<br>(배치<br>전환 등) | 주의<br>경고 | 경징계<br>(견책,<br>감봉 등) | 중징계<br>(정직,<br>해고 등) | 경찰 등<br>고소고발<br>및<br>수사의뢰 | 재발<br>방지<br>교육 | 기타  | 합계     |
|------------------------------------|------------------|--------------------------|----------|----------------------|----------------------|---------------------------|----------------|-----|--------|
| 전 체                                | 1,545            | 1,725                    | 1,292    | 862                  | 1,493                | 369                       | 2,513          | 858 | 10,657 |
| 유형                                 |                  |                          |          |                      |                      |                           |                |     |        |
| 공공기관                               | 831              | 800                      | 547      | 434                  | 753                  | 279                       | 1,731          | 640 | 6,015  |
| 민간사업체                              | 714              | 925                      | 745      | 429                  | 740                  | 90                        | 782            | 218 | 4,643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        |
| 국가기관                               | 51               | 305                      | 49       | 138                  | 187                  | 14                        | 218            | 15  | 977    |
| 지방자치단체                             | 26               | 142                      | 15       | 85                   | 75                   | 23                        | 127            | 26  | 519    |
| 초/중/고                              | 467              | 224                      | 349      | 53                   | 130                  | 160                       | 694            | 118 | 2,195  |
| 대학                                 | 286              | 128                      | 134      | 157                  | 362                  | 83                        | 693            | 481 | 2,324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        |
| 제조업                                | 194              | 263                      | 183      | 141                  | 317                  | 12                        | 301            | 76  | 1,487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251              | 148                      | 89       | 32                   | 78                   | 8                         | 168            | -   | 774    |
| 개인서비스업                             | 59               | 16                       | 110      | 39                   | 74                   | -                         | 111            | -   | 409    |
| 유통서비스업                             | 107              | 67                       | 10       | 39                   | 53                   | 7                         | 7              | -   | 290    |
| 사업서비스업                             | 80               | 179                      | 80       | 46                   | 29                   | 63                        | 16             | -   | 493    |
| 사회서비스업                             | 23               | 252                      | 272      | 131                  | 189                  | -                         | 177            | 141 | 1,185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        |
| 30~99인                             | 657              | 457                      | 534      | 54                   | 298                  | 63                        | 419            | 124 | 2,606  |
| 100~299인                           | 23               | 158                      | 107      | 186                  | 121                  | -                         | 140            | 73  | 808    |
| 300~499인                           | 17               | 64                       | 27       | 63                   | 134                  | -                         | 64             | -   | 369    |
| 500인 이상                            | 16               | 246                      | 77       | 126                  | 187                  | 27                        | 159            | 20  | 858    |

주: 1) 백분율은 252명(응답인원)의 1,038건(응답건수)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결과는 복수응답 분석을 실시함.

〈표 Ⅲ-90〉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결과(복수응답)(비율)

(단위: %)

| 구분                                 | 당사자<br>합의로<br>종료 | 인사조치<br>(배치<br>전환 등) | 주의<br>경고 | 경징계<br>(견책,<br>감봉 등) | 중징계<br>(정직,<br>해고 등) | 경찰 등<br>고소고발<br>및<br>수사의뢰 | 재발<br>방지<br>교육 | 기타   | 합계    |
|------------------------------------|------------------|----------------------|----------|----------------------|----------------------|---------------------------|----------------|------|-------|
| 전 체                                | 14.5             | 16.2                 | 12.1     | 8.1                  | 14.0                 | 3.5                       | 23.6           | 8.1  | 100.0 |
| 유형                                 |                  |                      |          |                      |                      |                           |                |      |       |
| 공공기관                               | 13.8             | 13.3                 | 9.1      | 7.2                  | 12.5                 | 4.6                       | 28.8           | 10.6 | 100.0 |
| 민간사업체                              | 15.4             | 19.9                 | 16.0     | 9.2                  | 15.9                 | 1.9                       | 16.8           | 4.7  | 100.0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       |
| 국가기관                               | 5.2              | 31.2                 | 5.0      | 14.1                 | 19.1                 | 1.4                       | 22.3           | 1.6  | 100.0 |
| 지방자치단체                             | 5.1              | 27.4                 | 2.9      | 16.4                 | 14.4                 | 4.4                       | 24.4           | 5.0  | 100.0 |
| 초/중/고                              | 21.3             | 10.2                 | 15.9     | 2.4                  | 5.9                  | 7.3                       | 31.6           | 5.4  | 100.0 |
| 대학                                 | 12.3             | 5.5                  | 5.8      | 6.8                  | 15.6                 | 3.6                       | 29.8           | 20.7 | 100.0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       |
| 제조업                                | 13.1             | 17.7                 | 12.3     | 9.5                  | 21.3                 | 0.8                       | 20.2           | 5.1  | 100.0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32.3             | 19.1                 | 11.5     | 4.2                  | 10.1                 | 1.1                       | 21.7           | -    | 100.0 |
| 개인서비스업                             | 14.5             | 3.8                  | 26.9     | 9.6                  | 18.0                 | -                         | 27.2           | -    | 100.0 |
| 유통서비스업                             | 36.9             | 23.2                 | 3.4      | 13.5                 | 18.1                 | 2.4                       | 2.5            | -    | 100.0 |
| 사업서비스업                             | 16.1             | 36.3                 | 16.1     | 9.3                  | 5.9                  | 12.8                      | 3.3            | -    | 100.0 |
| 사회서비스업                             | 2.0              | 21.2                 | 22.9     | 11.0                 | 16.0                 |                           | 14.9           | 11.9 | 100.0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       |
| 30~99인                             | 25.2             | 17.5                 | 20.5     | 2.1                  | 11.4                 | 2.4                       | 16.1           | 4.8  | 100.0 |
| 100~299인                           | 2.9              | 19.5                 | 13.2     | 23.1                 | 15.0                 | -                         | 17.3           | 9.1  | 100.0 |
| 300~499인                           | 4.6              | 17.4                 | 7.3      | 17.1                 | 36.4                 | -                         | 17.3           | -    | 100.0 |
| 500인 이상                            | 1.9              | 28.6                 | 9.0      | 14.6                 | 21.8                 | 3.2                       | 18.5           | 2.4  | 100.0 |

주: 1) 백분율은 252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결과는 복수응답 분석을 실시함.  
 3) 〈표 Ⅲ-91〉의 합계 건수 대비 항목별 건수의 비율을 산출함.

## 2)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조치 결과

지난 3년 동안 1건 이상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복수응답)에 대해 파악하였다. 그 결과,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건수는 총 6,818건이었다. 다만 조사표상에 제시된 응답 보기 4개 항목 이외에 기타 응답이 22.8%로 나타나 실제 현장에서는 보다 다양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본 조사결과는 기재된 응답 보기를 중심으로 기술함을 밝힌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많이 이뤄진 조치는 ‘근무장소 변경’(1,855건, 27.2%)이었다. 그다음은 ‘의료, 상담지원’ 1,310건(19.2%), ‘배치전환’ 1,266건(18.6%), ‘유급휴가’ 829건(12.2%) 순이었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공공기관의 경우 총 3,310건으로, ‘근무장소 변경’이 889건(26.9%)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 상담지원’ 839건(25.3%), ‘배치전환’ 540건(16.3%), ‘유급휴가’ 346건(10.5%) 순이었다. 민간사업체의 경우 총 3,508건으로, ‘근무장소 변경’이 966건(27.5%)으로 가장 많았고, ‘배치전환’ 726건(20.7%), ‘유급휴가’ 483건(13.8%), ‘의료, 상담지원’ 472건(13.4%) 순이었다.

공공기관 유형별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근무장소 변경’과 ‘배치전환’ 순이었고, 초/중/고와 대학은 ‘의료, 상담지원’과 ‘근무장소 변경’ 순이었다. 민간사업체의 경우 30~99인, 100~299인은 ‘근무장소 변경’과 ‘배치전환’이 많았고, 300인 이상은 ‘근무장소 변경’과 ‘유급휴가’가 많았다.

〈표 Ⅲ-91〉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조치결과(복수응답)

(단위: 건)

| 구분                                 | 근무장소<br>변경 | 배치전환  | 유급휴가 | 의료,<br>상담지원 | 기타    | 합계    |
|------------------------------------|------------|-------|------|-------------|-------|-------|
| 전 체                                | 1,855      | 1,266 | 829  | 1,310       | 1,558 | 6,818 |
| 유형                                 |            |       |      |             |       |       |
| 공공기관                               | 889        | 540   | 346  | 839         | 696   | 3,310 |
| 민간사업체                              | 966        | 726   | 483  | 472         | 862   | 3,508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국가기관                               | 263        | 231   | 80   | 110         | 66    | 749   |
| 지방자치단체                             | 125        | 123   | 50   | 45          | 45    | 389   |
| 초/중/고                              | 254        | 35    | 201  | 349         | 289   | 1,129 |
| 대학                                 | 246        | 152   | 15   | 334         | 296   | 1,042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제조업                                | 194        | 193   | 69   | 134         | 301   | 892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155        | 104   | 44   | 158         | 72    | 533   |
| 개인서비스업                             | 84         | 36    | 144  | 21          | 97    | 382   |
| 유통서비스업                             | 67         | 67    | 50   | 21          | 141   | 345   |
| 사업서비스업                             | 141        | 63    | 29   | 16          | 96    | 346   |
| 사회서비스업                             | 325        | 263   | 147  | 121         | 154   | 1,010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30~99인                             | 523        | 457   | 151  | 185         | 588   | 1,904 |
| 100~299인                           | 165        | 117   | 76   | 63          | 137   | 558   |
| 300~499인                           | 100        | 39    | 79   | 44          | 85    | 347   |
| 500인 이상                            | 178        | 114   | 176  | 179         | 52    | 699   |

주: 1) 조치건수는 252명(응답인원)을 661건(응답건수)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조치결과는 복수응답 분석을 실시함.



〈표 III-92〉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조치결과(복수응답)(비율)

(단위: %)

| 구분                                 | 근무장소<br>변경 | 배치전환 | 유급휴가 | 의료,<br>상담지원 | 기타   | 합계    |
|------------------------------------|------------|------|------|-------------|------|-------|
| <b>전 체</b>                         | 27.2       | 18.6 | 12.2 | 19.2        | 22.8 | 100.0 |
| <b>유형</b>                          |            |      |      |             |      |       |
| 공공기관                               | 26.9       | 16.3 | 10.5 | 25.3        | 21.0 | 100.0 |
| 민간사업체                              | 27.5       | 20.7 | 13.8 | 13.4        | 24.6 | 100.0 |
| <b>공공기관 유형</b>                     |            |      |      |             |      |       |
| 국가기관                               | 35.1       | 30.8 | 10.7 | 14.7        | 8.7  | 100.0 |
| 지방자치단체                             | 32.2       | 31.6 | 13.0 | 11.7        | 11.6 | 100.0 |
| 초/중/고                              | 22.5       | 3.1  | 17.8 | 30.9        | 25.6 | 100.0 |
| 대학                                 | 23.6       | 14.5 | 1.4  | 32.1        | 28.4 | 100.0 |
| <b>민간사업체 업종</b>                    |            |      |      |             |      |       |
| 제조업                                | 21.8       | 21.7 | 7.7  | 15.0        | 33.8 | 100.0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29.1       | 19.5 | 8.2  | 29.7        | 13.5 | 100.0 |
| 개인서비스업                             | 22.0       | 9.3  | 37.6 | 5.6         | 25.4 | 100.0 |
| 유통서비스업                             | 19.5       | 19.3 | 14.4 | 6.1         | 40.7 | 100.0 |
| 사업서비스업                             | 40.7       | 18.3 | 8.4  | 4.7         | 27.9 | 100.0 |
| 사회서비스업                             | 32.2       | 26.0 | 14.6 | 12.0        | 15.3 | 100.0 |
| <b>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b>                |            |      |      |             |      |       |
| 30~99인                             | 27.5       | 24.0 | 7.9  | 9.7         | 30.9 | 100.0 |
| 100~299인                           | 29.6       | 21.0 | 13.6 | 11.3        | 24.6 | 100.0 |
| 300~499인                           | 28.7       | 11.2 | 22.9 | 12.8        | 24.4 | 100.0 |
| 500인 이상                            | 25.4       | 16.2 | 25.2 | 25.7        | 7.5  | 100.0 |

주: 1) 조치건수는 252명(응답인원)을 661건(응답건수)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조치결과는 복수응답 분석을 실시함.  
 3) 〈표 III-92〉의 합계 건수 대비 항목별 건수의 비율을 산출함.

## 마.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 수립 현황

### 1)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 수립 여부

지난 3년(2018년 8월~2021년 7월) 동안 1건 이상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76.3%였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보면 공공기관은 68.1%였고, 민간사업체는 82.2%로 공공기관이 14.1%p 낮았다. 공공기관 유형 중에서는 초/중/고가 78.4%로 대책을 수립, 추진했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국가기관(58.0%), 지방자치단체(60.1%), 대학(56.2%)은 60%를 밑돌았다. 민간사업체 업종에서는 개인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에서 수립 및 추진했다는 응답이 60%대로 다른 업종에 비해 낮았다.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에서는 30~99인의 경우 다른 규모에 비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및 추진했다는 비율이 낮았다.

〈표 III-93〉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 수립 추진 여부

(단위: %)

| 구분                             | 있다   | 없다   | 잘 모르겠다 | 모름/무응답 | 계     |
|--------------------------------|------|------|--------|--------|-------|
| <b>전 체</b>                     | 76.3 | 15.0 | 6.0    | 2.6    | 100.0 |
| <b>유형</b>                      |      |      |        |        |       |
| 공공기관                           | 68.1 | 17.5 | 14.4   | -      | 100.0 |
| 민간사업체                          | 82.2 | 13.3 | -      | 4.5    | 100.0 |
| <b>공공기관 유형</b>                 |      |      |        |        |       |
| 국가기관                           | 58.0 | 17.9 | 24.1   | -      | 100.0 |
| 지방자치단체                         | 60.1 | 10.4 | 29.5   | -      | 100.0 |
| 초/중/고                          | 78.4 | 20.0 | 1.6    | -      | 100.0 |
| 대학                             | 56.2 | 13.9 | 29.9   | -      | 100.0 |
| <b>민간사업체 업종</b>                |      |      |        |        |       |
| 제조업                            | 90.5 | 9.5  | -      | -      | 100.0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96.3 | 3.7  | -      | -      | 100.0 |
| 개인서비스업                         | 69.1 | -    | -      | 30.9   | 100.0 |
| 유통서비스업                         | 61.9 | 38.1 | -      | -      | 100.0 |
| 사업서비스업                         | 63.1 | 25.7 | -      | 11.2   | 100.0 |
| 사회서비스업                         | 85.7 | 12.9 | -      | 1.4    | 100.0 |
| <b>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b>            |      |      |        |        |       |
| 30~99인                         | 77.6 | 18.5 | -      | 3.9    | 100.0 |
| 100~299인                       | 90.8 | -    | -      | 9.2    | 100.0 |
| 300~499인                       | 82.4 | 13.3 | -      | 4.3    | 100.0 |
| 500인 이상                        | 95.9 | 4.1  | -      | -      | 100.0 |

주: 1) 백분율은 224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민간사업체 업종,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변수는 모든 범주가 사례 수 30 이하로 해석에 유의함.

## 2)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 추진 내용

지난 3년 동안 1건 이상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여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했다고 응답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을 어떤 내용으로 추진했는지 (복수응답) 질문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76.8%)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교육’(59.2%), ‘2차 피해방지 모니터링’(37.2%), ‘성희롱·성폭력방지 관련 규정 정비’(31.1%),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가이드 마련 및 캠페인 실시’(25.1%) 순이었다.

소속기관 유형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교육’의 비중이 높았고, 민간사업체는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비중이 높았다. 공공기관 유형별로 국가기관, 초/중/고, 대학에서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교육’의 비중이 높았던 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규정 정비’ 비중이 높았다. 민간사업체 업종에서는 대체로 전체 응답 경향과 비슷한 가운데, 유통서비스업의 경우 ‘2차 피해 방지 모니터링’, 개인 서비스업의 경우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교육’,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규정 정비’의 비중이 높았다.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에 따른 응답 경향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표 Ⅲ-94〉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 추진 내용(복수응답)

(단위: %)

| 구분                                 | 특별<br>성희롱·<br>성폭력<br>예방<br>교육 | 행위<br>자에<br>대한<br>재발<br>방지<br>교육 | 성희롱·<br>성폭력<br>실태<br>조사<br>실시 | 성희롱·<br>성폭력<br>방지<br>관련<br>규정<br>정비 | 2차<br>피해<br>방지<br>모니<br>터링 | 조직<br>문화<br>개선을<br>위한<br>가이드<br>마련<br>및<br>캠페인<br>실시 | 성희롱·<br>성폭력<br>근절<br>위한<br>대책<br>기구<br>구성 | 성희롱·<br>성폭력<br>특별<br>신고<br>기간<br>운영 | 성차별<br>적인<br>인사<br>관리<br>등<br>조직내<br>관련<br>제도<br>및<br>구조<br>특별<br>점검 | 기타   |
|------------------------------------|-------------------------------|----------------------------------|-------------------------------|-------------------------------------|----------------------------|------------------------------------------------------|-------------------------------------------|-------------------------------------|----------------------------------------------------------------------|------|
| 전 체                                | 76.8                          | 59.2                             | 22.8                          | 31.1                                | 37.2                       | 25.1                                                 | 8.2                                       | 0.7                                 | 6.5                                                                  | 5.8  |
| 유형                                 |                               |                                  |                               |                                     |                            |                                                      |                                           |                                     |                                                                      |      |
| 공공기관                               | 78.2                          | 72.5                             | 37.8                          | 41.1                                | 54.7                       | 25.5                                                 | 11.3                                      | 2.0                                 | 5.7                                                                  | 4.7  |
| 민간사업체                              | 76.0                          | 51.3                             | 13.9                          | 25.1                                | 26.8                       | 24.9                                                 | 6.4                                       | -                                   | 7.0                                                                  | 6.5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                                                                      |      |
| 국가기관                               | 100.0                         | 60.9                             | 51.5                          | 45.0                                | 54.6                       | 45.6                                                 | 9.3                                       | 10.7                                | 18.1                                                                 | 3.7  |
| 지방자치단체                             | 69.3                          | 69.3                             | 52.0                          | 74.0                                | 43.7                       | 37.0                                                 | 41.0                                      | -                                   | -                                                                    | 4.3  |
| 초/중/고                              | 78.5                          | 79.7                             | 31.5                          | 33.5                                | 60.2                       | 18.3                                                 | 9.2                                       | -                                   | 4.0                                                                  | 4.0  |
| 대학                                 | 55.4                          | 61.2                             | 36.7                          | 46.5                                | 40.2                       | 21.6                                                 | 5.3                                       | -                                   | -                                                                    | 8.5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                                                                      |      |
| 제조업                                | 72.2                          | 59.2                             | 1.9                           | 6.7                                 | 16.2                       | 24.8                                                 | -                                         | -                                   | 5.0                                                                  | 1.9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98.8                          | 45.9                             | 5.7                           | 5.6                                 | 10.0                       | 37.1                                                 | 3.2                                       | -                                   | 1.2                                                                  | -    |
| 개인서비스업                             | 52.1                          | 70.7                             | 26.0                          | 10.4                                | 51.9                       | 26.0                                                 | -                                         | -                                   | -                                                                    | -    |
| 유통서비스업                             | 47.8                          | 64.3                             | 35.5                          | 8.3                                 | 80.3                       | 36.0                                                 | 28.3                                      | -                                   | 8.1                                                                  | 27.4 |
| 사업서비스업                             | 100.0                         | 32.8                             | 40.8                          | 74.9                                | 16.5                       | 7.6                                                  | 26.4                                      | -                                   | 40.8                                                                 | 7.6  |
| 사회서비스업                             | 71.1                          | 43.7                             | 16.0                          | 46.0                                | 37.6                       | 23.6                                                 | 5.6                                       | -                                   | -                                                                    | 13.2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                                                                      |      |
| 30~99인                             | 76.3                          | 47.8                             | 11.2                          | 21.1                                | 22.6                       | 23.7                                                 | 5.0                                       | -                                   | 6.2                                                                  | 5.9  |
| 100~299인                           | 69.4                          | 52.0                             | 19.2                          | 36.1                                | 27.9                       | 17.9                                                 | 14.9                                      | -                                   | 9.1                                                                  | 7.1  |
| 300~499인                           | 95.7                          | 63.5                             | 21.0                          | 46.6                                | 29.7                       | 38.3                                                 | 5.1                                       | -                                   | 10.1                                                                 | 10.1 |
| 500인 이상                            | 71.5                          | 59.4                             | 14.0                          | 11.9                                | 44.5                       | 32.7                                                 | -                                         | -                                   | 4.9                                                                  | 5.8  |

주: 1) 백분율은 162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 추진 내용은 복수응답 분석을 실시함.  
 3) 공공기관 유형, 민간사업체 업종,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변수는 모든 범주가 사례 수 30 이하로 해석에 유의함.

### 3)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의 여성가족부 제출 여부

공공기관에 한해, 지난 3년 동안 1건 이상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여성가족부에 제출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7.8%였다.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60.6%로 가장 높았고, 국가기관 42.4%, 초/중/고 36.7%, 대학 23.8%였다.

〈표 III-95〉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의 여성가족부 제출 여부(공공기관만 해당)

(단위: %)

| 구분        | 있다   | 없다   | 잘 모르겠다 | 계     |
|-----------|------|------|--------|-------|
| 전 체(공공기관) | 37.8 | 45.7 | 16.5   | 100.0 |
| 공공기관 유형   |      |      |        |       |
| 국가기관      | 42.4 | 18.7 | 38.9   | 100.0 |
| 지방자치단체    | 60.6 | 17.7 | 21.7   | 100.0 |
| 초/중/고     | 36.7 | 56.2 | 7.2    | 100.0 |
| 대학        | 23.8 | 54.7 | 21.5   | 100.0 |

주: 1) 백분율은 92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공공기관 유형은 모든 범주가 사례 수 30 이하로 해석에 유의함.

## 바. 2차 피해 대응 현황

### 1) 2차 피해 목격 경험

지난 3년(2018년 8월~2021년 7월) 동안 1건 이상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성희롱 피해자(조력자, 신고자 포함)의 2차 피해를 전해 듣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이때 2차 피해는 20개 문항<sup>14)</sup>으로 구성하였다. 20개 문항 중 하나라도 경험이 있었던 비율은 26.5%였다.

소속기관 기관유형별로는 공공기관 23.5%, 민간사업체 28.6%였다.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초/중/고(24.1%)와 대학(24.4%)에서 다소 높았다. 민간사업체에서는 제조업(31.9%),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34.5%), 개인서비스업(43.9%)에서 민간사업체의 전체 응답을 상회하였다.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에서는 30~99인 규모의 민간사업체에서 32.9%로 가장 높았다.

14) 〈표 III-22〉 결과표에 수록된 조사 문항을 토대로 하였다.

〈표 Ⅲ-96〉 2차 피해 목격 경험 여부

(단위: %)

| 구분                                 | 있다   | 없다   | 계     |
|------------------------------------|------|------|-------|
| <b>전 체</b>                         | 26.5 | 73.5 | 100.0 |
| <b>유형</b>                          |      |      |       |
| 공공기관                               | 23.5 | 76.5 | 100.0 |
| 민간사업체                              | 28.6 | 71.4 | 100.0 |
| <b>공공기관 유형</b>                     |      |      |       |
| 국가기관                               | 22.3 | 77.7 | 100.0 |
| 지방자치단체                             | 21.1 | 78.9 | 100.0 |
| 초/중/고                              | 24.1 | 75.9 | 100.0 |
| 대학                                 | 24.4 | 75.6 | 100.0 |
| <b>민간사업체 업종</b>                    |      |      |       |
| 제조업                                | 31.9 | 68.1 | 100.0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34.5 | 65.5 | 100.0 |
| 개인서비스업                             | 43.9 | 56.1 | 100.0 |
| 유통서비스업                             | 22.5 | 77.5 | 100.0 |
| 사업서비스업                             | 26.3 | 73.7 | 100.0 |
| 사회서비스업                             | 20.0 | 80.0 | 100.0 |
| <b>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b>                |      |      |       |
| 30~99인                             | 32.9 | 67.1 | 100.0 |
| 100~299인                           | 24.0 | 76.0 | 100.0 |
| 300~499인                           | 5.0  | 95.0 | 100.0 |
| 500인 이상                            | 30.3 | 69.7 | 100.0 |

주: 1) 백분율은 224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민간사업체 업종,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변수는 모든 범주가 사례 수 30 이하로 해석에 유의함.

## 2) 회사/기관에서의 2차 피해 대처

2차 피해를 전해 듣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기관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질문한 결과,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27.7%였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공공기관은 4.4%, 민간사업체는 41.4%로, 이는 공공기관의 경우 업무담당자가 2차 피해를 전해 듣거나 목격한 경우 대부분 기관에서 대처한 반면 민간사업체는 기관에서 대처했다는 응답이 60% 정도로 민간사업체의 2차 피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을 볼 수 있다.

기관에서 대처한 내용(복수응답)을 살펴보면, ‘2차 피해 행위에 대한 조사 실시’(27.4%)

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2차 피해에 대한 전직원교육 실시’(25.9%), ‘2차 피해실태 파악’(25.1%), ‘2차 피해 행위자에 대한 분리 조치’(23.8%) 순이었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공공기관은 ‘2차 피해에 대한 전직원교육 실시’(44.5%)와 ‘2차 피해 행위에 대한 조사 실시’(40.4%)가 많았고, 민간사업체는 ‘2차 피해 실태 파악’(24.5%)과 ‘2차 피해의 행위자에 대한 분리 조치’(23.1%)가 많았다. ‘2차 피해 중단에 대한 사업주/기관장의 입장 발표(선언)’는 민간사업체와 공공기관 어디에서도 없었다.

〈표 III-97〉 회사/기관의 2차 피해 대처 방법(복수응답)

(단위: %)

| 구분                                 | 특별한<br>조치가<br>없었음 | 2차 피해<br>중단에<br>대한<br>사업주/<br>기관장의<br>입장<br>발표<br>(선언) | 2차<br>피해에<br>대한<br>전직원<br>교육<br>실시 | 2차<br>피해<br>실태<br>파악 | 2차<br>피해자에<br>대한<br>보호<br>조치<br>(휴가 등)<br>시행 | 2차<br>피해<br>행위에<br>대한<br>조사<br>실시 | 2차<br>피해의<br>행위자<br>(가해자)<br>에<br>대한<br>징계<br>등 조치 | 2차<br>피해의<br>행위자에<br>대한<br>분리<br>조치 | 2차<br>피해<br>방지를<br>위한<br>매뉴얼,<br>지침<br>마련<br>안내 | 기타   |
|------------------------------------|-------------------|--------------------------------------------------------|------------------------------------|----------------------|----------------------------------------------|-----------------------------------|----------------------------------------------------|-------------------------------------|-------------------------------------------------|------|
| 전 체                                | 27.7              | -                                                      | 25.9                               | 25.1                 | 15.6                                         | 27.4                              | 7.3                                                | 23.8                                | 13.6                                            | 2.0  |
| 유형                                 |                   |                                                        |                                    |                      |                                              |                                   |                                                    |                                     |                                                 |      |
| 공공기관                               | 4.4               | -                                                      | 44.5                               | 26.1                 | 30.2                                         | 40.4                              | 6.8                                                | 24.9                                | 25.8                                            | 5.4  |
| 민간사업체                              | 41.4              | -                                                      | 15.0                               | 24.5                 | 7.0                                          | 19.7                              | 7.6                                                | 23.1                                | 6.4                                             | -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                                                 |      |
| 국가기관                               | -                 | -                                                      | 68.9                               | 19.7                 | 19.3                                         | 24.3                              | -                                                  | 14.7                                | 48.1                                            | 5.1  |
| 지방자치단체                             | 50.7              | -                                                      | 37.0                               | 24.7                 | 24.7                                         | 24.7                              | 24.7                                               | 12.3                                | 37.0                                            | -    |
| 초/중/고                              | -                 | -                                                      | 46.7                               | 23.4                 | 46.7                                         | 46.7                              | 6.5                                                | 29.9                                | 6.5                                             | -    |
| 대학                                 | -                 | -                                                      | 15.3                               | 40.8                 | -                                            | 48.1                              | 6.6                                                | 28.5                                | 48.1                                            | 22.6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                                                 |      |
| 제조업                                | 29.8              | -                                                      | 40.5                               | 64.9                 | 5.3                                          | 10.7                              | 5.3                                                | 35.1                                | 5.3                                             | -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22.9              | -                                                      | -                                  | 3.4                  | -                                            | 77.1                              | 3.4                                                | -                                   | 3.4                                             | -    |
| 개인서비스업                             | 100.0             | -                                                      | -                                  | -                    | -                                            | -                                 | -                                                  | -                                   | -                                               | -    |
| 유통서비스업                             | 77.9              | -                                                      | -                                  | -                    | 22.1                                         | 22.1                              | 22.1                                               | -                                   | 22.1                                            | -    |
| 사업서비스업                             | 79.5              | -                                                      | -                                  | -                    | -                                            | -                                 | -                                                  | -                                   | 20.5                                            | -    |
| 사회서비스업                             | -                 | -                                                      | -                                  | -                    | 21.4                                         | 21.4                              | 22.1                                               | 56.5                                | -                                               | -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                                                 |      |
| 30~99인                             | 41.8              | -                                                      | 15.1                               | 30.2                 | -                                            | 14.1                              | -                                                  | 29.0                                | -                                               | -    |
| 100~299인                           | 48.0              | -                                                      | -                                  | -                    | 25.5                                         | 25.5                              | 26.4                                               | -                                   | -                                               | -    |
| 300~499인                           | 100.0             | -                                                      | -                                  | -                    | -                                            | -                                 | -                                                  | -                                   | -                                               | -    |
| 500인 이상                            | 21.7              | -                                                      | 36.8                               | 22.9                 | 29.5                                         | 52.4                              | 33.9                                               | 18.4                                | 59.8                                            | -    |

주: 1) 백분율은 51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회사/기관에서의 2차 피해 대처 방법은 복수응답 분석을 실시함.

3) 공공기관 유형, 민간사업체 업종,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변수는 모든 범주가 사례 수 30 이하로 해석에 유의함.

###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매뉴얼, 규정 등 마련 여부

지난 3년간의 성희롱 사건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질문하였다.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매뉴얼, 규정 등이 마련되었거나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54.1%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절반 수준에 그쳤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공공기관은 73.1%, 민간사업체는 50.6%였다. 공공기관 유형 중 국가기관과 초/중/고에서 2차 피해 방지 매뉴얼이나 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다는 비율이 70%를 상회한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49.8%로 절반 수준을 밑돌았다. 민간사업체 업종 중 제조업에서 상대적으로 매뉴얼과 규정 마련이 미비했고,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에서는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매뉴얼이나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비율이 낮았다.

〈표 Ⅲ-98〉 회사/기관의 2차 피해 방지 위한 매뉴얼, 규정 등 존재 유무

(단위: %)

| 구분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잘 모르겠다 | 계     |
|--------------------------------|------|--------|--------|-------|
| <b>전 체</b>                     | 54.1 | 25.8   | 20.1   | 100.0 |
| <b>유형</b>                      |      |        |        |       |
| 공공기관                           | 73.1 | 9.1    | 17.8   | 100.0 |
| 민간사업체                          | 50.6 | 28.9   | 20.6   | 100.0 |
| <b>공공기관 유형</b>                 |      |        |        |       |
| 국가기관                           | 71.8 | 3.7    | 24.6   | 100.0 |
| 지방자치단체                         | 49.8 | 5.6    | 44.6   | 100.0 |
| 초/중/고                          | 76.7 | 11.1   | 12.1   | 100.0 |
| 대학                             | 62.3 | 12.5   | 25.2   | 100.0 |
| <b>민간사업체 업종</b>                |      |        |        |       |
| 제조업                            | 43.6 | 29.9   | 26.5   | 100.0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49.3 | 33.6   | 17.1   | 100.0 |
| 개인서비스업                         | 51.1 | 31.0   | 17.9   | 100.0 |
| 유통서비스업                         | 57.5 | 25.7   | 16.8   | 100.0 |
| 사업서비스업                         | 53.5 | 29.3   | 17.1   | 100.0 |
| 사회서비스업                         | 54.8 | 25.0   | 20.3   | 100.0 |
| <b>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b>            |      |        |        |       |
| 30~99인                         | 48.9 | 30.4   | 20.7   | 100.0 |
| 100~299인                       | 54.9 | 24.6   | 20.5   | 100.0 |
| 300~499인                       | 62.2 | 16.4   | 21.4   | 100.0 |
| 500인 이상                        | 65.9 | 21.0   | 13.0   | 100.0 |

주: 백분율은 2,512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 사. 성희롱 예방교육 운영 현황

### 1)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및 실시 횟수, 미실시 이유

지난 한 해(2020.1.1.~2020.12.31.) 동안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는지 질문한 결과, 92.3%가 '1회 이상 실시했다'고 응답하였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1회 이상 실시했다'는 비율은 공공기관 99.0%, 민간사업체 91.1%였다. 2018년 실태조사에서는 '1회 이상 실시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4%였고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은 99.7%, 민간사업체는 94.6%였다.

민간사업체 업종 중 제조업,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유통 서비스업 등에서 10%를 상회하여 '실시한 적이 없다'로 나와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에서 '실시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30~99인 9.6%, 100~299인 6.5%, 300인~499인 2.9%, 500인 이상 2.8%로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높아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예방교육 실시 횟수는 1회가 74.3%였고 2회는 18.3%, 3회 이상은 7.5%였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공공기관의 경우 1회 52.8%, 2회 32.5%, 3회 이상 14.7%였고 민간사업체의 경우 1회 78.6%, 2회 15.4%, 3회 이상 6.0%로, 공공기관 중 절반 정도는 2회 이상 운영하는데 반해, 민간사업체는 2/3 정도가 1회 운영하고 있었다. 민간사업체 업종 중 제조업, 개인서비스업에서 1회 실시한 비율이 높았고,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1회가 많았다.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해서'라는 응답이 71.5%였다.

〈표 Ⅲ-99〉 지난 1년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단위: %)

| 구분                                 | 실시한 적이<br>없다 | 1회 이상<br>실시하였다 | 모름/무응답 | 계     |
|------------------------------------|--------------|----------------|--------|-------|
| 전 체                                | 7.6          | 92.3           | 0.1    | 100.0 |
| 유형                                 |              |                |        |       |
| 공공기관                               | 1.0          | 99.0           | -      | 100.0 |
| 민간사업체                              | 8.8          | 91.1           | 0.1    | 100.0 |
| 공공기관 유형                            |              |                |        |       |
| 국가기관                               | 0.8          | 99.2           | -      | 100.0 |
| 지방자치단체                             | 7.0          | 93.0           | -      | 100.0 |
| 초/중/고                              | 0.5          | 99.5           | -      | 100.0 |
| 대학                                 | 1.3          | 98.7           | -      | 100.0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제조업                                | 10.7         | 89.0           | 0.3    | 100.0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11.2         | 88.8           | -      | 100.0 |
| 개인서비스업                             | 5.5          | 94.5           | -      | 100.0 |
| 유통서비스업                             | 11.1         | 88.9           | -      | 100.0 |
| 사업서비스업                             | 6.6          | 93.4           | -      | 100.0 |
| 사회서비스업                             | 7.4          | 92.6           | 0.0    | 100.0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30~99인                             | 9.6          | 90.3           | 0.1    | 100.0 |
| 100~299인                           | 6.5          | 93.5           | -      | 100.0 |
| 300~499인                           | 2.9          | 96.7           | 0.4    | 100.0 |
| 500인 이상                            | 2.8          | 97.2           | -      | 100.0 |

주: 백분율은 2,512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표 III-100〉 지난 1년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횟수

(단위: %, 회)

| 구분                                 | 1회   | 2회   | 3회 이상 | 평균   |
|------------------------------------|------|------|-------|------|
| <b>전 체</b>                         | 74.3 | 18.3 | 7.5   | 1.49 |
| <b>유형</b>                          |      |      |       |      |
| 공공기관                               | 52.8 | 32.5 | 14.7  | 1.99 |
| 민간사업체                              | 78.6 | 15.4 | 6.0   | 1.39 |
| <b>공공기관 유형</b>                     |      |      |       |      |
| 국가기관                               | 44.4 | 32.4 | 23.2  | 2.63 |
| 지방자치단체                             | 56.3 | 26.7 | 17.0  | 1.89 |
| 초/중/고                              | 55.5 | 33.7 | 10.9  | 1.65 |
| 대학                                 | 51.4 | 24.3 | 24.3  | 3.79 |
| <b>민간사업체 업종</b>                    |      |      |       |      |
| 제조업                                | 81.6 | 14.3 | 4.2   | 1.28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79.0 | 17.2 | 3.8   | 1.28 |
| 개인서비스업                             | 85.1 | 10.3 | 4.6   | 1.26 |
| 유통서비스업                             | 74.2 | 17.2 | 8.6   | 1.51 |
| 사업서비스업                             | 71.6 | 19.6 | 8.7   | 1.56 |
| 사회서비스업                             | 79.0 | 14.2 | 6.8   | 1.43 |
| <b>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b>                |      |      |       |      |
| 30~99인                             | 79.9 | 13.4 | 6.7   | 1.39 |
| 100~299인                           | 77.5 | 19.7 | 2.8   | 1.31 |
| 300~499인                           | 64.5 | 25.4 | 10.0  | 1.53 |
| 500인 이상                            | 57.1 | 39.2 | 3.8   | 1.66 |

주: 백분율은 2,363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표 Ⅲ-101〉 지난 1년간 성희롱 예방교육 미 실시 이유

(단위: %)

| 구분                                 | 예산이<br>부족<br>해서 | 교육<br>참석률이<br>저조해서 | 사업주<br>/기관장,<br>직원 등이<br>예방교육<br>실시<br>자체에<br>비협조적<br>이어서 | 교육을<br>실시할<br>시간이<br>부족<br>해서 | 교육의<br>필요성을<br>느끼지<br>못해서 | 코로나<br>19로<br>인해 | 기타   | 계     |
|------------------------------------|-----------------|--------------------|-----------------------------------------------------------|-------------------------------|---------------------------|------------------|------|-------|
| 전 체                                | 3.1             | 3.6                | 2.2                                                       | 7.4                           | 7.9                       | 71.5             | 4.2  | 100.0 |
| 유형                                 |                 |                    |                                                           |                               |                           |                  |      |       |
| 공공기관                               | -               | -                  | -                                                         | 8.4                           | -                         | 87.6             | 3.9  | 100.0 |
| 민간사업체                              | 3.2             | 3.7                | 2.3                                                       | 7.4                           | 8.1                       | 71.1             | 4.2  | 100.0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
| 국가기관                               | -               | -                  | -                                                         | -                             | -                         | 100.0            |      | 100.0 |
| 지방자치단체                             | -               | -                  | -                                                         | 17.9                          | -                         | 73.7             | 8.4  | 100.0 |
| 초/중/고                              | -               | -                  | -                                                         | -                             | -                         | 100.0            | -    | 100.0 |
| 대학                                 | -               | -                  | -                                                         | -                             | -                         | 100.0            | -    | 100.0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
| 제조업                                | 4.2             | 5.7                | 2.8                                                       | 8.5                           | 8.5                       | 68.8             | 1.3  | 100.0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               | -                  | 9.4                                                       | -                             | 12.7                      | 77.9             | -    | 100.0 |
| 개인서비스업                             | -               | -                  | -                                                         | -                             | 11.5                      | 88.5             | -    | 100.0 |
| 유통서비스업                             | 2.8             | 12.4               | -                                                         | 8.5                           | 12.3                      | 64.0             | -    | 100.0 |
| 사업서비스업                             | -               | -                  | -                                                         | 14.0                          | -                         | 71.3             | 14.7 | 100.0 |
| 사회서비스업                             | 7.9             | -                  | -                                                         | 7.9                           | 5.0                       | 69.0             | 10.2 | 100.0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
| 30~99인                             | 2.3             | 4.2                | 2.3                                                       | 7.7                           | 8.5                       | 70.7             | 4.3  | 100.0 |
| 100~299인                           | 9.9             | -                  | 2.4                                                       | 6.1                           | 4.8                       | 72.9             | 3.8  | 100.0 |
| 300~499인                           | -               | 18.1               | -                                                         | -                             | 17.7                      | 64.2             | -    | 100.0 |
| 500인 이상                            | -               | -                  | -                                                         | -                             | -                         | 100.0            | -    | 100.0 |

주: 1) 백분율은 147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유형, 공공기관 유형, 민간사업체 업종,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변수는 대부분의 범주가 사례 수 30 이하로 해석에 유의함.

## 2) 금융사 및 보험사 등 외부업체로부터의 무료강좌 안내 여부

성희롱 예방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한 경우 금융사 또는 보험사 등 외부업체로부터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좌에 대한 안내(홍보)를 받은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39.2%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2018년 실태조사에서는 51.2%였는데, 2021년에는 39.2%로 12.0%p 감소하였다.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은 18.7%, 민간사업체는 43.4%로 민간사업체에서 24.7%p 높았다. 2018년에도 공공기관 29.8%, 민간사업체 55.0%로 민간사업체가 높았지만, 2021년에는 각각 11.1%p, 11.6%p 감소하였고 민간사업체의 감소율이 약간 더 높았다.

공공기관 유형에서 보면 국가기관(28.5%)과 대학(24.9%)에서 높았고, 민간사업체 업종에서는 제조업(51.9%)에서 높았다.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에서 규모가 큰 경우 상대적으로 무료강좌 안내(홍보)받은 비율이 적었다.

〈표 III-102〉 (금융사, 보험사 등의)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좌 안내 여부

(단위: %)

| 구분                                 | 있다   | 없다   | 계     |
|------------------------------------|------|------|-------|
| 전 체                                | 39.2 | 60.8 | 100.0 |
| 유형                                 |      |      |       |
| 공공기관                               | 18.7 | 81.3 | 100.0 |
| 민간사업체                              | 43.4 | 56.6 | 100.0 |
| 공공기관 유형                            |      |      |       |
| 국가기관                               | 28.5 | 71.5 | 100.0 |
| 지방자치단체                             | 19.4 | 80.6 | 100.0 |
| 초/중/고                              | 14.8 | 85.2 | 100.0 |
| 대학                                 | 24.9 | 75.1 | 100.0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제조업                                | 51.9 | 48.1 | 100.0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38.1 | 61.9 | 100.0 |
| 개인서비스업                             | 32.0 | 68.0 | 100.0 |
| 유통서비스업                             | 34.5 | 65.5 | 100.0 |
| 사업서비스업                             | 45.1 | 54.9 | 100.0 |
| 사회서비스업                             | 43.4 | 56.6 | 100.0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30~99인                             | 43.8 | 56.2 | 100.0 |
| 100~299인                           | 42.2 | 57.8 | 100.0 |
| 300~499인                           | 44.8 | 55.2 | 100.0 |
| 500인 이상                            | 35.6 | 64.4 | 100.0 |

주: 백분율은 2,363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 3)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방식 및 교육방법

지난 1년간(2020.1.1.~2020.12.31.)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의 진행방식을 조사한 결과, ‘교육시간을 따로 지정해서 예방교육 내용으로만 진행했다’는 응답이 79.4%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다음은 ‘교육시간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자료를 배포하여 개인적으로 보게 함’ 8.9%, ‘교육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직원 조회나 회의 등에서 관련 내용을 간략히 언급함’ 5.5%, ‘교육시간을 따로 지정해서 금융 및 보험상품 등의 홍보와 함께 진행함’ 2.2% 순이었다. 2018년 실태조사에서 ‘교육시간을 따로 지정해서 예방교육 내용으로만 진행했다’는 응답이 83.6%였는데 2021년에는 79.4%로 4.2%p 감소하였고, ‘교육시간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자료를 배포하여 개인적으로 보게 함’은 2018년에 4.3%였는데 2021년에는 8.9%로 증가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별도 시간을 확보해 교육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의 영향으로 보인다. ‘교육시간을 따로 지정해서 금융 및 보험상품 등의 홍보와 함께 진행함’의 경우가 2018년 6.7%였는데 2021년에는 2.2%로 감소하였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보면, 공공기관은 ‘교육시간을 따로 지정해서 예방교육 내용으로만 진행했다’는 비율이 65.1%, 민간사업체는 82.2%였다. 공공기관은 ‘기타’ 응답이 22.7%로 나왔다. 2018년과의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동일하게 응답 보기를 구성했는데, 응답 보기 이외의 방식으로 진행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중/고(24.9%)와 국가기관(20.3%)에서 기타 응답이 높았다.

〈표 III-103〉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 방식

(단위: %)

| 구분                             | 교육 시간을 따로 지정해서 예방교육 내용으로만 진행함 | 교육 시간을 따로 지정해서 금융 및 보험 상품 등의 홍보와 함께 진행함 | 교육 시간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직원 조회나 회의 등에서 관련 내용을 간략히 언급함 | 교육 시간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자료를 배포하여 개인적으로 보게 함 | 기타   | 모름/무응답 | 계     |
|--------------------------------|-------------------------------|-----------------------------------------|------------------------------------------------|----------------------------------------|------|--------|-------|
| 전 체                            | 79.4                          | 2.2                                     | 5.5                                            | 8.9                                    | 4.0  | 0.1    | 100.0 |
| 유형                             |                               |                                         |                                                |                                        |      |        |       |
| 공공기관                           | 65.1                          | 0.1                                     | 4.2                                            | 7.9                                    | 22.7 | -      | 100.0 |
| 민간사업체                          | 82.2                          | 2.6                                     | 5.8                                            | 9.1                                    | 0.3  | 0.1    | 100.0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 국가기관                           | 65.0                          | 0.3                                     | 4.3                                            | 10.2                                   | 20.3 | -      | 100.0 |
| 지방자치단체                         | 70.3                          | -                                       | 5.9                                            | 11.6                                   | 12.2 | -      | 100.0 |
| 초/중/고                          | 64.3                          | -                                       | 4.2                                            | 6.6                                    | 24.9 | -      | 100.0 |
| 대학                             | 70.3                          | 0.9                                     | 0.9                                            | 9.0                                    | 19.0 | -      | 100.0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 제조업                            | 80.9                          | 3.7                                     | 6.2                                            | 8.8                                    | 0.1  | 0.3    | 100.0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79.3                          | 4.4                                     | 6.2                                            | 10.1                                   | -    | -      | 100.0 |
| 개인서비스업                         | 75.7                          | 4.0                                     | 9.8                                            | 10.6                                   | -    | -      | 100.0 |
| 유통서비스업                         | 82.9                          | 1.1                                     | 5.4                                            | 10.0                                   | 0.7  | -      | 100.0 |
| 사업서비스업                         | 80.3                          | 2.0                                     | 6.0                                            | 11.2                                   | 0.4  | -      | 100.0 |
| 사회서비스업                         | 90.7                          | 0.4                                     | 2.7                                            | 5.7                                    | 0.4  | -      | 100.0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 30~99인                         | 81.1                          | 3.0                                     | 6.4                                            | 9.1                                    | 0.3  | 0.1    | 100.0 |
| 100~299인                       | 85.6                          | 1.1                                     | 3.3                                            | 9.9                                    | -    | -      | 100.0 |
| 300~499인                       | 89.8                          | 1.1                                     | 5.1                                            | 4.0                                    | -    | -      | 100.0 |
| 500인 이상                        | 88.2                          | -                                       | 3.0                                            | 8.1                                    | 0.8  | -      | 100.0 |

주: 백분율은 2,363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교육시간을 따로 지정해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한 경우 교육방법은 무엇이었는지 (복수응답)를 조사하였다. ‘개인별 온라인 교육’이 56.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대면 방식의 집합교육(강사 진행)’(30.2%), ‘강의가 아닌, 비디오 시청 등의 시청각 교육’ (15.4%), ‘비대면 방식의 쌍방향 실시간 온라인 교육’(13.4%) 순이었다. 2018년 실태 조사에서 ‘집합교육’이 76.4%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개인별 온라인 교육 22.6%, 강의가 아닌 비디오시청 등의 시청각 교육 9.2% 순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교육방법이 크게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 모두 ‘개인별 온라인 교육’과 ‘대면방식의 집합교육(강사 진행)’ 순으로 다수를 이뤘다. 공공기관에서 ‘개인별 온라인 교육’ 62.7%, ‘대면방식의 집합교육(강사 진행)’ 49.0%였고, 민간사업체는 ‘개인별 온라인 교육’ 55.3%, ‘대면방식의 집합교육(강사 진행)’ 27.2%로, 공공기관에서 ‘개인별 온라인 교육’과 ‘대면방식의 집합교육(강사 진행)’ 비중이 더 높았다. 민간사업체 업종에서는 전반적으로 ‘개인별 온라인 교육’의 비중이 월등히 높고, 그다음은 ‘대면방식의 집합교육(강사 진행)’ 순으로 이뤄졌는데, 제조업의 경우 ‘대면방식의 집합교육(강사 진행)’(38.0%), ‘개인별 온라인 교육’(36.6%) 순이었다. 민간사업체의 경우 ‘개인별 온라인 교육’ 비중이 높았지만,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대면방식의 집합교육’ 비율이 높고 ‘개인별 온라인 교육’ 비율이 낮았다.



〈표 III-104〉 (교육시간을 따로 지정한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복수응답)

(단위: %)

| 구분                                 | 대면방식의<br>집합 교육<br>(강사 진행) | 대면방식의<br>세미나<br>혹은<br>워크숍 교육<br>(강사 진행) | 비대면<br>방식의<br>쌍방향<br>실시간<br>온라인<br>교육 | 개인별<br>온라인<br>교육<br>(e-learning<br>교육) | 강의가<br>아닌,<br>비디오<br>시청 등의<br>시청각<br>교육 | 기타  |
|------------------------------------|---------------------------|-----------------------------------------|---------------------------------------|----------------------------------------|-----------------------------------------|-----|
| 전 체                                | 30.2                      | 1.8                                     | 13.4                                  | 56.3                                   | 15.4                                    | 2.7 |
| 유형                                 |                           |                                         |                                       |                                        |                                         |     |
| 공공기관                               | 49.0                      | 2.4                                     | 24.7                                  | 62.7                                   | 14.6                                    | 3.7 |
| 민간사업체                              | 27.2                      | 1.7                                     | 11.6                                  | 55.3                                   | 15.6                                    | 2.5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국가기관                               | 44.6                      | 3.4                                     | 32.9                                  | 65.7                                   | 24.9                                    | 2.7 |
| 지방자치단체                             | 42.5                      | 3.7                                     | 21.6                                  | 67.9                                   | 16.0                                    | 0.6 |
| 초/중/고                              | 51.1                      | 1.7                                     | 22.0                                  | 60.6                                   | 10.2                                    | 4.4 |
| 대학                                 | 50.9                      | 5.6                                     | 27.8                                  | 70.6                                   | 24.0                                    | 3.8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제조업                                | 38.0                      | 1.3                                     | 10.1                                  | 36.6                                   | 22.2                                    | 5.3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23.1                      | 1.1                                     | 11.5                                  | 66.9                                   | 9.1                                     | 0.4 |
| 개인서비스업                             | 18.0                      | 0.3                                     | 3.6                                   | 69.1                                   | 16.7                                    | 0.6 |
| 유통서비스업                             | 21.4                      | 0.4                                     | 10.4                                  | 64.7                                   | 14.8                                    | 2.6 |
| 사업서비스업                             | 24.0                      | 1.4                                     | 15.5                                  | 62.7                                   | 14.6                                    | 1.6 |
| 사회서비스업                             | 24.9                      | 4.2                                     | 14.9                                  | 56.5                                   | 10.7                                    | 1.5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30~99인                             | 29.2                      | 1.7                                     | 11.1                                  | 51.5                                   | 16.2                                    | 2.5 |
| 100~299인                           | 20.8                      | 1.5                                     | 12.7                                  | 66.2                                   | 14.3                                    | 2.5 |
| 300~499인                           | 23.1                      | 3.2                                     | 15.6                                  | 64.6                                   | 13.2                                    | -   |
| 500인 이상                            | 15.2                      | 2.0                                     | 15.9                                  | 80.7                                   | 8.4                                     | 3.9 |

주: 1) 백분율은 1,859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교육시간을 따로 지정한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은 복수응답 분석을 실시함.

#### 4) 성희롱 예방 교육시 직급 구분 여부

지난 1년간(2020.1.1.~2020.12.31.) 성희롱 예방교육을 사업주/기관장, 관리자(임원 등), 직원 등으로 구분/분리해서 진행했는지 질문한 결과, 35.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직급별 맞춤형 교육이 강조되고 있으나 70% 정도가 직급별로 분리해서 교육을 진행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공공기관은 26.1%, 민간사업체는 36.9%였다. 공공기관 유형 중 초/중/고에서 사업주/기관장, 관리자(임원 등), 직원 등으로 구분/분리해 교육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분리/구분된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에서는 규모가 작을수록 사업주/기관장, 관리자(임원 등), 직원 등으로 구분/분리해 교육을 운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Ⅲ-105〉 성희롱 예방교육 시 직급 구분 여부

(단위: %)

| 구분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계     |
|--------------------------------|------|--------|-------|
| <b>전 체</b>                     | 35.4 | 64.6   | 100.0 |
| <b>유형</b>                      |      |        |       |
| 공공기관                           | 26.1 | 73.9   | 100.0 |
| 민간사업체                          | 36.9 | 63.1   | 100.0 |
| <b>공공기관 유형</b>                 |      |        |       |
| 국가기관                           | 49.3 | 50.7   | 100.0 |
| 지방자치단체                         | 54.4 | 45.6   | 100.0 |
| 초/중/고                          | 14.4 | 85.6   | 100.0 |
| 대학                             | 35.0 | 65.0   | 100.0 |
| <b>민간사업체 업종</b>                |      |        |       |
| 제조업                            | 30.7 | 69.3   | 100.0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44.2 | 55.8   | 100.0 |
| 개인서비스업                         | 47.8 | 52.2   | 100.0 |
| 유통서비스업                         | 47.0 | 53.0   | 100.0 |
| 사업서비스업                         | 36.9 | 63.1   | 100.0 |
| 사회서비스업                         | 31.6 | 68.4   | 100.0 |
| <b>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b>            |      |        |       |
| 30~99인                         | 35.2 | 64.8   | 100.0 |
| 100~299인                       | 41.5 | 58.5   | 100.0 |
| 300~499인                       | 44.0 | 56.0   | 100.0 |
| 500인 이상                        | 49.0 | 51.0   | 100.0 |

주: 백분율은 1,859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 5) 기관장/사업주의 교육 참여 및 운영 의지

### 가) 기관장/사업주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 여부

지난 1년간(2020.1.1.~2020.12.31.) 실시한 성희롱 예방교육에 사업주/기관장이 참여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88.0%가 참여하였다고 응답하였다. 2018년 실태조사에서는 74.5%였는데 13.5%p 증가하였다. 이는 특히 민간사업체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이 증가한 것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소속기관 유형에서 보면 성희롱 예방교육에 사업주/기관장이 참여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공공기관은 98.7%, 민간사업체는 86.3%였다. 2018년 조사에서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의 교육 참여율은 96.4%, 민간사업체의 경우 사업주의 교육 참여율은 70.5%였다. 2018년과 2021년 모두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체보다 높았지만, 민간사업체는 2018년 대비 2021년에 15.8%p가 증가하였다.

한편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에서는 30~99인 86.3%, 100~299인 87.4%, 300~499인 81.2%, 500인 이상 82.6%로 종사자 규모가 큰 민간사업체 사업주의 참여도를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Ⅲ-106〉 사업주/기관장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 여부

(단위: %)

| 구분                                 | 참석하였다 | 참석하지 않았다 | 모름/무응답 | 계     |
|------------------------------------|-------|----------|--------|-------|
| 전 체                                | 88.0  | 11.9     | 0.1    | 100.0 |
| 유형                                 |       |          |        |       |
| 공공기관                               | 98.7  | 1.3      | -      | 100.0 |
| 민간사업체                              | 86.3  | 13.6     | 0.1    | 100.0 |
| 공공기관 유형                            |       |          |        |       |
| 국가기관                               | 97.2  | 2.8      | -      | 100.0 |
| 지방자치단체                             | 98.5  | 1.5      | -      | 100.0 |
| 초/중/고                              | 99.3  | 0.7      | -      | 100.0 |
| 대학                                 | 99.0  | 1.0      | -      | 100.0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제조업                                | 83.2  | 16.4     | 0.4    | 100.0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82.7  | 17.3     | -      | 100.0 |
| 개인서비스업                             | 84.0  | 16.0     | -      | 100.0 |
| 유통서비스업                             | 86.8  | 13.2     | -      | 100.0 |
| 사업서비스업                             | 87.8  | 12.2     | -      | 100.0 |
| 사회서비스업                             | 91.4  | 8.6      | -      | 100.0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30~99인                             | 86.3  | 13.5     | 0.2    | 100.0 |
| 100~299인                           | 87.4  | 12.6     | -      | 100.0 |
| 300~499인                           | 81.2  | 18.8     | -      | 100.0 |
| 500인 이상                            | 82.6  | 17.4     | -      | 100.0 |

주: 백분율은 1,859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 나) 기관장/사업주의 성희롱 예방교육 운영의지

사업주/기관장이 성희롱 예방교육 운영에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87.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공공기관은 기관장/사업주가 성희롱 예방교육 운영에 높은 관심과 의지를 갖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7.7%였고 민간사업체는 85.3%로, 12.4%p의 차이가 있었다. 공공기관 기관장에 비해 관심과 의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민간사업체 사업주의 관심과 의지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의지와 관심이 높았는데, 30~99인 84.7%, 100~299인 86.7%, 300~499인 89.4%, 500인 이상 91.1%로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이 낮은 것과는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

〈표 III-107〉 사업주/기관장의 성희롱 예방교육 운영에 관한 관심과 의지

(단위: %)

| 구분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모름/무응답 | 계     |
|--------------------------------|------|--------|--------|-------|
| <b>전 체</b>                     | 87.2 | 12.7   | 0.1    | 100.0 |
| <b>유형</b>                      |      |        |        |       |
| 공공기관                           | 97.7 | 2.3    | -      | 100.0 |
| 민간사업체                          | 85.3 | 14.6   | 0.1    | 100.0 |
| <b>공공기관 유형</b>                 |      |        |        |       |
| 국가기관                           | 97.2 | 2.8    | -      | 100.0 |
| 지방자치단체                         | 97.8 | 2.2    | -      | 100.0 |
| 초/중/고                          | 98.1 | 1.9    | -      | 100.0 |
| 대학                             | 94.9 | 5.1    | -      | 100.0 |
| <b>민간사업체 업종</b>                |      |        |        |       |
| 제조업                            | 84.4 | 15.3   | 0.3    | 100.0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83.8 | 16.2   | -      | 100.0 |
| 개인서비스업                         | 82.1 | 17.9   | -      | 100.0 |
| 유통서비스업                         | 83.3 | 16.7   | -      | 100.0 |
| 사업서비스업                         | 86.1 | 13.9   | -      | 100.0 |
| 사회서비스업                         | 89.5 | 10.5   | -      | 100.0 |
| <b>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b>            |      |        |        |       |
| 30~99인                         | 84.7 | 15.2   | 0.1    | 100.0 |
| 100~299인                       | 86.7 | 13.3   | -      | 100.0 |
| 300~499인                       | 89.4 | 10.6   | -      | 100.0 |
| 500인 이상                        | 91.1 | 8.9    | -      | 100.0 |

주: 1) 백분율은 2,512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그렇다’는 ①매우 그렇다+②약간 그렇다, ‘그렇지 않다’는 ③그렇지 않다+④전혀 그렇지 않대로 구성됨.

사업주/기관장이 전직원 혹은 업무담당자에게 성희롱 방지를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 운영 강화 등에 대해 직접 지시하거나 언급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63.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앞서 사업주/기관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87.2%가 '그렇다'고 응답한 것과 연결해 보면 24.0%p 낮았다. 사업주/기관장의 성희롱 방지에 대한 관심과 의지는 있었으나 실제 지시나 언급 등으로 구체화 되지는 않았음을 시사한다.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 67.2%, 민간사업체 62.5%였는데, 사업주/기관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지에서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 간에 10%p 정도의 차이를 보였던 것과 달리, 구체적인 업무상 지시와 언급에서는 그 차이가 4.7%p로 상대적으로 적어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 모두 기관장/사업주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국가기관이 83.7%로 가장 높았고, 지방자치단체(59.5%)와 대학(54.2%)이 낮았다.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에서는 30~99인 61.6%, 100~299인 65.3%, 300~499인 67.7%, 500인 이상 67.8%로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사업주/기관장이 전직원 혹은 업무담당자에게 성희롱 방지를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 운영 강화 등에 대해 직접 지시하거나 언급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낮았다.

〈표 III-108〉 사업주/기관장의 성희롱 예방교육 운영에 관한 지시(언급) 여부

(단위: %)

| 구분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잘 모르겠다 | 계     |
|------------------------------------|------|--------|--------|-------|
| <b>전 체</b>                         | 63.2 | 21.3   | 15.5   | 100.0 |
| <b>유형</b>                          |      |        |        |       |
| 공공기관                               | 67.2 | 17.5   | 15.3   | 100.0 |
| 민간사업체                              | 62.5 | 22.0   | 15.5   | 100.0 |
| <b>공공기관 유형</b>                     |      |        |        |       |
| 국가기관                               | 83.7 | 6.1    | 10.2   | 100.0 |
| 지방자치단체                             | 59.5 | 8.3    | 32.3   | 100.0 |
| 초/중/고                              | 63.3 | 22.2   | 14.5   | 100.0 |
| 대학                                 | 54.2 | 19.6   | 26.2   | 100.0 |
| <b>민간사업체 업종</b>                    |      |        |        |       |
| 제조업                                | 58.3 | 22.5   | 19.3   | 100.0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58.7 | 29.8   | 11.5   | 100.0 |
| 개인서비스업                             | 59.4 | 23.8   | 16.8   | 100.0 |
| 유통서비스업                             | 65.5 | 20.1   | 14.4   | 100.0 |
| 사업서비스업                             | 62.9 | 21.7   | 15.3   | 100.0 |
| 사회서비스업                             | 70.4 | 17.6   | 12.0   | 100.0 |
| <b>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b>                |      |        |        |       |
| 30~99인                             | 61.6 | 23.3   | 15.1   | 100.0 |
| 100~299인                           | 65.3 | 16.9   | 17.8   | 100.0 |
| 300~499인                           | 67.7 | 16.2   | 16.1   | 100.0 |
| 500인 이상                            | 67.8 | 22.4   | 9.8    | 100.0 |

주: 백분율은 2,512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 6) 직원의 교육 참여

지난 한 해(2020.1.1.~2020.12.31.) 동안 진행된 성희롱 예방교육의 직원 참여율은 94.2%로, 2018년 89.6%보다 4.6%p 증가하였다. 참여율 구간별로 보면 2018년에 90% 이상이 69.0%였는데 2021년에는 85.0%로 16.0%p 상승하였다. 공공기관에서는 11.4%p(2018년 73.5%, 2021년 84.9%), 민간사업체(2018년 68.1%, 2021년 85.1%)는 17.0%p 증가하였다. 이는 그간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를 의무화하고 지속적으로 참여율 제고를 위해 언론공표 등 환류와 관리를 강화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보면 공공기관은 94.5%, 민간사업체는 94.2%로 직원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에는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의 차이가 거의 없었고, 특히 민간사업체는 2018년 89.2%에서 5.0%p 증가하였다. 민간사업체 업종이나 종사자 규모에 따른 직원들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 차이는 거의 없었다.

〈표 Ⅲ-109〉 직원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

(단위: %)

| 구분                             | 50% 미만 | 50~70% 미만 | 70~90% 미만 | 90% 이상 | 모름/무응답 | 평균   |
|--------------------------------|--------|-----------|-----------|--------|--------|------|
| 전 체                            | 0.5    | 2.4       | 11.9      | 85.0   | 0.1    | 94.2 |
| 유형                             |        |           |           |        |        |      |
| 공공기관                           | 0.4    | 0.7       | 14.0      | 84.9   | -      | 94.5 |
| 민간사업체                          | 0.5    | 2.7       | 11.6      | 85.1   | 0.1    | 94.2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국가기관                           | 1.0    | -         | 17.5      | 81.5   | -      | 92.7 |
| 지방자치단체                         | 0.9    | 4.7       | 35.2      | 59.2   | -      | 87.3 |
| 초/중/고                          | -      | 0.2       | 8.4       | 91.4   | -      | 96.5 |
| 대학                             | 3.0    | 4.5       | 41.7      | 50.8   | -      | 86.0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제조업                            | 0.6    | 2.7       | 11.3      | 85.1   | 0.2    | 94.0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      | 1.9       | 15.3      | 82.5   | 0.4    | 92.8 |
| 개인서비스업                         | 0.1    | 1.8       | 12.4      | 85.7   | -      | 94.9 |
| 유통서비스업                         | -      | 4.4       | 8.0       | 87.6   | -      | 94.9 |
| 사업서비스업                         | 1.3    | 2.2       | 13.4      | 83.1   | -      | 93.6 |
| 사회서비스업                         | 0.5    | 2.9       | 10.2      | 86.2   | 0.2    | 94.8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30~99인                         | 0.6    | 2.6       | 11.3      | 85.5   | -      | 94.1 |
| 100~299인                       | 0.3    | 3.0       | 12.8      | 83.1   | 0.7    | 94.3 |
| 300~499인                       | 0.5    | 3.0       | 13.4      | 83.1   | -      | 93.6 |
| 500인 이상                        | -      | 0.9       | 9.0       | 90.1   | -      | 96.0 |

주: 백분율은 1,859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 아. 성희롱 업무 수행상 어려움

### 1) 성희롱 업무담당자로서의 어려움

성희롱 업무담당자로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10개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10개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예산 부족 (2) 업무처리를 위한 규정, 매뉴얼 미흡 (3) 사업주/기관장의 의지와 관심 부족 (4) 직장내 무관심과 비협조 (5) 성희롱 전담기구(없는 경우 업무담당자)의 낮은 영향력 (6) 업무담당자의 고용 불안정 (7) 다른 업무와 병행함에 따른 업무 과다 (8) 순환 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 (9) 업무담당자에 대한 불이익 (10) 민감한 업무에 대한 부담감.

각 문항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그렇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보면, 가장 많이 ‘그렇다’고 응답한 어려움은 ‘다른 업무와 병행함에 따른 업무 과다’(48.1%)였다. 그다음은 ‘민감한 업무에 대한 부담감’(42.4%), ‘순환 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39.8%), ‘성희롱 전담기구의 낮은 영향력’(32.3%), ‘업무처리를 위한 규정, 매뉴얼 미흡’(32.2%) 순이었다. 고용불안정, 업무담당자의 불이익 등도 어려움이었지만, 순환배치, 비전담 등으로 인해 성희롱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구조적인 요인과 이로 인한 전문성 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그리고 민감한 업무에 따른 부담감, 낮은 영향력,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과 매뉴얼 등 실무적인 차원의 어려움이 더 컸다.

본 조사에 응답한 업무담당자의 성희롱 방지업무 전담 여부에서 전담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6%에 불과하였고, 성희롱 방지업무 담당기간은 1년 미만 15.4%, 3년 미만 33.6%, 3~5년 미만 23.8%였다. 교육훈련 이수率は 70.3%가 이수했다고 응답했고 공공기관은 91.3%인데 반해 민간사업체는 66.4%였다<sup>15)</sup>. 업무담당 기간에 따라 10개 문항의 어려움에 대해 살펴본 결과, 3년 미만일 경우, 겸임일 경우, 교육훈련은 이수하지 않을 경우 모든 문항에서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공공기관에서는 ‘민감한 업무에 대한 부담감’(74.0%)과 ‘다른 업무와 병행함에 따른 업무 과다’(68.9%)이 월등히 높았고, 민간사업체는 전체 응답 경향과 유사한 가운데, ‘사업주/기관장의 의지와 관심 부족’에 대한 어려움이 두드러졌다.

공공기관 유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68.7%), ‘민감한 업무에 대한 부담감’(59.2%), ‘다른 업무와 병행함에 따른 업무 과다’(58.1%), 대학은 ‘민감한 업무에 대한 부담감’(73.1%), ‘다른 업무와 병행함에 따른 업무 과다’(68.0%), 초/중/고는 ‘다른 업무와 병행함에 따른 업무 과다’(76.2%), ‘민감한 업무에 대한 부담감’(82.3%) 등에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5) <표 III-2> 참조

민간사업체는 업종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아서 전체 응답 경향과 유사하였고,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에서는 500인 이상의 경우 ‘업무담당자의 고용 불안정’과 ‘민감한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제외한 대부분에서 어려움 정도가 다른 규모의 사업체보다 크게 낮았다.

〈표 Ⅲ-110〉 성희롱 업무의 어려움 - 계속

(단위: %)

| 구분                             | 예산 부족 | 업무처리를 위한 규정, 매뉴얼 미흡 | 사업주/관장의 의지와 관심 부족 | 직장 내 무관심과 비협조 | 성희롱 전담기구 (없는 경우 업무담당자)의 낮은 영향력 |
|--------------------------------|-------|---------------------|-------------------|---------------|--------------------------------|
| 전 체                            | 24.8  | 32.2                | 18.2              | 23.1          | 32.3                           |
| 유형                             |       |                     |                   |               |                                |
| 공공기관                           | 22.5  | 28.0                | 9.3               | 24.8          | 33.8                           |
| 민간사업체                          | 25.3  | 33.0                | 19.8              | 22.8          | 32.0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국가기관                           | 28.2  | 21.2                | 5.2               | 15.0          | 23.9                           |
| 지방자치단체                         | 22.9  | 37.2                | 9.4               | 31.9          | 42.0                           |
| 초/중/고                          | 18.7  | 29.3                | 10.1              | 27.1          | 35.5                           |
| 대학                             | 47.6  | 28.5                | 18.7              | 29.9          | 47.0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제조업                            | 25.1  | 39.7                | 21.5              | 24.8          | 36.5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20.7  | 27.3                | 17.5              | 17.1          | 31.8                           |
| 개인서비스업                         | 25.0  | 31.5                | 25.1              | 28.7          | 34.9                           |
| 유통서비스업                         | 29.9  | 35.2                | 17.4              | 22.4          | 31.9                           |
| 사업서비스업                         | 26.2  | 29.1                | 20.7              | 23.3          | 30.4                           |
| 사회서비스업                         | 24.7  | 29.2                | 15.9              | 19.3          | 25.2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30~99인                         | 26.3  | 35.1                | 20.7              | 22.8          | 32.8                           |
| 100~299인                       | 22.3  | 26.4                | 17.8              | 23.1          | 29.1                           |
| 300~499인                       | 21.7  | 23.7                | 14.2              | 26.0          | 30.5                           |
| 500인 이상                        | 14.7  | 15.6                | 8.2               | 16.9          | 23.2                           |
| 업무 담당기간                        |       |                     |                   |               |                                |
| 1년 미만                          | 28.7  | 34.4                | 14.8              | 23.6          | 30.9                           |
| 1~3년 미만                        | 30.2  | 41.4                | 27.1              | 32.7          | 41.1                           |
| 3~5년 미만                        | 19.4  | 27.4                | 15.5              | 18.4          | 27.8                           |
| 5~10년 미만                       | 21.9  | 24.7                | 12.2              | 16.9          | 29.2                           |
| 10년 이상                         | 17.8  | 21.5                | 9.4               | 11.4          | 18.3                           |
| 업무 전담여부                        |       |                     |                   |               |                                |
| 성희롱 업무 전담                      | 14.0  | 23.4                | 11.8              | 23.7          | 22.5                           |
| 다른 업무 겸임                       | 25.1  | 32.4                | 18.2              | 23.2          | 32.5                           |
| 모름/무응답                         | 25.4  | 52.2                | 47.4              | -             | 47.4                           |
| 교육훈련 이수 여부                     |       |                     |                   |               |                                |
| 이수 함                           | 20.8  | 25.9                | 14.0              | 19.7          | 28.6                           |
| 이수 하지않음                        | 34.5  | 47.3                | 28.2              | 31.4          | 40.9                           |

〈표 III-110〉 성희롱 업무의 어려움

(단위: %)

| 구분                                 | 업무담당자의<br>고용 불안정 | 다른 업무와<br>병행함에 따른<br>업무 과다 | 순환보직에<br>따른<br>전문성 부족 | 업무담당자에<br>대한 불이익 | 민감한 업무에<br>대한 부담감 |
|------------------------------------|------------------|----------------------------|-----------------------|------------------|-------------------|
| <b>전 체</b>                         | 14.0             | 48.1                       | 39.8                  | 12.8             | 42.4              |
| <b>유형</b>                          |                  |                            |                       |                  |                   |
| 공공기관                               | 11.5             | 68.9                       | 42.3                  | 9.4              | 74.0              |
| 민간사업체                              | 14.5             | 44.2                       | 39.3                  | 13.4             | 36.5              |
| <b>공공기관 유형</b>                     |                  |                            |                       |                  |                   |
| 국가기관                               | 6.1              | 51.1                       | 59.7                  | 5.3              | 54.5              |
| 지방자치단체                             | 5.3              | 58.1                       | 68.7                  | 8.5              | 59.2              |
| 초/중/고                              | 12.7             | 76.2                       | 33.3                  | 10.9             | 82.3              |
| 대학                                 | 30.5             | 68.0                       | 46.2                  | 9.0              | 73.1              |
| <b>민간사업체 업종</b>                    |                  |                            |                       |                  |                   |
| 제조업                                | 15.8             | 47.1                       | 38.0                  | 12.4             | 37.0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13.9             | 36.8                       | 37.9                  | 16.8             | 32.4              |
| 개인서비스업                             | 17.6             | 37.5                       | 34.7                  | 15.4             | 33.0              |
| 유통서비스업                             | 12.7             | 46.4                       | 40.8                  | 13.7             | 39.1              |
| 사업서비스업                             | 14.2             | 44.7                       | 42.9                  | 15.5             | 38.8              |
| 사회서비스업                             | 12.3             | 46.1                       | 40.4                  | 9.8              | 36.4              |
| <b>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b>                |                  |                            |                       |                  |                   |
| 30~99인                             | 15.4             | 44.6                       | 39.9                  | 13.5             | 36.3              |
| 100~299인                           | 11.4             | 43.8                       | 37.7                  | 13.4             | 37.4              |
| 300~499인                           | 8.3              | 43.7                       | 38.4                  | 12.3             | 37.3              |
| 500인 이상                            | 12.4             | 32.5                       | 31.4                  | 9.8              | 36.6              |
| <b>업무 담당기간</b>                     |                  |                            |                       |                  |                   |
| 1년 미만                              | 11.8             | 57.5                       | 49.3                  | 9.4              | 51.7              |
| 1~3년 미만                            | 18.4             | 48.8                       | 47.1                  | 16.1             | 47.5              |
| 3~5년 미만                            | 12.4             | 44.6                       | 31.4                  | 12.3             | 37.1              |
| 5~10년 미만                           | 11.2             | 50.1                       | 36.1                  | 12.2             | 36.8              |
| 10년 이상                             | 11.4             | 32.4                       | 24.7                  | 7.8              | 32.1              |
| <b>업무 전담여부</b>                     |                  |                            |                       |                  |                   |
| 성희롱 업무 전담                          | 14.0             | 32.3                       | 13.4                  | 15.1             | 36.2              |
| 다른 업무 겸임                           | 13.9             | 48.5                       | 40.5                  | 12.7             | 42.5              |
| 모름/무응답                             | 47.4             | 47.4                       | 26.8                  | 20.6             | 52.2              |
| <b>교육훈련 이수 여부</b>                  |                  |                            |                       |                  |                   |
| 이수 함                               | 12.1             | 46.5                       | 36.4                  | 12.5             | 42.8              |
| 이수 하지않음                            | 18.6             | 51.9                       | 48.0                  | 13.3             | 41.6              |

주: 1) 백분율은 2,512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그렇다' 응답을 기준으로 재구성함.

## 2) 성희롱 예방교육 운영에서의 어려움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시 어려움(1순위)에 대해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교육횟수, 교육시간 확보의 어려움’(23.3%)이었다. 그다음은 ‘다양한 교육방식 부족’(13.3%), ‘교육 장비, 시설(강의실, 교육장 등) 부족’(10.9%), ‘직원들의 관심과 참석률 저조’(8.5%), ‘표준 프로그램 부족’(7.3%), ‘사업주/기관장의 무관심과 낮은 참석률’(7.2%) 순이었다. ‘어려움이 없었다’는 응답도 18.9%였다. 2018년 실태조사에서도 ‘교육시간 부족’, ‘다양한 교육방식 부족’ 순으로 어려움이 지적된 바 있다.

소속기관 기관유형별로 공공기관에서는 ‘교육횟수, 교육시간 확보의 어려움’을, 민간 사업체에서는 ‘교육장비, 시설 부족’과 ‘사업주/기관장의 무관심과 낮은 참석률’을 상대적으로 많이 지적하였다.

공공기관 유형 중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횟수, 교육시간 확보의 어려움’과 ‘직원들의 관심과 참석률 저조’, 초/중/고에서는 ‘교육횟수, 교육시간 확보 어려움’이 특히 컸다.

〈표 Ⅲ-111〉 성희롱 예방교육 시 어려움(1순위) - 계속

(단위: %)

| 구분                             | 사업주/기관장의 무관심과 낮은 참석률 | 교육 횟수, 교육시간 확보 어려움 | 교육 장비, 시설 (강의실, 교육장 등) 부족 | 표준 프로그램 부족 | 다양한 교육방식 부족 | 강사 섭외의 어려움 | 직원들의 관심과 참석률 저조 |
|--------------------------------|----------------------|--------------------|---------------------------|------------|-------------|------------|-----------------|
| 전 체                            | 7.2                  | 23.3               | 10.9                      | 7.3        | 13.3        | 3.1        | 8.5             |
| 유형                             |                      |                    |                           |            |             |            |                 |
| 공공기관                           | 1.6                  | 35.2               | 2.0                       | 8.0        | 10.3        | 7.2        | 8.0             |
| 민간사업체                          | 8.3                  | 21.1               | 12.6                      | 7.1        | 13.9        | 2.4        | 8.6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 국가기관                           | 1.4                  | 22.1               | 1.6                       | 7.7        | 11.7        | 6.4        | 9.6             |
| 지방자치단체                         | 5.0                  | 33.5               | 1.2                       | 7.2        | 9.1         | 1.7        | 11.7            |
| 초/중/고                          | 1.1                  | 40.8               | 2.4                       | 8.1        | 10.2        | 8.3        | 6.7             |
| 대학                             | 4.3                  | 22.1               | -                         | 9.3        | 6.6         | 3.4        | 13.6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 제조업                            | 9.3                  | 23.7               | 13.5                      | 9.0        | 14.1        | 2.3        | 10.3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7.8                  | 21.3               | 12.7                      | 4.8        | 10.9        | 1.4        | 10.8            |
| 개인서비스업                         | 9.6                  | 21.1               | 11.7                      | 5.6        | 17.0        | 0.3        | 5.6             |
| 유통서비스업                         | 9.6                  | 24.1               | 10.1                      | 4.1        | 13.4        | 3.8        | 10.3            |
| 사업서비스업                         | 7.4                  | 17.0               | 12.0                      | 9.8        | 13.0        | 3.5        | 7.8             |
| 사회서비스업                         | 6.2                  | 19.0               | 13.5                      | 5.7        | 14.5        | 2.5        | 6.5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 30~99인                         | 8.2                  | 21.7               | 12.8                      | 7.1        | 13.8        | 2.2        | 8.2             |
| 100~299인                       | 8.6                  | 18.4               | 11.0                      | 7.0        | 14.9        | 2.9        | 10.6            |
| 300~499인                       | 6.5                  | 24.7               | 10.3                      | 8.6        | 12.0        | 2.9        | 6.3             |
| 500인 이상                        | 8.0                  | 16.7               | 18.4                      | 7.0        | 11.6        | 4.2        | 8.4             |

〈표 III-111〉 성희롱 예방교육 시 어려움(1순위)

(단위: %)

| 구분                                 | 관리자<br>급의<br>관심과<br>참석률<br>저조 | 예산<br>부족 | 비대면<br>교육<br>시스템<br>구비<br>미흡 | 기타  | 어려움이<br>없었다 | 모름/<br>무응답 | 계     |
|------------------------------------|-------------------------------|----------|------------------------------|-----|-------------|------------|-------|
| 전 체                                | 1.0                           | 1.9      | 3.6                          | 0.9 | 18.9        | 0.1        | 100.0 |
| 유형                                 |                               |          |                              |     |             |            |       |
| 공공기관                               | 0.9                           | 2.6      | 6.7                          | 3.1 | 14.5        | -          | 100.0 |
| 민간사업체                              | 1.0                           | 1.7      | 3.1                          | 0.5 | 19.7        | 0.1        | 100.0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 국가기관                               | 0.6                           | 4.0      | 7.7                          | 1.9 | 25.2        | -          | 100.0 |
| 지방자치단체                             | 2.6                           | 2.5      | 10.7                         | 1.0 | 13.8        | -          | 100.0 |
| 초/중/고                              | 0.6                           | 1.5      | 6.0                          | 3.3 | 11.0        | -          | 100.0 |
| 대학                                 | 4.6                           | 10.3     | 5.3                          | 7.5 | 12.9        | -          | 100.0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 제조업                                | 1.1                           | 0.8      | 3.3                          | 0.7 | 11.7        | 0.3        | 100.0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3.0                           | 2.8      | 2.8                          | -   | 21.6        | -          | 100.0 |
| 개인서비스업                             | 1.2                           | 0.9      | 3.9                          | 0.6 | 22.3        | -          | 100.0 |
| 유통서비스업                             | 0.7                           | 1.9      | 3.2                          | -   | 18.9        | -          | 100.0 |
| 사업서비스업                             | 0.9                           | 1.9      | 4.2                          | 0.1 | 22.5        | -          | 100.0 |
| 사회서비스업                             | 0.2                           | 2.8      | 1.5                          | 0.9 | 26.7        | -          | 100.0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 30~99인                             | 1.1                           | 1.6      | 2.9                          | 0.5 | 19.7        | 0.1        | 100.0 |
| 100~299인                           | 1.0                           | 2.2      | 3.5                          | -   | 19.9        | -          | 100.0 |
| 300~499인                           | -                             | 2.4      | 5.2                          | 1.9 | 19.2        | -          | 100.0 |
| 500인 이상                            | 2.5                           | 1.2      | 5.2                          | 0.6 | 16.2        | -          | 100.0 |

주: 백분율은 2,512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 3) 성희롱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어려움

성희롱 사건처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14개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14개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기관장의 공정한 사건처리에 대한 의지와 관심 부족 (2) 조사 등 사건처리 경험과 전문성 부족 (3) 회사/기관(상급자)의 부당한 압력 (4) 조직구성원의 무관심과 비협조(성희롱 사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조직 내 분위기) (5) 성희롱 행위자의 비협조적 태도 (6) 2차 피해 /가해 발생시 대처 역량 부족 (7) 피해자에 대한 보호(업무 및 공간 분리, 신변보호 등)의 어려움 (8) 성희롱 사건처리 관련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매뉴얼 부재 (9) 형식적인 관련 규정 및 절차(규정과 절차의 지연, 미준수 등),

(10)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등의 불이행 (11)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에 대한 의지/노력 미흡 (12) 고충상담 시 비밀유지, 2차 가해(피해) 등에 대한 부담감 (13) 피해자 지원과정에서의 감정적 소진 (14) 회사/기관(상급자)의 압력/압박을 거부했을 때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

각각의 문항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기준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 등 사건처리 경험과 전문성 부족’(40.5%)이 가장 컸다. 그다음은 ‘성희롱 사건처리 관련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매뉴얼 부재’(28.4%), ‘2차 피해/가해 발생 시 대처역량 부족’(25.9%), ‘형식적인 관련 규정 및 절차’(25.6%)와 ‘피해자 지원과정에서의 감정적 소진’(25.6%), ‘고충상담시 비밀유지, 2차 가해(피해) 등에 대한 부담감’(25.1%), ‘피해자에 대한 보호(업무 및 공간 분리, 신변보호 등)의 어려움’(24.6%) 순이었다. 조사 등 사건 처리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 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었지만, 전반적으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와 관련된 어려움의 비중이 컸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보면, 14개 문항 중 8개 문항에서 민간사업체보다 공공기관이 높았다. 공공기관의 경우 특히 절반 이상(55.9%)에서 ‘조사 등 사건처리 경험과 전문성 부족’이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그리고 ‘피해자 지원과정에서의 감정적 소진’(44.4%), ‘고충상담시 비밀유지, 2차 가해(피해) 등에 대한 부담감’(42.5%)이 40%를 상회하였고, ‘성희롱 사건처리 관련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매뉴얼 부재’, ‘2차 피해/가해 발생시 대처역량 부족’,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어려움’, ‘형식적인 관련 규정 및 절차’에서 어려움을 호소한 비율도 30%를 상회하였다. 민간사업체는 전체 응답 경향과 유사하였다.

민간사업체 업종에서는 전체 응답 경향과 유사했고,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성희롱 행위자의 비협조적 태도’와 ‘피해자 지원과정에서의 감정적 소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어려움 정도가 낮았다.

업무담당자의 업무담당 기간, 겸임여부, 교육훈련이수 여부에 따라 14개 문항의 어려움에 대해 살펴본 결과, 1~3년 미만일 경우 ‘조사 등 사건처리 경험과 전문성 부족’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문항에서 어려움이 컸고, 교육훈련 이수하지 않은 경우는 모든 문항에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업무와 겸임일 경우도 5개 문항을 제외한 9개 문항에서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표 III-112〉 성희롱 사건처리 과정의 어려움 - 계속

(단위: %)

| 구분                                 | 사업주/<br>기관장의<br>공정한<br>사건처리에<br>대한<br>의지와<br>관심 부족 | 조사 등<br>사건처리<br>경험과<br>전문성<br>부족 | 회사/기관<br>(상급자)의<br>부당한<br>압력 | 조직<br>구성원의<br>무관심과<br>비협조<br>(성희롱<br>사안을<br>대수롭지<br>않게 여기는<br>조직 내<br>분위기) | 성희롱<br>행위자의<br>비협조적<br>태도 | 2차<br>피해/가해<br>발생 시<br>대처 역량<br>부족 | 피해자에<br>대한 보호<br>(업무 및<br>공간 분리,<br>신변보호<br>등의<br>어려움 |
|------------------------------------|----------------------------------------------------|----------------------------------|------------------------------|----------------------------------------------------------------------------|---------------------------|------------------------------------|-------------------------------------------------------|
| 전 체                                | 13.0                                               | 40.5                             | 6.8                          | 18.0                                                                       | 15.2                      | 25.9                               | 24.6                                                  |
| 유형                                 |                                                    |                                  |                              |                                                                            |                           |                                    |                                                       |
| 공공기관                               | 7.6                                                | 55.9                             | 4.8                          | 13.9                                                                       | 13.1                      | 36.2                               | 33.7                                                  |
| 민간사업체                              | 14.0                                               | 37.6                             | 7.2                          | 18.8                                                                       | 15.6                      | 24.0                               | 22.9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 국가기관                               | 3.2                                                | 40.3                             | 2.7                          | 9.4                                                                        | 9.5                       | 23.6                               | 21.9                                                  |
| 지방자치단체                             | 8.4                                                | 41.4                             | 7.4                          | 17.2                                                                       | 18.4                      | 23.9                               | 32.8                                                  |
| 초/중/고                              | 8.7                                                | 63.1                             | 5.3                          | 15.0                                                                       | 12.9                      | 41.8                               | 37.5                                                  |
| 대학                                 | 12.0                                               | 52.7                             | 3.1                          | 14.5                                                                       | 25.8                      | 36.5                               | 38.2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 제조업                                | 14.5                                               | 37.4                             | 7.4                          | 18.8                                                                       | 15.7                      | 24.6                               | 21.8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12.2                                               | 36.2                             | 6.8                          | 14.6                                                                       | 11.7                      | 22.2                               | 21.4                                                  |
| 개인서비스업                             | 18.4                                               | 38.1                             | 10.1                         | 22.4                                                                       | 21.5                      | 22.6                               | 21.0                                                  |
| 유통서비스업                             | 15.4                                               | 36.7                             | 8.9                          | 22.9                                                                       | 15.4                      | 25.5                               | 24.6                                                  |
| 사업서비스업                             | 11.4                                               | 35.6                             | 5.7                          | 19.1                                                                       | 16.0                      | 23.7                               | 26.1                                                  |
| 사회서비스업                             | 13.2                                               | 40.7                             | 5.7                          | 16.5                                                                       | 14.2                      | 24.3                               | 22.6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 30~99인                             | 14.0                                               | 37.9                             | 7.8                          | 19.3                                                                       | 15.5                      | 24.7                               | 22.9                                                  |
| 100~299인                           | 15.0                                               | 37.5                             | 5.4                          | 16.9                                                                       | 15.8                      | 22.0                               | 24.0                                                  |
| 300~499인                           | 8.9                                                | 38.3                             | 5.1                          | 17.3                                                                       | 17.3                      | 21.6                               | 19.3                                                  |
| 500인 이상                            | 9.5                                                | 27.7                             | 2.2                          | 16.0                                                                       | 17.8                      | 16.8                               | 17.9                                                  |
| 업무 담당기간                            |                                                    |                                  |                              |                                                                            |                           |                                    |                                                       |
| 1년 미만                              | 12.1                                               | 49.4                             | 5.1                          | 14.1                                                                       | 13.1                      | 29.4                               | 27.6                                                  |
| 1~3년 미만                            | 23.4                                               | 47.7                             | 10.0                         | 27.5                                                                       | 24.5                      | 33.7                               | 31.9                                                  |
| 3~5년 미만                            | 7.0                                                | 31.5                             | 5.7                          | 14.9                                                                       | 11.6                      | 19.2                               | 19.8                                                  |
| 5~10년 미만                           | 5.2                                                | 35.6                             | 5.0                          | 12.4                                                                       | 9.0                       | 20.9                               | 19.5                                                  |
| 10년 이상                             | 7.9                                                | 31.3                             | 4.3                          | 8.8                                                                        | 6.7                       | 18.3                               | 14.8                                                  |
| 업무 전담여부                            |                                                    |                                  |                              |                                                                            |                           |                                    |                                                       |
| 성희롱 업무 전담                          | 16.2                                               | 24.4                             | 11.6                         | 17.4                                                                       | 13.4                      | 19.1                               | 24.1                                                  |
| 다른 업무 겸임                           | 12.8                                               | 40.9                             | 6.6                          | 18.1                                                                       | 15.3                      | 26.0                               | 24.7                                                  |
| 모름/무응답                             | 47.4                                               | 47.4                             | 20.6                         | 20.6                                                                       | 20.6                      | 47.4                               | -                                                     |
| 교육훈련 이수 여부                         |                                                    |                                  |                              |                                                                            |                           |                                    |                                                       |
| 이수함                                | 9.7                                                | 37.9                             | 6.3                          | 14.1                                                                       | 13.2                      | 23.7                               | 21.7                                                  |
| 이수하지않음                             | 20.9                                               | 46.6                             | 8.0                          | 27.4                                                                       | 20.2                      | 31.1                               | 31.5                                                  |

〈표 Ⅲ-112〉 성희롱 사건처리 과정의 어려움

(단위: %)

| 구분                                 | 성희롱 사건<br>처리 관련<br>구체적이고<br>실용적인<br>매뉴얼<br>부재 | 형식적인<br>관련 규정<br>및 절차<br>(규정과<br>절차의 지연,<br>미준수 등) | 성희롱<br>행위자에<br>대한 징계<br>등의<br>불이행 | 재발방지<br>대책 수립<br>및 이행에<br>대한 의지/<br>노력 미흡 | 고충상담 시<br>비밀유지,<br>2차 가해<br>(피해) 등에<br>대한<br>부담감 | 피해자<br>지원과정<br>에서의<br>감정적<br>소진 | 회사/기관<br>(상급자)의<br>압력/압박을<br>거부했을<br>때의<br>불이익에<br>대한 우려 |
|------------------------------------|-----------------------------------------------|----------------------------------------------------|-----------------------------------|-------------------------------------------|--------------------------------------------------|---------------------------------|----------------------------------------------------------|
| 전 체                                | 28.4                                          | 25.6                                               | 14.3                              | 16.0                                      | 25.1                                             | 25.6                            | 14.7                                                     |
| 유형                                 |                                               |                                                    |                                   |                                           |                                                  |                                 |                                                          |
| 공공기관                               | 36.5                                          | 30.3                                               | 12.3                              | 14.2                                      | 42.5                                             | 44.4                            | 22.1                                                     |
| 민간사업체                              | 26.9                                          | 24.7                                               | 14.7                              | 16.3                                      | 21.9                                             | 22.1                            | 13.3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 국가기관                               | 25.4                                          | 19.0                                               | 7.2                               | 10.0                                      | 29.2                                             | 26.6                            | 13.2                                                     |
| 지방자치단체                             | 30.4                                          | 28.7                                               | 12.2                              | 14.5                                      | 29.8                                             | 26.3                            | 21.0                                                     |
| 초/중/고                              | 41.4                                          | 34.9                                               | 14.2                              | 15.2                                      | 48.7                                             | 51.9                            | 25.6                                                     |
| 대학                                 | 29.8                                          | 21.5                                               | 9.4                               | 21.1                                      | 37.0                                             | 52.6                            | 17.3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 제조업                                | 31.1                                          | 26.7                                               | 16.3                              | 16.2                                      | 22.3                                             | 25.4                            | 14.4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23.3                                          | 24.4                                               | 14.2                              | 13.3                                      | 19.2                                             | 17.7                            | 9.2                                                      |
| 개인서비스업                             | 27.5                                          | 24.2                                               | 16.6                              | 21.0                                      | 18.7                                             | 19.2                            | 14.8                                                     |
| 유통서비스업                             | 29.1                                          | 27.1                                               | 14.9                              | 14.9                                      | 19.3                                             | 20.3                            | 14.2                                                     |
| 사업서비스업                             | 25.0                                          | 22.0                                               | 14.1                              | 19.4                                      | 26.0                                             | 25.2                            | 15.8                                                     |
| 사회서비스업                             | 22.9                                          | 23.5                                               | 12.0                              | 13.4                                      | 22.2                                             | 19.5                            | 10.5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 30~99인                             | 27.5                                          | 25.6                                               | 14.9                              | 16.4                                      | 22.2                                             | 21.5                            | 13.2                                                     |
| 100~299인                           | 25.8                                          | 22.6                                               | 14.3                              | 16.3                                      | 20.6                                             | 23.3                            | 13.7                                                     |
| 300~499인                           | 24.1                                          | 19.1                                               | 15.1                              | 14.2                                      | 23.4                                             | 29.9                            | 11.9                                                     |
| 500인 이상                            | 17.0                                          | 16.4                                               | 9.7                               | 15.7                                      | 18.0                                             | 28.8                            | 16.3                                                     |
| 업무 담당기간                            |                                               |                                                    |                                   |                                           |                                                  |                                 |                                                          |
| 1년 미만                              | 32.0                                          | 27.8                                               | 14.2                              | 13.7                                      | 29.9                                             | 29.1                            | 16.1                                                     |
| 1~3년 미만                            | 38.2                                          | 33.0                                               | 21.1                              | 25.6                                      | 30.3                                             | 30.1                            | 19.8                                                     |
| 3~5년 미만                            | 20.9                                          | 20.9                                               | 9.2                               | 11.5                                      | 20.6                                             | 22.3                            | 12.8                                                     |
| 5~10년 미만                           | 23.2                                          | 20.2                                               | 10.4                              | 10.8                                      | 22.0                                             | 21.5                            | 9.4                                                      |
| 10년 이상                             | 14.9                                          | 17.2                                               | 10.9                              | 5.6                                       | 14.8                                             | 20.0                            | 9.2                                                      |
| 업무 전담여부                            |                                               |                                                    |                                   |                                           |                                                  |                                 |                                                          |
| 성희롱 업무 전담                          | 14.2                                          | 17.7                                               | 14.4                              | 17.5                                      | 16.6                                             | 26.2                            | 14.5                                                     |
| 다른 업무 겸임                           | 28.7                                          | 25.7                                               | 14.2                              | 15.9                                      | 25.3                                             | 25.5                            | 14.6                                                     |
| 모름/무응답                             | 52.2                                          | 47.4                                               | 47.4                              | 26.8                                      | 47.4                                             | 52.2                            | 47.4                                                     |
| 교육훈련 이수 여부                         |                                               |                                                    |                                   |                                           |                                                  |                                 |                                                          |
| 이수함                                | 23.9                                          | 22.1                                               | 11.6                              | 12.7                                      | 24.3                                             | 24.7                            | 13.1                                                     |
| 이수하지않음                             | 39.1                                          | 34.0                                               | 21.0                              | 23.7                                      | 27.1                                             | 27.9                            | 18.5                                                     |

주: 1) 백분율은 2,512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그렇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재구성함.



## 자. 성희롱 방지 대책에 대한 인지도 및 정책 수요

### 1) 정부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대책 인지도

정부가 그간 추진해 온 5개의 주요 대책에 대해 인지도를 조사하였다.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는 신고센터 운영, (2) 성희롱·성폭력 사건발생기관의 공정한 사건처리에 대한 현장점검 및 행정지도 강화,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표준지침 마련 등 제도적 기반 강화, (4) 공공부문의 가해자 제재 및 처벌 강화,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주 책임 강화(위반시 과태료 상향 등), (5) 관리자 교육 확대 등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내용을 잘 알고 있다’의 응답을 기준으로 결과를 보면,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는 신고센터 운영’은 55.0%,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기관의 공정한 사건 처리에 대한 현장점검 및 행정지도 강화’는 58.4%,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표준지침 마련 등 제도적 기반 강화’는 52.7%, ‘공공부문의 가해자 제재 및 처벌 강화,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주 책임 강화’는 60.4%, ‘관리자 교육 확대 등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는 69.4%였다. 사업주의 책임 강화와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에 대한 인지도가 60%를 상회하여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전체적으로 50%를 상회하여 성희롱 업무담당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다소 인지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정부 대책은 성희롱 업무담당자의 업무와 직결되는바, 정부 정책에 대한 보다 충분한 이해와 숙지가 필요하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공공기관에서는 특히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는 신고센터 운영’(73.0%), ‘관리자 교육 확대 등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77.7%)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고, 민간사업체에서는 ‘공공부문의 가해자 제재 및 처벌 강화,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주 책임 강화’(60.8%)와 ‘관리자 교육 확대 등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67.9%)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5개의 주요 대책 모두에서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민간사업체 중에서는 30~99인 종사자 민간사업체 업무담당자의 인지도가 낮았다.

〈표 Ⅲ-113〉 정부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대책 인지도

(단위: %)

| 구분                             |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는 신고센터 운영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기관의 공정한 사건처리에 대한 현장점검 및 행정지도 강화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표준지침 마련 등 제도적 기반 강화 | 공공부문의 가해자 제재 및 처벌 강화,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주 책임 강화 | 관리자 교육 확대 등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
|--------------------------------|-------------------------------|-----------------------------------------------|----------------------------------|------------------------------------------------|-------------------------|
| 전 체                            | 55.0                          | 58.4                                          | 52.7                             | 60.4                                           | 69.4                    |
| 유형                             |                               |                                               |                                  |                                                |                         |
| 공공기관                           | 73.0                          | 55.3                                          | 58.5                             | 58.1                                           | 77.7                    |
| 민간사업체                          | 51.6                          | 59.0                                          | 51.6                             | 60.8                                           | 67.9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국가기관                           | 67.1                          | 55.6                                          | 59.4                             | 55.8                                           | 74.8                    |
| 지방자치단체                         | 47.3                          | 35.3                                          | 47.2                             | 39.7                                           | 62.9                    |
| 초/중/고                          | 78.0                          | 57.4                                          | 59.3                             | 61.1                                           | 80.5                    |
| 대학                             | 69.2                          | 53.8                                          | 59.1                             | 53.3                                           | 73.9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제조업                            | 44.0                          | 49.2                                          | 42.8                             | 52.8                                           | 60.1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49.8                          | 59.0                                          | 55.2                             | 59.3                                           | 65.4                    |
| 개인서비스업                         | 52.1                          | 58.2                                          | 49.9                             | 66.2                                           | 68.5                    |
| 유통서비스업                         | 51.0                          | 63.7                                          | 60.0                             | 63.9                                           | 70.6                    |
| 사업서비스업                         | 59.7                          | 66.4                                          | 57.7                             | 64.9                                           | 74.1                    |
| 사회서비스업                         | 56.6                          | 64.8                                          | 53.6                             | 65.0                                           | 73.4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30~99인                         | 49.6                          | 57.1                                          | 49.8                             | 59.3                                           | 66.3                    |
| 100~299인                       | 57.3                          | 63.6                                          | 55.5                             | 64.0                                           | 71.9                    |
| 300~499인                       | 66.0                          | 73.6                                          | 66.0                             | 75.0                                           | 81.6                    |
| 500인 이상                        | 66.5                          | 77.5                                          | 71.2                             | 74.8                                           | 79.1                    |

주: 1) 백분율은 2,512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내용을 잘 알고 있다' 응답을 기준으로 결과표를 재구성함.

## 2) 직장 내 성희롱 방지 대책의 실효성

정부의 성희롱 방지를 위한 주요 대책 5개 모두에 대해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정부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 대책이 직장 내 성희롱 방지에 얼마나 도움 되었는지를 조사하였다. ‘매우 도움 되었다’ 55.2%, ‘약간 도움 되었다’ 40.5%로 95.7%가 도움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정부 대책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업무담당자 10명 중 9명은 정부 대책이 직장 내 성희롱 방지에 기여했다고 평가하였다.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은 90.8%, 민간사업체는 96.7%로 민간사업체 업무담당자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초/중/고와 대학에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보다 낮았다.

〈표 III-114〉 정부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대책 실효성

(단위: %)

| 구분                                 | 매우<br>도움이<br>되었다 | 약간<br>도움이<br>되었다 | 별로<br>도움이<br>되지 않았다 | 전혀<br>도움이<br>되지 않았다 | 잘<br>모르겠다 | 계     |
|------------------------------------|------------------|------------------|---------------------|---------------------|-----------|-------|
| 전 체                                | 55.2             | 40.5             | 3.0                 | 0.2                 | 1.2       | 100.0 |
| 유형                                 |                  |                  |                     |                     |           |       |
| 공공기관                               | 52.8             | 38.0             | 4.8                 | 0.9                 | 3.5       | 100.0 |
| 민간사업체                              | 55.7             | 41.0             | 2.6                 | -                   | 0.7       | 100.0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국가기관                               | 75.0             | 20.6             | -                   | 0.6                 | 3.9       | 100.0 |
| 지방자치단체                             | 57.3             | 36.4             | 3.2                 | -                   | 3.1       | 100.0 |
| 초/중/고                              | 44.3             | 44.6             | 6.4                 | 1.1                 | 3.6       | 100.0 |
| 대학                                 | 50.2             | 39.4             | 8.6                 | 1.8                 | -         | 100.0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제조업                                | 40.2             | 53.8             | 4.2                 | -                   | 1.9       | 100.0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53.1             | 43.5             | 3.4                 | -                   | -         | 100.0 |
| 개인서비스업                             | 57.4             | 39.6             | 2.4                 | -                   | 0.6       | 100.0 |
| 유통서비스업                             | 66.7             | 33.0             | 0.3                 | -                   | -         | 100.0 |
| 사업서비스업                             | 60.4             | 37.3             | 1.4                 | -                   | 0.9       | 100.0 |
| 사회서비스업                             | 63.4             | 33.8             | 2.8                 | -                   | -         | 100.0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30~99인                             | 55.4             | 41.2             | 2.6                 | -                   | 0.8       | 100.0 |
| 100~299인                           | 57.7             | 39.4             | 2.6                 | -                   | 0.3       | 100.0 |
| 300~499인                           | 57.3             | 41.8             | 1.0                 | -                   | -         | 100.0 |
| 500인 이상                            | 50.0             | 44.6             | 5.4                 | -                   | -         | 100.0 |

주: 백분율은 1,076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 3) 지난 3년간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변화

지난 3년간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된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13개 문항에 대해 질문하였다. 일반직원과 동일한 문항으로 진행하였다. 13개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직장내 성희롱 관련 기구가 확대됨 (2) 직장내 성희롱 사건처리 절차 준수, 피해자 보호 등 기관(회사)의 사건처리역량이 향상됨 (3) 사업주(기관장)/관리자들의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노력과 관심이 증가함 (4) 조직구성원의 직장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5) 피해자 비난 등 2차 피해가 감소함 (6) 성희롱 행위 발생 시, 즉시 문제를 제기하는 분위기가 조성됨 (7) 가해자 입장이 아닌, 피해자를 옹호/지지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분위기가 조성됨 (8) 직장내 성희롱은 성차별적인 조직문화와 구조에 의해 발생한다고 인식하는 분위기가 조성됨 (9) 고충처리기구(고충상담창구, 사이버 신고센터 등)를 이용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됨 (10)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도가 높아짐 (11) 개인의사(참석 여부, 음주여부 등)를 존중하는 회식문화로 변화함 (12) 성차별적인 언행이나 관행이 줄어들음 (13) 성적불쾌감을 유발하는 성적농담, 신체 접촉 등을 조심하는 분위기가 이전보다 강해짐.

각 문항에서 ‘그렇다’(매우 그렇다 + 약간 그렇다)는 응답 결과를 기준으로 문항의 내용에 대한 동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 10명 중 6명 정도가 직장내 성희롱 관련 기구가 확대되었다고 보았다. 10명 중 7명은 피해자 비난 등 2차 피해가 줄어들었으며, 사건처리 역량이 향상되었고 고충처리기구를 이용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보았다. 10명 중 8명은 성차별적인 조직문화와 구조에서 성희롱이 발생한다고 인식하게 되었고 직장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으며, 피해자 입장에서 성희롱 사건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사업주/관리자의 직장내 성희롱 방지 위한 노력과 관심이 증가했고, 조직구성원들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도가 높아졌다고 보았다. 개인의사를 존중하는 회식문화도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10명 중 9명 이상은 성차별적 언행이나 관행의 감소, 성적불쾌감을 유발하는 언행을 조심하는 조직문화 형성 등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았다.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의사를 존중하는 회식문화로 변화함’, ‘성차별적인 언행이나 관행이 줄어들음’ 등에서는 90%를 상회하는 응답을 보인 반면, 직장내 성희롱 관련 기구가 확대되고 사건처리 역량이 향상되고 고충처리 기구를 이용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등의 시스템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선 70%대의 동의 정도를 보여 다른 문항에 비해 낮았다. 민간사업체의 경우도 응답률 자체는 공공기관보다 낮았는데, 응답 경향성은 유사했다. 성희롱 방지 시스템 활성화(확대)와 관련

해서는 60~70% 정도여서 다른 문항에 비해 낮은 동의 정도를 보였다. 반면 ‘개인의사를 존중하는 회식문화로 변화함’, ‘성차별적인 언행이나 관행이 줄어들’, ‘성적불쾌감을 유발하는 성적 농담, 신체접촉 등을 조심하는 분위기가 강해짐’ 등에서는 90% 내외의 응답을 보였다.

〈표 Ⅲ-115〉 지난 3년간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변화 - 계속

(단위: %)

| 구분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기구가 확대됨 | 직장 내 성희롱 사건처리 절차 준수, 피해자 보호 등 기관(회사)의 사건처리 역량이 향상됨 | 사업주/관리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노력과 관심이 증가함 | 조직 구성원의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피해자 비난 등 2차 피해가 감소함 | 성희롱 행위 발생 시, 즉시 문제를 제기하는 분위기가 조성됨 | 가해자 입장이 아닌, 피해자를 옹호/지지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분위기가 조성됨 |
|--------------------------------|---------------------|----------------------------------------------------|---------------------------------------|---------------------------------|---------------------|-----------------------------------|------------------------------------------------------|
| 전 체                            | 62.5                | 69.8                                               | 79.0                                  | 80.3                            | 75.0                | 78.8                              | 80.8                                                 |
| 유형                             |                     |                                                    |                                       |                                 |                     |                                   |                                                      |
| 공공기관                           | 70.3                | 76.2                                               | 85.7                                  | 83.5                            | 80.7                | 86.7                              | 88.8                                                 |
| 민간사업체                          | 61.0                | 68.6                                               | 77.8                                  | 79.7                            | 74.0                | 77.3                              | 79.3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 국가기관                           | 79.5                | 89.5                                               | 95.4                                  | 96.0                            | 88.9                | 89.4                              | 89.9                                                 |
| 지방자치단체                         | 74.5                | 77.6                                               | 86.2                                  | 86.3                            | 76.0                | 79.8                              | 81.8                                                 |
| 초/중/고                          | 67.0                | 71.6                                               | 82.9                                  | 79.1                            | 78.6                | 87.4                              | 89.9                                                 |
| 대학                             | 65.3                | 75.1                                               | 78.3                                  | 80.4                            | 78.0                | 74.6                              | 77.8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 제조업                            | 60.6                | 67.1                                               | 78.8                                  | 78.9                            | 72.7                | 75.3                              | 80.8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60.6                | 69.9                                               | 75.9                                  | 78.7                            | 71.6                | 77.1                              | 77.8                                                 |
| 개인서비스업                         | 61.1                | 68.2                                               | 76.7                                  | 81.5                            | 80.0                | 78.9                              | 79.1                                                 |
| 유통서비스업                         | 60.9                | 70.4                                               | 77.0                                  | 78.4                            | 74.2                | 75.9                              | 80.3                                                 |
| 사업서비스업                         | 59.6                | 67.1                                               | 73.1                                  | 75.0                            | 68.2                | 77.9                              | 72.8                                                 |
| 사회서비스업                         | 63.2                | 70.9                                               | 82.5                                  | 85.2                            | 78.7                | 79.9                              | 83.3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 30~99인                         | 59.8                | 67.9                                               | 77.3                                  | 78.9                            | 73.0                | 76.6                              | 78.8                                                 |
| 100~299인                       | 64.4                | 70.4                                               | 78.5                                  | 81.7                            | 78.0                | 79.3                              | 81.3                                                 |
| 300~499인                       | 67.3                | 72.8                                               | 82.4                                  | 86.4                            | 75.4                | 83.2                              | 81.2                                                 |
| 500인 이상                        | 71.3                | 77.8                                               | 86.0                                  | 83.7                            | 76.1                | 81.1                              | 77.9                                                 |

〈표 Ⅲ-115〉 지난 3년간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변화

(단위: %)

| 구분                                 | 직장 내<br>성희롱은<br>성차별적인<br>조직문화와<br>구조에 의해<br>발생한다고<br>인식하는<br>분위기가<br>조성됨 | 고충처리기구<br>(고충상담창구,<br>사이버신고<br>센터 등)를<br>이용하려는<br>분위기가<br>조성됨 | 성희롱<br>예방교육<br>참여도가<br>높아짐 | 개인 의사<br>(참석 여부,<br>음주 여부<br>등)를<br>존중하는<br>회사문화로<br>변화함 | 성차별적인<br>언행이나<br>관행이<br>줄어듦 | 성적<br>불쾌감을<br>유발하는<br>성적농담,<br>신체접촉<br>등을<br>조심하는<br>분위기가<br>이전보다<br>강해짐 |
|------------------------------------|--------------------------------------------------------------------------|---------------------------------------------------------------|----------------------------|----------------------------------------------------------|-----------------------------|--------------------------------------------------------------------------|
| 전 체                                | 80.0                                                                     | 74.5                                                          | 81.7                       | 88.3                                                     | 91.6                        | 90.8                                                                     |
| 유형                                 |                                                                          |                                                               |                            |                                                          |                             |                                                                          |
| 공공기관                               | 85.9                                                                     | 78.3                                                          | 87.1                       | 93.6                                                     | 95.1                        | 87.6                                                                     |
| 민간사업체                              | 78.9                                                                     | 73.8                                                          | 80.7                       | 87.3                                                     | 91.0                        | 91.4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국가기관                               | 87.5                                                                     | 87.7                                                          | 92.5                       | 95.9                                                     | 97.6                        | 89.6                                                                     |
| 지방자치단체                             | 80.8                                                                     | 75.6                                                          | 90.2                       | 90.3                                                     | 92.1                        | 92.0                                                                     |
| 초/중/고                              | 86.6                                                                     | 75.8                                                          | 85.5                       | 93.4                                                     | 94.9                        | 86.7                                                                     |
| 대학                                 | 76.7                                                                     | 71.9                                                          | 79.1                       | 90.3                                                     | 89.7                        | 83.2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제조업                                | 77.2                                                                     | 73.5                                                          | 81.7                       | 87.0                                                     | 88.8                        | 89.6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79.8                                                                     | 70.7                                                          | 76.2                       | 86.7                                                     | 88.7                        | 90.6                                                                     |
| 개인서비스업                             | 80.2                                                                     | 72.6                                                          | 77.6                       | 87.1                                                     | 94.0                        | 93.0                                                                     |
| 유통서비스업                             | 84.9                                                                     | 73.1                                                          | 83.3                       | 86.5                                                     | 89.7                        | 94.5                                                                     |
| 사업서비스업                             | 74.7                                                                     | 73.8                                                          | 75.2                       | 84.8                                                     | 91.1                        | 89.3                                                                     |
| 사회서비스업                             | 80.7                                                                     | 76.8                                                          | 86.6                       | 90.8                                                     | 94.3                        | 93.8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30~99인                             | 78.1                                                                     | 72.6                                                          | 79.6                       | 87.0                                                     | 90.5                        | 90.9                                                                     |
| 100~299인                           | 82.1                                                                     | 77.6                                                          | 84.5                       | 88.0                                                     | 92.1                        | 92.7                                                                     |
| 300~499인                           | 83.4                                                                     | 76.6                                                          | 87.2                       | 91.8                                                     | 97.1                        | 97.0                                                                     |
| 500인 이상                            | 78.9                                                                     | 84.5                                                          | 82.1                       | 87.1                                                     | 95.3                        | 95.8                                                                     |

주: 1) 백분율은 2,512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약간 그렇다'+ '그렇다' 응답을 기준으로 재구성함.

#### 4)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

##### 가)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가장 필요한 정책(1순위)으로 응답 된 건 ‘피해자 보호’가 33.3%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조직문화 개선’(21.8%),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18.2%), ‘사업주/기관장 책임 강화’(12.4%) 순이었다. 2018년 실태조사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 수요(1순위)에서 ‘성차별적인 조직문화 개선’, ‘행위자에 대한 공정한 처벌’ 순이었는데, 2021년 실태조사에서는 피해자 보호, 조직문화 개선, 행위자 징계 순으로 변화되었다.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의 경우 ‘조직문화 개선’, ‘피해자 보호’ 순으로, 민간사업체의 경우 ‘피해자 보호’, ‘조직문화 개선’ 순이었다. 공공기관 중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초/중/고와 대학은 ‘조직문화 개선’을 우선 필요하다고 하였다. 민간사업체는 업종에 따라 차이 없이 전체 응답 결과와 유사하였다.

〈표 Ⅲ-116〉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1순위)

(단위: %)

| 구분                                 | 사업주/<br>기관장<br>책임<br>강화 | 피해자<br>보호 | 조직<br>문화<br>개선 | 행위자<br>에 대한<br>엄정한<br>징계 | 상담<br>활성화<br>(두려움<br>없는<br>신고) | 사건<br>처리의<br>공정성<br>강화 | 기타  | 계     |
|------------------------------------|-------------------------|-----------|----------------|--------------------------|--------------------------------|------------------------|-----|-------|
| 전 체                                | 12.4                    | 33.3      | 21.8           | 18.2                     | 8.0                            | 5.6                    | 0.7 | 100.0 |
| 유형                                 |                         |           |                |                          |                                |                        |     |       |
| 공공기관                               | 8.5                     | 26.6      | 31.8           | 18.1                     | 5.7                            | 6.9                    | 2.3 | 100.0 |
| 민간사업체                              | 13.1                    | 34.5      | 19.9           | 18.2                     | 8.4                            | 5.3                    | 0.4 | 100.0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
| 국가기관                               | 5.4                     | 36.9      | 23.7           | 16.2                     | 8.8                            | 7.8                    | 1.2 | 100.0 |
| 지방자치단체                             | 6.1                     | 47.2      | 22.0           | 18.1                     | 6.0                            | 0.6                    | -   | 100.0 |
| 초/중/고                              | 9.8                     | 21.3      | 35.6           | 18.7                     | 4.4                            | 7.3                    | 2.8 | 100.0 |
| 대학                                 | 9.1                     | 20.9      | 32.2           | 17.5                     | 10.1                           | 5.9                    | 4.3 | 100.0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
| 제조업                                | 16.1                    | 35.0      | 18.6           | 16.4                     | 8.1                            | 5.3                    | 0.6 | 100.0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17.0                    | 31.1      | 19.7           | 18.5                     | 8.2                            | 5.4                    | -   | 100.0 |
| 개인서비스업                             | 9.7                     | 40.2      | 19.3           | 14.8                     | 9.7                            | 6.3                    | -   | 100.0 |
| 유통서비스업                             | 6.1                     | 42.8      | 20.7           | 18.8                     | 6.9                            | 4.2                    | 0.6 | 100.0 |
| 사업서비스업                             | 12.1                    | 29.1      | 21.3           | 22.3                     | 8.3                            | 6.5                    | 0.4 | 100.0 |
| 사회서비스업                             | 13.5                    | 32.9      | 20.7           | 18.8                     | 9.3                            | 4.4                    | 0.5 | 100.0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
| 30~99인                             | 13.3                    | 34.0      | 20.4           | 18.3                     | 8.3                            | 5.2                    | 0.5 | 100.0 |
| 100~299인                           | 13.0                    | 37.6      | 16.7           | 17.9                     | 9.0                            | 5.8                    | -   | 100.0 |
| 300~499인                           | 12.4                    | 29.8      | 20.6           | 20.0                     | 10.9                           | 5.9                    | 0.4 | 100.0 |
| 500인 이상                            | 9.0                     | 33.3      | 28.5           | 17.2                     | 6.0                            | 6.0                    | -   | 100.0 |

주: 백분율은 2,512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 나)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 수요: 조직문화 개선

성희롱 방지를 위해 조직문화를 개선하는데 가장 필요한 정책(1순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사업주/기관장, 관리자를 포함한 전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가 26.1%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고용상 성차별 근절, 성평등 촉진을 위한 인사관리 제도 개선’(17.1%), ‘성차별적 조직문화 개선 위한 캠페인 실시’(14.8%), ‘성평등 감수성 진단 위한 자가체크리스트 보급 및 점검 활성화’(13.1%) 순이었다.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의 경우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실시’(20.5%)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고용상 성차별 근절, 성평등 촉진을 위한 인사관리 제도 개선’(19.8%), ‘사업주/기관장, 관리자를 포함한 전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16.3%), ‘성별에 따른 업무 구분 관행 개선’(13.9%)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민간사업체는 전체 응답 경향과 유사하였다.

공공기관 유형에서 국가기관의 경우 ‘성별에 따른 업무구분 관행 개선’(23.6%)이 가장 우선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상 성차별 근절, 성평등 촉진을 위한 인사관리 제도 개선’(26.1%), 초/중/고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실시’(22.9%), 대학에서는 ‘사업주/기관장, 관리자를 포함한 전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20.7%)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다.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에서는 300~499인의 경우 특히 ‘사업주/기관장, 관리자를 포함한 전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 500인 이상에서는 ‘고용상 성차별 근절, 성평등 촉진을 위한 인사관리 제도 개선’ 수요가 높았다.

〈표 Ⅲ-117〉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1순위)

(단위: %)

| 구분                                 | 사업주/<br>기관장,<br>관리자를<br>포함한<br>전 직원<br>대상<br>성희롱<br>예방교육<br>강화 | 성차별적<br>조직문화<br>개선<br>위한<br>캠페인<br>실시 | 성평등<br>감수성<br>진단<br>위한<br>자가<br>체크<br>리스트<br>보급,<br>점검<br>활성화 | 고용 상<br>성차별<br>근절,<br>성평등<br>촉진을<br>위한<br>인사<br>관리<br>제도<br>개선 | 성별에<br>따른<br>업무 구분<br>관행 개선<br>(예:<br>서무·<br>비서=<br>여성<br>운전=<br>남성) | 성인지<br>감수성<br>높이기<br>위한<br>교육<br>실시 | 기관 내<br>성희롱<br>·성폭력<br>발생 시<br>사건처리<br>결과 공표<br>(관련자가<br>드러나거나<br>특정되지<br>않도록 함) | 기타  | 계     |
|------------------------------------|----------------------------------------------------------------|---------------------------------------|---------------------------------------------------------------|----------------------------------------------------------------|----------------------------------------------------------------------|-------------------------------------|----------------------------------------------------------------------------------|-----|-------|
| 전 체                                | 26.1                                                           | 14.8                                  | 13.1                                                          | 17.1                                                           | 10.9                                                                 | 10.6                                | 6.5                                                                              | 0.7 | 100.0 |
| 유형                                 |                                                                |                                       |                                                               |                                                                |                                                                      |                                     |                                                                                  |     |       |
| 공공기관                               | 16.3                                                           | 7.5                                   | 8.5                                                           | 19.8                                                           | 13.9                                                                 | 20.5                                | 12.0                                                                             | 1.6 | 100.0 |
| 민간사업체                              | 27.9                                                           | 16.2                                  | 14.0                                                          | 16.6                                                           | 10.4                                                                 | 8.8                                 | 5.5                                                                              | 0.6 | 100.0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       |
| 국가기관                               | 16.0                                                           | 8.9                                   | 9.5                                                           | 10.3                                                           | 23.6                                                                 | 16.9                                | 12.9                                                                             | 1.7 | 100.0 |
| 지방자치단체                             | 12.5                                                           | 4.1                                   | 8.2                                                           | 26.1                                                           | 18.0                                                                 | 10.3                                | 20.8                                                                             | -   | 100.0 |
| 초/중/고                              | 16.4                                                           | 7.0                                   | 8.3                                                           | 22.6                                                           | 10.5                                                                 | 22.9                                | 10.5                                                                             | 1.7 | 100.0 |
| 대학                                 | 20.7                                                           | 13.0                                  | 5.8                                                           | 18.1                                                           | 8.9                                                                  | 17.7                                | 14.4                                                                             | 1.5 | 100.0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       |
| 제조업                                | 27.1                                                           | 19.4                                  | 12.6                                                          | 17.3                                                           | 8.7                                                                  | 8.9                                 | 5.1                                                                              | 0.9 | 100.0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29.3                                                           | 13.4                                  | 17.6                                                          | 14.2                                                           | 11.5                                                                 | 7.7                                 | 6.4                                                                              | -   | 100.0 |
| 개인서비스업                             | 32.6                                                           | 16.3                                  | 15.0                                                          | 13.5                                                           | 10.4                                                                 | 9.2                                 | 3.1                                                                              | -   | 100.0 |
| 유통서비스업                             | 26.7                                                           | 12.9                                  | 11.0                                                          | 18.4                                                           | 13.4                                                                 | 9.5                                 | 6.9                                                                              | 1.3 | 100.0 |
| 사업서비스업                             | 27.6                                                           | 16.2                                  | 13.9                                                          | 16.9                                                           | 11.0                                                                 | 7.7                                 | 5.7                                                                              | 0.9 | 100.0 |
| 사회서비스업                             | 26.7                                                           | 14.6                                  | 15.2                                                          | 17.3                                                           | 10.1                                                                 | 9.7                                 | 6.2                                                                              | 0.1 | 100.0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       |
| 30~99인                             | 28.0                                                           | 17.5                                  | 14.2                                                          | 15.8                                                           | 9.9                                                                  | 8.6                                 | 5.5                                                                              | 0.6 | 100.0 |
| 100~299인                           | 27.5                                                           | 10.6                                  | 13.3                                                          | 19.9                                                           | 12.7                                                                 | 9.5                                 | 6.0                                                                              | 0.5 | 100.0 |
| 300~499인                           | 34.0                                                           | 11.7                                  | 12.8                                                          | 13.6                                                           | 11.4                                                                 | 10.9                                | 4.9                                                                              | 0.6 | 100.0 |
| 500인 이상                            | 22.8                                                           | 18.9                                  | 10.9                                                          | 21.6                                                           | 9.6                                                                  | 10.4                                | 5.2                                                                              | 0.6 | 100.0 |

주: 백분율은 2,512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 다)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 수요: 성희롱 피해 신고 활성화

성희롱 피해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1순위)은 ‘사이버 상담, 별도 공간 마련 등 안전한 상담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24.8%)이었다. 그다음은 ‘피해자 정보 공개,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따돌림 등 직장내 2차 피해 방지’(20.2%), ‘피해자 보호(휴가, 배치전환 등) 강화’(12.4%) 순이었다.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의 경우 ‘사이버 상담, 별도 공간 마련 등 안전한 상담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23.8%), ‘피해자 정보 공개,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따돌림 등 직장내 2차 피해 방지’(21.8%), ‘인사, 업무 등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17.1%) 순이었다. 민간사업체의 경우 ‘사이버 상담, 별도 공간 마련 등 안전한 상담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25.0%), ‘피해자 정보 공개,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따돌림 등 직장 내 2차 피해 방지’(20.0%), ‘고충상담창구 홍보 강화’(12.9%) 순이었다.

공공기관 유형 중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피해자 정보 공개,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따돌림 등 직장내 2차 피해 방지’를, 초/중/고에서는 ‘사이버 상담, 별도 공간 마련 등 안전한 상담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에서 300인 이상의 경우 ‘피해자 정보 공개,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따돌림 등 직장내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표 Ⅲ-118〉 성희롱 피해 신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1순위)

(단위: %)

| 구분                                 | 사이버<br>상담,<br>별도<br>공간<br>마련 등<br>안전한<br>상담<br>제공을<br>위한<br>인프라<br>확충 | 고충<br>상담<br>창구<br>홍보<br>강화 | 고충<br>상담<br>원의<br>전문성<br>및<br>성인지<br>감수성<br>강화 | 피해자<br>정보<br>공개,<br>피해자에<br>대한<br>비난과<br>따돌림<br>등 직장<br>내 2차<br>피해<br>방지 | 인사,<br>업무 등<br>에서의<br>피해자에<br>대한<br>불이익<br>금지 | 피해자<br>보호<br>(휴가,<br>배치<br>전환<br>등)<br>강화 | 피해자<br>회복과<br>치유를<br>위한<br>상담,<br>의료<br>등<br>지원<br>강화 | 사내<br>성희롱<br>관련<br>규정과<br>매뉴얼<br>마련<br>및<br>홍보<br>강화 | 기타  | 계     |
|------------------------------------|-----------------------------------------------------------------------|----------------------------|------------------------------------------------|--------------------------------------------------------------------------|-----------------------------------------------|-------------------------------------------|-------------------------------------------------------|------------------------------------------------------|-----|-------|
| 전 체                                | 24.8                                                                  | 11.8                       | 11.6                                           | 20.2                                                                     | 11.1                                          | 12.4                                      | 4.2                                                   | 3.3                                                  | 0.5 | 100.0 |
| 유형                                 |                                                                       |                            |                                                |                                                                          |                                               |                                           |                                                       |                                                      |     |       |
| 공공기관                               | 23.8                                                                  | 5.8                        | 10.5                                           | 21.8                                                                     | 17.1                                          | 10.2                                      | 6.1                                                   | 2.1                                                  | 2.6 | 100.0 |
| 민간사업체                              | 25.0                                                                  | 12.9                       | 11.9                                           | 20.0                                                                     | 9.9                                           | 12.8                                      | 3.8                                                   | 3.5                                                  | 0.1 | 100.0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     |       |
| 국가기관                               | 16.0                                                                  | 6.9                        | 11.3                                           | 22.2                                                                     | 19.5                                          | 12.4                                      | 7.6                                                   | 3.6                                                  | 0.6 | 100.0 |
| 지방자치단체                             | 9.7                                                                   | 7.8                        | 11.9                                           | 30.2                                                                     | 15.1                                          | 19.3                                      | 3.2                                                   | 2.6                                                  | -   | 100.0 |
| 초/중/고                              | 28.5                                                                  | 5.2                        | 9.7                                            | 20.9                                                                     | 16.6                                          | 8.2                                       | 6.2                                                   | 1.1                                                  | 3.6 | 100.0 |
| 대학                                 | 16.6                                                                  | 4.7                        | 14.5                                           | 21.4                                                                     | 15.5                                          | 13.3                                      | 2.9                                                   | 9.5                                                  | 1.6 | 100.0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     |       |
| 제조업                                | 24.3                                                                  | 14.7                       | 9.9                                            | 19.7                                                                     | 9.1                                           | 13.7                                      | 3.6                                                   | 4.9                                                  | -   | 100.0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22.2                                                                  | 14.6                       | 10.7                                           | 22.7                                                                     | 13.4                                          | 11.7                                      | 3.8                                                   | 0.9                                                  | -   | 100.0 |
| 개인서비스업                             | 27.5                                                                  | 12.5                       | 8.0                                            | 17.8                                                                     | 9.5                                           | 15.2                                      | 5.3                                                   | 4.1                                                  | -   | 100.0 |
| 유통서비스업                             | 28.5                                                                  | 10.6                       | 14.9                                           | 18.6                                                                     | 7.3                                           | 13.6                                      | 2.8                                                   | 3.3                                                  | 0.6 | 100.0 |
| 사업서비스업                             | 24.6                                                                  | 15.6                       | 12.5                                           | 18.6                                                                     | 11.5                                          | 10.7                                      | 3.1                                                   | 3.1                                                  | 0.4 | 100.0 |
| 사회서비스업                             | 24.8                                                                  | 8.6                        | 15.2                                           | 22.1                                                                     | 9.6                                           | 12.2                                      | 4.6                                                   | 2.8                                                  | -   | 100.0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     |       |
| 30~99인                             | 24.4                                                                  | 12.9                       | 12.2                                           | 19.8                                                                     | 10.3                                          | 12.8                                      | 3.8                                                   | 3.5                                                  | 0.2 | 100.0 |
| 100~299인                           | 26.9                                                                  | 14.0                       | 9.9                                            | 19.1                                                                     | 8.9                                           | 13.9                                      | 3.8                                                   | 3.5                                                  | -   | 100.0 |
| 300~499인                           | 25.7                                                                  | 9.7                        | 10.9                                           | 24.6                                                                     | 8.1                                           | 13.5                                      | 3.4                                                   | 4.0                                                  | -   | 100.0 |
| 500인 이상                            | 32.8                                                                  | 10.5                       | 14.3                                           | 25.3                                                                     | 5.8                                           | 5.5                                       | 4.6                                                   | 1.2                                                  | -   | 100.0 |

주: 백분율은 2,512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 라)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 수요: 성희롱 사건의 공정한 처리

성희롱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1순위)은 ‘신고-조사-징계 등 신속한 사건처리 절차 운영’(32.3%)이었다. 그다음은 ‘행위자에 대한 엄중 조치(실질적 징계)’(29.0%), ‘외부전문가/외부전문기관 활용 및 참여 강화’(19.4%) 순이었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공공기관의 경우 ‘외부전문가/외부전문기관 활용 및 참여 강화’(30.9%), ‘행위자에 대한 엄중조치(실질적 징계)’(29.5%), ‘신고-조사-징계 등 신속한 사건처리 절차 운영’(24.7%) 순이었다. 민간사업체는 ‘신고-조사-징계 등 신속한 사건처리 절차 운영’(33.7%), ‘행위자에 대한 엄중 조치(실질적 징계)’(28.9%) 순이었다.

공공기관 유형 중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에서는 ‘행위자에 대한 엄중 조치(실질적 징계)’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 초/중/고에서는 ‘외부전문가/외부전문기관 활용 및 참여 강화’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표 III-119〉 성희롱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정책(1순위)

(단위: %)

| 구분                             | 사업주/기관장에 대한 책무(위반 시 과태료 등) 강화 | 신고-조사-징계 등 신속한 사건처리 절차 운영 | 외부 전문가/외부 전문기관 활용/참여 강화 | 행위자에 대한 엄중 조치(실질적 징계) | 사내 성희롱 관련 규정과 매뉴얼 마련 | 기타  | 계     |
|--------------------------------|-------------------------------|---------------------------|-------------------------|-----------------------|----------------------|-----|-------|
| 전 체                            | 13.8                          | 32.3                      | 19.4                    | 29.0                  | 5.1                  | 0.4 | 100.0 |
| 유형                             |                               |                           |                         |                       |                      |     |       |
| 공공기관                           | 10.6                          | 24.7                      | 30.9                    | 29.5                  | 3.5                  | 0.9 | 100.0 |
| 민간사업체                          | 14.4                          | 33.7                      | 17.2                    | 28.9                  | 5.4                  | 0.3 | 100.0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 국가기관                           | 7.1                           | 30.4                      | 27.2                    | 29.6                  | 4.5                  | 1.2 | 100.0 |
| 지방자치단체                         | 6.0                           | 33.4                      | 16.0                    | 43.6                  | 1.0                  | -   | 100.0 |
| 초/중/고                          | 12.5                          | 21.7                      | 34.6                    | 27.3                  | 3.0                  | 0.9 | 100.0 |
| 대학                             | 7.5                           | 26.1                      | 18.9                    | 37.9                  | 9.5                  | -   | 100.0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 제조업                            | 14.9                          | 32.2                      | 17.2                    | 30.1                  | 5.4                  | 0.3 | 100.0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17.9                          | 23.5                      | 18.3                    | 32.2                  | 7.3                  | 0.8 | 100.0 |
| 개인서비스업                         | 9.6                           | 39.0                      | 11.9                    | 32.9                  | 6.4                  | 0.2 | 100.0 |
| 유통서비스업                         | 14.1                          | 35.4                      | 21.8                    | 21.1                  | 7.6                  | -   | 100.0 |
| 사업서비스업                         | 13.7                          | 35.8                      | 16.5                    | 29.0                  | 4.5                  | 0.4 | 100.0 |
| 사회서비스업                         | 15.5                          | 35.7                      | 18.0                    | 27.5                  | 3.3                  | -   | 100.0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 30~99인                         | 14.4                          | 33.2                      | 17.1                    | 29.9                  | 5.3                  | 0.2 | 100.0 |
| 100~299인                       | 15.5                          | 35.8                      | 17.3                    | 25.7                  | 5.1                  | 0.6 | 100.0 |
| 300~499인                       | 9.1                           | 35.8                      | 19.0                    | 26.1                  | 10.1                 | -   | 100.0 |
| 500인 이상                        | 15.0                          | 35.8                      | 20.8                    | 23.1                  | 5.3                  | -   | 100.0 |

주: 백분율은 2,512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마)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 수요: 2차 피해 방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1순위)은 ‘2차 피해에 대한 전직원 교육 실시’(18.6%)였다. 그다음은 ‘2차 피해의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18.2%), ‘2차 피해 실태 파악’(14.9%), ‘2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시행’(14.5%) 순이었다.

소속기관 유형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우 ‘2차 피해의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21.0%), ‘2차 피해의 행위자에 대한 분리 조치’(19.2%), ‘2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휴가 등) 시행’(18.1%) 순으로, 민간사업체의 경우 ‘2차 피해에 대한 전직원 교육 실시’(19.4%), ‘2차 피해의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17.7%), ‘2차 피해 실태 파악’(16.4%) 순으로 수요가 높았다.

〈표 Ⅲ-120〉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1순위)

(단위: %)

| 구분                             |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사업주/기관 장의 입장 발표 (선언) | 2차 피해에 대한 전직원 교육 실시 | 2차 피해 실태 파악 | 2차 피해 자에 대한 보호 조치 (휴가 등) 시행 | 2차 피해 행위자에 대한 조사 실시 | 2차 피해의 행위자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 2차 피해의 행위 자에 대한 분리 조치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매뉴얼, 사건 처리 지침 마련 및 안내 | 기타  | 계     |
|--------------------------------|-----------------------------------|---------------------|-------------|-----------------------------|---------------------|------------------------------|-----------------------|------------------------------------|-----|-------|
| 전 체                            | 10.7                              | 18.6                | 14.9        | 14.5                        | 7.5                 | 18.2                         | 12.3                  | 3.1                                | 0.2 | 100.0 |
| 유형                             |                                   |                     |             |                             |                     |                              |                       |                                    |     |       |
| 공공기관                           | 11.4                              | 14.3                | 7.0         | 18.1                        | 2.4                 | 21.0                         | 19.2                  | 5.7                                | 1.0 | 100.0 |
| 민간사업체                          | 10.6                              | 19.4                | 16.4        | 13.8                        | 8.4                 | 17.7                         | 11.0                  | 2.6                                | 0.1 | 100.0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     |       |
| 국가기관                           | 6.1                               | 14.5                | 9.7         | 14.5                        | 6.0                 | 24.5                         | 21.3                  | 3.1                                | 0.3 | 100.0 |
| 지방자치단체                         | 6.5                               | 11.7                | 16.6        | 11.1                        | 5.8                 | 31.0                         | 13.5                  | 3.8                                | -   | 100.0 |
| 초/중/고                          | 13.8                              | 14.6                | 4.8         | 20.5                        | 0.7                 | 18.3                         | 19.5                  | 6.3                                | 1.4 | 100.0 |
| 대학                             | 10.0                              | 13.4                | 10.5        | 11.3                        | 2.5                 | 26.8                         | 12.6                  | 12.8                               | -   | 100.0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     |       |
| 제조업                            | 8.6                               | 20.3                | 18.8        | 12.7                        | 9.2                 | 16.5                         | 12.4                  | 1.6                                | -   | 100.0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11.0                              | 21.7                | 19.3        | 11.5                        | 8.2                 | 19.5                         | 6.0                   | 2.8                                | -   | 100.0 |
| 개인서비스업                         | 15.1                              | 16.8                | 15.4        | 19.1                        | 9.0                 | 15.5                         | 6.2                   | 2.9                                | -   | 100.0 |
| 유통서비스업                         | 10.4                              | 21.3                | 13.7        | 15.0                        | 3.6                 | 13.9                         | 17.1                  | 4.9                                | 0.1 | 100.0 |
| 사업서비스업                         | 10.4                              | 15.6                | 17.8        | 10.3                        | 10.8                | 20.5                         | 11.5                  | 2.8                                | 0.4 | 100.0 |
| 사회서비스업                         | 11.1                              | 20.8                | 12.2        | 16.2                        | 7.6                 | 19.2                         | 10.7                  | 2.2                                | -   | 100.0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     |       |
| 30~99인                         | 11.1                              | 19.7                | 16.2        | 14.1                        | 8.1                 | 17.4                         | 10.8                  | 2.5                                | 0.1 | 100.0 |
| 100~299인                       | 7.7                               | 18.1                | 17.4        | 12.8                        | 10.0                | 18.7                         | 12.7                  | 2.7                                | -   | 100.0 |
| 300~499인                       | 13.7                              | 18.0                | 15.2        | 13.8                        | 8.5                 | 19.3                         | 6.3                   | 5.2                                | -   | 100.0 |
| 500인 이상                        | 11.6                              | 21.7                | 17.4        | 10.7                        | 7.8                 | 16.7                         | 12.9                  | 0.8                                | 0.5 | 100.0 |

주: 백분율은 2,512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바)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 수요: 피해자 보호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1순위)은 ‘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45.1%)였다. 그다음은 ‘피해자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상담, 의료 등 지원’(17.8%), ‘피해자의 배치 전환(부서, 업무 등)’(14.1%) 순이었다.

〈표 III-121〉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1순위)

(단위: %)

| 구분                                 | 행위자를<br>피해자<br>로부터<br>분리<br>(공간분리,<br>업무분리,<br>접근금지<br>등) | 피해자의<br>배치전환<br>(부서,<br>업무 등) | 피해자에<br>대한<br>휴가,<br>휴직 부여 | 피해자의<br>회복과<br>치유를<br>위한 상담,<br>의료 등<br>지원 | 행위자분<br>아니라<br>행위자<br>주변인에<br>대한<br>피해자<br>와의<br>분리 | 행위자에<br>대한 징계 | 기타  | 계     |
|------------------------------------|-----------------------------------------------------------|-------------------------------|----------------------------|--------------------------------------------|-----------------------------------------------------|---------------|-----|-------|
| 전 체                                | 45.1                                                      | 14.1                          | 8.8                        | 17.8                                       | 7.5                                                 | 6.6           | 0.2 | 100.0 |
| 유형                                 |                                                           |                               |                            |                                            |                                                     |               |     |       |
| 공공기관                               | 53.6                                                      | 8.4                           | 7.5                        | 17.1                                       | 7.4                                                 | 5.6           | 0.4 | 100.0 |
| 민간사업체                              | 43.5                                                      | 15.1                          | 9.0                        | 18.0                                       | 7.5                                                 | 6.7           | 0.2 | 100.0 |
| 공공기관 유형                            |                                                           |                               |                            |                                            |                                                     |               |     |       |
| 국가기관                               | 45.8                                                      | 9.7                           | 11.5                       | 15.2                                       | 8.9                                                 | 8.6           | 0.3 | 100.0 |
| 지방자치단체                             | 38.5                                                      | 10.9                          | 8.8                        | 18.6                                       | 14.0                                                | 9.3           | -   | 100.0 |
| 초/중/고                              | 58.5                                                      | 7.5                           | 6.1                        | 17.5                                       | 6.0                                                 | 4.0           | 0.5 | 100.0 |
| 대학                                 | 44.9                                                      | 12.3                          | 5.9                        | 18.6                                       | 9.6                                                 | 8.7           | -   | 100.0 |
| 민간사업체 업종                           |                                                           |                               |                            |                                            |                                                     |               |     |       |
| 제조업                                | 44.6                                                      | 16.2                          | 8.2                        | 18.4                                       | 7.6                                                 | 4.9           | -   | 100.0 |
| 건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br>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 | 34.7                                                      | 16.8                          | 12.5                       | 16.6                                       | 8.0                                                 | 11.4          | -   | 100.0 |
| 개인서비스업                             | 41.1                                                      | 14.1                          | 11.7                       | 20.0                                       | 7.5                                                 | 5.0           | 0.6 | 100.0 |
| 유통서비스업                             | 44.7                                                      | 14.9                          | 9.0                        | 16.8                                       | 9.6                                                 | 4.7           | 0.3 | 100.0 |
| 사업서비스업                             | 43.8                                                      | 16.0                          | 6.2                        | 19.2                                       | 5.8                                                 | 8.5           | 0.4 | 100.0 |
| 사회서비스업                             | 47.0                                                      | 12.4                          | 9.3                        | 16.5                                       | 7.4                                                 | 7.4           | -   | 100.0 |
|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                                                           |                               |                            |                                            |                                                     |               |     |       |
| 30~99인                             | 43.5                                                      | 15.8                          | 8.8                        | 17.4                                       | 7.3                                                 | 7.0           | 0.2 | 100.0 |
| 100~299인                           | 44.0                                                      | 12.0                          | 8.9                        | 20.7                                       | 8.2                                                 | 5.9           | 0.2 | 100.0 |
| 300~499인                           | 40.7                                                      | 11.4                          | 10.3                       | 22.2                                       | 9.3                                                 | 6.1           | -   | 100.0 |
| 500인 이상                            | 44.2                                                      | 15.9                          | 14.6                       | 14.4                                       | 8.0                                                 | 2.9           | -   | 100.0 |

주: 백분율은 2,512명(응답인원)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 IV

### 요약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271

2. 시사점

320





## 1. 주요 결과 요약

### 가. 일반직원 조사결과

#### 1) 성희롱 피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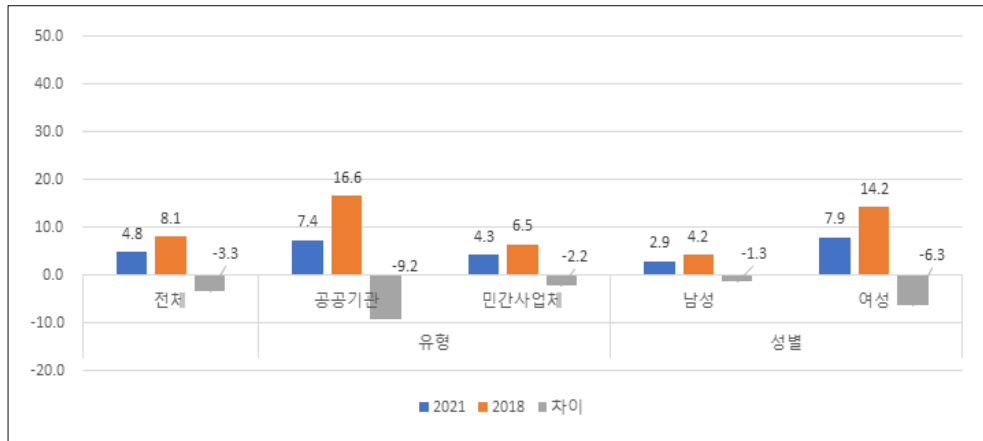
##### 가) 성희롱 피해 실태

지난 3년간(2018.8.~2021.7.) 성희롱 피해 실태는 14개 성희롱 피해 유형에 대해 조사한 결과, 14개 유형 중 하나라도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8%였다. 소속 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 7.4%, 민간사업체 4.3%였다. 성별로는 여성 7.9%, 남성 2.9%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 5.3%, 30대 4.4%, 40대 4.6%, 50대 이상 5.2%로 20대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 4.8%, 비정규직 5.2%로 비정규직에서 높았다.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지방자치단체 12.4%, 국가기관 9.1%, 대학 6.2%, 초/중/고 4.2% 순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유형에 비해 높았다. 민간사업체 업종별로는 사회서비스업 6.1%, 제조업 5.2%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별로는 30~99인 3.4%, 100~299인 3.9%, 300~499인 3.7%, 500인 이상 6.2%였다. 전체적으로 공공기관, 여성, 20대 이하, 비정규직, 지방자치단체, 사회서비스업, 500인 이상에서 성희롱 피해 경험률이 높았다.

14개 성희롱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의 경험률이 3.4%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은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 2.2%,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 1.3%,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쳐다보는 행위’ 0.6%, ‘포옹, 손잡기, 신체 밀착, 안마, 입맞춤 등의 신체 접촉을 하거나 신체접촉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와 ‘성적 사실 관계를 묻거나 관련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0.5% 순이었다. 성별로는 전체적으로 여성의 피해 경험률이 남성보다 높았다. 특히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남성 1.8%, 여성 5.8%),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남성 1.8%, 여성 2.8%),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남성 0.6%, 여성 2.4%)에서 성별 격차가 있었다. 연령별로는 피해 유형에 따라 경향이 다소 달랐는데, ‘사적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 ‘포옹, 손잡기, 신체 밀착, 안마, 입맞춤 등의 신체 접촉을 하거나 신체접촉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에서는 20대 이하의 피해 경험률이 높았다.

2018년 실태조사는 13개 유형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13개 유형 중 하나라도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1%로, 2021년에는 2018년 대비 3.3%p 감소하였다.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 16.6%, 민간사업체 6.5%로 2018년 대비 2021년에는 각각 9.2%p, 2.2%p 감소하였다. 성별 역시 2018년에 남성 4.2%, 여성 14.2%로 2021년에는 각각 1.3%p, 6.3%p 감소하였다.



[그림 IV-1] 성희롱 피해 경험률 비교(2021년과 2018년, 하나라도 경험 있는 비율)

이렇게 2018년 대비 2021년에 성희롱 피해 경험률이 감소한 것은 2018년 미투의 영향에 따른 3년간의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미투를 계기로 성희롱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등 성희롱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이 높아지고, 성희롱은 하면 안 된다는 등의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 직장내 성희롱 피해 경험률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미투 이후 정부가 추진해 왔던 성희롱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의 영향 혹은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년간의 성희롱 피해 경험률이 감소한 것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여전히 공공기관, 여성, 비정규직, 지방자치단체, 사회서비스업, 500인 이상에서 성희롱 피해 경험률이 높았던 양상은 3년 전과 다르지 않았다. 또한, 빈번하게 발생했던 피해 유형 등의 경향성 역시 3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정량적 측면에서는 감소하였지만 성희롱 발생 양상과 구조 등은 변화하지 않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성희롱 방지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 나) 성희롱 행위자와의 관계 및 성별

지난 3년간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나의 상급자(기관장, 사업주 등 제외)'가 54.9%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나의 동급자' 24.0%였고, '기관장, 사업주 등'은 3.5%였다.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체 모두 전체 응답 경향과 유사하였다.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나의 상급자(기관장, 사업주 등 제외)'가 62.2%로 '나의 동급자'(17.4%)보다 월등히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의 '나의 상급자'(62.8%)가 월등히 높았고, '나의 동급자'(14.2%)뿐 아니라 '외부인(고객, 민원인, 거래처 직원 등)'(10.8%) 비율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40대는 '나의 하급자'(5.9%) 비율이 높았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나의 상급자'는 감소하고 '나의 동료'와 '나의 하급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성희롱 행위자의 성별은 80.2%가 남성이었다.

#### 다) 성희롱 발생 장소

지난 3년간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성희롱 발생 장소가 어디였는지를 질문한 결과, '사무실내'(41.8%), '회식장소'(31.5%) 순이었고 두 장소가 전체 성희롱 발생 장소 중 70%를 상회하였다. 소속기관 유형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사무실내, 회식 장소 순이었다. 2018년에는 '회식장소'(43.7%), '사무실내'(36.8%) 순으로, 두 장소가 전체 성희롱 발생장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은 2021년과 2018년 모두 동일했으나, 순서는 달라졌다. 한편 2021년에 추가된 '온라인(단톡방, SNS, 메신저 등)'은 4.7%였고, 30대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2021년 실태조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근무환경 변화를 질문하였는데, 81.8%는 출근 횟수가 줄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90.8%가 회식이나 단합대회 등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성희롱 피해 유형 중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2018년 2.7%에서 2021년 1.3%로 감소한 것을 보면 회식이 줄어든 것은 성희롱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사무실 등 업무공간, 회식 장소에서의 성희롱 방지를 위해서는 조직문화, 직장문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불필요한 회식을 줄이는 것은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방안으로 강조될 필요가 있다.

#### 라) 성희롱 행위 반복/지속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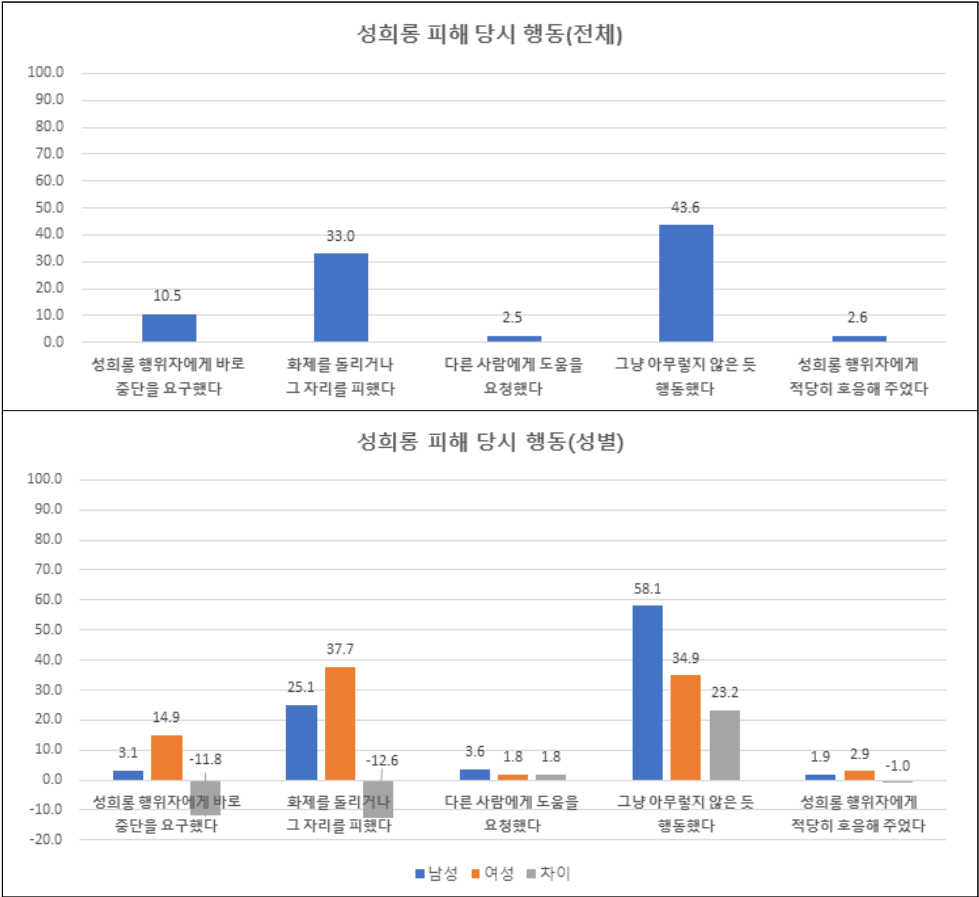
지난 3년간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피해 당시 성희롱 행위가 2회

이상 반복 혹은 지속되었는지 조사한 결과, 28.8%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3명은 성희롱 피해를 2회 이상으로 반복되거나 지속되었던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민간사업체, 여성, 20대 이하, 제조업, 30~99인 규모의 민간사업체에서 성희롱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지속되었다.

#### 마) 성희롱 피해 당시의 행동

지난 3년간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성희롱을 경험한 당시 성희롱 피해자가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는데(복수응답),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다’(43.6%)가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화제를 돌리거나 그 자리를 피했다’(33.0%), ‘성희롱 행위자에게 바로 중단을 요구했다’(10.5%) 순이었다.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다’는 비율이 40%를 상회하였는데, 성희롱 행위자에게 바로 중단을 요구하거나 화제를 돌리거나 그 자리를 피하는 등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대처 행동을 취한 비율을 합하면 약 40%를 상회하여 비슷하였다. 10명 중 4명이 성희롱 피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대처 행동을 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10명 중 1명만 바로 중단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다수는 화제를 돌리거나 그 자리를 피하는 대처 행동을 하거나 대처를 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처 역량을 키우고 피해자의 대처가 지지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별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었는데, 여성의 경우 ‘화제를 돌리거나 그 자리를 피했다’(37.7%),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했다’(34.9%), ‘성희롱 행위자에게 바로 중단을 요구했다’(14.9%)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방식의 대처를 하는 반면, 여성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과 함께 성희롱 상황을 피하거나 그 즉시 중단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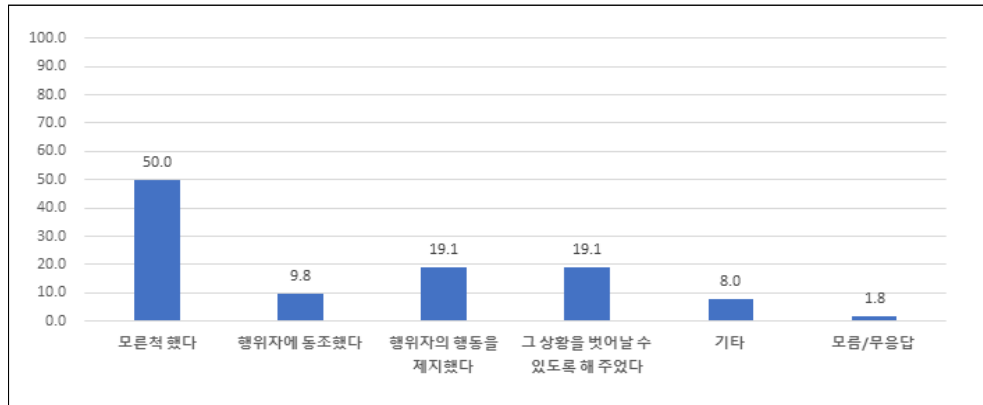


[그림 IV-2] 성희롱 피해 당시 행동(전체, 성별)

바) 성희롱 피해 당시 목격자 유무 및 목격자의 행동

지난 3년간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성희롱 피해 당시 목격자가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 목격자가 ‘있었다’는 응답이 54.0%였다. 성희롱 피해자 2명 중 1명은 피해 당시에 주위에 목격자가 있었다.

목격자가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 목격자들의 행동을 질문하였다(복수응답). 목격자들의 행동으로 ‘모른척 하였다’(50.0%)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행위자의 행동을 제지하였다’(19.1%)와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었다’(19.1%) 순이었다. 행위자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경우보다 모른 척 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3] 성희롱 피해 당시 목격자 행동(복수응답)(전체)

소속기관 유형별로 공공기관의 경우 ‘모른척 하였다’ 64.1%, ‘행위자의 행동을 제지하였다’ 21.2%,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었다’ 12.5% 순이었고, ‘행위자에 동조하였다’는 13.3%였다. 민간사업체의 경우 ‘모른척 하였다’ 43.6%,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었다’ 22.0%, ‘행위자의 행동을 제지하였다’ 18.2% 순이었다. ‘행위자에 동조하였다’는 8.2%였다. 대체로 모른척 하거나 행위자에 동조하는 경향이 민간사업체 보다는 공공기관에서 더 강했다.

성별에서는 성희롱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목격자들의 행동은 ‘모른척 하였다’ 47.4%,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었다’ 25.1%, ‘행위자의 행동을 제지하였다’ 18.5% 순이었고, ‘행위자에 동조하였다’는 8.8%였다. 성희롱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 ‘모른척 하였다’ 55.6%, ‘행위자를 제지하였다’ 20.5% 순이었고, ‘행위자에 동조하였다’는 11.8%였다. 여성과 달리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6.0%에 그쳤다. 전체적으로 성희롱 피해자가 여성일 경우에는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거나 행위자의 행동을 제지하는 등 목격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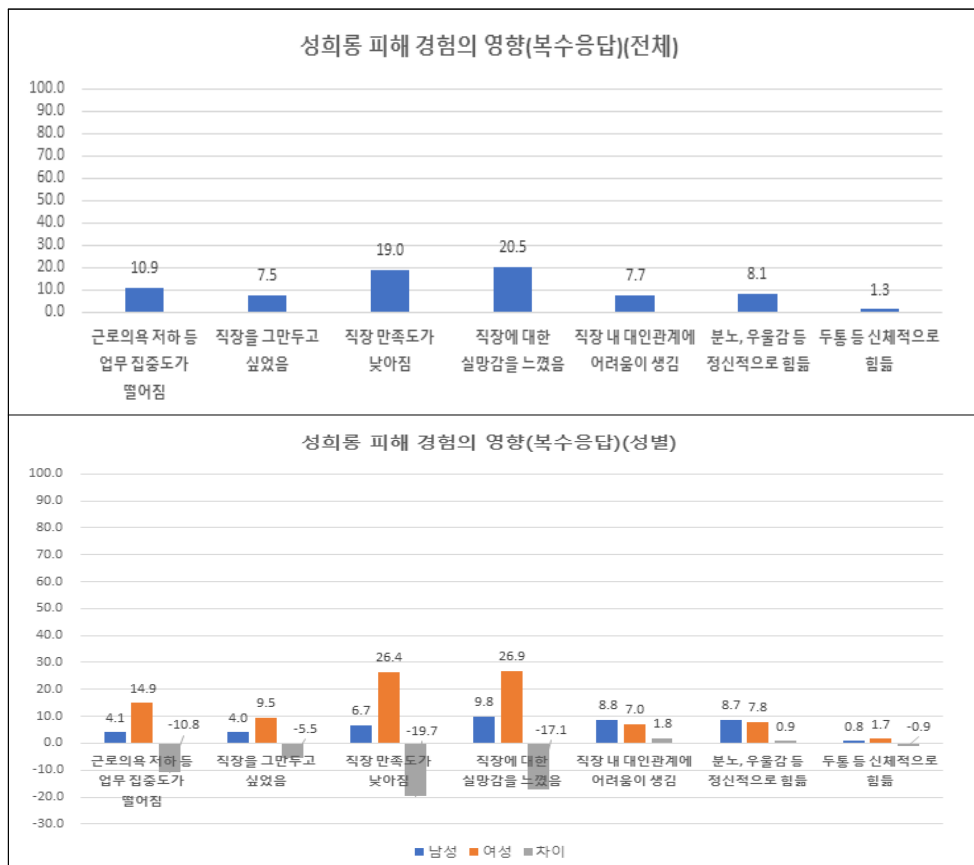
연령별로 ‘모른척 하였다’는 응답이 다수인 가운데, 20대 이하(50.9%)와 50대 이상(60.9%)에서 ‘모른척 하였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행위자의 행동을 제지하였다’의 경우 20대(21.6%)와 30대(32.7%)에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20대 이하(24.4%), 40대(25.6%)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 사) 성희롱 피해 경험의 영향

지난 3년간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성희롱 피해에 따른 영향을 조사

하였는데, ‘특별한 영향이 없었음’이라는 응답이 44.2%였다. 이는 성희롱 피해자의 절반 정도는 성희롱 피해 경험으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은 61.6%, 여성은 33.9%가 ‘특별한 영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남성 중 38.4%, 여성 중 66.1%가 성희롱 피해로 인해 영향을 받았다는 것으로, 성희롱 피해의 영향을 받은 여성이 남성의 1.7배 정도로 성희롱 피해로 인한 영향에 더 취약함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와 50대 이상에서,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에서는 규모가 작을수록 성희롱 피해로 인한 특별한 영향이 있다고 나타났다.



[그림 IV-4] 성희롱 피해 경험의 영향(복수응답)(전체, 성별)

특별한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구체적인 영향(복수응답)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본 결과, ‘직장(성희롱 예방정책, 문화 등)에 대한 실망을 느꼈음’(20.5%), ‘직장만족도가 낮아짐’(19.0%), ‘근로이익 저하 등 업무 집중도가 떨어짐’(10.9%)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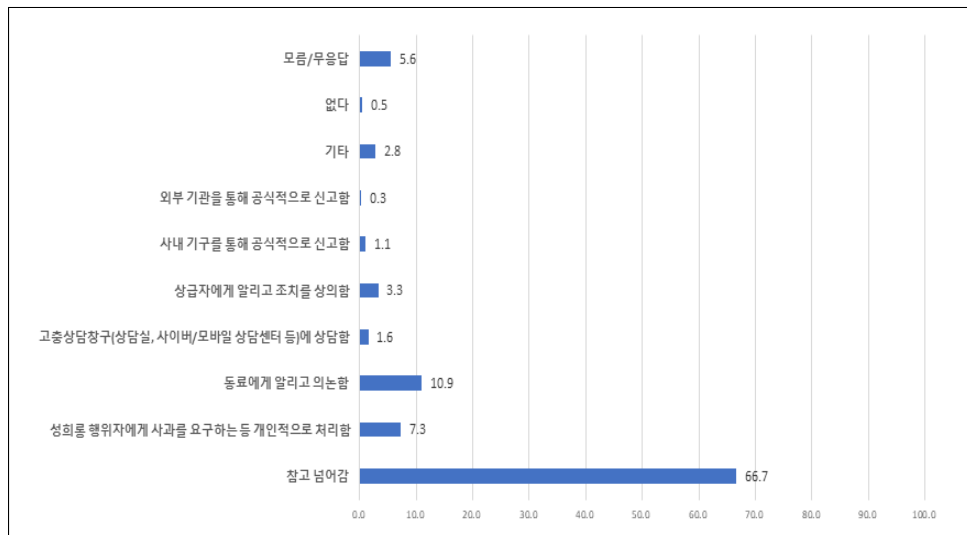


이는 성희롱 피해 경험이 개인적 차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보다 직장에 대한 실망감, 직장만족도 저하, 근로의욕 저하 등 직장생활과 근로환경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의 경우 ‘직장(성희롱 예방정책, 문화 등)에 대한 실망을 느꼈음’, ‘직장만족도가 낮아짐’, ‘근로의욕 저하 등 업무 집중도가 떨어짐’에서 남성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 아) 성희롱 피해에 대한 대응

### (1) 성희롱 피해 이후 대처 행동

성희롱 피해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지 조사한 결과, ‘참고 넘어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6.7%로,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7명 정도는 성희롱 피해를 참고 넘어가고 있었다. 그다음은 ‘동료에게 알리고 의논함’ 10.9%, ‘성희롱 행위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개인적으로 처리함’ 7.3% 순이었다. 반면 ‘고충상담창구에 상담함’ 1.6%, ‘상급자에게 알리고 조치를 상의함’ 3.3%, ‘사내 기구를 통해 공식적으로 신고함’ 1.1% 등으로 기관 내부 공식 채널을 활용하는 비율은 6.0%에 그쳤다.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 상담 및 사건처리를 위한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확대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공식절차 이용도는 여전히 높지 않았다.



[그림 IV-5] 성희롱 피해 이후 대처행동(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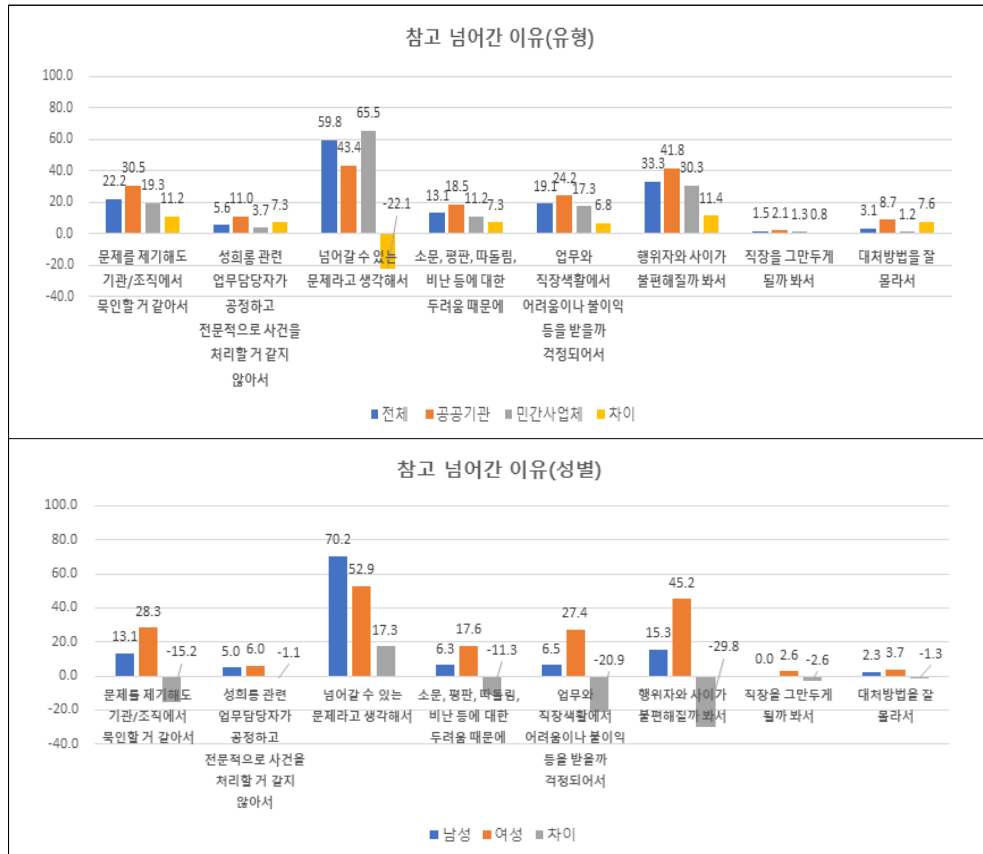
2018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참고 넘어감’의 응답은 2021년 66.7%, 2018년 81.6%로, 2021년에 참고 넘어가지 않고 대처하는 경향이 증가(14.9%p)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8년에 ‘상급자에게 알리고 조치를 상의함’(1.1%), ‘사내 기구를 통해 공식적으로 신고함’(0.8%) 등 기관 내부 공식 채널을 활용하는 비율이 1.9%였던 것에 비해 2021년에는 6.0%로 다소 상승하였다. 전반적으로 2018년보다 2021년에 참고 넘어가는 비율이 줄어든 점은 긍정적으로 보이나, 여전히 공식적인 조치를 통한 대응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 (2) 참고 넘어간 이유

성희롱 피해에 대해 ‘참고 넘어감’이라고 응답한 경우, 참고 넘어간 이유(복수응답)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59.8%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 봐서’(33.3%),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거 같아서’(22.2%), ‘업무와 직장생활에서 어려움이나 불이익 등을 받을까 걱정되어서’(19.1%) 순이었다.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지만, 문제제기로 인해 불이익을 경험하거나 조직에서 묵인하는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로 참고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기관 유형에서 보면, 공공기관의 경우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거 같아서’(30.5%),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 봐서’(41.8%), ‘업무와 직장생활에서 어려움이나 불이익 등을 받을까 걱정되어서’(24.2%), ‘소문, 평판, 따돌림, 비난 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18.5%), ‘성희롱 관련 업무담당자가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거 같지 않아서’(11.0%) 등에서 민간사업체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공공기관에서는 사건처리에서의 2차 피해, 불공정성 등에 대한 우려로, 민간사업체에서는 10명 중 6명은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성희롱 피해에 대한 낮은 민감성 등으로 참고 넘어가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는 응답이 여성보다 월등히 높았던 반면, 여성의 경우는 행위자와의 불편한 관계, 업무와 직장생활에서의 불이익, 조직에서의 묵인, 소문이나 평판, 따돌림 등에 대한 두려움 등에서도 크게 높았다.



[그림 IV-6] 참고 넘어간 이유(전체, 기관 유형, 성별)

### (3) 공식적인 대처 이후 기관의 조치

상급자에게 알리거나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하거나 사내 혹은 외부 기구를 이용해 공식적으로 신고한 이후 기관에서 조치를 취했는지 조사한 결과,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응답이 7.4%로, 이는 상급자 보고, 고충상담창구 상담, 내/외부기구를 이용한 공식 신고 등의 대처를 하면 대부분 기관 차원에서의 조치가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기관의 조치 내용(복수응답)으로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공간분리, 업무변경 등)’(46.3%), ‘피해자 보호조치(상담, 휴가, 업무/부서이동 등)’(40.5%), ‘고충 상담원과의 상담, 고충처리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22.9%),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 실시’(19.7%), ‘사건처리과정에서의 신상보호 제공’(15.8%) 순이었다. 2018년 조사 결과에서의 구체적인 조치 내용(복수응답)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 실시’,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공간 분리,

업무변경 등), '사건처리과정에서 신상보호 제공' 순이었다. 이렇게 볼 때 2018년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와 조사 등이 우선되었다면, 2021년에는 행위자와 피해자에 대한 분리, 피해자 보호, 고충상담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 등의 조치 비중이 높았다.

소속기관 유형에 따라서는 공공기관의 경우 '업무 및 인사고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32.5%), '성희롱 행위자 징계 조치'(30.7%),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25.7%), '사건처리과정에서 신상보호'(21.0%), '피해자 보호조치'(20.2%) 순이었다. 민간사업체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50.8%), '피해자 보호조치'(44.9%), '고충 상담원과의 상담, 고충처리 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25.6%) 순이었다. 공공기관은 불이익 등 2차 피해 방지, 행위자 징계,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등에, 민간사업체는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피해자 보호 등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 (4) 공식적인 대처 이후 기관의 사건처리에 대한 만족도

상급자에게 알리거나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하거나 사내 혹은 외부 기구를 이용해 공식적으로 신고한 후에 기관이 취한 사건처리과정 및 사건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사건처리과정 만족도에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22.2%(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였고, '만족한다'(약간 만족한다 + 매우 만족한다)는 77.0%였다. '만족한다'를 기준으로 소속기관 유형별로 보면 공공기관 41.6%, 민간사업체 84.8%였다.

사건처리결과 만족도에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17.9%(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였고, '만족한다'(약간 만족한다 + 매우 만족한다)는 81.4%였다. 2018년 조사에서는 사건처리결과 만족도만 조사했는데, 이때 '만족한다'는 응답이 45.7%여서 2021년에 35.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공공기관은 41.7%, 민간사업체는 90.1%로 공공기관의 사건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사건처리 과정과 사건처리결과 모두 공공기관에서의 만족도가 낮았다.

### 2) 2차 피해 경험

#### 가) 2차 피해 실태

성희롱 피해 경험에 대해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행동 등으로 인해 또다시 겪게 되는 어려움과 관련해서 14개 문항을 조사하였다. 14개 문항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은 20.7%로, 성희롱 피해자의 20% 정도가 2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에서의 2차 피해 경험률은 22.1%였고 민간사업체에서는 20.2%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20.5%, 여성 20.8%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24.8%, 30대 16.0%, 40대 25.1%, 50대 이상 18.7%였고 고용형태에서는 정규직 21.2%, 비정규직 16.7%였다. 공공기관 유형에서는 국가기관 21.6%, 지방자치단체 15.9%, 초/중/고 21.4%, 대학 36.1%로, 대학에서의 2차 피해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민간사업체 규모 중 30~99인(25.7%)과 100~299인(26.9%) 규모의 민간사업체에서 2차 피해 경험률이 높았다. 전체적으로 공공기관, 여성, 20대 이하와 40대, 정규직, 대학, 30~99인과 100~299인 규모의 민간사업체에서 2차 피해 경험률이 높았다.

14개 문항 각각의 경험에 대해 살펴보면, ‘주변에 성희롱 피해를 말했을 때 공감이나 지지받지 못하고 의심 또는 참으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응답이 12.1%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은 ‘부당한 처우에 대한 암시,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발언 등으로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했다’ 6.6%, ‘나에게 과도한 업무를 주거나 업무 분장 외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등 업무적으로 괴롭혔다’ 4.4%, ‘악의적인 소문이 유포되었다’ 4.2%, ‘나의 평판, 인적정보, 고충(피해) 내용 등이 온/오프라인 상으로 유포되었다’ 3.7%, ‘비밀보장에 소홀하거나 일부러 공개하여 나의 신상이 공개되었다’와 ‘행위자에게 책임을 가볍게 묻고 사건을 종료했다’ 3.5% 순이었다. 소속기관 유형이나 성별에 따른 응답 결과는 전체 응답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는데, 공공기관과 여성에서 2차 피해 경험률이 높았다. 전체적으로 성희롱 피해 상황에 대한 지지와 공감을 받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사건처리 과정에서 압박,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불이익, 평판 등 조직 생활 전반에서 2차 피해를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 나) 2차 피해 행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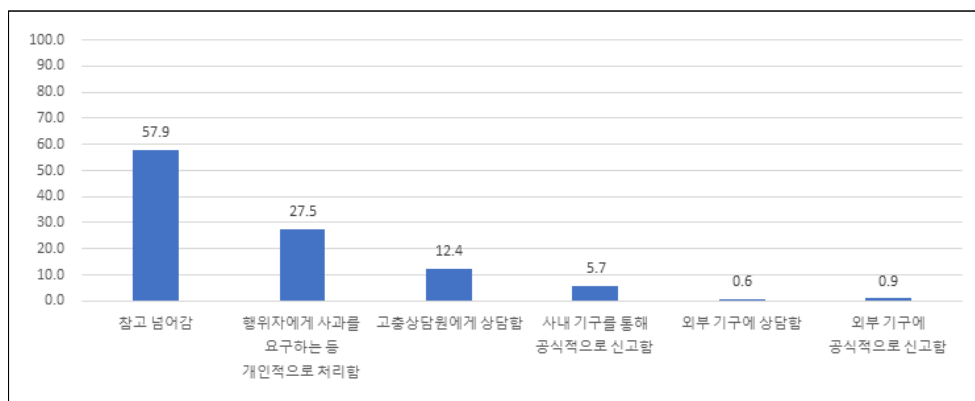
2차 피해 행동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와 같은 행동을 한 사람(복수응답)은 ‘나의 상급자’(55.7%), ‘나의 동료’(40.4%) 순이었다.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 모두 ‘나의 상급자’(공공기관 57.3%, 민간사업체 55.0%)와 ‘나의 동료’(공공기관 37.1%, 민간사업체 41.6%)라는 응답이 많았고, 공공기관에서는 이외에도 ‘성희롱 행위자’에 의한 2차 피해 행위가 있었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나의 상급자’(74.4%)가 월등히 많았던 반면, 여성의 경우 ‘나의 동료’(51.9%), ‘나의 상급자’(44.7%), ‘성희롱 행위자’(12.4%) 순으로 동료에 의한 2차 피해가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의 경우 ‘나의 상급자’가 63.2%로 월등히 높았고, 40대는 ‘나의 동료’가 50.5%로 높았다.

### 다) 2차 피해에 대한 대처 행동

2차 피해 행동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지(복수응답)를 조사한 결과, ‘참고 넘어감’이 57.9%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행위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개인적으로 처리함’(27.5%), ‘고충상담원에게 상담함’(12.4%) 순이었다.

소속기관 유형이나 성별에 따른 응답 결과는 전체 응답 경향과 유사하였다. 소속기관 유형과 성별에 상관없이 참고 넘어간다고 절반 이상이 응답한 가운데,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참고 넘어감’(73.9%)의 응답이 월등히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에서 ‘고충상담원에게 상담함’(34.5%), ‘사내 기구를 통해 공식적으로 신고함’(25.4%)의 응답률이 높아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30대(46.6%)는 ‘행위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개인적으로 처리함’의 응답률이 높았고, 40대(62.4%)와 50대 이상(75.2%)은 ‘참고 넘어감’의 응답률이 월등히 높았다. 전체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참고 넘어간다는 응답이 많고, 연령이 낮을수록 고충상담원에게 상담하거나 사내기구를 통해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응답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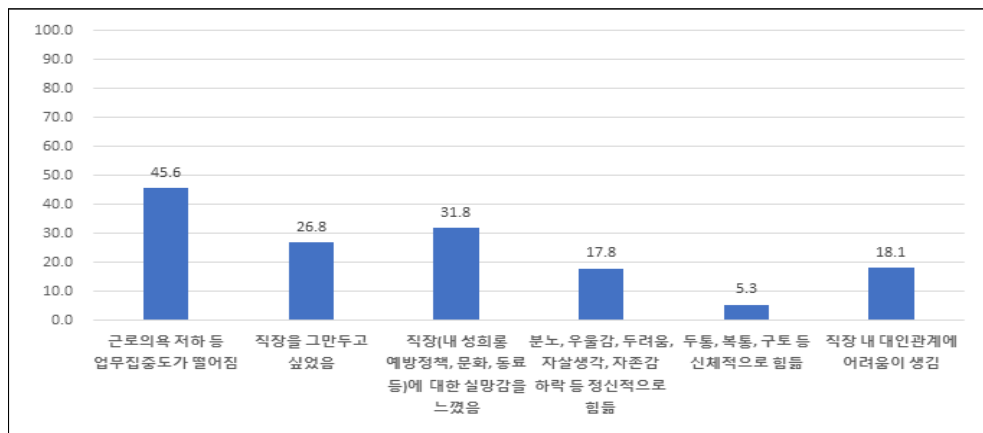


[그림 IV-7] 2차 피해에 대한 대처 행동(복수응답)(전체)

### 라) 2차 피해의 영향

2차 피해 행동으로 인해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를 조사하였다. ‘특별한 영향이 없었다’는 응답이 13.3%로, 2차 피해를 경험한 경우의 약 87% 정도가 2차 피해로 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기관 유형이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고, 특히 30대 이하에서는 ‘특별한 영향이 없었다’는 응답이 5% 내외여서 2차 피해로 인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 구체적으로 그 내용(복수응답)을 살펴보면, ‘근로이익 저하 등 업무 집중도가 낮아짐’(45.6%)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직장(내 성희롱예방 정책, 문화 등)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음’(31.8%),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음’(26.8%), ‘직장내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생김’(18.1%)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2차 피해로 인해 직장 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지고, 업무만족도 및 근로이익 저하, 직장내 대인관계 어려움, 이 직 의사 등 직장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근로이익 저하(41.5%), 직장내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생김(35.8%), 직장내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생김(18.1%) 순이었다. 여성의 경우 근로이익 저하 등 업무 집중도가 떨어 지고(48.0%) 직장내 대인관계에 대한 실망했다는(29.5%) 등의 응답이 많은 가운데, ‘직장을 그만 두고 싶었음’(31.8%)의 응답도 많았다. ‘분노/우울감/두려움/자살생각/자존감 하락 등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는 응답도 22.7%였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의 경우 ‘직장을 그만 두고 싶었음’(58.0%)의 응답이 월등히 높았고, 근로이익 저하 등의 응답은 낮은 반면 직장내 대인관계에 대한 실망감, 분노, 우울감, 두려움, 자살생각, 자존감 하락 등 정신적 어려움에 서의 응답이 높았다.



[그림 IV-8] 2차 피해의 영향(복수응답)(전체)

#### 마) 2차 피해에 대한 기관의 조치

본인이 경험한 2차 피해에 대해 기관에서 취한 조치를 질문한 결과, ‘특별한 조치가 없었음’이라는 응답이 52.4%로, 성희롱 2차 피해를 경험한 경우의 절반 정도는 기관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2차 피해 방지)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2차 피해방지치침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2021년 1월에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2차 피해 방지 표준안’이 마련되고, 국가기관 등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규정 제정 여부를 점검하는 등 제도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기관에서 조치를 취한 경우 구체적인 기관의 조치 내용(복수응답)을 보면 ‘2차 피해 행위에 대한 조사 실시’(16.1%)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2차 피해 실태 파악’(15.9%), ‘2차 피해에 대한 전직원 교육 실시’(11.1%) 순이었다.

### 3) 2차 피해의 발생 원인

성희롱 피해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행동 등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직장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감수성이나 인식 수준이 낮아서’라는 응답이 28.8%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구성원들이 2차 피해/가해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18.5%, ‘2차 피해/가해 방지에 대한 기관의 인식과 의지가 부족해서’ 17.1%, ‘2차 피해/가해에 대한 제재조치(규정 등)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16.3%, ‘직장 내에서 가해자의 위치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14.6%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구성원과 기관의 직장 내 성희롱 혹은 2차 피해에 대한 이해, 인식, 의지가 미흡하기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성희롱 목격 경험

#### 가) 성희롱 목격 실태

지난 3년간(2018.8.~2021.7.) 직장에서 타인의 성희롱 피해 경험을 전해 듣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앞서 살펴봤던 14개 성희롱 피해 유형 중 하나라도 전해 듣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5%였다. 2018년 11.2%에서 5.7%p 감소하였다.

14개 유형별로 전해 듣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살펴보면,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가 3.9%로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 전해 듣거나 목격한 경험이 높은 유형은 성희롱 피해 경험의 양상과 유사했다.

#### 나) 성희롱 목격 후 조치방법

성희롱 피해를 전해 듣거나 목격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질문하였는데,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4.1%였다. 2018년에 61.5%였던 것에서 다소 증가



하였는데, 10명 중 6명 정도가 타인의 성희롱 피해 경험을 전해 듣거나 목격해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변함이 없었다.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높아지고 성희롱 방지 및 대처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되었지만, 실제 타인의 성희롱 피해 경험을 전해 듣거나 목격했을 때 대응 여부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주변인의 역할이 결국 조직 안에서 성희롱 문제에 대한 공동체적인 해결에서 중요하다는 점에서, 피해자를 지지하고 공감하고 조력할 수 있도록 주변인의 역할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공공기관은 51.5%, 민간사업체는 69.3%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률이 민간사업체에서 17.8%p 높았다. 이는 공공기관(48.5%)에서 민간사업체(30.7%)보다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성별로는 남성은 76.2%, 여성은 52.1%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여성(47.9%)이 남성(23.8%)보다 타인의 성희롱 피해 경험을 전해 듣거나 목격할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해 듣거나 목격한 경우 조치를 취한 내용(복수응답)을 보면,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했다’(23.1%)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피해자가 사내기구나 외부기구에 신고하도록 제안하였음’(7.4%), ‘성희롱 행위자의 행동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였음’(4.6%) 순이었다. 모든 항목에서 2018년 조사 결과와 2021년 조사 결과의 응답률이 비슷했는데, ‘피해자가 사내기구나 외부기구에 신고하도록 제안하였음’의 경우 2018년 2.7%에서 2021년 7.4%로 다소 상승하였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에 그 이유(복수응답)를 질문하였는데,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라는 응답(43.1%)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거 같아서’(19.0%),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봐서’(16.0%), ‘성희롱인지 정확히 판단하지 못해서’(15.7%) 순이었다. 소속기관과 성별에서 공공기관과 여성의 경우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거 같아서’(공공기관 25.0%, 여성 24.5%)의 응답률이 다소 높았다. 전체적으로 성희롱 행위란 걸 인지했지만 용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하였거나 조직의 성희롱 사건 대처(조력자에 대한 2차 피해방지 포함)에 대한 신뢰가 낮아서 성희롱 상황을 전해 듣거나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다) 성희롱 목격 경험의 영향

성희롱 피해를 전해 듣거나 목격한 경험으로 인해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를 조사한

결과, ‘특별한 영향이 없었음’이라는 응답은 44.7%였다. 이는 10명 중 5~6명은 성희롱을 전해 듣거나 목격한 경험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에서 ‘특별한 영향이 없었음’의 응답은 35.0%, 민간사업체에서는 48.7%였고, 성별로는 남성은 56.8%, 여성은 32.7%여서, 공공기관과 여성에서 성희롱을 전해 듣거나 목격한 경험으로 인한 영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특별한 영향이 없었음’의 응답이 20대 이하 31.5%, 30대 48.2%, 4대 56.7%로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영향을 더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일반직, 비정규직, 초/중/고에서 ‘특별한 영향이 없었음’의 응답이 낮아서 성희롱을 전해 듣거나 목격한 경험으로 인해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희롱을 전해 듣거나 목격한 경험으로 인해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복수응답)을 보면, ‘직장(내 성희롱 예방정책, 문화 등)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음’(20.5%), ‘직장동료들에게 실망감을 느낌’(19.0%), ‘나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음’(17.4%), ‘직장 만족도가 낮아짐’(14.3%) 순이었다. 소속기관 유형이나 성별에 따른 응답 결과를 보면, 공공기관과 여성의 경우 ‘나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음’, ‘직장동료들에게 실망감을 느낌’, ‘직장(성희롱 예방정책, 문화 등)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음’의 응답률이 전체 응답을 상회하며 높게 나타났다. 공공기관에서는 ‘직장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음’ 29.2%, ‘직장동료들에게 실망감을 느낌’ 29.0%, ‘나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음’ 26.2% 순이었고, 여성에서는 ‘직장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음’ 27.6%, ‘나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음’ 25.8%, ‘직장동료들에게 실망감을 느낌’ 24.4%였다. 특히 여성의 경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남성(8.9%)보다 크게 높았다. 성희롱 목격 경험만으로도 직장내 성희롱 예방정책과 동료들에 대한 실망감, 나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 직장만족도가 낮아지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직접적인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 공정한 사건처리 등을 신속히 진행함과 동시에 조직구성원이 경험하게 되는 성희롱 사건의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라) 2차 피해 목격 경험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조력자, 피해 신고자 포함) 등이 성희롱 사건처리 및 회복의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 및 손상, 불이익 등 2차 피해에 해당되는 20개 문항 중 어느 하나이라도 놓여 있는 것을 목격하거나 전해 들은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는데,

27.6%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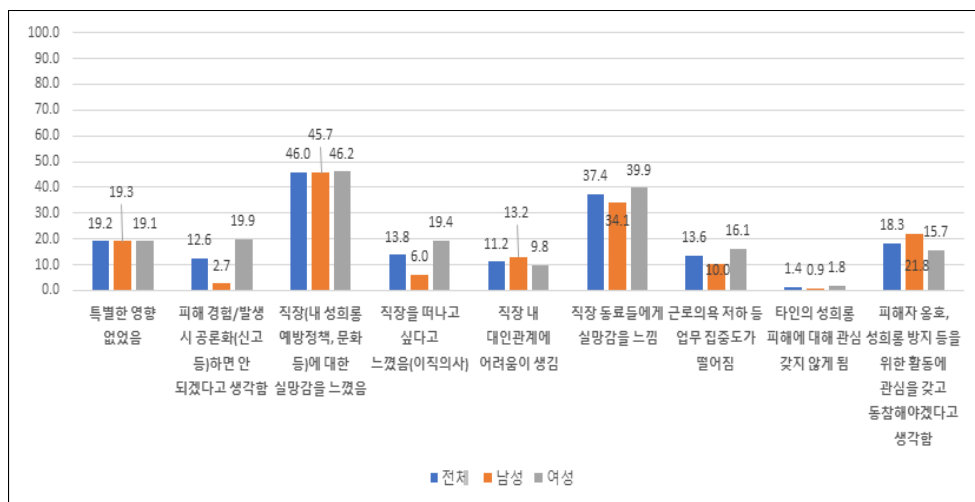
20개 문항 중 가장 많이 목격하거나 전해 들은 건 ‘주변에 성희롱 피해를 말했을 때 공감이나 지지받지 못하고 의심 또는 참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로 15.5%였다. 전체적으로 전해 듣거나 목격한 경험이 높은 2차 피해 유형은 실제 2차 피해 경험의 양상과 유사했다.

#### 마) 2차 피해 목격 경험의 영향

2차 피해 목격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특별한 영향이 없었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19.2%로, 이는 10명 중 8명은 영향을 받았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차 피해 목격으로 받은 영향의 내용(복수응답)을 보면, ‘직장(내 성희롱 예방정책, 문화 등)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음’(46.0%), ‘직장동료들에게 실망감을 느낌’(37.4%), ‘직장을 떠나고 싶다고 느꼈음’(13.8%), ‘근로이익 저하 등 업무 집중도가 떨어짐’(13.6%) 순이었다. ‘피해자 옹호, 성희롱 방지 등을 위한 활동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야겠다고 생각함’이라는 응답은 18.3%였다.

성별에서는 여성의 경우 ‘직장(내 성희롱 예방정책, 문화 등)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음’의 응답이 46.2%로 대략 절반 정도인 가운데, ‘피해 경험/발생 시 공론화(신고)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함’(19.9%)과 ‘직장을 떠나고 싶다고 느꼈음’(19.4%), ‘직장 동료들에게 실망감을 느낌’(39.9%) 등의 응답이 많았다.



[그림 IV-9] 2차 피해 목격 경험의 영향(복수응답)(전체, 성별)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에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정책, 문화 등)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음'의 응답이 60%를 상회하는 가운데, 이직 의사(11.7%)나 신고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10.7%)보다는 '직장내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생김'(26.2%), '직장 동료들에게 실망감을 느낌'(25.7%), '근로욕 저하 등 업무집중도가 떨어짐'(26.1%) 등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을 느끼는 경향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30대에서는 '피해자 옹호, 성희롱 방지 등을 위한 활동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야겠다고 생각함'이라는 응답이 34.4%였다.

## 5)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 경험

### 가)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도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지난 1년간(2020.1.1.~2020.12.31.) 실시한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93.0%가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했다고 응답하였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공공기관은 97.3%, 민간사업체는 92.1%였다.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 모두 2018년(공공기관 96.6%, 민간사업체 90.0%)보다 소폭 상승하였다. 성별로는 남성 92.8%, 여성 93.2%였는데 2018년(남성 91.3%, 여성 90.6%)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89.0%, 30대 93.7%, 40대 93.5%, 50대 이상 93.4%로 20대 이하의 참여율이 낮았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 93.5%, 비정규직 89.0%여서, 20대 이하와 비정규직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에서는 30~99인 89.7%, 100~299인 92.1%, 300~499인 94.2%, 500인 이상 94.8%로, 규모가 작을수록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이 낮아서 종사자 규모가 작은 사업체의 성희롱 예방교육 운영 점검이 필요하다.

### 나)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방식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 가장 최근에 받았던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방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교육시간을 따로 지정해서 운영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2.6%였다. 2018년(84.1%)보다 다소 감소하였는데, 이는 '교육시간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자료를 배포하여 개인적으로 보게 함'의 응답이 14.2%로 2018년 6.2%보다 상승한 점도 함께 고려하면,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진행이 원활하기 어려웠던 점의 영향으로 보인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공공기관은 74.1%, 민간사업체는 72.3%가 '교육시간을 따로 지정해서 운영함'이라고 응답하였다.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에서는 30~99인 69.3%,

100~299인 68.7%, 300~499인 77.3%, 500인 이상 78.2%로, 300인 이하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교육시간을 따로 지정해 운영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적었다. 2018년 조사에서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 중 30~99인에서 ‘교육시간을 따로 지정해서 운영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6.8%로 가장 낮았는데, 2021년 조사에서는 69.3%로 더 낮아졌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진행이 어렵게 된 상황의 영향이 규모가 작은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 다)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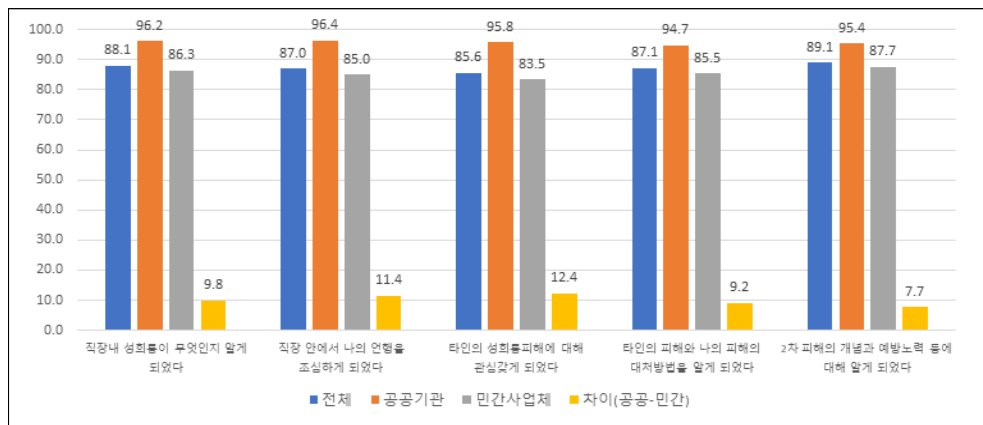
교육시간을 따로 지정해 예방교육 내용으로만 진행한 경우 가장 최근에 받았던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복수응답)에 대해 조사하였다. ‘개인별 온라인 교육(e-learning 교육)’이 57.8%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대면방식의 집합교육(강사 진행)’ 22.8%, ‘비대면 방식의 쌍방향 실시간 온라인 교육’ 17.5%, ‘강의가 아닌 비디오시청 등의 시청각 교육’ 10.7% 순이었다. 2018년 조사에서 ‘집합교육’이 71.5%로 다수를 차지하고 ‘개인별 온라인 교육’이 17.3%였던 것과 달리, 2021년 조사에서는 ‘개인별 온라인 교육’이 크게 늘어났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 집합교육보다 ‘개인별 온라인 교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 모두 ‘개인별 온라인 교육’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그 응답률도 비슷했고(공공기관 58.6%, 민간사업체 57.6%), 그 외 방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응답률이 조금 더 높았다. 특히 ‘비대면 방식의 쌍방향 실시간 온라인 교육’에서 공공기관은 28.4%, 민간사업체는 15.1%였다.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에서는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개인별 온라인 교육 비율은 낮고, 대면 방식의 집합교육과 시청각 교육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30~99인의 경우 ‘개인별 온라인 교육’은 39.5%, ‘대면 방식의 집합교육’ 27.1%, ‘강의가 아닌 비디오 시청 등의 시청각 교육’ 17.1%였다. 반면 500인 이상의 경우 ‘개인별 온라인 교육’은 79.0%, ‘대면 방식의 집합교육’ 14.0%, ‘강의가 아닌 비디오 시청 등의 시청각 교육’ 3.1%였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프라가 갖춰진 대규모 사업체와 상대적으로 종사자 규모가 작은 사업체 간에 교육 진행 방법에 차이가 있었다.

#### 라)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한 본인의 변화

가장 최근에 받았던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이후 본인이 경험한 변화에 대해 조사하고자 5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5개 문항 모두에서 ‘그렇다’(매우 그렇다 + 약간 그렇다)는

85% 이상으로 나타났다. ‘직장내 성희롱이 무엇인지(개념, 유형 등) 알게 되었다’ 88.1%, ‘직장 안에서 나의 언행을 조심하게 되었다’ 87.0%, ‘타인의 성희롱 피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85.6%, ‘타인의 피해와 나의 피해의 대처 방법을 알게 되었다’ 87.1%, ‘2차 피해의 개념과 예방 노력 등에 대해 알게 되었다’ 89.1%였다. 대부분 85%를 상회하였는데 특히 2차 피해의 경우 최근에 강화된 교육내용인데, 10명 중 9명은 2차 피해의 개념과 예방 노력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예방교육의 피로도 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 90% 가까이 교육을 통한 본인의 변화를 직접 응답한바, 예방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체보다 약 10%p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다.



[그림 IV-10]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한 본인의 변화(전체, 기관유형)

#### 마) 성희롱 예방교육의 효과

가장 최근에 받았던 성희롱 예방교육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매우 효과가 있었다’ 26.1%, ‘약간 효과가 있었다’ 58.2%로 ‘효과가 있었다’(매우 효과가 있었다 + 약간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이 84.3%였고,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11.9%,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1.2%였다. 2018년 실태조사에서는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이 90.4%여서, 2021년에 6.1%p 감소하였다.

‘효과가 있었다’를 기준으로 소속기관 유형별로 보면 공공기관은 91.6%, 민간사업체는 82.7%로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의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이 다소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 84.4%, 여성 84.2%로 차이가 거의 없었다.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성희롱 예방교육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적었다. 20대 이하 81.5%, 30대 83.4%, 40대 83.6%, 50대 이상 87.0%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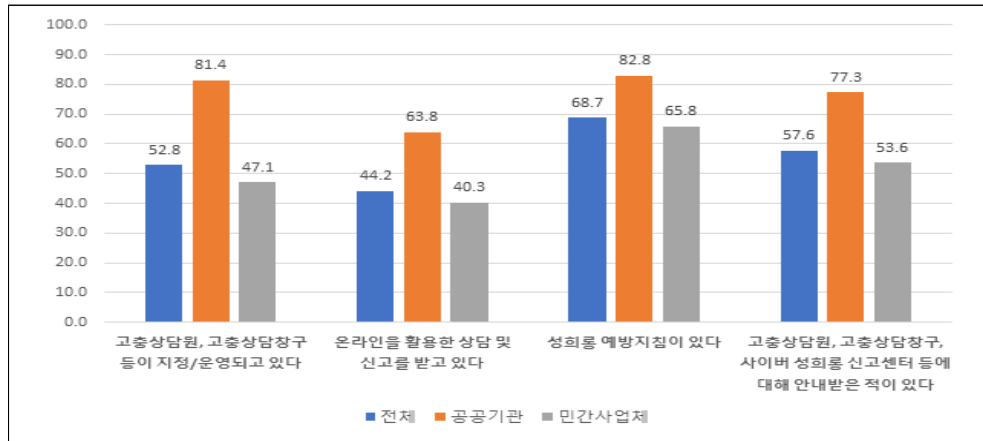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 ‘전혀 효과가 없었다’와 ‘별로 효과가 없었다’라고 응답한 경우에 대해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한 이유를 질문한 결과, ‘매번 동일한 교육내용 이어서’라는 응답이 40.0%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교육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아서’ 37.3%, ‘우리 직장에 맞지 않는 교육내용이어서’ 10.0% 순이었다.

## 6) 직장내 성희롱 방지 업무에 대한 인식

### 가) 성희롱 방지 업무에 대한 인지도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을 기준으로 성희롱 방지 업무 운영현황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였다. 4개 문항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그 결과를 보면, ‘고충상담원, 고충상담창구 등이 지정/운영되고 있다’에 대해 52.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온라인을 활용한 상담 및 신고를 받고 있다’는 44.2%, ‘성희롱 예방지침이 있다’는 68.7%, ‘고충상담원, 고충상담창구, 사이버 성희롱 신고센터 등에 대해 안내받은 적이 있다’는 57.6%였다.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는 건 성희롱 예방지침으로 10명 중 7명 정도가 성희롱 예방지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고충상담원, 고충상담창구, 온라인을 활용한 상담 및 신고 등에 대해서는 10명 중 5명 정도가 인지하고 있었다. 고충상담원, 고충상담창구, 온라인 상담 시스템 등은 성희롱 피해를 경험할 경우 일차적으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조직 내 공식 채널인데, 이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이다. 그간 성희롱 방지 업무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강화를 위한 정책적으로 노력해 왔는데, 여전히 인지도가 높지 않아서 조직 내 성희롱 피해 상담 및 신고를 위한 시스템과 시스템 이용을 위한 안내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이 모든 문항에서 민간사업체보다 20%p 정도 인지도가 높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모든 문항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낮았다. 특히 20대 이하는 ‘고충상담원, 고충상담창구 등이 지정/운영되고 있다’와 ‘온라인을 활용한 상담 및 신고를 받고 있다’에서 30%대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민간사업체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지방자치단체와 초/중/고, 종사자 규모가 작은 민간사업체일수록 성희롱 방지 업무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서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캠페인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림 IV-11] 성희롱 방지 업무 운영에 대한 인식(전체, 기관유형)

#### 나) 외부 신고창구 이용 및 이용 권유 의사

본인이나 주변인이 성희롱을 경험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 여성가족부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등 외부에 있는 신고창구를 이용하거나 이용을 권유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77.8%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 92.1%, 민간사업체 75.0%가 외부에 있는 신고창구를 이용하거나 이용을 권유할 생각이 있었다. 민간사업체에선 24.5%가 ‘없다’고 응답해 4명 중 1명은 외부 기구를 이용 혹은 이용을 권유할 생각이 없었다. 성별로는 남성 75.9%, 여성 80.9%로 여성이 다소 높았다.

#### 다) 직장 내 고충상담창구 이용 및 고충상담원 상담 권유 의사

본인이나 주변인이 성희롱을 경험할 경우, 내부 고충상담창구를 이용하거나 고충상담원에게 상담하도록 권유할 생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75.8%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2018년 실태조사에서는 86.4%였는데 다소 하락하였다. 이는 공공기관도 2018년 93.0%, 2021년 91.3%로 다소 하락하긴 했지만, 민간사업체에서 2018년 85.1%에서 2021년 72.7%로 12.4%p 하락한 것의 영향으로 보인다.

‘있다’ 응답을 기준으로 보면 소속기관 유형별로 공공기관은 91.3%, 민간사업체는 72.7%였다. 10명 중 7명이 내부 고충상담창구를 이용하거나 고충상담원에게 상담하도록 권유할 생각이 있다는 것이 낮다고 볼 수는 없지만, 90%를 상회하는 공공기관 응답률을 고려할 때 이용 의사를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이용하지 않으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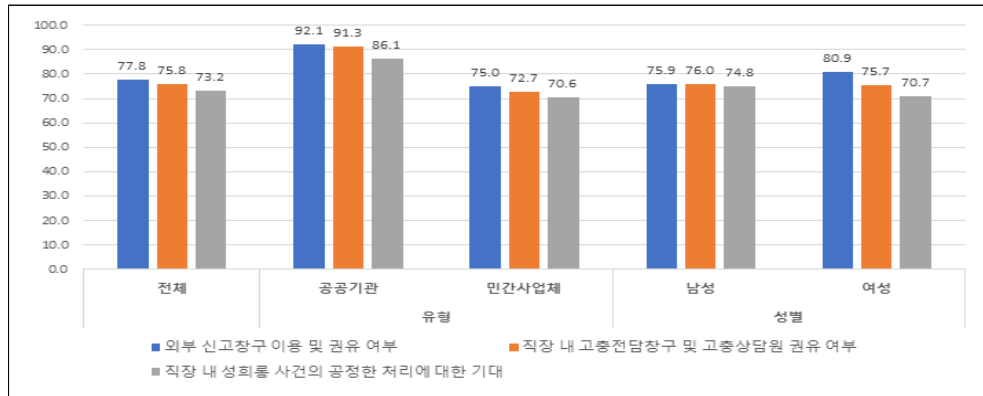
것은 신뢰도의 이슈일 수 있어서, 민간사업체의 직장내 성희롱 방지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 라)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에 대한 기대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다면 사내절차를 통해 공정한 사건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73.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 민간사업체, 여성, 비정규직, 지방자치단체, 개인서비스업, 100~299인 규모의 민간사업체에서 사내절차를 통해 공정한 사건처리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사내절차를 통해 공정한 사건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해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 공정한 사건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복수응답), ‘성희롱 사건 전담기구/전담자의 전문성이 낮기 때문’(27.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사건처리를 위한 규정,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21.3%), ‘성희롱 사건처리 절차가 준수되거나 조사 등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20.0%), ‘성희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19.4%) 순이었다. 공정한 사건처리에 대한 낮은 신뢰는 전담기구/전담자의 전문성 미흡, 규정과 매뉴얼 부재, 신속한 사건처리 절차운영 미흡, 성희롱을 문제시하지 않는 조직 분위기 등 성희롱 사건처리 역량과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반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다.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응답 경향이 상이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사건축소나 은폐, 회유, 미온적 징계 등 공정한 사건처리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52.7%)이라는 응답이 월등히 높았고, 민간사업체의 경우는 ‘성희롱 전담기구/전담자 역량 부족’, ‘성희롱 사건처리를 위한 규정 및 매뉴얼 부재’, ‘신속한 사건처리 절차운영 미흡’ 등 시스템 미비에 대한 응답이 다수를 이뤘다. 공공기관에서는 사건축소, 은폐와 회유, 미온적 징계 등의 개선이, 민간사업체에서는 성희롱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운영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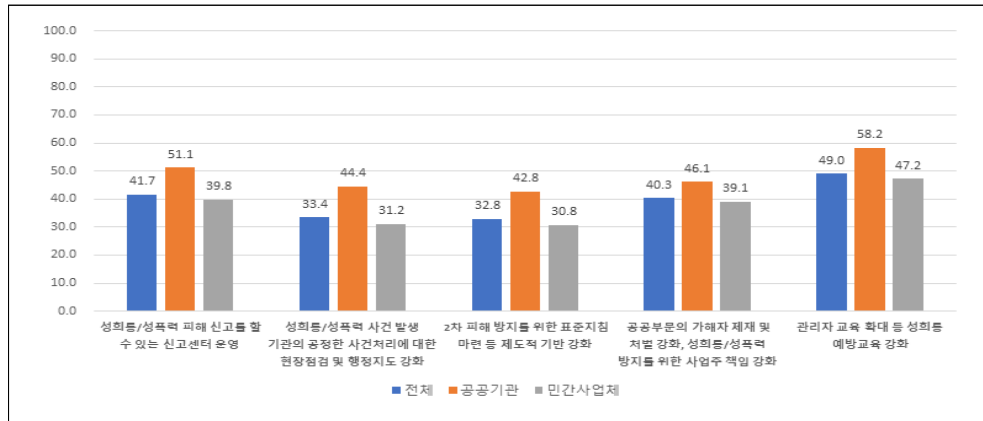


[그림 IV-12] 외부 신고창구 이용 및 이용 권유 의사, 직장내 고충상담창구 이용 및 고충상담원 상담 권유 의사, 직장내 성희롱 사건 처리에 대한 기대(전체, 기관유형)

## 7) 직장내 성희롱 방지 정책 수요

### 가) 정부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 대책 인지도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5개의 주요 대책에 대해 인지도를 조사하였다. ‘내용을 잘 알고 있다’의 응답을 기준으로 결과를 보면,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는 신고센터 운영’은 41.7%,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기관의 공정한 사건처리에 대한 현장 점검 및 행정지도 강화’는 33.4%,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표준지침 마련 등 제도적 기반 강화’는 32.8%, ‘공공부문의 가해자 제재 및 처벌 강화,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주 책임 강화’는 40.3%, ‘관리자 교육 확대 등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는 49.0%였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50%에 미치지 못해, 절반 정도는 전혀 모르거나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투 이후 우리 사회의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노력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일반 국민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3] 정부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정책에 대한 인지도(전체, 기관유형)

#### 나) 정부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 대책의 실효성

정부의 성희롱 방지를 위한 주요 대책 5개 모두에 대해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정부의 직장내 성희롱 방지 대책이 직장내 성희롱 방지에 얼마나 도움 되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매우 도움 되었다’는 응답이 58.6%, ‘약간 도움 되었다’는 응답이 34.5%로 전체적으로 93.1%가 ‘도움 되었다’고 응답하여 10명 중 9명은 정부 대책이 직장내 성희롱 방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 다) 지난 3년간 직장내 성희롱 관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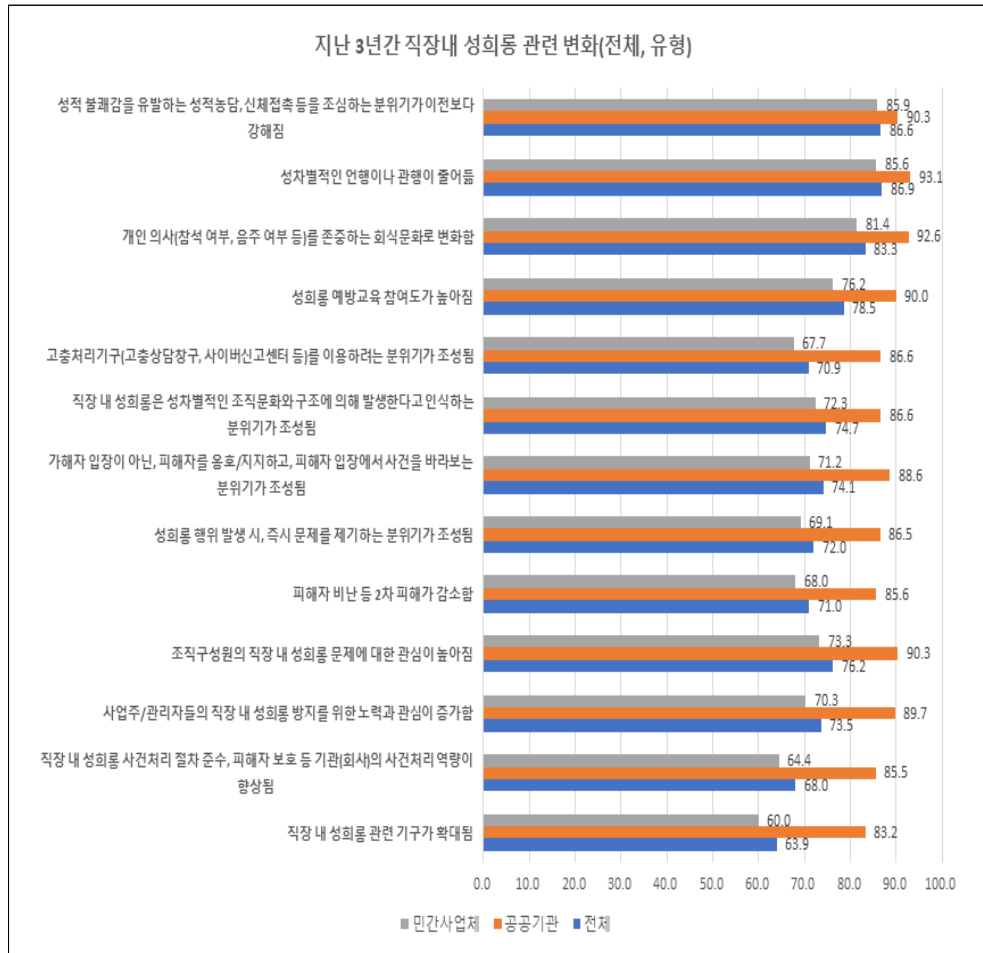
지난 3년간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된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13개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13개 문항에 대해 ‘그렇다’(매우 그렇다 + 약간 그렇다)의 응답 결과를 기준으로 문항의 내용에 대한 동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10명 중 6명 정도가 직장내 성희롱 관련 기구가 확대되거나 사건처리 역량이 향상되었다고 보았다. 10명 중 7명은 사업주/관리자의 직장내 성희롱 방지 위한 노력과 관심이 증가했고, 피해자 입장에서 성희롱 사건을 바라보고 피해자 비난 등 2차 피해가 줄었으며, 성차별적인 조직문화와 구조에서 성희롱이 발생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10명 중 8명 이상은 개인 의사를 존중하는 회식문화 형성, 성차별적 언행이나 관행의 감소, 성적불쾌감을 유발하는 언행을 조심하는 조직문화 형성 등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조직구성원들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도가 높아졌고, 직장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고 보았다.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의 경우 모든 문항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80%를 상회하여 전반적으로 3년 동안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대부분의 문항에서 공공기관에 비해 3년 동안의 변화에 대한 민간사업체의 응답률이 낮았는데, 특히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기구가 확대됨’(60.0%), ‘직장내 성희롱 사건처리 절차 준수, 피해자 보호 등 기관(회사)의 사건처리 역량이 향상됨’(64.4%), ‘고충처리기구를 이용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됨’(67.7%), ‘사업주/관리자들의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노력과 관심이 증가함’(70.3%)은 공공기관과 약 20%p의 차이를 보였다. 반면 ‘개인 의사를 존중하는 회식문화로 변화함’, ‘성차별적인 언행이나 관행이 줄어들’, ‘성적불쾌감을 유발하는 성적 농담, 신체적 접촉 등을 조심하는 분위기가 강해짐’ 등에서 80%를 상회하며 공공기관과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대부분의 문항에서 남성이 다소 높았는데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모든 문항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낮았다. 20대 이하와 50대 이상 간의 응답률 격차가 10%p 이상이어서 직장내 성희롱 관련 변화에 대한 세대간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젊은 층은 개인을 존중하고 성차별적인 언행이나 관행,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행 등은 감소되었지만, 직장내 성희롱 대처와 관련된 인식이나 인프라/시스템에서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모두가 체감하는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정책적 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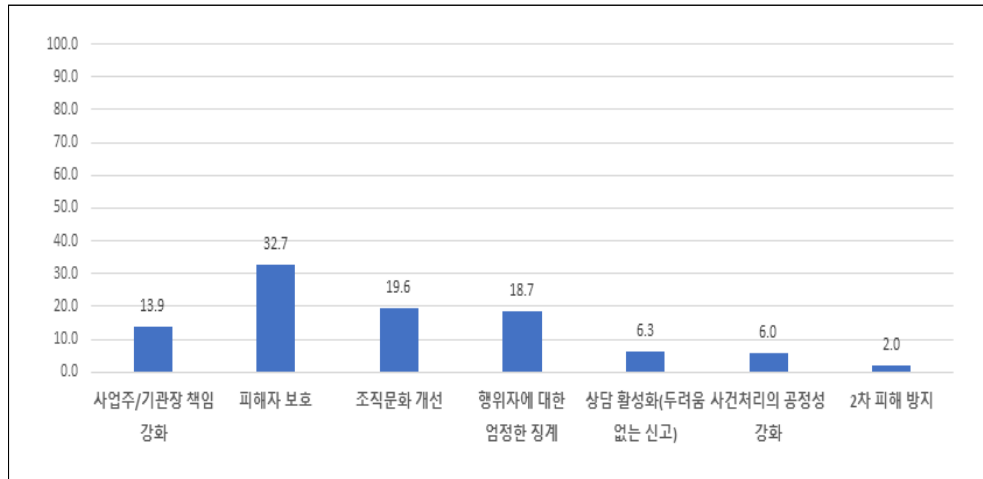
제시된 문항은 3년간 성희롱 방지를 위해 추진된 제도정책의 결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는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 모두 개인 의사 존중, 성차별적 언행과 관행 감소 등의 조직문화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그 외 성희롱 방지 및 사건처리 시스템의 구축·운영, 성희롱 사건과 관련된 기관장 및 구성원의 인식 등에서는 공공기관의 구성원들이 체감하는 변화만큼 민간사업체 구성원들은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해 민간사업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그림 IV-14] 지난 3년간 직장내 성희롱 관련 변화(전체, 기관유형)

#### 라)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정책의 우선순위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1순위)은 ‘피해자 보호’가 32.7%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조직문화 개선’(19.6%),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18.7%), ‘사업주/기관장 책임 강화’(13.9%) 순이었다. 소속기관 유형, 성별, 연령, 직급, 고용형태 등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고 대체로 전체 응답 경향과 유사했다.



[그림 IV-15]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의 우선순위(전체)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사업주/기관장, 관리자를 포함한 전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27.3%)였다. 그다음은 ‘고용상 성차별 근절, 성평등 촉진을 위한 인사관리 제도 개선’(17.4%), ‘성차별적 조직문화 개선 위한 캠페인 실시’(13.0%), ‘성평등 감수성 진단 위한 자가체크리스트 보급 및 점검 활성화’(12.7%) 순이었다.

성희롱 피해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사이버 상담, 별도공간 마련 등 안전한 상담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22.7%)과 ‘피해자 정보 공개,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따돌림 등 직장내 2차 피해 방지’(22.6%)였다. 그다음은 ‘고충상담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14.1%), ‘고충상담원의 전문성 및 성인지 감수성 강화’(12.3%) 순이었다.

성희롱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신고-조사-징계 등 신속한 사건처리 절차운영’(33.6%)이었다. 그다음은 ‘행위자에 대한 엄중 조치(실질적 징계)’(28.1%), ‘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18.0%), ‘외부전문가/외부전문기관 활용 및 참여 강화’(15.2%) 순이었다.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2차 피해에 대한 전직원 교육 실시’(20.8%)였다. 그다음은 ‘2차 피해의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19.3%), ‘2차 피해 실태 파악’(16.7%), ‘2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시행’(13.2%) 순이었다.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39.9%)였다. 그다음은 ‘피해자의 배치 전환(부서, 업무 등)’(17.1%), ‘피해자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상담, 의료 등 지원’(14.5%), ‘피해자에 대한 휴가, 휴직 부여’(11.2%) 순이었다.

## 8)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과 경험

일·가정양립, 위계 문화 등 7개 문항으로 일반적인 조직문화에 대한 생각을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응답자들이 속한 조직의 약 30% 정도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등의 사용이 어렵고, 회식 등 업무시간 외 모임에 참석해야 하고, 사생활에 관해 묻는데 거리낌이 없고, 업무시간 외에 사적인 연락을 주고 받는 조직문화를 갖고 있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큰소리를 내거나 폭언을 자주 있다는 응답은 10% 정도였고, 성희롱이나 성차별 고충을 제기하면 불이익을 받을 거 같다는 응답은 20% 정도였다. 고충이나 불만을 스스럼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응답은 50% 정도였다.

조직내 주요 분야에서의 남성 혹은 여성에게 불리한 정도를 채용/업무배치/승진/보직 및 인사이동/비공식 네트워크/고위직과의 업무 기회 등 6개 항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하다는 응답을 보면 채용 기회 74.6%, 핵심업무에 배치될 기회 73.8%, 승진기회 68.5%, 유리한 보직 또는 인사이동의 기회 73.3%,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한 중요한 정보 수집 기회 78.9%, 영향력 있는 고위직/관리자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 75.5%로 나타났다. ‘남성에게 불리함’의 응답은 6개 문항에서 남녀 모두 5% 내외로 매우 낮았던 반면, ‘여성에게 불리함’은 대부분 문항에서 남녀 모두 20% 내외로 응답하였다.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불리하다고 보고 있었는데, 승진기회에서 여성이 불리하다는 여성의 응답이 30%를 상회하였다. 성별로는 문항별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채용 기회에서는 여성(16.3%)보다 남성(20.1%)이 여성에게 불리하다고 보는 비율이 높았다. 그 외 문항들에서는 여성의 ‘여성에게 불리함’의 응답이 남성보다 높았다. 특히 보직 또는 인사이동 기회(남성 17.2%, 여성 26.2%)에서 약 10%p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 기반한 부정적인 언행 경험에 대해선 지난 3년간 타인으로부터 6개 문항의 성별에 기반한 부정적인 언행으로 조사하였는데, 경험이 ‘있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보면, ‘차 심부름, 청소, 짐 나르기 등을 특정 성별에게 주로 시킴’ 14.1%, ‘여성/남성의 역할을 당연시함’ 9.5%, ‘여성다움/남성다움을 강요하거나 비난함’ 7.9%, ‘아줌마, 아가씨, 아저씨 등의 호칭을 들음’ 7.7%, ‘여성/남성을 비하하거나 무시함’ 7.0%로 나타났다.

## 9) 조직문화 특성과 성희롱 피해와 대응

공공기관/민간사업체의 조직문화 특성에 따라 구성원의 성희롱 피해 경험 및 발생 시 대응, 성희롱 대응체계에 대한 신뢰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앞서 살펴본 조직문화 특성 중 일부 문항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조직문화 특성은 크게 일반적인 조직문화와 성별 분리 경험으로 구분하였다. 일반적 조직문화 특성으로는 △집단주의 문화 △위계적 문화 △사생활 침해 문화의 유무, 성별 분리 경험은 △차 심부름, 짐 나르기 등을 특정 성별에게 주로 시키는 성별 업무 분리 △남성=가장, 여성=양육자 등으로 성역할 분리를 당연시하는 경우를 경험했는지 여부에 따라 성희롱 피해 및 대응 양상, 성희롱 대응체계 신뢰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조직문화 특성에 따른 성희롱 피해 실태를 보면, 위와 같은 조직문화가 있고 성별 분리 경험이 있을수록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특히 '위계적 문화'가 있는 조직에서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더 많았는데, 이는 성희롱이 조직에서 강한 권력 관계가 발현되는 방식의 하나임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 일반적 조직문화 특성에 비해 '성별 업무 분리'나 '성역할 분리'를 당연시하는 분위기에 따라 성희롱 피해 경험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 조직 구성원을 성별로 특정하여 업무를 구분하거나 전형적 성역할을 기대하는 문화 속에서 성적 언동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2차 피해 발생 실태의 경우도, 대체로 조직문화가 부정적일수록 성희롱 피해 이후 2차 피해의 경험률이 높았고, '위계적 문화'가 있는 조직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2차 피해는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를 수용하는 조직의 태도와 관련된다고 볼 때, 이러한 태도는 집단주의, 위계적 문화 등의 조직문화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 성별 분리 경험에 따른 차이는 공공기관에서만 차이 뚜렷하고 민간사업체에서는 성별 분리 경험이 없는 경우 오히려 2차 피해 경험률이 높았다.

다음으로 성희롱 피해 당시 또는 발생 이후 구성원의 대처유형이 조직문화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성희롱 피해 당시의 행동을 보면,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다는 응답이 대체로 가장 많은 가운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 간에 차이가 있었다. 공공기관에서는 조직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성별 분리 경험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지하기보다 자리를 피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 경우가 더 많았고, 민간사업체에서는 일관된 차이 없거나 반대 양상이 나타나기도 해, 피해 당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대처 행동과 조직문화의 관련성은 뚜렷하지 않은 편이었다.

이와 달리 성희롱 피해 당시 목격자의 행동 양태는 조직문화 특성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조직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성별 분리 경험이 있는 경우, 목격자가 성희롱 행위자의 행동을 방조 또는 동조했다는 응답이 더 많고 제지했다는 응답은 더 적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사생활 침해 문화'가 있는 경우, 민간사업체에서는



'집단주의 문화'가 있는 경우, 목격자가 방조 또는 동조했다는 응답이 더 많아 이러한 조직문화가 성희롱 발생 시 구성원의 적극적 대처를 억제할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성희롱 피해 경험 이후 대처유형의 차이를 보면, 개인적·조직적 대응 없이 참고 넘어갔다는 응답이 많은 가운데, 대체로 조직문화가 부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성별 분리 경험이 있는 경우에 참고 넘어갔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특히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행위자에 사과 요구 등 개인적 처리, 동료에게 알리고 의논하거나 공적 대응체계를 이용하는 등 어떤 유형의 대처도 공공과 민간 모두에서 더 적게 나타났다. 이는 집단적 소속감과 일체감을 강조하는 문화에서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가 억압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어서 참고 넘어간 이유를 보면 대체로 조직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성별 분리 경험이 있는 경우, '대처 방법을 몰라서'라는 응답은 적고 '성희롱 문제제기에 대한 조직의 묵인이나 부적절한 대처를 우려해서', '비난·따돌림·불이익을 우려해서'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즉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를 수용하는 조직의 태도나 피해자에 대한 태도를 불신하기 때문에 참고 넘어갔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은 것이다. 성별 분리를 경험한 경우, 이에 대한 불신뿐 아니라 행위자와의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 또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에서 성희롱이 성역할 수행 요구의 일환으로 자연스럽게 여겨질 경우, 이를 문제 삼기 어렵고 피해 당사자가 문제제기를 두려워할 가능성 역시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성희롱 피해 경험으로 인한 영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조직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성별 분리 경험이 있는 경우 특별한 영향이 없었다는 응답은 적고, 업무 집중도 저하, 퇴직 고려 등 직장생활에의 영향이 있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즉 성희롱 피해로 인한 부정적 영향, 특히 직장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조직의 조직문화에 따라 더 증폭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조직문화 특성에 따른 성희롱 대응체계에 대한 신뢰도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조직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성별 분리 경험이 있는 경우, 대체로 기관장/사업주가 성희롱 방지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특히 민간사업체보다 공공기관에서, '위계적 문화'와 '성역할 분리' 경험이 있는 경우 조직문화에 따른 차이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집단적·위계적 조직문화가 강하고 남녀 구성원에게 전형적 성역할을 강조하는 기관/사업체일수록 기관장/사업주의 성희롱 대응 의지가 낮을 가능성이 높거나 노력을 해도 조직원의 체감도가 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조직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성별 분리 경험이 있는 경우, 외부 신고창구든 조직 내부의 고충처리절차든, 공식적 대응체계를 이용하거나 이용을 권유할 의사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문화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성희롱 피해 경험 시 어떤 대처를 하기보다 참고 넘어간 경우가 많았다는 앞의 결과와도 연결된다. 특히 조직문화 특성은 외부 신고창구보다 조직 내부 고충처리절차 이용 의사와의 관련성이 더 높았고, 민간사업체보다 공공기관에서 차이가 더 뚜렷했다. 또 공공기관은 ‘집단주의 문화’에 따른 절차 이용 의사의 차이가 가장 크고, 민간사업체는 ‘위계적 문화’에 따른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공공기관에서는 획일성을 강조하는 문화가, 민간사업체에서는 권위적인 분위기가 성희롱 문제에 대한 공식적 대응을 억제하는 데 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조직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성별 분리 경험이 있는 경우, 조직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공정한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 또한 낮았는데, 그 이유는 사건처리 절차나 전문성에 대한 신뢰 문제보다는 조직의 공정한 처리 의지 자체에 대한 불신, 성희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문화 때문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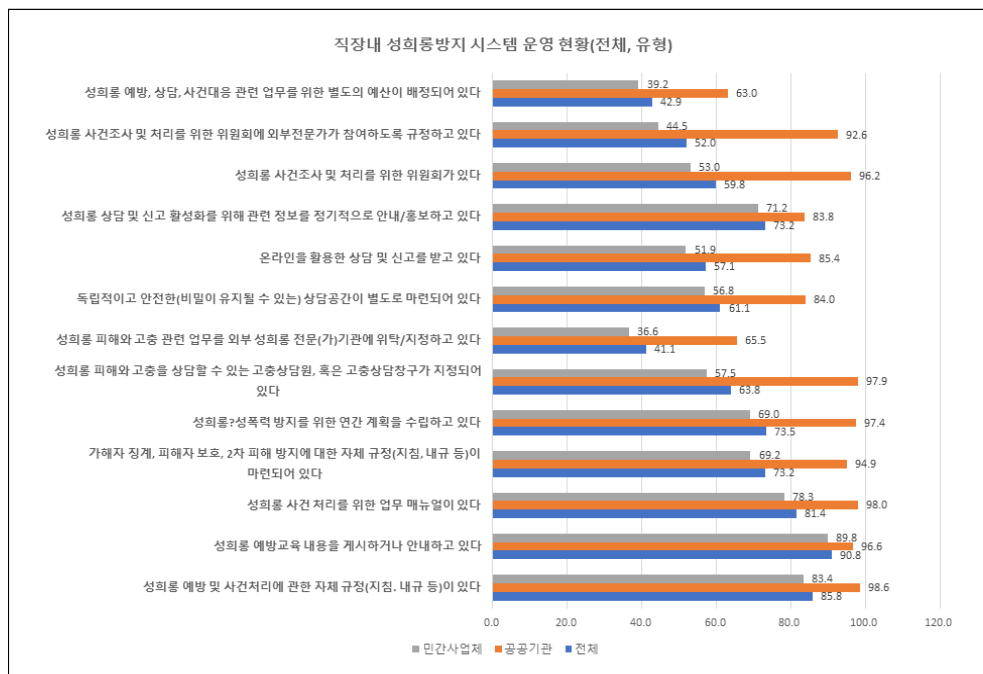
이상의 분석 결과는 집단적·위계적 문화나 사생활 침해 문화가 강하고 구성원을 성별에 따라 분리하여 업무나 역할을 구분하는 문화가 있을 경우 성희롱 피해의 발생 가능성도 크지만, 조직적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또한 억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성희롱 방지뿐 아니라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직적 문제 해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도 조직문화 개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는 구성원의 성별에 따라 업무나 일·가족 역할을 분리하는 관행 개선뿐 아니라, 집단주의, 위계적 문화, 사생활 침해 문화 등 조직 전반에서 자율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조치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업무담당자 조사결과

### 1)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시스템 운영 현황

13개 문항으로 직장내 성희롱 방지 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 결과를 보면,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을 게시하거나 안내하고 있다’(90.8%),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에 관한 자체 규정(지침, 내규 등)이 있다’(85.8%), ‘성희롱 사건처리를 위한 업무매뉴얼이 있다’(81.4%)는 80% 이상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성희롱 예방, 상담, 사건대응 관련 업무를 위한 별도의 예산이 있다’(42.9%)와

‘성희롱 피해와 고충 관련 업무를 외부 성희롱 전문기관(전문가)에 위탁/지정하고 있다’(41.1%)는 50%를 밑돌았고 그 외 문항들은 50~70%대로 나타났다. ‘가해자 징계,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자체 규정(지침, 내규 등)이 있다’(73.2%),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73.5%), ‘성희롱 상담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안내/홍보하고 있다’(73.2%)는 70%대였다. ‘성희롱 피해와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고충상담원 혹은 고충상담창구(OO부서, OO노조)가 지정되어 있다’(63.8%), ‘독립적이고 안전한(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상담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61.1%)는 60%대, ‘성희롱 사건조사 및 처리를 위한 위원회가 있다’(59.8%), ‘온라인을 활용한 상담 및 신고를 받고 있다’(57.1%), ‘성희롱 사건조사 및 처리를 위한 위원회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52.0%)는 50%대였다. 고충상담창구, 고충상담원의 지정, 독립적이고 안전한 상담공간 마련, 성희롱 사건처리를 위한 위원회 운영, 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참여 등은 성희롱 대응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로서 강조되어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50~60% 수준이어서 성희롱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2018년 실태조사 결과와도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그림 IV-16]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시스템 운영 현황(전체, 기관유형)

2021년 실태조사에서는 3년 동안 확대된 직장내 성희롱 방지 시스템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2018년 대비 조사 문항이 늘어났는데, 유사한 문항에 대해서만 비교해 보면, 규정이나 매뉴얼 마련에서는 10%p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에 관한 자체 규정(지침, 내규 등)이나 성희롱 사건처리를 위한 업무 매뉴얼 등을 마련하면서 증가한 것인데 반면, 성희롱 사건조사와 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참여하는 규정 마련, 성희롱 사건조사 및 처리 위한 위원회 구성, 성희롱 관련 별도 예산 마련 등에서는 변화가 크지 않았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직장내 성희롱 방지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률이 낮은 건 공공기관은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반면, 민간사업체의 성희롱 방지 업무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한편 공공기관이 대부분 90%를 상회할 정도로 시스템이 구축·운영되고 있었지만, 온라인 상담, 안전한 상담공간 마련, 상담 및 신고를 위한 정기적인 안내, 성희롱 방지 업무 관련 별도 예산 확보 등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2) 성희롱 고충 상담 현황

### 가) 성희롱 고충 상담 현황

지난 3년간(2018년 8월~2021년 7월) 성희롱 관련 고충상담 건수를 질문하였다. 자발적으로 상담을 요청하거나 상담원이 인지하여 상담을 실시한 경우 모두를 포함하며, 후속 상담에 대해서 동일 건으로 간주하였다. 1건도 없었던 비율은 94.6%였고, 1건 이상 있었던 비율은 5.4%였다. '1건 이상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 지난 3년간의 고충상담 건수를 보면, 총 11,715건이었다. 공공기관에서는 6,251건(11,715건 중 53.4%)이었고, 민간사업체는 5,464건(11,715건 중 46.6%)이었다. 공공기관 유형에서는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458건(6,251건 중 13.6%)으로 가장 적었다. 민간사업체 업종 규모에서는 30~99인에서 2,971건(5,464건 중 54.4%)으로 가장 많았다.

### 나) 성희롱 고충 상담 이후 조치

성희롱 관련 고충상담이 있었던 경우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조치율)을 기준으로 보면, '피해자에게 조사 및 구제 방식을 안내한다'(94.0%), '상담내용에 대해 비밀 유지될 것임을 안내한다'(94.1%),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방식에 대해 청취한다'(96.8%), '성희롱 발생 인지시 즉각 성희롱

업무 관련 상급자에게 보고한다'(92.0%) 등은 90%를 상회하였다. 그러나 '상담내용을 기록하여 정리한다'(85.7%)와 '고충상담 접수 내용을 정기적으로 사업주/기관장에게 보고한다'(83.9%)는 80%대였다.

### 3) 성희롱 사건처리 현황

#### 가) 성희롱 사건 발생 현황

지난 3년간(2018년 8월~2021년 7월)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는지 조사하였다. 담당 부서에 접수되어 처리된 사건뿐 아니라 고충상담원, 담당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거나 외부 경로를 통해 인지된 사건 등을 모두 포함하였다. 그 결과, 1건도 없었던 비율은 95.3%였고, 1건 이상 있었던 비율은 4.7%였다.

#### 나) 성희롱 사건처리 현황

사건 발생-조사-심의-인정의 단계에 따른 사건처리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성희롱 사건이 1건 이상 발생 된 경우에 한해 조사가 진행된 성희롱 사건 수, 성희롱 사건심의를 위한 위원회가 개최된 사건 수, 위원회를 통해 성희롱으로 인정된 건수를 조사하였다.

먼저 지난 3년간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는지 조사하였다. 이때 담당 부서에 접수되어 처리된 사건뿐 아니라 고충상담원, 담당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거나 외부 경로를 통해 인지된 사건 등을 모두 포함하였다. 지난 3년 동안 성희롱 발생 건수는 총 7,651건이었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공공기관은 4,327건(7,651건 중 56.6%), 민간사업체는 3,324건(7,651건 중 43.4%)이었다.

조사가 진행된 성희롱 사건 수는 총 6,028건이었다.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 3,159건(6,028건 중 52.4%), 민간사업체 2,869건(6,028건 중 47.6%)이었다.

성희롱 사건심의를 위한 위원회가 개최된 사건 수는 총 4,407건이었다.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 2,476건(4,407건 중 56.2%), 민간사업체 1,931건(4,407건 중 43.8%)이었다.

성희롱 사건 심의위원회를 통해 성희롱으로 인정된 건수는 총 3,708건이었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공공기관은 2,121건, 민간사업체는 1,587건이었다.

#### 4) 성희롱 사건 조사 현황

##### 가) 조사신청~조사종료까지의 소요시간

지난 3년(2018년 8월~2021년 7월) 동안 조사가 진행된 사건 수가 1건 이상인 경우 조사신청(사건신고, 사건접수 등) 후 조사가 개시되기까지 평균적으로 소요된 기간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7.41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 8.45일, 민간사업체 6.65일이었다.

조사개시로부터 조사 종료까지의 소요 시간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평균 19.05일이었다.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 19.89일, 민간사업체 18.45일이었다.

##### 나) 성희롱 사건 조사 진행자

지난 3년 동안 조사가 진행된 사건 수가 1건 이상인 경우 통상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복수응답)를 조사하였다.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고충처리 담당부서’가 55.6%로 가장 많았고, ‘고충상담원’(54.9%), ‘감사실(감사업무 담당자)’(18.8%) 순이었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거나(15.4%)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9.7%) 경우도 있었다.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의 경우 ‘고충상담원’(76.2%)이 가장 많았고, ‘고충처리 담당부서’(49.0%), ‘외부 전문가가 조사자로 참여’(20.6%)하거나 ‘감사실(감사업무 담당자)’(16.9%) 순이었다. 민간사업체의 경우 ‘고충처리 담당부서’(60.4%)가 많았고, 그다음은 ‘고충상담원’(39.6%), ‘감사실(감사업무담당자)’(20.2%) 순이었다.

##### 다) 성희롱 사건 조사 진행상황의 피해자 안내 여부

지난 3년 동안 조사가 진행된 사건수가 1건 이상인 경우 조사 진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알리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의 요청 여부에 상관없이 알린다’는 응답이 54.6%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알린다’가 44.5%로, ‘알린다’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 5) 성희롱 사건 심의 현황

##### 가) 성희롱 심의 및 판단을 위한 위원회 명칭

지난 3년(2018년 8월~2021년 7월) 동안 성희롱 사건 심의를 위한 위원회가 개최된 사건이 있는 경우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심의 및 판단 등을 논의하는 위원회의 명칭을 질문

하였다. 그 결과, ‘고충심의위원회/성희롱심의위원회’가 64.4%로 가장 많았고, ‘인사위원회’ 14.3%, ‘징계위원회’ 14.0% 순이었다.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의 경우 88.2%가 ‘고충심의위원회/성희롱심의위원회’였고, 민간사업체의 경우 ‘고충심의위원회/성희롱심의위원회’ 44.8%, ‘인사위원회’ 25.7%, ‘징계위원회’ 23.0% 순이었다. 민간사업체에서 성희롱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고충심의위원회가 아닌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판단하는 비율이 50% 정도여서, 성희롱 사건심의를 위한 별도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 나) 성희롱 심의 및 판단을 위한 위원회 구성원

지난 3년간 성희롱 사건심의를 위한 위원회가 개최된 사건이 있는 경우 성희롱 여부의 심의 및 판단을 위한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복수응답) 질문하였다. 그 결과, ‘임원 및 관리자급’(73.2%), ‘성희롱 관련 외부 전문가’(55.8%), ‘사업주/기관장’(37.4%), ‘인사부서 담당자’(29.6%), ‘감사부서 담당자’(18.6%) 순이었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공공기관에서는 ‘성희롱 관련 외부 전문가’(84.2%), ‘임원 및 관리자급’(78.6%), ‘사업주/기관장’(37.6%), ‘인사부서 담당자’(25.6%), ‘감사부서 담당자’(19.8%) 순이었다. 민간사업체는 ‘임원 및 관리자급’(68.7%)이 월등히 많았고, 그다음은 ‘사업주/기관장’(37.2%), ‘인사부서 담당자’(32.8%), ‘성희롱 관련 외부 전문가’(32.4%) 순이었다.

#### 다) 성희롱 심의 및 판단, 행위자 징계 시 피해자 의견 청취 및 확인 여부

지난 3년간 성희롱 사건 심의를 위한 위원회가 개최된 사건이 있는 경우 성희롱 심의 및 행위자 징계 결정 등의 절차에서 사전청취 결과보고, 서면 제출, 출석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확인했는지를 질문하였다. ‘그렇다’(매우 그렇다+약간 그렇다)의 응답 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먼저 성희롱 심의 판단할 때 ‘그렇다’는 응답이 97.1%였다.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 98.6%, 민간사업체 95.9%였다.

성희롱 행위자 징계 결정할 때는 ‘그렇다’는 응답이 85.7%였다.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 81.4%, 민간사업체 89.3%였다.

### 6) 행위자 및 피해자에 대한 조치 현황

#### 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 내용

지난 3년(2018년 8월~2021년 7월) 동안 1건 이상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성희롱

사건 행위자에 대한 조치 내용(복수응답)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성희롱 사건 행위자에 대한 조치 건수는 총 10,657건이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재발방지교육’이 2,513건(23.6%)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인사조치(배치전환)’ 1,725건(16.2%), ‘당사자 합의로 종료’ 1,545건(14.5%), ‘중징계(정직, 해고 등)’ 1,493건(14.0%), ‘경징계(견책, 감봉 등)’ 862건(8.1%)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재발방지교육, 인사조치 등의 비중이 높았고 경징계보다는 중징계가 더 많았다.

#### 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조치 내용

지난 3년 동안 1건 이상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복수응답)에 대해 파악하였다. 그 결과,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건수는 총 6,818건이었다. 다만 조사표상에 제시된 응답보기 4개 항목 이외에 기타 응답이 22.8%로 나타나 실제 현장에서는 보다 다양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본 조사 결과는 기재된 응답 보기를 중심으로 기술함을 밝힌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많이 이뤄진 조치는 ‘근무장소 변경’(1,855건, 27.2%)이었다. 그다음은 ‘의료, 상담지원’ 1,310건(19.2%), ‘배치전환’ 1,266건(18.6%), ‘유급휴가’ 829건(12.2%) 순이었다.

### 7)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 수립 현황

#### 가)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 수립 여부

지난 3년(2018년 8월~2021년 7월) 동안 1건 이상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76.3%였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보면 공공기관은 68.1%였고, 민간사업체는 82.2%로 공공기관이 14.1%p 낮았다.

#### 나)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 추진 내용

지난 3년 동안 1건 이상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여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했다고 응답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을 어떤 내용으로 추진했는지(복수응답) 질문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76.8%)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교육’(59.2%), ‘2차 피해방지 모니터링’(37.2%), ‘성희롱·성폭력방지 관련 규정 정비’(31.1%),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가이드 마련 및



캠페인 실시'(25.1%) 순이었다.

소속기관 유형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교육'의 비중이 높았고, 민간사업체는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비중이 높았다.

#### 다)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의 여성가족부 제출 여부

공공기관에 한해 지난 3년 동안 1건 이상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여성가족부에 제출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7.8%였다.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60.6%로 가장 높았고, 국가기관 42.4%, 초/중/고 36.7%, 대학 23.8%였다.

### 8) 2차 피해 대응 현황

#### 가) 회사/기관에서의 2차 피해 대처

업무담당자가 2차 피해를 전해 듣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기관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질문한 결과,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27.7%였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공공기관은 4.4%, 민간사업체는 41.4%로, 이는 공공기관의 경우 업무담당자가 2차 피해를 전해 듣거나 목격한 경우 대부분 기관에서 대처한 반면, 민간사업체는 기관에서 대처했다는 응답이 60% 정도로 민간사업체의 2차 피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을 볼 수 있다.

기관에서 대처한 내용(복수응답)을 살펴보면, '2차 피해 행위에 대한 조사 실시'(27.4%)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2차 피해에 대한 전직원교육 실시'(25.9%), '2차 피해 실태 파악'(25.1%), '2차 피해 행위자에 대한 분리 조치'(23.8%) 순이었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공공기관은 '2차 피해에 대한 전직원교육 실시'(44.5%)와 '2차 피해 행위에 대한 조사 실시'(40.4%)가 많았고, 민간사업체는 '2차 피해 실태 파악'(24.5%)과 '2차 피해의 행위자에 대한 분리 조치'(23.1%)가 많았다. '2차 피해 중단에 대한 사업주/기관장의 입장 발표(선언)'는 민간사업체와 공공기관 어디에서도 없었다.

#### 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매뉴얼, 규정 등 마련 여부

지난 3년간의 성희롱 사건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질문하였다.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매뉴얼, 규정 등이 마련되었거나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54.1%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절반 수준에 그쳤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공공기관은 73.1%, 민간사업체는 50.6%였다.

## 9) 성희롱 예방교육 운영 현황

### 가)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및 미 실시 이유

지난 한 해(2020.1.1.~2020.12.31.) 동안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는지 질문한 결과, 92.3%가 ‘1회 이상 실시했다’고 응답하였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1회 이상 실시했다’는 비율은 공공기관 99.0%, 민간사업체 91.1%였다. 2018년 실태조사에서는 ‘1회 이상 실시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4%였고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은 99.7%, 민간사업체는 94.6%였다.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해서’라는 응답이 71.5%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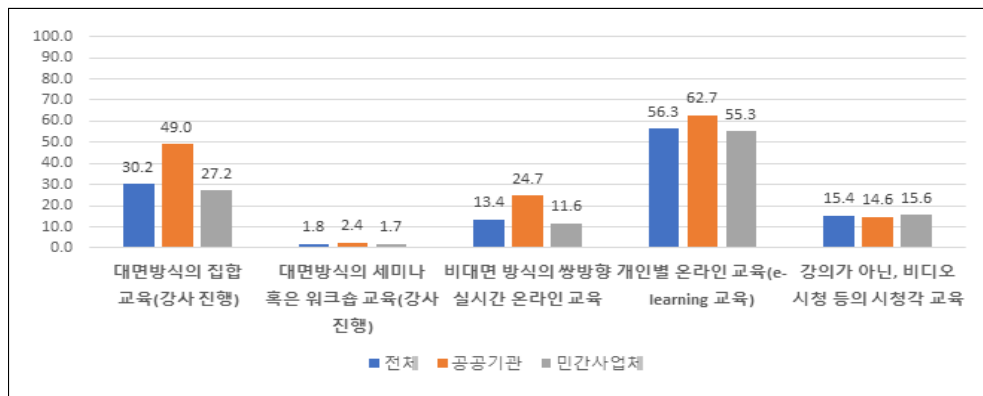
### 나)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방식 및 교육방법

지난 1년간(2020.1.1.~2020.12.31.)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의 진행방식을 조사한 결과, ‘교육시간을 따로 지정해서 예방교육 내용으로만 진행했다’는 응답이 79.4%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다음은 ‘교육시간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자료를 배포하여 개인적으로 보게 함’ 8.9%, ‘교육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직원 조회나 회의 등에서 관련 내용을 간략히 언급함’ 5.5%, ‘교육시간을 따로 지정해서 금융 및 보험상품 등의 홍보와 함께 진행함’ 2.2% 순이었다. 2018년 실태조사에서 ‘교육시간을 따로 지정해서 예방교육 내용으로만 진행했다’는 응답이 83.6%였는데 2021년에는 79.4%로 4.2%p 감소하였고, ‘교육시간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자료를 배포하여 개인적으로 보게 함’은 2018년에 4.3%였는데 2021년에는 8.9%로 증가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해 별도 시간을 확보해 교육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의 영향으로 보인다. ‘교육시간을 따로 지정해서 금융 및 보험상품 등의 홍보와 함께 진행함’의 경우가 2018년 6.7%였는데 2021년에는 2.2%로 감소하였다.

교육시간을 따로 지정해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한 경우 교육 방법은 무엇이었는지(복수응답)를 조사하였다. ‘개인별 온라인 교육’이 56.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대면방식의 집합교육(강사 진행)’(30.2%), ‘강의가 아닌, 비디오 시청 등의 시청각 교육’

(15.4%), ‘비대면 방식의 쌍방향 실시간 온라인 교육’(13.4%) 순이었다. 2018년 실태조사에서 ‘집합교육’이 76.4%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개인별 온라인 교육 22.6%, 강의가 아닌 비디오 시청 등의 시청각 교육 9.2% 순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교육방법이 크게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 모두 ‘개인별 온라인 교육’과 ‘대면방식의 집합교육(강사 진행)’ 순으로 다수를 이뤘다. 공공기관에서 ‘개인별 온라인 교육’ 62.7%, ‘대면방식의 집합교육(강사 진행)’ 49.0%였고, 민간사업체는 ‘개인별 온라인 교육’ 55.3%, ‘대면방식의 집합교육(강사 진행)’ 27.2%로, 공공기관에서 ‘개인별 온라인 교육’과 ‘대면방식의 집합교육(강사 진행)’ 비중이 더 높았다.



[그림 IV-17]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방법(전체, 기관유형)

#### 다) 성희롱 예방 교육시 직급 구분 여부

지난 1년간(2020.1.1.~2020.12.31.) 성희롱 예방교육을 사업주/기관장, 관리자(임원 등), 직원 등으로 구분/분리해서 진행했는지 질문한 결과, 35.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직급별 맞춤형 교육이 강조되고 있으나 70% 정도가 직급별로 분리해서 교육을 진행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공공기관은 26.1%, 민간사업체는 36.9%였다.

#### 라) 기관장/사업주의 교육 참여 및 운영 의지

지난 1년간(2020.1.1.~2020.12.31.) 실시한 성희롱 예방교육에 사업주/기관장이 참여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88.0%가 참여하였다고 응답하였다. 2018년 실태조사에서는

74.5%였는데 13.5%p 증가하였다. 이는 특히 민간사업체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이 증가한 것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소속기관 유형에서 보면 성희롱 예방교육에 사업주/기관장이 참여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공공기관은 98.7%, 민간사업체는 86.3%였다. 2018년 조사에서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의 교육 참여율은 96.4%, 민간사업체의 경우 사업주의 교육 참여율은 70.5%였다. 2018년과 2021년 모두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체보다 높았지만, 민간사업체는 2018년 대비 2021년에 15.8%p가 증가하였다. 한편 민간사업체 종사자 규모에서는 30~99인 86.3%, 100~299인 87.4%, 300~499인 81.2%, 500인 이상 82.6%로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이 낮아서 종사자 규모가 큰 민간사업체 사업주의 참여도를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기관장이 성희롱 예방교육 운영에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87.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공공기관은 기관장/사업주가 성희롱 예방교육 운영에 높은 관심과 의지를 갖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7.7%였고 민간사업체는 85.3%로, 12.4%p의 차이가 있었다. 공공기관 기관장에 비해 관심과 의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민간사업체 사업주의 관심과 의지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사업주/기관장이 전직원 혹은 업무담당자에게 성희롱 방지를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 운영 강화 등에 대해 직접 지시하거나 언급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63.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앞서 사업주/기관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87.2%가 ‘그렇다’고 응답한 것과 연결해 보면 24.0%p 낮았다.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 67.2%, 민간사업체 62.5%였는데, 사업주/기관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지에서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 간에 10%p 정도의 차이를 보였던 것과 달리, 구체적인 업무상 지시와 언급에서는 그 차이가 4.7%p로 상대적으로 적어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 모두 기관장/사업주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마) 직원의 교육 참여

지난 한 해(2020.1.1.~2020.12.31.) 동안 진행된 성희롱 예방교육의 직원 참여율은 94.2%로, 2018년 89.6%보다 4.6%p 증가하였다. 참여율 구간별로 보면 2018년에 90% 이상이 69.0%였는데 2021년에는 85.0%로 16.0%p 상승하였다. 공공기관에서는 11.4%p(2018년 73.5%, 2021년 84.9%), 민간사업체는 17.0%p(2018년 68.1%, 2021년

85.1%) 증가하였다. 이는 그간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를 의무화하고 지속적으로 참여율 제고를 위해 언론공표 등 환류와 관리를 강화한 결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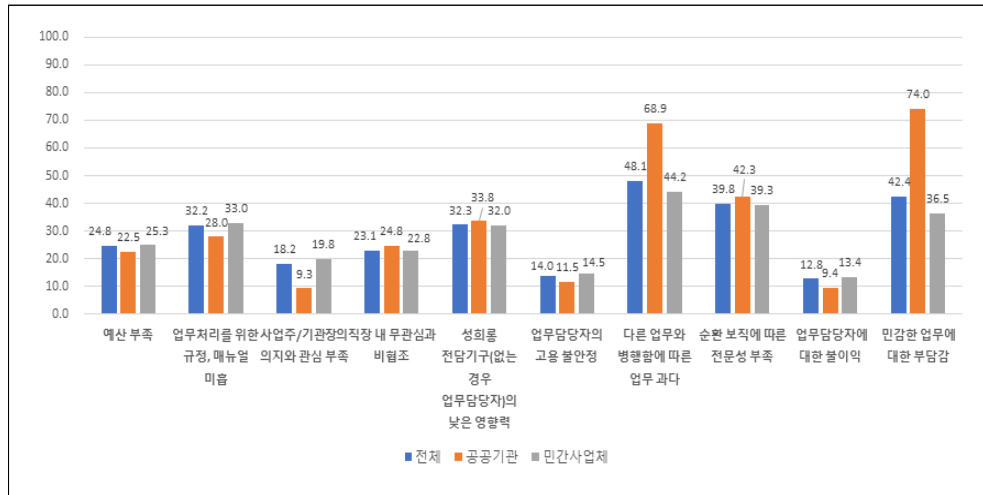
소속기관 유형별로 보면 공공기관은 94.5%, 민간사업체는 94.2%로 직원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에는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의 차이가 거의 없었고, 특히, 민간사업체는 2018년 89.2%에서 5.0%p 증가하였다. 민간사업체 업종이나 종사자 규모에 따른 직원들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 차이는 거의 없었다.

## 10) 성희롱 업무 수행상 어려움

### 가) 성희롱 업무담당자로서의 어려움

성희롱 업무담당자로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10개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그렇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보면, 가장 많이 ‘그렇다’고 응답한 어려움은 ‘다른 업무와 병행함에 따른 업무 과다’(48.1%)였다. 그다음은 ‘민감한 업무에 대한 부담감’(42.4%),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39.8%), ‘성희롱 전담기구의 낮은 영향력’(32.3%), ‘업무처리를 위한 규정, 매뉴얼 미흡’(32.2%) 순이었다. 고용불안정, 업무담당자의 불이익 등도 어려움이었지만, 순환배치, 비전담 등으로 인해 성희롱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구조적인 요인과 이로 인한 전문성 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그리고 민감한 업무에 따른 부담감, 낮은 영향력, 업무 처리에 필요한 규정과 매뉴얼 등 실무적인 차원의 어려움이 더 컸다. 업무담당 기간에 따라 10개 문항의 어려움에 대해 살펴본 결과, 3년 미만일 경우, 겸임일 경우,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모든 문항에서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기관 유형별로 공공기관에서는 ‘민감한 업무에 대한 부담감’(74.0%)과 ‘다른 업무와 병행함에 따른 업무 과다’(68.9%)가 월등히 높았고, 민간사업체는 전체 응답 경향과 유사한 가운데, ‘사업주/기관장의 의지와 관심 부족’에 대한 어려움이 두드러졌다.



[그림 IV-18] 성희롱 업무의 어려움(전체, 기관유형)

#### 나) 성희롱 예방교육 운영에서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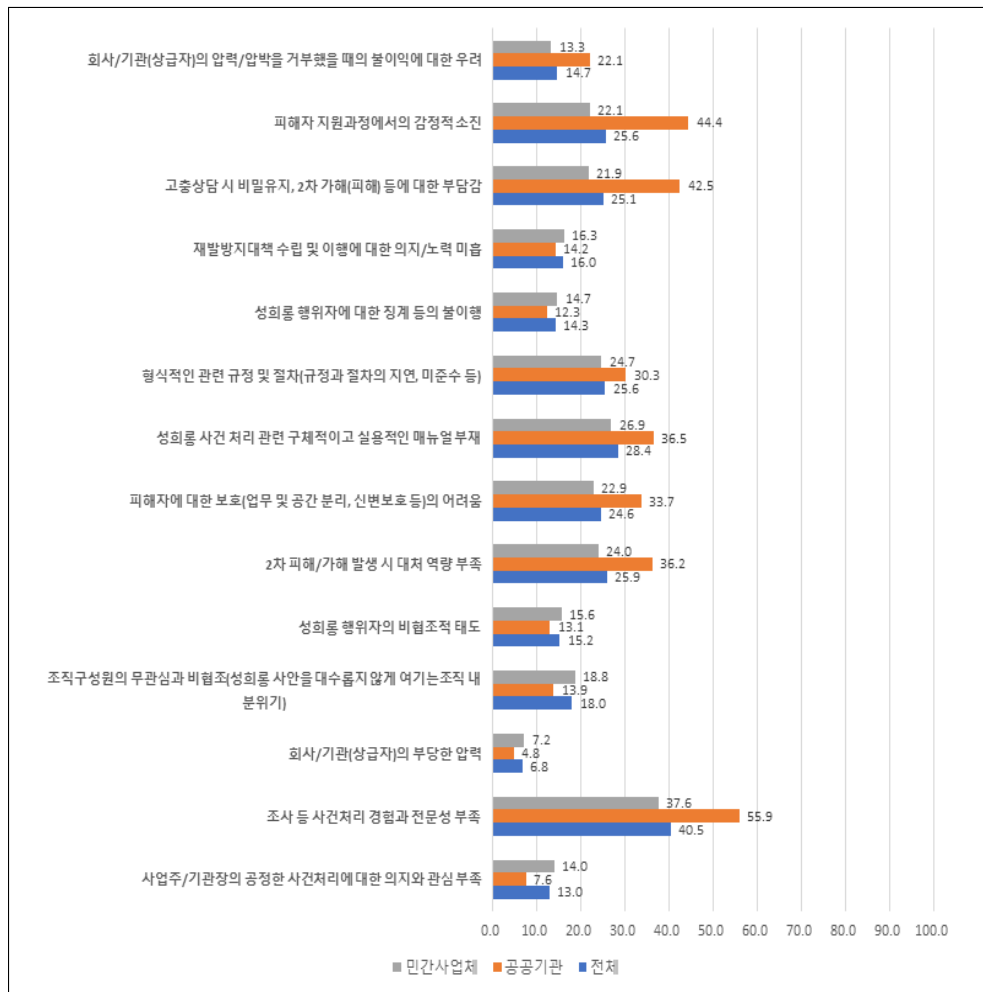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 시 어려움(1순위)에 대해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교육횟수, 교육시간 확보의 어려움’(23.3%)이었다. 그다음은 ‘다양한 교육방식 부족’(13.3%), ‘교육 장비, 시설(강의실, 교육장 등) 부족’(10.9%), ‘직원들의 관심과 참석률 저조’(8.5%), ‘표준 프로그램 부족’(7.3%), ‘사업주/기관장의 무관심과 낮은 참석률’(7.2%) 순이었다. ‘어려움이 없었다’는 응답도 18.9%였다. 2018년 실태조사에서도 ‘교육 시간 부족’, ‘다양한 교육방식 부족’ 순으로 어려움이 지적된 바 있다.

소속기관 기관유형별로 공공기관에서는 ‘교육 횟수, 교육 시간 확보의 어려움’을, 민간사업체에서는 ‘교육장비, 시설 부족’과 ‘사업주/기관장의 무관심과 낮은 참석률’을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

#### 다) 성희롱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어려움

성희롱 사건처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14개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각각의 문항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기준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 등 사건처리 경험과 전문성 부족’(40.5%)이 가장 컸다. 그다음은 ‘성희롱 사건처리 관련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매뉴얼 부재’(28.4%), ‘2차 피해/가해 발생 시 대처역량 부족’(25.9%), ‘형식적인 관련 규정 및 절차’(25.6%)와 ‘피해자 지원과정에서의 감정적 소진’(25.6%), ‘고충 상담 시 비밀유지, 2차 가해(피해) 등에 대한 부담감’(25.1%), ‘피해자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공간 분리, 신변 보호 등)의 어려움’(24.6%) 순이었다. 조사 등 사건처리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 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었지만, 전반적으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와 관련된 어려움의 비중이 컸다.



[그림 IV-19] 성희롱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어려움(전체, 기관유형)

소속기관 유형별로 보면, 14개 문항 중 8개 문항에서 민간사업체보다 공공기관이 높았다. 공공기관의 경우 특히 절반 이상(55.9%)에서 ‘조사 등 사건처리 경험과 전문성 부족’이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그리고 ‘피해자 지원과정에서의 감정적 소진’(44.4%), ‘고충상담 시 비밀유지, 2차 가해(피해) 등에 대한 부담감’(42.5%)이 40%를 상회하였고,

‘성희롱 사건처리 관련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매뉴얼 부재’, ‘2차 피해/가해 발생 시 대처 역량 부족’,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어려움’, ‘형식적인 관련 규정 및 절차’에서 어려움을 호소한 비율도 30%를 상회하였다. 민간사업체는 전체 응답 경향과 유사하였다. 업무 담당자의 업무 담당 기간, 겸임 여부, 교육훈련 이수 여부에 따라 14개 문항의 어려움에 대해 살펴본 결과, 1~3년 미만일 경우 ‘조사 등 사건처리 경험과 전문성 부족’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문항에서 어려움이 컸고,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는 모든 문항에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업무와 겸임일 경우도 5개 문항을 제외한 9개 문항에서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 11)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 인지도 및 정책 수요

#### 가) 정부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대책 인지도

정부가 그간 추진해 온 5개의 주요 대책에 대해 인지도를 조사하였다. ‘내용을 잘 알고 있다’의 응답을 기준으로 결과를 보면,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는 신고 센터 운영’은 55.0%,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기관의 공정한 사건처리에 대한 현장 점검 및 행정지도 강화’는 58.4%,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표준지침 마련 등 제도적 기반 강화’는 52.7%, ‘공공부문의 가해자 제재 및 처벌 강화,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주 책임 강화’는 60.4%, ‘관리자 교육 확대 등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는 69.4%였다. 사업주의 책임 강화와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에 대한 인지도가 60%를 상회하여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전체적으로 50%를 상회하여 성희롱 업무담당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다소 인지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정부 대책은 성희롱 업무담당자의 업무와 직결되는바, 정부 정책에 대한 보다 충분한 이해와 숙지가 필요하다. 모든 문항에서 민간사업체의 업무담당자보다 공공기관 업무담당자의 인지도가 높았다.

#### 나) 직장 내 성희롱 방지 대책의 실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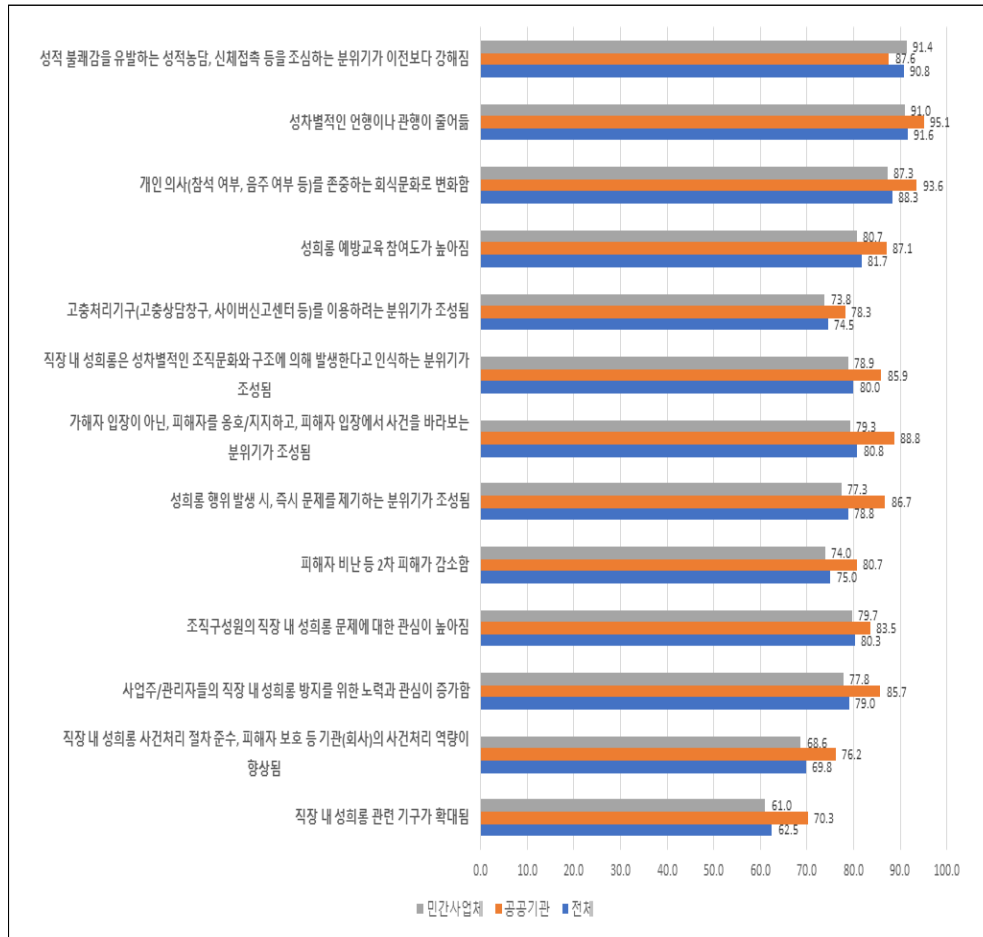
정부의 성희롱 방지를 위한 주요 대책 5개 모두에 대해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정부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 대책이 직장 내 성희롱 방지에 얼마나 도움되었는지를 조사하였다. ‘매우 도움 되었다’ 55.2%, ‘약간 도움 되었다’ 40.5%로 95.7%가 도움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정부 대책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업무담당자 10명 중 9명은 정부 대책이 직장 내 성희롱 방지에 기여했다고 평가하였다.



#### 다) 지난 3년간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변화

지난 3년간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된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13개 문항에 대해 질문하였다. 각 문항에서 ‘그렇다’(매우 그렇다 + 약간 그렇다)는 응답 결과를 기준으로 문항의 내용에 대한 동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 10명 중 6명 정도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기구가 확대되었다고 보았다. 10명 중 7명은 피해자 비난 등 2차 피해가 줄어들었으며, 사건처리 역량이 향상되었고 고충처리기구를 이용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보았다. 10명 중 8명은 성차별적인 조직문화와 구조에서 성희롱이 발생한다고 인식하게 되었고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으며, 피해자 입장에서 성희롱 사건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사업주/관리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노력과 관심이 증가했고, 조직구성원들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도가 높아졌다고 보았다. 개인 의사를 존중하는 회식문화도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10명 중 9명 이상은 성차별적 언행이나 관행의 감소, 성적불쾌감을 유발하는 언행을 조심하는 조직문화 형성 등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았다.

소속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 의사를 존중하는 회식문화로 변화함’, ‘성차별적인 언행이나 관행이 줄어들’ 등에서는 90%를 상회하는 응답을 보인 반면,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기구가 확대되고 사건처리 역량이 향상되고 고충처리 기구를 이용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등의 시스템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선 70%대의 동의 정도를 보여 다른 문항에 비해 낮았다. 민간사업체도 응답률 자체는 공공기관보다 낮았지만, 응답 경향성은 유사했다. 성희롱 방지 시스템 활성화(확대)와 관련해서는 60~70% 정도로 다른 문항에 비해 낮은 동의 정도를 보였다. 반면 ‘개인 의사를 존중하는 회식 문화로 변화함’, ‘성차별적인 언행이나 관행이 줄어들’, ‘성적불쾌감을 유발하는 성적 농담, 신체 접촉 등을 조심하는 분위기가 강해짐’ 등에서는 90% 내외의 응답을 보였다.



[그림 IV-20] 지난 3년간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변화(전체, 기관유형)

#### 라)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가장 필요한 정책(1순위)으로는 ‘피해자 보호’가 33.3%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조직문화 개선’(21.8%),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18.2%), ‘사업주/기관장 책임 강화’(12.4%) 순이었다. 2018년 실태조사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 수요(1순위)에서 ‘성차별적인 조직문화 개선’, ‘행위자에 대한 공정한 처벌’ 순이었는데, 2021년 실태조사에서는 피해자 보호, 조직문화 개선, 행위자 징계 순으로 변화되었다.

성희롱 방지를 위해 조직문화를 개선하는데 가장 필요한 정책(1순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사업주/기관장, 관리자를 포함한 전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가 26.1%로

가장 많았다. 그 음은 ‘고용상 성차별 근절, 성평등 촉진을 위한 인사관리 제도 개선’(17.1%), ‘성차별적 조직문화 개선 위한 캠페인 실시’(14.8%), ‘성평등 감수성 진단 위한 자가체크리스트 보급 및 점검 활성화’(13.1%) 순이었다.

성희롱 피해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1순위)은 ‘사이버 상담, 별도 공간 마련 등 안전한 상담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24.8%)이었다. 그다음은 ‘피해자 정보 공개,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따돌림 등 직장내 2차 피해 방지’(20.2%), ‘피해자 보호(휴가, 배치전환 등) 강화’(12.4%) 순이었다.

성희롱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1순위)은 ‘신고-조사-징계 등 신속한 사건처리 절차운영’(32.3%)이었다. 그다음은 ‘행위자에 대한 엄중 조치(실질적 징계)’(29.0%), ‘외부전문가/외부전문기관 활용 및 참여 강화’(19.4%) 순이었다.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1순위)은 ‘2차 피해에 대한 전직원 교육 실시’(18.6%)였다. 그다음은 ‘2차 피해의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18.2%), ‘2차 피해 실태 파악’(14.9%), ‘2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시행’(14.5%) 순이었다.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1순위)은 ‘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45.1%)였다. 그다음은 ‘피해자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상담, 의료 등 지원’(17.8%), ‘피해자의 배치 전환(부서, 업무 등)’(14.1%) 순이었다.

## 2. 시사점

### 가. 정책적 시사점

#### 1) 주변인/목격자 교육 등 공동체적 대응을 위한 개인과 조직의 변화 추동

일반 직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자 절반 정도는 피해 당시 목격자가 있었지만, 목격자들은 행위자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경우보다 상당수가 모른 척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피해를 목격했을 때도 10명 중 6명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러한 경향은 3년 전과 변화가 없었다. 본 조사에서 확인된 바처럼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1명 정도만이 행위자에게 중단을 요구하고 대다수인 10명 중 7명은 대처하지 않고 참고 넘어가는 등 성희롱 피해 당사자의 조치가 적극적이지 못한 상황이므로 성희롱 상황에서 목격자로서 주변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옹호하고 행위자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간 예방교육에서 주변인/목격자 모델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발생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이 당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개입하느냐가 상황 변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성희롱 예방교육)에 따르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성희롱을 한 사람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그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sup>16)</sup>.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sup>17)</sup>. 이처럼 현행 법령상에 성희롱 피해의 주변인 혹은 목격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포함될 수는 있겠으나, 주변인 혹은 목격자가 성희롱 피해 당시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개입하도록 해야 한다는 중요성과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것에 비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교육에 포함해 운영하기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변인/목격자로서의 역할, 행동기술 등을 학습하는 목격자/주변인 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에 목격자/주변인으로서의 대응 행동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직 구성원의 목격자로서의 개입 혹은 대처 역량을 갖추는 것과 함께 이를 지지하고 독려하는 조직문화 혹은 조직분위기가 함께 조성되어야 한다. 본 조사에서는 조직문화의 특성이 목격자들의 대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인이 속한 조직이 집단주의, 위계적 문화 등이 강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목격자가 성희롱 행위자의 행동을 방조 또는 동조했다는 응답이 더 많고 제지했다는 응답은 더 적었다. 이는 조직문화가 성희롱 발생 시 구성원의 적극적 대처를 억제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교육을 통한 주변인으로서의 역할이나 인식을 갖는 것뿐 아니라 주변인/목격자들의 역할에 대해 적극적이고 수용적인 조직문화가 형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직문화가 형성된다면 목격자로서의 대처뿐 아니라 피해자도 보다 적극적으로 성희롱 피해

16)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양성평등기본법\\_시행령\(2022.3.8.\)](https://www.law.go.kr/법령/양성평등기본법_시행령(2022.3.8.))

17)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_일·가정양립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2022.3.8.\)](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_일·가정양립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2022.3.8.))

행위 혹은 행위자에게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2) 피해자 보호 및 피해자 대응 역량 강화

성희롱 피해자가 상급자에게 성희롱 피해를 알리거나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하거나 사내 혹은 외부 기구를 이용해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등의 대처를 한 경우 기관의 조치는 피해자 보호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기관에서 취한 조치내용(복수응답)으로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공간분리, 업무변경 등)’(46.3%), ‘피해자 보호조치(상담, 휴가, 업무/부서이동 등)’(40.5%), ‘고충상담원과의 상담, 고충처리 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22.9%),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신상보호 제공’(15.8%) 등이었다. 2018년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와 조사 등이 우선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2021년에는 행위자와 피해자에 대한 분리, 피해자 보호, 고충상담 안내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에 우선하는 경향을 보여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피해자 보호는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조사되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는 ‘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로 파악되었다. 직장 안에서 행위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간 분리, 접근금지 등의 행위자로부터 피해자를 분리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인데, 수요는 크지만, 업무담당자 조사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업무 분리, 공간 분리, 신변 보호 등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것처럼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약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기관이나 사업체, 고충상담원의 여건과 역량에만 피해자 보호를 맡겨두기보다는, 업무 분리, 공간 분리, 신변 보호, 업무배치 전환 등을 보다 효과적 혹은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상담이나 의료 등 지원도 필요한데, 이는 조직 내 고충상담원을 통해 제공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외부기관을 활용하여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 자원 연계 등을 위한 정책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한편, 피해자는 피해 당시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는 비율이 40%를 상회하였다. 성희롱 행위자에게 바로 중단을 요구하거나 화제를 돌리거나 그 자리를 피하는 등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대처 행동을 취한 비율을 합하면 약 40%를 상회하여 비슷한 수준이기는 했지만, 10명 중 1명만 바로 중단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다수는 화제를 돌리거나 그 자리를 피하는 대처 행동을 하거나 대처를 하지 않았다. 10명 중 4명이 성희롱 피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대처 행동을 한다는 점은 미투를 계기로, 그간의 성희롱

예방교육의 결과로 인한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주로 상급자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가 더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피해자 대응 역량을 키워주고 피해자의 이러한 행동을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3) 2차 피해에 대한 적극적 대처 강화

2차 피해를 경험한 경우의 약 90% 정도가 2차 피해로 인한 영향이 있었고, 직장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업무만족도 및 근로 의욕 저하, 직장 내 대인관계 어려움, 이직 의사 등 직장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차 피해는 성희롱 피해자뿐 아니라 목격자의 대응도 위축시킨다.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7명은 성희롱 피해에 대해 대처하지 않고 참고 넘어간다고 응답했는데, 참고 넘어간 이유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다수를 이뤘지만, 문제 제기로 인해 불이익을 경험하거나 조직에서 묵인하는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로 인해 참고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을 목격했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서도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특히 20대 이하의 경우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거 같아서’(24.3%), ‘업무나 인사 등에서의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되어서’(12.6%), ‘소문, 평판, 따돌림, 비난 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14.7%) 등 2차 피해와 관련된 내용의 응답도 상당했다.

또한, 2차 피해를 목격한 것만으로도 성희롱 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초래하고 직장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고 있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직장(내 성희롱 예방정책, 문화 등)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음’의 응답이 절반 이상인 가운데, ‘피해경험/발생시 공론화(신고)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함’(23.5%)과 ‘직장 동료들에게 실망감을 느낌’(37.4%)의 응답이 많았다. 여성 역시 ‘직장(내 성희롱 예방정책, 문화 등)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음’의 응답이 절반 정도인 가운데, ‘피해경험/발생시 공론화(신고)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함’(19.9%)과 ‘직장을 떠나고 싶다고 느꼈음’(19.4%), ‘직장 동료들에게 실망감을 느낌’(39.9%) 등의 응답이 많았다.

2차 피해로 인한 영향이 이와 같기 때문에 2차 피해가 조직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직원 조사에 따르면 2차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의 절반 정도는 기관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업무담당자 조사에 나타난 기관의 2차 피해와 관련한 대처 역시 2차 피해에 대한 특별 교육, 2차 피해 실태 파악 등을 추진하였지만 ‘2차 피해 중단에 대한 사업주/기관장의

입장 발표(선언)'는 민간사업체와 공공기관 어디에서도 없었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매뉴얼, 규정 등이 마련되었거나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54.1%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절반 수준에 그쳤다.

미투와 일련의 직장내 성희롱 사건 등을 통해 2차 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감수성이 높아지고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법과 제도적 조치가 강화되었지만, 성희롱 피해자들은 성희롱 피해 상황에 대한 지지와 공감을 받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압박,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불이익, 평판 등 조직 생활 전반에서 2차 피해를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조직 안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조사에서 2차 피해 발생 원인으로 구성원과 기관의 직장내 성희롱 혹은 2차 피해에 대한 이해, 인식, 의지가 미흡한 점이 지적된 것처럼 2차 피해에 대한 보다 교육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2차 피해는 사업주나 기관장보다는 상급자, 동료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2차 피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2차 피해에 어떻게 대처하고 조력해야 하는지 등 교육을 통해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2차 피해에 대한 기관의 대처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 2차 피해에 대해 사업주/기관장이 충분히 이해하고, 성희롱 사건 발생 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이행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고위직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2차 피해에 대한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지침 표준안」 제7조(상급자의 책무)에 따르면 '상급자는 2차 피해 고충처리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구성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등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고충처리 종료 후 2차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급자의 역할을 인지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인식과 역량을 제고 해야 한다. 업무담당자들도 2차 피해 대응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2차 피해 대응을 위한 실무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편, 공공기관의 경우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로 성희롱 피해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조직 내부 혹은 외부 기구를 통해 성희롱 피해 이후 불이익을 경험한 비율도 높았다. 또한, 피해자의 공식적인 대처에 대한 기관의 조치에서도 불이익 등 2차 피해 방지 조치의 비중이 높아서 적극적으로 조치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공정한 사건처리를 기대하지 않는 이유에서도 사건처리 역량 부족, 규정이나 매뉴얼 부재, 신속한 절차 운영 미흡 등이 지적되었던 민간업체와 달리, 공공기관에서는 사건축소, 은폐 등 공정한 사건처리에 대한 의지 부족 등 2차 피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이렇게 볼 때 공공

기관은 성희롱 방지 관련 시스템과 인프라가 상당 부분 갖춰졌는데 운영상에 있어서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경우 2021년 1월에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2차 피해 방지 표준안’이 마련되고,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규정 제정 여부를 점검하는 등 제도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 4) 비대면 교육 증가 등 변화에 대응하는 성희롱 예방교육 운영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은 과거 대면 방식의 집합 교육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교육시간을 따로 지정해 예방교육 내용으로만 진행한 경우, 가장 최근에 받았던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복수응답)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개인별 온라인 교육(e-learning 교육)’이 57.8%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대면 방식의 집합 교육(강사 진행)’ 22.8%, ‘비대면 방식의 쌍방향 실시간 온라인 교육’ 17.5%, ‘강의가 아닌 비디오 시청 등의 시청각 교육’ 10.7% 순이었다. 2018년 조사에서 ‘집합교육’이 71.5%로 다수를 차지하고 ‘개인별 온라인 교육’이 17.3%였던 것과 달리, 2021년 조사에서는 ‘개인별 온라인 교육’이 많이 늘어났다. 교육 방법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효과를 교차 분석한 결과, ‘대면 방식의 집합 교육(강사 진행)’과 ‘비대면 방식의 쌍방향 실시간 온라인 교육’에서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각각 94.0%, 94.5%로 거의 같았던 반면, ‘개인별 온라인 교육’에서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90.9%로 약간 낮았다. ‘강의가 아닌 비디오 시청 등의 시청각 교육’은 85.7%로 ‘대면 방식의 집합 교육(강사 진행)’과 ‘비대면 방식의 쌍방향 실시간 온라인 교육’의 효과와는 약 10%p 차이가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처의 일환으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교육을 시작했으나, 이후에도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교육 수요는 유지 혹은 확대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관건은 대면 방식의 집합교육과 같은 교육 효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 것인데, 개인별로 e-learning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보다는 비대면 방식이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비 등은 비대면 방식의 활용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므로 인프라의 차이가 교육 효과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비대면 교육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방교육에 대한 피로도, 반복성 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지만, 본 조사에서는 예방교육을 통한 본인의 변화에 대해 90% 가까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2차 피해



의 경우 최근에 강화된 교육내용인데, 10명 중 9명은 2차 피해의 개념과 예방 노력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성희롱 예방교육의 효과에서도 ‘효과가 있었다’(매우 효과가 있었다 + 약간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이 85% 정도로 나타났다.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 가장 많은 이유가 교육내용이 동일하다는 점, 교육 방법의 효과성이 낮다는 점 등이었다. 그간에는 교육 참여율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두었다가 최근 들어 분야, 직급 등을 고려한 소규모 토론회, 맞춤형 교육 등이 강조되고 교육콘텐츠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예방교육의 피로도를 줄이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방법의 다양화, 교육내용 혹은 교육콘텐츠의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 5) 성희롱 상담 및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과 이용 활성화

일반직원 조사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에 대해 참고 넘어간다는 응답이 다수인 가운데 고충상담창구에 상담하거나 상급자에게 알리거나 사내 기구를 통해 공식 신고를 한다는 등 공식 채널을 이용하는 비율은 6% 수준에 그쳤다. 2018년 실태조사 대비 참고 넘어간다는 응답이 다소 줄고 고충 상담과 상급자 보고, 신고 등의 공식 채널을 활용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였지만 여전히 성희롱 상담 및 사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비율은 낮았다.

이뿐만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인지도도 낮았다.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는 건 성희롱 예방지침으로 10명 중 7명 정도가 성희롱 예방지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고충 상담원, 고충상담창구, 온라인을 활용한 상담 및 신고 등에 대해서는 10명 중 5명 정도가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고충상담원, 고충상담창구, 온라인 상담 시스템 등은 성희롱 피해를 경험할 경우 일차적으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조직 내 공식 채널인데, 이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다.

미투 이후 성희롱 피해 사실을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조직 내부에 혹은 조직 외부에 상담 혹은 신고체계를 구축·확대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성희롱 방지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에 대한 업무담당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된 반면 민간사업체는 성희롱 방지 업무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무담당자나 일반직원 모두 성희롱 방지를 기구 확대나 사건처리 등 업무역량 개선에 대한 체감도가 낮았다. 그리고 일반직원들은 성희롱 전담기구와 전담자의 전문성 미흡, 신속한 사건처리 절차 운영 미흡 등 성희롱 사건처리 역량과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반의 문제를 이유로 공정한 사건처리에 대한 기대가 낮았다.

이처럼 성희롱 방지 시스템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이용도, 기대감 등은 그간 정책적

노력은 있었지만, 여전히 성희롱 방지 시스템이 충분치 않고, 역량과 전문성이 미흡하며,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용 의사가 낮지는 않았다. 본인이나 주변인이 성희롱을 경험할 경우 내부 고충상담창구를 이용하거나 고충상담원에게 상담하도록 권유할 생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75.8%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성희롱 피해자로서 혹은 주변인으로서 피해자를 조력할 때 성희롱 방지시스템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도록 부족한 시스템을 더 갖추고, 시스템이 있다는 걸 더 많이 알리고, 사건처리가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성희롱 방지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민간사업체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업무담당자 조사에 따르면 민간사업체의 경우 성희롱 방지 규정 마련, 성희롱 예방교육 정기 안내 등만 90% 정도 구축·운영하고 있었고, 매뉴얼 구비, 상담 안내, 온라인 성희롱 상담센터 운영, 고충상담창구 마련, 성희롱 사건처리를 위한 별도 위원회 운영, 외부전문가의 위원회 참여 규정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인프라와 시스템 구비가 미흡하였다. 3년 전보다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성희롱 방지 관련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 개선해야 한다.

또한, 성희롱 방지 관련 시스템과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과 인지도가 제고되어야 한다. 이때 성희롱 상담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한데, 상담은 성희롱 방지 시스템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사건처리까지 진행하지 않더라도 성희롱 피해에 대한 상담 혹은 정보제공 요청 등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비밀 유지, 신변 보장 등이 가능하도록 고충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상담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민간사업체, 연령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종사자 규모가 작은 사업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성희롱 업무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는데, 이를 고려한 안내 전략, 안내 방법 등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직 내 성희롱 방지 시스템을 갖추도록 함과 동시에 종사자 규모가 작은 민간사업체처럼 조직 내 자체적인 성희롱 방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외부에 성희롱 방지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한편,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알리는 것과 함께 전문성도 제고해야 한다. 업무담당자 조사에 따르면 성희롱 사건처리 과정과 성희롱 업무수행에서의 어려움으로 경험과 전문성의 미흡이 지적되었다. 업무담당자들은 성희롱 업무를 수행하면서 순환배치, 비전담 등으로 인해 성희롱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구조와 이로 인한 전문성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성희롱 사건처리에서의 어려움 역시 조사 등 사건처리 경험과 전문성 부족에 대한 어려움이 컸다. 따라서 우선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훈련

을 강화해야 한다. 고충 상담과 사건처리는 각각의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 등이 상이한데 둘 다를 수행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를 위한 교육 훈련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 훈련을 통한 전문성 제고뿐 아니라 순환배치, 다른 업무와의 병행 등의 업무 여건 등이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각 기관/사업체별로 상황이 상이하기 때문에 일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여건의 개선을 유인하기 위한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사건처리 매뉴얼 마련, 컨설팅 등 실무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진단 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인데, 예산 등 현실적인 사업 여건상 민간사업체까지 포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민간사업체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건처리 지원을 위한 별도 기구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 6) 성희롱 사건처리 절차 운영의 내실화

일반직원 조사에 따르면 사건처리 과정과 사건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80% 내외로 나타났다. 사건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2018년보다 상승해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는 사건처리 과정과 사건처리결과 모두 만족도가 40% 수준으로 낮았다. 공공기관은 성희롱 사건처리 절차에 대한 인프라와 시스템은 대체로 잘 구비되어 있었지만, 실제 그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선 만족도가 낮았다. 이는 공정한 사건 처리가 이뤄지지 않다고 보는 이유에서 사건 은폐, 공정한 사건처리에 대한 의지 부족 등이 지적된 것과 같은 맥락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사건처리 절차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

성희롱 사건처리와 관련해 신고-조사-징계 등 신속한 사건처리 절차 운영에 대한 정책 수요가 많았다.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보다도 수요가 컸는데, 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신청~조사개시까지의 시간은 7.41일, 조사 시작부터 조사 종료까지의 시간은 19.05일이었다. 각각의 평균 소요시간을 합하면 26.46일로, 조사신청~종료까지의 시간이 단축되는 것은 필요하다.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제10조(조사)에 따르면 ‘고충상담원은 조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sup>18)</sup>고 명시하고 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 대응 매뉴얼」<sup>19)</sup>에서

18) 여성가족부(2021).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2021년 폭력 예방 교육 운영안내. 101쪽.

도 ‘피해자가 신고접수 시 즉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한 경우 사업주는 지체없이 사실관계 조사, 사실관계 확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성희롱 사안을 논의 및 심의하는 위원회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경우 90% 가까이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별도 설치하여 운영하는데 반해 민간사업체는 40% 수준에 그쳤다. 또한, 위원회 구성에서도 공공기관의 경우 외부전문가 참여가 80%를 상회하는데 반해 민간사업체는 임원 등의 참여 비율이 높았다. 성희롱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와 판단이 이뤄지기 위해 민간사업체의 경우 성희롱 사건을 심의하는 별도 위원회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위원회 구성에 성희롱 관련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 7)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강화

본 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의 지난 3년간 재발방지대책 수립한 비율은 70% 정도였고, 공공기관 중 여성가족부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한 비율은 30% 정도였다. 공공기관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성희롱 발생을 인지할 경우 여성가족부에 알리고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 수립, 제출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에 대한 책무가 강화되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르면 ‘①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국가기관등의 장이 해당 성희롱 사건의 행위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거나 재발방지대책의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제출을 통해 해당 기관의 성희롱 재발방지 효과를 갖고 있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이 재발방지대책을 잘 수립하고 계획대로 이행하는지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궁극적으로 성희롱 방지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성불평등한 구조와 문화를 바꿔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제출된 재발방지대책을 분석하여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혹은 매뉴얼 등을 마련

19) 고용노동부(2020).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49쪽.

하고 재발방지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환류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성희롱 방지 위한 조직문화 진단 사업을 통해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의 내실화를 위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 8) 성희롱 방지를 위한 성평등한 조직문화 개선

일반직원과 업무담당자 모두, 민간사업체와 공공기관 모두 지난 3년간의 직장내 성희롱 관련 변화로 가장 많이 체감하고 동의한 것이 개인 의사를 존중하는 회식문화 형성, 성차별적인 언행이나 관행의 감소, 성적불쾌감을 유발하는 언행을 조심하는 조직문화 형성 등이었다. 이는 미투운동 이후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이 조직구성원, 조직문화에 변화를 가져왔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법률 시행 등 정책환경의 변화도 영향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긍정적인 변화임에는 틀림없다.

2018년 미투운동과 이어진 지자체 등의 권력형 성희롱 사건 이후, 여성가족부는 성희롱 근절 및 예방정책에서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사업을 점차 확대해 왔다. 2021년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권고 사업(여성가족부 시행)이 제도화되었고, 같은 해 6월에는 양성평등조직혁신 추진단이 출범하여 지자체를 시작으로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지원 사업을 공공부문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조직문화 특성과 구성원의 성희롱 피해 및 대응 간의 관계는 향후 성희롱 근절 및 예방정책의 한 축으로서 조직문화 개선 과제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 성희롱 피해 발생 및 대처에 구성원을 성별로 구분하고 역할을 분리하는 문화뿐 아니라, 젠더 이슈와 직접적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일반적인 조직문화 - 민주성과 자율성, 수평적 관계, 사생활 존중 문화 등 - 또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한바,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정책은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먼저 성별 업무 분리 및 성역할 분리 관행이 일반적 조직문화 특성에 비해 성희롱 피해 발생과 관련성이 더 높다는 분석 결과는 일터에서 성별화된 역할 요구가 어떻게 성희롱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성별 고정관념에 따라 행해지는 업무분장 관행 개선 노력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중요한 전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별 분리 경향은 공공기관, 그중에서도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여가부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사업, 조직문화 진단 사업 등에서 조직의 성별 분리 관행을 적절히 진단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것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차 심부름과 같은 비공식적 업무의 성별 분리 관행은 법·제도나 지침만으로는 변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조직 내 일상적 생활 단위에 밀착된 개선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조직문화 특성이 성희롱 발생뿐 아니라 대처 행동, 조직 안팎의 성희롱 대응체계에 대한 신뢰 형성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 결과 역시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특히 위계적 문화 유무에 따른 성희롱 유경험률의 차이가 크다는 분석 결과는 성희롱이 상-하급자 간에 권력이 행사되는 방식의 하나임을 잘 보여주었다. 집단주의 문화는 성희롱 피해 경험 시 일체의 개인적·조직적 대처를 억제하는 것과 관련성이 가장 높았고, 특히 공공기관에서 공식적 대응체계 이용 의사와 관련성이 높은 항목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이어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가해자의 완전한 분리가 쉽지 않은데, 여기에 집단적 일체감 강조하는 문화가 더해지면 성희롱 사건이 은폐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생활 침해 문화 역시 성희롱 피해 및 대응과 관련성이 높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터 내 관계에서 결혼, 연애 등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동료 간의 적절한 공적 관계 유지를 어렵게 만들며, 그랬을 때 성희롱 발생 가능성도 커질 수 있고 동료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을 공론화하는 데도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직장 내 구성원 간의 적절한 거리 두기 문화를 확립하려는 노력 또한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에서 주요 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점은 조직의 성희롱 예방시책의 효과를 높이는데도 조직문화 개선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앞서 본 조직문화 특성은 모두 조직이 성희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진지하게 수용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낮추는 것과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사건처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기관장/사업주가 강한 근절 의지를 보이더라도, 집단적·위계적 조직문화나 성별 분리 관행이 강한 조직에서는 그에 대한 구성원의 체감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은 조직의 성희롱 대응체계에 대한 신뢰 구축의 기반을 만드는 조치일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9) 성희롱 사건에 적극 대처하는 기관장/사업주의 실질적 노력

직장내 성희롱 방지 및 사건처리 등은 기관장/사업주의 책임하에 이뤄지기 때문에 기관장/사업주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 본 조사에서는 업무담당자와 일반직원 모두에게 사업주/기관장이 직장내 성희롱 방지에 대한 법적 의무(책무)를 인지하고 관련

제도적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자 노력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업무담당자와 일반직원 모두 10명 중 7~8명 정도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한편, 사업주/기관장이 직장내 성희롱 방지, 공정한 사건처리 등에 대한 책무 혹은 이행을 위해 직접 조직구성원 혹은 업무담당자에게 직접 언급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10명 중 5~6명이 그렇다고 응답해서 사업주/기관장의 구체적이고 실천적 노력을 체감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희롱 피해와 2차 피해,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직장내에 대한 실망감, 직장동료에 대한 실망감이 크며, 특히 성희롱 피해를 목격하면 본인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하게 되고 2차 피해를 목격하면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안 되겠다는 위축되는 학습 결과를 낳게 되는 등 조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컸다. 이처럼 성희롱 피해는 조직구성원 개인뿐 아니라 조직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관장/사업주의 적극 대처가 필요하다. 미투 이후 성희롱 방지에 대한 기관장/사업주의 책무가 강화되었고,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지면서 기관장/사업주의 참여율이 3년 전보다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업주/기관장의 성희롱 방지를 위한 의지와 관심을 적극적으로 조직구성원들에게 알리고, 성희롱 예방 교육, 성희롱 고충 상담,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운영 등 일련의 제도를 구비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구체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나. 후속 조사를 위한 제안

### 1) 조사방법 개선

#### 가) 현행 조사의 문제점

성희롱 실태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하여 3년마다 수행되는 조사로, 성희롱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정책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할 목적을 갖는다.

성희롱 실태조사는 사업체 단위로 조사되며, 공공과 민간사업체 담당자와 구성원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이와 같은 특성에 의해 성희롱 실태조사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사업체 내 사건처리와 구성원의 성희롱 피해 경험을 동일 모집단에서 비교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업체 조사로 진행되는 현행 성희롱 실태조사는 크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 문제는 사업체 내 응답자 추출의 제약과 한계로 비체계적 오류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성희롱 실태조사는 전국사업체조사를 모집단으로 사업체 표본을 추출하고 사업체별 규모에 따라 응답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한다. 표본설계는 모집단을 통해 사업체와 구성원을 체계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사업체 단위의 구성원 정보(성/연령/종사상 지위별 등)를 접근할 수 있는 근로자 명부는 확보할 수 없음에 따라, 구성원 중 응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완전한 무작위성을 확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조사환경의 어려움으로 사업체 내 근로자 추출 가중치와 실제 표본사업체 내 근로자 추출과정과 다소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성희롱 실태조사는 이러한 문제에서 표본의 대표성 유지를 위해 응답자의 무작위 선정 지침과 교육을 담당자와 면접자에게 설명하고 전달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로자 선정의 비체계적 오류 발생 가능성은 사업체 조사에서 완전히 해소하기란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다.

두 번째 문제는 현행 사업체 조사가 모든 취업자를 포괄하여 조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업체 조사는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로 보면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조사된다. 즉, 취업자 중 성희롱 노출이 비교적 높다고 알려진 특수 고용직 근로자가 빠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특수 고용직 근로자는 사업자와 근로자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 현행 방식이 아닌 가구 조사로만 접근이 가능한 집단이다.

세 번째는 소규모 사업체를 조사하지 못하는 한계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성희롱 실태 조사는 2015년 50인 이상 사업체에서 2018년 30인 이상 사업체로 대상을 확대하여 2021년까지 진행되고 있다. 본 조사가 30인 이하 사업체로 확대하지 못한 이유는 예산 제약에 따른 표본 규모와 조사 방법의 한계 때문이다. 2021년 조사에서는 이전 조사와 비교하면 예산이 증가하였으나, 추가된 예산은 기존 조사의 품질을 높이는 데 대부분 활용되었고 사업체 규모를 확대하는 데까지는 활용되지 못했다. 하지만 통계청의 정기 품질진단에서는 성희롱 발생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10인 이상 사업체로의 확대 조사를 권고하였고 대외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성희롱 실태 파악과 이에 대한 정책 수집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단, 10인 이상의 사업체로의 조사 확대는 예산확보와 실사 진행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 조사 확대를 위한 예산이 확보된다고 해도 10인 사업체까지 확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실사의 어려움은 매우 크다. 성희롱 실태조사는 사업체의 담당자와 근로자를 함께 조사하는 체계인데,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30인 미만의 사업이나 사업장에서는 고충 처리위원 배치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사업체 담당자의 접촉과 조사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은 조사에 있어 동일한 공간 내에서 근로자를 설문 조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성희롱 피해율이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확대는 비표본 오차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검증된 방법론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소규모 사업장의 성희롱 실태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사업장에 비해 위계적인 구조하에서 성희롱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며, 가해자의 분리 조치나 피해자 보호조치도 어렵고 사건의 은폐나 2차 피해 발생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소규모 사업체는 여성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노동하고 있는 곳으로 향후 사업체 규모의 확대는 사업체 성희롱 실태를 파악하는 데 꼭 필요할 부분 중 하나일 것이다.

#### 나) 조사 개선을 위한 방안

앞서 살펴본 현행 성희롱 실태조사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성희롱 조사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조사설계로는 사업체 단위의 조사설계가 갖는 유용성이 있고, 회차를 거듭할수록 조사 대상 규모도 증가하고 있어서 대표성 확보도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조사설계에 기반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규모 및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조사 규모를 확대 목적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현행 조사의 품질을 높일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현행 조사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소규모 사업체 조사를 위해서다. 성희롱 실태조사는 2018년에 비해 구성원에 대한 표본을 개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 통계를 보면 다소 높은 상대표준 오차를 보인다. 본 연구는 ‘지난 3년간 성희롱 유형별 피해율’(〈표 II-19〉 참조)의 14가지 유형별 상대표준오차를 분석하였는데, 이 결과의 상대표준오차는 최소 10.0%, 최대 36.4%로 나타났다. 성희롱 피해율을 유형별로 안정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최소 25%<sup>20)</sup>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이 결과표에서 상대표준오차가 25% 초과하는 성희롱 유형은 5가지나 나타난다. 통계조사의 공표를 위한 신뢰성과 정책자료 활용의 적합성을 고려할 경우, 주요 항목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는 25% 이내여야 적합하다. 항목별 상대표준오차를 25%로 고정시킬 경우 필요한 표본크기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20) 통계품질진단에서는 30% 미만이면 주의해서 활용 가능하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구분 변수 없이 단독으로 활용할 때 가능하며, 실제 분석과정에서 주요 구분 변수로 구분하여 보기 위해서는 최소 25% 미만으로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n_{t+1} = n_t \left( \frac{RSE_t}{RSE_{t+1}} \right)^2$$

여기서  $n_t$ 는 지난 조사(2021년)의 표본크기를 의미하며,  $RSE_t$ 는 지난 조사(2021년)의 상대표준오차,  $RSE_{t+1}$ 은 다음 조사(2024년)에서 목표 상대표준오차를 의미한다. 상대표준오차 25% 이내를 만족하는 표본크기는 최소 20,704명, 최대 31,954명이며, 2021년 유효 표본크기인 15,073명 대비 최소 5,001명, 최대 16,251명의 표본크기를 증대해야 한다.

또한, 표본크기의 증대는 소규모 사업체로의 확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 경우 소규모 사업체(10인 이상 사업체)의 구성원 선정을 고려한 표본설계를 고려한다면 사업체 규모를 현행 조사에서 최소 1.2~1.5배의 표본 증대가 필요하다. 즉, 최소 150~200개 사업체를 추가 조사해야 10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하여 조사 가능할 것이다.

표본크기의 증대는 조사 예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조사의 통계품질 제고만을 고려한 표본크기 증대의 경우 현재 예산의 약 1.3~2.1배의 예산 증대가 필요하고, 소규모 사업체로 확대만을 고려할 경우도 최소 1.2배의 예산의 증가가 필요하다. 더불어 두 문제점을 모두 개선하고자 한다면 현행 예산에서 약 1.5~2.3배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확률표본추출에 기반을 둔 조사대상자 선정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협력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업체 단위까지는 확률표본추출이 가능하지만, 조사 단위인 사업체 근로자를 추출하는 데 있어 현재의 조사환경으로는 매우 어렵다. 사업체 내 근로자 명부를 확보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반드시 고용노동부의 협조 또는 협업을 통해 소속기관인 지방청과 지청, 사무소 등과 함께 조사 대상 사업체의 근로자 명부 제출이 필수적이다. 특히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은 공문 지원과 같은 단순 협조 차원이 아니라 현재 조사 구조나 환경에서 비체계적 오류를 개선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협력체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웹(web)을 기반으로 한 조사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조사 방법은 공공기관의 경우 업무담당자를 통해 웹 조사를 활용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체의 경우 방문 조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민간사업체의 경우 응답자 개인정보 획득이 어려워 현장에서 직접 조사하거나 업무담당자를 통해 유치조사를 진행하는데, 차기 조사에서는 웹 조사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웹 조사의 장점으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가 없어 접근성이 높으며, 문항 내/간 논리적인 내검으로 정확한 응답이 가능하다. 또한, 비밀 보호

측면에서도 안전성이 매우 높다. 다만, 웹 조사를 위한 전제조건은 개인의 이메일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수집되어야 하는데, 확률표본추출이 가능하도록 근로자 명부 획득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넷째, 공공기관 웹 조사를 위한 여성가족부 내부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2021년 조사에서 공공기관 조사 시 여성가족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관별 성희롱 업무담당자 또는 부서 정보를 내부 규정문제로 활용할 수 없어 기관 대표전화로 업무담당자를 특정해 가는 과정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접근 초기 단계부터 조사 거절이 발생하여 응답률이 저하되고, 조사 기간이 다소 연장되었다. 여성가족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무 담당자 및 부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면, 효율적인 조사 진행과 응답률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선 2024년 실태조사 전에는 여성가족부의 내부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현행 조사설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각각에 대한 쟁점과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사전 연구가 필요하다. 사전 연구에서는 사업체 조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특수 고용직 노동자와 비취업자, 사업체 규모 확대를 위한 표본설계와 방법론 개선 방안, 안정적 실사를 위한 부처 간 협조체계 구축 방안 등을 포함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본다면, 조사설계를 기존의 사업체에서 가구(혹은 개인)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가구 조사는 응답자 추출 방법과 조사가 용이하며, 특수 고용직 노동자의 성희롱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더욱이 응답 장소가 사업체 떨어져 있는 가구 내에서 진행됨에 따라 비교적 솔직한 응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성희롱 피해율을 더욱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 되어 통계품질을 높이는 효과도 가져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희롱 피해자는 기존 취업자뿐 아니라 비취업자에 대한 피해율도 함께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추가된다. 성희롱 실태조사의 법적 기반이 되는 「양성 평등기본법」 제32조는 성희롱 실태조사의 수행 주기와 목적만을 명시하고 있지, 조사 대상을 사업체 조사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조사방식을 가구 단위로 변경할 경우 기존 조사와의 시계열 단절 문제가 발생한다. 장기적으로 조사 단위의 변화는 큰 문제가 아니나, 단기적으로 시계열 단절은 정책효과와 피해율 변화를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가구 조사로 전환할 때도 표본의 확대는 필수적으로 따라 오게 된다. 왜냐하면, 가구 조사를 통해 사업체의 성희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구 중 취업자를 추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구 조사가 기존 사업체 조사와 비슷하게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체별, 산업별, 규모별로 구분하여 특성을 분석

하려면 표본 규모는 이론적으로 계산되는 것보다 더 크게 조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된 개선방안은 표본크기와 예산을 제외하고 단기간에 추진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에 성희롱 실태조사의 품질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제안하며,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 이전에 진행되어야 하므로 2022~2023년 동안에 표본크기, 예산, 설문지, 조사설계, 조사 방법, 조사표(내용) 등 기존 방식의 개선안과 대안적 방안 모색을 위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 실행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조사 문항 개선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2018년 조사와 달리 직장 내 조직문화 관련 문항이 보강되었고, 일반적 조직문화 특성, 고용상 성차별 정도, 성별에 기반한 부정적인 언행 경험 등으로 ‘성평등 조직문화’의 측정 방식을 체계화하려는 시도도 진행되었다. 성희롱 방지와 조직문화, 조직특성 등과 연결 지어 분석하고 실증해 보고자 했기 때문인데,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항의 구성이 성평등 조직문화 수준을 파악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보다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며, 나아가 조직문화뿐 아니라 기관/사업체의 성평등 수준 및 성별 격차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 문항도 추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일반직원 개인이 소속된 조직의 문화를 평가하는 방식의 문항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조직특성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 조사 시점까지 질적 연구,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사업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성희롱 발생 및 구성원의 대응 행동 결정과 관련성이 높은 조직적 요인들을 발굴하여 이를 토대로 조사 문항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관 유형별 보다 세부적인 조직문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부가 문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의 연속 기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 내에서도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초/중/고, 대학 등 기관 유형에 따라 조직문화 특성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 본 조사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되었지만, 각각에 대해 구성원의 조직 생활과 인식에 대한 보다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추가 문항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방안이다. 더불어 현재의 정량적인 문항뿐 아니라 정성적인 문항도 개발하여 활용해 보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한편, 현재 민간사업체와 공공기관을 동일하게 조사하고 있는 조사 문항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법정 조사로 성희롱 실태와 양상을 파악하는 기초자료이자 동시에 성희롱

방지를 위한 법·제도·정책추진을 위한 참고자료로도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체와 공공기관 각각의 특성과 맥락 속에서 성희롱 피해 발생, 대응, 정책이행 및 정책의 실효성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분석될 필요가 있다.

2015년에 성희롱 실태조사 시범연구가 진행되었고 당시 민간사업체와 공공기관에 대해 동일한 조사표로 개발되어 그것을 2018년, 2021년에도 유지하면서 문항을 일부 보완해 진행하고 있다. 현행처럼 민간사업체와 공공기관의 특성이 동일한 문항에 대해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각각의 특성과 맥락을 고려한 보다 심층적인 조사와 분석이 어려운 한계도 내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경우 제도·정책적으로 성희롱 방지정책의 추진과 이행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데 반해, 민간사업체의 경우 사업체 자율에 의해 추진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도정책의 이행 및 이행 결과에 대한 구조와 맥락을 달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서 민간사업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각각 추진하고 있는 법·제도·정책 등을 토대로 사용되는 정책 용어, 개념, 시스템 등을 반영해서 보다 촘촘하고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각각의 조사표가 개발하는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앞서 언급한 대로 민간사업체와 공공기관 각각의 조직특성, 업무특성 등을 고려한 문항을 보완함으로써 각각의 성희롱 피해 발생과 대응 간의 연관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조사 문항의 구성 방향과 구조를 설정하고, 기존 문항을 일부 활용·보완하기도 하겠지만 신규 문항을 추가 개발하고 개발된 문항의 타당성, 적절성 등을 검토하는 데는 충분한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고용노동부(2020).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 김영원·이용희(2008). 조사통계의 정확성지표 품질관리 매뉴얼. 통계청
- 문강분·박선영·변혜정·심선희·민대숙·임범식·조은정(2021).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연구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 여성가족부(2021).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2021년 폭력 예방 교육 운영안내.
- 장미혜·이미정·김동식·주재선·동제연·고현승·노성훈·이시림(2019). 2019년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 통계청(2009). 국가통계 실무지침: 조사통계실무자를 위한 가이드.
- 통계청(2020). 2020년 자체통계품질진단 매뉴얼(조사통계).
- 황정임·안상수·주재선·김동식·정수연·권인숙·이경환·윤수경(2016).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 (2) 웹페이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2022.3.8.\)](https://www.law.go.kr/법령/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2022.3.8.))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제32조\(2022.2.21.\)](https://www.law.go.kr/법령/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제32조(2022.2.21.))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2022.2.28.\)](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2022.2.28.))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3.8.\)](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3.8.))





## 부 록

|                             |     |
|-----------------------------|-----|
| 〈부록 1〉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조사표 | 343 |
| 〈부록 2〉 2018년, 2021년 조사항목 비교 | 380 |





## 〈부록 1〉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조사표



승인번호  
제154018호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CODE.

NO.

##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A)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실태를 파악하고 성희롱 예방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 제32조에 의거하여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154018호)인 본 조사는 「통계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며,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8월

조사표 작성 요령

- 각 조사 문항별로 해당되는 응답 항목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표로 구성된 질문은 ①에서 ②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됩니다.

| 구 분                              | 그렇다 | 아니다 |
|----------------------------------|-----|-----|
| (1)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 | ①   | ②   |
- 응답 칸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칸에 숫자 또는 내용을 기입해 주세요.

**A** 우선순위에 따라 3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②, 2순위 ③, 3순위 ①

**B** 어디였습니까?

① 사무실 내    ② 화식 장소 ...    ⑥ 기타(적어주세요 : 직장 앞 카페)
- 표시한 응답을 바꾸고 싶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다시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수정액 등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 구 분                              | 그렇다 | 아니다 |
|----------------------------------|-----|-----|
| (1)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 | ①   | X   |
- 화살표(➡)로 표시된 항목은 안내된 문항으로 이동하여 응답해 주시고, 주된 응답은 1가지만 선택하여 표시해 주십시오.

조사주관



여성가족부

조사수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실사기관



한국갤럽

문의처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이현정 연구원 ☎ 02-3702-2598

## 1. 성희롱 관련 업무 운영 현황

1

다음은 현재 귀하가 속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업무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을 기준으로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 내가 재직 중인 직장에는...                                                    | 그렇다 | 아니다 |
|---------------------------------------------------------------------|-----|-----|
| (1)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에 관한 자체 규정(지침, 내규 등)이 있다                           | ①   | ②   |
| (2)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을 게시하거나 안내하고 있다                                      | ①   | ②   |
| (3) 성희롱 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 매뉴얼이 있다                                        | ①   | ②   |
| (4) 가해자 징계,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자체 규정(지침, 내규 등)이 마련되어 있다           | ①   | ②   |
| (5)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①   | ②   |
| (6) 성희롱 피해와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고충상담원, 혹은 고충상담창구(00부서, 00노조)가 지정되어 있다      | ①   | ②   |
| (7) 성희롱 피해와 고충 관련 업무를 외부 성희롱 전문(가)기관에 위탁/지정하고 있다                    | ①   | ②   |
| (8) 독립적이고 안전한(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상담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 ①   | ②   |
| (9) 온라인을 활용한 상담 및 신고를 받고 있다<br>(스마트폰/태블릿/PC 등을 활용한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 | ①   | ②   |
| (10) 성희롱 상담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안내/홍보하고 있다                    | ①   | ②   |
| (11) 성희롱 사건조사 및 처리를 위한 위원회가 있다                                      | ①   | ②   |
| (12) 성희롱 사건조사 및 처리를 위한 위원회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①   | ②   |
| (13) 성희롱 예방, 상담, 사건대응 관련 업무를 위한 별도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 ①   | ②   |

2

귀 사/기관의 **사업주/기관장**은 **직장 내 성희롱 방지**에 대한 **법적 의무(책무)**를 인지하고,  
**관련 제도적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자 노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3 항목으로 이동

2-1

귀 사/기관의 **사업주/기관장**은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공정한 사건처리** 등에 대한 책무 혹은  
 이행과 관련해서 전체 구성원 혹은 업무담당자에게 **직접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3

지난 3년간(2018년 8월 ~ 2021년 7월) 귀 사/기관의 성희롱 관련 **고충상담 건수**는 몇 건이었습니까?

※ 유의사항 : 자발적으로 상담을 요청하거나 상담원이 인지하여 상담을 실시한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함.  
또한, 후속상담에 대한선 동일 건으로 간주함.

| 기 간                 | 건 수 |
|---------------------|-----|
| 2018년 8월 ~ 2021년 7월 | 건   |

3 항목에서 1건도 없는 경우

→ 4 항목으로 이동

3-1

3 항목에서 1건 이상 응답하신 경우

귀 사/기관에서는 성희롱 관련 고충상담 시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 항 목                                     | 그렇다 | 아니다 |
|-----------------------------------------|-----|-----|
| (1) 피해자에게 조사 및 구제 방식을 안내한다              | ①   | ②   |
| (2) 상담내용에 대해 비밀이 유지될 것임을 안내한다           | ①   | ②   |
| (3)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방식에 대해 청취한다              | ①   | ②   |
| (4) 상담내용을 기록하여 정리한다                     | ①   | ②   |
| (5) 성희롱 발생 인지 시 즉각 성희롱 업무 관련 상급자에게 보고한다 | ①   | ②   |
| (6) 고충상담 접수 내용을 정기적으로 사업주/기관장에게 보고한다    | ①   | ②   |

4

지난 3년간(2018년 8월 ~ 2021년 7월) 귀 사/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였습니까?

담당부서(기구)에 접수되어 처리된 사건 뿐 아니라 고충상담원, 담당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거나, 외부경로를 통해 인지된 사건 등을 모두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① 1건도 없다 → 7 페이지 11 항목으로 이동

② 1건 이상 발생하였다

4-1

지난 3년간(2018년 8월 ~ 2021년 7월) 귀 사/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은 몇 건이었습니까?

담당부서(기구)에 접수되어 처리된 사건 뿐 아니라 고충상담원, 담당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거나, 외부경로를 통해 인지된 사건 등을 모두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기 간                 | 건 수 |
|---------------------|-----|
| 2018년 8월 ~ 2021년 7월 | 건   |

☛ 5 ~ 10 항목은 4 항목에서 '② 1건 이상 발생하였다'에 응답하신 경우만 해당됩니다.  
 ☛ '① 1건도 없음'에 응답하신 경우 7 페이지 11 항목부터 응답하시면 됩니다.

5

4 항목에서 '② 1건 이상 발생하였다'에 응답하신 경우

지난 3년간(2018년 8월 ~ 2021년 7월) 귀 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된 성희롱 사건 수는 몇 건이었습니까?

| 기 간                 | 건 수 |
|---------------------|-----|
| 2018년 8월 ~ 2021년 7월 |     |

5 항목에서 1건도 없는 경우  
→ 7 페이지 11 항목으로 이동

5-1

5 항목에서 1건 이상 응답하신 경우

조사신청(사건신고, 사건접수 등) 후 조사가 개시되기까지 평균적으로 소요된 기간은 얼마입니까?

평균

일

5-2

5 항목에서 1건 이상 응답하신 경우

조사가 개시되면, 통상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복수응답)

- ① 고충처리담당부서
- ② 고충상담원
- ③ 감사실(감사업무 담당자)
- ④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업무 의뢰
- ⑤ 외부 전문가가 조사자로 참여
- ⑥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5-3

5 항목에서 1건 이상 응답하신 경우

조사 진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알리고 있습니까?

- ①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알린다
- ② 피해자의 요청여부에 상관없이 알린다
- ③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는다

5-4

5 항목에서 1건 이상 응답하신 경우

조사 개시로부터 조사 종료까지 평균적으로 소요된 기간은 얼마입니까?

평균

일





- ☛ 5 ~ 10 항목은 4 항목에서 '② 1건 이상 발생하였다'에 응답하신 경우만 해당됩니다.  
 ☛ '① 1건도 없음'에 응답하신 경우 7 페이지 11 항목부터 응답하시면 됩니다.

6

#### 4 항목에서 '② 1건 이상 발생하였다'에 응답하신 경우

지난 3년간(2018년 8월 ~ 2021년 7월) 귀 사/기관의 성희롱 사건 심의를 위한 위원회가 개최된 사건은 몇 건이었습니까?

| 기 간                 | 건 수                    |
|---------------------|------------------------|
| 2018년 8월 ~ 2021년 7월 | <input type="text"/> 건 |

6 항목에서 1건도 없는 경우  
 → 5 페이지 7 항목으로 이동

6-1

#### 6 항목에서 1건 이상 응답하신 경우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심의 및 판단 등을 논의하는 위원회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주된 위원회 1개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고충심의위원회/성희롱심의위원회 ② 인사위원회  
 ③ 징계위원회 ④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6-2

#### 6 항목에서 1건 이상 응답하신 경우

성희롱 여부의 심의 및 판단 등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원은 어떠한가?  
 해당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사업주/기관장 ② 임원 및 관리자급  
 ③ 노동조합 간부 ④ 성희롱 관련 외부 전문가  
 ⑤ 감사부서 담당자 ⑥ 인사부서 담당자  
 ⑦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⑧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6-3

#### 6 항목에서 1건 이상 응답하신 경우

위원회를 통해 성희롱으로 인정된 건수는 얼마입니까?

|                      |                      |   |
|----------------------|----------------------|---|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건 |
|----------------------|----------------------|---|

6-4

#### 6 항목에서 1건 이상 응답하신 경우

지난 3년간(2018년 8월 ~ 2021년 7월) 귀 사/기관은 성희롱 심의 및 행위자 징계 결정 등의 절차에서 사전청취 결과 보고, 서면제출, 출석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확인하였습니까?

| 항 목                                                    | 매우 그렇다 | 약간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 비해당 |
|--------------------------------------------------------|--------|--------|--------|-----------|-----|
| (1) 성희롱 심의판단 시                                         | ①      | ②      | ③      | ④         |     |
| (2) 행위자 징계 결정 시<br>* 비해당 : 성희롱 행위자 징계 결정까지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 ①      | ②      | ③      | ④         |     |



- ☞ 5 ~ 10 항목은 4 항목에서 '② 1건 이상 발생하였다'에 응답하신 경우만 해당됩니다.  
 ☞ '① 1건도 없음'에 응답하신 경우 7 페이지 11 항목부터 응답하시면 됩니다.

7

## 4 항목에서 '② 1건 이상 발생하였다'에 응답하신 경우

지난 3년간(2018년 8월 ~ 2021년 7월) 귀 사/기관의 성희롱 사건 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4-1에서 응답한 성희롱 건수에 대한 조치결과를 의미합니다. 중복 응답이 가능합니다.

| 당사자 합의로 종료                 | 인사조치(배치전환 등)               | 주의 경고                      | 경징계(견책, 감봉 등)              |
|----------------------------|----------------------------|----------------------------|----------------------------|
| <input type="checkbox"/> 건 | <input type="checkbox"/> 건 | <input type="checkbox"/> 건 | <input type="checkbox"/> 건 |
| 중징계(정직, 해고 등)              | 경찰 등 고소고발 및 수사의뢰           | 재발방지교육                     | 기타                         |
| <input type="checkbox"/> 건 | <input type="checkbox"/> 건 | <input type="checkbox"/> 건 | <input type="checkbox"/> 건 |

8

## 4 항목에서 '② 1건 이상 발생하였다'에 응답하신 경우

지난 3년간(2018년 8월 ~ 2021년 7월) 귀 사/기관의 성희롱 사건 관련해서 피해자 보호 조치는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중복 응답이 가능합니다.

| 근무장소 변경                    | 배치전환                       | 유급휴가                       | 의료, 상담지원                   | 기타                         |
|----------------------------|----------------------------|----------------------------|----------------------------|----------------------------|
| <input type="checkbox"/> 건 | <input type="checkbox"/> 건 | <input type="checkbox"/> 건 | <input type="checkbox"/> 건 | <input type="checkbox"/> 건 |

9

## 4 항목에서 '② 1건 이상 발생하였다'에 응답하신 경우

지난 3년간(2018년 8월 ~ 2021년 7월) 귀 사/기관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 6 페이지

10 항목으로 이동

9-1

재발방지 대책으로 어떤 내용을 추진했습니까? 해당되는 내용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복수응답)

- ①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③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④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규정 정비  
 ⑤ 2차 피해 방지 모니터링      ⑥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가이드 마련 및 캠페인 실시  
 ⑦ 성희롱·성폭력 근절 위한 대책기구 구성      ⑧ 성희롱·성폭력 특별 신고기간 운영  
 ⑨ 성차별적인 인사 관리 등 조직 내 관련 제도 및 구조 특별 점검  
 ⑩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9-2

(공공기관만 응답함) 지난 3년간(2018년 8월 ~ 2021년 7월) 귀 사/기관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을 여성가족부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 5 ~ 10 항은 4 항에서 '② 1건 이상 발생하였다'에 응답하신 경우만 해당됩니다.  
 ☞ '① 1건도 없음'에 응답하신 경우 7 페이지 11 항부터 응답하시면 됩니다.

10

#### 4 항에서 '② 1건 이상 발생하였다'에 응답하신 경우

지난 3년간(2018년 8월 ~ 2021년 7월) 귀하는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자(조력자, 신고자 포함)가 아래와 같은 상황에 놓인 것을 전해 듣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1)~(20)은 성희롱 사건처리 및 회복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신체적 피해 및 손상, 불이익 등 '2차 피해'에 해당하는 행위들입니다.

| 항 목                                                                            | 있다 | 없다 |
|--------------------------------------------------------------------------------|----|----|
| (1) 피해자가 주변에 성희롱 피해를 말했을 때 공감이나 지지받지 못하고 의심 또는 참으라는 얘기를 들었다                    | ①  | ②  |
| (2) 피해자에 대해 악의적인 소문이 유포되었다                                                     | ①  | ②  |
| (3) 피해자의 평판, 인적 정보, 고충(피해) 내용 등이 온/오프라인 상으로 유포되었다                              | ①  | ②  |
| (4) 피해자에게 폭언, 폭행을 했다                                                           | ①  | ②  |
| (5) 피해자에게 과도한 업무를 주거나 업무 분장 외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등 업무적으로 괴롭혔다                         | ①  | ②  |
| (6) 부당한 처우에 대한 암시,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발언 등으로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했다                            | ①  | ②  |
| (7) 조사 과정에서 행위자 편을 들거나 불공정하게 진행하였다                                             | ①  | ②  |
| (8)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사 진행 등 사건처리 과정을 지연했다                                           | ①  | ②  |
| (9) 비밀보장에 소홀하거나 일부러 공개하여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 ①  | ②  |
| (10)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자와의 합의를 강요하였다                                              | ①  | ②  |
| (11) 행위자에게 책임을 가볍게 묻고 사건을 종료했다                                                 | ①  | ②  |
| (12) 행위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였다                                      | ①  | ②  |
| (13) 다른 유사 사건이 생길 때마다 계속 피해자를 거론하였다                                            | ①  | ②  |
| (14) 피해자에게 퇴사를 유도, 강요하였다                                                       | ①  | ②  |
| (15) 피해자가 파면, 해임, 해고 그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당했다                                   | ①  | ②  |
| (16) 피해자가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했다                               | ①  | ②  |
| (17) 피해자에게 직무배제, 미부여, 재배치, 그 밖에 원치 않는 인사 조치를 했다                                | ①  | ②  |
| (18) 피해자에게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이 차별적으로 지급되었다                | ①  | ②  |
| (19) 기관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였다 | ①  | ②  |
| (20) 피해자에게 직업능력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가 제한되었다                                        | ①  | ②  |



☞ 10 항의 (1) ~ (20) 중 1개 이상 '① 있다'에 응답한 경우 → 7 페이지 10-1 항부터 응답  
 ☞ 10 항의 (1) ~ (20) 중 모두 '② 없다'에 응답한 경우 → 7 페이지 11 항으로 이동



10-1
**10** 형에서 1개 이상 '① 있다'에 응답하신 경우

귀 사/기관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든** 응답해 주십시오.(복수응답)

① 특별한 조치가 없었음

② 2차 피해 중단에 대한 사업주/기관장의 입장 발표(선언)

③ 2차 피해에 대한 전직원 교육 실시

④ 2차 피해 실태 파악

⑤ 2차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휴가 등) 시행

⑥ 2차 피해 행위에 대한 조사 실시

⑦ 2차 피해의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⑧ 2차 피해의 행위자에 대한 분리 조치

⑨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매뉴얼, 지침 마련 및 안내

⑩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11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이하 '지침 표준안')'을 시행 중입니다.  
귀 사/기관에서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매뉴얼, 규정** 등을 마련했거나 마련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 II. 성희롱 예방교육

12
귀 사/기관은 **지난 한 해(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동안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까?  
실시하였다면, 연간 **몇 회** 실시하였습니까?

① 실시한 적이 없다

12-1
지난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된 이유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산이 부족해서

② 교육 참석률이 저조해서

③ 사업주/기관장, 직원 등이 예방교육 실시 자체에 비협조적이어서

④ 교육을 실시할 시간이 부족해서

⑤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⑥ 코로나 19로 인해

⑦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 12-1 응답 후, 9 페이지 15 항목으로 이동

② 1회 이상 실시하였다(적어주세요 : 연  회)

12 항목의 '① 실시한 적이 없다'에 응답한 경우 → 12-1 응답 후, 9 페이지 15 항목으로 이동

12 항목의 '② 1회 이상 실시하였다'에 응답한 경우 → 8 페이지 13 항목부터 응답



- ☞ 13, 14-1 ~ 14-4 항은 12 항에서 '② 1회 이상 실시하였다'에 응답하신 경우만 해당됩니다.  
 ☞ 12 항에서 '① 실시한 적이 없다'에 응답하신 경우 9 페이지 15 항부터 응답하시면 됩니다.

13

## 12 항에서 '② 1회 이상 실시하였다'에 응답하신 경우

귀 사/기관은 지난 한 해(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동안 금융사 또는 보험사 등 외부업체로부터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 강좌에 대한 안내(홍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 무료강좌 : 금융사 또는 보험사 등의 영업방식의 일환, 해당 금융사/보험사 직원이 예방교육을 진행하면 교육 전·후에 금융/보험 상품을 설명하는 강좌형태, 금융사/보험사가 아닌 다른 업종의 외부업체가 상품홍보와 예방교육 진행을 제안·홍보 받는 경우도 포함함

- ① 있다                      ② 없다

14-1

## 12 항에서 '② 1회 이상 실시하였다'에 응답하신 경우

지난 한 해(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동안 성희롱 예방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까?  
 가장 주된 진행 방식을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교육시간을 따로 지정해서 예방교육 내용으로만 진행함

14-1-1

교육시간을 따로 지정해서 진행했던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은 다음 중 무엇이었습니까?  
 해당하는 방법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복수응답)

- ① 대면방식의 집합 교육(강사 진행)  
 ② 대면방식의 세미나 혹은 워크숍 교육(강사 진행)  
 ③ 비대면 방식의 쌍방향 실시간 온라인 교육  
 ④ 개인별 온라인 교육(e-learning 교육)  
 ⑤ 강의가 아닌, 비디오 시청 등의 시청각 교육  
 ⑥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 14-1-1 응답 후, 8 페이지 14-2 항으로 이동

- ② 교육시간을 따로 지정해서 금융 및 보험 상품 등의 홍보와 함께 진행함

- ③ 교육시간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직원 조회나 회의 등에서 관련 내용을 간략히 언급함

- ④ 교육시간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자료를 배포하여 개인적으로 보게 함

- ⑤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 9 페이지  
 15 항으로 이동

14-2

## 12 항에서 '② 1회 이상 실시하였다'에 응답하신 경우

지난 한 해(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동안 성희롱 예방교육을 사업주/기관장, 관리자(임원 등), 직원 등으로 구분/분리해서 진행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18

귀 사/기관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할 때 겪은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대로 3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사업주/기관장의 무관심과 낮은 참석률      ② 교육 횟수, 교육시간 확보 어려움  
 ③ 교육 장비, 시설(강의실, 교육장 등) 부족      ④ 표준 프로그램 부족  
 ⑤ 다양한 교육방식 부족      ⑥ 강사 섭외의 어려움  
 ⑦ 직원들의 관심과 참석률 저조      ⑧ 관리자급의 관심과 참석률 저조  
 ⑨ 예산 부족      ⑩ 비대면 교육시스템 구비 미흡  
 ⑪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⑪ 어려움이 없었다

19

다음은 성희롱 사건처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항목별로 사건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여부에 응답해 주십시오.

| 항 목                                               | 그렇다 | 아니다 |
|---------------------------------------------------|-----|-----|
| (1) 사업주/기관장의 공정한 사건처리에 대한 의지와 관심 부족               | ①   | ②   |
| (2) 조사 등 사건처리 경험과 전문성 부족                          | ①   | ②   |
| (3) 회사/기관(상급자)의 부당한 압력                            | ①   | ②   |
| (4) 조직구성원의 무관심과 비협조(성희롱 사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조직 내 분위기) | ①   | ②   |
| (5) 성희롱 행위자의 비협조적 태도                              | ①   | ②   |
| (6) 2차 피해/가해 발생 시 대처 역량 부족                        | ①   | ②   |
| (7) 피해자에 대한 보호(업무 및 공간 분리, 신분보호 등)의 어려움           | ①   | ②   |
| (8)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매뉴얼 부재                | ①   | ②   |
| (9) 형식적인 관련 규정 및 절차(규정과 절차의 지연, 미준수 등)            | ①   | ②   |
| (10)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불이행                        | ①   | ②   |
| (11)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에 대한 의지/노력 미흡                  | ①   | ②   |
| (12) 고충상담 시 비밀유지, 2차 가해(피해) 등에 대한 부담감             | ①   | ②   |
| (13) 피해자 지원과정에서의 감정적 소진                           | ①   | ②   |
| (14) 회사/기관(상급자)의 압력/압박을 거부했을 때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        | ①   | ②   |



20

귀하는 정부에서 추진한 다음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대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항 목                                                                  | 전혀<br>모른다 | 들어본<br>적은<br>있지만<br>내용은<br>잘 모른다 | 내용을<br>잘 알고<br>있다 |
|----------------------------------------------------------------------|-----------|----------------------------------|-------------------|
| (1)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는 신고센터 운영                                    | ①         | ②                                | ③                 |
| (2)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기관의 공정한 사건처리에 대한 현장점검<br>및 행정지도 강화                 | ①         | ②                                | ③                 |
|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표준지침 마련 등 제도적 기반 강화                                 | ①         | ②                                | ③                 |
| (4) 공공부문의 가해자 제재 및 처벌 강화,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br>사업주 책임 강화(위반 시 과태료 상향 등) | ①         | ②                                | ③                 |
| (5) 관리자 교육 확대 등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 ①         | ②                                | ③                 |



☞ 20 항의 (1) ~ (5) 중 5개 모두 '③ 내용을 잘 알고 있다'에 응답한 경우 → 21 항부터 응답  
 ☞ 21 항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외엔 모두 → 12 페이지 22 항으로 이동

21

20 항의 5개 모두 '③ 내용을 잘 알고 있다'에 응답한 경우

귀하는 20 항에서 언급된 정부의 직장 내 성희롱 대책이 **직장 내 성희롱 방지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
- ② 약간 도움이 되었다
-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⑤ 잘 모르겠다

22

귀하는 지난 3년 동안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항 목                                                         | 전혀<br>그렇지<br>않다 | 별로<br>그렇지<br>않다 | 약간<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기구가 확대됨                                     | ①               | ②               | ③         | ④         |
| (2) 직장 내 성희롱 사건처리 절차 준수, 피해자 보호 등<br>기관(회사)의 사건처리 역량이 향상됨   | ①               | ②               | ③         | ④         |
| (3) 사업주/관리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노력과<br>관심이 증가함                | ①               | ②               | ③         | ④         |
| (4) 조직구성원의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①               | ②               | ③         | ④         |
| (5) 피해자 비난 등 2차 피해가 감소함                                     | ①               | ②               | ③         | ④         |
| (6) 성희롱 행위 발생 시, 즉시 문제를 제기하는 분위기가<br>조성됨                    | ①               | ②               | ③         | ④         |
| (7) 가해자 입장이 아닌, 피해자를 옹호/지지하고, 피해자<br>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분위기가 조성됨 | ①               | ②               | ③         | ④         |
| (8) 직장 내 성희롱은 성차별적인 조직문화와 구조에 의해<br>발생한다고 인식하는 분위기가 조성됨     | ①               | ②               | ③         | ④         |
| (9) 고충처리기구(고충상담창구, 사이버신고센터 등)를 이용하려는<br>분위기가 조성됨            | ①               | ②               | ③         | ④         |
| (10)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도가 높아짐                                      | ①               | ②               | ③         | ④         |
| (11) 개인 의사(참석 여부, 음주 여부 등)를 존중하는 회식문화로<br>변화함               | ①               | ②               | ③         | ④         |
| (12) 성차별적인 언행이나 관행이 줄어들음                                    | ①               | ②               | ③         | ④         |
| (13)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적농담, 신체접촉 등을 조심하는<br>분위기가 이전보다 강해짐       | ①               | ②               | ③         | ④         |

23

귀하는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사업주/기관장 책임 강화
- ② 피해자 보호
- ③ 조직문화 개선
- ④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
- ⑤ 상담 활성화(두려움 없는 신고)
- ⑥ 사건처리의 공정성 강화
- ⑦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24

**성희롱 방지를 위해 조직문화를 개선**하는데 직장 내에서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사항(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사업주/기관장, 관리자를 포함한 전 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 ② 성차별적 조직문화 개선 위한 캠페인 실시
- ③ 성평등 감수성 진단 위한 자가 체크리스트 보급, 점검 활성화
- ④ 고용 상 성차별 근절, 성평등 촉진을 위한 인사관리 제도 개선
- ⑤ 성별에 따른 업무 구분 관행 개선(예. 서무·비서 = 여성, 운전 = 남성)
- ⑥ 성인지 감수성 높이기 위한 교육 실시
- ⑦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사건처리 결과 공표(관련자가 드러나거나 특정되지 않도록 함)
- ⑧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25

**성희롱 피해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사이버상담, 별도 공간 마련 등 안전한 상담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
- ② 고충상담 창구 홍보 강화
- ③ 고충상담원의 전문성 및 성인지 감수성 강화
- ④ 피해자 정보 공개,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따돌림 등 직장 내 2차 피해 방지
- ⑤ 인사, 업무 등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 ⑥ 피해자 보호(휴가, 배치전환 등) 강화
- ⑦ 피해자 회복과 치유를 위한 상담, 의료 등 지원 강화
- ⑧ 사내 성희롱 관련 규정과 매뉴얼 마련 및 홍보 강화
-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26

**성희롱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사업주/기관장에 대한 책무(위반 시 과태료 등) 강화
- ② 신고-조사-징계 등 신속한 사건처리 절차 운영
- ③ 외부전문가/외부 전문기관 활용/참여 강화
- ④ 행위자에 대한 엄중 조치(실질적 징계)
- ⑤ 사내 성희롱 관련 규정과 매뉴얼 마련
- ⑥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27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사업주/기관장의 입장 발표(선언)
- ② 2차 피해에 대한 전직원 교육 실시
- ③ 2차 피해 실태 파악
- ④ 2차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휴가 등) 시행
- ⑤ 2차 피해 행위에 대한 조사 실시
- ⑥ 2차 피해의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 ⑦ 2차 피해의 행위자에 대한 분리 조치
- ⑧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매뉴얼, 사건처리 지침 마련 및 안내
-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28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로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공간분리, 업무분리, 접근금지 등)
- ② 피해자의 배치전환(부서, 업무 등)
- ③ 피해자에 대한 휴가, 휴직 부여
- ④ 피해자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상담, 의료 등 지원
- ⑤ 행위자 뿐 아니라 행위자 주변인에 대한 피해자와의 분리
- ⑥ 행위자에 대한 징계
- ⑦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 IV. 응답자 특성

**D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DQ2** 귀하의 생년은 언제입니까?

|  |  |  |  |  |   |
|--|--|--|--|--|---|
|  |  |  |  |  | 년 |
|--|--|--|--|--|---|

**DQ3** 귀하의 고용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기간제, 무기계약직, 간접고용, 일용직, 임시직 등)

**DQ4** 귀하는 현 직장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  |   |  |  |    |
|--|--|---|--|--|----|
|  |  | 년 |  |  | 개월 |
|--|--|---|--|--|----|

**DQ5** 귀하가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성희롱 방지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  |   |  |  |    |
|--|--|---|--|--|----|
|  |  | 년 |  |  | 개월 |
|--|--|---|--|--|----|

**DQ6** 귀하는 현재 직장 내에서 성희롱 방지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업무와 겸임하고 있습니까?

- ① 성희롱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② 다른 업무와 겸임하고 있다

**DQ7** 귀하는 성희롱 업무를 담당하게 된 이후에 성희롱 방지 관련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이수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전 직장에서도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 ① 이수하였다                      ② 이수하지 않았다

**DQ8**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 노동조합 등의 노동자 자치기구가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DQ9** 코로나 19로 인한 근무환경의 변화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해당되는 내용에 응답해 주십시오.

| 항 목                                               | 그렇다 | 아니다 |
|---------------------------------------------------|-----|-----|
| (1) 재택근무를 실시하여 출근 횟수가 줄었다                         | ①   | ②   |
| (2) 줌(Zoom), 단체 채팅방 등 온라인/비대면 방법을 이용한 업무 진행이 증가했다 | ①   | ②   |
| (3)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화식, 단합대회 등이 줄었다                 | ①   | ②   |

**DQ10** 현재(조사일 기준) 귀사의 전체 근로자 수를 연령별, 성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 유의사항 : 전체 근로자는 상용·임시·일용 근로자 등 모두를 포함합니다.

| 구분 | 만 40세 미만 |   |    | 만 40세 이상 |   |    |
|----|----------|---|----|----------|---|----|
|    | 남        | 여 | 합계 | 남        | 여 | 합계 |
| 계  |          |   |    |          |   |    |

**DQ11** 현재(조사일 기준) 귀사의 전체 근로자 수를 직급별, 성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 유의사항 : 전체 근로자는 상용·임시·일용 근로자 등 모두를 포함합니다.

| 구분 | 관리자급(임원 포함) |   |    | 사원급 |   |    |
|----|-------------|---|----|-----|---|----|
|    | 남           | 여 | 합계 | 남   | 여 | 합계 |
| 계  |             |   |    |     |   |    |

응답해 주신 내용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귀중하게 쓰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성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사 후 기록표

|              |                                                                                                                           |                                                                                                                                                              |
|--------------|---------------------------------------------------------------------------------------------------------------------------|--------------------------------------------------------------------------------------------------------------------------------------------------------------|
| 응답자<br>기본 정보 | 성명                                                                                                                        |                                                                                                                                                              |
|              | 전화번호                                                                                                                      | <div> <div>① 집      ② 핸드폰      ③ 직장</div> <div>(      ) - (      ) - (      )</div> </div> <div>☞ 전화번호는 추후 자료 확인을 위한 목적이며, 절대로 다른 목적에 이용하거나 유출되지 않습니다.</div> |
| 응답 날짜        | 2021년 (      )월 (      )일                                                                                                 |                                                                                                                                                              |
| 응답 시간        | <div> <div>① 오전      ② 오후</div> <div>(      )시 (      )분 부터 (      )시 (      )분 까지</div> </div> <div>총(      )분간 응답</div> |                                                                                                                                                              |



승인번호  
제154018호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CODE.

|  |  |  |  |  |  |
|--|--|--|--|--|--|
|  |  |  |  |  |  |
|--|--|--|--|--|--|

NO.

|  |  |  |  |  |  |
|--|--|--|--|--|--|
|  |  |  |  |  |  |
|--|--|--|--|--|--|

##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B)

###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실태를 파악하고 성희롱 방지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 제32조에 의거하여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154018호)인 본 조사는 「통계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며,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8월

### 조사표 작성 요령

1. 각 조사 문항별로 해당되는 응답 항목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표로 구성된 질문은 ①에서 ②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됩니다.

| 구 분                         | 그렇다 | 아니다 |
|-----------------------------|-----|-----|
| (4) 아줌마, 아가씨, 아저씨 등의 호칭을 들음 | ①   | ②   |

2. 응답 칸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칸에 숫자 또는 내용을 기입해 주세요.

**A**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 1순위 | ② | 2순위 | ③ |
|-----|---|-----|---|

**B** 어디였습니까?

① 사무실 내      ② 화식 장소 ...      ⑥ 기타(적어주세요 : 직장 앞 카페)

3. 표시한 응답을 바꾸고 싶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워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다시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수정액 등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 구 분                         | 그렇다 | 아니다 |
|-----------------------------|-----|-----|
| (4) 아줌마, 아가씨, 아저씨 등의 호칭을 들음 | ①   | X   |

4. 화살표(➡)로 표시된 항목은 안내된 문항으로 이동하여 응답해 주시고, 주된 응답은 1가지만 선택하여 표시해 주십시오.

조사주관



여성가족부

조사수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실시기관

한국갤럽

문의처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이현정 연구원 ☎ 02-3702-2598

## I. 직장 내 조직문화

1

다음은 귀하가 속한 **직장 내 조직문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1-1

다음은 귀하가 속한 **직장 내 조직문화(1)**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는 가장 가까운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 항 목                                                        | 전혀<br>그렇지<br>않다 | 별로<br>그렇지<br>않다 | 약간<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1) 우리 직장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다                      | ①               | ②               | ③         | ④         |
| (2) 우리 직장은 회식 등 업무시간 외의 모임에 꼭 참석해야 하는 분위기이다                | ①               | ②               | ③         | ④         |
| (3) 우리 직장은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고충이나 불만을 스스로없이 이야기하는 분위기이다           | ①               | ②               | ③         | ④         |
| (4) 우리 직장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큰 소리를 내거나 폭언을 자주 하는 편이다            | ①               | ②               | ③         | ④         |
| (5) 우리 직장 구성원들은 연애, 결혼 등 사생활에 관해 묻는데 거리낌이 없는 편이다           | ①               | ②               | ③         | ④         |
| (6) 우리 직장에서는 구성원들끼리 업무시간 외에 사적인 연락을 자주 주고받는 편이다            | ①               | ②               | ③         | ④         |
| (7) 우리 직장에서는 성차별이나 성희롱 등의 고충을 제기하면 오히려 손해 보거나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 | ①               | ②               | ③         | ④         |

1-2

다음은 귀하가 속한 **직장 내 조직문화(2)**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는 가장 가까운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 항 목                                 | 남성<br>에게<br>매우<br>불리함 | 남성<br>에게<br>약간<br>불리함 | 성별에<br>관계없이<br>동등 | 여성<br>에게<br>약간<br>불리함 | 여성<br>에게<br>매우<br>불리함 |
|-------------------------------------|-----------------------|-----------------------|-------------------|-----------------------|-----------------------|
| (1) 채용 기회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핵심 업무에 배치될 기회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승진 기회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유리한 보직 또는 인사이동의 기회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해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영향력 있는 고위직·관리자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   | ①                     | ②                     | ③                 | ④                     | ⑤                     |

2

귀하는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지난 3년간(2018년 8월 ~ 2021년 7월)**  
타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이나 행동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항 목                                                           | 있다 | 없다 |
|---------------------------------------------------------------|----|----|
| (1) '이 업계에서 여자/남자는 성공하기 어렵다' 등과 같이 여성/남성의 업무능력을 일반화하거나 깎아내림   | ①  | ②  |
| (2) '여자가 너무 기가 세다', '남자가 술도 못 마시냐' 등과 같이 여성다움/남성다움을 강요하거나 비난함 | ①  | ②  |
| (3) '여자들은 책임감이 없어서', '남자들은 꼼꼼하지 못해서' 등과 같이 여성/남성을 비하하거나 무시함   | ①  | ②  |
| (4) 아줌마, 아가씨, 아저씨 등의 호칭을 들음                                   | ①  | ②  |
| (5) 차 심부름, 청소, 짐 나르기 등을 특정 성별에게 주로 시킴                         | ①  | ②  |
| (6) '남자는 가장이니까...', '여자들은 애를 봐야 하니까...' 등과 같이 여성/남성의 역할을 당연시함 | ①  | ②  |

## II. 성희롱 예방교육

3

귀하는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지난 1년간(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실시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았습니까?

① 예방교육을 받음

3-1

**가장 최근에 받았던** 성희롱 예방교육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여러 방식으로 함께 진행된 경우 가장 주된 진행 방식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교육 시간을 따로 지정해서 예방교육을 진행함 → 3 페이지 3-2 항목으로 이동
- ② 교육 시간을 따로 지정해서 금융 및 보험 상품 등의 홍보와 함께 진행함
- ③ 교육 시간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직원 조회나 회의 등에서 관련 내용을 간략히 언급함
- ④ 교육 시간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자료를 배포하여 개인적으로 보게 함
- ⑤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 응답 후 3 페이지 3-3 항목으로 이동

☞ 3-1 항목에서 ①번에 응답한 경우 → 3 페이지 3-2 항목부터 응답

☞ 3-1 항목에서 ② ~ ⑤번에 응답한 경우 → 3 페이지 3-3 항목부터 응답

②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나 받지 않음

→ 4 페이지 4 항목으로 이동

③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음



3-2

**3-1** 형에서 ①번에 응답한 경우

가장 최근에 받았던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해당하는 방법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① 대면방식의 집합 교육(강사 진행)  
 ② 대면방식의 세미나 혹은 워크숍 교육(강사 진행)  
 ③ 비대면 방식의 쌍방향 실시간 온라인 교육  
 ④ 개인별 온라인 교육(e-learning 교육)  
 ⑤ 강의가 아닌, 비디오 시청 등의 시청각 교육  
 ⑥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 3-2 응답 후, 3-3 형 응답

3-3

**3** 형에서 ①번에 응답한 경우

가장 최근에 받았던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한 자신의 태도와 가장 가까운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 ① 매우 집중해서 들었다      ② 어느 정도 집중해서 들었다  
 ③ 집중해서 듣지 않았다      ④ 전혀 집중해서 듣지 않았다  
 ⑤ 출석체크하고 참석은 못했다

3-4

가장 최근에 받았던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이후 **본인이 경험한 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 항 목                                 | 전혀<br>그렇지<br>않다 | 별로<br>그렇지<br>않다 | 약간<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1) 직장 내 성희롱이 무엇인지(개념, 유형 등) 알게 되었다 | ①               | ②               | ③         | ④         |
| (2) 직장 안에서 나의 언행을 조심하게 되었다          | ①               | ②               | ③         | ④         |
| (3) 타인의 성희롱 피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 ①               | ②               | ③         | ④         |
| (4) 타인의 피해와 나의 피해의 대처방법을 알게 되었다     | ①               | ②               | ③         | ④         |
| (5) 2차 피해의 개념과 예방노력 등에 대해 알게 되었다    | ①               | ②               | ③         | ④         |

3-5

가장 최근에 받았던 성희롱 예방교육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효과가 없었다    ② 별로 효과가 없었다    ③ 약간 효과가 있었다    ④ 매우 효과가 있었다

3-5-1

**(3-5) 형 ①, ② 응답자만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이유 1개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매번 동일한 교육내용이어서(새로운 내용이 없어서)  
 ② 강사가 전문적이지 않아서  
 ③ 교육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아서  
 ④ 우리 직장에 맞지 않는 교육내용이어서  
 ⑤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 Ⅲ. 성희롱 피해 경험

#### 4 항은 "성희롱 피해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4 귀하는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지난 3년간(2018년 8월 ~ 2021년 7월)** 타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행동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항 목                                                                                              | 있다 | 없다 |
|--------------------------------------------------------------------------------------------------|----|----|
| (1)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 ①  | ②  |
| (2)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SNS, 전화,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 포함)                                                     | ①  | ②  |
| (3)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관련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①  | ②  |
| (4) 사적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 ①  | ②  |
| (5) 성적 관계를 요구하는 행위                                                                               | ①  | ②  |
| (6)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                                                                  | ①  | ②  |
| (7)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쳐다보는 행위                                                                  | ①  | ②  |
| (8)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①  | ②  |
| (9)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노출하는 행위                                                                   | ①  | ②  |
| (10) 포옹, 손잡기, 신체 밀착, 안마, 입맞춤 등의 신체 접촉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①  | ②  |
| (11)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 ①  | ②  |
| (12) 성적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 평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①  | ②  |
| (13) 성적 요구를 전제조건으로 고용, 평가 등의 이익을 암시하거나 제안하는 행위                                                   | ①  | ②  |
| (14)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성적 관계를 하거나 시도한 행위(예 : 회식 후 만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려고 모텔로 유인한 행위 등) | ①  | ②  |

☛ 4 항의 (1) ~ (14) 중 1개 이상 '① 있다'에 응답한 경우 → 4-1 항부터 응답  
 ☛ 4 항의 (1) ~ (14) 모두 '② 없다'에 응답한 경우 → 10 페이지 5 항으로 이동



☞ 4-1 ~ 4-13 형은 4 형의 (1) ~ (14) 중 1개 이상 '① 있다'에 응답하신 경우만 해당됩니다.  
 ☞ 모두 '② 없다'에 응답하신 경우 10 페이지 5 항목부터 응답하시면 됩니다.

4-1 당시 성희롱 행위자는 누구였습니까? 주된 경우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나의 하급자
- ② 나의 동급자
- ③ 나의 상급자(기관장, 사업주 등 제외)
- ④ 기관장, 사업주 등
- ⑤ 외부인(고객, 민원인, 거래처 직원 등)
- ⑥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4-2 당시 성희롱 행위자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 ② 여성

4-3 당시 성희롱 발생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주된 경우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사무실 내
- ② 화식장소
- ③ 야유회, 워크숍 등
- ④ 출장, 외부미팅 등
- ⑤ 화식 후 귀가 도중
- ⑥ 온라인(단체 채팅방, SNS, 메신저 등)
- ⑦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4-4 당시 성희롱 행위는 2회 이상 반복 혹은 지속되었습니까?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 ③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 ④ 잘 모르겠다

4-5 성희롱을 경험한 당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주된 경우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성희롱 행위자에게 바로 중단을 요구했다
- ② 화제를 돌리거나 그 자리를 피했다
- ③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 ④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다
- ⑤ 성희롱 행위자에게 적당히 호응해 주었다
- ⑥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4-6** 성희롱 발생 당시에 **목격자들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② 없었다 → **4-7** 항목으로 이동

**4-6-1** **목격자들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복수응답)

① 모른 척 하였다(방관했다)  
 ② 행위자에 동조하였다  
 ③ 행위자의 행동을 제지하였다  
 ④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었다(피해자를 가해상황으로부터 분리 등)  
 ⑤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4-7** 귀하는 **4** 에서 응답한 지난 3년 이내의 성희롱 피해 경험으로 어떤 **영향**을 받으셨습니까?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복수응답)

① 특별한 영향 없었음  
 ② 근로의욕 저하 등 업무 집중도가 떨어짐  
 ③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음  
 ④ 직장 만족도가 낮아짐  
 ⑤ 직장(내 성희롱 예방정책, 문화 등)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음  
 ⑥ 직장 내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생김  
 ⑦ 분노, 우울감, 두려움, 자살생각, 자존감 하락 등 정신적으로 힘들  
 ⑧ 두통, 복통, 구토 등 신체적으로 힘들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4-8** 귀하는 **4** 에서 응답한 지난 3년 이내의 성희롱 피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가장 주된 경우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참고 넘어감 → 7 페이지 **4-8-1** 항목으로 이동  
 ② 성희롱 행위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개인적으로 처리함 → 8 페이지 **4-9** 항목으로 이동  
 ③ 동료에게 알리고 의논함  
 ④ 고충상담창구(상담실, 사이버/모바일 상담센터 등)에 상담함  
 ⑤ 상급자에게 알리고 조치를 상의함 → 7 페이지 **4-8-2** 항목으로 이동  
 ⑥ 사내 기구를 통해 공식적으로 신고함  
 ⑦ 외부 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신고함  
 ⑧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 8 페이지 **4-9** 항목으로 이동

☛ **4-8** 항목에서 **①번**에 응답한 경우 → 7 페이지 **4-8-1** 항목 응답 후, 8 페이지 **4-9** 항목으로 이동

☛ **4-8** 항목에서 **②, ③, ⑤번**에 응답한 경우 → 8 페이지 **4-9** 항목으로 이동

☛ **4-8** 항목에서 **④ ~ ⑦번**에 응답한 경우 → 7 페이지 **4-8-2** 항목으로 이동



- ☞ 4-1 ~ 4-13 형은 4 형의 (1) ~ (14) 중 1개 이상 '① 있다'에 응답하신 경우만 해당됩니다.  
 ☞ 모두 '② 없다'에 응답하신 경우 10 페이지 5 항목부터 응답하시면 됩니다.

4-8-1

## 4-8 형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참고 **넘어갈**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복수응답)

- ①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거 같아서
- ② 성희롱 관련 업무담당자가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거 같지 않아서
- ③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 ④ 소문, 평판, 따돌림, 비난 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 ⑤ 업무와 직장생활에서 어려움이나 불이익 등을 받을까 걱정되어서
- ⑥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 봐서
- ⑦ 직장을 그만두게 될까 봐서
- ⑧ 대처방법을 잘 몰라서
-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 4-8-1 응답 후, 8 페이지 4-9 항목으로 이동

4-8-2

## 4-8 형의 ④ ~ ⑦번에 응답한 경우

기관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복수응답)

- ①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
- ② 고충상담원과의 상담, 고충처리절차 등에 대한 안내 등을 충분히 받았다
- ③ 피해자 보호조치(상담, 휴가, 업무/부서 이동 등)를 취했다
- ④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공간 분리, 업무 변경 등)를 취했다
- 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했다
- ⑥ 사건처리과정에서 신상보호(비밀유지/익명성 보장 등)를 제공했다
- ⑦ 업무 및 인사사고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 ⑧ 성희롱 행위자를 징계조치했다
- ⑨ 외부기관의 조치, 권고 등에 협조했다
- ⑩ 동료/행위자 등에 의한 피해자 비난, 따돌림, 소문 유포 등(2차 피해)에 대해 조치하였다
- ⑪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4-8-3

## 4-8 형의 ④ ~ ⑦번에 응답한 경우

기관의 사건 처리 과정과 결과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항 목         | 전혀<br>만족하지<br>않는다 | 별로<br>만족하지<br>않는다 | 약간<br>만족한다 | 매우<br>만족한다 |
|-------------|-------------------|-------------------|------------|------------|
| (1) 사건처리 과정 | ①                 | ②                 | ③          | ④          |
| (2) 사건처리 결과 | ①                 | ②                 | ③          | ④          |

## 4-8-4

## 4-8 항의 ④ ~ ⑦번에 응답한 경우

성희롱 문제제기 이후 귀하 또는 귀하의 조력자, 귀하의 피해를 신고한 자가 **사업주/기관장에 의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당한 경험 있습니까?

|                                                             | 있다 | 없다 |
|-------------------------------------------------------------|----|----|
|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①  | ②  |
|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 ①  | ②  |
| (3) 직무 미부여(배제),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①  | ②  |
|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①  | ②  |
|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 ①  | ②  |
|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지 | ①  | ②  |

## 4-9 항은 성희롱 "2차 피해 경험"에 대한 문항입니다.

## 4-9

## 4 항의 (1) ~ (14) 중 1개 이상 '① 있다'에 응답하신 경우

(1)~(14)는 성희롱 사건처리 및 회복의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신체적 피해 및 손상, 불이익 등 **2차 피해**에 해당하는 행위들입니다. 귀하(나, 귀하의 조력자, 피해신고자 포함)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까?**

| 항 목                                                    | 있다 | 없다 |
|--------------------------------------------------------|----|----|
| (1) 주변에 성희롱 피해를 알했을 때 공감이나 지지받지 못하고 의심 또는 참으라는 얘기를 들었다 | ①  | ②  |
| (2) 악의적인 소문이 유포되었다                                     | ①  | ②  |
| (3) 나의 평판, 인적 정보, 고충(피해) 내용 등이 온/오프라인 상으로 유포되었다        | ①  | ②  |
| (4) 나에게 폭언, 폭행을 했다                                     | ①  | ②  |
| (5) 나에게 과도한 업무를 주거나 업무 분장 외,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등 업무적으로 괴롭혔다  | ①  | ②  |
| (6) 부당한 처우에 대한 암시,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발언 등으로 나에게 압력을 가했다      | ①  | ②  |
| (7) 조사과정에서 행위자 편을 들거나 불공정하게 진행하였다                      | ①  | ②  |
| (8)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사 진행 등 사건처리 과정을 지연했다                   | ①  | ②  |
| (9) 비밀보장에 소홀하거나 일부러 공개하여 나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 ①  | ②  |
| (10) 나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자와의 합의를 강요하였다                        | ①  | ②  |
| (11) 행위자에게 책임을 가볍게 묻고 사건을 종료했다                         | ①  | ②  |
| (12) 행위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나에게 책임을 전가하였다                | ①  | ②  |
| (13) 다른 유사 사건이 생길 때마다 계속 나를 거론하였다                      | ①  | ②  |
| (14) 나에게 퇴사를 유도, 강요하였다                                 | ①  | ②  |

☞ 4-9 항의 (1) ~ (14) 중 1개 이상 '① 있다'에 응답한 경우 → 9 페이지 4-10 항목부터 응답

☞ 4-9 항의 (1) ~ (14) 모두 '② 없다'에 응답한 경우 → 10 페이지 5 항목으로 이동



- ☛ 4-9 형의 (1) ~ (14) 중 1개 이상 '① 있다'에 응답한 경우 → 9 페이지 4-10 항목부터 응답  
 ☛ 4-9 형의 (1) ~ (14) 모두 '② 없다'에 응답한 경우 → 10 페이지 5 항목으로 이동

**4-10** 귀하에게 4-9와 같은 행동을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복수응답)

- ① 성희롱 행위자
- ② 나의 동료
- ③ 나의 상급자(기관장, 사업주 제외)
- ④ 나의 하급자
- ⑤ 기관장, 사업주
- ⑥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4-11** 귀하는 4-9와 같은 행동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복수응답)

- ① 참고 넘어감
- ② 행위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개인적으로 처리함
- ③ 고충상담원에게 상담함
- ④ 사내 기구를 통해 공식적으로 신고함
- ⑤ 외부 기구에 상담함
- ⑥ 외부 기구에 공식적으로 신고함
- ⑦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4-12** 귀하는 4-9와 같은 경험으로 어떤 영향을 받으셨습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복수응답)

- ① 특별한 영향 없었음
- ② 근로의욕 저하 등 업무 집중도가 떨어짐
- ③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음
- ④ 직장(내 성희롱 예방정책, 문화, 동료 등)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음
- ⑤ 분노, 우울감, 두려움, 자살생각, 자존감 하락 등 정신적으로 힘들
- ⑥ 두통, 복통, 구토 등 신체적으로 힘들
- ⑦ 직장 내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생김
- ⑧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4-13** 귀하가 경험한 4-9와 같은 행위에 대해 기관에서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복수응답)

- ① 특별한 조치가 없었음
- ② 2차 피해 중단에 대한 사업주/기관장의 입장 발표(선언)
- ③ 2차 피해에 대한 전 직원 교육 실시
- ④ 2차 피해 실태 파악
- ⑤ 2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휴가 등) 시행
- ⑥ 2차 피해 행위에 대한 조사 실시
- ⑦ 2차 피해의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 ⑧ 2차 피해의 행위자에 대한 분리 조치
- ⑨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매뉴얼, 지침 마련 및 안내
- ⑩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5** **향은 타인의 성희롱 피해 “목격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 ☞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지난 3년간(2018년 8월 ~ 2021년 7월)** 경험한 내용을 응답해 주십시오.  
 ☞ 여러 차례 경험한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5**

귀하는 **지난 3년간(2018년 8월 ~ 2021년 7월)**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전해 듣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 항 목                                                                                              | 전해 듣거나<br>목격한 적이 <b>있다</b> | 전해 듣거나<br>목격한 적이 <b>없다</b> |
|--------------------------------------------------------------------------------------------------|----------------------------|----------------------------|
| (1)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 ①                          | ②                          |
| (2)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SNS, 전화,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 포함)                                                     | ①                          | ②                          |
| (3)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관련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①                          | ②                          |
| (4) 사적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 ①                          | ②                          |
| (5) 성적 관계를 요구하는 행위                                                                               | ①                          | ②                          |
| (6)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                                                                  | ①                          | ②                          |
| (7)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쳐다보는 행위                                                                  | ①                          | ②                          |
| (8)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①                          | ②                          |
| (9)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노출하는 행위                                                                   | ①                          | ②                          |
| (10) 포옹, 손잡기, 신체 밀착, 안마, 입맞춤 등의 신체 접촉을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①                          | ②                          |
| (11)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만지도록 강요하는 행위                                                       | ①                          | ②                          |
| (12) 성적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 평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①                          | ②                          |
| (13) 성적 요구를 전제조건으로 고용, 평가 등의 이익을 제한하는 행위                                                         | ①                          | ②                          |
| (14)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성적 관계를 하거나 시도한 행위(예 : 회식 후 만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려고 모델로 유인한 행위 등) | ①                          | ②                          |

☞ **5** **항의 (1) ~ (14) 중 1개 이상 '① 있다'에 응답한 경우 → 11 페이지 **5-1** 항목부터 응답**

☞ **5** **항의 (1) ~ (14) 모두 '② 없다'에 응답한 경우 → 13 페이지 **6** 항목으로 이동**



- ☛ 5-1 ~ 5-4 항은 5 항의 (1) ~ (14) 중 1개 이상 '① 있다'에 응답하신 경우만 해당됩니다.  
 ☛ 모두 '② 없다'에 응답하신 경우 13 페이지 6 항부터 응답하시면 됩니다.

5-1

5 항의 (1) ~ (14) 중 1개 이상 '① 있다'에 응답한 경우

귀하는 5 의 사건을 접했을 때 어떻게 조치하였습니까?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복수응답)

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5-1-1

귀하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복수응답)

- 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 ② 성희롱인지 정확히 판단하지 못해서
- ③ 문제를 제기해도 기관/조직에서 묵인할 거 같아서
- ④ 업무나 인사 등에서의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되어서
- ⑤ 소문, 평판, 따돌림, 비난 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 ⑥ 행위자와 사이가 불편해질까 봐서
- ⑦ 대처방법을 잘 몰라서
- ⑧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 5-2 항으로 이동

- ②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하였음
- ③ 성희롱 행위자의 행동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였음
- ④ 성희롱 행위자를 사내기구나 외부기구에 직접 신고하였음
- ⑤ 피해자가 사내기구나 외부기구에 신고하도록 제안하였음
- ⑥ 피해자가 상급자에게 보고하도록 제안하였음

→ 5-2 항으로 이동

5-2

귀하는 5 의 사건으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으셨습니까?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복수응답)

- ① 특별한 영향 없었음
- ② 근로의욕 저하 등 업무 집중도가 떨어짐
- ③ 직장(내 성희롱 예방정책, 문화 등)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음
- ④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음
- ⑤ 나도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음
- ⑥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나빠짐
- ⑦ 직장 내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생김
- ⑧ 직장동료들에게 실망감을 느낌
- ⑨ 직장 만족도가 낮아짐
- ⑩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 5-3 항은 타인의 성희롱 “2차 피해 목격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5-3

귀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조력자, 피해신고자 포함) 등이 아래와 같은 상황에 놓인 것을 목격하거나 전해들은 적이 있습니까? (1)~(20)은 성희롱 사건처리 및 회복의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신체적 피해 및 손상, 불이익 등 ‘2차 피해’에 해당하는 행위들입니다.

| 항 목                                                                            | 있다 | 없다 |
|--------------------------------------------------------------------------------|----|----|
| (1) 피해자가 주변에 성희롱 피해를 말했을 때 공감이나 지지받지 못하고 의심 또는 참으라는 얘기를 들었다                    | ①  | ②  |
| (2) 피해자에 대해 악의적인 소문이 유포되었다                                                     | ①  | ②  |
| (3) 피해자의 평판, 인적 정보, 고충(피해) 내용 등이 온/오프라인 상으로 유포되었다                              | ①  | ②  |
| (4) 피해자에게 폭언, 폭행을 했다                                                           | ①  | ②  |
| (5) 피해자에게 과도한 업무를 주거나 업무 분장 외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등 업무적으로 괴롭혔다                         | ①  | ②  |
| (6) 부당한 처우에 대한 암시,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발언 등으로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했다                            | ①  | ②  |
| (7) 조사 과정에서 행위자 편을 들거나 불공정하게 진행하였다                                             | ①  | ②  |
| (8)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사 진행 등 사건처리 과정을 지연했다                                           | ①  | ②  |
| (9) 비밀보장에 소홀하거나 일부러 공개하여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 ①  | ②  |
| (10)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자와의 합의를 강요하였다                                              | ①  | ②  |
| (11) 행위자에게 책임을 가볍게 묻고 사건을 종료했다                                                 | ①  | ②  |
| (12) 행위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였다                                      | ①  | ②  |
| (13) 다른 유사 사건이 생길 때마다 계속 피해자를 거론하였다                                            | ①  | ②  |
| (14) 피해자에게 퇴사를 유도, 강요하였다                                                       | ①  | ②  |
| (15) 피해자가 파면, 해임, 해고 그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당했다                                   | ①  | ②  |
| (16) 피해자가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했다                               | ①  | ②  |
| (17) 피해자에게 직무배제, 미부여, 재배치, 그 밖에 원치 않는 인사 조치를 했다                                | ①  | ②  |
| (18) 피해자에게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이 차별적으로 지급되었다                | ①  | ②  |
| (19) 기관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였다 | ①  | ②  |
| (20) 피해자에게 직업능력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가 제한되었다                                        | ①  | ②  |

☞ 5-3 항의 (1) ~ (20) 중 1개 이상 '① 있다'에 응답한 경우 → 13 페이지 5-4 항부터 응답  
 ☞ 5-3 항의 (1) ~ (20) 모두 '② 없다'에 응답한 경우 → 13 페이지 6 항으로 이동

5-4

**5-3** 형의 (1) ~ (20) 중 1개 이상 '① 있다'에 응답한 경우귀하는 **5-3** 의 사건으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으셨습니까?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복수응답)

- ① 특별한 영향 없었음
- ② 피해 경험/발생 시 공론화(신고 등)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함
- ③ 직장(내 성희롱 예방정책, 문화 등)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음
- ④ 직장을 떠나고 싶다고 느꼈음(이직의사)
- ⑤ 직장 내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생김
- ⑥ 직장동료들에게 실망감을 느낌
- ⑦ 근로의욕 저하 등 업무 집중도가 떨어짐
- ⑧ 타인의 성희롱 피해에 대해 관심 갖지 않게 됨
- ⑨ 피해자 옹호, 성희롱 방지 등을 위한 활동에 관심 갖고 동참해야겠다고 생각함
- ⑩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6** 향후 모든 응답자가 응답해 주십시오.

6

귀하는 **4-9**, **5-3** 과 같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행동 등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주된 이유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구성원들이 2차 피해/가해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 ② 2차 피해/가해 방지에 대한 기관의 인식과 의지가 부족해서
- ③ 2차 피해/가해에 대한 제재조치(규정 등)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 ④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감수성이나 인식수준이 낮아서
- ⑤ 직장 내에서 가해자의 위치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 ⑥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IV. 성희롱 업무 부서 인지도 및 정책 수요**

7

귀 사/기관의 사업주/기관장은 직장 내 성희롱 방지에 대한 법적 의무(책무)를 인지하고, 관련 제도적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자 노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 14 페이지 **8** 항목으로 이동

7-1

귀 사/기관의 사업주/기관장은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공정한 사건처리 등에 대한 책무 혹은 이행과 관련해서 전체 구성원 혹은 업무담당자에게 직접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8

다음은 **성희롱 방지 업무 부서 및 운영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귀하가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을 기준으로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 항 목                                                                 | 그렇다 | 아니다 | 잘 모르겠다 |
|---------------------------------------------------------------------|-----|-----|--------|
| (1) 고충상담원, 고충상담창구 등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 ①   | ②   | ③      |
| (2) 온라인을 활용한 상담 및 신고를 받고 있다<br>(스마트폰/태블릿/pc 등을 활용한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 | ①   | ②   | ③      |
| (3) 성희롱 예방지침이 있다                                                    | ①   | ②   | ③      |
| (4) 고충상담원, 고충상담창구, 사이버 성희롱 신고센터 등에 대해 안내받은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9

귀하는 본인이나 혹은 주변인이 성희롱을 경험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 여성가족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등 **외부에 있는 신고창구를 이용하거나 이용을 권유할 생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0

귀하는 본인이나 혹은 주변인이 성희롱을 경험한다면, **소속 회사(기관) 내 고충상담창구를 이용하거나 고충상담원에게 상담하도록 권유할 생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1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다면, **사내 절차를 통해 공정한 사건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 15 페이지 12 항목으로 이동                      ② 아니다

11-1

그럼, **공정한 사건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응답해 주십시오.(복수응답)

- ① 성희롱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② 이전에 발생했던 성희롱 사건의 처리(절차운영, 피해자보호, 조사, 징계 등)도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③ 성희롱 전담기구(없는 경우 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이 낮기 때문에  
 ④ 성희롱 사건처리를 위한 규정,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⑤ 성희롱 사건처리 절차가 준수되거나 조사 등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⑥ 사건축소나 은폐, 회유, 협박, 미온적 징계 등 공정한 사건처리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⑦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12 귀하는 그간 정부에서 추진한 다음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대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항 목                                                               | 전혀<br>모른다 | 들어본<br>적은<br>있지만<br>내용은<br>잘 모른다 | 내용을<br>잘 알고<br>있다 |
|-------------------------------------------------------------------|-----------|----------------------------------|-------------------|
| (1)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는 신고센터 운영                                 | ①         | ②                                | ③                 |
| (2)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기관의 공정한 사건처리에 대한 현장점검 및 행정지도 강화                 | ①         | ②                                | ③                 |
|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표준지침 마련 등 제도적 기반 강화                              | ①         | ②                                | ③                 |
| (4) 공공부문의 가해자 제재 및 처벌 강화,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주 책임 강화(위반 시 과태료 상향 등) | ①         | ②                                | ③                 |
| (5) 관리자 교육 확대 등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 ①         | ②                                | ③                 |



☞ 12 형의 (1) ~ (5) 중 5개 모두 '③ 내용을 잘 알고 있다'에 응답한 경우 ➡ 13 항목부터 응답  
☞ 13 항목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외엔 모두 ➡ 16 페이지 14 항목으로 이동

13 12 형의 5개 모두 '③ 내용을 잘 알고 있다'에 응답한 경우

귀하는 12 형에서 언급된 정부의 직장 내 성희롱 대책이 **직장 내 성희롱 방지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
- ② 약간 도움이 되었다
-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⑤ 잘 모르겠다

14 귀하는 **지난 3년 동안**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항 목                                                         | 전혀<br>그렇지 않다 | 별로<br>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기구가 확대됨                                     | ①            | ②            | ③      | ④      |
| (2) 직장 내 성희롱 사건처리 절차 준수, 피해자 보호 등<br>기관(회사)의 사건처리 역량이 향상됨   | ①            | ②            | ③      | ④      |
| (3) 사업주/관리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br>노력과 관심이 증가함                | ①            | ②            | ③      | ④      |
| (4) 조직구성원의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관심이<br>높아짐                       | ①            | ②            | ③      | ④      |
| (5) 피해자 비난 등 2차 피해가 감소함                                     | ①            | ②            | ③      | ④      |
| (6) 성희롱 행위 발생 시, 즉시 문제를 제기하는 분위기가<br>조성됨                    | ①            | ②            | ③      | ④      |
| (7) 가해자 입장이 아닌, 피해자를 옹호/지지하고, 피해자<br>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분위기가 조성됨 | ①            | ②            | ③      | ④      |
| (8) 직장 내 성희롱은 성차별적인 조직문화와 구조에<br>의해 발생한다고 인식하는 분위기가 조성됨     | ①            | ②            | ③      | ④      |
| (9) 고충처리기구(고충상담창구, 사이버신고센터 등)를<br>이용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됨            | ①            | ②            | ③      | ④      |
| (10)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도가 높아짐                                      | ①            | ②            | ③      | ④      |
| (11) 개인 의사(참석 여부, 음주 여부 등)를 존중하는<br>회사문화로 변화함               | ①            | ②            | ③      | ④      |
| (12) 성차별적인 언행이나 관행이 줄어들음                                    | ①            | ②            | ③      | ④      |
| (13)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적농담, 신체접촉 등을<br>조심하는 분위기가 이전보다 강해짐       | ①            | ②            | ③      | ④      |

15 귀하는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사업주/기관장 책임 강화
- ② 피해자 보호
- ③ 조직문화 개선
- ④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
- ⑤ 상담 활성화(두려움 없는 신고)
- ⑥ 사건처리의 공정성 강화
- ⑦ 2차 피해 방지
- ⑧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16

**성희롱 방지를 위해 조직문화를 개선하는데 직장 내에서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사항(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사업주/기관장, 관리자를 포함한 전 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 ② 성차별적 조직문화 개선 위한 캠페인 실시
- ③ 성평등 감수성 진단 위한 자가 체크리스트 보급, 점검 활성화
- ④ 고용상 성차별 근절, 성평등 촉진을 위한 인사관리 제도 개선
- ⑤ 성별에 따른 업무 구분 관행 개선(예. 서무·비서=여성, 운전=남성)
- ⑥ 성인지 감수성 높이기 위한 교육 실시
- ⑦ 기관 내 성희롱, 성폭력 발생 시 사건처리 결과 공표(관련자가 드러나거나 특정되지 않도록 함)
- ⑧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17

**성희롱 피해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사이버상담, 별도 공간 마련 등 안전한 상담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
- ② 고충상담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 ③ 고충상담원의 전문성 및 성인지 감수성 강화
- ④ 피해자 정보 공개,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따돌림 등 직장 내 2차 피해 방지
- ⑤ 인사, 업무 등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 ⑥ 피해자 보호(휴가, 배치전환 등) 강화
- ⑦ 피해자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상담, 의료 등 지원 강화
- ⑧ 사내 성희롱 관련 규정과 매뉴얼 마련 및 홍보 강화
-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18

**성희롱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사업주에 대한 책임(위반 시 과태료 등) 강화
- ② 신고-조사-징계 등 신속한 사건처리 절차 운영
- ③ 외부전문가/외부 전문기관 활용/참여 강화
- ④ 행위자에 대한 엄중 조치(실질적 징계)
- ⑤ 사내 성희롱 관련 규정과 매뉴얼 마련
- ⑥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19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사업주/기관장의 입장 발표(선언)
- ② 2차 피해에 대한 전직원 교육 실시
- ③ 2차 피해 실태 파악
- ④ 2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휴가 등) 시행
- ⑤ 2차 피해 행위에 대한 조사 실시
- ⑥ 2차 피해의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 ⑦ 2차 피해의 행위자에 대한 분리 조치
- ⑧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매뉴얼, 사건처리 지침 마련 및 안내
-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20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로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공간분리, 접근금지 등)
- ② 피해자의 배치전환(부서, 업무 등)
- ③ 피해자에 대한 휴가, 휴직 부여
- ④ 피해자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상담, 의료 등 지원
- ⑤ 행위자 뿐 아니라 행위자 주변인에 대한 피해자와의 분리
- ⑥ 행위자에 대한 징계
- ⑦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 V. 응답자 특성

D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DQ2

귀하의 **생년**은 언제입니까?

|  |  |  |  |  |
|--|--|--|--|--|
|  |  |  |  |  |
|--|--|--|--|--|

년



**DQ3** 귀하의 **직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고위관리직(대표, 사장, 전무, 이사, 상무 등 상근·비상근 임원)  
 ② 중간관리직(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 부서 책임·관리자)  
 ③ 일반직원(대리, 주임, 사원 등 일반직원)  
 ④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DQ4** 귀하의 **고용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기간제, 무기계약직, 간접고용, 일용직, 임시직 등)

**DQ5** 귀하는 현 직장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년   개월

**DQ6** **코로나 19로 인한 근무환경의 변화**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해당되는 내용에 응답해 주십시오.

| 항 목                                               | 그렇다 | 아니다 |
|---------------------------------------------------|-----|-----|
| (1) 재택근무를 실시하여 출근 횟수가 줄었다                         | ①   | ②   |
| (2) 줌(Zoom), 단체 채팅방 등 온라인/비대면 방법을 이용한 업무 진행이 증가했다 | ①   | ②   |
| (3)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회식, 단합대회 등이 줄었다                 | ①   | ②   |

**DQ7** 귀하가 현재 일하는 부서와 전체 직장의 **남녀 비중**은 대략 어떻게 됩니까?

| 항 목           | 여성이 대다수 | 여성이 약간 더 많음 | 남녀가 비슷 | 남성이 약간 더 많음 | 남성이 대다수 |
|---------------|---------|-------------|--------|-------------|---------|
| (1) 현재 일하는 부서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직장 전체     | ①       | ②           | ③      | ④           | ⑤       |

응답해 주신 내용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귀중하게 쓰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성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2〉 2018년, 2021년 조사항목 비교

| 구분                         | 2018년                                | 2021년                                                          | 비고                                               |
|----------------------------|--------------------------------------|----------------------------------------------------------------|--------------------------------------------------|
| 〈업무담당자용〉                   |                                      |                                                                |                                                  |
| I.<br>성희롱<br>관련 업무<br>운영현황 |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업무 운영현황               |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업무 운영현황                                         | [유지] 항목 수정, 순서 변경<br>[추가] 신규 항목 추가               |
|                            | -                                    | 2. 사업주/기관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조치 이행에 대한 의견                           | [추가]                                             |
|                            | -                                    | 2-1. 사업주/기관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공정한 사건처리 책무 및 이행에 대한 직원 대상 직접 언급 여부 | [추가]                                             |
|                            | -                                    | 3. 지난 3년간 성희롱 관련 고충상담 건수                                       | [추가]                                             |
|                            | -                                    | 3-1. 성희롱 고충상담 시 조치                                             | [추가]                                             |
|                            | 2. 지난 3년간 성희롱 사건 발생 여부               | 4. 지난 3년간 성희롱 사건 발생 여부                                         | [유지] 질문 문구 변경                                    |
|                            | 2-1. 지난 3년간 성희롱 사건 발생 건수 및 세부 유형별 건수 | 4-1. 지난 3년간 전체 성희롱 발생 건수                                       | [유지] 질문 문구 변경<br>[삭제] 세부 유형별 건수 삭제 후, 별도 문항으로 구성 |
|                            | -                                    | 5. 지난 3년 조사가 진행된 성희롱 사건 수                                      | [추가]                                             |
|                            | -                                    | 5-1. 신청 후 조사 개시까지 평균 소요 기간(일)                                  | [추가]                                             |
|                            | -                                    | 5-2. 조사 진행자                                                    | [추가]                                             |
|                            | -                                    | 5-3. 조사 진행 상황 피해자 알림 여부                                        | [추가]                                             |
|                            | -                                    | 5-4. 조사 개시 후 조사 종료까지 평균 소요 기간(일)                               | [추가]                                             |
|                            | -                                    | 6. 지난 3년 심의를 위한 위원회가 개최된 사건 수                                  | [추가]                                             |
|                            | -                                    | 6-1. 위원회 명칭                                                    | [추가]                                             |
|                            | -                                    | 6-2. 위원회 구성원                                                   | [추가]                                             |
|                            | -                                    | 6-3. 위원회를 통한 성희롱 인정 건수                                         | [추가]                                             |
|                            | -                                    | 6-4. 성희롱 심의·판단 및 행위자 징계 결정 시 피해자 의견 청취 여부                      | [추가]                                             |
|                            | 3-1. 성희롱 유형                          | -                                                              | [삭제] 일반직원용 조사에서 파악                               |
|                            | 3-2. 피해자와 성희롱 행위자와의 관계, 행위자 성별, 연령   | -                                                              | [삭제] 일반직원용 조사에서 파악                               |

| 구분                 | 2018년                                                                  | 2021년                                         | 비고                                 |
|--------------------|------------------------------------------------------------------------|-----------------------------------------------|------------------------------------|
|                    | 3-3. 성희롱 피해자 성별, 종사상 지위, 연령                                            | -                                             | [삭제] 일반직원용 조사에서 파악                 |
|                    | 3-4. 성희롱 발생장소                                                          | -                                             | [삭제] 일반직원용 조사에서 파악                 |
|                    | 3-5. 성희롱 사건 발생 후, 조치결과<br>(1)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조치결과<br>(2)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결과 | 7. 성희롱 사건 행위자 조치별 건수                          | [유지] 조치 유형 보완, 유형별 건수 파악할 수 있도록 변경 |
|                    |                                                                        | 8. 성희롱 사건 피해자 조치별 건수                          | [유지] 조치 유형 보완, 유형별 건수 파악할 수 있도록 변경 |
|                    | 3-6. 성희롱 사건 조치결과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의 재직상태 변화                                 | -                                             | [삭제] 문항 7로 통합                      |
|                    | -                                                                      | 9. 지난 3년 성희롱 사건 재발방지 대책 수립, 추진 여부             | [추가]                               |
|                    | -                                                                      | 9-1. 재발방지 대책으로 추진한 내용                         | [추가]                               |
|                    | -                                                                      | 9-2. 지난 3년 성희롱 사건 재발방지 대책 여성가족부 제출 여부         | [추가]                               |
|                    | 4. 성희롱 피해자의 피해상황 목격 및 전해들은 경험 여부                                       | 10. 성희롱 피해자의 피해상황 목격 및 전해들은 경험 여부             | [유지] 질문 문구 변경<br>[추가] 신규 항목 추가     |
|                    | -                                                                      | 10-1. 성희롱 피해자 2차 피해에 대한 대처                    | [추가]                               |
|                    | -                                                                      | 11.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매뉴얼, 규정 마련 여부                | [추가]                               |
| II.<br>성희롱<br>예방교육 | 5. 연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횟수                                                   | 12. 연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횟수                         | [유지]                               |
|                    | 5-1.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이유                                                   | 12-1.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이유                         | [유지] 질문 문구, 보기 항목 변경               |
|                    | 6. (금융사, 보험사 등의)성희롱 예방 교육 무료강좌 여부                                      | 13. (금융사, 보험사 등의)성희롱 예방 교육 무료강좌 여부            | [유지]                               |
|                    | 7-1.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 방식                                                    | 14-1.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 방식                          | [유지]                               |
|                    | 7-1-1. 교육시간을 따로 지정한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 14-1-1. 교육시간을 따로 지정한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 [유지] 보기 항목 변경                      |
|                    | -                                                                      | 14-2. 직급별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 여부                      | [추가]                               |
|                    | 7-2. 기관장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 여부                                               | 14-3. 기관장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 여부                     | [유지] 질문 문구 변경                      |
|                    | 7-3.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                                                      | 14-4.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                            | [유지] 질문 문구 변경                      |
|                    | -                                                                      | 15. 성희롱 예방교육 운영에 대한 사업주/기관장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 의지 정도 | [추가]                               |
|                    | -                                                                      | 16. 예방교육 운영 강화에 대한 사업주/기관장의 직접 지시나 언급 여부      | [추가]                               |



| 구분                        | 2018년                                 | 2021년                                            | 비고                                                 |
|---------------------------|---------------------------------------|--------------------------------------------------|----------------------------------------------------|
| III.<br>성희롱<br>업무의<br>어려움 | 8. 성희롱 업무의 어려움                        | 17. 성희롱 업무의 어려움                                  | [유지] 보기 항목 세분화<br>[추가] 신규 항목 추가                    |
|                           | 9.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 시 어려움                  | 18. 성희롱 예방교육 진행 시 어려움                            | [유지] 보기 항목 변경                                      |
|                           | 10. 성희롱 사건처리 과정의 어려움                  | 19. 성희롱 사건처리 과정의 어려움                             | [유지] 기존 항목 변경 및 삭제<br>[추가] 신규 항목 추가                |
|                           | 11.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             | -                                                | [삭제] 신규 추가한 사안별 정책<br>수요 문항으로 대체                   |
|                           | 12. 정부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대책<br>인지여부         | 20. 정부가 추진한 직장 내 성희롱 방<br>지대책 인지 여부              | [유지] 세부 항목 변경                                      |
|                           | -                                     | 21. 직장 내 성희롱 방지에 있어 정부<br>대책의 도움 정도              | [추가]                                               |
|                           | -                                     | 22. 지난 3년 동안 직장 내 성희롱 관련<br>변화 정도                | [추가]                                               |
|                           | 13.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필요한<br>정책         | 23.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필요한<br>정책                    | [유지] 응답 방식 변경(우선순위:<br>3개 → 우선순위: 2개),<br>보기 항목 변경 |
|                           | -                                     | 24. 성희롱 방지를 위해 조직문화를<br>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이뤄져야<br>할 정책 | [추가]                                               |
|                           | -                                     | 25. 성희롱 피해 신고를 활성화하기<br>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 [추가]                                               |
|                           | -                                     | 26. 성희롱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br>가장 필요한 정책              | [추가]                                               |
|                           | -                                     | 27.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br>정책                    | [추가]                                               |
|                           | -                                     | 28.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로<br>가장 필요한 정책              | [추가]                                               |
| IV.<br>응답자<br>기본사항        | DQ1. 성별                               | DQ1. 성별                                          | [유지]                                               |
|                           | DQ2. 연령                               | DQ2. 연령                                          | [유지]                                               |
|                           | DQ3. 종사상 지위                           | DQ3. 종사상 지위(고용 형태)                               | [유지] 질문 문구 변경                                      |
|                           | DQ4. 현 직장 근무기간                        | DQ4. 현 직장 근무기간                                   | [유지]                                               |
|                           | DQ5. 현 직장의 성희롱 업무담당 기간                | DQ5. 현 직장의 성희롱 업무담당 기간                           | [유지] 질문 문구 변경                                      |
|                           | DQ6. 성희롱 업무담당 전담여부                    | DQ6. 성희롱 업무담당 전담여부                               | [유지]                                               |
|                           | DQ7. 성희롱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br>이수 여부        | DQ7. 성희롱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br>이수 여부                   | [유지] 질문 문구 변경                                      |
|                           | DQ8. 현 직장 노동조합, 노사협의회<br>등 자치기구 존재 여부 | DQ8. 현 직장 노동조합, 노사협의회<br>등 자치기구 존재 여부            | [유지]                                               |

| 구분                      | 2018년                       | 2021년                                                       | 비고                                                 |
|-------------------------|-----------------------------|-------------------------------------------------------------|----------------------------------------------------|
|                         | -                           | DQ9. 코로나19로 인한 근무환경의 변화                                     | [추가]                                               |
|                         | DQ9. 종사상 지위별, 연령별, 성별 근로자 수 | DQ10. 연령별, 성별 근로자 수                                         | [유지] 연령별, 성별 근로자 수 유지<br>[삭제] 종사상 지위별, 성별 근로자 수 삭제 |
|                         | -                           | DQ11. 직급별, 성별 근로자 수                                         | [추가]                                               |
| 〈일반직원용〉                 |                             |                                                             |                                                    |
| I.<br>직장 내<br>조직문화      | 1. 직장 내 조직문화                | 1-1. 직장 내 조직문화(1): 일반적 조직문화<br>1-2. 직장 내 조직문화(2): 성차별적 조직문화 | [유지] 조직의 성평등 수준과 조직 문화 특성을 구분하여 파악 하도록 문항 변경 및 추가  |
|                         | 2. 직장 내 성희롱 문제의 심각성         | -                                                           | [삭제] 활용도 낮음                                        |
|                         | -                           | 2. 재직 중인 직장에서 지난 3년 성차별적 괴롭힘 직접 경험 여부                       | [추가]                                               |
|                         |                             |                                                             |                                                    |
| II.<br>성희롱<br>예방교육      | 3. 최근 1년간 예방교육 참석           | 3. 최근 1년간 예방교육 참석                                           | [유지]                                               |
|                         | 3-1. 예방교육 방식                | 3-1. 예방교육 방식                                                | [유지] 보기 항목 변경                                      |
|                         | 3-2. 예방교육 진행방법              | 3-2. 예방교육 진행방법                                              | [유지] 보기 항목 변경, 응답 방식 변경(주된 1가자→모두)                 |
|                         | 3-3. 예방교육 참여 태도             | 3-3. 예방교육 참여 태도                                             | [유지] 보기 문구 변경                                      |
|                         | 3-4. 예방교육 경험 이후 본인이 경험한 변화  | 3-4. 예방교육 경험 이후 본인이 경험한 변화                                  | [유지] 세부 항목 변경                                      |
|                         | 3-5. 예방교육의 성희롱 방지 효과        | 3-5. 예방교육의 성희롱 방지 효과                                        | [유지]                                               |
|                         | 3-5-1. 예방교육의 성희롱 방지 미효과 이유  | 3-5-1. 예방교육의 성희롱 방지 미효과 이유                                  | [유지]                                               |
| III.<br>성희롱<br>피해<br>경험 | 4. 성희롱 유형별 피해 경험            | 4. 성희롱 유형별 피해 경험                                            | [유지] 용어 및 표현 수정<br>[추가] 성희롱 유형 추가                  |
|                         | 4-1. 성희롱 행위자와의 관계           | 4-1. 성희롱 행위자와의 관계                                           | [유지] 보기 항목 변경                                      |
|                         | 4-2. 성희롱 행위자 성별             | 4-2. 성희롱 행위자 성별                                             | [유지]                                               |
|                         | 4-3. 성희롱 발생 장소              | 4-3. 성희롱 발생 장소                                              | [유지] 보기 항목 변경                                      |
|                         | -                           | 4-4. 성희롱 행위의 지속 여부                                          | [추가]                                               |
|                         | -                           | 4-5. 성희롱 경험 당시 그 자리에서의 대처행동                                 | [추가]                                               |
|                         | -                           | 4-6. 성희롱 발생 당시 목격자 여부                                       | [추가]                                               |
|                         | -                           | 4-6-1. 성희롱 발생 당시 목격자의 대응 행동                                 | [추가]                                               |

| 구분                        | 2018년                                | 2021년                                                          | 비고                                             |
|---------------------------|--------------------------------------|----------------------------------------------------------------|------------------------------------------------|
|                           | 4-4. 성희롱 직접 피해 경험으로 인한 영향            | 4-7. 성희롱 직접 피해 경험으로 인한 영향                                      | [유지] 보기 항목 변경                                  |
|                           | 4-5. 대처 유형                           | 4-8. 대처 유형                                                     | [유지] 보기 항목 변경                                  |
|                           | 4-5-1. 참고 넘어간 이유                     | 4-8-1. 참고 넘어간 이유                                               | [유지] 보기 항목 변경                                  |
|                           | 4-5-2. 공식적 신고 후 조치 내용                | 4-8-2. 공식적 신고 후 조치 내용                                          | [추가] 보기 항목 변경                                  |
|                           | 4-5-3. 처리결과 만족 여부                    | 4-8-3. 기관의 사건처리 만족도: 과정, 결과                                    | [변경·추가] 기관 사건처리 과정, 결과 각각에 대한 만족도 파악           |
|                           | 4-5-4. 성희롱 문제제기 이후 불이익 경험            | 4-8-4. 성희롱 문제제기 이후 불이익 경험                                      | [유지] 응답 방식 변경(피해자, 조력자 각각 경험 파악 → 구분 없이 경험 파악) |
|                           | 4-6. 성희롱 2차 피해 경험                    | 4-9. 성희롱 2차 피해 경험                                              | [유지] 질문 문구 변경, 세부 항목 변경 및 삭제<br>[추가] 신규 항목 추가  |
|                           | 4-7. 성희롱 2차 피해 행위자                   | 4-10. 성희롱 2차 피해 행위자                                            | [유지] 보기 항목 변경                                  |
|                           | -                                    | 4-11. 성희롱 2차 피해 대처                                             | [추가]                                           |
|                           | 4-8. 성희롱 2차 피해로 인한 영향                | 4-12. 성희롱 2차 피해로 인한 영향                                         | [유지] 보기 항목 변경                                  |
|                           | -                                    | 4-13.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기관의 대처                                     | [추가]                                           |
|                           | 5. 성희롱 피해 간접 경험                      | 5. 성희롱 피해 간접 경험                                                | [유지] 세부 항목 문구 수정<br>[추가] 성희롱 유형 추가             |
|                           | 5-1. 조치 방법                           | 5-1. 조치 방법                                                     | [유지]                                           |
|                           | 5-1-1. 조치하지 않은 이유                    | 5-1-1. 조치하지 않은 이유                                              | [유지] 보기 항목 변경                                  |
|                           | 5-2. 성희롱 피해 간접 경험의 영향 정도             | 5-2. 성희롱 피해 간접 경험의 영향 정도                                       | [유지] 보기 항목 변경                                  |
|                           | 5-3. 직장 내 성희롱 간접 경험으로 인한 2차 피해 간접 경험 | 5-3. 직장 내 성희롱 간접 경험으로 인한 2차 피해 간접 경험                           | [유지] 질문 문구, 세부 항목 변경<br>[추가] 세부 항목 추가          |
|                           | -                                    | 5-4. 2차 피해 간접 경험으로 인한 영향                                       | [추가]                                           |
|                           | -                                    | 6. 2차 피해 발생 원인                                                 | [추가]                                           |
| IV.<br>성희롱<br>전담부서<br>인지도 | -                                    | 7. 사업주/기관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조치 이행에 대한 의견                           | [추가]                                           |
|                           | -                                    | 7-1. 사업주/기관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공정한 사건처리 책무 및 이행에 대한 직원 대상 직접 언급 여부 | [추가]                                           |
|                           | 6. 성희롱 전담부서 운영 현황                    | 8. 성희롱 전담부서 운영 현황                                              | [유지] 세부 항목 수정                                  |
|                           | -                                    | 9. 외부 신고창구 이용 및 이용 권유 여부                                       | [추가]                                           |

| 구분          | 2018년                          | 2021년                                      | 비고                                           |
|-------------|--------------------------------|--------------------------------------------|----------------------------------------------|
|             | 7. 고충전담창구 및 고충상담원 권유 여부        | 10. 고충전담창구 및 고충상담원 권유 여부                   | [유지] 질문 문구 변경                                |
|             | 8. 사내에서 성희롱 사건처리 기대            | 11. 사내에서 성희롱 사건처리 기대                       | [유지] 질문 문구 변경                                |
|             | 8-1. 사내에서 성희롱 사건처리를 기대하지 않는 이유 | 11-1. 사내에서 성희롱 사건처리를 기대하지 않는 이유            | [유지] 질문 문구 및 보기 항목 변경                        |
|             | 9. 정부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대책 인지 여부     | 12. 정부가 추진한 직장 내 성희롱 방지대책 인지 여부            | [유지] 세부 항목 변경                                |
|             | -                              | 13. 직장 내 성희롱 방지에 있어 정부 대책의 도움 정도           | [추가]                                         |
|             | -                              | 14. 지난 3년 동안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변화 정도             | [추가]                                         |
|             | 10.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     | 15.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                 | [유지] 응답 방식 변경(우선순위: 3개 → 우선순위: 2개), 보기 항목 변경 |
|             | -                              | 16. 성희롱 방지를 위해 조직문화를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정책 | [추가]                                         |
|             | -                              | 17. 성희롱 피해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 [추가]                                         |
|             | -                              | 18. 성희롱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 [추가]                                         |
|             | -                              | 19.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 [추가]                                         |
|             | -                              | 20.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로 가장 필요한 정책            | [추가]                                         |
| V. 응답자 기본사항 | DQ1. 성별                        | DQ1. 성별                                    | [유지]                                         |
|             | DQ2. 연령                        | DQ2. 연령                                    | [유지]                                         |
|             | DQ3. 직책                        | DQ3. 직책                                    | [유지]                                         |
|             | DQ4. 총사상 지위                    | DQ4. 총사상 지위(고용 형태)                         | [유지] 질문 문구 변경                                |
|             | DQ5. 현 직장 근무기간                 | DQ5. 현 직장 근무기간                             | [유지]                                         |
|             | -                              | DQ6. 코로나19로 인한 근무환경의 변화                    | [추가]                                         |
|             | -                              | DQ7. 일하는 부서 및 전체 직장의 남녀 비중                 | [추가]                                         |



##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연구

---

2022년 3월 8일 인쇄

2022년 3월 11일 발행

발행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전화 / 02-2100-60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문 화**

전화 / 02-313-7593 (代)

---

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0632-12